대한변호사협회
세월호참사피해자지원및진상조사특별위원회

4·16 세월호 참사 백서



대한변호사협회

목 차

발 간 사 ····· **위 철 환**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제1부 세월호 백서 개관 ····· **1**

1. 서설 ····· 3

2. 세월호 참사의 원인과 문제점 ····· 6
 가. 사고의 경과 ····· 6
 나. 사고의 원인 ····· 8
 다. 문제점 ····· 11

3. 변협 세월호 특위의 활동내역 ····· 15
 가. 세월호 참사 피해자지원 및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조직 ····· 15
 나. 진도 현장대응 부문 ····· 17
 다. 안산 현장대응 부문 ····· 22
 라. 입법활동 부문 ····· 26
 마. 진상조사 부문 ····· 32
 바. 언론대응 부문 ····· 38
 사. 법률상담 부문 ····· 42
 아. 형사재판지원 부문 ····· 46

4. 평가와 전망 ····· 50
 가. 평가와 반성 ····· 50
 나. 전망 ····· 53

5. 마무리 ····· 54

제2부 영역별 활동내역 ····· 57

Ⅰ. 현장 지원 활동 - 진도 ····· 59

1. 활동 개관 ····· 61

2. 현장 지원 활동 경과 및 상황 ····· 61
가. 1차 파견 : 4/19~4/21 - 총 3일 ····· 61
나. 2차 진도 파견 : 4/25~4/27 - 총 3일 ····· 71
다. 3차 진도 파견 : 5/17~10/9 - 총 146일 ····· 76
라. 4차 파견 : 10/23~11/11 - 총 20일 ····· 80

3. 현장 지원 주요 활동 및 사건 ····· 88
가. 범정부사고대책본부(범대본) 회의에 실종자 가족 법률대리인 자격으로 참석하여 정부에 의견 개진과 요구사항 전달 등을 통해 실종자 가족의 의사를 대리 ····· 88
나. 실종자 가족-해양수산부-해경-정부 부처 상호간의 가교 역할을 담당함을 통해 논의사항을 조율하여 결정, 집행되도록 하는 중재·지원 활동 ····· 91
다. 수색구조·장비기술연구TF 등을 통한 수색·구조 방안 마련 및 계획 수립 지원 ··· 94
라. 유실물, 유품 수색, 인계 지원, 시신 유실방지 점검활동 ····· 122
마. 식사, 물품, 의류 등 실종자 가족 복지지원 및 건강지원 활동 ····· 135
바. 국회 세월호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중재 및 국조특위와의 연계 활동 ····· 141
사. 세월호 선체 내 CCTV 증거보전 활동(부식방지조치, 실물보전, 재판진행 등) ·· 146
아. 수색지속을 견인하기 위한 시민사회와의 연대 형성, 정치·종교·문화 등 각계각층 진도 방문 조율 및 실종자 가족에 대한 조력/대책 강구 ····· 156
자. 프란치스코 교황 방한에 따른 실종자 가족 지원 활동 (교황서신, 전달식 등) ····· 163
차. 진도군 어민, 진도군 범군민대책위 등과의 갈등 조정 및 중재 활동 ····· 166
카. 기자 정례브리핑, 언론 대응 등 대변인의 역할을 통한 수색 여론의 우호적 조성과 정부 수색·구조 활동 견인 ····· 171

4. 반성과 성찰 ····· 174

II. 현장 지원 활동 - 안산 ····· 181

1. 활동 목표 ····· 183
가. 피해가족 법률상담 등 지원 ····· 183
나. 피해가족 조직 안정화, 유지 지원 ····· 183
다. 피해가족 활동 지원 ····· 183

2. 활동 내용 ····· 184
가. 피해가족-변협 관계 & 지원체계 수립 활동 ····· 184
나. 피해가족 진상규명 관련 입장 정리 자문 ····· 190
다. 피해가족 현장지원활동 ····· 194

3. 활동 평가 및 전망 ····· 204
가. 변협 차원의 체계적 지원 미비 & 개선점 ····· 204
나. 변협 차원의 다른 활동과의 연계성 설정 미비 & 개선점 ····· 205
다. 장기적 관점에서 피해가족 현장대응 활동 배치 부족 & 개선점 ····· 205

III. 입법 지원 활동 ····· 207

1. 세월호참사의 근본 대처 방안에 대한 논의 -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 ····· 209

2. 법제도개선단 특별법 제정팀을 만들다 ····· 213

3. 대한변호사협회 통합안을 만들다 ····· 215
가. 대한변협 세월호 특위 초안 ····· 216
나. 민변 초안 ····· 218
다. 김희수 초안 ····· 218
라. 3개 법안 절충 작업 ····· 219

4. 세월호 유가족 입법 청원안을 만들다 ····· 221
가. 대한변협 통합안 설명회에서 공청회까지 ····· 221
나. 특별법 입법 공청회 ····· 223
다. 입법청원안 작성 과정 ····· 225
라. 입법청원 과정 ····· 228

5. 국회 입법 투쟁 ····· 230
가. 3차협의체 논쟁 ····· 230
나. 국회 연좌 농성 ····· 233
다. 수사 및 기소권 논쟁 ····· 235
라. 2개의 법으로 찢어지다 ····· 242
마. 특검추천권 협상 국면 ····· 242
바. 여/야 원내대표 1차 합의 ····· 246
사. 여/야 원내대표 2차 합의 ····· 252
아. 여/야 원내대표 3차 합의 및 협상 타결 ····· 259
자. 피해자지원특별법 ····· 260

6. 평가 ····· 261

Ⅳ. 진상 조사 활동 ····· 263

1. 시작하며 ····· 265

2. 진상조사단 구성 및 초기 자료 수집 ····· 266
가. 진상조사단 초기 구성 및 업무 분담 ····· 266
나. 진술청취카드 작성 ····· 283
다. 초기 복원작업 및 포렌식 감독 ····· 297
라. 국회의원실을 통한 자료 확보 ····· 303
마. 시민단체와의 연계 ····· 310

3. 자료 취합 활동 ····· 318
가. 세월호 침몰사고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기관보고)지원 활동 ····· 318
나. 진상규명 보고서 작성 활동 ····· 319

4. 각종 증거보전신청 활동 ····· 324
가. 활동내용 ····· 324
나. 진상규명의 실태 ····· 327
다. 문제점과 반성 ····· 345
라. 앞으로의 전망 ····· 348

5. 형사재판지원팀과의 연계 및 증거자료 지원 ····· 348
가. 형사재판지원팀과의 연계 ····· 348
나. AIS 항적 찾기 ····· 383

Ⅴ. 형사재판 지원 활동 ····· 389

1. 개괄 ····· 391
가. 형사재판지원팀 결성의 필요성 ····· 391
나. 형사재판지원팀의 피해자 보호 활동 ····· 392
다. 형사재판지원팀의 진상규명활동 ····· 394

2. 구체적인 활동 내용 ····· 396
가. 형사재판지원팀 결성까지의 과정 ····· 396
나. 형사재판지원팀의 구성 ····· 404
다. 선원사건에 대한 피해자 변호인 활동 ····· 411
라. 해경사건에 대한 피해자 변호인 활동 ····· 432
마. 그 외의 활동 ····· 437

3. 평가 ····· 438

가. 재판 절차에서의 피해자 보호 ····· 438
나. 업무의 강도와 자원 봉사 형식의 부조화 ····· 439
다. 진상조사단과의 괴리 ····· 441
라. 팀 내의 사건에 대한 의사소통 문제 ····· 441
마. 세월호 가족대책위와의 의사소통 문제 ····· 442
바. 총평 ····· 443

Ⅵ. 법률 상담 활동 ····· 445

1. 시작하며 ····· 447

2. 상담일정 및 상담원칙 ····· 448
가. 시기구분 ····· 448
나. 구성 ····· 448
다. 상담 원칙 ····· 456
라. 개선할 사항 ····· 458

3. 시기별 주요 상담활동 내용 ····· 459
가. 초기(2014년 5월~6월) ····· 459
나. 중기(2014년 7월~10월) ····· 464
다. 후기(2014년 11월~2015년 1월) ····· 468

4. 성과와 반성 ····· 471
가. 성과 ····· 471
나. 반성 ····· 474

5. 마치며 ····· 478

Ⅶ. 언론 대응 활동 ····· 481

1. 서론 ····· 483
2. 실태 ····· 484
가. TV등 기존의 미디어 ····· 484
나. 인터넷 등 새로운 미디어 ····· 500
다. 마타도어 ····· 508
라. 논란의 정부 문건 ····· 518
마. 2014년 7월 28일자 문화일보 31면에 실린 광고 파문 ····· 520
바. 세월호 참사를 교통사고에 비유 ····· 526
사. 세월호 가족대책위의 실제 요구사항 ····· 527

3. 대한변협을 둘러싼 편파성 시비 ····· 528

4. 성과 ····· 531
가. 인터넷 자정작용과 사·공익의 조화 ····· 532
나. 대한변협과 변호사의 위상 변화 ····· 533

5. 반성 및 평가 ····· 535

6. 결론 ····· 537

제3부 활동일지 및 조직도 ····· 539

Ⅰ. 대한변협 세월호 특위 활동일지 ····· 541

Ⅱ. 조직도(전기) ····· 566

Ⅲ. 조직도(후기) ····· 567

후 기 ····· 이 명 숙, 김 영 훈

발 간 사

변호사법 제1조는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오랜 세월동안 전문 자격사로서 국가의 혜택을 받아온 모든 변호사들이 당연히 받아들여야 할 직업적 사명이었습니다. 그러나 변호사 2만 명 시대를 맞아 각자의 생존이 문제가 된 오늘날 변호사에 대한 기대와 현실은 공익적 측면에서 조금은 어긋나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러던 중 너무도 갑작스럽게 4·16 세월호 참사가 발생하였습니다. 당연히 모두가 구조될 줄만 알았던 국민의 염원과 정반대로 304명의 희생자가 발생한 믿을 수 없는 현실에 온 국민이 눈물과 탄식, 깊은 슬픔에 빠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본적 인권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사명으로 하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좌시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급히 진도 현장에 변호사를 파견하여 상황을 파악하였고, 부실한 대응과 혼선, 언론의 부정확한 정보 제공 및 이로 인한 실종자 구조의 실패와 피해 가족들의 2차 피해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고 현장에서 피해자들을 직접 구조하거나 의학적으로 치료할 수는 없었지만,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하고 정당한 피해 배상과 보상을 받기 위해 신뢰할 수 있는 민간 전문가 단체의 체계적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즉각적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유가족들과 협약을 체결하여 법률상담부터 진상조사, 입법활동지원 등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그 과정에서 부족한 인력을 보충하기 위하여 공익법률지원단을 모집하였던 바, 놀랍게도 514분의 변호사님들께서 기꺼이 지원해 힘을 보태주셨습니다.

이제 막 사회에 자리 잡기 시작한 청년변호사부터 오랜 경력의 변호사들까지, 생업을 뒤로 하고 서울, 진도, 안산, 인천, 광주 등지에서 아무런

대가없이 오로지 열정으로 헌신하는 모습을 보면서, 대한변호사협회의 역사에서 이처럼 많은 변호사님들이 한 마음으로 동참하여 국가의 재난 사태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한 적이 있었던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비록 변호사의 사회적 지위와 여건이 예전과 같지 않을지라도, 그런 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분들이 여전히 많이 계심을 다시 한 번 실감하고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모든 분들에게 변호사단체의 대표로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실 많은 분들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대한변호사협회의 세월호 지원 활동은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초기에는 어떠한 방식으로 대처해야 할지 몰라 연일 회의를 거쳐 활동 방향을 계획하고, 종합적인 피해자 지원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러나 인력과 비용 문제, 그리고 민간단체로서 가질 수밖에 없는 한계로 인해 진상조사와 입법 활동 지원은 벽에 부딪혔으며, 언론대응의 미숙함으로 그 활동방향에 대하여 오해를 사기도 했습니다. 법치주의 정신에 따라 소신 있게 행하면 된다는 변호사 특유의 우직함은 여러 외부의 세력에 의해 정치적 활동으로까지 비춰지기도 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정치적 중립단체이며, 4·16 세월호 참사 지원활동에 있어서 어느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고 법치주의에 입각하여 피해자 지원과 명확한 진상규명, 관련 법률의 제·개정을 통한 재난대응 시스템 확립으로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을 뿐이었습니다.

4·16 세월호 참사 백서는 세월호 참사 지원활동에 참여하신 수많은 분들의 활동 기록이며, 대한변호사협회의 세월호 피해자 지원 활동에 대한 수많은 오해와 의도적 비방에 대하여 진실을 밝히고 객관적 사실을 전달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동시에, 대형재난의 대처에 대한 부족한 경험때문에 더 나은 지원을 하지 못했던 대한변호사협회의 반성을 담아, 향후 유사한 국가적 재난에 있어 변호사단체가 활동하고 나아가야 할 바를 제시하는 지침서이기도 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의 국가적 재난 대응 활동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며 그 과정에서 4·16 세월호 참사 백서가 지난 활동의 아쉬운 점을 보완하는 단초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유례없는 국가적 대참사를 맞아 지난 8개월간 밤낮없이 전국 각지에서 분야별 활동에 매진해 주신 대한변호사협회 세월호 특위 위원분들과 공익법률지원단 변호사님들, 그리고 아낌없는 지원과 조력을 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5년 2월

대 한 변 호 사 협 회

협 회 장　　위 철 환

제1부

세월호 백서 개관

세월호 백서 개관

1. 서설

우리는 2014년 한해의 대부분을 전 국민으로 하여금 '아픔과 분노'의 도가니로 몰아넣은 사건을 잊을 수 없다. 2014년 4월 16일 오전 9시경 전남 진도 부근에서 여객선 세월호가 침몰하여 승객 304명이 사망(295명) 또는 실종(9명)된 대형 참사가 바로 그것이다. 2014년 4월 16일 9시경 수학여행을 떠난 안산 단원고등학교 학생 325명 등 승객 447명을 태운 세월호 여객선이 인천을 출발하여 제주도로 향하던 중 진도 앞바다에서 침몰하고 있다는 속보가 전해졌다. 다수 국민들은 선장과 선원들이 침몰하는 배에 있는 승객들이 구조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다 했을 것이고, 당연히 승객 모두가 구조될 것으로 믿었다. 그러나 잠시 뒤 전원 구조되었다는 언론보도가 오보로 밝혀졌고, 시간이 지날수록 배는 점점 더 기울어지는 모습이 실시간으로 보도되는데, 정부는 탑승객 수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배가 완전히 뒤집힐 때까지 선박을 탈출하지 못한 300명 이상의 승객이 제대로 된 구조도 받지 못한 채 그대로 수장된 사실에 다수 국민들의 당초의 믿음은 좌절로, 그리고 다시 원망으로 변해 갔다.

세월호 참사가 우리에게 충격과 실망을 넘어, 분노와 아픔으로 다가오는 것은, 희생자가 다수라는 사실 때문만은 아니다. 세월호 참사는 선주의 이익을 앞세운 선사의 불법·탈법적 경영, 사고요인을 방치한 감독기관의 부실한 감독과 과적, 안전 점검과 감독 소홀, 즉 안전불감증으로 인하여 발생했다는 점에서 1970년 12월 14일 발생한 남영호 침몰 사고(사망자 326명), 1993년 10월 10일 발생한 서해훼리호 침몰사고(사망자 292명)

와 유사한 반복된 사고라는 점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수학여행을 가던 고등학생들이었고, 이들이 어른들의 무책임과 무능으로 인하여 구조되지 못하였다는 점 때문에 전국민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배가 서서히 침몰하고 있는 가운데도 자리를 지키라는 선내방송만 하고 승객보다 먼저 탈출한 승무원들의 파렴치한 행위, 선내방송을 믿고 구조를 기다려온 학생들이 배와 함께 그대로 수장된 안타까운 사실, 재난대응시스템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300명이 넘는 귀중한 생명이 수장되는 위기상황에도 아무런 구조조치도 없이 허둥대며, 사고를 대형 참사로 만들었던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 중개방송으로 이를 지켜만 볼 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우리 자신의 무기력 등에 우리 모두가 참담한 부끄러움과 깊은 절망감, 그리고 끓어오르는 원망과 억제할 길이 없는 분노를 느끼게 되었다. 세월호 참사는 경제적인 불황에 어려움을 더한 암울한 고통의 그림자로 2014년 한해를 뒤덮었고, 그로인한 다수 국민들의 마음속 응어리가 상처로 남게 되었다.

그 날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주어야 할 국가는 보이지 않았고, 모든 사태가 의문 투성이었다. 그 뒤 사고원인과 구조과정의 진상이 하나씩 드러나면서 세월호 참사는 인재(人災)였음이 밝혀졌다. 안전 보다 이윤을 우선 추구하는 기업의 부패구조, 임박한 위기 상황에서 선원들의 무책임한 행위와 감독기관의 무능으로 300명이 넘는 승객들이 목숨을 잃거나 실종되었다. 게다가 당시 언론보도 역시 피해자들의 인권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심각한 오보들을 남발하였고, 유가족들에 대한 각종 유언비어와 명예를 훼손하는 모욕적 언사도 서슴치 않았다. 생존자 및 사망·실종자의 가족들은 사고 자체 뿐 아니라 사고 처리 과정에서 언론의 갖은 오보와 관계 당국의 미숙한 대응으로 인하여 2차적인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사고와 관련한 언론, 수사

또는 재판과정에서 생존자나 유가족의 상태를 잘 고려하여 대처하지 못할 경우 다시 부차적인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대한변협"이라 함)는 세월호 참사 발생 직후 어느 때 보다 발 빠르게 피해자 지원 및 진상조사 활동을 하였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다음날 구조현장인 진도 팽목항에 소속 변호사를 파견했고, 4월 30일 '대국민성명'을 발표한 뒤, 전국의 회원들을 대상으로 공익법률지원단을 모집하였다. 1주일 만에 총 514명의, 과거 유례없이 많은 회원들이 지원한 가운데 세월호 참사 피해자지원 및 진상조사 특별위원회(이하 "세월호 특위"라 함)를 출범하여 피해자들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왔다. 이번 대한변협의 세월호 특위 활동은 국가적 재난사태에 협회 차원에서 독립된 조직을 구성하여 조직적으로 대응한 첫 사례로서, 변호사에게 부여된 사회적 책무를 다한 것으로, 그 활동으로 선사, 정부, 언론사 등에 비해 자금과 조직, 법적 대응 능력 면에서 크게 열악한 피해자 측을 도와 대등한 입장에서 재난의 원인과 관련기관의 귀책을 밝혀냈고, 유가족들의 의사를 반영한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진상규명 특별법"이라 함)의 성안 및 제정 절차에서 헌신적인 지원활동을 하여, 국회로 하여금 여야 합의로 법안을 통과시키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

앞으로 같은 참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세월호 참사의 원인과 드러난 여러 문제점들을 정확하게 규명하여 향후 유사한 사고를 미리 방지하기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사고발생 직후부터 지금까지 유가족과 함께 해오고 있는 몇몇 변호사의 헌신적 노력과 500여명이 넘는 공익법률지원단의 지속적인 활동 그 자

체로도 대한변협 역사에 남을 중요한 성과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세월호 특위 활동의 경위와 성과를 잘 정리하여 앞으로 대한변협이 대규모 사고나 위험사태에 체계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중요한 경험과 전범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본 세월호 백서에 지금까지 밝혀진 사고의 원인과 경과 사실을 기록하고, 세월호 특위의 각 중요활동을 영역별로 정리하였다.

이 글에서 담고자 하는 내용은 첫째, 지금까지 밝혀진 세월호 참사의 사고원인, 진행 경과와 드러난 문제점을 조망해 보았다. 다만 참사의 원인과 진상은 앞으로 진상규명 특별법에 따라 활동하게 될 세월호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를 통해 좀 더 소상히 밝혀질 것이나, 우선은 수사 및 재판결과, 감사원의 감사결과, 각종 세미나 자료, 백서의 내용을 근거로 간략히 정리하기로 한다. 둘째, 대한변협의 세월호 특위 활동을 개략적으로 정리하고, 셋째, 세월호 참사 이후 지금까지 우리 사회에서 진행된 다양한 진상규명 작업과 변협 세월호 특위의 주요 활동내역 및 이에 대한 평가와 향후 과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2. 세월호 참사의 원인과 문제점

가. 사고의 경과

2014년 4월 15일 오후 9시경, 인천에서 제주도로 향하는 카페리(Car Ferry, 여객과 자동차 및 화물을 함께 싣고 운항하는 배) 세월호는 승객 447명(안산 단원고등학교 2학년 학생 325명과 교사 15명 포함)과 승무원 29명 등 총 476명을 태우고 인천항을 출발하여 다음날인 4월 16일, 전남

진도군 병풍도 북방 1.8마일(약 2.9킬로미터) 해상(맹골수도)을 지나던 중 오전 8시 25분경 135도에서 145도로 항로를 변경하다가 돌연 선체가 좌현으로 약 30도 가량 기울었고, 이후 복원성이 상실된 상태에서 표류하다가 10시 17분경 108.1도까지 기울었고, 11시 18분 경 선수(船首, 배의 앞부분)의 일부만 남기고 바다 밑으로 침몰되었다. 이로 인하여 총 탑승자 476명 중 배가 기울기 시작한 초기 서둘러 탈출하거나 갑판으로 올라갔던 생존자 172명을 제외한 295명이 사망하고, 2015년 2월 현재 9명이 실종되었다.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Vessel Traffic Service Center, VTS, 연안 지역을 오가는 선박들에 대한 관제업무를 하는 기관)는 사고당일 오전 9시 6분 경 목포해경으로부터 사고소식을 전해들을 때까지 약 20분 동안 세월호에 대해 전혀 관제하지 않았고, 최초 사고신고를 접수한 목포해경 및 서해지방해경도 초기대응을 태만히 하고 보고를 누락하여 최종 명령권자인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이 퇴선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없게 하였다.

목포 해양경찰청 소속 123정은 사고접수 후 약 40분이 지난 오전 9시 35분경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하였는데, 선미의 승객들은 구조하지 않고, 세월호 선수 방향 조타실로 향하여 선원들을 먼저 구조했다. 당시 해경 소속 123정과 구조 헬기가 현장에 도착하였을 때 세월호는 왼쪽으로 약 52.5도 기울어진 상태였으나 선내에서 갑판으로 이동이 가능한 상황이었음에도 123정은 퇴선방송을 하지는 않았다. 해양경찰청이 사고당일 잠수가 가능한 특공대원에게 출동지시를 내린 것은 오전 8시 58분이었지만, 특공대원 7명이 현장까지 출동할 헬기가 없어 민간어선으로 갈아타고 이미 11시 15분에 현장에 도착했으나 세월호가 선수만 남기고 침몰한 이후였다.

배가 90도 가까이 기울어 출입구가 천정이 되어버린 오전 10시 10분까지, 세월호 선장들과 선원들은 “가만히 있으라”는 선내 방송만 반복했고, 현장에 출동한 해경도 승객들에 대한 퇴선조치를 전혀 하지 않았고 선원들 모두가 123정으로 탈출하여 그뒤 퇴선조치를 취할 수도 없었다. 결국 세월호는 사고 발생 후 2시간이 지난 오전 11시 18분, 선수 일부만을 남기고 뒤집어진 상태로 완전히 침몰하였다.

총 탑승자 476명 중 배가 기울기 시작한 초기에 서둘러 선실을 빠져나와 갑판으로 올라갔던 생존자 172명을 제외하고, “가만히 있으라”는 선내 방송을 따랐던 대부분의 학생들과 승객들은 기울어진 선내에 대기하다 선실에 갇히게 되었고, 그 뒤 제대로 된 구조활동을 시도해보지도 못한 채 단 한명도 구조하지 못하고 남은 304명이 사망하거나 실종되는 최악의 참사가 발생하였다.

나. 사고의 원인

(1) 직접적인 원인

검찰의 최종 수사결과와 이준석 외 14인에 대한 살인 등 형사재판(광주지방법원 2014고합180) 판결 및 감사원 감사 결과 등을 통해 지금까지 밝혀진 세월호 참사의 상황과 직접적인 침몰원인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세월호는 2012년 일본에서 수입된 후 더 많은 승객과 화물을 싣기 위하여 무리한 증·개축 과정을 거쳤고, 이 과정에서 선박의 복원력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좌우 불균형이 발생하는 등 복원성이 크게 악화되었다.

② 세월호는 사고 당일 최대 화물 적재량의 2배에 달하는 화물을 적재하였고, 과적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선박 안전에 필수적인 평형수(배가 좌우로 흔들리더라도 배의 무게중심 및 균형을 회복하는 선박 복원력을 위하여 배의 가장 밑바닥에 채우는 물을 감축하였으며, 화물 고박(固縛, Lashing, 선박 내에서 컨테이너, 화물, 차량들이 움직이지 못하도록 네트, 와이어, 로프, 쇠사슬 등을 이용하여 화물 등을 선박의 바닥에 고정하는 것) 관련 규정 또한 준수하지 않았다.

③ 세월호는 조류가 험난한 항로인 맹골수도를 통과할 때, 선박 조타를 직접 지휘해야 하는 선장이 선실을 이탈한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경험이 부족한 3등 항해사와 조타수가 급격하게 항로를 바꾸는 바람에 약 15도 가량 기울어졌고, 이 과정에서 급격한 변침이 발생하여 침몰한 것으로 밝혀졌다.

④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은 선원들에게 비상시를 대비한 퇴선 훈련 등을 포함한 교육 훈련을 실시하여야 할 의무를 규정대로 실시하지 않았고, 결국 세월호가 복원성을 상실하고 표류 후 침몰할 때까지 선원들이 제대로 된 초기대응을 하지 못한 채 승객들에게는 “가만히 있으라”는 방송만을 반복하고서 정작 자신들은 경비정을 타고 먼저 탈출해버리는 등 승객들의 인명구조에 노력해야 할 의무를 방치하여 선박에 남아 있던 승객들이 모두 숨지는 참극을 만들었다.

(2) 구조적 원인

대형 참사의 구조적인 원인을 해결하지 않으면 유사한 사고가 계속 발

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사고발생의 직접적 원인에 대한 분석만큼이나, 구조적 원인을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다. 세월호 참사에서 지금까지 드러난 구조적인 원인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① 정부가 그간 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여 준다는 명목 하에 무분별한 규제완화정책을 펼쳤던 바, 이에 따라 선박연령기준, 노후선박에 대한 안전점검 기준, 차량적재 및 선박 컨테이너 안전점검 기준 등 선박의 안전점검 기준이 완화되어 선박의 복원성 등 구조적인 결함에 대한 사전관리가 없었다.

② 선원법 시행령을 개정해 선장의 조종지휘대행을 허용함으로써 위험한 수로에서도 경험이 부족한 항해사가 운항할 수 있었고, 내항 선박 안전관리체제의 이행요건을 완화하고 선박내부 심사보고의무도 면제되어 제대로 된 사전 현장 점검이 이루어 질 수 없었다.

③ 해상 안전점검을 선사들이 운영하는 한국해운조합에 담당케 하여 관리·감독을 받아야 할 주체에게 관리권과 감독권이 주어진 것이니 선박안전관리체제가 제대로 운영될 리가 없었다. 또 수난구호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 해경 산하에 법정단체인 '한국해양구조협회'를 설립하고 구조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 구조작업은 민간 업체인 언딘의 주도로 진행되었고, 해경은 제대로 된 구조장비조차 갖추고 있지 못하여 그 역할을 찾을 수 없었다. 이러한 안전관리의 민영화 · 외주화는 부실점검과 이른바 '해피아' 라 불리는 해양 관계부처와 해운사의 담합과 비리, 정부의 재난 대응 역량의 부족과 밀접하게 연관되는 일이었다.

④ 이윤만 추구하는 해운사의 위험한 선박운항, 선원들의 열악한 노동조건 아래에서는 엄격한 위계질서 아래 배와 운명을 같이 한다는 책임의식은 찾아 볼 수 없었다. 인명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 초기에 부실한 대처와 이기적인 행위로 사고를 참사로 만들었던 것이다.

다. 문제점

(1) 구조 과정의 문제점

항만의 15개 VTS는 해양수산부 관할이며, 진도와 여수 두 곳은 해양경찰청 관할로 이원화(二元化)되어 통일적인 관리가 되지 않았으며, 이러한 이원화된 관리는 진도VTS의 부실 관제를 초래했다.

최초 사고 신고를 접수한 목포해경 및 서해지방해경의 부실한 초기 대응도 사고의 확대에 일조 하였던 바, 배가 기울기 시작한 직후인 4월 16일 8시 52분 경 단원고등학교 故 최덕하 학생이 전남소방본부 119 상황실에 사고 신고를 하고, 약 2분 뒤 119 상황실은 목포해양경찰에 사고신고 내용을 전달하였다. 그러나 목포해양경찰서는 중요한 정보를 상급자에게 보고하지 않았고, 구조인력에게 제대로 전달하지 않음으로써 구조인력이 현장에 약 1시간 이상 지체되어 도착하게 되었다. 상급기관인 서해지방해양경찰서장 및 실무관들도 최종 명령권자인 서해지방경찰청장에게 보고하지 않음으로써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이 퇴선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없게 되었다. 구조함정인 123정의 정장은 현장에 도착한 9시 43분 경 뒤늦은 현장보고를 받고서도 그 즉시 퇴선명령 등 적절한 구조지휘를 하지도 않았다.

사고 당일 잠수가 가능한 해양경찰청 소속의 잠수구조 전담인력인 서해경찰청 특공대 7명은 세월호가 선수만 남기고 침몰한 이후인 11시 15분에서야 현장에 도착했다. 잠수구조 인력의 지연된 출동 및 도착은 침몰사고 당시에 자체 헬기조차 없는 등 해상 사고로 인한 잠수 구조 인력의 배치와 실전투입에 대한 대비가 매우 허술했기 때문이다,

해경은 사고 발생 초기에 경찰청, 소방본부(중앙119), 해군 특수요원 및 미 해군(본험 리처드함; Bonhomme Richard) 등에서 구조 활동 지원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배치하거나 운용하지 않아 해경이 외부 지원을 배제하였다는 의혹이 있다. 개정 '수난구호법'에 따르면, 사고 책임선주는 사고초기에 직접 구난구조업체를 선정하여 계약을 맺어야 한다. 구조비는 우선 선주가 계약한 보험회사가 지급하고, 비용이 과다한 경우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입하여 활동비를 선지급한 뒤 선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해야한다. 이러한 제도 하에서 해양사고가 발생하면 선주는 사고의 빠른 수습과 구조 활동 능력보다 좀 더 싼값의 구난업체를 찾으려 하게 되고, 이 과정에 해경 간부가 자신과 친분이 있는 업체를 소개시켜 주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2) 언론보도의 문제점

세월호 참사에 대한 언론보도에는 선정적 보도, 전원 구조 오보, 현장 구조 상황에 대한 허위 및 과장 보도, 유가족들에 대한 편파적 보도 등 심각한 문제점이 발생하였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 문제를 다루는 재난보도에 있어서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현장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사실을 알리는 것이다. 또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재난보도에 있어 중요

한 원칙은 피해자들의 상황을 최대한 배려하는 차분함이다. 그런데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언론보도는 재난보도원칙을 전혀 지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보, 사실왜곡 등의 보도를 점검 없이 내보냈다.

세월호 참사 당시 언론은 실종자에 대한 사망 보험금을 계산하거나, 치료와 회복이 필요한 생존자들의 병실까지 찾아가 인터뷰하고, 구조 후 흥분되고 불안해하는 모습을 모자이크 처리도 없이 선정적으로 보도하는 등 피해자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보도를 반복했다. 또 언론은 유가족들에 대한 각종 유언비어에 대해서는 수차례 반복 보도하면서도, 유가족들의 진상규명 및 특별법 제정을 위한 다양한 활동이나, 정부인사와 여당 국회의원들의 유가족들에 대한 모욕적인 발언에는 침묵하는 편파적인 보도태도를 보였다. 특히 실종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구조와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유가족들과 정부의 대립각이 뚜렷해지자 유가족의 태도를 '조급증'으로 매도하거나, 유가족 배후의 외부 세력이 개입하였다는 등의 유언비어를 그대로 보도하여 피해자와 그 가족들, 자발적인 봉사활동자들의 인권을 침해하였다.

나아가 KBS 보도 개입,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라 함)의 '방송 통제', 방통위의 구조적 통제 등 정부의 언론 및 보도개입으로 언론의 자율성이 심각하게 침해되었다.

(3) 국회 국정조사, 검찰수사 및 감사원 감사의 문제점

국회는 2014년 6월 2일부터 8월 30일까지 약 90일 동안 이례적으로 긴 세월호 국정조사를 진행하였다. 팽목항 현장조사를 여야가 따로 진행하

고, 청문회 증인채택 문제를 놓고 힘겨루기만 하다가 결국 청문회는 열지도 못한 채 활동을 마쳤다. 다만 약 2주 동안 22개 관련기관에 대하여 기관보고를 받으면서, 관련 기관들의 내부 자료가 최초로 공개됨으로써 세월호 참사의 각종 문제점들을 정리하는 밑거름이 되었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다.

검찰 수사는 세월호 참사의 주요 원인과 구조, 유병언 일가, 해운비리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고, 그동안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수사결과를 밝히고 진도VTS 센터장과 직원, 해양경찰 123정장에 대한 수사가 있었던 점, 해운업계의 비리를 감독기관의 비리와 민관유착 등 구조적 비리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전반적인 수사를 진행한 점 등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해운업계 감독기관의 비리와 민관유착 등 구조적 비리가 세월호 참사에 미친 영향과 그 책임(만일 구조적 비리가 사고의 원인으로 작용한다면, 이들에게도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죄책 성립 여부 등에 대해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을 규명하기보다 단순히 직접 관련자의 비리 혐의를 나열하는데 그치고 있고, 비리 혐의는 구조적 비리라고 명명하면서도 규제완화와 안전관리감독의 상관관계, 안전규제업무의 민영화와 외주화가 안전관리감독에 미친 영향, 사고를 참사로 만든 국가재난관리 시스템의 부실, 국가재난 컨트롤 타워 역할의 부재, 구조지휘부의 구성 문제와 지휘의 부실 여부등과 같은 근본적인 원인과 구조적인 배경과 원인에 대해서는 침묵함으로써 수사권한의 범위를 매우 피상적인 범위로 제한한 한계가 있다.

감사원은 2014년 10월 최종 감사결과보고서를 발표하였다. 그 감사결과보고서는 세월호 참사에 관련한 정부 및 공공기관의 문제점에 대해 비교적

상세하게 정리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 그렇지만, 감사원의 감사는 그 대상을 안전행정부,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에 한정하고, 실제 많은 의혹이 제기된 국방부, 국정원 및 청와대를 제외하였다는 점. 공무원에 대한 징계 등 인사조치를 요구하였으나 구체적인 징계대상자에는 해운조합 운항관리자 15명, 한국선급 검사원 3명, 진도 VTS센터 센터장 등 근무자 9명 등 하위직급의 실무자들에게 집중되어 있다는 점, 세월호 참사는 무분별한 규제완화 및 공공부분의 민영화에 의해 초래된 사정도 있었으나, 이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는 하지 않고 제도운영의 부적절 등 표면적인 현상을 지적하는 내용에 그쳤다는 점 등에 본질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다.

3. 대한변협 세월호 특위의 활동내역

가. 세월호 참사 피해자지원 및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조직

대한변협은 초기 지원활동을 통해 정부의 부실한 대응과 혼선, 언론의 부정확한 정보제공 및 이로 인한 실종자 구조의 실패, 피해 가족들에 대한 2차 피해 등을 확인하였고, 아울러 피해자 가족의 생활·생계·건강문제 등 다양한 법적문제가 있음을 파악했다. 이에 대한변협은 4월 28일 상임이사회에서 세월호 피해대책 TF사업계획을 승인하고, 4월 30일 '세월호 참사에 대한 대국민성명'을 발표하였다. 위 성명서에는 재난을 예방하고, 재난이 발생한 경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안전시스템이 제대로 운영되도록 하는데 있어 변호사에게 지워진 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지 못하였음을 통렬히 반성하면서, 사고 전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의 원인분석과 책임소재 파악, 관련 법제와 관행의 개선, 정부기관 및 민관단

체들의 재난대응 협력시스템 구축 및 피해자 지원 사업 등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두 가지 사항을 결의하였다.

첫째, 대한변협은 전국의 회원들을 대상으로 자발적 참여를 모집하여 법률지원단을 발족하고, 이를 통해 피해자 및 그 가족들에게 법률적 문제에 관한 안내와 상담을 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피해자들을 위하여 정부, 보험사, 선박회사, 교육당국, 언론 등을 상대로 한 피해 배상 및 관련 공익 소송 등을 무상으로 지원한다.

둘째, 대한변협은 세월호 참사의 원인과 구조 과정의 문제점 및 책임소재를 규명하고, 관련 법률의 제정과 개정, 위기관리 및 재난대응 시스템의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한 피해자 가족과 전문가 그룹을 포함한 범국민 진상조사단 구성을 추진한다.

위와 같은 결의에 따라, 전국의 회원들을 대상으로 공익법률지원단을 모집하였고 일주일만에 총 514명의 많은 회원들이 공익법률지원단에 지원했다. 대한변협은 5월 3일과 31일 두차례에 걸쳐 '세월호 참사 피해지원 공익법률지원단 워크숍'을 개최하였는데, 총 100여명의 변호사가 참여하여 관련한 법률적인 문제 전반, 보험관계, 정신적 상담사례, 2차 피해예방 및 대응책등에 대한 강의를 듣고, 각 지원 분야별로 구분해 종합적인 피해자 지원 계획을 수립했다.

대한변협은 더 적극적인 지원을 위해 5월 16일 세월호 피해자 및 유가족 대책위원회(이하 "세월호 가족대책위"라 함)와 대한변협은 '세월호 참사 법률지원 및 대책마련'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5월 18일

세월호 특위가 출범하였다.

대한변협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다음날 구조현장인 진도 팽목항에 소속 변호사를 파견하여 현장파악을 하였고, 4월 30일 ‘세월호 참사에 대한 대국민성명’을 발표한 뒤, 전국의 회원들을 대상으로 공익법률지원단을 모집하였다. 공익법률지원단을 모집한지 1주일 만에 총 514명의, 과거 유례없이 많은 회원들이 지원한 가운데 세월호 특위를 출범하고, 전체적인 사업을 총괄하는 총괄지원팀 및 각 쟁점별 지원 및 대응을 위한 현장대응지원단, 진상조사단, 법제도개선단, 법률상담/지원단, 언론모니터링팀, 재판지원팀, 백서제작팀, 특별법제정팀, 상담매뉴얼작성팀으로 업무를 분장하였다.

이렇게 구성된 세월호 특위는 피해자 지원을 위한 법률상담 지원, 인권침해 대응 및 증거보전, 특별법 제정 활동, 개별 재판의 피해자 지원(피해자 설명회 및 재판에서의 의견전달) 및 모니터링 활동 등 재판지원 활동뿐만 아니라, 세월호 가족대책위 및 피해자들의 요청에 따라 언론사에 대한 정정보도 요청,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민원신청, 희생자 허위사진 유포 방지, 허위사실을 유포한 인터넷 블로그와 악성댓글에 대한 고소 고발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왔다.

나. 진도 현장대응 부문

대한변협이 진도에 현장지원활동으로 배의철 변호사를 파견하여 활동한 기간은 총 172일(참사 210일만인 11월 11일 수중수색 중단선언)로, 1차 진도 파견은 4월 19일부터 4월 21일까지 총 3일, 2차 파견은 4월 25일부터 4월 27일까지 총 3일, 3차 파견은 5월 17일부터 10월 9일까지 총 146일,

4차 파견은 10월 23일부터 11월 11일까지 총 20일로 나누어진다.

대한변협 진도 파견 현장 지원 활동 경과 및 상황을 순서대로 살펴보면, 1차 파견은 사건 발생 3일째인 4월 18일 저녁, 황필규 변호사와 배의철 변호사를 변협 대표단 자격으로 진도로 파견하였다. 1차 파견 당시 피해자들은 이른바 세월호 내에 '에어포켓'이 형성되어 피해자의 생존 가능성이 있다는 일말의 희망을 가지고 팽목항에서 밤을 지새우며 정부에 구조를 촉구하며 거센 항의를 이어나가고 있었다. 당시 팽목항 학부모들은 구조 이외에 아무 것도 생각할 수 없고, 변호사는 필요치 않다는 답변을 했다. 따라서 우선 변협 대표단은 ① 상황 및 현장대응 파악, ② 기록, ③ 향후 신뢰를 얻기 위한 계속적 활동에 집중하였다.

피해자 학부모들은 청와대로 항의방문을 가기 위해 진도체육관을 나섰으나 300여명의 경찰들이 학부모, 가족들을 막아서며 이들의 청와대 진출과 버스 탑승을 저지했다. 대한변협 대표단은 ① 경찰이 피해자 가족들을 막아서는 법적 근거를 제시할 것, ② 불법적 공권력의 행사를 지적했으나 경찰병력은 물러서지 않았다. 총리와 해수부장관의 방문에도 가족들의 항의는 이어졌다. 이에 대한변협 대표단은 학부모 대표를 찾아가 대한변협이 세월호 피해자 가족을 위해 법률지원을 하겠다는 의사를 구두로 전달했다. 그러나 당시 수차의 방문과 설득에도 대한변협 대표단마저도 불신의 대상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4월 19일 민관군 합동구조팀이 첫 선내 진입에 성공하여 시신을 수습한 이후 희생자 수습은 급속히 늘어나기 시작하였다. 희생자 수습이 본격화되면서 안산에서 이루어지는 장례절차에 관한 문제가 대두되었고, 안산에서 장례와 관련된 문제가 부각되어 지원 요청을 받은 후 대표단은 진도에

서의 1차 활동을 마무리하고 안산으로 이동하기로 결정했다. 4월 23일부터는 지원체계가 확립되면서 유가족에 의해 제기되는 장례절차의 문제는 원활하게 해결이 되어 나갔다.

2차 진도 파견은 대한변협이 4월 23일 세월호TF 회의를 통해 피해자 가족과 공식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 등을 지속해 나가기로 결의한 바에 따라 황필규, 배의철 변호사를 재차 진도로 파견하였다. 4월 25일 진도의 상황은 초기와는 달리 생존의 가능성을 염두에 둔 구조가 아니라 실종자의 발견과 수습을 조속히 마칠 것을 요구하는 '수색' 에 대한 항의가 이어지고 있었다. 실종자 가족들은 해경, 해군이 민간의 구조를 막고 있고 그 원인으로 정부와 계약한 언딘마린인더스트리(이하 "언딘"이라 함)의 존재를 지적하며 혼선을 해결해줄 것을 요구하였다. 한편 '다이빙벨'(알파잠수공업)을 가족들의 요구로 사고해역에 투입하고자 하였으나 접안에 실패하자 실종자 가족들은 거세게 항의하며 오히려 정부에 언론 등 가족 이외의 접근자들을 차단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대한변협 대표단은 가족들에게 접근이 어려워졌을 뿐만 아니라 현장 상황 파악 및 기록도 여의치 아니하였다. 이에 따라 대한변협 대표단은 실종자 가족의 불신을 받지 않고 있는 외신 기자들과 접촉하고 국내 기자들과의 대화하고, 천주교 교구 팽목항 천막 방문 면담, 실종자 학부모와의 전화 면담, 대한변협 협회장 및 집행부의 진도 현장 방문 등의 방법으로 가족들과 대화의 길을 열어나갈 수 있는 계기를 모색하였다.

3차 진도 파견은 대한변협 세월호 참사 공익법률지원단 워크샵을 개최한 후인 5월 5일 대한변협 세월호TF는 안산 희생자 장례절차에 도움을 요청했던 안산영광교회를 통해 세월호 가족대책위 희생자 학부모들로 구성

된 자문위원단과 첫 면담을 가지게 된다. 이 자리에서 세월호 희생자 가족들의 질의사항에 응답하고 조언을 하기 시작하였다. 차츰 세월호 가족들의 대한변협에 대한 신뢰가 형성되면서, 5월 16일 대한변협과 세월호 가족대책위는 지원협약 체결식 및 기자회견을 개최해 본격적으로 세월호 가족들에 대한 지원을 시작하게 된다. 이에 변협은 총 146일의 3차 파견을 통해 여러 활동을 펼쳤다. 그러나 실종자 가족과 유가족의 소통 부재로 인하여 의견이 대립되는 경우도 빈번하였고, 심지어 실종자 가족 담당변호사에 대한 악의적 소문이 퍼지기도 하였다. 이에 변협은 극심한 갈등의 문제를 가족들이 자체 해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 변호사 진도 파견을 해제하기로 결정하고 146일에 달하는 진도 3차 파견을 종료하였다.

진도 파견이 해제되자 10월 22일 실종자 가족들은 전체회의를 통해 의사결정의 기준을 마련하고 대한변협 변호사의 재파견을 변협에 요청하였다. 변협은 진도 실종자 가족들에게 놓여진 현안문제의 해결에 있어서 법률대리인의 역할이 절실하다고 판단, 3차 파견 종료 이후 2주일만인 10월 23일에 배의철 변호사를 다시 진도로 복귀시켜 실종자 가족을 대리하도록 하였다.

당시 진도군민들은 실종자 가족에게 진도체육관에서 이전해 줄 것을 요청하여 실종자 가족 및 유가족과 진도군민의 갈등이 심화되었고, 실종자 가족 복지지원이 중단된다는 내용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어 실종자 가족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다. 대한변협은 변호사를 진도에 복귀시켜 진도체육관 이전에 관한 논의를 시작하고, 이주영 장관과의 면담을 통해 실종자 가족 복지지원이 중단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하였다. 한편 사실여부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기자들의 보도로 인해 실종자 가족의 정신적 고통과 상처 또한 심화되고 있어서 ‘피해자 가족의 고통에 대한 배려’ 라는 재

난보도의 대원칙을 준수해 줄 것을 언론에 강력히 촉구하였다. 특히 10월 27일 기자회견을 열어 실종자 가족 회의를 통해 인양이 아니라 '수중수색을 지속' 하기로 결정되었다는 바를 공표하여 언론을 통해 잘못 알려진 '실종자 가족의 합의로 세월호를 인양하기로 결정' 했다는 일부 오보의 확산을 차단하였다.

10월 28일 세월호 사고 197일만에 수색팀이 295번째 희생자를 발견했다. 이러한 소식에도 실종자 가족들은 기쁨보다 부실수색 가능성에 대한 분노를 표출하였다. 세월호 특위와 실종자 가족들은 10월 28일 기자회견을 통해 범정부사고대책본부에 주도면밀하고 철저한 재수색을 촉구하였다. 민관군 합동구조팀의 수중수색은 다시 재개되었으나 문제는 갈수록 악화되는 수색여건과 잠수사의 안전이었다. 수중수색을 지속하는 선택이 실종자를 찾기 위해 어두운 바다 속으로 뛰어드는 잠수사들에게 고통을 주고 생명과 안전에 위협이 되는 반면, 수색을 중단하는 선택은 가족들에게 평생 지울 수 없는 고통이 될 수밖에 없었다. 11월 11일 진도체육관에서 실종자 가족들의 수색중단 선언으로 세월호 특위의 총 172일에 걸친 진도에서의 네 차례 상주 파견 현장지원 활동도 마무리되었다.

대한변협의 진도 실종자 가족에 대한 주요한 현장지원 활동을 살펴보면, 범정부사고대책본부(범대본, 본부장 해양수산부 이주영 장관) 회의, 해경 수색브리핑에 실종자 가족 법률대리인 자격으로 참석하여 수색·구조 과정 및 실종자 가족에게 발생하는 제반 문제에 대해 적시에 대응하고자 정부에 요구사항을 전달하고 결정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실종자 가족에게 알리는 등 실종자 가족의 의사를 대리하여 활동하였다. 또 실종자 가족-해양수산부-해경-정부 부처 상호간의 가교 역할을 통해 논의사항을

조율하여 결정, 집행되도록 하는 중재·지원 활동도 하였다. 또 세월호 특위는 실종자 가족을 대리하여 이와 같은 수색 주체간의 가교, 중재를 통해 실종자 가족이 원하는 방향의 결정이 내려지도록 하는 적극적 역할을 담당하고, 수색구조·장비기술연구TF 등을 통한 수색·구조 방안 마련 및 계획 수립을 지원하였다. 또 유실방지TF 등을 통한 유실물, 유품 수색 및 인계 지원 및 시신 유실방지 점검 활동을 하고, 식사, 물품, 의류 등 실종자 가족 복지지원 및 건강지원을 장관과 총리에게 요청하였다.

세월호 특위는 국회 세월호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중재 및 연계 활동을 하였으나 국회 국조특위의 활동 기간이 청문회도 열리지 못한 채 만료되면서 여야 국회의원들의 국조특위를 통한 실종자 가족 지원활동도 마무리되는 안타까운 상황을 맞이해야 했다. 또 세월호 선체 내 세월호 CCTV 증거보전 활동(부식방지조치, 실물보전, 재판진행 등)을 하고, 프란치스코 교황 방한에 따른 교황서신, 전달식 등 실종자 가족 지원 활동이나 진도군 어민, 진도군 범군민대책위 등과의 갈등 조정 및 중재 활동을 했다.

11월 11일, 오전 실종자 가족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수색중단을 발표하였다. 정부가 세월호 선체 인양을 통해 '실종자를 마지막 한 명까지 찾겠다'는 약속을 지키고, 한 명의 국민을 소중히 여기는 국가의 책무를 다하여 세월호의 남은 실종자 9명이 모두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

다. 안산 현장대응 부문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발생 다음날 대한변협 협회장은 현장조사단 파견

결정을 한 이래 5월 16일 대한변협, 세월호 가족대책위 간 세월호 참사 관련 대한변협 지원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세월호 참사 직후, 피해가족의 경우 그 누구보다도 자문 및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떠한 도움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주목하여 직접적인 현장 개입을 통해 필요한 법률상담 등을 진행하였다. 초기 활동의 목표는 피해가족 조직 안정화, 유지 지원, 피해가족 활동 지원, 내용적인 설명 및 자문, 협상 지원 등에 초점을 맞추었다.

먼저 대한변협과 피해가족 사이의 관계가 수립되는 경과를 살펴보면, 대한변협 현장조사단이 2014년 4월 18일 밤 1차 진도를 방문하여 진도실내체육관, 팽목항을 오가며 구조 활동과 관련된 대정부 의견 개진 등에 있어서 법률적인 자문 등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임을 확인하였다. 대한변협 현장조사단이 대한변협에 장단기 활동을 제안하면서 4월 21일 2차 진도와 안산을 방문하였고, 2014년 5월 5일 안산에서 대한변협 세월호 피해대책 TF 위원들과 피해가족으로 구성된 자문위원들의 공식적인 만남이 이루어졌다. 이 자리에서 피해대책 TF는 세월호 참사 관련 대응 경과를 보고하고 피해대책 TF 위원 1인이 안산 가족대책위 사무실에 상근을 개시하였다. 5월 16일 협약식을 체결하고 대한변협은 가족대책위의 정식 법률대리인으로서 공식적인 활동을 개시하게 되었다. 협약서에는 피해자 등을 위한 현장 법률 자문, 상담 및 지원, 피해가족 진상규명 관련 입장 정리 자문 등 공동협력사항을 약정하였다.

대한변협과 협약 이전에는 '철저한 진상규명', '검찰의 수사내용의 공개' 정도가 그주장내용의 전부였고 체계적으로 정리된 진상규명과 관련된 세월호 가족대책위의 입장이 존재하지 않았다. 2014년 5월 5일 이후

대한변협 현장지원단은 세월호 가족대책위 총회에 참석하여 특검, 청문회, 특별법에 대한 장단점을 브리핑하고, 어떠한 원칙과 내용의 진상규명인지에 대한 가족들의 의견 수렴을 독려하였다. 그러던 중 갑작스럽게 대통령과의 면담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통보를 받게 되어 그 때까지 수렴된 가족들의 의견을 토대로 철저한 진상규명의 원칙을 성명서의 형식으로 정리하고 대통령 면담 시에도 이를 전달함으로서 피해가족들의 진상규명에 관련한 입장정리를 자문하고, 피해가족 현장지원활동을 수행하였던 바, 그 내역은 다음과 같다.

우선 세월호 가족대책위 및 피해가족들에 대한 현장지원활동은 광범위하고 무정형한 내용으로 이루어졌다. 대부분의 시간은 가족대책위의 조직운영과 활동에 대한 밀착 자문에 집중되었다. 자문의 형식은 주로 임원회의 및 총회에 참석하여 안건에 대한 상시적인 자문을 하는 것으로 기본으로 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내용을 준비하여 총회, 임원회의 혹은 반별 모임에서 설명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가족들이 농성하는 현장에서 가족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하기도 하고 대외적인 협의 혹은 협상의 자리에 가족대책위의 법률대리인 자격으로 참가하기도 했다.

다음으로 현장지원활동의 주된 내용은 세월호 가족대책위 조직체계 확정 및 집행부 선거, 구성(선거관리 포함), 세월호 가족대책위 회칙(안) 및 내규(안) 작성 및 제정, 세월호 가족대책위 위원장, 대변인, 위원장단, 분과(진상규명, 심리생계, 장례, 진도, 대외협력), 반별 활동, 세월호 가족대책위 임원회의, 총회 등 회의 운영, 정보 공개, 국민성금의 현황 파악 및 향후 과제 자문, 세월호 가족대책위 재정 확보 및 운영 계획 자문, 세월호 가족대책위 사단법인화(정관초안 및 설명자료 작성, 설명 등 포함)등 피해

가족 조직 운영 및 활동을 자문하였다.

또 세월호 가족대책위 신구집행부 의사소통 조언, 생존학생가족모임, 교사모임에 대한 주요 현안 설명 및 자문(자살시도 생존학생 사건 관련 자문 포함), 세월호 가족대책위와 일반인희생자유가족대책위의 관계 개선 및 통합 가능성 모색 (인천소재 일반인희생자유가족대책위 사무실 10여 차례 방문 포함), 일반인생존자(화물피해자)들의 관계 개선 및 세월호 가족대책위로의 편입 가능성 모색 (화물피해자들 모임이 있는 제주 3회 방문 포함) 등 피해가족간 관계 개선, 유지를 위해 자문하였다.

피해가족의 대외관계 자문을 위하여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안산시민대책회의 등 외부 시민사회단체들과의 협력관계 구축하고, 시민기록위원회 등 내외부의 여러 단위들과의 관계 정립하였다. 또 수시로 벌어지는 상황과 관련하여 국회, 여당, 야당, 정부 부처, 지자체, 교육청 등 대공공기관 협상 및 협의에 적극적으로 임했다. 대한변협 주최 4.16 진실규명 및 배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 공청회에 가족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했고, 국회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및 협상과정에서 법률적 자문, 설명회 개최 및 협상 지원들의 활동을 수행했다. 4.16 세월호 참사와 관련하여 국내외적으로 여론을 환기시키고 재난과 관련한 국제법, 비교법적 기준을 제시하고, 진상규명 및 치유회복 과정과 관련된 피해가족 국제협력활동을 기획하고 자문하였다.

대한변협 세월호 피해대책 TF, 그리고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피해대책 특별위원회 내에서 현장지원활동이 큰 기여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전체 특위 활동과 현장지원활동이 유기적인 연계를 가지고 이루어지는 시스

템을 구축하지 못한 점이 아쉽다. 한편 특별법을 둘러싼 대내외적인 논란으로 10월부터 현장활동 변호사들에 대한 대한변협 차원의 지원은 축소되었다.

현장지원활동을 통하여 대한변협 진상조사단과 세월호 가족대책위 진상규명분과가 유기적인 공동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으나 형사재판이나 언론대응과 관련해서는 부분적인 실무지원만을 수행하였고, 같은 현장에서 이루어진 활동임에도 불구하고 법률상담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지 못하는 등 대한변협 차원의 다른 활동과의 연계성 설정에 미비점이 드러났다. 현장대응 활동이라는 것은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하나씩 순서대로 진행될 수 없는 특징이 있다. 그러나 현장대응의 활동이 어떤 내용을 가질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미리 이루어지고 장기적 관점에서 피해가족 현장대응활동계획이 예측 가능한 큰 틀 내에서 수립되고 집행되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라. 입법 활동 부문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가 발생하자, 많은 국민들은 각종 매체의 영상을 통해 세월호가 침몰하는 광경을 지켜보면서 배 안에 남아 있던 3백여 생명이 죽어간 사실을 알고 한동안 헤어나기 어려운 고통에 빠졌다. 이러한 참사가 왜 발생하게 되었는지에 관해 수많은 의문이 난무하는 가운데,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대처 방안을 고민하게 되었다. 그 결과 ① 특별검사제도 활용, ② 국회 국정조사권 발동, ③ 관련 특별법 제정 등 3가지 방안이 집중 논의되었고, 그 중 대한변협은 각 제도를 비교, 분석한 뒤 특별법 제정으로 나아가야 함을 역설하였다.

특별검사제도는 사건에 관한 효율적인 수사가 가능한 장점이 있으나, 짧은 수사기간(통상 60일 이내), 주요 수사 인력의 검찰로부터의 파견 등으로 충분한 수사가 어렵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 무엇보다도 재해/재난의 예방 및 사후 대처 방안까지 논의되어야 하는 세월호 참사의 과제를 풀기에는 미흡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또 국정조사나 청문회는 입법에 필요한 정보 취득과 사실관계 파악이 용이하다. 또 공개된 청문회를 통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데에는 유리하나, 국회의원들의 정쟁대립으로 치우칠 우려가 있다. 결국은 활동에 독립성을 확보하고 추천 집단을 잘 갖추면 위원회 구성의 중립성과 민주적 정당성의 확보가 가능했다. 그리고 전문가의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진상규명과 안전사회 대책 마련이 가능한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특별법의 제정이야말로 세월호 참사로 인해 드러난 제반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가장 좋은 대안이라는 결론이었다.

그러나 특별법 제정 방안이 초기에는 별다른 반응을 얻어 내지 못하다가 2014년 5월 대한변협이 세월호 가족대책위와 업무 협약 조인식을 가진 후, 그날 특별법 제정이 언급되기 시작하였고, 그 이후 특별법 제정 요구는 전 국민적 요구로 확산되기 시작하였던 바, 입법이 통과되기까지는 다음에서 약술하는 바와 같이 지난한 과정을 거쳤다.

대한변협은 5월 19일경 세월호 특위가 출범할 때부터, 법제도개선단 산하에 '특별법 제정팀'을 두고, 세월호 참사에서 드러난 각종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특별법 초안을 준비해 왔다. 초기 세월호 특위안(김희수, 박종운)과 민변 초안을 통합한 변협안을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피해자 단체 특별법 제정안을 만들어 의원입법하는 것을 목표로 피해자 단체에 설명하였다. 피해자 단체 설명회에서 진상조사 위원회의 권한

과 관련하여 수사 및 기소권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견해도 제기되었고, 변협 통합안이 안전사회 건설 부분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7월 2일 세월호 특위가 관여한 "4·16 참사 진실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공청회"가 국회에서 개최되었다. 이곳에서, 진상조사위원회와 특별검사의 병행 추진이 좀 더 강조되었고, 4·16 세월호 참사 피해자의 범위와 지원방법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배상, 보상의 방법을 특정할 필요성에 대한 의문과 공무원의 조사거부, 방해 등 행위에 대한 제재수단의 흠결이 지적되었다. 참석한 유가족은 설사 배·보상 부분을 삭제하는 한이 있더라도 반드시 진실을 규명해 달라고 강력하게 요청을 하였다.

위 공청회를 마친 후에 ① 위원회에 수사 및 기소권을 둘 것인지, ② 배·보상 기타 피해자 지원에 관하여 상세하게 규정할 것인지 여부가 2대 쟁점으로 부각되었다. 법안 내용에 대하여 부차적인 쟁점은 비교적 쉽게 합의가 되었으나, 기소권 부여 여부에 관하여는 쉽게 합의가 되지 않았다. 그 뒤 입법청원을 위한 기자회견과 입법청원안 국민설명회 후, 입법청원에 참여한 '4.16 특별법 청원 국민대표단'의 이름으로 입법청원 절차를 진행하였다. 국회의원회관에서 특별법(안)"의 내용을 중심으로 전체 토론을 한 이후 7월 15일에는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350여 만 명의 서명지를 국회에 제출함으로써 입법청원 활동을 마치게 되었다.

특별법제정팀은 입법청원 후 곧바로 입법투쟁에 돌입하게 되었다. 여야 간 협상 결과 조속입법TF가 가동되어 여야 협상에 들어갔으나, 3자협의체를 제안했던 세월호 가족대책위는 여당과 야당 간에 밀실 야합을 우려하며 반발하였다. 한편 세월호 가족대책위의 참여에는 여당측 위원들이 반

대하였고, 이 소식을 전해들은 유가족들은 국회 본청 앞에서 연좌농성을 시작하였다. 7월 15일에는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3,501,266명의 서명지가 국회에 제출되었는데, 그날도 대한변협 특별법제정팀, 현장대응지원단 소속 변호사들은 유가족들의 연좌 단식 농성에 호응하여 릴레이 단식에 참여하였다. 이즈음부터 현장대응지원단 소속 변호사들은 모은 정보와 특별법제정팀이 제공한 정보를 바탕으로 세월호 가족대책위와 협의하여 연좌 단식 농성, 기자회견, 여/야당 원내대표 등 대표, 그리고 대통령 면담 요구 등 구체적인 행동을 실행하였다.

당시 조속입법TF가 해체된 후 여야 간 협상이 중단되었는데, 합의되지 못한 주요 쟁점에 대해서는 정책적인 결단이 필요한 사항이었다. 7월24일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100일이 되는 날 대한변협은 역사상 최초로 1,000명이 넘는 변호사들이 연대한 '4·16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변호사 1043인 선언'을 발표하여, 과거 각종 진상조사위원회의 한계를 극복하고 철저한 진실규명을 가능케 할 '조사권의 강화'를 요구하였다. 하나의 통합법으로 제정하기로 한 최초의 전략을 수정하여 피해자 지원 부분을 미루고, 먼저 진상조사 부분만을 입법화할 것을 촉구한 것이다.

7월 27일 협상이 재개되었으나 이번에는 특검 추천권을 누구에게 어떤 형식으로 줄 것인가 여부를 놓고 논쟁하다가 협상이 결렬되고 말았다. 이제 특별법제정팀으로서는 유가족들과 협의하여 결단할 때가 되었다. 그러한 사이에 8월 7일, 여야 원내대표 합의사항이 보도되자, 유가족들은 야합이라며 격분하게 되었고, 세월호 특위는 총괄지원팀 긴급회의를 통해 유가족 의견을 야당측에 전달하였다. 그 결과, 양당 원내대표 합의사항은 최소한 특별법에 관한 한 무효가 되었다. 당시 유가족들은 교황 방문에

대한 기대가 높았는데, 마침 가톨릭측에서 유가족들과 교황과의 만남의 자리를 적극적으로 주선하였다.

그러나 여야의 협상은 교착 상태에 빠졌고 이를 타개하기 위하여 대한변협 협회장이 각 당 대표 혹은 원내대표와의 회담을 통해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자는 계획이 수립되었다. 8월 17일, 기존 원내대표 간 합의에 반하지 않으면서도 가능한 대안 혹은 묘수 찾기에 몰입하던 중, 여야는 진상조사위원회에 특검추천위원 2배수 추천권을 줌으로써 현재의 어려움을 떠넘기고자 하였다. 만일 반대한다면, 임시국회는 종료하고 9월 국회로 넘어가고, 진상규명 문제는 언제 해결될지 모르는 난감한 상황에 처하였다. 이미 여야 원내대표 간에 합의가 이루어졌던 것은 사실이므로, 이 문제의 대안을 찾기에 골몰하였다.

그 뒤 여야 원내대표 2차 합의가 타결되어, 세월호 가족대책위의 의견을 듣기도 전에 이미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말았다.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서는 양당 원내대표 합의안을 추인하였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총회에서는 격론이 벌어졌으며, 결국 세월호 가족대책위 총회 결과를 기다려 보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8월 20일 세월호 가족대책위 총회가 개최되었고, 세월호 특위 위원들이 참석하여 영야합의안의 내용과 특별법 제저의 시급성을 설명하엿지만, 유가족들은 당초 수사 및 기소권을 위원회에 부여하는 입법청원안에 77%라는 압도적인 찬성표를 던짐으로써, 여야 원내대표 합의안에 반대하였다.

세월호 가족대책위는 8월 22일 대통령 면담을 위해 청와대쪽으로 이동을 하다가 경찰의 제지로 청운, 효자동주민센터 앞에서 연좌농성을 시작하게 되었다. 8월 23일에는 인천의 일반인 가족대책위가 기자회견을 통해

여야 원내대표 협상안을 받기로 한 의결사항을 발표함으로써 세월호 가족대책위와의 갈등이 촉발되고 말았다. 이즈음 각종 악성 댓글들이 조직적으로 확산 유포되었다. 게다가 9월 1일(월) 아침, 변협 전임회장 7분이 의견서를 제출하겠다면서 기자들을 잔뜩 동반하여 협회장 면담을 요청한 사태가 발생하였다. 그 의견서는 세월호 특위 활동에 대한 오해에 기인한 비난의 내용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9월 17일, 세월호 가족대책위 임원 일부와 대리운전기사 간 폭행사건이 언론에 보도되어 세월호 가족대책위 위원장단 9명 전원이 사퇴하였다.

9월 30일, 여야 간 우여곡절 끝에 세월호 특별법의 협상은 큰 틀에서 사실상 마무리됐다. 2차 원내대표 간 합의안은 기본적으로 유지하면서 여당이 사전에 유가족들과 상의하여 반대하는 후보는 제외하기로 한 내용이다. 이에 국회 본회의가 재개되었고, 10월 31일 여야 간 진상규명 특별법 협상이 타결되었다. 세월호 참사 발생 205일째인 11월 7일(금) 마침내 진상규명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진상규명 관련 특별법이 통과된 후, 피해자 지원 관련 특별법은 국회 농해수위 중심으로 논의가 전개되었고, 이때에도 주요 쟁점에 대하여 특별법제정팀이 세월호 가족대책위의 입장 혹은 중재안을 내거나 방어 논리를 개발하는 방향으로 활동이 진행되었다. 해를 넘겨서까지 진행된 협상 결과, 2015년 1월 6일 세월호 참사 265일 만에 배·보상, 피해자 및 피해지역 지원, 추모사업 등이 포함된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피해자 지원 특별법"이라 함)이 여야 간 최종 합의에 이르렀고, 1월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특별법제정팀 팀원들이 상당 기간 국회에 상주하면서 여야 간의 협상 내용을 모니터링하면

서 대안 마련, 조문화 작업 등을 전개하여 온 결과 입법 청원안은 상당 부분 현실 법률에 반영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다만, 진상규명 관련 특별법 협상이 난항을 거듭함에 따라 피해자 지원 관련 특별법과 분리되어 제정될 수밖에 없었던 점, 보수 진영과 여당이 수사 및 기소권을 집중적으로 공격해 오고, 피해자 지원 부분 관련 야당안이 포괄성으로 인하여 보궐선거를 앞두고 여당의 집중적인 공격의 대상이 된 점, 빠르면 8월 중순, 늦어도 추석 연휴 이전에는 현재의 법안에 가깝게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유가족들을 제대로 설득하지 못하여 법 제정이 계속 늦어진 점 등의 문제가 있었다. 그렇지만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개의 세월호 관련 특별법은 그 내용이 기존의 위원회 관련법들이 가진 조사권한을 넘어설 뿐만 아니라, 다른 무엇보다도 재해, 재난의 예방 및 사후 대책(피해자 지원책 포함) 마련, 관계 국가기관 등에 의한 실행, 모니터링의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다.

마, 진상조사 부문

세월호 특위는 당초 진상조사 소위원회가 처음 형사재판지원팀, 현장지원팀 등을 두고 있는 것으로 구성하였다가, 이후 '진상조사단'이라는 이름으로 운영하였다. 진상조사단의 활동은 시기에 따라 크게 5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처음에는 진상조사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갖가지 자료수집활동을 하였다. 시기적으로는 세월호 참사 발생 초기인 4월과 5월에 주로 이루어졌던 활동으로, 국회의원실 및 시민단체를 통한 자료 확보를 위주로 활동한 시

기이다. 이 시기에는 면담을 통해 청취해야 할 내용에 관하여, 누락을 방지하고, 진술내용을 향후 다른 변호사들이 활용하는데 편리하도록 진술청취카드를 작성하였다. 또 습득된 피해자들의 휴대전화 및 개인 전자기기를 복원하고, 그 안에서 증거자료를 추출하는 포렌식(Forensic) 작업에도 입회하였다.

이러한 진상규명활동으로 해경이 선원을 우선 구조하고, 123정 정장이 퇴선방소응ㄹ 하지 않은 사실, 경찰청, 중앙119, 일본 미국 문화재청의 지원요청도 거절한 사실 등의 소극적인 구조 활동이다. 또 국회의원실을 통해서 획득한 사고 당시 세월호를 비롯한 주변 선박들의 다양한 음성교신 내역을 파일 형태로 저장하여 녹취록으로 변환하는 작업을 시민단체에서 수행하였다.

두 번째 시기에는, 수집된 자료들을 취합하는 활동을 위주로 하였다. 이는 6월에서부터 8월 사이에 주로 이루어졌던 활동으로, 2014년 6월 30일부터 시작된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지원하였고, 기관보고 과정에서 밝혀진 핵심 정보들을 정리하고 분석하는 작업을 진행하여 2014년 7월 21일 마침내 “세월호 침몰사고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기관보고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이를 통해 이루어낸 가장 큰 성과는 국정조사 기관보고에서 밝혀진 핵심 정보들을 정리하고, 그를 기반으로 ‘기관보고의 성과와 한계’를 지적하고, ‘규명되어야 할 과제’를 분석하여 후속 진상규명의 필요성을 명확하게 드러냈다는 점이다. 하지만 청문회 증인 채택 문제를 둘러싼 여야 간의 힘겨루기로 말미암아, 청문회는 시작조차 해보지 못한 채, 국정조사는 2014년 8월 30일 막을 내렸다. 국정조사 기관보고 검토보고서는 후에 집필된 진상규

명 보고서에 적극 활용되는 등의 나름의 역할을 하였지만, 애초 계획하였던 역할을 다하지는 못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사고의 진상규명과 관련한 자료들이 다양한 단체에 의해 꾸준히 수집되었지만 해당 자료들을 총괄적으로 정리·분석하는 작업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대한변협은 연수 변호사들의 도움으로 각종 자료들을 정리하였는데, 약 2달 동안 각종 증거보전절차를 통해 밝혀진 자료들, 국정조사과정에서 제출된 자료들, 생존자 및 유가족들의 증언들, 이준석 등 선원들에 대한 형사재판 자료들, 검찰의 수사보고서 및 감사원의 감사보고서 등을 모두 망라하여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그간 활용되지 못한 자료들 다수를 새롭게 발굴할 수 있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세월호 가족대책위가 보유하고 있던 생존자 및 유가족들의 증언이다. 여기에 더하여 세월호 참사와 관련하여 쏟아지던 여러 의혹들을 사실에 기반하여 정리할 수 있었다는 것 역시 또 다른 성과로 볼 수 있다. 다만 진상규명 보고서 작성에 있어서 가장 아쉬움이 많이 남는 부분은 사고원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아직 확실하게 의혹을 해소할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자료들이 제공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세 번째 시기에는, 6월부터 10월에 이르기까지 긴 시간동안 이루어진 각종 중요자료들에 대한 증거보전신청 활동을 하였다. 진상조사단은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조사하기 위해 필수적인 증거들이 관련 기관들에 의해 임의로 처리될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세월호 가족대책위의 명의로 국가배상청구에 기한 증거보전신청 방법을 이용하였다. 이는 변호사의 지원이 없었다면 세월호 가족대책위만으로는 이루어지기 어려운 활동이었다. 이러한 방식으로 세월호 특위에서 진행한 증거보전신청은 총 12

건에 달한다.

진도VTS와 제주VTS를 대상으로 한 증거보전신청을 통하여, 진도VTS의 관제소홀 사실을 파악할 수 있었고, 세월호 참사 발생 전후 교신내용과 세월호 항로분석 자료를 획득할 수 있었다. 그 결과 세월호 참사 6개월 만인 2014년 10월경 세월호 가족대책위 측은 세월호가 급변침한 29초간의 항적을 찾아낼 수 있었다.

또 해양경찰청을 상대로 한 증거보전신청에서는 세월호 참사 당시 세월호와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구조활동을 벌였던 123정 경비정 및 3대의 헬기가 보유하고 있는 동영상을 확보한 것이 가장 큰 성과였다. 이 동영상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입증에 큰 역할을 하였다. 즉 당시 대다수의 선원들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123정에 의해 구출된 이후, 어떠한 구조활동도 하지 않은 사실이 위 동영상들을 통해 명확하게 밝혀졌다. 위 동영상에 의하여, 시간의 흐름에 따른 세월호의 침수 정도 및 세월호와 해수면과의 기울기 등을 비교적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되었고, 이를 통해 세월호의 침몰이 초반에는 더디게 진행되었지만 후반에는 급속도로 빠르게 진행된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이는 곧 사고 초기 세월호 선원들이 승객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했더라면 많은 희생을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점을 추론할 수 있게 한사실이다.

전남도청을 대상으로 한 증거보전의 결과에 따라, 전남도청 해양수산국 수산자원과 소속 어업지도선 201호와 207호가 세월호 참사 현장에 출동하였으나, 대부분의 주위 어선들은 구조할 승객이 없어 속수무책으로 침몰하는 세월호를 바라만 보고 있는 상황이었던 것이 201호에서 촬영된 동영상

을 통해 확인되었다. 사고 발생시각으로부터 1시간 이상 경과한 오전 10시 이후로는 사실상 선내에서 탈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급속하게 침몰이 진행되는 광경이 동영상을 통해 명확하게 확인되었다.

세월호 DVR 및 노트북 등에 대한 증거보전신청을 하였는데, 특히 세월호 DVR에는 세월호에 설치된 총 64개의 CCTV 화면이 저장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기 때문에 그 중요성이 컸다. 세월호 노트북과 디지털카메라의 경우 2014년 7월 5일 복구 작업이 완료되었지만 세월호 DVR의 경우에는 오랜 기간 동안의 해수 침수로 인해 부식이 많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복구 작업에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 세월호 디지털카메라를 통해 얻은 성과는 사고 당일 08:24경 까지는 세월호에 별다른 이상 징후가 없었다는 점을 확인하였던 것이다. 세월호 노트북에 대한 증거보전신청을 통해 얻은 가장 큰 성과는 바로 '국정원 지적사항.hwp' 파일을 발견하였다는 데 있다. 내항여객선의 운항관리규정을 모두 분석한 결과, 해양사고 발생시 국가정보원에 대한 별도의 보고체계를 갖추고 있었던 여객선은 세월호가 유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세월호의 실소유주가 국정원이 아니냐는 새로운 의혹을 불러일으켜 다양한 논쟁을 야기하는 등의 많은 파장을 낳았다. 검찰은 2014년 10월 6일 발표한 '세월호 침몰사고 관련 수사 설명자료'를 통해 위와 같은 의혹에 대해 반박하였으나, '국정원 지적사항.hwp' 파일 및 세월호 CCTV와 관련한 의혹은 쉽사리 잦아들지 않고 있다.

이러한 증거보전신청이 모두 원만히 진행되지만은 않았는데, 특히 민감한 자료들에 대해서는 국가안보상 제출할 수 없다는 피신청인 측의 강력한 항변이 있었고, 재판부 역시 적지 않은 부담을 가지고 있었다. 또 정치

권 및 여론의 거센 반대에 부딪칠 가능성도 있었는지 등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한계는 분명 있었다. 게다가 일부의 경우 진상조사단과 형사재판지원팀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증거보전신청으로 어렵게 확보한 자료들이 형사재판지원팀에게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네 번째 시기에는, 형사재판지원팀과 연계하여 활동하였던 시기이다. 선원 사건이 시작되어 8월 말부터 진상조사단 소속 변호사들이 형사재판지원팀의 활동에 합류함으로써, 여러 의혹들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었던 활동시기이다.

마지막 다섯 번째 시기에는, 10월에 이루어졌던 증거 발굴 활동시기로, 구체적으로는 AIS 항적을 복원하는 활동을 한 시기이다. 진상조사단과 세월호 가족대책위가 함께 협력하여 AIS에 기록되지 않은 29초 동안의 항적을 밝혀냈다는 점은 획기적인 성과였다. 진도VTS 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진도VTS의 저장장치는 2개로 분리되어 있고, 기록된 AIS 항적기록이 저장장치별로 차이가 있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이 중 진상규명에 필요한 부분은 추가의 진상조사에 박차를 가해야 할 숙제이다.

이제 세월호 특별법에 의해 새로이 발족한 진상조사위원회에 이러한 세월호 특위에서 이루어졌던 자료들을 승계해 주고, 추가 진상규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진상규명을 요청해야 할 것이다. 특히 세월호 특별법에 의해 구성된 진상조사위원회에 의해 제대로 진상규명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계속 감독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대한변협 차원에서의 세월호 특위의 존속 이유는 분명하다.

바. 언론대응 부문

신문이나 방송뿐만 아니라 쌍방향 의사소통이 가능한 블로그, SNS 등 다양한 매체들이 등장하는 IT시대이다 보니 과거에 비해 언론의 파급력은 엄청나게 커졌다. 단순히 사실을 전달하는 수준을 벗어나 사실을 확대·재생산하고, 결국은 제2의 피해를 양산하기도 한다. 세월호 참사를 겪으면서 실체는 없지만 막강한 영향력을 지닌 '여론'은 큰 힘이 되어주기도 하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힘겨운 싸움을 해야 하는 상대가 되기도 하였음을 알게 되었다. 또 언론에 대응하고, 인터넷 등을 모니터링 하는 과정에서 인터넷 문화가 상당히 왜곡된 사실도 알 수 있었다. 이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왜곡된 사실을 진실한 사실로 바꾸는데 더 많은 노력이 요구된다는 인터넷 문화의 특성을 반드시 알아야 하며, 또 아는 것 이상으로 수습방안을 빠르게 강구하는 순발력과 결단이 필요하다. 지금까지도 당시의 허위사실이나 마타도어를 진실로 믿고 있는 일부 국민들이 있다는 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칙을 규정한 '법'이 전부가 아니고, 법 위에 사람이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세월호 보도에서 기본적인 문제점은 언론에 '비판적 시각'이 사라진 사실이다. 특히 '육해공 지상 최대 구조' 보도부분은 언론이 검증 없이 정부 발표를 받아쓴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다. 이렇게 검증이 안 된 보도들이 쏟아지다보니 유가족들은 인터뷰 자체를 거부하게 되었다. 그간 언론 보도의 추이는 시간이 지나면서부터 세월호 보도가 줄어들기 시작했는데, 초기 침몰 및 구조에 대한 언론의 집중 보도에도 누락, 축소, 오보로 정확성과 신속성에 문제가 발생하였다. 언론의 폐해는 단순히 오보를 한 것에서 그치지 않았다. 즉, "일부 실종자 가족들과 희생자 유족들 이 조

급증을 보여 잠수사의 죽음까지 발생했다“는 식으로 유가족을 폄훼하는 보도에서부터, 편파보도, 비보도 등 그 형태가 다양하게 나타났다. 또 ‘대리기사 폭행사건’ 보도에 있어서도 정확한 사실보도 보다는 음주 후 폭행 행위를 흥미위주와 보도했다는 점과 CCTV 자료화면을 반복적으로 내보내며 추측을 유발하는 점 등의 문제점이 많았다.

문제는 보도 콘텐츠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었다. 신문사나 각 방송사는 피해학생 부모들이 오열하고 쓰러지고 기절하는 장면을 보도하면서 시청자의 감정선만 자극하였던 취재태도, 시신수습 후 인근 병원으로 이송을 해야 하는 구급차가 주차된 언론사 차량 때문에 이리저리 피해서 운행했던 실태, 피해자 가족을 '깡패'라고 하는 등의 KBS, MBC 등 언론사 고위 간부들의 부적절한 발언 등과 같은 다양한 외적인 요소에서도 우리 언론의 부끄러운 모습을 여지없이 드러냈다. 이에 언론대응팀은 ‘편파, 왜곡 보도’에 대하여 방통위에 민원신청을 하여 언론에 대한 경종을 요구하였다. 비록 방통위로부터 편파성이나 왜곡성을 찾기 어렵다는 회신을 받기는 했지만, 언론 스스로 토론회를 통한 반성의 목소리를 내었고, KBS 내부 게시판에 기자들의 반성이 이어졌다.

언론대응팀은 처음 방송사 등 언론에 대응하기 위해 팀이 꾸려졌다가, 인터넷에서 유가족의 법익이 지나치게 침해되고 있는 사실을 지켜보면서 활동영역을 확대했다. 실제 침해사례로는, 유가족에 대한 ‘세월호가 로또다’, ‘적당히 해라 거지들아’ 등의 셀 수 없이 많은 막말 댓글, 유가족이 엄청난 혜택을 받는 것과 같은 허위 사실 유포 등의 경우가 많았다. 언론대응팀은 유가족 측과 협의하여 이에 대한 법적대응을 시작했다. 처음에는 인터넷상의 댓글이나 블로그에 대해서 유가족이 먼저 단독으로 자료를 수집하여 고소 등을 진행했는데, 당시는 변호사가 고소 및 고발까지

지원해야 하는지에 관해 내부적으로 찬반양론이 있었다. 그 뒤 치열한 논의를 거쳐 ‘변호사는 유가족의 대리인이기 때문에 유가족이 원한다면 변호사가 고소건도 지원하는 것’ 으로 결론이 났다.

정계에서 쓰이던 단어인 이 ’ 마타도어’(소의 정수리를 찔러 죽이는 투우사를 뜻하는 ‘matador’에서 유래한 용어로, 현대정치에서 ‘근거 없이 사실을 조작해 상대편을 중상모략하거나 그 내부를 교란시키기 위해 하는 흑색선전의 의미’ 로 널리 쓰이는 말이다.)가 세월호 참사에도 등장하였다. 세월호 참사를 편향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일부 사람들은 진영논리로 세월호 피해자들의 진의를 왜곡하였다. 유가족의 피해자 전원 의사자 지정 제안, 단원고 피해학생의 대학 특례입학, 보상 때문에 특별법 제정을 서두른다고 의혹을 제기하는 등의 관한 마타도어에 대해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 논의한 결과 적극적으로 반박내용을 담은 글들을 홍보하기로 결정 했다.

유가족들이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통해 희망했던 것은 ’철저한 진상규명’에서부터 ’안전 국가를 위한 재발방지대책의 수립’에 이르기까지 원스톱(One-Stop)으로 처리할 수 있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일이었다. 이러한 유가족들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에 기간이 제한된 국정조사, 유가족의 의사가 배제된 특검 그리고 정부조직인 검찰수사와 재판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다수가 느끼고 있었다. 또 특별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이 부여되지 않는다면 관련 기관들이 제대로 된 자료들을 제출할지 의문이고, 조사를 거부하거나 자료제출을 거부할 경우 이를 강제할 수단이 없다는 것이 결정적인 한계이다. 이것이 특별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이 필요한 이유이다. 특별위원회에 수사권 및 기소권 부여가 헌

법에 위반된다는 논란은 정치권에서 처음 촉발되었지만, 이는 특별법에 의해 검사의 지위와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특별검사제도와 다를 바가 없는 것이므로 헌법에 위반되지는 않는다.

또 2014년 7월 28일 자 문화일보 31면에 실린 광고에서 진상규명을 위한 세월호 특별법이 마치 반정부 선동을 하는 것처럼 호도하였기 때문에 많은 파문이 일었다. 그 내용은 '세월호 특별법입니까 평생 노후 보장 특별법입니까?' 라는 소제목이 눈길을 잡으면서 13가지 항목의 특혜를 주는 것처럼 작성된 것이었다. 게다가 법안이 진정으로 가족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당리당략을 따르는 야당의 행위로 인한 것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다. 13가지 항목은 사실인 것도 그렇지 않은 것도 있지만, 당시 유가족이 간절히 요구했던 것은 위 13가지에는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 나열된 혜택을 유가족이 받는다고 해도 가족을 잃은 피해자에게 하는 인도적 차원의 내용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던 점 등의 문제가 있었다.

세월호 특위는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그 피해자를 조력함과 동시에 재난대비와 관련하여 관계 법령을 정비하여 국가발전에 일조하고자 출발하였다. 그런데 이 활동으로 인해 대한변협이 편파성 시비로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되었다. 그 발단은 전임회장 4인이 현 집행부의 행보가 우려스럽다는 의견서를 전달하면서 촉발됐다. 다음날 보도된 언론태도를 보면, 대결구도를 만들며 흥미위주의 보도를 하려는 의도를 알 수 있다.

대한변협이 남긴 언론부분에 관한 활동의 성과를 정리하면. 변호사가 인터넷에 떠돌던 허위사실에 대해서 집단적 프로보노 방식으로 대응한 것은 처음 있었던 일이다. 이것은 사회 화두에 대해서 변호사들이 대처하는

하나의 방법으로써 새로운 이정표가 될 만한 일이 분명하다. 세월호 참사의 경우는 국민적 관심사가 큰 사건이며, 인터넷상에서 찬반의 의견 대립이 심하여 댓글 하나하나까지 관심을 받는 사건이다 보니 명예훼손에 대한 고소·고발을 통해 사전예방이라는 자정작용의 효과를 달성하고 사·공익의 조화를 도모할 수 있었다.

사. 법률상담 부문

세월호 특위가 세월호 참사의 피해자 지원을 위해 공익법률지원단을 모집하자 단시간 내 514명의 변호사들이 지원하였다. 일단은 큰 틀에서 역할을 분담하고, 피해자 가족들의 법률상담을 통해 위로와 지원을 하기 위한 법률지원단이 구성되었다. 법률지원단은 사건 발생일 다음날부터 안산분향소 옆 텐트에서 수시로 희생자가족들을 상담을 개시하고 피해자 가족 등의 법률 조력에 신속하게 답하기 위해 공익법률지원단 전용 긴급 연락처를 마련하여 운영했다. 모든 관련 법률상담은 긴급연락처를 통해 접수한 후 전문분야별 변호사 그룹의 자문을 거쳐 24시간 이내 무상으로 답변이 제공됐다. 이들은 희생자들이 많이 발생한 안산, 인천에서 주로 활동하였다. 법률상담을 통해 유가족들에게 심리적 위안 등에 도움을 주려고 노력한 결과, 가족들의 신뢰와 기대감도 높아졌고 변호사들끼리도 공감과 보람을 가지게 되었다.

법률지원단의 활동을 시기적으로 구분하면, 안산분향소 옆에 상담 텐트를 치고 매일 수시로 상담하러 오는 의뢰인들과 자원변호사들을 순서대로 연결하여 상담하던 초기(2014년 5월~6월), 상담건수가 많이 줄어 요일별 담당변호사를 지정하여 상담하던 중기(2014년 7월~10월), 상담건수가 더욱

줄어 10인의 반별 담임변호사를 지정하여 반별 모임에 참여하여 상담하던 후기(2014년 11월~2015년 2월 현재)로 나눌 수 있다.

초기에 상담이 폭주하여 매일 오전・오후로 나누어 지원변호사별로 시간표를 만들어 상담하였다. 그러나 여름으로 접어들면서 날씨가 무더워지고 초기와 비교하여 상담요청 건수가 현저히 줄었다. 초기 상담은 비양육친의 보상금 수령배제에 대한 것이 대다수였다. 비양육친이 나타나 양육친이 아이를 위하여 들어놓은 개인보험금의 2분의 1을 수령해 가는 사례들이 발생하는 등 그 부당한 처신에 대한 대처 상담이었다. 원칙적으로 가급적 부모 사이의 협의를 권유하였다. 그러나 비양육친과 합의가 안 될 경우 부득이 그에 대한 해결로 양육친은 양육비나 기여분 청구에 근거하여 보험금이나 정부 보상금에 대해 가압류가 가능하다고 안내하고, 필요한 경우 가압류 신청을 하도록 하였다. 다행이 부모 사이에 협의가 된 경우는 상속포기, 합의사항 공증 등의 방법을 알려주었다.

특정 유가족에 대한 명예훼손이 아니라 유가족 전체에 대한 비방이거나 모멸적 발언들에 대해서는 고소장 작성하기도 하였고, 직접 가해 및 피해자 양 당사자들을 만나 이해・양보・화해시키는 경우도 있었다. 또 유가족들은 아이들에 대해 남아 있는 자료를 찾고자 하였고, 학생 인터넷 기록 확인요청에 대해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요청하고, 핸드폰, 신용카드, 공용 아이핀 등을 이용해서 접속사이트 내역을 확인하였다. 네이버의 경우 열람하고자 하는 자료를 특정하면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

중기에는 날도 더워지는데다가 특히 상담텐트 안이 매우 더워 상담여부를 지속할지 논란이 있었으나 적어도 합동영결식이 거행되고, 합동분향소가 철거될 때까지는 유가족 옆에서 상담실을 운영하는 것이 피해자 가족

들에게 안정감을 주어 바람직하다는 의견에, 매일 오후 1시~6시로 근무 시간을 축소하여 요일별 담당자를 두기로 하고 상담을 계속했다. 가족들이 올 때마다 상담자가 바뀌는 것에 대한 불만도 고려하여 요일별 담당자를 두기로 한 것이다.

참사 초기부터 각종 언론에서 가족들을 상대로 촬영, 기록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초상권문제부터 시작해서 세월호 가족대책위의 회의 촬영이나 사진 등의 경우 저작권법에 따른 제 규정과 가족들의 입장을 조율하는 것이 필요했다. 또한 촬영하는 사람들의 처지와 조건에 따른 입장도 이해할 필요가 있었다. 그리하여 4개의 주요 협약서를 작성·체결하게 되었다. 처음은 세월호 참사 시민기록위원회와 협약서를 체결하여 공동저작권자로 했고, 시민기록위원회는 세월호 가족대책위의 기록관계 일을 수임해서 하는 것으로 했다. 둘째로 PD활동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세월호 참사의 기록을 전문가적 감각으로 촬영, 편집한 416기록단과 인격권 보호를 위한 협약서를 작성하였다. 셋째로는 독립 방송국인 뉴스타파와 방송의 독립성을 보장하되 세월호 가족대책위의 방송자료를 위탁 관리하기로 하여 그 소유권과 이용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였다. 마지막으로 가족들의 인터뷰를 중심으로 특히 초상권, 명예훼손 여부 등이 문제되었으므로 일본의 후지TV방송국과 방송물 제작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였다.

후기인 11월경부터는 가족들로부터 반별 모임을 가질 때 변호사들이 참석해서 법률상담을 해주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제안이 들어왔고, 이를 수락하여 지원하는 변호사들 중에서 반별 담임변호사를 지정하였다. 따라서 지원하는 변호사들로 하여금 반별 담임변호사제를 두고 담임 변호사가 당직날 미리 가족 반대표에게 전화하여 참석여부 및 시간을 조율하여 참석

해서 상담을 진행하였다.

반별 담임변호사제로 전환된 후 각 반에서 상담하다보니 개별적 상담과는 별도로 가족들 공통의 문제를 문의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그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실종자 수색중단 및 세월호 인양 여부에 관한 상담, 세월호 특별법 통과 후 진상조사위원회 구성 및 이후 경과에 관한 상담, 추모관 추모비 건립과 관리 주체 문제나 광주 재판 관련-특히 선장 살인 무죄건, 사단법인 구성 관련하여 일정과 진행경과에 관한 정보교환 등의 상담이 있었고, 기타 대여금 못 받는 것, 별도로 생명보험 등 가입했는데 지급이 안 되는 것 등 여러 가지 일반 법률상담이 있었다.

법률상담은 모두 무료였으며 변호사들 상담 내용을 누설하지 않도록 주의했다. 또한 설명방식에 있어서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풀어서 천천히 설명을 하려 노력하였다. 상담은 상담일지를 작성하여 정리하였고 상담카드를 별도로 작성했다. 이렇듯 초기에 상담하면서 느낀 문제점과 주의사항을 토대로 작성한 상담원칙을 매뉴얼로 작성하여 상담의 효율성과 신뢰를 높혀 왔다.

법률상담활동의 성과는 유가족들이 경황이 없는 중에도 변호사들이 여러 법률문제를 상담하고 점차 가족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법률상담팀의 체제를 변경해가면서 진행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었다는 것이다. 변호사들이 참사 초기부터 지금까지 가족들 옆에서 상담함으로써 가족들에게 심리적으로 많은 위로가 되었다. 또 변호사에 대한 거리감을 없애고 긍정적 인식이 높아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점을 들 수 있다.

아. 형사재판 지원 부문

세월호 참사는 과적, 안전 점검과 감독 소홀, 즉 안전불감증으로 인하여 발생했다는 점에서 1970년 남영호 침몰 사고(사망자 326명), 1993년 발생한 서해훼리호 침몰사고(사망자 292명)와 유사한 반복된 사고일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수학여행을 가던 고등학생들로 어른들의 무책임과 무능으로 인하여 구조되지 못하였다는 점 때문에 전 국민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화물기사 등 성인들은 조기에 빠져 나와 생존율이 높았지만, 학생들은 선내에 대기하라는 방송을 믿고 있다가 탈출 시기를 놓친 반면 선장, 선원들은 먼저 탈출했고, 해양경찰 또한 선내 진입이나 퇴선명령 등 적극적인 구조활동을 하지 않아 대규모 사상으로 이어졌다. 이에 검찰이 2014년 10월 발표한 4·16세월호참사와 관련한 최종수사결과에 따르면, 발표일 기준으로 399명이 입건되었고, 그 중 154명이 구속 기소되었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형사사건은 크게 세부류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는 인명피해에 대한 직접적인 형사적 책임을 묻는 것으로 선원 사건, 주식회사 청해진해운 대표이사 김한식 외10인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 등 형사사건(광주지방법원 2014고합197 등, 이하 “선사 사건”이라 함), 해양경찰 123정장 김경일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 등 형사사건(광주지방법원 2014고합436, 이하 “해경 사건”이라 함)이 이에 속한다. 둘째는 인명피해와 직접 관련되지는 않지만 세월호가 불법적으로 운항하는 데에 책임이 있거나 부실관제, 구조업체와의 비위 등에 대한 사건이며, 셋째는 유병언 일가와 관련한 재산범죄 사건이다.

형사재판지원팀은 피해자들의 관심도, 형사소송법 상 피해자 변호인으

로서 참여가능한지 여부를 고려하여 첫 번째 부류에 속하는 사건을 집중적으로 지원하였고, 나머지 사건은 초기 모니터링과 판결문 입수 정도를 담당하였다. 그 동안 성폭력이나 아동학대에 대한 수사 또는 형사재판과정에 트라우마를 입은 피해자가 2차 피해를 입는 일이 종종 발생하였기 때문에 법원, 검찰에서도 세월호 관련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수백명의 피해자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이에 변협 세월호 특위는, 피해자들이 형사재판과정에서 2차적인 피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고, 재판과정에 최대한 피해자의 입장을 반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1차적인 과제로 삼고 이를 담당할 형사재판지원팀을 결성하였다. 그리고 재판기록검토와 증인신문 등을 통하여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는 것도 2차적 목표로 삼았다.

실제로 형사재판지원팀은 법원, 검찰, 피해자 간의 의사소통 창구로서 피해자들의 요구사항을 법원, 검찰에 전달하여 일정 정도 피해자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받는 성과를 얻었다. 약 5개월 동안 매주 1~3회씩 열린 선원사건 재판 총 33회 및 해경사건 재판 총 8회에 전부 참여하여 피해자들에게 재판절차 및 유의사항을 설명하고, 피해자들의 의사를 법원에 전달하며, 법원, 검찰, 피해자 간의 의사소통 창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또한 증인신문 시 신문사항 제출, 피해자들로부터 수집한 증거 제출 등 실체진실 발견을 위한 활동도 빼놓지 않았다. 이 사건들은 광주지방법원이 관할이고, 거의 모든 기일이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되었기 때문에 주로 서울에서 활동하는 형사재판지원팀 소속 변호사들은 이에 참여하기가 쉽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전 기일을 열정적으로 참여하였다.

또한 형사재판지원팀은 담당재판부에 일반적인 트라우마 피해자들의 특

성과 피해자들의 현재 심리 상태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하고, 적절한 대응 방식을 이해시키고자 노력하였다. 이를 위하여 피해자들이 가족, 친구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죄책감, 불안감, 분노 등을 느끼고 있으므로, 재판 과정에서도 피해자의 상태를 고려한 용어를 사용하고 피해자들을 이해하고 지지해 줄 필요성이 있다는 점, 증인신문 과정에서 최대한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한 보호절차를 적용해 줄 것과 피해자가 진술할 기회를 충분히 제공해 달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본격적인 사건 심리가 시작되기 전에 광주지방법원 담당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트라우마 관련 교육이 이루어졌고, 재판부에서도 이를 고려하여 생존 학생과 병원에서 화상치료 중인 화물기사 등이 거주지와 가까운 안산지원에서 법정 외 신문을 받게 하였다.

피해자들은 재판을 방청하기 위하여 광주까지 가는 것이 쉽지 않았는데, 대법원 규칙이 개정되어 선원 사건에 대해서는 안산지원에서 재판 중계가 이루어질 수 있었다. 이는 비단 이 사건뿐 아니라 앞으로도 대량의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의 재판이 피해자들의 거주지에서 먼 곳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피해자들이 거주지 근처에서 중계된 재판을 방청하게 될 수 있는 근거가 새로 마련된 것이다. 또한 형사재판지원팀은 매 기일 피해자진술을 요청을 하였고, 별도로 피해자진술 기일지정을 요청하여 많은 피해자들에게 헌법상 재판절차진술권을 보장하였는 등 형사재판에서 피해자의 권리를 절차적으로 한층 강화시키는 의미있는 성과를 이루었다.

선원 사건은 2014년 11월 11일 선고되었는데, 최대의 관심사였던 선장 이준석에 대한 살인죄는 인정되지 않았다. 선장 이준석은 유기치사 등이 인정되어 법정최고형인 36년형을 선고받았으나, 나머지 피고인들은 구형

의 1/3 수준의 선고를 받았다. 2014년 11월 20일 선고된 선사 사건에서는 주식회사 청해진해운의 대표이사 김한식 및 고박업체 직원, 세월호의 정식 선장 등에게 모두 업무상과실치사 등이 인정되었으나, 그 형량은 최저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에서 최고 징역 10년 및 벌금으로 피해자들의 기대에는 미치지는 못하는 수준이었다.

해경 사건은 국가가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 책임이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가장 중요한 재판이었지만, 해경에 대한 형사책임을 인정하는 것은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국가의 잘못을 인정하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기소부터 난항을 겪어 검찰의 최종수사발표가 있던 2014년 10월 6일에서야 해경 123정장만이 업무상과실치사로 불구속기소 되었다. 그리고 재판과정에서도 탑승자 사망과 업무상과실 간의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가 치열하게 다투어졌다. 2014년 2월 11일 비록 사망자 전체가 아니라 해경이 구조활동을 시작하였을 때 밖으로 빠져 나가기 쉬운 위치에 있었다는 50여명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죄만이 인정되었지만, 공식적으로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는 근거가 되었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다.

선원 사건, 선사 사건은 모두 검찰, 피고인 쌍방 항소하여 항소심에 계류 중이고, 해경 사건 또한 쌍방이 항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월호 특위 형사재판지원팀은 항소심에서도 피해자지원 및 진상규명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또한 2015년 2월 9일 수 백 명이 사망하였음에도 상상적 경합 조항을 적용하여 1죄로 처벌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내용의 헌법소원청구를 하여 다중인명피해범죄에 대한 합당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중이다.

4. 평가와 전망

가. 평가와 반성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하고, 그 사명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고 사회질서 유지와 법률제도 개선에 노력해야 한다. 이번 세월호 특위의 활동은 국가적 재난에 변호사협회 차원에서 별도의 독립된 조직을 구성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한 첫 사례로서, 우리 사회가 변호사에게 기대하는 책무를 외면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사회적 책무를 다해왔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사고 발생 직후부터 지금까지도 세월호 유가족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항상 함께 해오고 있는 박종운, 배의철, 황필규 등 여러 변호사들의 헌신적 노력과 500명이 넘는 변호사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공익법률지원단을 구성한 세월호 특위의 폭넓은 활동은 그 자체로 대한변협 역사에 남을 획기적인 성과로 평가할 수 있다. 또한, 유가족들의 의사를 반영한 진상규명 특별법의 성안 및 제정 절차에서 세월호 특위 특별법제정팀의 헌신적인 조력과 지원활동이 있었음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

대한변협 세월호 피해대책 TF, 그리고 세월호 특위 내에서 현장지원활동이 큰 기여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전체 특위 활동과 현장지원활동이 유기적인 연계를 가지고 이루어졌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정기적인 보고와 의견 수렴 혹은 제시의 시스템 구축을 이루어내지 못했고 특위 차원에서도 현장지원이 현장에 있는 개별 변호사들의 판단에 의해 이루어질 수밖에 없도록 방치한 측면이 없지 않다.

또한 세월호 특별법을 둘러싼 대내외적인 논란으로 10월부터 현장활동 변호사들에 대한 대한변협 차원의 지원을 중단 혹은 대폭 축소함으로써 일관된 활동 및 활동지원의 체계 구축을 소홀히 한 면이 없지 않다. 향후 세월호 참사 관련된 활동 뿐만 아니라 유사한 재난 대응 상황에서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체계화된 보고 및 피드백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고, 현장활동 변호사들에 대한 지원의 원칙과 기준 마련, 그리고 이의 일관된 적용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세월호 특위 내의 법률상담, 진상규명, 형사재판, 언론대응, 입법활동 등 제 팀들 간 어느 정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다른 팀의 활동을 현장에서 지원하려고 노력하였던 것은 사실이다. 특히 진상규명과 관련해서는 세월호 가족대책위 뿐만 아니라 국민대책회의 등 다른 단체들과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했고, 대한변협 진상조사단과 가족대책위 진상규명분과가 유기적인 공동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 면이 없지 않다. 그러나 형사재판이나 언론대응과 관련해서는 부분적인 실무지원만을 수행하였고, 같은 현장에서 이루어진 활동임에도 불구하고 법률상담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지 못했다. 앞으로는 세월호 특위 내의 여러 팀들이 각자의 역할과 책임을 분명히 함과 동시에 현장지원단과 체계적으로 협력하여 더 큰 시너지효과를 낼 것인가에 대하여 적극적인 고민이 필요하다할 것이다.

우발적인 사고에 대한 현장대응활동이라는 것은 많은 경우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하나씩 순서대로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수시로 예측하지 못했던 상황에 대처해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하루 24시간을 투여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한다. 하지만 개별적인 대응활동이 전반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질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 미리 논의되고 예측 가능한 큰 틀 내에서 활동계획이 수립되고 집행되는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 즉 피해가족들의 조직 체계 정비 단계, 특별법 제정 등 관련 법제 정비 단계, 정리된 조직과 법제에 근거하여 활동하는 단계 등에서 현장 활동은 다른 양상을 띨 수밖에 없고 이를 미리 예측하고 준비하여 현장대응의 인적 구성이나 활동의 형태를 큰 밑그림 아래서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특히 언론대응의 경우에는 진상조사단과 현장대응팀에서 활동한 자료들이 정리되어 전달되다 보니 언론 보도가 정확한 정보였는지를 판단할 수 있었고, 유언비어에 선제적인 대응이 가능할 수가 있었다. 그간 변호사들이 언론과 관련하여서 문외한이었다는 점이 초기 대응에 큰 문제였다. 이는 처음 활동을 시작하면서부터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은 장애물과 같았다. 게다가 언론 대응방법이 세분화되지 못한 것도 문제였다. 이에 언론의 생리를 이해하고 대응할 수 있는 변호사들이 더 많아지고, 변호사들이 언론을 상대할 때 참고할 매뉴얼이 개발되어야 할 것 같다. 또한 많은 변호사들이 모이면서 자발적인 봉사활동의 형식이 되다보니 전담변호사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도 일관성 있게 대응하지 못하게 된 문제점이었다.

법률상담활동의 경우 초기에 유례없는 참사에 대해 우왕좌왕하면서 514명의 변호사들이 공익법률지원단에 지원했음에도 이를 효율적으로 배치하지 못했던 점, 또 상담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지 못하고, 지속적인 활동을 위해 필요한 변호사들에 대한 최소한의 교통비 등 활동비가 제대로 지급되지 못한 점, 법률상담 중에 가끔 개인적인 문제로 유료로 수임해 달라는 경우에 일정한 기준을 정하지 못한 점, 집단재난의 경우 변호사들이 피해자들에 대한 공감능력뿐만 아니라 객관성을 갖는 것도 중요한 덕목이라고 할 것인데 이를 제대로 구비하지 못한 점 등은 반성할 부분이다.

형사재판지원 활동은 재판절차에서의 피해자 보호뿐 아니라 형사재판에서 얻은 자료들을 진상조사단에서 활용하도록 하고 진상조사단이 밝힌 사실들을 다시 형사재판에 반영하는 것도 2차적인 과제로 삼는 등 진상규명 활동에도 참여하였다. 그러나 기록은 방대하고, 내용도 선박 운항에 관한 전문적인 내용이라서 인력과 역량이 충분하지 않아 피해자들이 기대하는 진상규명 활동은 여러 한계로 인하여 부족했다. 형사재판은 아직 끝나지 않은 만큼 1심에서 제기되었던 문제점을 최대한 보완하여 피해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재판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

나. 전망

이번 세월호 특위의 활동은 국가적 재난사태에 협회 차원에서 사고발생 직후부터 지금까지 몇몇 변호사들의 헌신적 노력과 500여명이 넘는 공익법률지원단의 자발적인 지원, 그리고 피해자 가족들에게 실질적인 지원, 유가족들의 의사를 반영한 세월호 특별법의 성안 및 제정 절차에서의 다양한 활동이 성과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세월호 특위의 활동 경험과 성과가 잘 정리되어 앞으로 대한변협 차원에서 향후 발생할지도 모르는 대규모 사태에 체계적으로 대처할 귀중한 선례로 남아 있기를 기대한다. 이번 세월호 특위의 활동이 앞으로도 대한변협 차원에서의 다양한 공익활동사업이 기획되고 추진되는 밑거름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헌법이 정부에게 부여한 국민에 대한 보호의무에 따라, 국가의 재난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고, 이로 인한 국민의 존엄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규제완화 정책의 전면적인 재검토를 통해 국민의 안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지켜내고, 상시적으로 이러한 위기관리제도를 제대로 관리

및 통제할 수 있는 조직체계를 제도화하고, 실제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의 직무에 대한 책임과 윤리의식이 구비되어야 한다. 또 공공부문을 사경제적인 논리와 혼동한 비용절약 논리에만 집착하는 무분별한 민영화는 중단하고, 국가적 재난대응 능력을 실효성 있게 향상시키는 근본적인 체질개선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파악하고 원인규명을 함에 있어 국회의 국정조사, 검찰의 범죄수사, 감사원의 감사결과 등은 나름의 성과가 있었지만, 세월호 참사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지적하고, 참사 발생 이전과 달라진 안전사회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에는 부족함이 많았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안전사회 건설을 위해서는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진상조사기구의 설치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세월호 특별법이 제정되었다. 법에 의해 구성된 진상조사위원들은 추천기관의 입장에서서 새로운 정쟁을 대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할 것이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사람, 정책, 제도, 관행, 지침 등 모든 사항들에 대한 광범위하고도 성역 없는 진상조사와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법제도 개선에 중지가 모아져야 할 것이다.

4. 마무리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것은, 헌법이 국가에게 부여한 가장 기본적인 의무이자, 국가의 존재이유이도 하다. 헌법 제1조 2항의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명시한 국가에서 국민의 생명조차 보호하지 못하는 정부라면 이는 헌법상 존립근거에도 반하기 때문이다. 이에 헌법 제34조 6항에서 국가는 재해로부터 국

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서 국가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복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한 번 더 명시하고 있다.

우리 사회는 사람의 생명보다는 물질을, 안전보다는 비용절감을 추구하면서, 사회적 안전망은 규제완화라는 이름으로 서서히 해체되어 갔고, 주입식 교육은 '가만히 있으라' 는 말에 학생들이 주체적으로 사고하고 판단할 수 없게 만들었다. 정부는 재난예방을 위한 안전비용을 투자하기 보다는 민영화와 외주화를 통해 책임을 비용의 절감으로 은폐하였다. 이제는 우리사회가 효율성의 도그마에서 벗어나 나아갈 방향을 새롭게 고민해야 한다. 새로운 방식은 이윤보다는 생명을, 돈보다는 사람이 중심인 사회, 모두가 이웃을 돌보는 사회, 그리하여 단 한 명의 생존자라도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하는, 정상적인 사회로의 회복을 말한다.

문제가 있어도 해결하지 못하고, 잘못이 있어도 책임지는 자가 없다면 이러한 국가를 신뢰할 국민은 없다. 이에 세월호 참사는 그 직·간접적인 원인뿐만 아니라 근본 구조적인 원인에 대한 조사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그에 따라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 또 재해를 실질적으로 예방하고 재해를 유발한 당사자에게 적합한 책임을 묻는 실효성 있는 입법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래야만이 터무니없는 책임 회피와 누적된 부조리로 안타깝게 희생된 원혼들을 달래고, 새로운 대형 참사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다.

이제 진상조사위원회와 국무총리실 산하 2개의 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제대로 된 진상규명, 안전사회 대책 및 피해자 지원대책 마련 등이 이루어지길 소망하며, 대한변협은 진상조사위원회와 국무총리실 산하 2개의 위원회 활동을 지켜보면서, 때로는 지지 후원하고, 때로는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제2부

영역별 활동 내역

Ⅰ. 현장 지원 활동 - 진도

Ⅱ. 현장 지원 활동 - 안산

Ⅲ. 입법 지원 활동

Ⅳ. 진상 조사 활동

Ⅴ. 형사재판 지원 활동

Ⅵ. 법률 상담 활동

Ⅶ. 언론 대응 활동

제2부 영역별 활동 내역

Ⅰ. 현장 지원 활동 – 진도

Ⅰ. 대한변협 진도 실종자 가족 수색·구조 현장지원 활동(진도)

1. 대한변협 진도 파견 활동 개관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대한변협"이라 함)의 세월호 특위가 진도에서 벌인 현장지원 활동은 대표단의 파견시기에 따라 4차로 구분되며, 진도에서의 전체 활동 기간은 172일이다. 진도에서의 활동을 마감한 것은 실종자 가족들이 실종자에 대한 수중수색의 중단을 요청한 2014년 11월 11일로 세월호 참사로부터 210일이 지난 때이다.

2. 대한변협 진도 파견 현장 지원 활동 경과 및 상황

가. 1차 파견 : 4월 19일 ~ 21일 (3일)

대한변협 위철환 협회장은 세월호 참사가 발생하고 3일째인 4월 18일 저녁, 황필규 변호사와 배의철 변호사를 대한변협 대표단 자격으로 진도로 파견하였고 김영주 변호사, 김남주 변호사가 동행하였다. 당시 피해자 가족들은 세월호 내에 '에어포켓'이 형성되어 승객의 생존 가능성이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팽목항에서 밤을 새우며 정부에 구조를 촉구하고 있었다. '에어포켓'으로 생존할 수 있는 시간은 72시간 정도라는 이야기가 피해자 가족들 사이에 돌고 있었고, 대한변협 대표단이 도착한 4월 19일 새벽은 72시간이라는 시한이 다 되어 가고 있었다. 구조작업이 지체됨에 따라 피해자 가족들의 답답함과 분노는 극에 달하였고, 절규와 비탄, 눈물과 고성, 몸싸움이 뒤섞인 속에 정부와 언론에 대한 극도의 불신이 4월 19일 팽목항과 진도체육관을 지배했다.

대한변협 대표단이 팽목항의 학부모 대표단에 조력의사를 전달하였으나 팽목항의 학부모들은 1분 1초가 절박한 상황에서 구조 이외에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고, 어느 누구도 믿을 수 없다며 변호사는 필요치 않다는 입장을 통보하였다.[1)]



[팽목항]

따라서 우선 대한변협 대표단은 ① 현장 상황 파악, ② 기록, ③ 향후 신뢰를 얻기 위한 활동에 집중하기로 하였다. 우선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급선무였고, 상황과 활동의 충실하게 기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또한 피해자 가족들에게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당장 요청이 없더라도 활동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

1) 당시 세월호 피해자들은 팽목항과 진도체육관에 나뉘어 있었으며, 팽목항과 진도체육관에 학부모 대표단이 따로 있었다. 팽목항 현장은 대혼란과 분노, 몸싸움이 이어지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학부모와 대화를 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였다. 팽목항을 취재하고자 하는 기자들도 학부모 상황실 천막에 접근할 수 없었다. 상황실로 접근하거나 피해자 가족들에게 말을 붙이는 사람이 있을 경우 “누구 가족이요?” 라는 질문으로 신분을 확인했다. 1분 1초의 구조가 촉박했던 시기, 이처럼 불신과 분노가 가득했던 팽목항에서 대한변협대표단 역시 지켜보기만 할 수 밖에 없었다.



[4/19 팽목항 가족지원 상황실]

정부는 생존가능시간이라는 72시간이 지난 4월 19일 밤 11시 48분에서야 처음으로 선내진입에 성공하여 시신을 수습하였다. 아무런 구조 소식이 없이 72시간이 지나자 피해자 가족들의 분노는 더욱 커져 진도체육관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피해자 가족들은 답답한 정부의 대응을 성토하며 학부모 대책회의를 열고 진도체육관에서 아래의 내용으로 상황 브리핑을 하였다.

4월 19일 유덕천 학부모 총대표, 팽목항 상황 진도체육관에서의 브리핑

1. 구조 독촉사항 및 학부모 요구사항에 대해 미조치한 내용
2. 지휘능력, 통제능력 없는 청장의 상황
3. 정부 종합상황실로의 연락상황 (책임자에게 연결이 전혀 안됨)
4. 정부의 홍보만 일방적으로 보도하거나 오보로 얼룩진 언론들
5. 청와대 항의방문 제안 및 팽목항 학부모들 소집



[4월 19일 진도체육관에서 구조소식을 기다리는 희생자 가족들]

4월 20일 새벽 0시 15분 경, 학부모들은 구조 책임자와 연결이 되지 않는 상황에 대해 진도체육관에 상주하는 공무원들에게 강하게 항의하였으나 결국 구조 책임자와의 연결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책임자에게 연락하라는 요구가 지속되었고 국장급 공무원과 전화 연결이 되었으나 "연락을 받은 적 없다."는 답변에 학부모들은 더욱 격앙되었다. 통합 지휘체계는 존재하지 않고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만 있다고 고성이 오고갔다. 팽목항 학부모들은 4월 20일 새벽 1시 경 진도체육관에서 정부에 대한 요구사항을 브리핑하고, 구조대책이 없는 현재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청와대로 항의방문을 갈 수 밖에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

4월 20일 01:00 팽목항 학부모들 정부에 대한 요구사항

1. 상황: 피해자와의 연락체계 없음. 지휘체계 전혀 동작하지 않음

(안전행정부, 해양수산부를 통합하는 지휘체계 없음. 서로 책임 전가하며 떠넘기기가 지속됨)

2. 즉시 통합지휘부 구성하고 장관급 이상이 24시간 상주할 것

3. 구조대책 즉각 설명할 것

4. 요구사항 정리하여 청와대 항의방문 결정

4월 20일 새벽 1시 30분 경 피해자 가족들은 청와대로 항의방문을 가기 위해 진도체육관을 나섰으나 300여명의 경찰들이 학부모, 가족들을 막아서며 이들의 버스 탑승을 저지했다. 대한변협 대표단은 ① 경찰이 피해자 가족들을 막아서는 법적 근거를 제시할 것, ② 불법적 공권력의 행사를 지적했으나 경찰병력은 물러서지 않았다.



[가족들을 막아선 경찰병력과 해경 최상환 차장에게 항의하는 희생자 가족들]

4월 20일 새벽 1시 50분 경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이 진도체육관에 도착해 학부모 앞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브리핑을 하였으나

그들의 분노는 가라앉지 않았다. 4월 20일 새벽 2시 30분 경부터 학부모를 비롯한 피해자 가족들은 청와대행을 저지하는 공권력을 규탄하며 걸어서라도 청와대에 가겠다며 거리행진을 시작했다. 눈물 섞인 절규 속에 피해자 가족들은 "아이들을 구조하라. 아이들을 살려내라."고 외치며 걷고 또 걸었다. 한편 4월 20일 새벽 3시 경 정홍원 국무총리가 진도체육관에 도착했다. 학부모들은 거센 항의로 늑장 대응을 질타를 하며 총리를 에워쌌고, 경호원들이 총리를 다시 차량에 태우자 피해자 가족들은 총리의 차량을 막아섰다. 경찰력이 학부모를 몰아내려고 하는 과정에서 충돌이 이어졌고, 새벽 내내 학부모 가족들과 차량에서 내리지 않는 총리와의 대치는 계속되었다. 결국 총리가 학부모들과 면담할 것을 약속한 4월 20일 오전 6시 경 피해자 가족들은 총리와의 대치를 풀고 진도체육관으로 복귀하였다. 같은 시각, 도보행진을 시작했던 피해자 가족 150여명은 진도대교에서 경찰병력에 의해 다시 저지당하였다. 가족들은 진도대교에서 연좌농성을 하며 정부의 신속한 구조를 촉구하였다. 연좌농성은 총리와의 면담 시간으로 정한 4월 20일 오전 11시 경에 이르러서야 해산되었다.



[총리를 태운 차량을 둘러싸고 대치하는 희생자 가족들]

4월 20일 오전 8시 경 팽목항을 지키고 있던 소수의 학부모들이 진도체육관에 도착해 정부가 구조활동을 형식적으로만 하고 있다며 긴급히 조력을 요청했다. 진도체육관에서는 팽목항으로 학부모들이 이동해 항의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으나 이동차량이 부족했다. 대한변협 대표단은 신분을 밝히지 않고 학부모들이 팽목항으로 이동하기 위한 차량 동원에 협조하였다.

4월 20일 낮 3시 30분 경 진도체육관에서는 학부모 총대표인 유덕천 대표가 학부모 대표단과 총리와의 면담결과를 브리핑하였다. 브리핑 도중에도 구조에 관한 내용이 미흡하다며 가족들의 항의는 이어졌다. 브리핑 내용은 아래와 같다.

4월 20일 15:30 학부모 대표단과 총리와의 면담결과 요약

1. 합동분향소를 설치하고 학부모들이 원하는 기간까지 장례를 조력한다.
2. 장례는 가족들이 원하는 시설과 방법으로 하기로 한다.
3. 실종자를 장기간 찾지 못할 시 가족들에게 전담직원을 배치하기로 한다.
4. 소통부재, 지휘부재의 대책으로 구조 지휘체계를 재정비하기로 한다.
5. 해양수산부 장관과 직통 전화를 개설하기로 한다.
6. 매일 학부모 대표들이 참여하는 회의를 진행하기로 한다.
7. SNS 등의 실종자 가족 명예훼손 등에 대해 대응하기로 한다.
8. 기타 세부적 사항, 학부모 건의사항 등은 내일까지 답변하기로 한다.

학부모 총대표의 진도체육관 브리핑이 끝난 후 4월 20일 오후 4시경, 대한변협 대표단은 학부모 총대표인 유덕천 대표를 찾아가 대한변협 대표단임을 설명한 후 대한변협이 세월호 피해자 가족을 위해 법률지원을 하겠다는 의사를 구두로 전달했다. 대한변협은 정부와의 협의, 언론대응, 이후 발생하는 제반 문제의 해결 등에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변호사의 조력이 피해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반응은 전날 통화한 팽목항 학부모와 같았다.

"변호사요, 처음에는 다 무료로 도와주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다 돈보고 오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아무도 믿을 수 없습니다. 우리를 진정으로 도와주려는 사람이 있었으면 이 지경이 되지도 않았습니다. 도와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고맙지만 믿을 수 없습니다. 내일 오전 학부모 회의를 통해 결정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변협 대표단은 변호사마저도 불신의 대상이 되고 있는 현실을 마주해야 했다. 그러나 피해자 가족들에게는 법률가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했기에, 대한변협 대표단은 학부모들의 4월 21일 회의에 참고가 되도록 대한변협이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을 '학부모에게 드리는 글'이라는 문서로 작성하여 4월 20일 21:00경 학부모 총대표에게 전달하였다.

이후 대한변협 대표단은 진도 현장에서 파악한 상황보고와 향후 활동방향 등을 담은 세월호 침몰사고에 대한 대한변협의 장단기 관련 활동에 대한 제안서를 작성하여 변협으로 송부하였다.[2)]



[4월 20일 팽목항 입구에 설치된 팽목항 안내도]

4월 21일 오전 11시, 학부모 대표는 대한변협 대표단과의 면담에서 세월호 학부모 대표회의에서 대한변협의 제안 사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는 결정을 전달하였다. 한편 학부모 대표단은 정부에 대하여 4월 24일까지 희생자 수색을 끝내달라는 요구를 전달하였다.

4월 19일 밤 11시 48분 경 민관군 합동구조팀이 처음으로 선내 진입에 성공하여 시신을 수습한 이후 수습되는 희생자의 수는 급속히 늘어나기 시작하였다. 4월 21일 까지 87구의 시신이 수습되었으며, 신

2) 참고자료 2-1. 여객선세월호침몰사고관련대한변협관련활동제안

원을 확인하기 위해 인상착의가 진도체육관에서 발표될 때마다 진도체육관은 통곡으로 가득 찼다. 시신이 발견된 학부모들은 오열속에 실신하였으며 학부모들의 절규와 오열이 하루 종일 진도체육관을 채웠다.

희생자 수습이 본격화되면서 안산에서 이루어지는 장례절차에 관한 문제가 대두되었고, 대한변협 대표단은 안산 영광교회 정덕훈 목사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교인 중 한 명이 세월호 희생자의 학부모인데, 장례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요청이었다. 대한변협 대표단의 진도에서의 지원 제안이 거절되고, 안산에서 장례와 관련된 문제가 부각되어 지원 요청을 받은 후 대표단은 진도에서의 1차 활동을 마무리하고 안산으로 이동하기로 결정했다.

4월 21일 진도에서 서울로 올라온 이후 대한변협 현장조사단의 황필규, 배의철, 황수철 변호사는 4월 22일부터 23일까지 정덕훈 목사와 함께 안산의 장례식장 12곳을 순회하며 희생자 장례지원에 관해 담당 사무관 등과 면담하고 상황을 파악하여 대한변협에 보고하였다. 4월 23일에는 대한변협 대표단이 제안한 세월호TF 첫 회의가 대한변협에서 열렸다.[3] 장례절차는 4월 22일까지도 비용 보증 문제, 시신 안치 및 인도 절차, 유가족 명예훼손, 언론의 무분별한 접촉 등 다양한 문제로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으나 4월 23일부터는 지원체계가 확립되면서 원활하게 진행되기 시작했다.

3)참고자료 2-2. 안산장례식장순회보고(20140428)

나. 2차 파견 : 4월 25일~4월 27일 (3일)

대한변협은 4월 23일 세월호 TF 회의를 통해 ① 세월호 지원을 위한 조직체계를 5월말까지 한시적으로 TF 체계로 운영하고 이후 특별위원회로 전환하며 ② 세월호 법률지원단을 모집하고 ③ 대한변협 명의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④ 실종자 가족 및 유가족 지원을 위한 지속적인 활동을 위해 세월호 피해자 가족과 대한변협 차원의 공식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하였다.[4] 이에 따라 대한변협은 실종자 가족의 상황을 다시 파악하고 실종자 가족과의 접촉을 위해 황필규, 배의철 변호사를 다시 진도로 파견하였다.

4월 25일 진도의 상황은 더 이상 생존의 가능성을 염두에 둔 '구조'가 아니라 실종자의 발견을 위한 '수색'이 진행되고 있었으며, 희생자 시신이 절반 이상 수습되어 상당수의 가족들이 진도를 떠났다. 4월 25일 범정부 사고대책본부는 사고 이후 처음으로 분야별 담당자를 지정하여 게시하였다.[5] 그날 오전 9시 정부 상황 브리핑에서 실종자 가족들은 해경, 해군이 민간의 구조를 막고 있고, 그 원인으로 정부와 계약한 언딘 마린 인터스트리(이하 "언딘"이라 함)이 있음을 지적하며, 수색상황의 혼선을 제거해줄 것을 강하게 요구하였다. 한편 수색을 위한 잠수시간이 현저히 부족한 상황에서, 정부는 24시간 수색구조가 가능하다는 '다이빙벨'(알파잠수공업)을 가족들의 요구로 사고해역에 투입하고자 하였으나 접안에 실패하였다. 실종자 가족들은 언딘과 정부가 막고 있어 다이빙벨의 투입이 늦어진다고 판단하고, 언딘·알파잠수공업·현장구조책임자·실종자 가족들 사이의 회동을 요구하여 낮

4) 참고자료 2-3. 대한변협세월호대책TF결정사항(20140423)
5) 참고자료 2-4. 사고대책본부 분야별 담당자(2014.04.25.)

12시 경 회동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회동이 결론 없이 끝나자 가족들은 고함을 치며 신속히 희생자를 수습할 것을 요구하였고, 현장 분위기는 매우 험악하여 1차 파견 때와 마찬가지로 가족 관계자 이외에는 어느 누구도 가족들에게 접근하거나 말을 붙이지 못하는 상황이 전개되었다. 가족들은 오히려 정부에 가족 이외의 사람들의 접근을 차단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대한변협 대표단이 가족들과 접촉하기가 어려워졌고 현장 상황을 파악하여 기록하는 것도 여의치 아니하였다.



[희생자 가족들이 머무르던 진도체육관]

(1) 내외신 기자들과의 협조

실종자 가족들이 혼란과 의심 속에서 외부인과의 접촉을 꺼리는 상황에서 대한변협 대표단은 그간의 인터뷰 등을 통해 가족들의 신뢰를

얻은 국내외 기자들을 접촉하여 대한변협의 지원의사를 가족들에게 전달하려고 노력하였다. 외신기자들로는 요미우리통신, 문예춘추 기자들을, 국내 기자들 중에서는 MBC, 뉴스타파, 한겨레, 연합뉴스, JTBC 기자 등과 대화를 나누었고, 향후 실종자 가족과 연락하게 되면 법률지원의사를 전달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다.

(2) 천주교 교구 팽목항 천막 방문 면담

팽목항에는 천주교 광주대교구 천막이 설치되어 있었는데 대한변협 대표단은 천주교 천막을 방문하여 의견을 청취하였다. 신부・수녀님들은 학부모들은 수색 이외에 구체적인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있으며 불신이 팽배한 현재 상황에서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지는 않아 보인다고 답변하였다. 신부・수녀님들은 학부모들의 고통에 공감하고 함께 기도하며 위로하고 있으며, 공감하고 경청하는 것이 최선의 역할이라고 말하고 있었다. 대한변협 대표단은 혹시 피해자 가족들이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거나 도움을 요청하는 상황이 있을 경우 연락을 달라고 부탁하였다.

(3) 실종자 학부모와의 전화 면담 (2인)

기자를 통해 소개받은 실종자 학부모와 전화 연결이 되었다. 해당 학부모는 현재 안산에 있고 많은 변호사들에게 연락이 왔었다며 경계하는 태도를 보였다. ‘공식이냐 비공식이냐’ 라는 질문을 하고, 대한변협의 지원이 가능함을 밝히자 ‘이름만 드러내려는 것 아니냐’는 반응을 보이기도 하였다. 한편 희생된 단원고 교사의 친척과도 전

화 연결이 되었다. 아직 시신을 찾지 못한 상태이며 현장에서 탈진해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수색·구조’ 방안 마련과 정부에 강하게 항의하는 것 이외에 변호사를 만나는 것에 대해 생각이 없다고 말하였다는 것을 전달받고, 언제든지 도움이 필요할 경우 연락이 가능하도록 대한변협 대표단의 전화번호를 알려드렸다.

(4) 실종자 학부모 3인과의 팽목항 현장 면담

대한변협 대표단은 실종자 가족이나 현장에 사람들과의 접촉을 통해서 현재 필요한 것은 ‘수색·구조’이므로 당장은 변호사의 역할이 없다는 인식이 팽배하다는 것을 느꼈다. 그러나 지지부진한 수색에 대한 실종자 가족들의 항의는 계속되고 있었고, 언론은 정부의 입장만 반복하여 보도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학부모 내지 피해자 가족의 대표자마저 불신의 대상이 되어 수차례 바뀌는 등 실종자 가족들조차 한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었다. 한편 극심한 고통 속에서 지쳐가고 있는 실종자 가족들은 현장 상황의 정확한 기록이나 요구사항 정리 등에 신경을 쓸 겨를이 없으므로 정부와의 협의, 현장 상황의 기록에서 실종자 가족을 대변하고 조력하는 변호사의 역할은 여전히 필요하다고 판단되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대한변협 대표단은 팽목항에서 3인의 실종자 학부모와 면담을 할 수 있었다. 이 학부모들은 처음부터 변호사가 결합되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팽목항의 경우 희생자 가족들의 수많은 요구를 대표단이 반영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현재 실종자 가족 대표가 공석인 상태여서 공식적으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결정을

실종자 가족 전체의 의견으로 내리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현재 가족대책회의, 정부와의 협의 등 모든 부분에서 개별 실종자 가족들이 각각의 의견을 거센 항의의 형태로 정부에 여과 없이 전달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향후 대한변협의 조력이 요청된다고 판단될 경우 면담한 실종자 가족이 대한변협 대표단에 연락을 하기로 하였다.

(5) 대한변협 협회장 및 집행부의 진도 현장 방문

대한변협 위철환 협회장 및 이명숙 부협회장, 김영훈 사무총장 등 집행부는 4월 27일 진도를 방문하여 현장 상황을 확인하고 팽목항에서 대한변협 대표단과 긴급 회의를 가졌다. 이를 통해 위철환 협회장과 대한변협 집행부는 대한변협 세월호TF에서 논의한 내용을 재확인하고, 이후 피해자 가족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아래와 같이 확정하였다.

① TF는 법률지원단을 모집하여 협상지원, 소송대리, 상담지원, 진상조사 등 법률지원단 내에 체계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변호사들이 피해자 가족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② 천안함 사건, 대구지하철 사건, 서해페리호 사건 등 국내 선례를 조속히 정리할 수 있도록 함.
③ 대한변협 명의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보도자료로 전미변호사협회(ABA)의 대응 등 참고자료를 배부할 수 있도록 함. 언론을 통해 대한변협 세월호TF 구성과 피해자 가족들에 대한 법률지원 계획을 알리고 향후 활동 방향을 공표하도록 함.
④ 구체적인 지원에 나설 때에는 각 변호사들이 가족들과 상담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므로 조속히 교육 내용을 확정하고 변호사 지원신청을 받아 워크샵을 개최하도록 함.

⑤ 세월호TF 위원을 추가로 모집하여 각 영역의 전문 변호사들로 구성하기로 함.

⑥ 현장 활동 모니터링 가이드라인 등을 마련하여 지방회가 현장에 결합할 때 활용할 수 있도록 함.

다. 3차 파견 : 5월 17일~10월 9일 (146일)

2차 진도파견을 마친 후 대한변협은 4월 30일 “세월호 참사에 대한 대국민 성명”을 발표하고 세월호 참사 공익법률지원단의 모집을 시작한다. 며칠 만에 500명이 넘는 변호사들이 세월호 법률지원에 동참하였으며, 5월 3일에는 대한변협 세월호 참사 공익법률지원단 워크샵을 개최하였다.

이어 5월 5일 대한변협 세월호TF는 장례절차에 도움을 요청했던 안산영광교회를 통해 세월호 가족대책위 희생자 학부모들로 구성된 자문위원단과 첫 면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대한변협은 ‘대한변호사협회 세월호 피해자 지원계획(안)’을 브리핑하고, 해당 제안서를 가족대책위에 공식 전달하였다.[6] 그리고 5월 6일부터 배의철 변호사가 안산 세월호 가족대책위 사무실 근처에서 대기하며 세월호 희생자 가족들의 질의에 자문하기 시작하였다.[7]

---

6) 참고자료 2-5. 세월호 참사 관련 대한변호사협회 지원 계획(안)(20140505)

7) 세월호 가족대책위 사무실이 위치한 안산 와스타디움 역시 진도와 마찬가지로 기자들 및 외부인의 출입이 일체 허용되지 아니하였다. 진도에서 정부 및 언론에 대한 극심한 불신을 가지게 된 세월호 가족들은 안산에서도 세월호 희생자의 이름이 적힌 명찰을 가족별로 배부하여 기자를 포함, 명찰을 패용하지 아니한 사람

세월호 가족들의 대한변협에 대한 신뢰가 형성되면서, 5월 8일~9일 희생자 및 유가족들의 명예를 훼손한 KBS 임원의 파면을 요구하는 KBS 및 청와대 항의방문에 대한변협 세월호TF 위원들이 함께하여 항의면담 등을 조율하였고, 5월 13일에는 세월호 가족대책위가 집행부 회의를 통해 대한변협에 진도 실종자 가족 지원을 위한 변호사 파견을 요청하였다. 5월 15일에는 가족대책위 총회를 통해 대한변협과 지원협약을 맺기로 의결이 되어 5월 16일, 대한변협과 가족대책위는 지원협약 체결식 및 기자회견을 개최해 본격적으로 세월호 가족들에 대한 지원을 시작하게 된다.

5월 17일, 세월호 가족대책위는 총회를 통해 대한변협 변호사의 진도 파견 지원안을 의결하였고, 대한변협 세월호TF는 진도에 상주할 변호사로 배의철 변호사를 파견하기로 결정, 배의철 변호사가 진도로 내려가 진도체육관과 팽목항에서 실종자 가족과 함께 생활하며 실종자 가족을 대리하는 3차 파견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대한변협은 총 146일의 3차 파견을 통해 개괄적으로 아래와 같은 범주의 활동을 펼쳤다. 각 항목별 세부적 활동내용에 대해서는 별도의 목차로 서술하기로 한다.

들의 출입을 금지하였다. 대한변협 세월호TF의 변호사들 역시 사무실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고, 밖에서 하루 종일 대기하여야 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조언을 구하는 빈도가 늘어났고 가족들은 차츰 대한변협을 신뢰하게 되었으며 변호사들의 출입을 허용하기에 이르렀다.

세월호 특위의 진도 실종자 가족 현장지원 주요 활동

가. 범정부사고대책본부 회의에 실종자 가족 대리인 자격으로 참석하여 정부에 의견 개진과 요구사항 전달

나. 실종자 가족-해양수산부-해경-정부 부처 상호간의 가교 역할을 담당함을 통해 논의사항을 조율하여 결정, 집행되도록 하는 중재·지원 활동

다. 수색구조·장비기술연구TF 등을 통한 수색·구조 방안 마련 및 계획 수립 지원

라. 유실방지TF 등을 통한 유실물, 유품 수색 및 인계 지원 및 시신 유실방지 점검 활동

마. 식사, 물품, 의류 등 실종자 가족 복지지원 및 건강지원 활동

바. 국회 세월호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중재 및 연계 활동

사. 세월호 선체 내 세월호 CCTV 증거보전 활동(부식방지조치, 실물보전, 재판진행 등)

아. 수색지속을 견인하기 위한 시민사회와의 연대 형성, 정치·종교·문화 등 각계각층 진도 방문 조율 및 실종자 가족에 대한 조력 및 대책 강구

자. 프란치스코 교황 방한에 따른 실종자 가족 지원 활동 (교황서신, 전달 등)

차. 진도군 어민, 진도군 범군민대책위 등과의 갈등 조정 및 중재 활동

카. 기자 정례브리핑, 언론 대응 등 대변인의 역할을 통한 수색 여론의 우호적 조성과 정부 수색·구조 활동 견인

타. 실종자 가족 정례보고 및 실종자 가족 회의를 통한 의사 결정, 가족 간의 갈등 조정

대한변협과 실종자 가족은 상호 협력하며 200일이 넘는 장기간의 수색을 끌어나갔고, 모든 실종자가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도록 위해 최선을 다하였다. 실종자 가족은 극도로 쇠약해진 건강 상태에 탈진을 반복하면서도 실종자를 찾으려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고, 세월호 가족대책위 유가족들도 '진도분과'를 신설하여 반별로 순회하여 진도로 내려와 실종자 가족에게 힘을 실어 주었다. 그러나 실종자 가족과 유가족 간의 의견이 갈리는 경우도 빈번하였다. 특별법을 제정하라고 정부·여당과 싸우는 유가족의 입장과 '민관군 합동구조팀'을 구성하여 수색작업을 하고 있는 정부에 기대야 하는 실종자 가족의 입장은 공통의 행보를 취하기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었다.



[세월호 가족대책위 유가족과 실종자 가족의 회의 장면]

결국 이러한 실종자 가족과 유가족의 의견 불일치는 진도에 상주하며 실종자 가족을 대변하고 있던 세월호 특위 변호사에 대한 유가족의 비판으로 표출되었고, 심지어 실종자 가족 담당변호사에 대한 악의적

소문이 퍼지기도 하였다. 그리고 실종자 가족은 수색을 지속해나가기 위해 자신들을 조력하는 변호사를 옹호하며 유가족들과 대립적 관계를 형성하기도 하는 등 실종자 가족 간 또는 실종자 가족과 유가족 간의 갈등이 표면화되어 회의에서는 고성이 오가는 경우도 빈번하였다. 이에 세월호 특위는 긴급 회의를 통해 '실종자-유가족 간, 실종자 가족 간'의 극심한 갈등의 문제는 가족들이 자체 해결하는 것이 타당하며 더 이상 변호사를 상주시켜 갈등을 조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 변호사 진도 파견을 해제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10월 9일 세월호 특위 공동위원장단과 간사, 위원 등 4인이 진도를 방문하여 실종자 가족과의 회의를 통해 배의철 변호사를 복귀시키는 결정을 내린 것을 설명하고 146일에 달하는 진도 3차 파견을 종료하였다.

라. 4차 파견 : 10월 23일~11월 11일(20일)

그러나 진도 실종자 가족들에게 놓여진 현안 문제의 해결에 있어서 실종자 가족들은 법률대리인의 역할이 절실하다고 판단, 10월 22일 실종자 가족회의를 통해 대한변협변호사의 재파견과 법률지원을 요청하는 공문을 변협으로 발송하였다.[8] 세월호 특위는 실종자 가족의 자체적인 논의 및 의결 구조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실종자 가족 대표의 선출이 필요하다는 점을 전달하였고, 이에 실종자 가족은 실종자 대책위원회를 결성하기로 하고 실종자 가족 대표를 선출하였다.[9]

---

8) 참고자료 2-6. 세월호실종자대책위변호사파견요청의건(2014.10.22.)

9) 진도 실종자 가족을 대표하는 대표자가 두 차례 선출된바 있었으나, 실종자 가족과 유가족간의 의견 불일치로 대표가 사임하여 실종자 가족 대표는 존재하지 않았으며, 어느 누구도 비난의 대상이 되는 실종자 가족 대표를 맡으려 하지 않았다. 이에 실종자 가족의 개별적인 목소리를 대한변협변호사가 수렴하고 가족 간의 의사소통을 상호 조율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에 따라 의견 차이로 인해

이와 같은 실종자 가족의 요청에 응답하여 세월호 특위는 변호사의 진도 재파견을 결정, 3차 파견 종료 후 2주 만인 10월 23일 배의철 변호사를 다시 진도로 파견하여 실종자 가족을 지원하도록 하였다. 세월호 특위는 변호사가 진도로 복귀한 10월 23일 곧바로 진도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현안 문제의 해결에 나섰다. 당시 진도군민들은 진도군대책위원회를 결성하여 실종자 가족에게 진도체육관을 이전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실종자 가족 및 유가족과 진도군민 사이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었다. 또한 실종자 가족에 대한 지원이 중단된다는 내용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어 피해자 가족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으며, 실종자 수색에 있어서도 '민간 구조팀 철수설' 이 대두되고 있었다. 대한변협은 변호사를 진도에 복귀시켜 진도체육관 이전에 관한 수임기구(TF)를 가동하고, 이주영 장관과의 면담을 통해 실종자 가족에 대한 지원이 중단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을 요청하였다. 또한 민간 구조팀을 담당하고 있던 '88수중개발' 부사장과의 면담을 통해 철수설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적극 해명하도록 하였다. 한편 사실이 제대로 확인되지 않은 기자들의 보도로 인해 실종자 가족들이 겪는 정신적 상처와 고통이 심하였다. 대한변협 파견 변호

발생하는 가족 간 갈등의 책임이 모두 대한변협변호사에게 돌아가는 일이 자주 발생하게 되었다. 변호사는 수차례 실종자 가족 대표를 선임하자고 제안하였으나 실패하였고, 극도의 심적 고통과 탈진상태에서 더 이상 정신적인 상처를 받기를 원하지 않는 실종자 가족들은 대표 없이 각자의 목소리를 내고 있었다. 이와 같은 가족들의 의견 차이를 조율하기 위해 변호사는 가족들과의 개별 대화를 통해 의견의 불일치를 좁히고 결정이 필요한 사안에 있어서는 의견을 하나로 모으는 역할을 해야 했다. 개별 가족을 반복해 면담해야 했고, 생각이 달라진 경우 모든 가족에게 이를 다시 공지하여 의견을 재차 조율해야 했으므로 갈등 조정에 시간과 노력이 상당히 많이 소요되었다. 그러나 이는 필연적인 것으로, 실종자 가족, 유가족의 특수한 상황이 가족들의 자체적인 갈등 해결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된 것이다.

사는 언론에 대해 ‘피해자 가족의 고통에 대한 배려’ 라는 재난보도의 대원칙을 준수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다.[10]

한편, 10월 23일 진도군청에서 열린 세월호 특위의 기자회견에서는 ‘실종자 가족들이 인양을 내부적으로 합의했느냐’ 는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다. 그리고 이는 10월 24일 실종자 가족이 인양을 결정했다는 언론의 오보로 이어졌다. 변협이 파견한 실종자 가족 법률대리인 배의철 변호사는 인양을 합의하지 않았음을 명확히 했으나, 실종자 가족이 변협에 발송한 공문의 내용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실종자 수색의 최종수단으로써 세월호 인양에 대해 실종자 가족들이 언급하기 시작했다.” 고 답변하면서 인양에 대한 논의는 급물살을 타게 되었다. 언론들이 앞다투어 ‘실종자 가족, 인양 첫 언급’ 으로 다루면서, 향후 실종자 수색의 과제는 『수색계속 / 인양』 이라는 두 축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또한 민간 잠수팀의 철수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잠수사의 안전 및 기상여건 등으로 인해 200일이 가까워지고 있는 수색을 동절기에도 이어나가는 것에 대한 회의론이 확산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실종자 가족들은 수중수색이 실종자 가족의 의사와 관계없이 중단될 수도 있다고 판단하고, 현재의 수중수색을 지속해야 하지만 수색의 최후수단으로써 인양을 논의하는 것을 회피해서는 안된다는 의견이 대두되기 시작했다.

실종자 가족들로부터 ‘인양론’ 이 대두된 이유는 세월호 수색 민간잠수팀을 총괄하고 있던 88수중개발의 잠수팀장이 언론을 통해 “10월 30일 민간잠수팀 전체가 철수하겠다.” 라는 인터뷰를 했고, 실제

10) 참고자료 2-7. 세월호특위진도복귀기자회견문(2014.10.23.)

수중수색을 주도하고 있는 민간잠수팀이 장비와 바지선 전체를 철수할 경우에는 더 이상 수중수색 자체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이었다. 실종자 가족은 해군과 해경이 수중수색을 하더라도 수색의 의미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즉, 해군의 잠수방식은 표면공기공급방식으로 약 20여분의 잠수 - 하강시간과 감압시간을 고려하면 실질 잠수 수색시간은 약 10분 - 가 이루어지므로 민간 구조팀의 나이트록스 잠수방식 - 1시간여의 잠수 - 보다 잠수시간이 현저히 적어 정밀하고 실질적인 격실 수색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실종자 가족은 수중수색을 지속하기 위한 방법을 강구해야 했고, 인양에 대한 정부와의 어떠한 협의도 없이 수중수색이 일방적으로 중단될 것에 대비하여 인양에 대한 논의도 병행해야 했다. 대한변협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실종자 수색을 위한 (인양을 포함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정부와 충분히 대화하고, 사회 각계각층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언론에 밝히며, 범정부사고대책본부에 '인양계획에 대한 브리핑'을 요구하였다. 한편 10월 27일 기자회견을 열어 실종자 가족 회의에서 인양이 아니라 '수중수색을 지속'하기로 결정되었음을 공표하여, 일부 언론을 통해 잘못 알려진 '실종자 가족의 합의로 세월호를 인양하기로 결정'했다는 오보의 확산을 차단하였다. 민간잠수팀 철수설에 대해서는 범정부사고대책본부장인 이주영 장관과의 면담을 통해 실종자 가족의 여한이 없도록 수색의 지속을 독려할 것을 요청하여, 정부의 수난구호종사명령에 따라 민간잠수팀이 수색을 이어나가도록 하겠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세월호 특위는 범대본에 11월 수색계획을 책임 있게 수립할 것을 요구하였다.[11)]

같은 날 기자회견의 백브리핑을 통해 세월호 특위는 실종자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4층 선미 SP1, 4층 중앙 여자화장실을 집중적으로 재수색해줄 것을 현장지휘본부에 요구하였다.(4층 중앙 여자화장실의 경우, 현장지휘본부는 이미 13차례 수색하여 '수색완료' 선언을 한 구역이었다. 그러나 황 모 학생을 4층 중앙 화장실에서 마지막으로 목격했다는 생존학생의 증언에 기대어 다시 한 번 면밀한 수색을 당부하였다)

기자회견을 통해 재수색을 요청한 다음 날인 10월 28일 17시 30분경, 세월호 사고 197일 만에 기적이 일어났다. "나왔대요! 4층 여자화장실에서 나왔대요!" 수색팀이 295번째 희생자를 4층 중앙 여자화장실에서 발견했다는 외침이 진도체육관에 울려 퍼졌다. 전날 기자회견에서 황 모 학생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구역으로 철저한 재수색을 촉구하였기에, 희생자 발견 소식에도 실종자 가족들은 기쁨보다 부실수색 가능성에 대한 분노를 표출하였다. 전술하였듯이 4층 중앙 화장실은 이미 13차례 수색해 수색완료로 분류된 곳이고, 그 이전에 발견된 이 모 씨는 현장지휘본부가 26회 수색해 수색 완료지점으로 분류한 3층 주방에서 발견되었으며, 윤 모 학생 역시 23회 이상 수색해 실종자가 없는 것이 확실하다고 했던 4층 중앙 통로에서 발견된 바 있다. 그리고 실종자 가족들은 이곳을 실종자 존재 추정구역으로 지목하고 계속된 수색을 요구해왔기에 실종자 가족의 부실수색 가능성에 대한 지적은 충분한 근거를 가지는 것이었다.

11) 참고자료 2-8. 세월호특위진도군청기자회견문(2014.10.27.)



[17번째 생일에 가족에게 돌아온 故 황 모 학생이 팽목항으로 이송되고 있다]

10월 28일 희생자를 발견하였으나 수습에는 어려움이 많았다. 시신이 훼손되지 않게 온전한 상태로 인양해야 했기에, 잠수팀은 유속이 거셀 때에는 무리하게 인양하지 않고 때를 기다려 마침내 29일 18시 18분경 시신 수습에 성공하였다. 이 날은 황 모 학생의 17번째 생일이었다. DNA 확인결과 황 모 학생이 맞는 것으로 판명되었고, 생일을 맞아 가족의 품으로 기적처럼 돌아온 실종자의 발견으로 인양 논의는 수면 아래로 가라앉고 수색을 지속해야 한다는 여론이 다시 확산되었다.

세월호 특위와 실종자 가족들은 10월 28일 기자회견을 통해 범정부사고대책본부에 세심하고 철저한 재수색을 촉구하였다. 이 날의 기자회견은 눈물바다가 되었다. 황 모 학생의 생일상이 조촐하게 차려지고, 울음이 섞인 생일축하노래가 불리면서 기자회견장은 숙연해졌다. 실종자 가족들은 사고해역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민관군 합동수색팀에 허리를 숙여 감사의 뜻을 전하고 범정부사고대책본부에 부실수색

의혹에 대한 해명과 현재의 수색방식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및 대책 마련을 요구하였다.[12)]

민관군 합동구조팀의 수중수색은 다시 재개되었다. 민간잠수팀의 10월 30일 철수설도 자취를 감추었고, 현장지휘본부는 실종자 가족으로부터 수색요청 구역을 받아 해당 구역에 대한 재수색에 나섰다. 그러나 문제는 갈수록 악화되는 수색여건과 잠수사의 안전이었다. 29일 황 모 학생을 수습한 후 악화된 조류와 높아진 파고 등 기상여건으로 인해 30일 바지선은 다시 사고해역에서 피항했고, 해군 SSU 잠수사의 안전사고도 발생했다. 격벽 붕괴는 더욱 심화되었고, 잠수사가 격실 수색에 들어간 후 붕괴로 통로가 막힐 경우 이는 잠수사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였다. 황 모 학생을 수습한 4층 중앙 여자화장실의 경우에도 격실 진입에만 20여분이 소요되는 등 선체 내부의 균열과 붕괴로 잠수사의 선체 내부 수색은 목숨을 건 사투라 표현되었다. 한편 100일이 넘도록 수색을 지속해 온 잠수조의 팀장급들은 잠수병 증상을 호소했다.

이와 같은 악조건 속에 실종자 가족들은 고뇌에 고뇌를 거듭했다. 200일이 넘는 유례없는 장기간의 수중수색 작전이 지속되어 왔음에도 실종자 가족들은 10월 27일 인양이 아닌 수중수색 결정했다. 이후 황 모 학생이 197일만에 기적처럼 발견된 것도 실종자 가족에게 희망을 가지게 했다. 그러나 실종자 가족들은 산소중독, 안전사고 등 잠수사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이 가해지는 것을 원치 않았으며 '안전한 수색'을 가장 중요하게 여겨 범정부사고대책본부와의 회의에서 항상

12) 참고자료 2-9. 실종자가족과세월호특위합동기자회견(2014.10.29.)

수색에 있어 안전에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악화된 수색여건은 실종자 가족 사이에 수중수색을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과, 수색을 계속해야 한다는 의견의 대립을 초래했다. 다수의 실종자 가족들은 자신들처럼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평생을 슬픔에 잠겨 고통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더 이상 생겨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잠수사들의 안전이었다.

누군가는 결단을 내려야 했다. 수중수색을 지속하는 선택이 실종자를 찾아 어두운 바다 속으로 뛰어드는 잠수사들에게 고통을 주고 생명에 위협이 되는 반면, 수색을 중단하는 선택은 200일이 넘도록 진도체육관과 팽목항에서 반노숙생활을 하며 피붙이의 발견을 기다려온 가족들에게는 커다란 고통이 될 수밖에 없었다. 정부도, 국민들도 수색을 지속할 것인지에 대해 고민이 깊어지고 있었다. 다수의 실종자 가족들은 11월 10일 수중수색을 중단하기로 결단하고, 세월호 특위 변호사에게 이와 같은 뜻을 전달했다.

11월 11일 9시 진도체육관에서 실종자 가족 전체회의가 열렸다. 이 회의는 모든 언론들의 초미의 관심사가 되었다. 중대발표 형식으로 기자회견을 갖고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하는 것을 '결정'해야 하는 자리였기에, 실종자 가족들은 눈물을 흘리며 자신들의 생각을 얘기했다. 먼저 실종자 가족들은 기자회견을 개최해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하기로 했고 그 시간은 그날 11시로 정해졌다.

결국 실종자 가족들은 수색중단을 결정하였다. 그러한 결정은 오열로 말을 잇지 못하고, 절규 속에 실신하였다가 부축을 받으며 다시

일어나는, 사랑하는 혈육을 이제 영원히 가슴에 묻어야 하는 단장(斷腸)의 고통 속에 내려진 결정이었다. 실종자 가족 회의에서, 모든 가족들은 수중수색 중단을 결단하는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하는 것에 동의했다. 세월호 참사 210일 만에 내려진 수중수색 중단 결정. 11월 11일 11시 진도체육관에서 중대발표 기자회견이 개최되었다.[13)]

실종자 가족들의 수색중단 결정으로 진도에서 수색·구조를 지원하고 실종자 가족을 대변하기 위한 세월호 특위의 총 172일에 걸친 현장지원 활동도 마무리되었다.



[11월 11일 수중수색 중단선언 이후 이주영 장관과 실종자 가족들의 면담]

3. 대한변협 진도 실종자 가족 현장 지원 주요 활동 및 사건

가. 실종자 가족 대리 및 대변인 활동

13) 참고자료 2-10. 실종자가족대국민기자회견문(2014.11.11.)

학부모 대표단을 중심으로 한 진도 실종자 가족들과 총리와의 4월 20일 면담시 합의된 바에 따라 범정부사고대책본부(이하 "범대본"이라 함)는 매일 오전 9시 정례 회의를 통해 수색·구조 상황을 점검하고 각 부처의 지원 협력 사항 등을 논의했다. 그리고 이 회의에는 실종자 가족 대표들이 참여하기로 한 바 있다. 그러나 실종자 가족들의 건강과 정신적 상황은 심각하게 악화되어 현안 문제에 관하여 의견을 개진하고 해결을 촉구하는 대응은 여의치 않았다. 실종자 가족의 탈진상태가 반복되고 지속되면서 개별로 흩어져있는 실종자 가족의 의견을 수렴해 통일적 입장을 정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다. 특히 요구사항과 과제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범대본에 전달하고 관철시키는 일은 육체적 정신적으로 탈진된 실종자 가족에게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다. 따라서 실종자 가족들에게는 자신들의 의사를 수렴·조율하고 이를 범대본에 전달하고, 가족들의 요구와 정부의 결정을 중재하는 대리인의 역할이 절실하였고, 세월호 특위가 그 역할을 하고자 하였다.



[범정부사고대책본부 오전 정례 회의 모습]

그러나 5월 25일 정부는 실종자 가족의 대리인인 변호사의 범대본 회의 참석을 막아섰다. 이미 실종자 가족과 총리 사이에 합의사항이 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족이 아닌 자는 참석할 수 없다며 정부는 변호사의 참석을 불허하였다. 이에 대한변협 변호사와 실종자 가족은 범대본 회의장소 앞에서 항의를 이어나갔다. 정부 관계자는 "범대본 회의는 정부 회의이고, 수색·구조 대책 등에 대해 알고 싶어 하는 가족들에게 예외적으로 참관할 수 있게 양해한 상황이라 외부인인 변호인의 참석은 금지하는 것이 맞다"며 "수색·구조를 위해 논의하는 법률 대리인이 들어와 법적인 문제를 다 확인하면 원활한 진행이 안 된다" 고 주장했다.

그러나 문제가 있으면 이를 개선하는 것은 정부의 당연한 책무이다. 실종자 가족들도 "회의 내용 중 법률적인 문제나 모르는 부분이 있을 때 우리를 대리하는 변호사가 함께 듣고 도와줄 수 있는 것인데 변호사의 배석을 막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맞섰다. 대한변협은 법률 대리인으로서 변호사의 법적 역할에 대해 설명하고 범대본 회의에 변호사의 참석과 의견 개진을 막는 것에 대해 법을 아는 법무부가 답변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실종자 가족의 회의 참석은 총리와의 '합의사항' 이지 정부 관계자가 주장하는 '양해사항' 이 될 수 없으며, 실종자 가족이 참석가능하다면 법률적으로 가족을 대리하는 변호사의 참석도 가족의 참석과 동일한 것으로 보장되어야 하며, 이는 가족들의 당연한 '권리' 임을 주장했다. 결국 정부는 변호사의 범대본 회의 참여를 허가하였고 5월 25일 저녁 5시 팽목항 수색구조 브리핑이 열린 자리에서 범대본 본부장인 이주영 장관은 회의 참여시 물리력을 동원해 막거나 참석을 금지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약속

하였다.

이후 대한변협 파견 변호사는 평일, 주말 구분없이 매일 오전 9시에 열리는 범정부사고대책본부 회의와 저녁 5시에 열리는 범대본·해경 수색 브리핑에 참석하여 수색·구조 과정 및 실종자 가족에게 발생하는 제반 문제에 대해 즉시 대응하여 정부에 요구사항을 전달하고, 결정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실종자 가족에게 알리는 등 실종자 가족들을 대리하고, 대변하였다.

나. 실종자 가족-해양수산부-해경-정부부처간 가교 역할

범대본은 해양수산부를 중심으로 정부 각 부처 및 관련 지방자치단체가 사고수습을 위해 모인 조직체로 국방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기획재정부, 안전행정부, 여성가족부, 총리실, 해양경찰청(해경), 경찰청(육경), 기상청, 소방방재청, 전라남도, 진도군, 안산시 등 부처 상호간 역할을 협의하여 결정하는 형식을 갖추고 있었다. 이에 따라 하나의 사안을 결정하기 위한 이견이 존재할 때에는 부처 파견 공무원들 간에 신속한 결정과 집행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범대본의 결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목표는 실종자에 대한 수색·구조와 실종자 가족에 대한 지원이므로 실종자 가족을 대리하는 세월호 특위 변호사의 역할은 단지 실종자 가족의 의사를 전달하는 것을 넘어 각 관련 부처 간의 협의에 참석하여 '실종자 가족을 위한 결정'이 될 수 있도록 중재하는 적극적 활동인 것이어야 했다.

통상 각 부처나 지방자치단체 파견 공무원들은 1주일 단위로 담당

자가 교체되었으므로 이전 논의사항이 제대로 인계되지 않고 모든 논의를 다시 시작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다. 예를 들어, 실종자 가족의 복지를 위한 특별교부세 지원 문제에 있어서도 7월부터 해결을 위한 논의를 시작하였음에도 정부 파견 공무원의 교체로 제대로 인수인계되지 않아 여러 달 동안 관련 규정을 두고 똑같은 논의가 반복되었다. 결국 세월호 특위의 지속적인 문제제기와 이주영 장관과의 수차례의 면담을 통해 9월 중순에 이르러서야 해양수산부, 안전행정부, 진도군, 안산시, 세월호 특위 변호사와의 회의를 통해 지원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실종자 가족 복지지원' 항목에서 상술하기로 한다.

실종자 가족 건강지원에 있어서도 총리실, 해양수산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안전행정부 등이 범대본 회의와는 별도로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했는데, 특히 예산문제에 있어서 부처 간의 의견 차이가 드러났으며 건강 문제는 보건복지부 소관처럼 보이지만 '단원고 학생들'이라는 특성으로 인해 교육부도 역할을 하여야 한다는 이견도 있었다. 또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이라 함) 소관 부서인 안전행정부, 특히 실종자 가족의 건강 문제를 특히 신경 써서 돌볼 것을 지시한 총리실, 재난 지역인 진도군, 안산시 등도 역할을 맡아야 하는 범위 등을 놓고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었다. 세월호 특위는 실종자 가족 법률 대리인인 변호사를 통해 총리의 지시사항, 범대본부장 및 안전행정부 장관의 발언 등을 기초로 각 부처간 의견차이를 좁히고 실종자 가족 지원이 행정편의주의로 흐르지 않도록 각 부처 의견을 중재하고 '실종자 가족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관점'에서 결정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개입하였다.

특히 세월호 사고 수습의 핵심인 실종자를 수습하기 위한 세월호 선체 수색·구조에 있어서는 수난구호법상 지휘의 주체인 해경과 해양수산부, 해군의 의견이 불일치하는 경우가 빈번하였다. 사고 초기, 실종자 수색·구조를 담당한 민간 잠수팀인 언딘마린인더스트리(이하 "언딘"이라 함)와의 계약은 해경이 주도한 반면, 언딘-해경의 유착설이 제기되고 언딘의 실종자 수색·구조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자 4층 선미 절단작업에 투입된 민간 잠수팀인 88수중개발의 섭외는 해양수산부가 주도하였다. 이 과정에서 해양수산부-해경 및 두 바지선(언딘바지, 88바지)에서 수중수색에 참여한 민간 잠수팀 잠수사들 간의 갈등도 부각되었으며, 4층 선미 다인실(SP 구역) 절개의 적절성 및 기존 방식을 통한 잠수수색의 실효성에 대하여 민간잠수팀을 총괄하던 언딘과 범대본을 총괄하고 있는 해양수산부 간의 의견 차이가 신속한 의사결정을 지연시키기도 하였다. 한편, 해군은 범대본의 의견과 무관하게 자체적으로 6월말 해군 잠수사와 함정, 장비의 축소 계획을 세우면서 논란이 되기도 하였고, 해군 관계자가 '인양론' 을 조기에 언급하기도 하는 등 해양수산부를 주축으로 한 범대본과 해경, 해군의 지휘체계 혼선은 일사관 지휘 하에 수색·구조가 진행되기를 바라는 실종자 가족의 마음을 애타게 만들었다.

이에 따라 세월호 특위는 실종자 가족의 관점에서 수색·구조와 관련된 해양수산부-해경-해군 사이의 가교 역할을 하며 실종자 가족의 뜻에 부합하는 결정이 내려질 수 있도록 중재하는 활동을 지원하였다. 4층 선미 절개의 경우, 시신 유실의 위험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고 언딘에서는 4층 선미 창문을 절개하는 데에 2개월이 넘는 시간이 걸리므로 인양을 하는 것이 낫다는 주장을 펼쳤으나 실종자 가족은

세월호 특위를 통해 5월 27일,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4층 선미 절개를 결단하였다.[14]

다. 수색구조·장비기술연구TF 등을 통한 수색·구조 방안 마련 및 계획 수립 지원

5월 중순 이후 범대본은 민관군 합동구조팀의 실종자 수색・구조작업에 큰 진전이 없고 객실 장애물 제거가 지연되자 수색・구조를 지원하기 위한 혁신적인 방안을 연구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판단, 5월 23일 수색주체인 민간・해경・해군(민관군)을 비롯해 관련 전문가 자문그룹이 포함된『세월호 수색구조・장비기술연구TF』(이하 수색구조TF)를 발족하여 실종자 수색을 위한 다방면의 논의 및 연구를 시작하게 된다. 수색구조TF의 전문가 자문그룹으로는 한국해난구조잠수자문단, 부경대학교, 한국해양영토협회, 언딘, 88수중개발, 해양수중공사, 해양산업, 마린뱅크,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해양과학기술원, 해양방위센터, 한국선급, 목포항만물류협회, 해양수산연수원, 거성종합(세월호 인테리어), KOREA P&I, 센텀테크(전자코시스템), 전 UDT 대장, 전 SSU 대장 등이 참여하였다.

수색구조TF는 최선의 수색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2차례씩 회의를 개최하여, 수색구조개편(나이트록스, 수중재호흡기 방식 등), 수색 모니터링 시스템 및 냄새를 활용한 실종자 수색방안, 수중수색 실시간 촬영장비 도입, 수색평가・자문위원회 및 실종자 가족 자문단 구성, 동영상 검증팀 구성, 수색실적 및 계획 마련 등 수

14) 참고자료 2-11. 세월호특위기자회견(수색,구조방안에대한입장)(2014.05.27.)

색 지원을 위한 다방면의 활동을 전개하였고, 세월호 특위는 변호사를 통해 수색구조TF에 참여, 실종자 가족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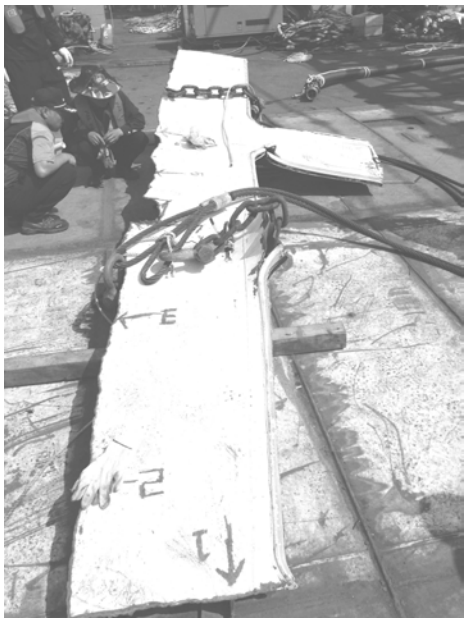


[수색·구조 장비기술연구TF 회의 모습]

(1) 선체외판 부분 절개를 통한 수색 효율성 제고

수색구조TF의 첫 번째 과제는 선체외판을 일부 절단하여 부유물을 외부로 제거하는 방안의 채택 여부였다. 선체외판을 부분 절단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충분히 가능하고 현재의 상황에서 시도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는 의견과 시간이 두 달 넘게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대형 크레인이 투입될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 바지선(사고해역에는 언딘바지선과 DS바지선 두 대를 통해 잠수사가 입수하고 있었다) 중 DS바지가 철수해야 하므로 작업의 효율성이 오히려 저하되며, 희생자가 유실·훼손되지 않는 예방조치가 충분히 가능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부정적 의견이 강하게 제시되었다. 실종자 가족들은 일부 의견의 차이가 있었으나 현재의 방식으로는 수색지연

이 개선될 수 없다고 판단, 절개 작업 전에 유실방지조치를 확실히 할 것을 전제로 4층 선미부분부터 외판을 절개하는 방안에 동의하는 결단을 내리게 된다. 실제 2달 넘게 걸릴 것이라는 언딘의 의견과 달리 4층 선미부분에 대한 외판 절개 작업은 6월 6일에 완료되었다.



[선체외판 부분 절개 후 인양된 세월호 4층 선미 외판]

한편 산소아크절단법을 사용하던 도중 잠수사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추가적인 외판 절개 방안에 대한 논의가 전개되었다. 가장 빠르고 효율적인 방식인 산소아크절단법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자 에어그라인더, 유압그라인더 등의 사용방안이 제출되었지만 절단면적을 고려할 때 지나치게 시간이 오래 소요될 수 밖에 없어 '성형작약절단[15]' 이 그 대안으로 제시되었다. (성형작약절단법이 화약을 사용

15) 성형작약절단은 구리, 은, 알루미늄 등의 V자형 선형 금속케이스에 고성능 폭약인 헥소겐, 펜트리트, 헥소니트로스틸벤 등을 충진한 폭약으로 절개부위에

한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유가족들에게는 '정부가 폭약을 이용해 세월호를 폭파시키려고 한다' 라는 잘못된 소문이 돌기도 하였다)

그러나 국내에서 시공한 사례가 전혀 없어 실종자 가족들의 불안감은 해소되지 못하였고, 온전한 형태로의 실종자 수색이 가장 중요하였던 실종자 가족에게는 기폭시 제트기류가 선체 내부로 강하게 형성되어 시신이 훼손될 수 있다는 점은 성형작약절단 방식으로의 외판 절개를 채택하지 못하게 하는 요인이 되었다. 이에 따라 선체 외판 절개는 4층 선미 다인실 구역으로 한정되고, 타 구역에 대한 외판 절개는 실시되지 못하였다.

(2) 크랩스터, ROV(Remotely-Operated Vehicle), 소나(SONAR) 등 첨단 무인장비의 활용과 실패

범대본은 4월 23일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개발한 무인로봇 '크랩스터' (음파를 발사해 반사파를 감지하는 초음파 카메라로 혼탁한 수중에서도 전방 15m 이내의 동영상 촬영이 가능한 로봇)를 사고해역에 투입하였다. 그러나 크랩스터는 6개의 발이 달린 외형과 크기로 인해 선체 내부에 진입시키는 것은 애초 불가능하였다. 결국 한차례 투입되어 세월호 선체 외형을 촬영하였을 뿐, 실종자 수색에 실질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철수하였다.

무인 원격제어장치인 ROV, 음파탐지기인 소나를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5월 23일 수색구조TF 회의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범대

약 3cm~5cm 넓이의 선형 화약을 띠처럼 둘러 화약의 폭발압력에 의해 미립자를 방출하여 철판을 절개하는 방식이다.

본은 4월 21일 Video Ray사의 ROV를 대여하여 사고현장에 투입했으나 많은 부유물로 인해 촬영에 어려움을 겪었고, 조류를 이기지 못하여 ROV의 활용에 실패했다. 또한 5월 30일에는 소방방재청이 보유한 ROV를 투입했으나 강한 조류를 이기지 못하고 가이드라인이 엉켜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잠수사가 수중에서 수색활동이 가능한 시간은 하루 중 정조기 최대 4시간 정도였다(압축공기방식에 의하면 하루 수색시간은 최대 160분 정도에 불과). ROV의 사용은 잠수사의 수중 수색이 불가능한 시간(1일 약 20시간 이상)을 활용하자는 목적이었으나, 강한 조류로 인해 잠수사들이 사용하는 가이드라인과의 ROV제어용 케이블간의 엉킴 현상을 극복하지 못해 활용이 어렵다는 난점이 있었다. ROV의 줄 엉킴을 막기 위해 가이드라인에 파이프와 비너를 설치하자는 의견도 제시되었으나 가이드라인이 엉킬 경우 이를 잠수사가 풀어야 하고, 가이드라인에 문제가 발생하면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결국 ROV의 투입은 중단되었다. 소나는 수중에서 초음파를 발사해 반사파로 물체를 감지하는 음파탐지 장비로, 선내에 가라앉은 시신을 탐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었으나 해군의 테스트 결과 폐쇄된 공간에서 각종 부유물이 장애물로 작용하므로 판독이 어려워 형상을 발견하기 곤란하다는 결론이 내려져 활용에 실패하였다.

ROV, 소나와 같은 첨단장비의 활용여부를 놓고 첨예한 의견이 지속적으로 대립되던 문제였다. 수색구조TF 회의에서 언딘은 사고해역이 장비를 테스트하는 곳이 아니라며 잠수사의 입수에 방해가 되는 장비의 도입을 강하게 반대하였고, 언딘에 대한 불신을 가지고 있던 실종자 가족과 유가족은 이를 수색·구조를 의도적으로 방해하는 일

종의 음모론처럼 받아들이기도 하였다. 또한 Video Ray사의 ROV를 통해 선내 전 격실 수색계획을 제출한 업체의 경우에도 현장지휘본부가 ROV의 투입을 의도적으로 막고 있다면서 실종자 가족의 도움을 요청하기도 하였다.

소방방재청의 ROV는 1m 정도의 크기이므로 선체 내부 수색에 효용이 없는 반면, Video Ray사의 ROV는 약 30cm 정도의 작은 크기로 충분히 실효성이 있다는 주장이었다. 실종자 가족은 범대본과 수색구조TF를 통해 미국 Video Ray사의 ROV 투입을 주장하였고 수색구조TF는 이를 받아들였으나 결국 해경은 ① ROV의 투입을 제안한 업체가 기존 제안과 달리 추가 사항(자체적인 ROV 다이버팀의 운영 등)을 요구하고 ② 선체 절단에 의한 새로운 수색구조방식 적용에 따라 부유, 침적물 수거에 우선 모든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으며 ③ 88수중 잠수팀이 촬영한 실시간 동영상을 통해 객실을 식별할 수 있어 현 단계에서는 수색에 지장을 초래하는 ROV 투입의 필요성이 저하된다는 논리에 따라 5월 29일 운용자 1명과 함께 입국한 Video Ray사의 ROV 투입을 보류하였다.

강한 유속을 이기지 못하는 ROV의 단점이 기존 민관군 수색팀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고, 새로운 다이버팀이 들어올 경우 기존 잠수팀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팀워크를 해친다는 판단이 작용하였으리라 추정된다. 그러나 ROV 등 첨단장비 도입 논의 과정에서 언딘과 해경의 장비 테스트 반대 때문에 실종자 가족 과 유가족은 언딘의 잠수 수색작업에 대하여 불신이 커져갔다. 또한 수색구조에 동원됐던 최첨단 장비들이 최첨단이라는 이름값을 하지 못한 채 철수함으로써 실종자 가족들은 오로지 잠수사들에게만 기댈 수밖에 없게 되었다.

⑶ 수중수색 실시간 촬영 요구 및 동영상 검증팀, 수색 모니터링 시스템

5월 28일 선체 외판 절개를 위해 구난업체 88수중개발의 바지선과 잠수사들이 투입된 후 민간잠수팀의 수색에는 변화의 기류가 일어나기 시작하였다. 먼저 언딘의 잠수팀은 헬멧에 카메라를 장착하지 아니하고 통신수와 잠수사의 의사소통으로만 수색상황을 파악하여 같은 구역에 진입하는 잠수사가 이전 잠수사의 수색구역을 다시 반복하여 수색하는 비효율성이 지적되었다(언딘은 잠수기록지를 활용하여 잠수사들이 수색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므로 이와 같은 지적이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하였다). 반면 88수중개발의 잠수팀은 헬멧에 카메라를 장착하고 수색작업에 임하여 선상에서 모니터를 통해 수색작업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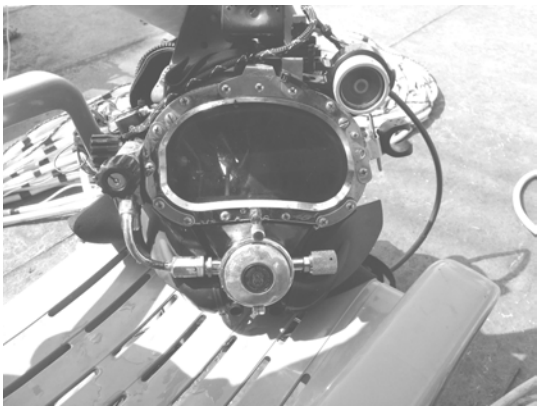
[헬멧카메라를 통하여 수중수색상황을 모니터링하는 모습]

후속 잠수사가 입수하기 전에 이전 잠수사의 수색상황을 모니터를 통해 숙지하고 입수하므로 수색의 효율성이 제고되었고 잠수사의 안

전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왔다. 뿐만 아니라 바지선에 오르는 실종자 가족 역시 모니터를 통해 수색 상황을 실시간으로 지켜볼 수 있어 수색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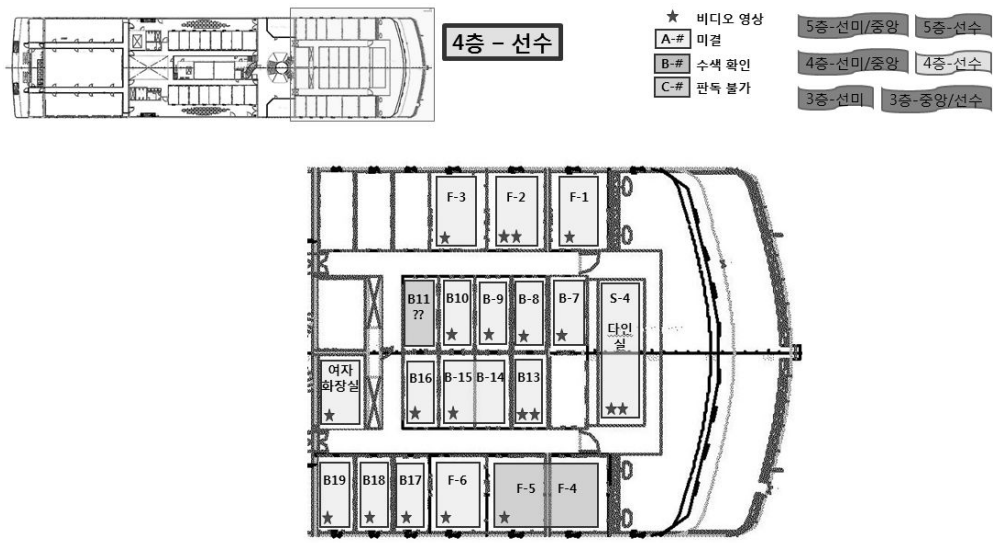
이에 따라 세월호 특위와 실종자 가족은 88수중잠수팀 뿐만 아니라 언딘 잠수팀에도 실시간 촬영장비의 장착을 요구하게 된다. 이 요구에 대해 언딘 측은 헬멧 장비에 카메라를 장착하면 좁은 구역의 수색 작업에 저해가 된다며 반대하였다. 그러나 6월 10일 수색구조TF에서 범대본 잠수안전지원단의 조광현 단장과 이청관 부단장 역시 실종자 가족의 요구에 동의하여 잠수사 안전과 수색의 효율성 및 작업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실시간 촬영장비 도입이 요청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6월 12일 실종자 가족 대표와 언딘 잠수사들의 간담회를 통해 잠수사들이 이에 동의함에 따라 민관군 합동구조팀의 잠수수색 전체에 실시간 촬영장비가 도입되게 되었다. 그리고 잠수수색 영상을 동영상 파일의 형태로 실종자 가족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을 받아들여 이후 실종자 가족은 수중잠수 수색 영상을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16]

16) 참고자료 2-12. 세월호특위기자회견(2014.06.14.)



[잠수헬멧에 장착된 카메라 (우상단 원형 장비)]

그러나 수중수색 촬영 횟수가 늘어나고 동영상이 많아지면서 동영상 파일들의 체계적인 분류가 필요하게 되었다. 세월호 격실은 총 111개로, 수색 동영상을 체계적으로 세월호 선내 배치도면과 비교하여 확인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실종자 가족들은 동영상을 통한 격실별 확인을 어렵게 하고 혼란을 초래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세월호 특위는 수색작업 영상을 세월호 층별, 격실별, 구역별, 날짜별로 체계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판단, 6월 14일 범대본에 세월호 수색작업 동영상 모니터링을 위한 시스템의 구축을 제안하였다. 수색구조TF도 수색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선내 격실별, 구간별 수색완료(Clear) 결정을 위해서는 그 제안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6월 16일부터 세월호 수색 동영상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기 시작하여, 6월 18일 수색구조TF에서 이를 시연하고 보완해나갔다. 이를 통해 바지선에 오르지 않은 실종자 가족들도 '세월호 수색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당일의 수색 작업을 다음 날 진도체육관이나 팽목항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수색의 신뢰성도 제고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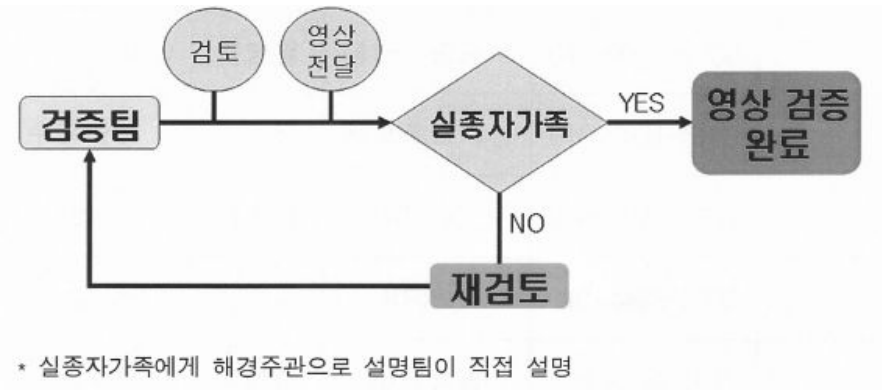


[세월호 선내 수중수색 모니터링 시스템 일부]

그러나 부유물로 인하여 수색 영상 역시 판독이 용이하지 아니하였다. 뿐만 아니라 제공된 수색영상이 계획된 격실에 대한 영상이 맞는지에 대해서도 확인하기가 어려워 실종자 가족은 동영상 판독에 애로를 호소하였다. 이로 인해 수색팀과 실종자 가족 사이에 수색 완료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어려워 실종자 가족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수색영상을 검증하기 위한 별도의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세월호 특위는 수색구조TF에 수중수색 시야 확보를 위한 뻘의 제거방안을 수립해 줄 것과 수중수색 촬영 동영상을 검증할 전문가로 구성된 검증팀의 구성을 요청하였고, 이는 실종자 가족과 수색팀의 상호 신뢰 형성 및 수색의 진척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임을 강조하였다. 이에 범대본부장인 이주영 장관은 별도의 팀을 구성하여 수색

영상 판독을 지원하고 수색과정 영상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할 것을 지시하였다. 6월 19일 수색구조TF는 수중 촬영 전문가, 영상 분석 전문가, 선체 구조 전문가 등을 포함한 동영상 검증팀을 구성하여 운영하기로 결정하였다. 동영상 검증팀은 한국영상대 구재모 교수팀이 담당하여 수색팀이 촬영한 영상을 판독 가능하도록 재편집하여 실종자 가족에게 제공하였고 구재모 교수팀은 판독이 불가능한 구역에 대해 수중 특수촬영 장비를 도입하여 직접 입수 촬영하기도 하였다. 한편 동영상 검증팀의 회의를 통해 사전 검증이 완료된 영상을 실종자 가족에게 제공하여 완료/재검토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여 수색 완료의 최종 결정과정에 실종자 가족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수색구조TF 동영상 검증팀 운영(안) 중 영상검증과정 모식도]

(4) 수색실적·계획서의 제출 요청 및 수색평가·자문위원회 구성 제안

팽목항에서는 매일 17:00 가족상황실에서 해경의 수색상황 브리핑이 열렸으나 실종자 가족들은 브리핑 내용에서 구두로만 언급되는 내용에 대해 사고초기부터 지속적인 문제를 제기하여 왔다. 실종자 가족의 질문에 대해 답변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가족들의

분노는 커져갔고, 구두로 진행되는 설명의 내용이 브리핑 때마다 달라지기도 하였다. 실종자 가족들은 해경 수색브리핑을 마친 후 저녁마다 세월호 도면을 펼쳐놓고 세월호 특위 변호사, 유가족 등과 함께 브리핑 내용을 토의하였다. 그 결과 실종자 가족들과 세월호 특위는 현재의 문제점들이 체계적인 장단기 수색계획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계획대비 실적의 확인과 평가가 부재한 데에서 비롯되는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세월호 특위는 6월 13일 수색구조TF를 통해 효율적이고 신속·정확한 수색을 통한 수색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그 동안의 수색실적과 향후 수색계획서를 작성하여 실종자 가족에게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17]

수색 계획서에는 i) 당일 수색계획 ii) 수색계획 대비 실적 iii) 3일치 단기 계획 iv) 15일 장기계획을 자세히 문서로 작성하여 제공하고, v) 문서에는 작업시간, 작업 구역, 작업팀, 작업 잠수사, 작업 내용 등 작업과 관련된 세부적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였다. 해군의 경우 군의 특성상 잠수사 정보의 공식적 공개가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여 민간잠수팀에 한정하여 작업팀과 작업 잠수사를 기재하도록 하였다.

17) 참고자료 2-13. 세월호사고59일째가족보고사항(2014.06.13.)

세월호 수중수색 실적 및 계획 (7월18일)

□ 기 간 : 2014. 7. 14 00시부터 실제작업일수 기준 15일간

작업팀 \ 작업일	1일차 (7. 14)	2일차 (7. 15)	3일차 (7. 16)	4일차 (7. 17)	5일차 (7. 18)	6일차	7일차	8일차	9일차	10일차	11일차	12일차	13일차	14일차	15일차
A팀 (해군 SSU)	5층 선수 좌현 CR1~8		화장실 샤워실	5층선수 우현 CR9~16	3층 선수 S1~3		3층 화장실 (남·여)	3층좌현 B1~3		5층 재수색			3층 재수색		
B팀 (해군 SSU)	4층 S4		4층 F1~3 B4~6	B7~B11 화장실(남)	4층 선수 우현 B12~16, 화장실(여)			4층 선수 우현 F4~6, B17~19		4층 재수색					
C팀 (팔팔수중)	3층 로비			3층 식당, 주방, 선원식당		3층 로비(카페, 안내소), 편의점, 게임룸 노래방		3층 좌현 CR1~7		3층 중앙 CR8~11 화장실, 샤워실			3층 우현 CR12~18		
D팀 (팔팔수중)	4층 중앙 좌현, B22~23 샤워실(여)			B20~B21 F7~F9 S5	4층 로비 및 통로계단 키즈룸, 레크레이션룸		4층 중앙 우현 S6,F10~11,. B24~28 샤워실(남), 화장실(남, 여)			5층 우현 회의실, 귀빈실, 로비 선미화장실(2)			5층 좌현 R1~R5		
E팀 (팔팔수중)	4층 선미 절개				SP 격실 부유물 회수 (기중기 및 원치 사용)						SP 격실 및 선체 부유물 제거 (수중 유압톱 사용)			추가 잔여물 확인 및 회수	
F팀 (팔팔수중)					3층 선미 DR1-8 휴게실, 샤워실, 화장실 4층 선미 F12, 13, 화장실(남,여)									추가 잔여물 확인 및 회수	

[현장지휘본부 세월호 수중수색 실적 및 계획(15일치)]

세월호 특위와 실종자 가족은 이와 같은 수색실적 및 계획서를 통해 수색작업의 세부 내용을 문서로 남기고, 이를 집적하여 정부의 수색·구조에 대해 면밀히 평가하여 수색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판단했다. 현장지휘본부에서는 수색팀을 믿고 맡겨달라고 하였으나, 6월 23일 실종자 가족과 세월호 특위가 바지선에서 해군, 해경, 언딘 잠수사들을 모두 모아 대화한 간담회 자리 이후 발생한 상황은 수색에 대한 평가의 필요성을 더욱 절감하게 하였다. 즉, 실종자 가족, 세월호 특위 변호사, 잠수사들 전체가 모인 간담회에서 해경, 해군 잠수사들은 "할 수 있는 방법을 다했고, 더 이상 수색할 곳도 없다."라고 얘기하였으나 다음 날인 6월 24일 참사 70일 만에 단원고 윤 모 학생이 선체 4층 중앙 통로(해군 수색 구역)에서 발견된 것이

다. 해경 팽목항 수색브리핑에서 이 구역은 20차례 이상 드나들어 실종자가 없는 것이 확실하다고 반복해 강조해 온 반면, 실종자 가족은 생존학생의 증언을 토대로 4층 중앙통로에 윤 모 학생이 있을 것이라고 수차례 정밀수색을 요청해 왔었다.

세월호 수중수색 실적 및 계획(8월14일)

구분 / 작업팀		수색결과 (전일 정오~당일 정오)		금일계획 (당일 정오~익일 정오)	향후계획 (익일 이후 3일간)
A팀 (해군 SSU)	1차	15:26~16:25	5층 선수 조타실 외부 9,11번 현창에 C클램프 이용 유실방지 로프 설치	3층 선수 우현 S2,3 수색 및 촬영	3층 선수 좌현 B1~3 수색 및 촬영
	2차	04:45~05:11	수색 구역 5층에서 3층으로 변경 관련 하잠줄 3층 선수 우현 난간에 설치		
B팀 (해군 SSU)	1차	15:26~16:26	S4 8번째 현창으로 진입 커텐, 매트리스, 석고보드3개, 합판(1.5mX40cm), 합판조각 5개, 슬리퍼 등 외부 배출	4층 선수 S4 장애물 제거 및 수색	4층 선수 F4,5 수색
	2차	〃	A팀이 B팀 하잠줄 사용에 따라 B팀 수색 미실시		
C팀 (팔팔)	1차	15:25~16:27	3층 선미 우현 출입문 로프 이용 폐쇄 3층 선미 좌현 통로 진입 결과 뻘 약20cm 쌓여있으며, 매트리스 담요, 천장판넬 3개 확인 휴게실, 샤워실, 화장실 출입문 열리지 않으며, 주변 부유물 많음 DR3,4 매트리스, 침대, 담요 확인, 뻘 30~40cm 쌓여있으며, 수색결과 특이점 없음 (류충열,황병곤)	3층 선미 DR1,2 휴게실, 샤워실, 화장실 수색	추가 수색(가족요구)구역 선정 수색
	2차	04:13~05:13	3층 선미 좌현 DR2와 화장실 통로 장애물(매트리스, 앵글, 플라스틱, 구명동의 2개, 바닥자재:1m×2m) 외부 배출 DR3,4 내부에 뻘 30~40cm, 통로에 뻘 10~15cm 쌓여 있음으며, 수색결과 특이점 없음 **※ 3층 선미 좌현 화장실 앞 통로 백팩가방 1개 인양 /** (박형민,신승구)		
D팀 (팔팔)	1차	15:25~16:32	B22 침대, 합판조각, 매트리스, 베게, 이불 B23으로 이동 및 수색결과 특이점 없음 **※ B22 검정색 여행용가방 1개 인양 /** (김학중,정도영)	4층 좌현 B22 수색	3층 선미 CR6,7,9 수색
	2차	04:19~05:26	B22 모포, 매트리스, 합판, 침대조각, 커텐 B23으로 이동 및 수색결과 특이점 없음**(B22 격실에 장애물 다수 쌓여 있음)** **※ B22 검정색 캐리어가방 1개, 파손된 흰색 스마스폰 1개 인양 /** (조상근,유두열)		
E팀 (팔팔)	1차	15:24~16:35	SP3 탈거된 선체바닥재를 지지대(2개) 이용 고정 / (오중헌,하명성)	4층 선미 우현 SP구역 장애물 제거 및 수색	4층 선미 우현 SP구역 장애물 제거 및 수색
	2차	04:16~05:18	SP1~3 격실 바닥상태 확인 등 안전진단 결과 **SP2 복도(1~8번창) 바닥재 붕괴위험 확인** **SP3** 3~5, 7, 11번 창 바닥재 떨어져 있으며, 11번창 창틀 하단 **균열간격 7cm에서 40cm까지** 진행 / (유기주,김석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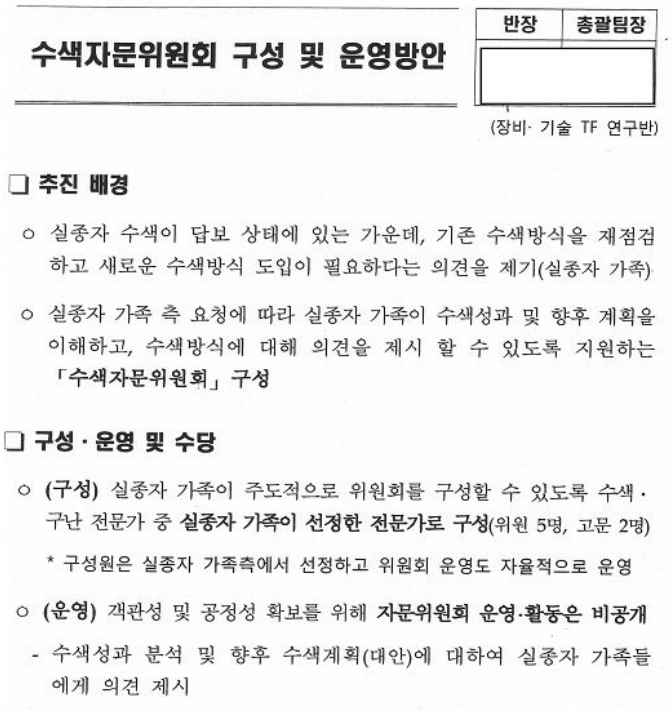
※ 내부 붕괴 지속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 사전교육 및 안전대책 이행 철저 강조

[현장지휘본부 세월호 수중수색 실적 및 계획(당일치)]

이처럼 실종자 가족이 수색작업을 신뢰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고, 범대본 잠수안전지원단 역시 기존 수색방식을 재점검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함에 따라 세월호 특위는 6월 27일 수색구조TF를 통해 『수색평가·자문위원회』의 구성을 제안하고, 6월 30일 정밀수색 종합 설명회를 개최할 것과 현장지휘본부에서 7월 수색 대안을 수립하여 설명회 때 계획을 논의할 것을 요청하였다. 실종자 가족 및 세월호 특위의 제안에 따라 범대본은 수색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

기로 하고, 실종자 가족의 관점에서 수색 평가와 개선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실종자 가족이 수색·구난·해양 전문가 중 위원을 선정하기로 하였다[18]. 객관성 및 공정성의 확보를 위해 수색자문위원회 운영 및 활동은 비공개하기로 하고, 위원회를 통해 현장지휘본부의 수색성과 분석·평가 및 향후 수색계획 및 대안적 수색방안에 대하여 실종자 가족에게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였다. 또한 범대본은 수색자문위원회 활동,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예산 등을 적극 지원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수색자문위원회를 통한 전문가 자문그룹의 조력을 바탕으로 실종자 가족과 세월호 특위는 수색구조개편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게 된다.

18) 위원은 SSU, UDT, 해양 관련 교수, 해양연구소, 해양개발공사 등 전문가 그룹이 담당하고 세월호 특위 변호사가 참여하여 실종자 가족과의 소통 및 의견수렴 등 가교 역할을 맡았으며, 고문은 2인으로 구성되었다. 수색평가·자문위원회는 '평가'에 초점을 맞추었으나 수색구조개편이 완료된 이후 세월호 수색에 참여했던 현대삼호중공업 소속 민간잠수사를 팽목항 실종자 가족의 추천으로 추가로 선정하여 이후 가족들에 대한 '자문'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수색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안

반장	총괄팀장

(장비· 기술 TF 연구반)

❑ **추진 배경**

○ 실종자 수색이 답보 상태에 있는 가운데, 기존 수색방식을 재점검하고 새로운 수색방식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기(실종자 가족)

○ 실종자 가족 측 요청에 따라 실종자 가족이 수색성과 및 향후 계획을 이해하고, 수색방식에 대해 의견을 제시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수색자문위원회」 구성**

❑ **구성 · 운영 및 수당**

○ **(구성)** 실종자 가족이 주도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수색·구난 전문가 중 **실종자 가족이 선정한 전문가로 구성**(위원 5명, 고문 2명)

* 구성원은 실종자 가족측에서 선정하고 위원회 운영도 자율적으로 운영

○ **(운영)** 객관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해 **자문위원회 운영·활동은 비공개**

- 수색성과 분석 및 향후 수색계획(대안)에 대하여 실종자 가족들에게 의견 제시

[수색구조TF에서 채택된 수색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안 중]

(5) 수색구조 전면 개편 (압축공기 → 나이트록스 / 전면 교차수색 실시 / 성과제 도입)

4층 선미 절단작업을 위해 투입된 88수중개발은 언딘의 표면공기공급식 압축공기잠수(Air Diving, 일명 '후카 잠수[19]') 방식이 아닌 혼합기체잠수(Mixed Gas Diving, 일명 '나이트록스 잠수[20]') 방식을

19) 후카(Hooka) 잠수방식은 스쿠바 장비와 재래식 헬멧 장비의 장점을 결합하여 선상의 기체공급원으로부터 호스를 통해 물속의 잠수사에게 공기를 지속 공급해주는 방식의 잠수장비로, 30m 이하 수심에서는 주로 압축공기(질소 79%+산소 21%를 압축하여 호흡매체로 사용)를 사용한다.

20) 혼합기체잠수는 심해잠수를 하기 위해 호흡기체로 비활성기체와 산소를 혼합하여 사용하는 잠수방식으로, 나이트록스, 헬리옥스, 트리믹스 혼합기체 잠수

사용하여 잠수를 통한 수색시간이 대폭 늘어나도록 하였고, 이에 수색구조TF에서는 언딘의 잠수방식과 88수중의 잠수방식에 대한 논쟁 또한 지속되었다. 해양수산부가 주도한 새로운 업체의 투입이 민간잠수팀간의 경쟁을 가져오게 된 것이다. 언딘의 후카 잠수 방식은 35m 수심에서 25분, 40m 수심에서 10분 정도의 잠수시간을 보이는 반면, 88수중의 나이트록스 방식은 45m 수심에서 최대 1시간의 잠수시간을 확보하여 선체 내부의 정밀하고 정확한 수색이 가능했다.



[후카 방식을 채택한 언딘의 수색 바지선 언딘마린인더스트리호]

실종자 수색작업이 장기화되면서 선체 내부의 격벽 붕괴현상이 심화되고 선체의 균열도 발생하였으며, 선체 내부의 각종 장애물, 부유물

방식으로 나뉜다. 이 중 허용한계 수심 45m 이하에서는 나이트록스(Nitrox) 혼합기체 잠수방식이 주로 활용된다. 나이트록스는 수심에 따라 산소함량을 높이고 질소함량을 낮추는 식으로 합성을 하며 허용한계 수심(45m)를 벗어나면 산소 분압이 높아져 산소 중독이 될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기도 하다. 수심 50m 이상에서는 헬륨과 산소를 혼합하는 헬리옥스(Heliox) 혼합기체 잠수를, 수심 300m 이상에서는 헬륨과 산소, 질소를 모두 혼합하는 트리믹스(Trimix) 혼합기체가 사용된다. 1981년 수심 686m에서 트리믹스로 24시간 체류하는 실험잠수에 성공한 바 있다.

이 뒤엉켜 잠수사의 가장 핵심적인 과제는 '잠수시간을 혁신적으로 증가' 시키는 것이었다. 기존 후카 잠수방식에 의하면 하강시간, 감압 상승시간 등을 고려할 때 실제 선내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는 시간은 10분~15분 내외에 불과하였고 하루 4번의 정조시간에 모두 입수하여도 실질적 수색시간은 1시간이 채 안되는 상황이라는 점이 실종자 가족을 더욱 애타게 만들었다. 이러한 짧은 잠수 수색시간으로 인해 실종자 가족과 세월호 특위는 현재의 수색방식으로 부유물과 장애물을 치워가며 격실 내부를 구석구석 수색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따라서 세월호 특위는 수색자문위원회의 평가·자문을 통해 수색구조 체계를 장시간 잠수가 가능한 나이트록스 방식으로 일원화 하는 수색구조 전면개편을 단행하는 것이 실종자의 조기 수습을 위한 핵심이라고 판단, 실종자 가족과 함께 수색시간을 늘릴 수 있는 수색체계의 전면 개편을 범대본에 요구하였다. 동시에 전술한 바와 같이 수색 설명회를 개최하여 6월 정밀수색 평가를 통한 7월 수색 대안을 수립해 줄 것을 요청, 수색체계 개편과 수색 대안이 수색구조TF의 쟁점 사안으로 부각되었다.

이에 따라 해경은 6월 30일 수색구조 종합설명회를 개최하고자 하였으나, 수색 대안과 체계적 계획이 없는 설명회 자료를 받아들고 실종자 가족은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다. 세월호 특위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6월 30일 수색설명회를 취소하게 되었음을 공표한 후 수색 대안을 충실히 보완하여 다시 개최할 것을 요구하였다. 세월호 특위는 회견을 통해 i) 현재 35m 수심에서 25분, 40m 수심에서 10분 정도인 잠수시간을 늘릴 수 있는 수색구조 개편방안 ii) 현재 약 30명으로 유지되고 있는 잠수인력 충원 세부 계획, iii) 실종자 존재 예상구역에 대

한 면밀한 검토, iv) 화물칸으로 내려가는 통로에 대한 확인, v) 장마 등 기상여건에 따라 수색 체제를 유지할 수 있는 방안 등 실종자 가족 및 수색구조TF의 전문가들이 검토를 요청해 온 내용들이 7월 수색계획에 전혀 명시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고 수색계획의 충실한 보완을 재차 요청하였다.[21]



[나이트록스 방식을 도입한 88수중개발의 수색바지선 PALPAL 128호]

이에 따라 범대본은 수색구조TF를 통해 수색대안에 대한 충실한 보완을 논의, 새로운 수색·구조 방법을 검토하고 7월 10일 김석균 해양경찰청장의 기자회견을 통해 수색구조 전면 개편 및 수색 대안을 발표하게 되었다.

① 장마 등 기상여건에 따라 수색 체제를 유지할 수 있는 방안 요청에 대해서는, 『세월호 사고해역 기상정보 모니터링 체제 구축(안)』을 추진하여 사고 해역 기상 전망을 정확히 분석하고 수색 여건을 예측하기 위해 기상청 및 해양조사원에서 제공하는 기상정보 등을 바지선 및 실종

21) 참고자료 2-14. 세월호특위기자회견문(2014.06.30.)

자 가족이 모두 활용할 수 있는 체제로 구축하기로 하였다.

② 잠수시간을 증가시키는 방안 및 잠수 인력 충원 요청에 대해서는, 민간 잠수팀의 수색체제를 후카 잠수방식으로 수색을 하던 언딘을 배제하고 88수중개발의 나이트록스 방식으로 전면 개편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사고해역에는 언딘 바지선이 철수하고 2천톤급 대형 바지선인 현대보령호가 투입되었으며 이원화된 민간업체가 단일화되어 지휘통제력이 강화되었다. 한편 피로도가 쌓인 잠수사들이 휴식을 취하고 수색 성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수색팀을 추가 운용하기로 하였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수색기법으로 수중재호흡기[22](Rebreather, 리브리더) 방식에 대한 검증잠수를 실시하여 투입 여부를 결정하기로 하였다

③ 실종자 존재 예상구역에 대한 면밀한 수색을 위해 선수, 중앙, 선미의 수색주체를 상호 교차하여 기존 잠수팀이 수행하던 수색에 대해 다른 잠수팀이 재수색하여 수색 성과를 교차 점검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

22) 수중재호흡기(리브리더)는 잠수사가 내쉰 공기를 배출하지 않고 정화해 재활용하는 잠수장비로 6시간 이상 잠수가 가능한 방식이다. 해경·해군·민간 등 민관군 합동구조팀의 잠수가 불가능한 유속 1.8노트 이상에서도 잠수할 수 있어 잠수시간의 혁신적 증가를 도모할 수 있는 방안으로 범대본 연구용역사인 슈미트사가 2014. 4. 제안한 바 있다. 범대본은 7월 4일 수색구조TF 회의에서 미국 GAVI사, 국내 전문가 30여명이 참여한 검증잠수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이에 7월 11일 미국팀이 검증잠수에 나섰으나 미국 GAVI 사에서는 기존 민관군 합동구조팀의 바지선 2척 및 수색함정 등을 모두 철수하고 국내 민간잠수사의 투입을 금지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범대본 및 실종자 가족이 바지선 2척은 정조시간에 항상 수색을 하고 리브리더는 유속이 강할 때 추가 투입하는 방안으로 활용하기 위함이라며 수용 불가 입장을 표명함에 따라 검증잠수 자체가 실시되지 못하였다. 이후 미국 GAVI사가 7월 12일 검증잠수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포기의사를 전달함에 따라 리브리더 방식은 도입되지 못하였다.

한 현장지휘본부에서는 수색팀의 수색성과를 종합하여 지금까지의 수색 결과 미진한 구역 및 의심 구역에 대해 선체 내부 사진 및 설계도면 등과 비교하여 잠수실적, 선내상태 등을 면밀히 정리하기로 하였다.

④ 수색을 위한 새로운 기술인 전자코 시스템을 활용한 수색방법과 360도 전방향 수중 촬영이 가능한 수중다방향 카메라 등 첨단 장비를 도입, 보다 효과적인 수색을 전개하기로 하였다. (전자코 시스템에 대해서는 후술)



[수색구조개편으로 사고해역에 투입된 2천톤급 대형바지선 현대보령호]

⑤ 수색 성취도에 따라 비용을 차등 지급해 수색작업에 대한 책임의식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민간 잠수사 비용 지급 방식을 실제 잠수여부 및 성과와 무관하게 98만원의 일당을 잠수사에게 항시 지급하는 기존의 방식에서 수색팀의 성과에 따라 비용을 지급하는 성과급제 방식으로 전환하였다.

이처럼 수색체계를 전면 개편해 수색작업에 나선 민관군 합동구조팀은 잠수방식을 바꾼 지 1주일 만에 추가 실종자를 3층 중앙 주방에서 발견하였다. 범대본은 새로운 잠수기법을 채택하고 수색구역을 서로 맞바꾸어 재점검한 것이 효과를 낸 것으로 보았고, 추가 실종자의 발견은 실종자 가족에게도 고통스러운 시간을 이겨내는 큰 희망으로 다가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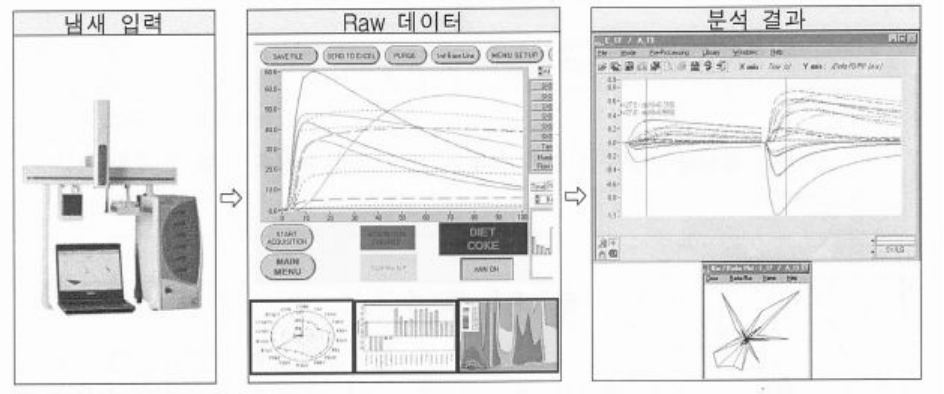
(6) 냄새를 활용한 실종자 수색방안 - 전자코 시스템 도입

실종자 가족과 세월호 특위는 민간 잠수사들과의 대화, 간담회 등을 통해 실종자가 발견된 격실은 다른 격실과 호흡과정에서의 냄새가 판이하게 다르게 났다는 점을 청취하고, 6월 18일 수색구조TF에서 이 점을 지적하였다. 세월호 특위는 잠수사들이 냄새를 통해 실종자를 확인할 수 있겠다는 의견을 냈다는 점을 강조하여 범대본에 수중의 해수를 채취하여 냄새의 화학적 성분을 분석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여 수색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범대본은 액체의 화학적 분석을 통해 냄새의 종류, 강도 등을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의 연구 작업에 착수하였다.

범대본은 6월 20일 수색구조TF에서 이를 '전자코 시스템'이라 명명하고 전자코 시스템을 통한 실종자 수색방법 검토안을 제출하여 선체 내부 객실에서 해수를 채취하고 성분 분석을 통해 냄새의 종류를 시각적으로 패턴화하기로 하였다. 액체의 냄새가 다르면 액체 성분을 그래프화 한 데이터 결과의 시각적 패턴이 다르다는 점에 착안한 것이었다. 이를 통해 실종자가 발견된 객실과 발견이 되지 않은 객실의 해수 샘플을 채취, 비교하여 실종자 존재 추정구역을 선정하여 집중

수색하기로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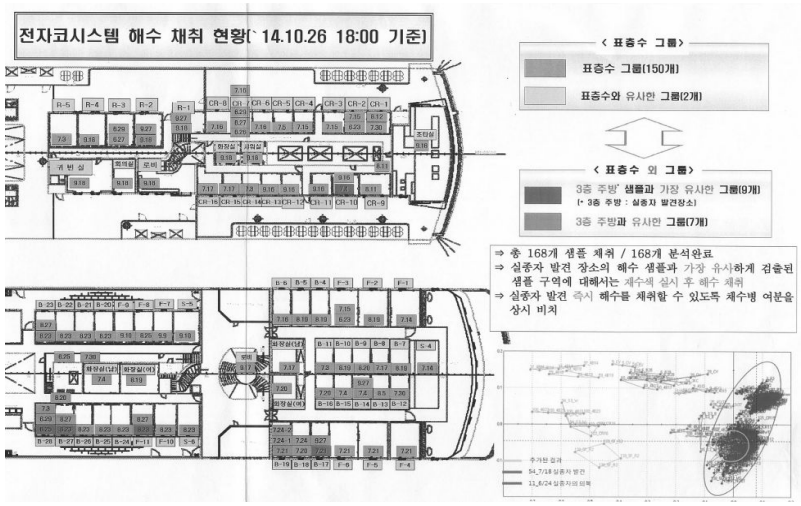
6월 29일 샘플 채수를 통해 14개 채수 샘플에 대한 시료 분석결과, 채수 위치 별로 시각적 데이터의 그룹이 형성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이를 현장 바지선에서 설명하고 추가 채수를 이어나갔다. 특히 실종자 조은화 학생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4층 선미 다인실 2개 구역에서 표층수와 다른 냄새가 검출되어 4층 선미 다인실의 부유물을 걷어내는 작업에 집중하였으며, 4층 중앙화장실 반대편 객실인 F11 에서도 이상 패턴이 검출되었다. (이후 F11의 반대편인 4층 중앙화장실에서 참사 197일만에 황모 학생이 수습되었다)



[화학적 혼합물의 냄새를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전자코시스템의 원리]

범대본은 총 128개 격실 전체에서 채수를 완료하고, 177개의 샘플을 채취하여, 이 중 이상패턴을 보인 샘플수는 19개이며 검출 구역은 15개 구역이라고 브리핑하였다. 그리고 15개 구역 전체에 대해 재수색을 완료하였다고 실종자 가족에게 설명하였다. 그러나 실종자 가족은 채수의 정확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형식적 채수 내지 다른 곳에서의 채수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세월호 특위는 전술

한 황 모 학생의 수습으로 나타난 결과를 통해 실종자 가족의 주장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즉, 범대본의 해수 채취 현황에 따르면 4층 중앙 여자화장실에서 해수를 채취하여 전자코 시스템을 통해 분석한 날짜는 8월 19일로 나타나 있다. 이 구역의 성분 분석 결과는 이상 패턴을 보이지 않고 표층수와 동일한 성분으로 분석되어 범대본이 13차례의 수색 후 4층 중앙 여자화장실에 대한 수색완료를 선언했었던 것이다. 그러나 황 모 학생이 발견된 후 4층 중앙 여자화장실에서 다시 채수를 하여 샘플을 분석한 결과, 기존 범대본이 결과를 발표했던 바와 달리 이상패턴이 나타나게 된다(10월 31일 수색구조TF 전자코 시스템 상황보고 결과). 이는 기존 채수가 정확하지 않았거나, 다른 격실에서 채수를 하였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실종자 가족의 지적은 충분한 근거를 가지는 것이었다. 세월호 특위는 이를 토대로 범대본에 전자코 시스템으로 이상패턴이 검출된 구역 및 그 주변 구역에 대한 철저한 재수색과 채수의 정확성을 높여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채수를 하는 것은 결국 잠수사의 역할인 바, 잠수사를 믿고 맡길 수밖에 없다는 한계는 불가피한 것이었다.



[전자코 시스템 해수 채취 – 좌하단 (여)화장실에 이상현상이 보이지 않음]

(7) 잠수사 안전 확보 및 환경 개선 요청, 계속되는 격벽 붕괴와 결단

5월 6일 6시 5분경 잠수수색에 첫 투입된 언딘의 이광욱 민간잠수사가 잠수 5분만에 의식을 잃고 결국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故 이광욱 잠수사는 기존 잠수사들의 피로도를 감안해 적응잠수도 전혀 없이 긴급 투입되어 화를 불렀다는 지적과 함께 바지선에는 전문의료진도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았다며 실종자 가족들은 잠수사의 안전문제를 제대로 점검, 확인하지 못한 범대본에 울분을 토로했다. '죽은 사람을 찾기 위해 산 사람을 희생시켜서는 안된다' 는 여론이 실종자 가족을 더욱 힘들게 하였으며, 수색을 중단하고 선체를 인양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기 시작하였다. 범대본은 인양에 대한 내부 검토자료를 실종자 가족에게 제공했고, 이에 따라 선체 외판 절단 방안이 도출되기 전인 5월 중순, 실종자 가족 회의에서는 인양을 해야 한다는 일부 가족의 의견으로 격론이 벌어지기도 하였다. 세월호 특위는 안전 확보 방안을 충실하게 강구하는 것이 타당하며 실종자를 추가 수습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지 않은 채 인양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실종자 가족의 의견에 힘을 보탰다. 따라서 5월 인양에 대한 내부 논의는 부결된 채 실종자 가족 간의 다른 주장이 갈등으로 격화되자 실종자 가족 대표는 그 직을 물러나게 된다.

실종자 가족은 선체 외판 절단을 통한 수색을 결단하면서 5월 30일 09:00 범대본 회의에서 잠수사 안전을 가장 우선하고, 절단 작업에 위험이 따를 수 있으므로 철저한 안전관리를 당부하였다. 그러나 5월 30일 선체 외판 절단작업 중 88수중의 잠수사가 의식을 잃고 숨지는 사고가 다시 발생하면서 실종자 가족들은 극심한 절망감에 빠져들었

다. 한편 현장의 잠수사들도 안전 문제에 대한 걱정을 토로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고가 난 잠수사들에 대해 정부가 제대로 된 위로와 지원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실종자 가족이 잠수사들을 보호하지 않는다는 비난을 하기도 하였다.

세월호 특위는 악화된 여론과 절망감에 빠진 실종자 가족이 다시 수중수색이라는 희망의 끈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여야 했다. 진도와 팽목항에서 실종자들을 지원해주고 있던 배의철 변호사가 사망한 잠수사가 목포한국병원 및 서해지방해경청을 방문하고, 잠수사 가족과 면담하였을 뿐만 아니라 세월호 특위 이명숙 위원장과 박종운, 황필규 등 몇몇 위원들이 인천에 마련된 빈소에 조문하엿다. 한편 가족들과 만나 향후 사망한 잠수사와 관련된 법적인 자문과 조력을 약속하는 등 안전사고로 동요되는 잠수사의 사기를 진작하고, 범대본에는 잠수사 안전 문제에 대한 방안 마련을 촉구하였다.

이에 범대본은 잠수사 안전관리 및 수색구조 협력체제 강화를 위해 『민간 잠수안전 지원단』을 발족하기로 하고 조광현 한국 UDT 전우회 명예회장을 단장으로, 이청관 잠수명장을 부단장으로 하여 잠수사 안전수칙(잠수안전 10계명)을 마련하고 현장 바지선에 단장, 부단장을 상주시켜 철저한 안전 관리 및 범대본, 실종자 가족과의 소통·협력 체계를 강화하였다.[23]

한편 잠수작업 중 격실 내부 붕괴현상으로 잠수사의 머리로 붕괴물이 떨어지는 일이 발생하면서 안전헬멧을 도입하여 잠수사들이 복잡

23) 참고자료 2-15. 세월호잠수안전십계명(민간잠수안전지원단)

한 구역 진입, 무너진 통로의 개척 등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충돌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기상 악화시 잠수사들이 가이드라인을 놓칠 경우를 대비하여 안전줄을 설치·운용 하였다. 한편 잠수 중 의식을 잃는 현상을 예방하기 위해 잠수사의 컨디션 체크가 가장 중요한 바, 잠수병 전문의를 통해 잠수사별 잠수시간을 관리하고 주기적으로 건강상태를 체크하며 휴가를 의무화하는 등 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잠수사의 피로 누적 및 부상 등에 따른 교체에 대비하여 10명 이상의 예비 인력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특히 해군, 해경, 소방 소속 잠수사들의 경우 민간 잠수사들과는 달리 특별한 인센티브가 주어지지 아니하므로 세월호 특위와 실종자 가족은 사기 진작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기관별로 교대근무, 휴가, 포상 등을 실시하기로 하는 등 사기 진작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였다. 뿐만 아니라 실종자 가족과 세월호 특위는 바지선 위에서 오랜 기간 대기·상주하여야 하는 잠수사들의 쾌적한 환경이 중요함을 범대본에 강조하였다. 이에 따라 범대본은 바지선 위의 잠수사 휴식 컨테이너에 에어컨, 제습기 등을 설치하였고, 잠수사의 식사 역시 개선되었다.

잠수안전지원단의 역할을 강화하고, 안전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함에도 불구하고 실종자 수색이 장기화되면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세월호 내부의 격벽 등 붕괴현상을 막을 수는 없었다. 내부 붕괴에 따른 사전 안전조치를 시행한다고 하여도 수색 중 입수 통로가 붕괴되어 잠수사가 고립될 위험이 증가하였고, 이 경우 잠수사의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는 악조건이 수색의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켰다. 잠수 중

내부붕괴는 i) 공기공급 라인과 통신 라인이 붕괴 장애물과의 엉킴으로 잠수사의 호흡, 통신, 영상 등 장비기능에 장애를 일으키고 잠수사 퇴로가 차단되어 인명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며 ii) 날카로운 목재, 못 등에 잠수복이 찢기거나 부상 가능성이 상존하고 iii) 잠수 중 내부 붕괴에 대한 심적 부담감으로 잠수사가 선내 진입을 주저하게 하는 등 큰 위험 요소로 대두되었다. 아래와 같은 붕괴사고의 사례는 실종자 가족으로 하여금 잠수사 안전에 대한 걱정과 가족을 찾아야 하는 간절한 희망 사이에서 갈등하며 잠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고뇌의 요인이 되기도 하였다.

격실	붕괴 내용
4층A/C 유니트룸	4층 A/C 유니트룸 출입문 개방과 동시에 내부 부유물(철자재 및 부속류 등)이 쏟아져 잠수사 호흡호스가 걸렸으며, 철자재가 계속 떨어지는 상황에서 안전사고 없이 수색 종료되었으나 추가 붕괴에 대한 심리적 압박감으로 잠수에 집중할 수 없음을 호소.
CR-14, 15	좁은 통로에 누워 다리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밀어올리는 과정에서 출입문과 격벽 전체가 붕괴되어 No.1 잠수사가 바닥과 격벽 사이에 갇히는 긴급 상황 발생. No. 2 잠수사의 도움을 받아 현장에서 탈출 수중감압 후 해면 도착
DR-7, 8	DR-8 격실 내부수색 종료 후 DR-7 격실 출입문을 막고 있는 판넬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판넬에 끼어있던 부자재들이 No.1 잠수사에게 붕괴되는 위험 상황 발생. 잠수사가 팔과 다리 힘으로 버티며 장애물 제거 후 탈출

범대본은 이에 따른 안전대책으로 진입 전 예상통로 및 격실에 대한 사전 점검을 철저히 하며, 비상용 공기탱크의 철저한 점검과 위험

상황 발생시 통로 개척용 작업공구를 현장에 상시 비치할 뿐만 아니라 사고 발생 시 백업 잠수사 비상대응체계를 구축하고 대기 스쿠바 잠수사의 즉응태세를 유지하는 등 선체 내부 붕괴시 잠수사 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 그럼에도 갈수록 심화된 격벽 붕괴현상은 결국 잠수사의 안전 문제가 최우선이라고 생각한 실종자 가족들로 하여금 11월 11일 수색중단을 결단하도록 하는 주된 요인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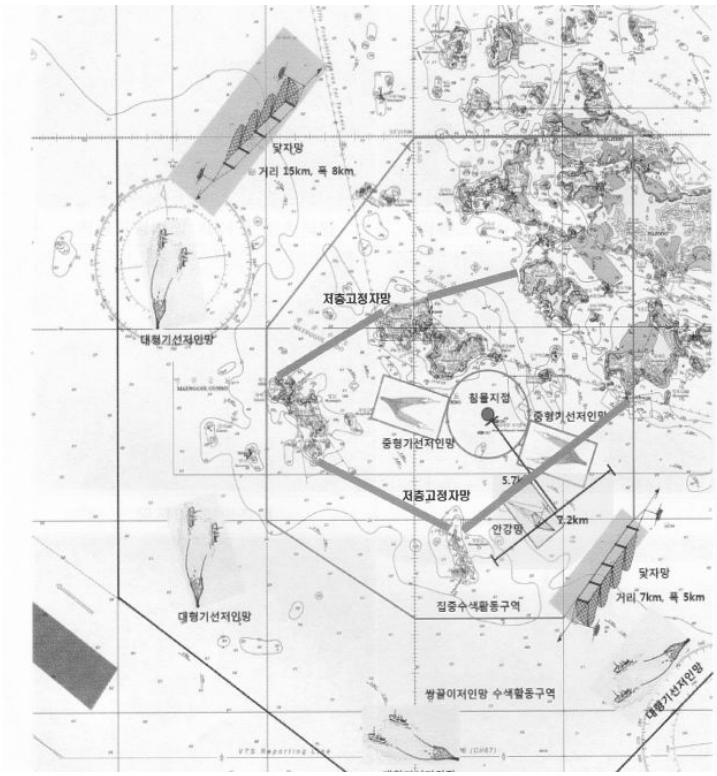
라. 유품 수색·인계 및 시신 유실방지 점검

범대본은 세월호 사고 후 집중적인 수색활동에도 불구하고 실종자 수색, 구조가 장기화됨에 따라 해경, 해수부, 경찰, 해군, 육군, 소방 등 각 기관별로 추진해오던 희생자 유실방지 대책을 4월 26일 이주영 장관의 지시로 범정부적TF로 확대하게 됐다. 이에 따라 6월 8일 『세월호 희생자 유실방지대책TF』 (이하 유실방지TF) 전체회의를 열고 반별 추진현황을 보고한 이후 매주 일요일에 TF 회의를 통해 실종자 가족 및 세월호 특위의 의견을 수렴하여 보완대책을 수립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갔다. 세월호 특위는 범대본 회의, 수색구조TF 회의와 마찬가지로 유실방지TF에도 참여하여 실종자 가족의 의견을 대리하여 활동하였다. 희생자 중 43명이 선내진입수습이 아닌 자체부양으로 수습되었으므로 향후 희생자 유실이 우려되었다.

유실방지TF는 선박수색반, 항공수색반, 어선수색반, 해안도서수색반, 해양조사반으로 구성되었다. 활동을 요약하면, 선박수색의 경우 하루 평균 34척이 사고해역 중앙 및 외곽구역을 광범위하게 수색하였

고, 항공수색은 하루 평균 6.4회를 비행하여 지정구역을 수색, 어선수색의 경우 동거차도, 서거차도 등 진도 어민들의 헌신적 조력으로 하루 평균 285척을 동원하여 수색을 전개하였다. 해안도서수색의 경우 하루 평균 470명이 동원되어 도서구역별 집중 수색을 실시하였으며, 해양조사선이 세월호 침몰 부근 해역 108km에 대한 해양탐사를 수행하였다.

세월호 특위는 특히 희생자, 실종자의 유품을 위주로 한 유실물 인계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며, 항공수색과 어선수색에 대해서도 실종자 가족과 함께 유실방지 대책의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이끌어내었다. 특히 유가족과 실종자 가족은 검경 합수부의 휴대폰(스마트폰) 임의 처리에 대해 가장 강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다. 휴대폰이 선내에서 혹은 외곽 수색을 통해 발견될 경우 가족의 동의를 거치지 않은 채 대검찰청 디지털포렌식센터로 넘겨지고 그 이후 가족에게 인계되었는데, 유가족들은 정부를 신뢰하지 않는 상황이었기에 검경 합수부가 휴대폰 내부 자료를 먼저 살펴보는 것에 대하여 의심이 증폭되었다.



[세월호 침몰 외곽지역 유실방지 활동 전체 상황도]

(1) 유품 발견 후 적법절차를 준수하도록 처리 절차 개선

세월호 특위는 5월 24일 팽목항 수색 브리핑 자리에서 휴대전화는 희생자의 것으로, 시신이 발견되었을 경우 법적으로는 유가족의 소유에 해당되므로 형사소송법 제108조[24]에 따른 '유류물'로 영장주의의 예외에 해당되더라도 유가족, 실종자 가족은 '소유자 기타 이에 준할 자'에 해당되어 형사소송법 제129조[25]에 따라 압수 목록을 작

24) 형사소송법 제108조(임의 제출물 등의 압수)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 또는 유류한 물건은 영장없이 압수할 수 있다.
25) 형사소송법 제129조(압수목록의 교부) 압수한 경우에는 목록을 작성하여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기타 이에 준할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성하여 교부하여야 하고, 해경 수사규칙(훈령 제1035호) 제125조[26] 제1항에 따라 유류물을 압수할 때에는 '관계자의 참여'를 얻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해경수사규칙 제125조 제2항에서도 압수에 관하여는 실황조사서 등에 그 물건이 발견된 상황 등을 명확히 기록하고 압수조서와 압수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경 합수부는 수난구호법 제35조에 따라 유류품을 관리, 처리하고 있어 적법절차를 준수하고 있다고 답변하였으나, 수난구호법 제35조 제2항[27]은 물건의 소유자가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그 물건을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에게 인계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이를 대검찰청으로 인계한다면 법적으로는 '압수'에 해당되므로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않는 것이 명확하였다. 즉 관계자인 유가족, 실종자 가족 중 어느 누구도 압수과정에 참여한 적이 없고, 압수목록이 작성되어 교부된 적 또한 전혀 없었다. 따라서 소유자를 확인한다는 명목으로 휴대전화가 대검으로 임의 이관된다면 그 과정에서 유심칩의 정보를 추출하고, 메모리 이미징을 통해 휴대전화에 저장된 자료

---

26) 해경 범죄수사규칙(훈령 제1035호) 제125조(유류물의 압수) ① 경찰관은 유류물을 압수할 때에는 거주자, 관리자 그 밖에 관계자의 참여를 얻어서 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압수에 관하여는 실황조사서 등에 그 물건이 발견된 상황 등을 명확히 기록하고 압수조서와 압수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27) 수난구호법 제35조(구조된 사람 · 선박등 · 물건의 인계) ② 구조본부의 장 또는 소방관서의 장은 구조된 사람이나 사망자의 신원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인계받을 보호자 또는 유족이 없는 경우 및 구조된 선박등이나 물건의 소유자가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조된 사람, 사망자, 구조된 선박등 및 물건을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인계한다.
③ 표류물 또는 침몰품(이하 "표류물등"이라 한다)을 습득한 자는 지체 없이 이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다만, 그 표류물등의 소유자가 분명하고 그 표류물등이 법률에 따라 소유 또는 소지가 금지된 물건이 아닌 경우에는 습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직접 그 소유자에게 인도할 수 있다.

(영상, 문자, 통화기록) 등을 확인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형법 제316조 비밀침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등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 따라서 세월호 특위는 검경 합수부의 이와 같은 적법절차 위반을 분명히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였으며, 유류 휴대전화 휴대폰 관리 현황에 대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다.



[팽목항 유실물 보관소에 인계, 보관되고 있는 세월호 선내 유실물]

검경 합수부가 6월 4일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5월 25일까지 발견된 총 22점의 휴대전화 중 유가족에게 동의를 받은 휴대전화 포렌식 분석은 단 2점으로, 대검으로 인계하는 과정에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것이 확인되었다. 검경 합수부 역시 이 점을 인정하고, 이후로는 사고현장과 인근 해안가 수색 시 휴대폰이 발견될 경우 실종자 가족에게 먼저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 임의제출토록 하며 이 과정을 거쳐야 대검 디지털포렌식센터에 의뢰하여 소유자를 확인하고 인계토

록 휴대전화 처리 절차를 개선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가족 및 실종자 가족은 발견된 휴대전화가 대검찰청으로 인계되어 분석된다는 것 자체에 지속적인 문제와 의심을 제기하였던 바, 세월호 특위는 이와 같은 요청에 따라 특위 내에 '디지털포렌식팀'(팀장 전 한양대학교 컴퓨터공학과 교수 김인성)을 신설하고 휴대전화 저장 자료를 분석하기 위해 발견된 휴대전화를 직접 인계받았다.

그 결과 휴대전화 처리에 있어서는, 희생자의 휴대전화가 발견되면 발견된 상태 그대로 i)세월호 특위 변호사 및 실종자 가족이 참여한 상태에서 ii)탈이온수(초순수액)에 휴대전화를 담아 밀봉하는 봉인 절차를 진행하고 iii)유류물 인수서를 작성하여 진도실내체육관 또는 팽목항에서 인계받은 후 iv)이를 대한변협포렌식 팀으로 인계하여 직접 복구와 자료 분석을 진행하는 절차로 개선하였다.



[안산 와스타디움에 마련된 대한변협 포렌식팀 사무실]

가방, 캐리어, 카메라 등 유류물에 대해서도 전술한 휴대전화와 동

일한 절차로 인계되었다. 특히 카메라의 경우에는 총 2점이 발견되었는데, 메모리에는 희생자의 마지막 모습이 담긴 사진이나 침몰과 관련된 정황적 증거가 담겨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복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었다. 1점은 세월호 선내 CCTV 복구를 맡은 (주)명정보기술에 의뢰하여 사진의 복구에 성공하였는데, 메모리카드에 학생들의 사진이 담겨있어 유가족과 실종자 가족을 오열케 하였다. 발견된 가방이 180여점, 캐리어 100여점, 카메라 2점 등 10월 25일까지 발견된 유류물 누계는 155종 2,123점으로 그 중 가족에게 인계된 것이 217점, 진도군으로 인계되어 팽목항 보관소에 관리된 것이 1,406점, 구명의 등 검경 합수부에서 관리·보관한 것이 475점, 해경에서 보관하고 있는 DVR 본체와 노트북이 2점, 기타 조명탄, 낙하산 등 해군에게 인계된 것이 23점이다.

(2) 시신 유실방지 대책 마련

(가) 유실방지 차단봉 설치 대책 제안

한편 전술한 바와 같이 실종자 가족과 세월호 특위는 5월 27일 기자회견을 통해 세월호 선체 외판 절개를 결정하면서 특히 실종자 시신 및 유품의 유실 대책을 철저히 마련하여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따라서 범대본은 선체 절단에 따른 희생자 및 유품 유실방지 대책으로 절단 부위에 탈부착식 유실방지망을 설치하는 것을 비롯, 출입문과 창문에 대한 유실방지 그물망을 설치한다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또한 바지선에 유실 감시조를 상시 운영하고 수색 보트를 집중 배치하여 유실 감시 및 신속 인양이 가능하도록 하고, 함정 및 어선 등도

선체 외곽으로 이동 배치하여 실종자 유실을 막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실종자 및 유품에 대한 유실방지 대책은 이미 시행되었어야 하는 것이었다. 사고 이후 희생자를 발견하기 위한 잠수에 집중한 나머지 유실방지 대책을 소홀히 한 것이 아니냐는 실종자 가족의 질타가 이어졌고, 범대본은 출입문 11개소 및 창문 총 96개소에 대한 유실방지 그물을 설치하기로 하였으나 민관군 합동구조팀에서는 잠수사에 대한 안전 위험으로 인해 전면 그물의 설치는 어렵다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그물에 공기공급선이 엉킬 우려가 있고, 잠수사들이 그물에 걸릴 경우 안전사고가 발생한다는 우려에 대해 범대본은 뚜렷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실종자 가족과 세월호 특위는 그물이 가져올 안전사고 위험이 있다면 시신이 빠져 나올 수는 없는 간격으로 차단봉을 제작하여 부착하는 방안을 제안하였고, 현장지휘본부 역시 차단봉이 대안이라는 점에 동의하여 창문에 차단봉을 제작・설치하게 된다. 이에 따라 6월 8일 현장지휘본부는 창문 총 96개소 중 제외대상인 45개소[28]를 제외하고 유실방지 조치가 필요한 51개소에 대해 유실방지 차단봉(46개소) 및 그물(5개소)의 설치를 완료하게 되었다.

(나) 유실방지 활동 항공점검 및 대형기선 저인망, 저자망의 확충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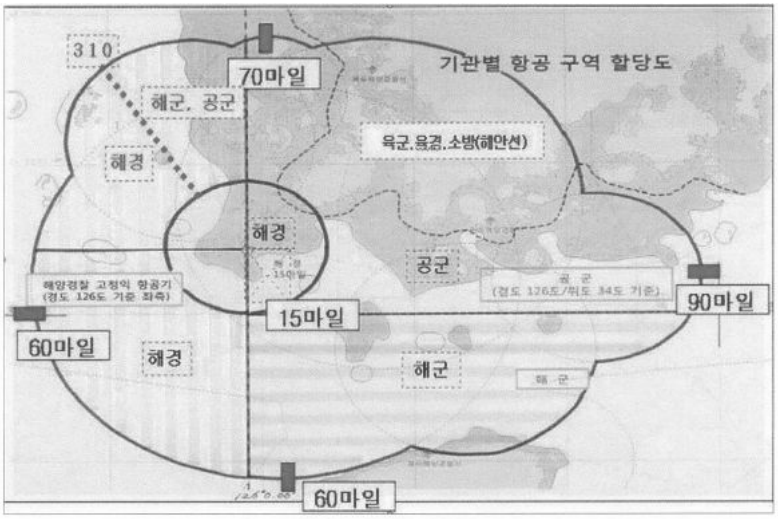
28) 5층 선미 전시실의 경우 폐쇄되어 있었으므로 전시실 창문 12개소는 제외되었고, 4층 중앙 샤워실 및 우현 객실의 창 7개소는 매우 작은 창문이므로 제외, 3층 로비 창문 3개소는 파손되지 않아 제외되었다. 또한 선원침실, 기사침실 등 소형 원형 스커틀 23개소 역시 유실방지 조치의 필요성이 없어 유실방지 조치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선박수색은 하루 평균 34척, 어선수색은 하루 평균 285척을 동원한다는 범대본의 보고에도 불구하고 유실방지 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세월호 특위는 국회 세월호 국정조사 특위 국회의원 및 실종자 가족과 함께 항공점검을 정기적으로 할 것을 제안, 범대본의 선체 외곽 유실방지 활동에 대한 점검에 나섰다.

이에 항공수색반의 항공기에 동승하여 관매도 남단 등 해안가 수색, 병풍도·맹골도 연안 탐색, 동거차도·서거차도 연안 탐색, 침몰지점 인근 중형기선 저인망 확인, 닻자망·안강망·낭장망 등 어망 수색 및 어망설치 구역 점검, 대형기선 저인망 확인, 사고해역 외곽의 유실방지 활동을 점검하였다. 그러나 항공수색을 점검한 실종자 가족의 대체적인 의견은 광범위한 사고 해역 외곽에 함정, 저인망 및 어선을 통한 유실방지 조치가 육안으로 확인하기에는 현저하게 부족하다는 것이었다. 실종자 가족은 항공기를 통한 유실방지 점검을 한 후에 오히려 '이래서야 유실방지가 가능하겠는가' 라고 탄식하며 실의에 빠지기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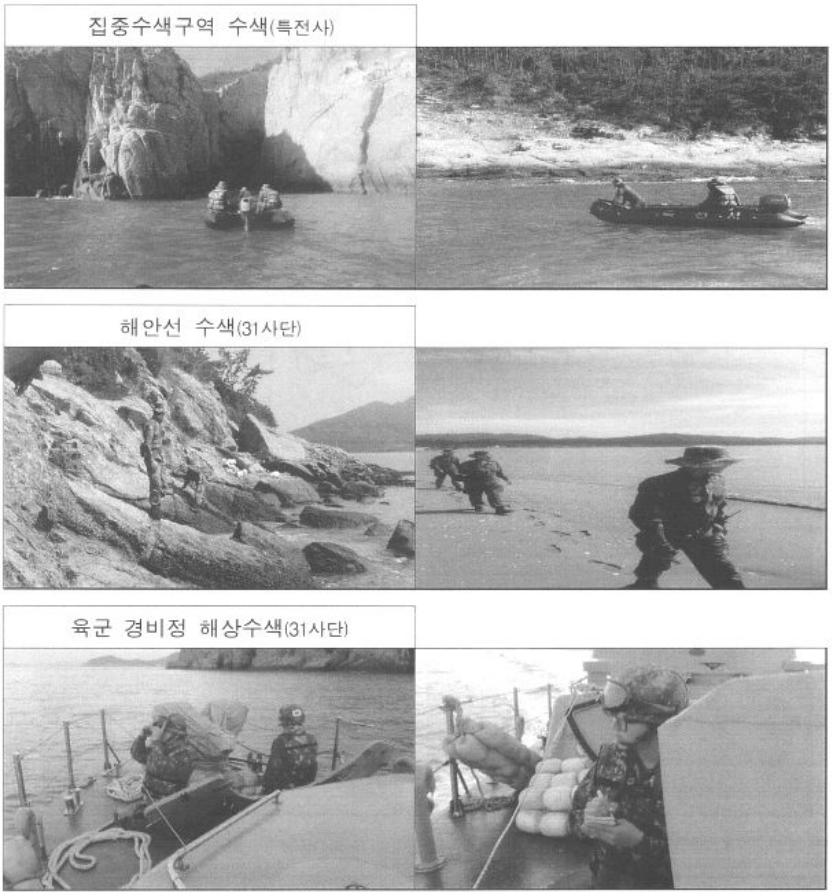
이에 세월호 특위는 대형기선 저인망을 확충할 것을 요청하고, 사고해역 인근 전체를 그물로 둘러싸야 한다는 실종자 가족의 의견을 유실방지TF에 전달하였다. 6월 8일 항공점검을 기준으로 안강망은 8척, 낭장망은 총 273척, 닻자망은 12척이 동원되어 유실을 막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설치구역은 조류의 흐름을 예측하여 일부 구역에 제한되었다. 실종자 가족의 요청에 따라 대형기선 저인망은 확충되었지만, 장마와 태풍이 6월말부터 시작되면서 기상악화 시 유실방지 보완대책도 필요했다. 즉 장마·태풍이 내습하면 안강망, 낭장망의 경우

유실 또는 파손으로 실효성이 없어 철거를 하고 대형기선·중형기선 저인망 역시 피항을 하기 때문에 유실이 우려되는 시기에 오히려 유실방지 조치가 어려운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따라 상시 유실방지를 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했고 범대본은 해결책으로 사고해점 북서 및 남서방향에 저자망을 보강하여 25km 구역에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하였다.



[항공기 수색구역 및 기관별 항공구역 할당도]

그러나 북서 및 남서방향에 저자망을 보강하는 것으로 장마·태풍 시기의 유실을 방지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따라서 실종자 가족과 세월호 특위는 선체 외곽 전 구역을 원형으로 둘러쌀 것을 제안하였고, 비용 문제를 이유로 설치에 난색을 표하는 유실방지TF 어선 수색반의 의견과 대립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비용을 이유로 유실방지조치를 형식적으로 한다면 그것은 기상 악화 또는 상시 유실방지 대책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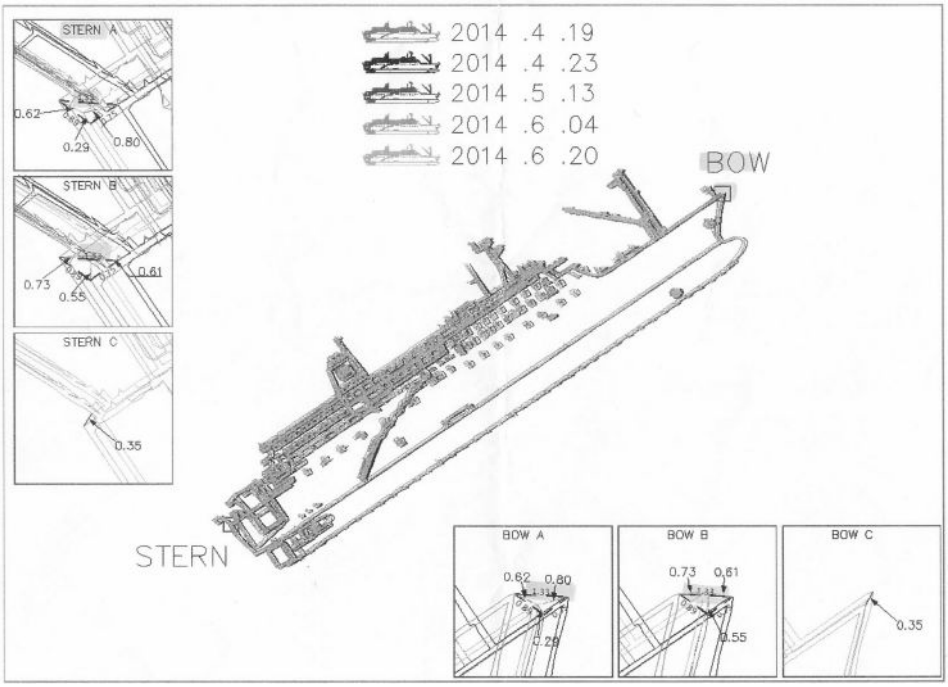
[해안도서수색, 해안선 수색 및 경비정 해상수색 사진자료]

실종자 가족과 세월호 특위는 보강조치를 강하게 요구하였고, 결국 유실방지TF는 이를 받아들여 25km가 아닌 40km 에 걸쳐 사고해역 인근에 원형으로 저자망을 공백구역 없이 설치하기로 결정하였다. 또한 세월호 특위는 태풍 내습 시 기상 악화로 항공점검도 불가능하게 되므로 투·양망 및 해안수색 활동을 동영상 및 사진자료로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유실방지TF는 이를 제작하여 실종자 가족에게 전달, 유실방지 대책에 대해 신뢰성이 제고될 수 있게 되었다.

(다) 해저유실 파악을 위한 영상탐사 및 멀티빔 음향측심기를 이용한 세월호 움직임 조사

범대본은 세월호 인근 해저에 가라앉아 있을 가능성이 있는 실종자를 파악하기 위해 해저 영상탐사를 민·관·연(해양조사원, 해양과학기술원, 해양환경관리공단) 합동으로 실시하였다. 해양조사선과 사이드 스캔 소나(Side Scan Sonar)를 활용하여 4월 29일부터 총 탐사 구역 856㎢ 에 대한 해저영상탐사를 실시하여 영상자료를 분석하였으나 희생자로 추정되는 영상은 발견되지 않았다. 한편 기상으로 인한 선체의 이동, 변화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멀티빔 음향측심기를 이용한 선체 이동 정밀조사를 실시하였는데, 6월 4일까지 4차례에 걸친 정밀조사 결과 세월호의 이동 및 침몰 진행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나 태풍이 내습한 후 실시된 7월 11일 정밀조사에서는 세월호의 선미가 남동쪽으로 약 3.5m 이동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수색이 장기화되고 동절기가 되면서 기상변동이 더욱 심하고 조류가 거세지면서 선체의 이동가능성이 부각되었고, 이는 동절기 수색방안으로 실종자 가족이 제안한 세월호 선체에 가이드터널을 설치하여 이를 통해 진입하는 수색방안의 채택 여부를 두고 논쟁이 되는 주요인이 되기도 하였다.[29]

29) 동절기 조류의 영향을 막기 위해 선체 외부 진입로에서 바지선까지 가이드터널을 설치한다 하더라도 선체가 기상여건으로 인해 흔들리게 된다면 가이드터널을 고정시킬 수 없고, 설치를 한다 하더라도 강조류로 인해 가이드터널의 파손 우려가 높아 잠수사들의 안전사고 가능성이 커지므로 현장지휘본부는 가이드터널 설치를 통한 잠수수색방안에 동의하지 않았다.



[기상악화 전·후 세월호 선박의 이동]

그러나 결과적으로 멀티빔 음향측심을 통한 총 4회에 걸친 정밀조사 결과 세월호 이동 및 침몰 진행이 6월 4일까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면 일찌감치 세월호 선체 진입로에 가이드 터널을 설치하여 조류나 정조시간에 영향을 받지 않고 잠수사가 가이드터널을 통해 입수하여 수색을 하는 방안이 도출될 수 있었다는 실종자 가족의 아쉬움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세월호 선체 내부는 조류가 거의 없으므로 내부로 진입이 가능하다면 선내 수색에는 문제가 없었으나, 선체 외부의 강조류로 인해 하루 4회의 정조 시간에만 수색을 위해 입수를 하여 수색시간이 하루 최대 4시간에 - 나이트록스의 경우 - 한정될 수 밖에 없었다.

마. 식사, 물품, 의류 등 실종자 가족 복지지원 및 건강지원 활동

세월호 참사가 100일을 넘어 장기화 되면서, 실종자 가족 및 자원봉사자에 대한 복지지원도 지속적으로 축소되기 시작했다. 특히 실종자 가족을 위해 팽목항 가족식당을 운영하여 급식을 지원하던 한국재난구호에서 정부의 지원 부족을 성토하며 사고 99일째인 7월 23일 철수의사를 표명하면서 세월호 특위는 이주영 장관과의 면담을 통해 정부의 지원 확대와 해결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편 세월호 특위는 사고 100일을 맞아 진도체육관과 팽목항을 찾은 정홍원 국무총리에게 실종자 가족 및 자원봉사자에 대한 복지 및 건강 지원을 요청하였고, 총리가 실종자 가족의 건강을 위해 특별한 신경을 쓸 것을 지시하겠다고 약속한 이후 원활하게 해결되는 듯하였으나, 8월 12일에는 자원봉사자에 대한 급식을 담당하던 대한적십자사의 배식 차량마저 철수하면서 실종자 가족의 시름은 깊어졌다.

총리 및 장관의 지시로 실종자 가족의 급식은 안산시 자원봉사센터를 통해 설치된 가족식당에서 해결되었지만, 50여명에 달하는 진도체육관 자원봉사자들에게는 사실상 대한적십자사의 배식차량이 유일한 급식 지원차량이었다. 실종자 가족과 세월호 특위는 자원봉사자에 대한 급식을 중단하는 대한적십자사의 철수에 대해 범대본에 강하게 항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한적십자사는 철수를 번복하지 않았다. 이에 실종자 가족과 세월호 특위는 봉사자들 역시 가족과 마찬가지라고 판단, 봉사자에 대한 급식 지원이 이루어질 때까지 함께 식사를 하지 않기로 하고 8월 12일 저녁부터 단식을 하기로 결정했다.[30] 이에 범

30) 대한적십자사는 예산 등의 문제로 더 이상 자원봉사자에 대한 급식을 할 수 없다고 하였으나, 10월 27일 열린 대한적십자사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김명

대본은 전라남도, 진도군을 통해 '하나님의 교회'에 급식지원을 요청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봉사자에 대한 급식지원을 하기로 결정하면서 8월 13일 부터는 대한적십자사가 아닌 하나님의 교회에서 급식지원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 또한 9월 19일에 봉사를 중단한다고 결정하였고, 팽목항 실종자 가족식당을 운영하던 한국재난구호 또한 9월 1일 철수하면서 실종자 가족 및 봉사자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복지지원의 문제가 시급한 현안문제가 되었다.



[팽목항에서 실종자 가족을 위한 음식을 준비하고 있는 이주영 장관]

세월호 특위는 팽목항의 경우, 임시방편으로 단원고 교사 및 교육부 장학사 등과 함께 팽목항 가족식당을 9월 10일까지 직접 운영하면서 실종자 가족에게 식사를 제공하였다. 이와 함께 팽목항 가족식당

연 의원은 적십자 총재에게 세월호 참사 현장의 지속적 급식 지원을 부탁했음에도 "자원봉사자는 못하겠다. 스케쥴이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밝혔다. 진도 급식차량 철수 이유에 대해 적십자사에서 밝힌 스케쥴은 국토순례단 급식지원이었다. 김 의원은 "연중 스케줄이 있겠지만 긴급하고 위중한 사태시 사업계획을 바꿔 투입하는 융통성을 발휘해야 했다."며 "재난구호차량을 그런데 쫓아가면서 써야겠냐."고 대한적십자사를 질책했으며 김성주 대한적십자사 총재는 "바로 시정하겠다."고 답변했다.

을 운영하기 위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하여 극동방송(이사장 김장환 목사)에 지원을 요청, 가족식당의 조리를 담당할 조리사의 급여를 지원받기로 하였다. 식자재의 수급에 있어서는 9월 10일까지는 해남 세월호 모임 등을 통해 지원을 요청하여 기본적인 식자재를 해결하고 부족한 부분은 세월호 특위의 지원금을 통해 식자재를 구입하였다.

그러나 임시방편으로는 실종자 가족의 건강 유지에 필수적인 급식 문제가 해결되기 어렵다고 판단, 범대본 본부장 이주영 장관과 면담하여 정부의 지원이 어려웠던 근본원인인 '특별교부세[31]' 해석의 문제를 해결하기로 하고 유관 정부부처가 모여 논의를 재개하였다. 특별교부세 지원을 통한 실종자 가족 복지 문제 해결은 7월 말부터 대두되었던 사안이나, 공무원의 잦은 교체와 감사 등 책임을 회피하려는 관료주의적 태도로 인해 특별교부세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논의만 쳇바퀴처럼 반복되고 있었다. 범대본의 핵심부서인 해양수산부는 적극적 태도를 보였음에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맡고 있는 안전행정부를 통한 지방교부세법의 유권해석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예산 지원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문제를 언론을 통해 공론화 하겠다는 세월호 특위의 지적이 지속되자 이주영 장관은 직접 관계 부처 회의를 주재하면서 문제의 해결을 도모하였다.

31) 특별교부세란, 중앙정부가 각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지방교부세 가운데 일정한 조건을 붙이거나 용도를 제한해 교부하는 재원으로, 재해로 인한 특별한 재정수요의 발생 또는 공공복지시설의 신설·복구·확장·보수 등의 사유로 인해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경우 등으로 그 용도가 제한되고 있다. 관련법은 지방교부세법으로, '안전행정부장관은 특별교부세를 교부하는 경우 민간에 지원하는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교부할 수 없다'는 지방교부세법 제9조 제6항의 해석이 문제가 되었다.

쟁점은 지방교부세법 제9조 제6항의 ‘안전행정부장관은 특별교부세를 교부하는 경우 민간에 지원하는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교부할 수 없다’는 규정의 유권해석이 문제가 되었던 것인데, 자원봉사자 및 실종자 가족에 대한 지원을 안전행정부는 ‘민간에 지원하는 보조사업’으로 해석하여 복지 지원을 위한 지출이 불가능하다고 보았던 것이다. 그러나 세월호 특위는 재해로 인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발생할 경우 특별교부세가 교부되는 것인데, 이를 재난·재해의 수습을 위한 사업으로 교부할 수 없도록 민간 지원 사업으로 본다면 특별교부세의 취지 자체가 몰각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한편 민간 지원 사업에 대해 교부가 불가능하다면 지자체가 직접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환하여, 봉사자 및 실종자 가족에 대한 복지 지원을 진도군이나 안산시에서 직접 담당하는 것으로 처리·결정하면 유권해석의 문제 또한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고 강조하였다.

특히 이주영 장관은 9월 18일 관계부처와 세월호 특위가 참석한 특별교부세 지원 문제에 관한 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적극적 유권해석이 도모되지 않는다면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한다는 헌법 제34조 제6항에 위배되는 위헌적 요소가 있음을 분명히 하였다. 한편 공무원의 관료주의적 태도에 대해 강하게 질책하면서, 감사원 감사 등이 문제될 경우 “모든 것은 범대본부장인 장관이 책임지며, 예산 지출 결의에 이주영이 서명할 것이니 모든 감사로 인한 지적은 장관이 받고 모든 책임을 내게 돌리라.”라고 단호하게 말하며, 그 자리에서 예산국장에게 지출 결의를 받도록 지시를 내리고 확답을 받아 비로소 특별교부세 지원의 문제가 2개월 만에 해결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실종자 가족 및 봉사자에 대한 급

식 등 복지지원에 대하여는 진도군 세월호 지원과에서 진도체육관의 봉사자 식당 및 팽목항 가족식당을 운영하도록 하고, 그 관리를 전라남도, 진도군, 안산시 자원봉사센터에서 맡으며 세월호 특위가 지원하는 체계로 정리하여 실종자 가족 및 자원봉사자에 대한 복지지원이 원활히 이행될 수 있게 되었다.

그 밖에 의류와 필요 물품 등도 수색이 장기화되면서 민간 지원의 손길이 끊겨 세월호 특위와 진도군 세월호 지원과, 범대본이 협력하여 실종자 가족에 대한 복지 지원을 이어나갔다. 세월호 특위와 자원봉사팀장은 필요한 의류와 물품 목록 등을 정리하고 세월호 광주대책위, 해남 세월호 모임, 성남시민원탁회의, 전교조, 진도군 교회 연합회, 극동방송 등에 물품 지원을 요청하였으며 범대본과 진도군 세월호 지원과 역시 그 과정에서 적극적 도움을 아끼지 않았다.

실종자 가족에게는 4월 16일의 참사가 매일 반복되고 있었다. 극심한 트라우마에 시달렸을 뿐만 아니라 정조시간이 새벽에 있을 때에는 실종자 발견에 대한 절박한 마음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아침이 되면 오전 9시 범대본 회의에 참석한 후 해경 단정을 타고 다시 사고해역 바지선으로 나가는 생활이 반복되면서 잠을 거의 자지 못하여 실종자 가족의 건강은 극도로 악화되어 갔다. 진도체육관에는 늘 등이 켜져 있었고 환기가 제대로 되지 않는 환경, 편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지 않았으므로 잠을 잔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피로를 풀 수 없었다. 바지선을 타고 사고해역까지 나가면서 배 위에 쓰러져 짧은 잠을 청하는 실종자 가족의 모습이 일상이 되었다.

실종자 가족의 건강이 악화되면서 태풍이나 장마, 기상여건의 악화로 수색이 어려운 날에는 목포한국병원, 목포한방병원 등으로 진료를 다녔고 특히 면역력이 약화되어 폐렴에 걸리는 것이 다반사였고, 입원과 퇴원이 반복되었다. 수색이 이어지는 기간 동안 실종자 가족은 링거와 약으로 버텨나갔고, 한 실종자 가족은 폐기종이 악화되었음에도 실종된 가족을 찾기 위해 이를 참고 견디다 결국 병원으로 이송되었는데 폐를 잘라내는 수술을 해야 한다는 진단을 받고 전남대병원에서 폐의 절반을 잘라내는 수술을 하는 일도 발생하였다. 뿐만 아니라 뇌에 종양이 있던 한 실종자 가족의 경우에도 수술이 필요함에도 수술을 거부하고 수색중단을 선언할 때까지 진도체육관을 떠나지 않고 딸의 발견을 애타게 기다린 사례도 있었다. 이러한 실종자 가족들의 건강을 돌보고 쓰러지지 않도록 지원하는 것 또한 세월호 특위의 주요한 과제였다.

극심한 트라우마의 극복을 위해, 구난업체인 슈미트사가 사고를 잊을 수 있는 프로그램의 마련을 해양수산부에 조언하였다는 점이 세월호 특위에 전달되었다. 실종자 가족의 의료 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나주병원 등의 의사 및 간호사들도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제안하였다. 이에 따라 세월호 특위 및 자원봉사팀은 조류나 기상여건 등으로 수색이 이루어지지 않는 날 병원 진료가 없는 실종자 가족을 모시고 진도의 세방낙조, 신비의 바닷길, 남도석성, 진도타워, 운림산방, 첨찰산 등을 다니면서 잠시나마 세월호 참사의 고통을 잊고 트라우마를 치유, 극복하고자 노력했다.

또한 실종자 가족의 병세가 악화되기 전, 이를 예방하는 정기적 건

강진단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2차례에 걸쳐 건강검진을 받고, 특히 그중 1회는 보건복지부, 교육부, 해양수산부, 안산시 등 관계부처와 협조하여 정밀건강검진을 받도록 하였다. 한편 실종자 가족의 체력이 극도로 약화될 때 사고해역의 바지선이나 단정으로 이동하는 과정 등에서 쓰러지는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링거를 맞는 일이 빈번하였는데, 국방부를 통해 지원되던 기존 수액이 기본적인 영양만을 공급하고 있다는 제보를 듣고 국무총리실에 요청하여 아미노산, 자일리톨, 아스파라긴산, 글루타민산 등 21가지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는 영양제 수액을 제공받아 실종자 가족에 투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과정에서 정홍원 국무총리는 실종자 가족을 위해 고가의 영양제 수액을 사비로 구입하여 진도체육관과 팽목항으로 보내주는 등 가족을 걱정하는 마음을 아끼지 않아 감동을 주기도 하였다.

바. 국회 세월호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와의 연계 활동

여야는 세월호 참사 이후 사고의 수습과 진상 규명, 대처 과정에 대해 재난안전관리 특위를 설치하자는 안(여당안)과 국정조사, 특검, 청문회를 실시하자는 안(야당안)으로 맞섰다. 여당은 애초 국정조사나 특검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정치공세라며 야당안을 거부하였으나, 5월 8일 여당 원내대표로 선출된 이완구 원내대표가 “특검이든 국정조사든 할 것”이라 밝히고, 같은 날 야당 원내대표로 추대된 박영선 원내대표 역시 “제일 시급한 것은 세월호 국회를 여는 일”이라면서 참사수습 및 진상규명을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함에 따라 5월 11일 원내대표 회동을 열어 세월호 참사 후속대책 마련을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하기로 하고, 국정조사 실시에도 원칙적으로 합

의했다. 이에 여야는 5월 21일 '세월호 침몰사고의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하고, 5월 25일 여야 9명씩 18명으로 구성되는 '세월호 침몰사고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이하 국조특위)의 인선을 마쳤다.[32] 이에 국회는 5월 26일 세월호 국조특위 첫 회의를 열면서 세월호 국정조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하게 되었다. 국회에서 개최되는 첫 회의에 대한 기대로 안산과 인천 등에서 150 여 명의 유가족 등이 국회를 방문하였으나, 증인채택 문제에 관한 여야의 이견으로 국정조사 계획서 채택이 난항을 겪으면서 국조특위는 활동 시작부터 유가족의 분통을 터트리게 만들었다. 세월호 가족대책위 150여명은 국정조사 특위가 합의를 도출해 가동을 시작할 때까지 국회를 떠날 수 없다며 국회 대회의실에 남아 여야의 조속한 합의를 촉구했다. 유가족들과 세월호 특위는 혹시 모를 불상사를 방지하고, 국회와 세월호 피해자들을 중재하기 위해 세월호 특위 공동 위원장들과 위원들이 피해자와 함께 하게 되었다. 그리고 세월호 가족대책위는 5월 26일 오후 여야 지도부와 면담을 가진 데 이어 국정조사 계획서 채택이 난항을 겪자 국회에서 철야농성에 들어갔다.[33]

---

32) 새누리당은 5월 23일 심재철 의원을 위원장으로, 조원진 의원을 간사로, 권성동, 김희정, 경대수, 김명연, 박명재, 윤재옥, 이완영 의원을 위원으로 선임하였다. 이후 여당은 김희정 의원이 선주협회 지원으로 외유성 해외시찰을 다녀왔다는 것이 문제되자, 지방선거 지원이 시급하다는 이유로 김희정·박명재 의원을 신의진·이종훈 의원으로 교체하였다. 새정치연합은 김현미 의원을 간사로 하고, 우원식, 김현, 김광진, 민홍철, 박민수, 부좌현, 최민희 의원과 정의당 정진후 의원을 위원으로 선임했다.

33) 유가족들은 이날 국회에 △ 즉각 국정조사 특위를 가동해 철저한 진상규명 △ 모든 조사 대상·증인·자료 공개 및 이를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을 채택해 성역 없는 투명한 국정조사 실시 △ 국정조사 특위 조사 대상·증인·자료 공개 등을 사전 협의해 본회의와 특위 같은 날 개최 △ 국정조사 특위 업무 개

세월호 특위 위원들과 유가족의 57시간에 걸친 국회 농성과 진통 끝에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계획서가 5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정조사 계획서에는 청와대 비서실장의 기관보고가 명시돼 여야가 증인채택 여부를 놓고 갈등을 빚어온 김기춘 비서실장의 출석에 있어서 '기관(비서실)의 장이 보고한다' 는 형태로 절충안을 마련해 사실상 국정조사에 출석하게 되었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한 청와대 비서실도 기관보고 대상에 명시됐다. 세월호 국조특위는 먼저 6월 2일부터 11일까지 10일간 사전조사를 실시한 뒤 8월 30일까지 90일간 활동하기로 하였다.

(1) 국조특위 진도 참사현장 방문 및 공동선언문 채택

이에 따라 국회 국조특위는 실종자 가족의 의견을 최우선으로 청취하여 반영하기 위해 첫 활동으로 6월 2일 진도를 방문하고, 사고해역의 바지선에 올라 수색·구조 상황을 조사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여당 의원들이 '유가족들의 요청' 을 이유로 5일로 일정을 연기했다며 6월 2일 방문을 유보하고, 야당 의원들은 "유가족들도 요청하지 않은 일방적인 결정" 이라고 반발하며 계획된 바에 따라 6월 2일 단독으로 진도체육관과 팽목항을 방문하여, 첫 일정부터 국조특위 활동은 순탄치 못하였다. 이에 관하여 여야의 대립이 격화되자 세월호 특위는 기자 브리핑을 통해 그 과정을 해명하여 세월호 참사의 수습을 위해 여야가 하나가 되어 줄 것을 촉구하였다.[34] 세월호 특위는 6월 5일 여야가 함께 진도를 방문할 것을 재차 요청함과 동시에 원활한 국조특위 활동을 위한 '국회 국조특위 공동선언문' 을 준비하여 여야에

시 동시에 진도 실종자 가족 목소리 최우선 청취 등을 요구했다.

34) 참고자료 2-16. 세월호국조특위여당불참에대한입장

제안하였다. 이에 여야는 6월 5일 진도체육관에서 유가족 및 실종자 가족과 간담회를 열고 진도에 국조특위 현장본부를 설치하여 실종자 수색을 지원토록 하는 등 세월호 특위가 제안한 총 10개항의 내용이 담긴 국조특위 공동선언문을 채택, 6월 8일 국회 정론관에서 유가족과 함께 이를 발표하였다.[35]

(2) 국조특위 진도 현장본부 설치 및 연계 활동

특히 국회 국조특위는 위 공동선언문을 채택하면서 '해답은 현장에 있습니다' 라고 강조하였고, 국조특위 현장상황실을 진도체육관에 설치하여 특위 위원이 상주하여 실종자 가족들의 목소리를 상시 경청하고 수색, 구조를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가 책임 있게 실행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다하겠다고 약속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 국조특위는 조사일정에 있어서 계속된 이견을 보여, 국정조사의 파행이 우려되었다. 실종자 가족들은 공동선언으로 하나될 것을 약속한 여야에 대한 희망이 모래성처럼 무너지고 있다며, 국조특위의 정상가동을 간절히 희망하였다. 세월호 특위와 실종자 가족들은 참사 현장에서의 충실한 사전 조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국조특위는 의미가 없다고 판단하고, 국회 행정실에 국조특위 위원의 현장 상주와 상황실 설치를 직접 요청하였으나 돌아오는 대답은 '기다리라' 는 것이었다. 실종자 가족들과 세월호 특위는 '기다리라' 는 세월호 선내 방송으로 죽음을 맞이해야 했던 현실과 정쟁으로 치닫는 국회의 현실이 다르지 않다고 여기고, 국회가 국조특위 현장상황실을 만들 의지가 없다면 실종자 가족이 직접 '세월호 국조특위 상황실' 을 만들고 국회의 응

35) 참고자료 2-17. 국회세월호국조특위 세월호가족대책위원회 공동선언문 (2014.06.08.)

답을 기다리기로 했다.

이후 세월호 특위는 6월 10일 진도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의 태도를 질타하며 공동선언문의 책임있는 이행을 강력히 촉구하였다[36]. 이에 여야는 세월호 특위가 기자회견을 개최한 다음 날인 6월 11일 여야 국조특위 위원 각 1인(새누리당 김명연 의원, 새정치연합 부좌현 의원) 및 입법조사관 1인을 진도로 파견하여 진도 국조특위 상황본부에 상주토록 함으로써 실종자 가족들과 함께 연계하여 활동을 펼치도록 지원하였다.

국조특위 현장본부에 여야 국조특위 위원들이 배치되면서 세월호 특위, 실종자 가족과 국조특위 김명연, 부좌현 의원은 매일 저녁 9시 국조특위 회의를 통해 실종자 수색구조에 관한 현안문제를 토의하고 범대본에 개선을 촉구하는 활동을 펼쳐나갔다. 국회의원들이 범대본 회의 및 수색구조TF, 유실방지TF 회의에 참여하면서 정부도 더욱 긴장하며 문제를 서둘러 해결하려 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으며, 실종자 가족 역시 국회의원들이 진도에서 숙식을 함께하며 곁에서 고통을 나누고 위로하며 수색·구조 활동을 보조함에 따라 마음의 안정을 찾아나갔다. 특히 국조특위 진도 현장본부에 파견된 두 의원은 i) 안산을 지역구로 두고 있어 실종자 가족뿐만 아니라 유가족들의 트라우마 치유에도 관심을 쏟고[37], ii) 사고해역 바지선에 여러 차례 승선

36) 참고자료 2-18. 세월호특위기자회견문(2014.06.10.)

37) 이와 관련, 6월 26일 실종자 가족과 함께 사고수습을 위해 노력하던 진도경찰서 故김태호 계장이 진도대교에서 투신하여 자살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자 故김태호 계장의 사고가 참사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의 심리적 트라우마에 기인한 것이므로 순직자로 예우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대책마련을 호소하였고, 이를 계기로 실종자 가족과 함께 진도·안산시민 및 참사수습 공

하여 수색·구조 활동에 긴장감을 불어넣고 감시자의 역할을 하며 수색구조 개편에 적극적인 목소리를 냈으며 iii) 실종자 가족과 함께 유실방지 항공 점검활동에 함께 나서며 유실방지 대책의 보완을 촉구하였을 뿐만 아니라 iv) 장마·태풍이 내습하는 시기에 정부에서 조기 수습을 위한 대안을 마련토록 촉구하는 한편 v) 실종자 가족 건강·복지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 식사개선, 장마대비 진도체육관 환경개선, 실종자 가족 지원 약국 축소 문제 대응 등 다방면의 개선책을 이끌어내는 적극적 활동을 펼쳤다.

세월호 특위는 이 과정에서 실종자 가족의 요청사항이 여야 국조특위 위원들에게 원활히 전달되도록 하고 진도 국조특위 회의의 안건사항을 상정하여 여야가 해결책 마련을 위해 함께 토의하고 하나된 목소리로 활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문회도 열리지 못한 채 8월 30일 국회 국조특위의 활동 기간이 만료되면서 여야 국회의원들의 국조특위를 통한 실종자 가족 지원활동도 마무리되는 안타까운 상황을 맞이해야 했다. 이후 여야의 세월호 참사수습을 위한 노력은 세월호 특별법 제정 협상으로 이어졌다.

사. 세월호 선내 CCTV 증거보전 활동(부식방지조치, 실물보전, 증거보전절차 등)

세월호 참사 68일째인 6월 22일 23:40경, 언딘 바지선으로 DVR’이라 적힌 기계장치가 인양되어 마대자루에 담겨 바지선 구석에 방치되었다. 세월호 가족대책위 영상기록단이 이를 발견하고 6월 23일 새벽

무원들에 대한 적극적인 심리 트라우마 치유방안의 수립을 촉구하였다. (참고자료 2-19. 진도경찰서 김태호 정보계장 호소문(20140628))

진도에 상주하고 있는 세월호 특위 변호사에게 연락을 취하였다. 영상기록단은 그 날 바지선에서 잠을 잤고, 이상한 물체가 올라와 마대자루에 담겨 어딘가로 이동되는 것을 보고 이를 찾아 마대자루를 열어 전자장치로 보이는 물체를 확인한 것이다. "뭔지 모를 전자장치가 올라왔다. DVR이라고 써있으며 사진을 찍어두었다." 라는 연락을 받은 세월호 특위는 이것이 세월호 선내 CCTV 영상을 저장하는 장치라 추정, 가족대책위와 상황을 공유하고 집행부가 진도로 내려올 것을 요청했다. 또한 곧바로 검경 합수부로 연락을 취해 DVR 장치의 이동경로를 추적하였다. 한편 검경 합수부에는 DVR에 대해 실종자 가족의 참관 동의 및 변호사 입회 하에 진행되는 검사의 지휘 없이는 장치에 손을 대거나 현상에 어떠한 변경도 가하여서는 아니되며, 변호사가 이를 확인하고 실물 보전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DVR은 언딘바지선에서 해경 1007함을 거쳐 해경 P-39정을 통해 진도파출소로 이동되었고, 최종적으로 목포해경에서 관장하는 목포전용부두에 위치하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한 세월호 특위는 먼저 실종자 가족 3명과 함께 목포부두로 출발하여 6월 23일 18시 30분경 선체에서 인양된 DVR 1점 및 노트북 1점, 디지털카메라 1점을 확인하였다. 뒤이어 19시 30분경, 세월호 특위의 긴급 요청을 받은 가족대책위 집행부가 목포부두로 도착하여 실물을 확인하였고, 가족대책위는 의외로 깨끗한 DVR의 상태를 본 후 사전에 DVR을 분해하여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지를 검경 합수부에 집중 추궁하기도 하였다. 가족대책위는 이를 곧바로 인계받고자 하였으나, 세월호 특위는 유가족이라 하더라도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인계를 받을 경우 유실물 처리 절차

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분해 및 복구와 관련하여 법원의 증거보전절차를 통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인계가 아닌 봉인 후 부식방지조치를 취하는 것이 현 시점에서 가장 시급한 일임을 가족들에게 설명하였다. 이에 따라 세월호 특위는 우선 DVR에 대해 실종자 가족, 유가족, 검경 합수부, 변호사의 참여 하에 봉인조치를 취하는 한편 안산 및 진도에 상주하는 변호사 간의 소통을 통해 부식방지조치를 준비하기로 하여 대한변협포렌식팀을 담당하고 있는 김인성 교수에게 연락을 취하고, 법원에 증거보전을 신청을 하기 위한 준비에 나섰다. 또한 6월 24일 13시 진도군청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세월호 특위 및 유가족들이 DVR의 증거보전에 나설 것임을 공표하였다.[38]



[인양 후 바지선 마대자루에 담겨있는 DVR, 옆에 폐기물 포대가 보인다]

봉인을 하기 전, 검경 합수부에 부식방지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를 질의하였으나 준비된 것은 전혀 없었다[39]. 하드디스크가 부식되는 것

38) 참고자료 2-20. 세월호특위기자회견문(2014.06.24.
39) 컴퓨터 하드, 휴대폰, 카메라 메모리 등의 경우 물에서 나와 공기를 접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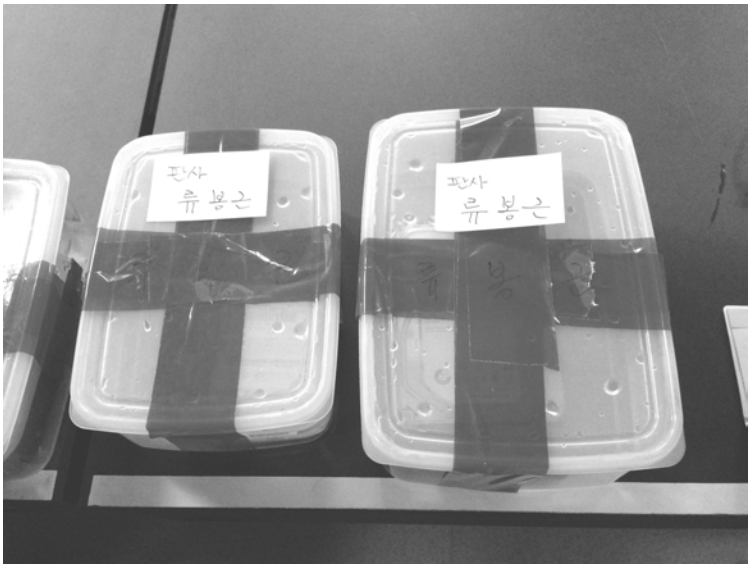
을 막기 위해 세월호 특위는 포렌식팀을 급파, 김인성 교수가 6월 24일 오전 부식방지를 위한 탈이온수 등의 장비를 갖추어 목포부두로 도착하였고 검경 합수부 검사 및 세월호 특위 변호사, 유가족, 범대본 해양수산부 담당자가 입회한 상태에서 검사의 지휘로 6월 24일 15:00경 DVR 및 노트북, 디지털카메라에 대한 분해 및 하드디스크와 메모리에 대한 부식방지조치가 취해졌다. 그 자리에서 검경합수부는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DVR에 대한 복구에 나설 것을 밝혔다.

한편 6월 23일 밤, DVR에 대한 봉인조치를 취한 후 세월호 특위는 곧바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이하 목포지원)에 긴급 증거보전신청을 하기 위해 신청서를 작성하여 6월 24일 12시경 접수하였다.[40] 같은 날 15:00경 부식방지조치를 완료한 상태에서 목포지원을 방문해 면담을 통해 법원에서 증거보전절차를 개시하는 것의 중요성을 절박한 심정으로 호소하였다. i) 1분 1초가 지나고 있는 이 시간에도 하드디스크에 대한 부식이 진행되고 있으며, ii) 이 증거가 멸실될 경우 세월호 안에 있던 아이들의 마지막 모습, 사고의 단서가 될 수 있는 모든 것이 사라질 뿐만 아니라 iii) 시간이 지체될수록 복원의 가능성은 현저히 낮아진다는 점을 강조하고, 국가적 대참사의 진상조사를 위한 중요증거가 복원될 수 있도록 유가족들과 함께 목포부두 현장기일을 조속히 열어줄 것을 요청했다.

순간 부식과 손상이 시작되기 때문에 부식방지조치는 신속해야 한다. 이처럼 1분 1초가 아까운 순간임에도 불구하고 DVR이 수색 바지선 위로 인양되었을 때부터 목포부두로 옮겨질 때까지 취해진 조치는 전혀 없었다. 유가족과 실종자 가족들은 참사의 가장 중요한 단서가 될 CCTV 파일이 저장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DVR에 대해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고 방치했다는 것은 곧 검경 합수부가 증거를 인멸하려고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하였다.

40) 참고자료 2-21. 증거보전신청서-목포지원(DVR)(20140624)

목포지원은 증거보전신청을 받아들여 이례적으로 신청 당일인 6월 24일 19:30 증거보전절차의 개시를 위해 목포부두 현장으로 방문하여 신청 상대방(피신청인)인 해양경찰청장에게 구두로 통지를 하고 증거보전기일을 진행하게 되었다. 검경합수부는 부식방지조치를 취한 이후 곧바로 압수수색영장을 청구, 영장을 발부받아 DVR을 압수하기 위해 6월 24일 20시경 목포부두에 도착하였다. 그러나 30분 전인 19시 30분 목포부두 현장에서 증거보전기일이 개시되었으므로 신청인, 피신청인이 아닌 검사가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현장 법정에 들어올 수 없다고 판단한 재판부는 검사의 퇴정을 명하였다.



[목포부두 증거보전 현장기일 후 봉인 후 인계된 CCTV 하드디스크]

세월호 특위는 증거보전신청서에 기하여 신청사유를 변론하였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CCTV 하드디스크에 대한 증거를 보전하기로 결정, 검경합수부로부터 점유를 인계하고 복구를 개시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복구 담당자로는 청주에 위치한 데이터복원 전문업체 (주)명

정보기술과 김인성 교수가 선정되었고, 이에 DVR의 점유가 인계되어 6월 24일 22시경 복원장비가 있는 청주로 출발하여 6월 25일 01시경 복원업체에 도착, DVR에 대한 복구가 시작될 수 있게 되었다. 증거보전절차에서 세월호 특위는 복구 과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유가족들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요청하였고, 이에 법원은 ①신청인인 유가족 측 5인, 피신청인 해경 측 4인이 복원절차를 참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②절차진행의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복원의 전 과정을 녹화하여 법원에 제출할 것을 명하였다.

(1) 제1차 검증기일과 '국정원 지적사항' 문건의 발견

CCTV 영상이 담겨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DVR 하드디스크의 복원은 순탄치 아니하였다. 복구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하드디스크 세척작업은 반복에 반복을 거듭하였고, 디스크에 스크래치와 흠이 발견되어 복원이 어려울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기도 하였다. 세월호 가족대책위는 해당 장비에서 영상이 복원되면 세월호 침몰 과정에서의 선원과 해경의 과실 입증, 실종자의 마지막 존재 위치 확인 등을 통해 진상규명과 실종자 수색에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였다.

복원은 예상보다 오래 걸려 유가족, 실종자 가족의 마음을 애타게 만들었다. 반면 DVR과 함께 발견된 노트북 1점과 디지털카메라 1점에 대한 복원이 먼저 완료되어 7월 25일 목포지원에서 열린 제1차 검증기일에서는 노트북 하드디스크와 디지털카메라 메모리에 대한 검증이 진행되었다. 노트북은 파일의 종류와 내용으로 미루어 세월호 선원의 것으로 추정되었는데, 특이한 점은 파일 중 '국정원 지적사

항’이라는 문건이 발견되었다는 점이다. 국정원 지적사항 파일은 2013년 2월 27일에 기록된 것으로, 세월호의 증·개축 후 출항[41]한 2013년 3월 15일과 가까운 시기의 지적사항을 담고 있었다. 이와 같은 국정원 지적사항이 선원 노트북에서 발견되자 세월호 유가족들은 세월호 증·개축 및 출항과정에서 국정원이 개입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였다[42]

세월호 선원 노트북에서 발견된 ‘국정원 지적사항’ 문건에는 구체적으로 갤러리룸(전시실) 천정칸막이 및 도색작업, 자판기설치, 분리수거함 위치선정, 오락실 바닥 타일 교체, 레스토랑 및 편의점 유리파손면 썬팅 보수, 화장실 타일 및 변기 공사, 샤워실 누수용접 및 배수구 작업, CCTV 추가 신설작업, 안내방송 멘트 준비, 해양안전수칙 CD준비, 조리실 내부 출입문 도색작업, 천정등 수리, 침대등 불량 교체, 객실내 입구 바닥장판 파손 불량 등 세월호에 대해 100여건에 이르는 매우 상세한 작업내용이 기록되어 있었으며, 작업자까지 조목조목 적혀있었다. 세월호 가족대책위는 ‘국정원 지적사항’ 문건의 작성 시기와 내용을 미루어 “청해진해운이 세월호를 구입하고 증개축한 것에 국정원이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고 주장했다. 또한 가족대책위는 “국정원이 문건을 통해 직원들의 3월 휴가계획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2월 작업수당 보고서까지 작성하도록 하고 있는 점에 미루어 ‘이러한 정황은 세월호의 소유주가 아니면 관심을 갖지 않는 내용’이므로 국정원이 세월호의 실소유주이거나 세월호의 운항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합리적으로 추정하게

41) 세월호는 2012년 10월 청해진해운이 일본에서 127억 원에 사들여 와 2013년 2월까지 51억원을 들여 증개축 했다. 그리고 세월호는 2013년 3월 15일 첫 출항을 하게 된다.
42) 참고자료 2-22. 국정원 지적사항(20130227)

할 수 있는 것” 이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국정원은 이에 대해 세월호의 국가보호선박 지정을 위해 2013년 3월 18일부터 20일까지 세월호 보안측정에 참여해 7가지 문제를 지적했으며 그 결과를 4월 11일 해양수산부(비상계획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43] 그러한 해명이 증거보전 검증기일에서 복원된 ‘국정원 지적사항’의 내용과 부합하는지 여부는 향후 세월호 특별법을 통한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 과정에서 면밀히 조사되기를 기대한다.

(2) 제2차 검증기일과 CCTV 영상 복원

세월호 선체에서 DVR이 인양된 6월 22일로부터 2달이 지난 8월 22일 마침내 목포지원에서 제2차 검증기일이 열려 복원에 성공한 CCTV의 영상이 유가족 및 실종자 가족에게 공개되었다. 세월호 특위는 유가족, 실종자 가족 다수 참여에 대비하여 미리 재판부와 조율하여 충분한 좌석을 확보하고 Full HD 48인치 모니터 2대를 통해 CCTV 영상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검증기일 CCTV 영상을 보며 가족들이 실신할 것에 대비하여 119 구급대를 준비시키고, 재판부에 양해를 구하여 해군 군의관 및 간호장교가 비상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다. 기일에는 50여명의 유가족 및 실종자 가족이 참여하여 긴장감이 흘렀고, 복원전문가로 지정된 김인성 교수가 CCTV의 영상 상영을 진행하였다. 유가족 및 실종자 가족은 자신의 아이들을 확인하는 순간 오열하였으며, CCTV가 상영되는 동안 계속된 흐느낌과 눈물은 그칠 줄을 몰랐다. 시간의 한계로 인해 법원에서는 2시간여 동안의 CCTV 영상을 확인하였으며, 기타 잔여분량의 영상은 복원된 CCTV 파일을 열

43) 참고자료 2-23. 국정원세월호증개축개입주장관련입장(2014.07.25.)

람・복사 형태로 제공받기로 하여 검증기일은 종료되었다. 그리고 실종자 가족이 가장 먼저 영상을 확인하여 실종자의 마지막 위치를 찾아 추정할 수 있도록 8월 23일 진도체육관 가족상황실에 CCTV 영상 확인 프로그램이 설치되었다.

CCTV 영상의 복원에 성공한 것은 큰 성과임에 분명했지만, CCTV는 해양수산부가 밝힌 변침 시각인 4월 16일 08:49 이전인 08:30:59에 중단되어 있었다. 이에 대해 복원업체와 언론은 정전 때문이라고 밝혀 중단 원인이 논란의 중심이 되었다. 이후 세월호 특위는 생존학생의 증언을 청취하여 해당 시간에 정전이 없었다는 점을 재차 확인하였으며, 그렇다면 그 시간에 누군가가 CCTV를 껐거나 DVR의 전원장치를 차단했다는 추론도 가능했다. 한편 DVR 하드디스크에서는 08:33:38초에 마지막으로 기록된 로그파일이 발견되었고, 가족대책위가 CCTV 영상 파일을 분석 의뢰하여 실제 시간과 CCTV에 녹화된 시간과의 차이를 확인한 결과 15분 21초의 오차가 있는 것이 밝혀졌다. 그렇다면 CCTV는 변침 시간인 08:49에 전원이 차단되었다는 결론이 되어 변침을 하면서 DVR 장치가 바닥에 떨어져 전원이 차단되었을 가능성도 유력하게 대두되었다.



[복원된 세월호 CCTV 64개의 영상 캡쳐]

그러나 만약 DVR 장치가 바닥에 떨어지지 않았다면 변침하면서 CCTV 영상이 저장되는 DVR의 전원을 고의적으로 차단하는 것도 가능한 바, 세월호 특위는 DVR을 인양할 당시의 수색 동영상 및 잠수기록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9월 4일 세월호 특위 변호사가 수색 바지선에 올라 DVR을 인양한 해군의 잠수기록지 제출을 요청, 잠수기록지를 전달받았으나 수색 당시의 촬영 영상은 '녹화 후 삭제' 라고 기록되어 있었고, 영상을 삭제하였으므로 직접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한편 잠수기록지에는 '본체 전선분리' 라고 적혀있어 DVR 본체가 원래 위치에 그대로 있었을 가능성이 높아 CCTV 전원 고의차단 여부에 관한 의혹의 해명 또한 추후의 과제가 되었다.[44] 이에 대한 부분은 진상조사단의 활동 내용에서 자세히 다루기로 한다.

세월호 특위는 세월호 민관군 합동구조팀에도 CCTV 영상파일을 전

44) 참고자료 2-24. DVR인양해군잠수기록지(2014.06.22.)

달하여 잠수사들의 확인을 통해 선체 내부 수색구역에 관한 구조를 이해하고, 실종자의 마지막 위치를 확인하는 참고가 되도록 하였다. 실종된 권혁규 어린이의 경우 3층에서 4층으로 올라가는 모습이 마지막으로 목격되었으며, 실종자 이영숙씨는 식당 옆 카페에서 마지막 모습이 발견되었다. 또한 실종된 양승진 선생님과 고창석 선생님은 로비에서 목격되는 등 CCTV에 담긴 실종자의 마지막 모습은 실종자 가족들을 더 깊은 슬픔에 잠기게 하였다. CCTV의 확인으로 실종자 가족들의 트라우마는 더욱 심해졌으며, 이를 바라보는 진도체육관 자원봉사자 및 세월호 특위의 아픔도 더해졌다.

아. 시민사회와의 연대 형성, 진도 방문 조율 및 실종자 가족에 대한 조력

세월호 참사 100일이 가까워지면서 진도체육관과 팽목항에 머무르는 실종자 가족들의 고립은 점차 커져갔다. 참사 70일째 故 윤 모 단원고 학생이 발견되고, 참사 94일째 세월호 조리사인 故 이 모 씨가 발견되면서 실종자의 수는 10명이 되었으며 진도에 머무르는 실종자 가족은 약 20여명에 불과하여 진도체육관에는 적막이 흘렀고, 진도군민들은 문화·체육의 중심인 진도체육관을 실종자 가족들이 비워주기를 원하였다. 반면 시신을 찾은 세월호 유가족들은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해 국회, 안산, 광화문 등지에서 농성을 지속하였으므로 실종자 가족과 함께하기 위해 진도에 내려올 수 있는 인원은 거의 없었다. 세월호를 취재하던 기자들 역시 거의 철수한 상태로, 진도군청에서 기자 브리핑을 하여도 취재를 위해 오는 기자들의 수는 계속 줄어들었다.

이에 진도의 실종자 가족들은 국민들에게 잊혀지며 고립될 것을 두려워하였다. 탈진한 극소수의 실종자 가족들이 대응할 여력은 없었으므로 세월호 특위는 오직 국민의 힘만이 수색을 이어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라 판단하고, 시민·사회단체 및 정치·종교·문화계 등 각계각층 인사, 일반 국민들이 진도를 방문하여 실종자 가족들과 연대를 형성하여 정부의 수색 지속을 견인하고자 하였다.

(1) 진도군민들과 함께한 '실종자 100일의 기다림' 행사 기획·개최

세월호 특위는 먼저 '세월호 참사 진도군 범군민대책위원회'와의 논의를 통해 진도군민과 실종자 가족이 함께하는 참사 100일 행사를 기획하여 다시 한 번 세월호 참사를 국민들이 기억하고, 수색을 지속하기 위한 우호 여건을 조성하고자 하였다. 진도군 역시 세월호 참사로 입은 피해가 약 900억원에 달하는 등 참사로 인한 고통을 겪고 있었던 바, 세월호 특위는 실종자 가족과 함께 정부에 충분하고 실질적인 진도군민에 대한 보상과 지원을 촉구하고 나서는 등[45] 진도군민과

45) 진도군민들과 100일 행사를 함께 준비하는 가운데, 7월 18일 진도를 찾은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에게 실종자 가족과 세월호 특위는 "실종자 가족이 진도에 머무를 수 있는 것은 진도군민들이 고통을 감내하며 도와주시고 있기 때문이므로, 진도 군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조치를 마련해달라"고 건의하였으며, 정 장관은 "진도의 경제적 어려움이 실종자 가족에게 전가되어서는 안 된다. 전남도와 진도군 등 관련 기관과 협의해 방안을 찾겠다"고 답했다. 또한 세월호 특위는 국무총리실에 진도에 대한 실질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정홍원 총리의 진도 방문 때 진도군에 정부의 지원책을 설명해 줄 것을 호소하였다. 총리실은 이와 같은 실종자 가족의 요청에 화답하여 참사 100일째인 7월 24일 정홍원 총리가 진도를 찾아 실종자 가족을 위로하고, 진도군청에서 진도군민들에게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하고 구체적 방안을

의 유대관계를 특히 강화하고자 하였다.

참사 99일째인 7월 23일 팽목항에서 열린 '100일의 기다림 전야제'에는 200여명에 달하는 국민들이 전국에서 버스를 타고 참여하였고, 세월호 특위는 실종자 가족을 대표하여 참가자들에게 실종자 가족과 함께하여 줄 것을 호소하였다.[46] 그리고 참사 100일을 맞는 7월 24일 진도 팽목항에서 진도군민들과 실종자 가족이 함께하는 '실종자 100일의 기다림' 행사가 개최되었다. 이 자리에는 이동진 진도군수, 주선종 진도군의회의장, 부좌현 국회의원, 진도군민, 실종자 가족 등 300여명이 참석하였고, 특히 단원고 학생들의 희생을 아파하는 진도고등학교의 학생들 100여명이 참석하여 편지를 낭독하고 노란 풍선 100개를 하늘로 날려 보내며 눈물로 실종자가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것을 기원하였다. 참사 100일을 조명하는 다수 국내외 기자들의 취재가 이어졌고, '100일의 기다림' 전야제에 참석한 국민 100여명과 실종자 가족의 첫 만남도 참사 100일째인 7월 24일에 이루어졌다. 국민들과 실종자 가족은 서로 무릎을 꿇고 마주앉아 참사의 고통을 나누었다. 진도군민과의 연대, 국민들과의 연대가 형성되며 실종자 가족들은 아직 국민들이 세월호를 잊지 않고 있다는 안도감과 함께 국민들과 함께 수색을 이어나갈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게 되었다.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처럼 세월호 특위와 실종자 가족이 진도군민을 위한 적극적 호소를 이어나가면서 진도군민들과의 유대관계 및 신뢰가 강화되어 실종자 가족은 진도체육관에 계속 머무를 수 있게 되었다.

46) 참고자료 2-25. 세월호실종자가족팽목항기자회견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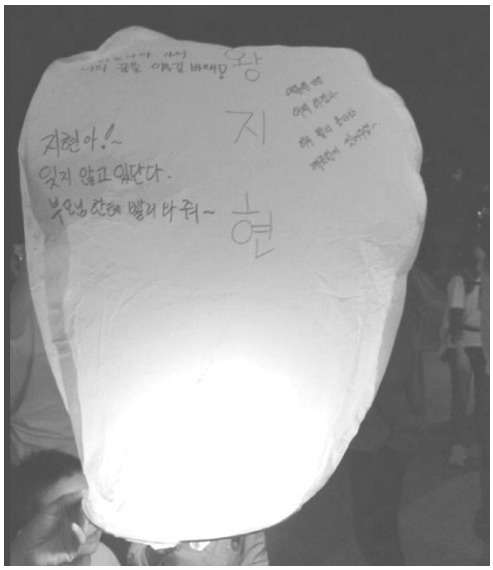
[진도군민과 실종자 가족이 함께하는 참사 100일 행사 플랜카드]

⑵ '기다림의 버스' 를 통한 국민들의 지속적 방문과 시민사회·종교·문화·정치인 등의 실종자 가족에 대한 위로

전술한 바와 같이 참사 100일을 기점으로 세월호 특위와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와의 연대를 통해 진도 팽목항을 방문한 국민들과 실종자 가족이 처음 마주앉아 마음을 열고 고통을 나누는 계기를 만들면서,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가 운영하는 『기다림의 버스』는 매주 금요일마다 국민들을 태우고 팽목항으로 향해 실종자 가족과 본격적으로 함께하였다. 『기다림의 버스』를 통해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에 대해 실종자 가족들이 가지고 있던 불안의 시선[47]은 믿음으로 바뀌었다. 실종자 가족은 매주 1회씩 국민들과 함께

47) 『기다림의 버스』는 6월 5일 진도 팽목항으로 첫 운행을 시작한 이래 매주 금요일 팽목을 방문하였으나, 실종자 가족들과의 만남은 이루어지지 못했었다. 실종자 수색의 주체가 정부이기 때문에 실종자 가족들은 팽목을 방문하는 기다림의 버스가 혹여나 이념적 반정부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우려

팽목항 등대에서 실종자 가족의 이름이 적힌 풍등을 날리며 실종자가 가족의 품으로 조속히 돌아올 것을 기원하였다. 팽목에 방문하는 국민들이 실종자 가족을 부둥켜안고 흘리는 눈물은 실종자 가족이 고통을 이겨내는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으며 실종자의 이름이 적힌 풍등을 날리는 일은 세월호 실종자를 기다리는 상징이 되었다. 인근 해남지역에서도 매주 목요일 해남군청 앞에서 군민들이 모여 실종자의 귀환을 기원하는 풍등을 날렸으며, 범대본의 실무자들과 해양수산부 이주영 장관 또한 풍등을 날리는 날에 실종자 가족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풍등을 하늘로 보내 실종자의 발견을 함께 염원하였다.



[실종자의 이름을 적어 하늘로 날려 보내는 풍등]

세월호 특위는 시민사회가 실종자 가족의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활동반경을 진도에서 광주, 목포, 해남 등지로 넓혀나갔다. 7월 21일 광주, 전남지역 시민사회단체들과의 연석회의를 가져 실종자 가족에

했다. 이러한 걱정으로 인해 실종자 가족들은 기다림의 버스를 타고 팽목에 방문하는 국민들과의 연계를 원하지 않았었다.

대한 지원을 요청하면서 광주지역에서 산발적으로 진행되던 세월호 관련 활동들이 '광주대책위'로 일원화되어 실종자 가족에 대한 적극적 연대로 가시화되었으며, 이후 세월호 광주대책위는 실종자 가족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가 되었다. 또한 세월호 특위는 해남 세월호 모임에 참석하여 현재 수색상황 및 실종자 가족에게 필요한 사항을 설명하고, 목포지역 시민단체와의 만남을 이어나가는 등의 활동을 전개하며 상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연락체계를 구축하였다. 해남군민과 목포시민들은 가장 가까이에 있는 진도 참사지역의 어려운 상황을 마치 자신의 문제처럼 생각하여 실종자 가족 및 자원봉사자들의 복지를 헌신적으로 지원하였다. 광주, 목포, 해남 지역은 진도지역 특산물 판매 등 진도군민들의 어려움도 덜어 주고자 노력하며 참사의 고통을 나누는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 주었다.

그 밖에 세월호 참사 각 지역 대책위, 성남시민원탁회의・리멤버 0416・노란손수건 등 세월호 관련 모임, 전교조 각 지회, 민주노총 지부, 평화재단, 농업인회, 여러 대안학교, 시민상주모임, 민주화운동 계승사업회, 중・고등학교 학생회, 문인협회(소설가 김훈 등), 예술인・방송인(가수 김장훈, 이승환, 방송인 김제동 등), 종교인(천주교 이성효 주교, 김건태 신부 등, 정의평화사제단,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 조계종, 천태종, 대각종 스님들, 각 교회연합회 목사님 등), 정치인(정홍원 국무총리, 정의화 국회의장, 박원순 서울시장, 남경필 경기도지사, 제종길 안산시장, 박준영・이낙연 전남도지사, 박영선・우윤근 야당 원내대표, 이재정 교육감, 이정현 의원, 문재인 의원, 전순옥 의원, 임수경 의원, 장하나 의원, 우원식 의원, 김 현 의원, 김현미 의원, 김영록 의원, 박지원 의원, 정동영 전 의원 등[48]) 등 시민사회단체・종교

인・문화인・정치인들이 끊임없이 팽목항에 방문하여 실종자 가족과 함께하며 위로와 도움을 아끼지 않았다.



[진도체육관을 방문한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

세월호 특위는 각 단체, 모임, 국민들이 방문할 때마다 실종자 가족의 상황을 브리핑하고 각 방문시기마다 조력이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여 실종자 가족을 대변해 요청하는 등 i) 세월호 실종자가 국민들과 사회로부터 잊히지 않도록, ii) 실종자 가족들의 고립을 막아 수색이 이어질 수 있도록, iii) 실종자 가족이 진도에서 머무르는 데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속적인 노력과 대책을 강구하였다.

48) 특히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과 새정치연합 부좌현 의원은 안산지역구 의원으로 국조특위 활동을 비롯하여 진도에 가장 오래 상주하며 실종자 가족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으며, 정홍원 국무총리의 경우 실종자 가족의 요청이 있던 참사 100일과 추석에도 진도를 방문하는 등 10회나 진도체육관과 팽목항을 찾아 실종자 가족을 위로하고 애로사항을 경청하며 실종자 가족에 대한 각별한 마음을 표현하였다.

자. 프란치스코 교황 방한에 따른 실종자 가족 지원 활동 (교황서신, 전달식 등)

2014년 8월 14일,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방한 이후 25년 만에 프란치스코 교황이 방한하면서 한국사회는 평화와 화해, 치유와 회복의 메시지로 충만하였다. 세월호 침몰사고가 발생한 지 하루만인 4월 17일 교황청 국무원은 한국천주교 주교회의를 통해 침몰사고의 희생자 유가족과 실종자 가족에게 위로를 표한 바 있으며, 교황은 4월 19일 공식 트위터 계정(@pontifex)을 통해 "한국의 여객선 참사 희생자와 가족들을 위한 기도에 동참해 달라" 는 글을 올리기도 하였다.

교황은 8월 14일 서울공항에 도착하자마자 교황을 만나기 위해 기다리고 있던 세월호 유가족들에게 다가가 손을 맞잡고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고 있다. 가슴이 아프다. 희생자들을 기억하고 있다" 고 위로의 메시지를 전한 것을 비롯하여, 16일 광화문 시복식에 참석한 세월호 가족대책위 600명 앞에서 카퍼레이드를 멈추고 직접 내려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해 34일째 단식 중이던 김영오씨(故 김유민 단원고 학생 아빠)에게 다가가 김영오씨의 두 손을 꼭 붙잡고 세월호 가족의 아픔을 위로했다. 17일에는 주한 교황대사관에서 유가족 이호진씨(故 이승현 단원고 학생 아빠)에게 세례식을 거행하고 '프란치스코' 라는 세례명을 내리는 등 방한 기간 내내 세월호 참사 유가족에 대한 위로와 치유의 행보를 지속하여 국민들에게 큰 감동과 울림을 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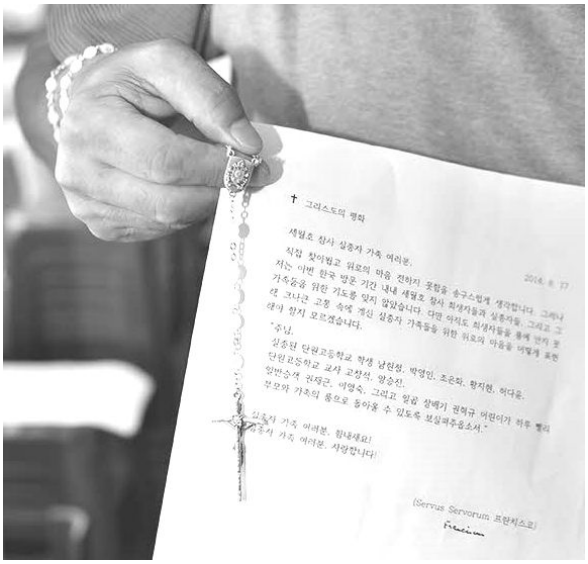
진도의 실종자 가족들 역시 교황께 위로받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으

나 교황 방한 기간에도 실종자 수색이 지속되었을 뿐만 아니라 건강 역시 극도로 악화되어 있어 진도를 한시라도 떠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에 세월호 특위는 교황에게 전하고 싶은 실종자 가족의 목소리를 수렴하여 '교황에게 보내는 실종자 가족의 서신' 을 8월 14일 한글본과 영문본으로 작성하여 교황과 면담할 세월호 가족대책위 진도분과를 통해 교황에게 전달하였다.[49] 세월호 특위를 통해 작성된 서신에서 실종자 가족들은 "우리의 자식들이 부모의 품에 안겨 위로받으며 부모와의 이별을 맞이할 수 있도록, 부모 또한 차디찬 아이들의 시신만이라도 꼭 끌어안고 목 놓아 통곡하며 하늘나라로 보내줄 수 있도록 우리 실종자 가족들과 잃어버린 10명과의 마지막 만남을 위해 기도해주실 것을 간절히 청한다" 고 전했으며, 또 "자식을 찾지 못한 채 평생 가슴에 커다랗게 뭉친 피멍을 안고, 어깨와 등에 자식의 십자가를 뼛속 깊이 박아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야 할 저희 실종자 가족들에게도 교황님의 위로와 안식을 위한 기도가 전해지길 기다린다" 고 염원했다.

실종자 가족들은 서신을 보내면서도 과연 답신이 올지, 교황이 실종자 가족들을 위로해줄지에 대해 반신반의했다. 그러나 교황은 실종자 가족의 서신에 응답, 방한 기간 내내 세월호 참사의 슬픔을 함께 하는 치유와 회복의 메시지를 실종자 가족에게도 전달했다. 교황이 실종자 가족의 서신을 읽고, 8월 17일 세례식에 배석한 천주교 수원교구 안산대리구장 김건태 신부에게 "실종자 가족에게 전해달라" 며 '프란치스코' 라는 자필 서명이 담긴 한글 편지와 교황 문장이 새겨진 묵주 10개를 전달한 것이다.[50] 세월호 특위는 천주교 이성효 주

49) 참고자료 2-26. 교황께드리는세월호실종자가족들의서신(2014.08.14.)
50) 참고자료 2-27. 교황이실종자가족에게보낸서신(2014.08.17.)

교, 김건태 신부가 교황을 대리해 진도 팽목항에 방문한다는 연락을 받고, 실종자 가족을 위로하기 위해 '교황의 실종자 가족에 대한 편지와 묵주 전달식'을 준비했다. 그리고 8월 19일 진도 팽목항 천주교 천막교회에는 교황의 기도와 위로가 울려 퍼졌다.



[교황 문장이 새겨진 묵주와 교황의 편지]

천주교 수원교구 총대리 이성효 주교와 안산대리구장 김건태 신부는 '교황 편지·묵주 전달식'을 통해 교황의 당부를 전했다. 김건태 신부는 "교황께서는 제 두 손을 꼭 잡으시면서 실종자 가족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부르시며 '실종자 가족의 손을 잡고 따뜻한 위로의 말씀을 전해 달라'고 신신당부했다"고 전하였고, 이성효 주교는 실종자 가족들을 안수하며 실종자들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것을 기도했다. 이 날 전달식 내내 실종자 가족들의 눈물은 멈추지 않았다. 실종자 가족들은 교황의 문장이 새겨진 묵주와 편지를 이성효 주교를 통해 전달받으며 가슴에 고이 간직하였다. 전달식에 함께 참석한 이

주영 장관 역시 이성효 주교에게 안수를 받으며 실종자를 꼭 가족들에게 모셔드리겠다는 약속을 잊지 않았다. 참사 126일째, 실종자 가족들은 저녁 내내 “교황이 직접 내려와 위로해주신 것처럼 마음이 환해졌다”고 말했으며, 자신들을 잊지 않은 교황의 따뜻한 배려에 감동했다. 통곡과 고통의 땅 팽목항에 오랜만에 평안과 치유의 시간이 찾아온 것이다.

차. 진도군 어민, 진도군 범군민대책위 등과의 갈등 조정 및 중재 활동

세월호 참사 후 피해지역인 진도의 경제적 손실액은 약 898억원에 가까운 것으로 추산되었다.[51] 사고 수습이 장기화되면서 진도군민이 감내해야 할 고통은 커져가고 있었음에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진도군에 대한 정부의 실질적이고 충분한 지원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진도군민들은 ‘세월호 참사 범군민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7월 30일 정부와 면담하면서 “세월호 참사 여파에 시달리는 진도군에 정부가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지만, 조도면 지역에 국한된 생활안정자금 10억여 원, 수색참여 어선보상금 3억여 원 등 모두 13억5,000만 원을 지원하는 데 그쳐 어려움이 많다”고 밝혔다. 이처럼 진도군민들의 고통이 커짐에 따라 군민들의 사고조기 수습요구는 커졌고, 수색을 지속해야 하는 실종자 가족들과의 입장 차이에 따른 갈등도 발생하였다.

4월 16일 참사 이후 팽목항에 사고 수습을 위한 시설들이 들어서면서 하루 8차례 화물을 싣고 왕래하던 뱃길이 열리지 못함에 따라 조

51) 세월호 참사 진도군 범군민대책위원회 2014. 7. 15. 『진도군민 피해보상 및 지원 건의문』 자료 참조

도 주민들은 병원 방문 시기를 놓쳐 병세가 악화되기도 하고, 생필품도 제때 섬으로 들여오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도 주민들은 “많은 희생자가 발생했는데 우리 욕심만 찾을 수 없다”면서 불편을 참아왔으며, 어선을 동원하여 실종자 수색과 방제작업, 유실물 수거 등을 헌신적으로 도왔다. 그러나 사고 수습이 장기화되면서 주민들의 불편은 더 커졌고, 조도 주민들은 실종자 가족들에게 팽목항에 접안할 수 있도록 시설을 이전하는 등 재배치를 통해 항구를 열어줄 것을 요청하였다. 일부 유가족들이 팽목항을 개방하여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면서 조도 어민들과의 갈등이 부각되는 듯하였으나, 실종자 가족과 조도 주민들은 대화를 통해 해결점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실종자 가족들과 조도 어민, 주민들은 수차례 만나 서로를 위로하며 어려움을 함께 헤쳐 나가고자 노력하였다. 그리고 5월 25일 실종자 가족들은 진도군 조도 주민들이 팽목항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항구 한쪽 출입로를 개방하고 시설을 이전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5월 30일 팽목항 항구가 열리게 되었다.

5/30 세월호 특위 팽목항 개방과 관련한 입장 中

실종자 가족들과 조도 어민, 주민들은 여러 차례에 걸쳐 마음을 열고 힘든 고통의 시간에 대해 함께 대화하고, 서로를 위로했습니다. 어민들도 세월호 참사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지만 가족들을 위로해주셨고 실종자 가족들 역시 참담한 상황 속에서도 조도 주민들의 어려움을 경청하고 팽목항을 개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비록 정부의 대안제시와 지원조치가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졌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실종자 가족들은 세월호 참사로 어려움에 놓인 모든 이들과 그 아픔을 함께하고 서로를 배려하며 어려움을 함께 헤쳐 나가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진도군 어민들은 사고해역 유실방지를 위해 대형·중형기선 저인망이 사고지점 외곽에서 집중적으로 그물을 끌고 있어 어장이 황폐화되고 어족자원이 고갈되고 있다고 호소했다. 특히 10월에 들어서면서 꽃게 성어기가 도래하고 있음에도 어기를 놓치면 막대한 어업손실이 우려된다는 것이었다. 뿐만 아니라 채낚기어선(8척)도 사고지점에서 야간에 집중적으로 불을 밝히고 있어 어장 생태계의 혼란 우려 등 장기적으로 어업 피해가 우려되므로 철수를 요청하기도 하였다. 세월호 특위는 동원 저인망 어선을 통한 유실물 실적을 점검한 결과 유실물 수습 실적이 미약하고(저인망어선은 구명동의 총 5점을 수습한 외에 실적이 없었다), 채낚기 어선은 현장지휘본부를 통해 잠수사들의 입수에 있어 바지선 조명으로 충분하다는 의견을 듣고 실종자 가족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이를 통해 저자망, 낭장망, 닻자망 등에 의한 유실물 수습에 더욱 전력을 기울려달라는 부탁을 하고 어민들의 요청을 수용하도록 하여 어민과의 갈등 발생 상황을 중재·해결하였다.

한편 참사 100일을 앞두고 진도군민들은 진도경제가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진도체육관에서 머무르고 있는 실종자 가족들의 거처를 이전해 줄 것을 비공식으로 요청하였다. 세월호 특위는 '세월호 참사 진도군민대책위원회'와 수차례 만나 실종자 가족의 어려운 처지를 호소하는 등 의견을 조율하였고, 특히 정홍원 국무총리,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에게 진도군민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할 것을 요청하여, 진도 현안사업에 대한 국비지원이 대거 반영되는 등 진도의 회복대책 강구를 통해 진도군민과의 신뢰와 유대관계를 강화하였다. 이에 따라 진도군민들이 실종자 가족의 상황을 양해하고 일단 기다리기로 하였

으나, 참사의 수습이 160일을 넘어서면서 진도체육관 문제가 다시 부각되었고, 9월 25일에는 진도군민 30여명이 진도체육관에 방문하여 실종자 가족과 직접 대화하겠다고 하는 과정에서 유가족과의 언쟁으로 갈등이 표면화되기에 이르렀다.

진도체육관은 진도군의 각종 행사가 개최되는 진도군의 유일한 종합시설이므로 참사 이후 진도체육관에서 개최예정이던 모든 행사가 줄줄이 취소되는 등 일상으로의 회복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진도군 창설 이래 최초로 진도체육관을 기반으로 전남 22개 시·군이 참여하는 전남도민체전을 유치하여 시설 개보수, 전지훈련 등의 준비를 위해 실종자 가족의 거처 이전을 희망하였다. 한편 실종자 가족들은 사고로 가족을 잃은 것보다 더한 슬픔은 없다며 도민체전을 연기하고, 진도의 여러 행사는 다른 장소에서 개최해 줄 것을 희망하여 서로의 입장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었다. 전남도민체전 등의 문제는 지방자치단체의 현안으로 중앙정부 차원에서 개입하기 어려운 난점을 가지고 있어 해결의 책임이 실종자 가족에게 전가되는 분위기가 형성되었고, 언론에 진도체육관을 둘러싼 갈등이 보도되면서 여론도 악화되어 갔다.

세월호 특위는 실종자 가족과 진도군민들 사이의 중재에 나서 진도체육관 이전문제를 정부, 진도군민, 실종자 가족의 3자 협의를 통해 해결하고자 하였다. 먼저 진도체육관 이전의 대안이 마련되지 않은 채 이전을 하는 것은 실종자 가족과 참사 수습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으며, 정부 역시 지자체의 문제라고 손을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이전할 장소와 방법 등을 적극적으로 강구할 주체임을 강조하고, 실종자 가족 역시 진도군이 처한 어려운 경제상황

과 군민들의 아픔을 이해하고 공감할 것임을 밝히며 『진도체육관 문제 해결을 위한 3자 협의』 테이블을 통한 대화를 제안한 것이다.[52]

그러나 진도군 범군민대책위원회의 요구와는 달리, 진도군 민주시민단체[53]는 실종자 가족의 입장을 이해하고 더 기다려 줄 것을 진도군민들에게 호소하는 기자회견[54]을 10월 1일 오전에 개최하면서 진도군민들 사이에서도 진도체육관 문제에 대한 의견은 분분하였다. 그러나 다수 실종자 가족들은 일단 대화의 물꼬를 트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였고, 실종자 가족의 3자 협의 테이블 제안에 대해 진도군 범군민대책위원회가 환영의 뜻을 표하면서 10월 1일 오후 5시, 진도군청에서 이주영 장관의 주재로 정부, 실종자 가족, 진도군민 3자가 함께 만나 대화를 통해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방안을 토론하였다.[55]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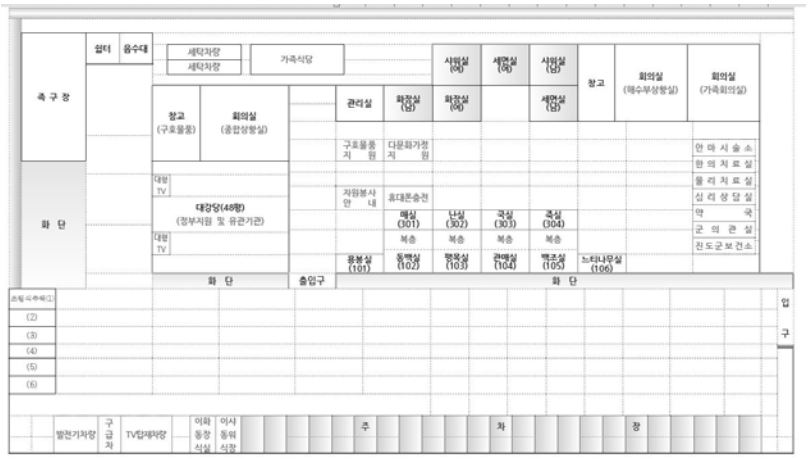
52) 참고자료 2-28. 세월호특위기자회견문(2014.09.29.)

53) 진도군 민주시민단체는 건설기계노조 진도군지회, 전교조 진도지회, 진도교육희망연대, 진도군농민회, 진도사랑연대회의로 구성되었다.

54) "진도는 예로부터 의(義)를 숭상해왔습니다. 의(義) 앞에서는 이(利)를 취하지도 논하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우주이고 하늘입니다. 그런데 한 두 사람도 아니고 수백 명이 수장당해 처참하게 죽어갔습니다. 아직도 아홉 가족 열 분의 주검은 수습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이 시간에도 실종자 가족들은 하루하루 매 순간 피말리는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당신들께서도 진도체육관을 군민들에게 돌려드려야 한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정부에서 대안을 마련하여 안전하게 옮기실 수 있도록 우리가 기다려드립시다. 가슴 아프게도 그 분들의 소원은 유가족이 되는 것이랍니다. 자식이, 조카가, 아내가, 남편이 뼈마디만이라도 남아서 돌아오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피눈물 나는 소원이 세상 천지에 또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사랑하고 존경하는 진도군민 여러분, 우리 진도군민들이 그 동안 참사의 수습을 위해 헌신해왔다는 것은 우리나라 국민이면 모두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열 분의 실종자 중 마지막 한 분 까지 다 돌아오는 날까지 우리는 그 가족들을 보듬어 드려야 합니다." (진도군 민주시민단체 기자회견 中)

55) 참고자료 2-29. 세월호특위'3자협의'결과브리핑(2014.10.01.)

10월 1일 회동으로 3자는 ‘진도체육관 대안마련을 위한 수임기구(TF)’ 구성에 합의하였으며, 수임기구(TF)를 통해 3자의 실무 책임자들이 실종자 가족이 진도에 머무를 수 있는 장소, 시기, 지원 범위 등의 대책을 마련하기로 하면서 진도체육관을 둘러싼 갈등은 해결 국면을 맞이하게 된다. 세월호 특위가 3자 협의 결과를 기자들에게 브리핑 한 이후, 진도체육관 문제는 갈등이 아닌 대안 마련의 논의로 전환되었다.



[진도체육관 대안마련을 위한 TF를 통한 진도체육관 이전 배치 계획(안)]

카. 기자 정례브리핑, 언론 대응 등 대변인의 역할

세월호 특위가 진도에서 실종자 가족 지원 활동을 펼치면서 가장 역점을 둔 것은 실종자 가족의 의견을 국민들에게 대외적으로 전달하고 특히 수색과 관련된 여론을 우호적으로 조성하기 위해 언론과의 접촉을 강화하는 것이었다. 특히 9월 16일 세월호 유가족과 대리기사 간의 불미스러운 사건이 벌어져 세월호 특별법에 대한 여론이 급격히 악화되면서, 실종자 가족들은 진도까지 그 여파가 미쳐 수색 중단으

로 이어지는 것은 아닌지 불안해하였고 세월호 특위 역시 언론기사 및 보도 하나하나를 신경 쓰며 기자들과 연락해 소통하고, 도움을 호소하였다. 세월호 특위는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실종자 가족을 대리하여 진도군청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함을 통해 국민들이 세월호 참사 현장을 잊지 않도록 실종자 가족의 상황을 전하고 정부의 최선을 다하는 수색을 견인하고자 하였는데, 진도군청 및 팽목항에서의 기자회견 횟수는 51회에 달한다.



[세월호 특위의 진도군청 기자브리핑 모습]

세월호 특위가 수색·구조 및 현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기자 브리핑을 하면서 기자들은 범대본 대변인실로 직접 찾아가 수색계획과 관련한 입장을 발표하지 않고 침묵하는 범대본의 태도를 질타하기도 하였다. 세월호 특위는 실종자 가족과 해경 중심의 현장지휘본부, 해양수산부 중심의 범대본 사이의 가교 역할을 담당하면서 실종자 가족의 의견을 관철시키고 때로는 대립되는 상호 간의 입장을 조율·중재하는 위치에 서야 했기 때문에 정부와의 면담, 회의 결과 등은 세월호 특위의 브리핑을 통해 발표되는 경우가 많았다. 한편 실종자 가족들

은 민관군 합동구조팀의 신뢰나 사기가 저하될 수 있는 입장 발표를 수정할 것을 요청하기도 하였다. 이는 정부가 수색예산을 투입하여 수색작전을 지휘하고 있다는 불가피한 한계로부터 발생하는 것이기도 했다. 세월호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유가족들이 정부, 여당과 대립각을 세웠던 것과는 달리 세월호 수색의 주체가 정부이기 때문에 비판보다는 합리적 대안마련과 해결책 제시에 주안점을 두어야 했으며, 실종자 가족들은 정부의 부족함이 있더라도 이를 함께 보완하고자 하였다. 즉 실종자 가족들은 진도 상황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인 정홍원 총리의 유임, 이주영 장관의 유임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찬성의 입장을 보이며 기자회견을 열었던 반면, 유가족들은 정 총리의 유임이 사고 수습 및 구조에 실패한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라 강하게 비판하여 현안을 놓고 대립하기도 하였다. 이 과정에서 세월호 특위가 진도에서 실종자 가족의 입장을 강하게 대변하면서 유가족과의 마찰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기자들 역시 진도에 내려와 있는 유가족의 입장과 실종자 가족의 입장을 혼동하는 경우가 있어 입장자료를 내는 경우도 발생하였다.

그러나 잠수사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청와대의 발언,[56] 잠수 인력 및 장비 축소,[57] 수색을 지휘하는 범대본 이주영 장관 및 김석균 해경청장에 대한 국회의 소환, 이주영 장관의 업무 복귀를 요구하는 여당 대표의 발언,[58] 수색중단을 전제한 여당 일부 의원들의 '인양 발언' 등 수색에 차질을 초래할 수 있는 현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하였다.

---

56) 참고자료 2-30. 청와대대변인의발언에대한입장(2014.05.27.)
57) 참고자료 2-31. 잠수인력및장비축소에대한입장(2014.06.29.)
58) 참고자료 2-32. 이주영장관복귀요구여당대표발언에대한입장(2014.08.08.)

한편 수색상황과 잠수사 안전이 악화되면서 기자들의 사고해역 민간구조팀의 철수 입장에 대한 보도가 늘어났고, 이에 실종자 가족의 불안감이 증폭되면서 기자들에 대한 가족의 불신은 커져갔다. 수색구조개편 이전 언딘의 철수 발언, 해군 지휘관의 철수 발언 등에 대해서는 원활하게 언론과 협의가 된 반면, 11월 동절기로 넘어가면서 수색환경이 악화되는 수색 막바지에 이르러 제기되는 민간구조팀 내부의 철수 발언에 대해서는 이를 보도한 언론과 세월호 특위가 마찰을 빚기도 하였다. 세월호 특위는 피해자 가족에 대한 배려라는 재난보도의 원칙을 강조한 반면, 언론은 국민들의 알 권리와 사실을 그대로 보도하는 입장을 견지한 것이다. 실종자 가족의 입장을 대변해야 하는 세월호 특위의 입장과 언론의 역할 사이에 발생하는 간격을 합리적으로 조율하는 것은 향후 재난대응에 있어서 고민해야 할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판단된다. 세월호 특위의 적극적인 대언론활동 및 기자회견은 참사 100일을 지나며 국민의 관심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던 진도 실종자 수색에 대한 국민의 지지를 이어나가고, 국민들이 팽목항을 잊지 않고 찾아와 실종자 가족과 함께할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하였다.

4. 반성과 성찰 – 실종자 가족을 현장지원 하는 변호사의 역할에 관하여

실종자 가족들의 하루 일과는 오전 범대본 회의(오전 9시)를 시작으로, 수색구조 실무자 회의(오전 10시), 수색구조・장비기술연구TF 또는 유실방지TF 회의(오후 2시), 해경 수색브리핑(오후 5시), 국조특위와의 협의체 회의(오후 9시)까지 쉴 새 없이 지속되었고, 위 시간 사이에는 해경정을 타고 사고해역에 나가 바지선에서 수중수색상황을

지켜보고, 유실방지 항공점검을 하는 등 주말, 휴일도 없는 나날의 연속이었다. 사고 초기, 실종자 가족들은 밤이 되면 당일의 수색상황 및 브리핑 결과를 토대로 도면을 펼쳐 수색에 관한 제안을 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토론을 하였고 새벽이 되어도 수중수색을 하는 정조시간이 되면 실종자 발견 소식을 기다리며 잠을 이루지 못하였다. 진도체육관에는 미등이 켜져 있어 수면을 취하여도 선잠을 자기가 일쑤였으므로 늘 실종자 가족의 팔에는 링거가 꽂혀있었다. 또한 바지선이 기상여건으로 피항하는 날에는 입·퇴원을 반복하는 등으로 실종자 가족의 건강은 항시 탈진과 회복의 연속이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수색이 장기화 될수록 실종자 가족이 모여 의견을 하나로 통일하는 것은 어려워졌고, 정부 회의에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하는 것 역시 난항을 겪었다. 따라서 세월호 특위는 모든 일정을 소화하면서 남는 시간에 실종자 가족 한 명 한 명을 만나 진행상황을 보고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정리하여 정부와 협의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가족 간의 의견 차이가 격화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였다.

실종자 가족, 유가족의 의견 차이를 조율하고 조정·중재하는 것은 진도에서의 활동 중 가장 어려운 일이었다. 한 명의 가족이 다른 의견을 표명하면, 다른 가족들 모두에게 이를 다시 설명하여야 했고, 특히 하나의 사안에 대해 여러 의견이 표출되었을 경우 의견을 통일할 수 없었다. 따라서 세월호 특위는 실종자 가족 전체회의를 소집하여 함께 토론할 것을 가족들에게 요청하였고, 몇 차례의 전체회의를 하였으나 실종자 가족들이 육체적, 정신적으로 지쳐있는 상태에서의 토론은 10분을 넘기지 못하고 종종 감정의 대립으로 격화되어 극단적 갈등으로 나타나기도 하였다. 예민해진 상태에서의 토론을 통한 의견

일치는 불가능했다.

일례로, 5월 중순에 이르러 인양을 해야 한다는 가족들의 의견이 대두되기 시작하였는데, 가족 전체회의 과정에서 큰 충돌이 발생하여 실종자 대표가 그 직에서 물러나기도 하였다. 특정 사안에 있어서 원하지 않는 마찰이 생길 경우 그 책임은 두 차례 선임되었던 실종자 가족 대표에게 전가되었다. 또한 전술한 바와 같이 유가족과 실종자 가족 간에는 근본적인 입장의 차이가 있었는데 유가족은 정부와 싸워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실종자 가족은 정부가 수색의 주체인 상황에서 정부와의 대립보다는 보완과 중재, 조율을 원하였다. 책임이 실종자 가족에게 전가되면서 유가족들 사이에 일부 실종자 가족에 대한 비판도 빈번하였다. 이에 실종자 가족 어느 누구도 대표직을 맡기를 원하지 않았고, 가족의 대부분은 내부 갈등과 충돌로 격화되는 전체회의를 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처럼 실종자 가족의 육체적·정신적 상태는 정상적인 논의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었기에, 가족들은 대한변협의 변호사에게 개별적으로 공지와 의견수렴을 할 것을 요청하였다. 세월호 특위는 지속적으로 실종자 가족 대표를 선출하고자 하였으나 실패하였고, 시기적으로 급박한 사안 또는 언론대응에 있어서 모든 가족의 의견을 개별 면담을 통해 결정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시점을 놓치는 경우가 잦았다. 이러한 경과를 거치면서 실종자 가족들의 세월호 특위 변호사에게의 의존도는 증가하였으며 결정을 위한 설득과 책임 역시 변호사가 져야 했다. 따라서 변호사의 역할은 실종자 가족의 모든 것이어야 했던 것이다. 변호사는 실종자 가족에게 보고사항을 작성하여 나누어 주면서 개별 가족들과 대화하고 의견을 수렴하였다. 만장일치는 대부분의 경

우 불가능하였기에, 결정이 필요한 사항에 있어서는 결국 다수의 의견을 따라 설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전개되었다.

변호사가 중립적 위치에 서서 결정이 필요한 상황을 회피하고, 필연적인 갈등의 상황을 제3자로서 방치하며 실종자 가족이 스스로 결정하도록 하는 것은 불가능했기에 오히려 실종자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실종자 가족의 일원이 될 수밖에 없었으며 실종자 가족 또한 변호사가 가족의 일원이기를 원했다. 실종자를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절대과제인 반면, 해경과 해수부가 책임을 지고 모든 것을 해결하지 않았기에 가족의 요구가 필요했던 것이다. 가족이 결단하지 않으면 수색 계획이 제대로 수립되거나 집행되지 못하였다. 한편 동절기가 되면서 수색중단과 관련한 대립이 격화되자 유가족의 변호사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 또한 높아졌고, 대한변협 내부에서도 "변호사가 실종자 가족과 동조화 되어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있었다. 그러나 동조화되어서는 안 된다는 논리는 곧 실종자 가족에 대한 조력을 포기하는 것과 같았다. 제3자적 위치에 서는 순간 아무 것도 결정할 수 없으며, 실종자 가족 간의, 유가족과 실종자 가족 간의 갈등은 해결되지 않기 때문이다. 세월호 가족대책위의 위원장 내지 집행부가 방문하여도 진도에 상주할 수 없기에 수색·구조를 책임지지 못하였고, 정부와 싸워야 한다는 유가족들의 의견이 지속되자 실종자 가족들은 유가족이 개입하는 것을 원하지 않기도 하였다. 반면 유가족과 의견을 함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어 진도체육관에 머무르는 실종자 가족과 팽목항에 머무르는 실종자 가족 사이의 의견차이도 풀리지 않고 지속되었다. 이를 조정하는 것이 세월호 특위의 주된 역할이 될 수밖에 없었는데, 결정을 해야 할 시기에는 어느 하나의 방향

으로의 설득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고, 그 의견이 다른 실종자 가족 그룹의 의견 또는 유가족의 의견과 다를 경우 그 비판을 받는 것은 고스란히 변호사의 몫이었다. 국가적 대재난의 혼란 속에서 이와 같은 일은 필연적일 것이다. 결국 갈등이 극단적으로 표출되어 울분이 쌓인 한 유가족이 세월호 특위 변호사를 폭행하는 일도 일어났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울분과 분노를 표출할 대상 조차 없었던, 대참사를 겪은 유가족들의 특수한 상황에 기인한 것이었다. 진도에서 세월호 특위 변호사는 단지 법률대리인으로서 실종자 가족들의 의견을 조율하고 정부와 협의, 중재하는 것을 넘어 가족들의 분노와 울분을 받아내는 사람도 되어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도에서의 세월호 특위는 실종자 가족을 위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돌아오는 모든 책임과 비판을 감수하고 실종자 가족과 끝까지 함께하고자 했다. 필요할 경우에는 극단적 대립으로 격화된다 하더라도 실종자 가족 전체회의를 열어 결정을 하고자 했다. 일부 가족들은 '만장일치'로 결정하기를 원하였으나 단 1명이라도 반대할 경우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었다. 결국 세월호 특위에서 변호사의 진도 파견을 해제하고 나서야 2/3 찬성이라는 의사결정의 기준이 마련되어 변호사가 다시 진도로 재파견되었다. 그러나 일부 가족들은 인양 문제에 있어서는 여전히 '만장일치'가 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유지하였다.

수색중단결정은 가족 간의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는 순간이었다. 다수의 실종자 가족은 잠수사의 안전이 위험에 처하는 상황에서 민간수색팀 스스로 철수하는 상황을 원하지 않았다. 정부도, 민간수색팀도,

여론도, 정치권도 그 결정을 대신할 수 없기에 실종자 가족들은 눈물을 머금고 고통스런 결단을 내려야 했다. 11월 11일 오전 실종자 가족 전체회의에서 수색중단을 결정하는 기자회견에 어느 누구도 반대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세월호 특위 변호사에 대한 유가족의 비판도 계속 존재하였다.



[실종자 가족들의 11월 11일 수색중단요청 기자회견]

세월호의 희생자들은 가장 큰 피해자이기에 참사의 대응과정에서 어느 누구도 비난을 받거나 책임을 지는 당사자일 수 없다. 실종자를 마지막 한 사람까지 모두 찾아야 하는 과업은 진도에 파견된 세월호 특위 변호사에게도 고스란히 주어졌고, 한 사람의 실종자라도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하면 그 책임과 비판도 이미 예정되어 있었다. 실종자 가족과 유가족 어느 누구도 대표로 나서거나 논의를 주도하지 않으려고 하였다. 동절기 수색을 지속하면서 잠수사의 안전과 생명에 대한 큰 사고가 발생했다면 국민들의 여론에 따른 비난과 책임은 실종자 가족이 고스란히 져야 했을지 모른다. 그리고 국민의 여론이 돌

이킬 수 없이 악화되는 순간, 인양 여론은 지금과 같이 '인양 찬성'으로 기울지 않을 것이다.

세월호 특위는 실종자 가족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고, 세월호 인양TF를 구성한다는 이주영 장관의 약속이 있은 후 이 점을 실종자 가족들에게 설명했다. 이를 토대로 결단이 내려짐으로 인해 세월호 특위는 죄인된 심정으로, 세월호 실종자 가족와 고통을 여전히 함께하고 있다. 정부가 세월호 선체 인양을 통해 '실종자를 마지막 한 명까지 찾겠다'고 한 약속을 지키고, 한 명의 국민이라도 소중히 여기는 국가의 책무를 다하여 세월호의 남은 실종자 9명이 모두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

제2부 영역별 활동 내역

Ⅱ. 현장 지원 활동 – 안산

Ⅱ.현장 지원 활동
(초기 대응과 안산 가족대책위 지원 활동을 중심으로)

1. 활동 목표

가. 피해가족 법률상담 등 지원

4·16 세월호 참사 직후,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참사가 벌어진 것은 물론이고 구조 작업에 있어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 벌어졌고, 피해가족의 경우 그 누구보다도 자문 및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떠한 도움도 받지 못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 주목하여 직접적인 현장 개입을 통해 필요한 법률상담 등을 진행하고자 하였다.

나. 피해가족 조직 안정화, 유지 지원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직접적인 관련 피해가족만 천명이 넘은 상황에서 하나의 조직을 구성하고 운영하는 데에는 당연히 많은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었다. 원래 친분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각자 다른 사회적인 경험과 삶의 방식을 가진 피해가족들이 철저한 진상규명과 안전사회 건설 등의 목표를 가지고 안정적으로 조직을 운영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이점을 감안하여 조직의 구성, 운영 등에 대한 지속적인 자문을 수행하였다.

다. 피해가족 활동 지원

장례를 치르는 과정에서부터 정부의 준비 부족으로 많은 문제점이 드러났고, 생계 지원에 있어서도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정부 대응이 미비하였다. 진상규명을 위한 활동에 있어서도 정부 및 여당의 소극적인 태도로 인하여 피해가족들이 슬픔을 딛고 적극적으로 나서야하는 상황으로 내몰렸다. 이에 피해가족들이 여러 다양한 활동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정부, 국회 및 경찰 등을 상대로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면서 상황의 설명 및 자문, 협상 지원 등의 활동을 하고자 하였다.

2. 활동 내용

가. 피해가족-변협 관계 & 지원체계 수립 활동

(1) 변협-피해가족 관계 수립 과정 일지

4/16 세월호 참사 발생
4/17 변협 협회장 현장조사단 파견 결정
4/18 상임이사 중 담당 결정, 현장조사단 결정, 변협 인권위원회 자문, 공익변호사모임 임시모임 & 자문
4/19-4/21 변협 현장조사단 1차 진도 방문, 진도실내체육관 & 팽목항 상황 파악
4/20 변협 현장조사단, 진도실내체육관 피해가족 대표에 법률지원단 제안
4/21 진도실내체육관 피해가족 대표, 법률지원단 제안 거부 의사
4/21 변협 현장조사단, 세월호 참사 관련 변협 장단기 활동 제안
4/21-4/24 변협 현장조사단, 1-4차 안산 방문, 안산 상황 파악
4/23 변협 세월호 TF 1차 회의

4/25-4/27 변협 현장조사단 2차 진도 방문, 진도실내체육관 & 팽목항 상황 파악
4/27 변협 위철환 협회장, 이명숙 부협회장, 김영훈 사무총장 진도 방문

4/27 변협 현장조사단, 세월호 참사 관련 변협 활동 긴급 제안
4/30 변협 세월호 참사 관련 입장 발표
4/30 변협 세월호 참사 공익법률지원단 모집 안내
5/03 변협 세월호 참사 공익법률지원단 워크샵 개최
5/05 변협 TF, 세월호 가족대책위 면담, 세월호 참사 관련 변협 지원 계획 전달
5/16 변협, 세월호 가족대책위 협약 체결식

(2) 변협-피해가족 관계 수립 경과

(가) 변협 현장조사단 1차 진도 방문

2014년 4월 18일 밤 현장에 파견된 변호사들은 진도실내체육관, 팽목항을 오가며 구조활동 진행 현황, 가족들의 상태, 정부의 대응 태도 및 내용 등을 파악하고자 하였고, 구조활동과 관련된 대정부 의견 개진 등에 있어서 법률적인 자문 등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임을 확인하였다. 특히 피해가족들의 경우, 언론의 오보, 정부의 초기 부실 대응 등으로 인해 분노와 불신이 극에 달한 상황이었고, 따라서 변호사의 접근도 극도로 꺼리고 있음을 몇몇 가족을 통해 확인하였고, 심지어는 변협 변호사들을 정부에서 가족들의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 파견된 공무원으로 확신하는 가족들도 있는 상황이었다.

2014년 4월 20일 변협 현장조사단은 진도실내체육관과 팽목항에 있는 가족들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다는 점과, 대정부 협상의 경우 진도실내체육관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파악하고 진도실내체육관 피해가족 대표에 법률지원을 제안하고 가족대표들 회의에 안건으로 부쳐줄 것을 요청했다. 법률지원단의 역할로는 ① 대표단의 단순 실무, ② 대정부 협의·협상, 언론 대응 자문 및 조언, 협의·합의 내용 법적 검토, ③ 대표단, 가족분들에 대한 각종 법률자문 및 상담 등의 내용을 제안했다.[1] 그러나 다음날 피해가족 대표는 내부 회의에서 법률지원 안건이 부결되었음을 알려왔고, 따라서 피해가족을 조기에 직접 지원하고자하는 계획은 일단 성사되지 못했다.

(나) 변협 현장조사단 변협 제안 및 2차 진도 방문, 수차례 안산 방문

2014년 4월 21일 서울로 복귀한 변협 현장조사단은 진도에서의 활동 결과와 재해 발생 변호사단체 등의 활동과 관련한 미국 사례 연구 결과 등을 토대로 변협에 세월호 참사 관련 장단기 활동을 제안했다. 제안의 내용으로는 ① 단기적으로는 현장 법률지원, 중기적으로는 국가배상청구 등 공익소송, 장기적으로는 관련 법령의 개폐 등의 활동을 통한 향후 관련 활동의 체계화, ② 변협내 재난대응단위 임시 구성 및 재난대응단위의 임시 근거 규정 마련, ③ 태안기름유출사건, 세월호 사건 등의 국내 경험, 미국 등 외국 사례를 연구 조사하여 변협 차원의 재난긴급대응 법률지원 매뉴얼 제작, ④ 세월호 사건 관련 피해자(가족)이 참가하는 대통령 직속 혹은 변협 차원의 진상조사단을 구성, 정부 대응에 대한 진상조사 진행 및 결과 발표 등, ⑤ 정부와 교육 및 자문 등에 대한 MOU 체결 및 실시

1) 참고자료 2-33. 20140420 대표님, 대표단 여러분, 그리고 가족 여러분의 의견을 구합니다

등 재난 발생 시 정부와의 협력, 민간 차원의 공동협력활동 경험 축적 및 체계화 등이었다.[2)]

대한변협 세월호 피해대책 TF 구성을 전후하여 여러 차례에 걸친 안산 방문을 통해 피해가족 일부와 그 지인들을 만나 면담하고,[3)] 2차 진도 방문을 진행하여 일부 피해가족에게 대한변협의 활동의 목적과 내용을 비공식적으로 전달하는 기회를 가졌다.[4)] 그 과정에서 대한변협 세월호 피해대책 TF는 진도의 경우, 변협 중앙에서의 총괄 1인 파견, 전남회에서 순회변호사 배치, 안산의 경우 장례식장 상주 혹은 비공개 현장배치 등의 제안을 논의하였다. 또한 긴급한 제안으로 ① 단원고 학생들을 포함한 피해자, 피해자 가족 및 국민에 대한 사과, ② 1 피해자 가족 1 변호사 제도를 통한 피해자 및 피해자 가족에 대한 법률지원 즉각 실시 (법률지원단 구성 및 교육, 체계적 지원 포함), ③ 피해자 및 피해자 가족들의 대정부, 대보험사, 대선박회사 협상 지원, ④ 피해자 및 피해자 가족들의 국가배상, 2차 피해에 대한 언론 상대 소송 등 공익소송 지원, ⑤ 정부와 국회, 국민들에게 범국민진상조사 제안 및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진상조사 진행 (관련 문제점의 원인 분석과 책임소재 파악, 관련 법제와 관행의 개선, 변협 차원의 재난대응단위의 구성 및 관련 규정, 매뉴얼의 마련, 관련 정부기관, 민간단체들과 협력시스템을 구축 등 포함) 등을 제시하였다.[5)]

(다) 피해가족들과의 정식 만남 및 법률지원 제안

---

2) 참고자료 2-34 20140428 대한변협 세월호 참사 진도 2차 파견 현장 상황 보고
3) 참고자료 2-35 20140428 여객선 '세월호' 침몰 사고 관련 대한변호사협회 활동 긴급 제안 (안)
4) 참고자료 2-36. 201405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에 관한 가족대책위원회 성명서
5) 참고자료 2-37. 20141230 현장 대응 활동 (안산) (초안)

2014년 5월 5일 안산에서 대한변협 세월호 피해대책 TF 위원들과 피해가족으로 구성된 자문위원들의 공식적인 만남이 이루어졌다. 이 자리에서 대한변협 세월호 피해대책 TF는 세월호 참사 관련 대한변협의 그동안 대응 경과를 보고하고, 대한변협의 지원 준비 상황 및 계획을 제시하였다. 더불어 4월 30일 대한변협의 대국민 성명과 관련 공익법률지원단 추진경과도 설명하였다. 제시된 주요 지원 가능사항으로는 ① 피해자 및 피해자 가족 (대표단) 현장 법률 등 자문 및 지원, ② 피해자 및 피해자 가족 법률상담, 설명회 및 법적 대응, ③ 수사 및 재판 진행 중 사건에 대한 피해자 법률 지원, ④ 언론 등에 의한 2차 피해 예방 및 대응 지원, ⑤ 피해자 및 피해자 가족 [대표단] 대정부 등 협상 지원, ⑥ 피해자 및 피해자 가족들의 의사상자 지정, 국가배상 등 민사, 형사, 행정 등 공익절차 및 소송 지원, ⑦ 철저한 진상조사의 계획, 조직구성, 권한 부여, 진행, 결과 발표 및 진상조사 결과로 파악된 참사 및 대응과정상 문제점의 원인 및 책임소재에 근거한 조치 등 자문 및 참여, ⑧ 관련 법제 및 관행 개선, 실질적이고 실효성 있는 매뉴얼 마련, 관련 정부기관, 민간단체들 간 위기대응 협력시스템 구축 등 추진 등을 들 수 있다.[6)]

(라) 대한변협과 가족대책위의 협약서 체결

대한변협 세월호 피해대책 TF 위원 1인이 안산 가족대책위 사무실에 상근을 개시하였고, 비록 대한변협을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가, 대한변협이냐 민변이냐 등의 다소 소모적인 논란이 있기는 하였지만 대한변협과 가족대책위의 공식 관계 설정을 위한 준비는 대체적으로 원만하게 진행되었고, 2014년 5월 16일 협약식을 체결하고 대한변협은 가족대책위의 정식

6) 참고자료 2-5. 세월호 참사 관련 대한변호사협회 지원 계획(안)(20140505)

법률대리인으로서 공식적인 활동을 개시하게 되었다. 협약서 상 공동협력 사항은 다음과 같다.[7)]

"제3조(공동협력) '대한변협', '가족 대책위'는 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협력사항에 합의한다.

1. '대한변협' 측 협력 사항
 가. 피해자 등을 위한 현장 법률 자문, 상담 및 지원
 나. 피해자 등을 위한 법적 대응
 다. 수사 및 재판 진행 중인 사건에 관한 피해자 등 법률지원
 라. 언론 등에 의한 2차 피해 예방 및 대응 지원
 마. 피해자 등을 위한 대정부 등 협상 지원
 바. 피해자 등을 위한 의사상자 지정, 국가유공자 등록, 국가배상을 포함한 민사, 가사, 형사, 행정 등 공익적인 절차 및 신청·소송 지원
 사. 특별법 제정 등 사고 관련 정책 및 법 제도 개선을 포함한 대책 마련 등을 위한 사항
 아. 기타 '가족대책위'에서 요청한 사항 중 협의를 통해 지원하기로 한 사항

2. '가족 대책위' 측 협력 사항
 가. 단원고 학생 피해자 및 그 가족 간의 일치 단결을 위해 노력하고, 대표성을 획득, 유지한다.
 나. 단원고 학생 피해자 뿐만 아니라, 세월호 참사 피해자 전체 및 그 가족들을 위한 대책 마련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고, 그 분들과의 연대를 위해 노력한다.

7) 참고자료 1-1. 세월호 참사 법률지원 및 대책 마련을 위한 가족대책위와 대한변협 간 협약서

다. ‘대한변협’에서 파견한 ‘TF’ 혹은 ’ 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력한다.”

나. 피해가족 진상규명 관련 입장 정리 자문

(1) 대한변협 결합 이전의 상황

세월호 가족대책위는 대한변협의 공식적인 결합 이전에도 ‘투명하고 철저한 진상조사’를 주장하고 있었다. 다만 그 내용은 ‘사고책임이 있는 선사 및 관련자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처벌’, ‘사고 초기 구조작업이 이틀 이상 지연되고 이후 구조작업도 소극적으로 이루어졌던 부분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 ‘검찰의 수사내용의 공개’ 정도가 그 주장내용의 전부였고, 체계적으로 정리된 진상규명과 관련된 가족대책위의 입장이 존재하지 않았다. 그리고 가족대책위 내에서 결정되지 않은 특별검사 도입을 일부 가족들이 적극적으로 제기하면서 내부적으로 논란이 가속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2014. 09. 27 서울 을지로입구, 주용성, 416가족협의회 416기억저장소]

(2) 철저한 진상규명의 원칙과 내용 자문

2014년 5월 5일 변협 세월호 특위 현장지원단은 일부 가족들의 요청으로 가족대책위 총회에 참석하여 특검, 청문회, 특별법에 대한 장단점을 브리핑하고, 질의응답에 답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으로 가족들과의 만남이 시작했다. 5월 6일 다시 가족대책위 총회에 참석하였는데 특별검사 도입 주장 논란으로 가족대책위 대표단 및 집행부에 대한 신임여부가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특별검사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더불어 철저한 진상규명은 특별검사 등 형식적인 틀도 중요하지만 어떠한 원칙과 내용의 진상규명인지에 대한 기족들의 의견 수렴이 가장 중요함을 설명하였다. 가족대책위 총회와 가족들에 대한 개별적인 접촉을 통해 조사의 목적, 피해자의 목소리 반영, 조사의 범위 및 기간, 조사의 대상 및 정보공개의 범위,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진상조사조직, 조사의 권한, 민간 진상조사 등의 반영, 책임 있는 관련기관 및 관련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 이행 및 이행감시, 예산 및 인력 등의 항목을 제시하고 가족대책위 소단위별 의견수렴을 독려하였다.



[2014. 08. 23 광화문 청운동, 416가족협의회 416기억저장소]

원래는 5월말 정도까지 가족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진상규명과 관련된 가족대책위의 입장을 정리할 예정이었으나, 갑작스럽게 2014년 5월 16일 대통령과의 면담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통보를 전날 받게 되어, 그 때까지 수렴된 가족들의 의견을 토대로 다음의 원칙들을 성명서의 형식으로 정리하고, 대한변협과의 협약식에서 이를 밝히고 대통령 면담 시에도 이를 전달하였다.[8)]

첫째, 진상규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 가족들의 목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진상규명기구의 구성, 가해자들에 대한 형사절차, 진상조사의 증거 확보 등 진상규명의 전 과정에 피해자 가족들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하고, 그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어야 합니다.

둘째,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은 참사의 근본적인 원인, 직·간접적인 원인, 침몰 전 및 최초 3일간 초동대응, 구조·수습과정, 국회 및 언론의 대응, 가해자들에 대한 조치, 피해자 가족들에 대한 지원 및 보상, 피해자 가족들의 치유와 지역사회 치유 등 전 과정을 그 조사범위로 하여야 하고, 그 범위를 다룰 수 있는 충분한 조사기간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셋째,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은 현장 관련공무원에서 교육기관, 정부부처,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모든 관련 공무원, 국회, 언론 및 관련 민간인을 그 조사대상으로 하여야 하고, 그 언행, 여러 쟁점 관련 결정 및 집행 책임소재, 그 시기, 내용 및 방식 등의 적절성 등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넷째, 제대로 된 진상규명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현장의 목소리에

8) 참고자료 2-36. 201405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에 관한 가족대책위원회 성명서

서 청와대 보고 및 지시에 이르기까지 모든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하고, 전 과정에서의 보고와 지시의 흐름, 예산의 결정과 집행의 흐름이 제대로 파악되고 평가될 수 있어야 하며, 모든 관련 민간기관의 문서 등의 정보공개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섯째, 세월호 참사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은 정부나 국회 주도가 아닌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진상조사기구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 진상조사기구는 관련 정부기관 등에 자료나 물건 제출요구, 관련자의 동행명령, 청문회 개최, 정당한 사유 없는 협조 거부 시의 제재 등의 조사 권한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하고 충분한 예산과 인력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여섯째,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은 관련 국회의 국정조사, 형사수사 및 재판, 감사원 및 정부 내 감사, 청와대 및 정부기관의 자체 평가 및 대안 제시, 특별검사, 민간 차원의 진상조사 등 여러 민·관 차원의 진상조사의 결과 등을 반영하여야 하고, 민·관 차원의 다양한 진상조사의 경우에도 관련 기관 등의 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일곱째,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은 그 결과에 근거하여 책임 있는 관련기관 및 관련자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 행정적 책임 및 정치·도의적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덟째,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은 그 결과에 근거하여 관련 법제 및 관행 개선, 예산 조정, 실질적이고 실효성 있는 매뉴얼 마련, 관련 정부기관, 민간단체들 간 위기대응협력시스템 구축 등이 이루어져야 하고, 그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시정요구, 후속조치 조사 등의 절차가 진행되어 유사한 참사에 대한 확실한 재발방지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합니다.



[2014. 08. 15 시청집회, 김정용, 416가족협의회 416기억저장소]

다. 피해가족 현장지원활동

세월호 가족대책위 및 피해가족들에 대한 현장지원활동은 광범위하고 무정형한 내용으로 이루어졌다. 대한변협 세월호 특별위원회 내에 별도의 팀으로 구성되어 있던 법률상담, 진상규명, 형사재판, 언론대응 등과 관련해 각 팀의 지원활동이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에서 내용적 혹은 기술적 지원을 하는 역할이 있었고, 대부분의 시간은 가족대책위의 조직 운영과 활동에 대한 밀착 자문에 집중되었다. 자문의 형식은 주로 임원회의 및 총회에 참석하여 안건에 대한 상시적인 자문을 하는 것으로 기본으로 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내용을 준비하여 총회, 임원회의 혹은 반별 모임에서 설명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가족들이 농성하는 현장에서 가족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하기도 하고 대외적인 협의 혹은 협상의 자리에 가족대책위의 법률대리인 자격으로 참가하기도 했다. 현장지원활동의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피해가족 조직 운영 및 활동 자문

(가) 세월호 가족대책위 조직체계 확정 및 집행부 선거, 구성 (선거관리 포함)

2014년 5월 세월호 가족대책위 총회를 통하여 부위원장 등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방계친족의 회원 자격 유무, 여성 부위원장의 선출과정의 하자 유무 등에 관하여 자문하였고, 2014년 9월 및 2015년 1월 가족대책위 혹은 가족협의회 임원진을 새롭게 구성할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자문, 피해자 가족 조직 체계에 대한 지속적인 자문 및 선거 개표 관리를 진행하였다.

(나) 세월호 가족대책위 회칙(안) 및 내규(안) 작성 및 제정

2014년 5월 세월호 가족대책위 회칙(안)을 마련하였고 2014년 6월 피해자 가족들 내부적으로 일부 논의가 이루어지기는 하였지만 2014년 7월 특별법 제정과 관련된 활동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면서 한동안 논의의 진전이 없었다. 2014년 9월 새로운 피해가족 임원진 선출을 준비하며 세월호 가족대책위 회칙(안)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졌고, 내규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내규, 임원의 규성에 관한 내규, 임원 근무 및 집행부 회의 운영에 관한 내규 등 내규(안) 준비하여 최소한 조직의 규정이 갖추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다) 세월호 가족대책위 위원장, 대변인, 위원장단, 분과(진상규명, 심리지원, 장례, 진도, 대외협력), 반별 활동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세월호 가족대책위 위원장 등 피해가족 임원진들과는 밀착하여 조직 운영 및 활동과 관련된 상시적인 자문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경우에 따라서는 분과별 자문을 진행하기도 하였다. 분과별 자문의 경우, 보건복지부, 지자체 등의 생계지원 및 심리지원, 트라우마 센터, 분향소 운영, 추모시설(추모비, 추모기억관, 추모공원) 내용 및 부지, 실종자가족 지원, 실종자 수색, 세월호 인양 등 다양한 영역과 이슈에 대하여 요청 없이 스스로 혹은 요청에 의해 자문에 임하였다. 단원고 희생학생 가족들의 경우는 반별로 요청된 이슈 혹은 상황에 대해 설명할 기회를 다수 가졌으며, 특히 특별법 제정운동이 활발히 이루어지던 2014년 7월과 8월에는 반별로 특별법안의 내용, 제정운동의 현황 및 과제 등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라) 세월호 가족대책위 임원회의, 총회 등 회의 운영, 정보 공개

현장지원활동이 시작된 이래 계속하여 세월호 가족대책위 임원회의 및 총회에 거의 빠짐없이 참석하여 회의의 원활한 진행에 필요한 자문과 개입을 진행하였고, 논의되는 주요 안건에 대하여 피해가족을 지원하는 법률가의 입장에서 충실히 입장을 피력하고 자문을 행하였다. 회의의 운영방식, 회의내용 공개, 회의간의 흐름과 필요한 준비 등에 대하여서도 일상적으로 자문하였다.

(마) 국민성금의 현황 파악 및 향후 과제

2014년 5월과 6월에 세월호 가족대책위 차원에서 정부 및 모금기관 관계자와의 만남을 통해 국민성금을 어떻게 관리하고 배분할 것인가에 대한 기초적인 논의를 진행할 때, 과거의 예를 제시하며 신중하게 접근할 것과

피해가족 전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칠 것 등을 자문하였다. 2015년 1월 세월호 가족대책위의 사단법인화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유사 재난의 상황을 파악하고 세월호 관련 성금 현황을 정리하여 성금의 바라보는 원칙적인 입장을 정리하여 피해가족들과 공유하였다.

(바) 세월호 가족대책위 재정 확보 및 운영 계획

세월호 가족대책위는 상당 기간 동안 그 어떠한 현금 후원도 받지 않는 상황에서 정부 혹은 지자체 차원, 그리고 단체나 개인의 현물지원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사실상 상근의 형태로 활동을 하는 임원진과 실무를 담당하는 피해가족들도 전혀 보수를 받지 않는 구조였다. 이에 주요 모금기관에 이미 기부된 국민성금 외에 단체나 개인이 가족대책위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후원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투명하게 수령하여 지출하거나 피해가족들의 회비 납부를 의무화, 현실화 하는 방안 등 투명하면서도 지속가능한 재정 운영의 가능한 형태들에 대하여 자문하였다.

(사) 세월호 가족대책위 사단법인화 (정관초안 및 설명자료 작성, 설명 등 포함)

세월호 가족대책위를 법적으로 보호하고, 인적 혹은 물적 자원의 확보와 활용에 있어 투명성과 공정성을 갖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2014년 11월부터 사단법인화 논의가 시작되었다. 사단법인화 논의의 배경에 대하여 사람과 돈과 관련된 오해와 불신이 상당 정도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오해와 불신을 불식시키기 위한 다방면의 노력을 경주하였고, 사단법

인이 되기 위하여 필요한 법적 요건 및 절차 정리, 사단법인화가 가지는 의미를 정리하고, 정관 초안 및 설명 자료의 마련하여, 임원회의, 총회, 반 모임 등에서 자세히 설명하기도 했다. 특히 2015년 1월 사단법인 전환을 결정하기 위한 총회에서 이러한 결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단법인의 의미와 정관 내용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였다.

(2) 피해가족간 관계 개선, 유지 자문

(가) 세월호 가족대책위 신구집행부 의사소통

대한변협 변호사들이 피해가족들에 대한 현장지원을 시작한 이래 3번의 걸쳐 임원 선출 총회가 있었고, 2014년 9월 소위 '대리기사 폭행사건'으로 관련된 위원장, 수석부위원장 등이 사퇴함으로써 핵심 임원진의 교체가 있었다. 임원진의 교체 등이 계획에 의해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함으로 인해 신구집행부 상호간의 불신과 오해가 불가피한 측면이 없지 않았고, 현행 임원진에 대한 지속적으로 단합과 소통에 대하여 강조하는 자문을 행했고, 구집행부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연락과 만남을 통해 불필요한 오해나 의심을 가지지 않도록 조언하였다.

(나) 생존학생가족모임, 교사모임에 대한 주요 현안 설명 및 자문 (자살시도 생존학생 사건 관련 자문 포함)

세월호 참사 초기에 있어서는 생존학생가족모임은 세월호 가족대책위에서 환영받는 존재가 아니었으나 생존학생가족모임의 꾸준한 노력으로 자연스럽게 세월호 가족대책위의 일부가 되었다. 그러나 생존학생을 위한

심리치료, 학교생활에의 재적응 등 생존학생만의 고유한 문제가 있었다. 또한 세월호 가족대책위의 논의를 그때그때 충분히 따라잡지 못하는 상황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생존학생가족모임 총회에서 특별법안, 사단법인화 등에 대하여 설명하였고, 생전학생 대표들과도 만나 부모님의 입장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2014년 12월에는 생존학생 중 한 학생이 장문의 유서를 쓰고 자살을 시도한 사건이 있었고, 이에 대해서도 즉시 병원에 가서 필요한 자문을 제공하였다. 또한 희생교사 유가족모임에 대해서도 순직 문제 등 고유의 이슈와 사단법인화 등 전체적인 이슈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다) 세월호 가족대책위와 일반인희생자유가족대책위의 관계 개선 및 통합 가능성 모색 (인천소재 일반인희생자유가족대책위 사무실 10여 차례 방문 포함)

2014년 5월 세월호 가족대책위와 대한변협의 관계가 공식화되기 이전부터 안산을 찾아 온 인천소재 일반인희생자유가족 관계자들과는 접촉이 있었다. 언론의 관심과 가족들의 힘의 결집이 이루어지고 있던 안산 쪽과는 달리 인천 쪽은 사무실 확보, 생계 지원 등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이에 세월호 가족대책위에 인천 쪽과 가능하면 하나의 조직으로 긴밀하게 협력할 것을 자문하였으나, 세월호 가족대책위 자체가 안정화되지 못한 상황이었고 계속 발생하는 돌발사태에 대응하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충분한 대화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결국 일반인희생자유가족대책위가 별도로 설립되었고, 국민성금의 활용문제, 특별법안의 내용 등에 대한 이견으로 긴장관계가 형성되었는데 일반인 희생자유가족대책위

사무실의 지속적인 방문과 대화, 전화를 통한 수시 정보 교류 등을 통해 양 단체의 관계가 가능한 우호적이고 상호협력적인 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특히 2014년 12월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상 추천할 위원을 협의하는 과정에서는 양 단체가 일주일에 4번을 만나 동석하여 진상규명이라는 목적에 부합하는 위원이 추천될 수 있도록 조언하였다.

(라) 일반인생존자(화물피해자)들의 관계 개선 및 세월호 가족대책위로의 편입 가능성 모색 (화물피해자들 모임이 있는 제주 3회 방문 포함)

일반인생존자(화물피해자)들의 경우 세월호 가족대책위에서 진상규명과 관련하여 접촉한 적은 있었지만 본격적인 공동 혹은 협력체계를 구축하려는 노력은 한동안 없었다. 가족대책위를 명실상부한 전체 피해자의 대표조직으로 만들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2014년 11월과 12월에 가족대책위 차원에서 세 차례 제주 방문이 이루어졌고, 변호사들을 동행하여 제주시 당국의 대응에 대한 문제제기, 법률적 지원의 현황 및 가능성 자문, 특별법, 회칙 등 관련 규정의 설명 등의 활동을 수행하고 피해가족 간의 신뢰관계가 구축되도록 노력하였다.

(3) 피해가족 대외관계 자문

(가)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안산시민대책회의 등 외부 시민사회단체들과 관계 설정 및 협력관계 구축

세월호 참사 초기부터 일부 보수언론에서는 시민사회단체와 세월호 피해가족들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에 대하여 이데올로기적 공세를 가하

면서 이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 신뢰할 수 있고 검증된 인권단체 등이 피해가족들에게 필요한 조언과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서명운동을 시작으로 해서 서로 신뢰를 쌓아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도록 중간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그 후 특별법 제정 과정, 국민간담회 과정 등에서도 이미 상당 부분 형성된 신뢰관계가 좀 더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각 단위들의 강점과 협력의 필요성에 대하여 조언하였다.

(나) 시민기록위원회 등 세월호 가족대책위 내외부의 여러 단위들과의 관계 정립

2014년 5월 세월호 가족대책위가 안산 와스타디움에 소재하던 시절부터 다양한 단체와 개인, 기관에서 방문하여 때로는 지원이나 후원 의사를 밝혔고, 때로는 협조를 요청했다. 그 중에 특히 기록과 관련하여 여러 단위들이 가족대책위에 다가왔고, 이들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고 가족대책위와의 직간접적인 결합을 원할 경우 그 구체적인 내용을 정리하여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시민기록위원회와 가족대책위와의 협약, 다큐 제작 관련한 방송사 등과의 협약, 기타 대언론 활동과 관련하여 협약문 초안 작성, 협약의 내용 협의 등의 활동을 수행했다. 무엇보다도 피해가족들에 대한 도움을 명분으로 실제로는 피해를 가하거나 사익을 추구하는 경우, 피해가족들이 실제 도움을 주고 있는 개인과 단체에 대한 고마움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노력하였다.

(다) 국회, 여당, 야당, 정부 부처, 지자체, 교육청 등 대공공기관 협상 및 협의

세월호 참사 당일부터 피해가족들은 수많은 공공기관과 협의하고 협상하는 과정을 겪었다. 현장지원을 위해 처음 진도에 내려갔을 때부터 이러한 협의 및 협상의 역할을 염두에 둔 것이기도 했다. 가족대책위와 연결된 때부터 줄곧 계획된 만남 뿐만 아니라 수시로 벌어지는 상황과 관련하여 정부를 상대로 하는 협상 및 협의에 적극적으로 임했다.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피해자지원 특별법 제정운동 과정 수개월 동안 국회, 여당, 야당, 정부 부처, 지자체, 교육청 등과 협의하거나 협상한 것이 대표적이고 분향소 주변, 이동 시, 청와대, 국회 및 광화문 체류 시 대경찰 협상 및 협의을 통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불상사를 예방한 것도 현장지원을 하는 변호사들의 중요한 역할 중의 하나였다.

(라) 피해가족 특별법 제정운동 및 집행 자문

2014년 5월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서명운동으로 시작된 진상규명 관련 대 국회 및 정부 활동 지원은 국회 국정조사특위 설치 촉구, 국정조사기간 모니터링 등 자문 및 현장지원으로 이어졌다. 7월 2일 대한변협 주최 4·16 진실규명 및 배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 공청회에 가족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했고, 국회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및 협상과정에서 법률적 자문, 설명회 개최 및 협상 지원들의 활동을 수행했다. 이 과정에서 수십차례에 걸쳐 여야 국회의원 면담을 진행했고 국회 국정감사 참관 등을 자문하기도 했다. 진상규명 특별법이 제정된 후 바로 이어진 국회 4·16 세월호 참사 피해자지원 특별법 제정 및 협상과정에서 법률적 자문, 설명회 개최 및 협상 지원 활동을 수행했다. 이러한 전 과정에서 국회, 광화문, 청와대 앞 가족대책위 농성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문과 현장지원을 수행했고,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

명 특별법상 가족추천위원의 추천 및 선출과정에서 후보군의 제시 및 검증, 여러 피해가족 단위의 의견 수렴, 선출 당시 개표 관리 등의 활동을 전개했다.

(마) 국제기준 및 비교연구조사, 피해가족 국제협력활동 기획 및 자문

4·16 세월호 참사와 관련하여 국내외적으로 여론을 환기시킬 필요가 있다는 판단과 재난과 관련한 국제법, 비교법적 기준의 제시, 진상규명 및 치유회복 과정과 관련된 외국사례 연구 등의 필요성을 절감하며 몇몇 관련 단체 국제인권활동가들과 함께 국제협력 대응단위를 구성하여 2014년 8월 교황 방한 시 교황의 피해가족과의 만남 및 접촉을 기획하고 천주교 측과 협상하고, 이를 실행에 옮기는 활동을 진행하였고, 교황 방한 시 내외신 기자회견도 기획하고 진행했다. 언론사의 피해자 가족 일본 방문 동행 취재 제안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가족 중 일부가 일본을 방문하여 후쿠시마 참사 피해자, 국회 진상규명위원 면담, 교민 간담회 등 진행할 수 있도록 주선했다. 2014년 12월 9일에는 세월호 특별법에 따른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출범을 앞두고, 해외 참사 진상규명 과정의 한계점과 의의를 짚어보고 세월호 참사 진상조사위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해답을 얻고자 국제워크숍 <해외 사례에서 본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이 나아가야 할 길>을 기획, 진행하였다. 이 국제워크숍에는 후쿠시마 참사 피해자 고와타 마스미, 후쿠시마 국회사고조사위원회 위원 다나카 미츠히코, 9·11 유가족인 콜린 캘리와 탈랏 함다니(영상통화로 참가), 『위원회: 9·11 조사의 검열받지 않은 역사』 저자이자 전 뉴욕타임지 기자인 필립 쉐논이 참석했다.

3. 활동 평가 및 전망

가. 변협 차원의 체계적 지원 미비와 개선점

대한변협 세월호 피해대책 TF, 그리고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피해대책 특별위원회 내에서 현장지원활동이 큰 기여를 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전체 특위 활동과 현장지원활동이 유기적인 연계를 가지고 이루어졌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정기적인 보고와 의견 수렴 혹은 제시의 시스템 구축을 이루어내지 못했고 특위 차원에서도 현장지원이 현장에 있는 개별 변호사들의 판단에 의해 이루어질 수밖에 없도록 방치한 측면이 없지 않다.

또한 특별법을 둘러싼 대내외적인 논란으로 10월부터 현장활동 변호사들에 대한 변협 차원의 지원을 중단 혹은 대폭 축소함으로써 일관된 활동 및 활동지원의 체계 구축을 소홀히 한 면이 없지 않다. '다수 회원이 회원 전체의 의견 수렴 없이 협회 회비를 세월호 공익법률지원단 활동에 지원하는 것에 대 반대 의견을 표명' 하였다는 이유로 9월 30일을 기준으로 진도 및 안산 상주 변호사에게 지급되는 활동비, 국회 및 광화문 현장 유족에 대한 밀착지원에 대한 실비 지원이 종료되고 다만 광주 재판을 지원하는 재판지원팀과 안산에서 유가족 자문, 상담 활동에 대한 교통비 등 실비 지원만이 이루어졌다. 지원을 통해 이루어지던 활동을 급작스럽게 종료하도록 강요하였던 위와 같은 결정은 매우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긴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정치권 혹은 언론의 외압에도 흔들리지 않고 원칙을 지켜나가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부적으로 동요가 있었던 점, 단기의 임기로 운영되는 대한변협 집행부의 입장에서는 임기 내 성과 확보와 마

무리를 추구하게 되는 경향이 있을 수 있다는 점 등등에 대한 충분한 평가도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향후 세월호 참사 관련된 활동뿐만 아니라 유사한 재난 대응 상황에서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체계화된 보고 및 피드백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고, 현장 활동 변호사들에 대한 지원의 원칙과 기준 마련, 그리고 이의 일관된 적용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나. 변협 차원의 다른 활동과의 연계성 설정 미비와 개선점

법률상담, 진상규명, 형사재판, 언론대응 등 변협 특위 내의 다른 팀들과 어느 정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이들 팀의 활동을 현장에서 지원하려고 노력하였던 것은 사실이다. 특히 진상규명과 관련해서는 가족대책위뿐만 아니라 국민대책회의 등 다른 단위들과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했고, 변협 진상규명팀과 가족대책위 진상규명분과가 유기적인 공동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형사재판이나 언론대응과 관련해서는 부분적인 실무지원만을 수행하였고, 같은 현장에서 이루어진 활동임에도 불구하고 법률상담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지 못했다.

앞으로는 변협 특위 내의 여러 팀들이 각자의 역할과 책임을 분명히 함과 동시에 현장지원단위와 어떻게 협력하여 시너지효과를 낼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고민이 필요하다.

다. 장기적 관점에서 피해가족 현장대응 활동 배치 부족 & 개선점

현장대응 활동이라는 것은 많은 경우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하나씩 순서대로 진행될 수 없는 특징이 있다. 수시로 예측하지 못했던 상황에 대처해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하루 24시간을 투여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한다.

하지만 현장대응의 활동이 어떤 내용을 가질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미리 이루어지고 예측 가능한 큰 틀 내에서 활동계획이 수립되고 집행되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변화되는 상황에 맞게 현장대응 활동의 내용과 형식이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사전에 충분히 논의가 이루어질 수 필요가 있다. 즉 피해가족들의 조직 체계 정비 단계, 특별법 제정 등 관련 법제 정비 단계, 정리된 조직과 법제에 근거하여 활동하는 단계 등에서 현장활동은 다른 양상을 띨 수밖에 없고 이를 미리 예측하고 준비하여 현장대응의 인적 구성이나 활동의 형태를 재규정할 필요가 있다.



[2014. 04. 17 단원고희망의불빛, 권우성, 416가족협의회 416기억저장소]

제2부 영역별 활동 내역

Ⅲ. 입법 지원 활동

Ⅲ. 세월호 백서_입법 활동

1. 세월호참사의 근본 대처 방안에 대한 논의

-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후, ‘단원고 학생 전원 구조’라는 희소식이 들렸을 때만 해도, 이것은 단순한 해난 ‘사고’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그러나 몇 시간 지나지 않아 ‘전원구조’라는 희소식은 오보로 판명이 되었고, 국민들은 불안해하기 시작하였으며, 단순한 ‘사건’에 머물렀을 수도 있는 이 사고는 사후 인명 구조 및 대처 과정에서 치명적인 문제점을 드러내면서 ‘대형참사’로 번지게 되었다.

피해자가 300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더군다나 그들의 대부분은 수학여행 중이었던 단원고 2학년 학생들이라는 사실, 수많은 국민들이 영상매체를 통해 지켜보는 가운데 세월호는 해저로 침몰해갔으며, “가만히 있으라”는 어른들의 말을 믿고 기다렸던 이들은 생명을 잃어야 했다는 사실은 대다수 국민들에게 엄청난 충격이었다. 해일같이 몰려오는 악몽이었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하자, 많은 국민들 특히, 학부모들은 내 자녀도 언제 어디서든지 이러한 참사를 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과 함께 “왜 이러한 참사가 벌어지게 되었는가?”라는 의구심을 갖게 되었다. 세월호 피해자 가족들은 “왜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죽어가야만 했는가?”하고 죽고 싶을 만큼 고통스러워하였다. 각종 매체의 영상을 통해 세월호가 침몰하는 광경을 지켜보면서 배 안에 남아 있던 3백여 생명이 죽어간 것을 알게 된

국민들도 한동안 헤어나기 어려운 고통에 빠져들었으며, 그로 인해 국내 소비경제가 불황에 빠져들 정도였다.

이러한 가운데, 피해자 및 그 가족들을 포함한 많은 국민들은 이러한 참사가 왜 발생하게 되었는지, 선령(船齡) 연장, 불법 증개축, 과적, 운항 과정에서의 각종 잘못, 침몰 과정, 침몰 이후 구조/수색 과정에서의 문제점 등, 도저히 사회일반인의 상식으로는 이해하거나 설명하기 어려운 각종 문제들에 대해 의문을 갖게 되었다. 향후에 이러한 재해/재난의 발생을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불가피하게 대형 재해/재난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면 국민과 정부는 어떻게 대응해야만 세월호와 같은 비참한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 것인가, 이번 기회에야말로 대한민국이 안전한 사회로 나아가야 하지 않겠는가하는 수많은 의문, 의혹과 답변들이 난무하는 가운데,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대처 방안에 대해 고민하게 되었다.

그러한 고민의 결과로 대략 3가지 방안이 논의되었는데, ① 특별검사제도 활용, ② 국회 국정조사권 발동, ③ 관련 특별법 제정이 바로 그것이다.

당시 특별검사제도는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검법"이라 함)이 2014년 3월 18일 제정되어 2014년 6월 19일 시행될 예정이었다. 위 법은 "범죄수사와 공소제기 등에 있어 특정사건에 한정하여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는 특별검사의 임명과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제1조),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국회 본회의 의결, 법무부 장관의 판단에 의하여 정해지고(제2조),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장, 국회에서 추천한 4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된 국회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 2명의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하면,

대통령이 그중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한다(제3조, 제4조). 그리고 특별검사는 특별검사보 및 특별수사관과 관계 기관으로부터 파견받은 공무원을 지휘·감독하여 20일의 준비행위, 60일(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30일 연장 가능)의 수사를 통해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별법 제정을 통해 작동 가능하였던 특별검사제도가 위 법에 의해 보다 용이하게 작동 가능하게 된 만큼 국민적인 기대가 컸기에 일각에서는 특별검사제 발동을 위한 서명운동이 벌어지기도 하였다.

한편 국회에서는 국정조사권 발동이 논의되었고, 여야 간에 기간, 대상은 물론 특정인의 청문회 증인 채택 여부 등을 놓고 격론이 벌어졌다. 다른 한편, 일각에서는 세월호 침몰 및 구조/수색 등의 과정에서 돌출된 총체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특별검사, 국정조사만으로는 부족하고 관련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특히, 법률가와 정치인 중 일부는 특별검사제, 국회 국정조사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결국은 특별법 제정을 통해 문제를 근본적으로 풀어내야 한다는 입장이 강하였다.

4월 30일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대한변협”이라 함) 위철환 협회장은 “세월호 참사에 대한 대국민 성명”을 통해 “관련 법제와 관행의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5월 8일경 대한변협 세월호 TF는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 대책Ⅱ-특별검사제도, 국정조사 청문회, 특별법 제정 비교”라는 문건[1]을 통하여, 각 제도에 대한 비교 설명과 장단점을 분석하면서 결론적으로는 특별법 제정으로 나아가야 함을 역설하였다.

특별검사제도는 특별검사에게 관련 사건에 관한 수사와 공소유지를 위

1) 참고자료 3-1.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 대책Ⅱ(제도적 고찰) - 특별검사제도, 국정조사청문회, 특별법제정의 비교

한 모든 권한을 허락하므로 효율적인 수사가 가능하고, 검찰총장과 경찰청장등에게 수사협조를 요청하고 관련 기관에 수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과거 사례 등으로 볼 때 짧은 수사기간(통상 60일 이내), 주요 수사 인력의 검찰로부터의 파견 등으로 인하여 공정하고 충분한 수사가 어렵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 수사비용이 10억~20억 정도로 드는데 비하여 효과는 미미하다. 무엇보다도 범죄수사 및 공소제기가 목적이고, 임명절차상 정치적 독립성 확보가 쉽지 않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진상규명 뿐만 아니라 재해/재난의 예방 및 사후 대처 방안까지 논의되어야 하는 세월호 참사의 과제를 풀기에는 미흡하다.

국정조사 및 청문회 또한, 입법에 필요한 정보 취득 및 사실관계 파악에 용이하고, 공개된 청문회 등을 통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데에는 유리하나, 국회의원들의 정파적 속성으로 인해 정쟁대립으로 치우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세월호 진상조사를 위해 필요한 과정임에는 틀림이 없으나 이 역시 세월호 참사가 던져준 난제를 풀기에는 많이 부족하다.

물론 특별법 역시 검찰의 수사 및 공소제기와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에는 특별법을 통한 진상규명과 중복될 여지가 있고, 다른 제도에 비하여 법 제정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어 증거수집에 어려움이 초래될 가능성이 있다는 단점은 있다. 그러나 독자적 인사권 및 예산 편성권, 증거수집 및 조사권 등이 부여된다면 활동의 독립성 확보가 쉽고, 추천 집단을 잘 갖추면 위원회 구성의 중립성 및 민주적 정당성 확보가 가능하며, 전문성 있는 위원을 선출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이고 심도있는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대책 마련이 가능한 특별법 제정이야말로 세월호 참사로 인해 드러난 제반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가장 좋은 대안이라는 결론이었다. 위 문건은 “세월호 사고 희생자, 실종자, 생존자 및 가족대책위원회”(이하, “세월호 가족대책위”라 함)를 위한 설명 자료로 활용되었으나, 초기에는 별다

른 반응을 얻어 내지 못하였다.

2014년 5월 16일 대한변협은 세월호 가족대책위와 업무 협약(“세월호 참사 법률지원 및 대책 마련을 위한 ‘세월호 사고 희생자, 실종자, 생존자 및 가족 대책위원회’와 대한변호사협회 간 협약서”[2]) 조인식을 가졌는데, 그날 작성된 “세월호 사고 실종자 조속한 수습과 철저한 진상규명 촉구 서명용지”[3]에는 “세월호 사고 실종자에 대한 조속한 수습과 철저한 진상 규명을 강력히 요구합니다.”라는 제목 아래, “희생자 및 실종자의 조속한 수습과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한 철저한 진상 규명 및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강력히 요구”하면서 특별법 제정이 언급되기 시작하였다. 그 이후 특별법 제정 요구는 세월호 가족대책위와 세월호참사 국민대책회의(이하 “국민대책회의”라 함), 전 국민적 요구로 확산되기 시작하였다.

2. 법제도개선단 특별법 제정팀을 만들다

대한변협 세월호 TF가 5월 16일 세월호 가족대책위와 대한변협 간에 업무협약 체결을 성사시킨 것을 계기로 5월 19일경 ‘세월호 참사 피해자 지원 및 진상조사 특별위원회’(이하, “세월호 특위”이라 함)가 출범하게 되었다.

세월호 특위는 김영훈, 이명숙 변호사를 공동위원장으로, 현장대응지원단, 진상규명조사단, 법제도개선단, 법률상담지원단 등 4개의 지원단, 그리고 위 지원단의 활동을 지원하는 총괄지원팀으로 구성되었다. 이때부터 세월호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중요하게 생각하여 법제도 개선단 산하에 백서제작팀, 해상팀 뿐만 아니라, ‘특별법 제정팀’을 두고 박종운 변호

2) 세월호 참사 법률지원 및 대책 마련을 위한 '세월호 사고 희생자, 실종자, 생존자 및 가족대책위원회'와 대한변호사협회 간 협약서

3) 참고자료 3-2.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 천만인 서명 용지

사를 팀장으로 임명하였다.



[2014. 07. 11 서울고속버스터미널 시민서명, 김혜령, 416가족협의회 416기억저장소]

박종운 변호사는 이미 5월 13일경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피해자 지원, 재발 방지책 마련 등에 관한 특별법 초안”[4]을 내놓은 바 있는데, 특별법 제정팀이 설치된 것을 기화로 위 초안을 더욱 발전시켜 나갔다. 위 초안에 대해 세월호 특위 위원들이 관심을 갖고 의견을 제시하였고, 특히 신현호 변호사는 위 초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하기도 하였다[5].

그 무렵, 법률가들 중에는 이와 별도로 특별법 제정(안)을 준비한 개인과 단체가 있었는데, 개인으로는 김희수 변호사이고, 단체로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민변”이라 함)이다. 김희수 변호사는 이미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등 유사한 위원회에서 위원으로 활동하였고, 세월호참사가 발생하자 그로 인해 드러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신념이 강하였다. 그러하기에 개인 차원

4) 참고자료 3-3. 140513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피해자 지원, 재발 방지책 마련 등에 관한 특별법 초안 (박종운)
5) 참고자료 3-4. 140513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피해자 지원, 재발 방지책 마련 등에 관한 특별법 초안 (신현호 수정)

에서 특별법 제정(안)을 만들어서 세월호 특위에 입법 제안을 해 왔던 것이다. 민변은 세월호참사 발생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활동하였는데, 국민대책회의에 단체 단위로 참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내부에 특별법 제정팀을 두고 이미 여러 차례 수정 작업을 거듭하고 있었다.

세월호 특위 특별법 제정팀은 박종운 변호사를 팀장으로 하여 시작했으나, 신현호 변호사, 김희수 변호사,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사무처장 등 유사한 위원회 경력을 가진 장완익 변호사, 그리고 김영훈, 이명숙 공동위원장, 황필규 변호사, 박주민 변호사 등이 모여서 자연스럽게 논의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

3. 대한변호사협회 통합안을 만들다

세월호 특위 특별법 제정팀은 박종운 변호사 초안 및 신현호 변호사 수정안을 가지고 논의를 하였으나, 김희수 변호사 초안과 민변 초안이 제안됨에 따라 박종운 변호사가 정리한 '대한변협 세월호 특위 초안', 김희수 변호사가 작성한 특별법안(이하, "김희수 초안"이라 함), 민변이 논의하고 있던 특별법안(이하, "민변 초안"이라 함)이라는 3개의 특별법 제정안을 논의의 대상으로 삼게 되었다.

특별법 제정팀에서는, 정치권에서도 여야 불문하고 특별법 제정안이 여러 개 제출되고 있는 상황에서 법률가 그룹까지 여러 개의 법률안을 내놓는 것은 오히려 혼란을 초래하고 특별법 제정의 시기를 늦출 수 있으므로, 최소한 법률가 그룹에서는 위 3개의 법안을 하나로 녹여낸 대한변호사협회 통합안(이하, "대한변협 통합안"이라 함)을 만들기로 하고, 향후에 위 법안을 중심으로 세월호 가족대책위 등 피해자 단체에 제안하여 피해자 단체

특별법 제정안을 만들어 의원입법하는 것을 목표로 삼게 되었다.

가. 대한변협 세월호 특위 초안

‘대한변협 세월호 특위 초안’은 과거에 제정, 시행되었던 유사한 위원회 관련 법 규정들을 세월호 문제에 맞추어 수정 보완한 모습을 갖추고 있다. 법안의 명칭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피해자 지원, 재발 방지책 마련 등에 관한 특별법”이고, 총칙 -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위원회의 구성 - 위원회의 업무와 권한 - 피해자등에 대한 보상 등에 관한 조치 - 보칙 - 벌칙 등 6개장 46개조, 부칙 3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조사하여 그 원인을 규명하고, 관련 제도, 국가 시스템 등을 개혁함으로써 향후 동일·유사한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며, 피해자 및 그 가족에 대하여 적정한 보상을 실시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생존권 등 인권신장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는데(제1조), 국가 등의 책임을 명기하고,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임기 2년, 15명 이상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위원회’를 설치하여 피해자의 신청을 중심으로 진상을 규명하게 되어 있다.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 방법으로는, 진술서 제출 요구, 관련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 요구,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실 또는 정보에 대한 조회, 감정인의 지정 및 감정 의뢰, 관련 자료나 물건 또는 기관 등에 대한 실지조사, 출석요구 불응자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 고발·수사의뢰와 같은 과거 유사한 위원회가 가진 권한뿐만 아니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 청문회까지 규정하였다.

과거에도 진상을 규명하고 결과보고서를 제출한 사례는 제법 있지만 그

결과에 따른 이행이 거의 없거나 부족했던 점을 감안하여, 위원회가 세월호 참사의 원인, 경과 및 제도개선 등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이 포함된 진상규명 결과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되, 국회는 의결로써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재발방지 대책의 이행과 관련하여 법령의 제·개정,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에 제도개선, 예산조정, 징계조치 등 시정을 요구하거나 관계기관에서 처리함에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관계기관에 이송하면, 관계기관은 시정요구를 받거나 이송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 및 국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였다.

나아가, 위원회는 진상규명 등의 활동을 종료한 후에도 1년에 2회 임시위원회를 소집하여 관계 기관 등이 재발방지대책을 이행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관계 기관 등이 재발방지대책을 이행하지 않거나 위원회 및 국회에 처리결과를 보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에 대하여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고, 시정요구에도 불구하고 관계 기관이 이행하지 않거나 보고하지 않는 경우, 위원회는 관계 기관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과거의 위원회들보다 좀 더 강력한 조사 관련 권한을 가지고) 진상규명 → 진상규명에 따른 대책 마련 → 국회 및 관계 기관 등을 통한 대책 이행 → 위원회를 통한 대책 이행 사항 모니터링의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더하여 보상금, 의료지원금, 생활지원금 등의 신청을 접수하여 지급 여부 및 지급 금액을 위원회가 결정하도록 하고, 세월호 참사의 피해자를 위령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안전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추모관, 추모공원 설립 등 기념사업 수행 의무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하고 있다. 또한, 이 법 위반자 등에 대한 벌칙, 과태료 부과 처분 등을 규정하고 있다.

나. 민변 초안

민변에서 작성 중이었던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률(안)”[6]은 총칙 -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 직무와 권한 - 피해자지원 등 조치 - 보칙 - 벌칙 등 6개장 61개 조문, 부칙 4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장의 순서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과거 유사한 위원회 관련 법률을 근간으로 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대한변협 세월호 특위 초안과 유사한 점이 많으나, “세월호참사 피해사건의 진상을 규명하여 그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고, 피해자 등 지원 및 국가적 재난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한 포괄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진상 및 책임소재 규명의 점에 좀 더 초점을 맞추고 있고, 내용이 좀 더 세밀하게 구성되어 있다. 진상규명 절차에 있어서는 신청뿐만 아니라 직권 조사에 대해서도 강조하고 있는데, 진상규명을 위해 수사가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하거나 또는 특별검사에게 수사의뢰를 할 수 있다는 점이 민변 초안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다. 김희수 초안

김희수 변호사의 초안은 앞의 두 법안과는 다른 큰 특징이 몇 가지 있다. ① 하나의 법안이 아니라, 진상규명 관련 법안과 피해자 지원 및 기억사업 관련 법안, 이렇게 2개의 법안으로 나누어져 있다는 점이다. 진상규명과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은 그 내용이 너무 달라서 하나의 법으로 규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적절치 않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② “4·16 진실 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안)”은 4·16 특별위원회를

6) 참고자료 3-5. 140528 민변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률(안) (김택수)

설치하되, 위원회의 위원장 및 상임위원은 이 법이 정하는 조사 사건에 한하여 독립적인 특별검사의 지위 및 권한을 갖도록 규정하고 있다(형사소송법, 검찰청법, 군사법원법, 그 밖의 법령 중 검사와 군검찰관의 권한에 관한 규정은 이 법의 규정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위원회의 위원장 및 상임위원의 경우에 이를 준용). 과거 유사한 위원회에 참여했던 경험으로 볼 때 기존의 법률에서 정한 조사권한만으로는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규명할 수 없을 것임이 명백하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③ "4·16 배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부제 : 세월호 참사 기억 및 치유에 관한 법률)"은 '세월호', '추모'라는 표현보다는 '4·16', '기억'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고 배상의 원칙을 좀 더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인데, 세월호라는 특정 회사 사고 선박의 이름을 법안이나 특별위원회의 명칭으로 하기 보다는 4월 16일이라는 참사 발생일을 강조함으로써 온 국민이 그 날을 기억하고 안전사회로 나아가도록 염원하기를 바라는 심정에서 그러한 표현을 사용하였다.

라. 3개 법안 절충 작업

위와 같은 3가지 특별법안을 대한변협 통합안으로 만들기 위한 제1차 전체회의는 5월 28일 법무법인 소명에서 열렸다. 위 회의에서는 ① 3개의 법안을 통합하여 하나의 단일안을 만든다, 법안 및 특별위원회의 명칭에는 '세월호'라는 특정 회사의 선박이름이 아니라 사고 발생일인 '4월 16일'이 들어가야 한다, ② 김희수 변호사가 제출한 법률안과 같이, 진상규명 관련 법률안과 피해자 지원 및 기억사업 관련 법률안, 이렇게 2개의 법안을 제출하는 것도 물론 타당한 이유가 존재하나, 두 개의 법안을 가지고 나갈 경우 국회에서 이루어질 정치적 협상 과정에서 피해자 지원

및 기억사업 법안만 통과되고 진상규명 관련 법률안은 통과가 매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진상규명, 재발방지, 피해자 지원, 기억사업을 모두 포함한 1개의 통합법안으로 가되 용어는 김희수 변호사가 제안한 용어를 주로 사용하기로 하고, 통합법 1차 초안을 김희수 변호사가 작성하기로 하였다.

이후 6월 2일부터 대한변협 회관에서는 김희수 변호사가 작성한 통합법 초안을 기초로 대한변협 세월호 특위 초안과 민변 초안이 가진 내용을 잘 녹여 내는 작업을 여러 차례 진행하였다.

마침내 6월 16일 대한변협 통합안 최종 수정본이 작성되었는데, 법명은 "4·16 참사 진실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안)" 으로 하였다. 이 법에 대하여는 김희수 변호사가 "4·16 참사 특별법 제정 소견" 이라는 제목의 문건[7]을 통해, 특별법 제정의 목적, 특별법 제정의 기본 원칙(독립성 보장 원칙, 충분한 조사권한 등의 부여 원칙, 기억과의 투쟁), 특별법의 주요 내용(위원회 주요 업무, 위원회 구성, 위원장 및 위원회 임기, 수사 및 기소권이 포함된 위원회 권한, 동행명령권과 청문회 권한, 배상금 등의 지급, 재단 설립, 기타 사항, 형사처벌조항)으로 나누어서 설명한 바 있다.

그런데, 위 최종 수정본은 작성되었지만 여전히 대한변협 통합안 작성 참가자들 간에는 여러 쟁점에서 이견이 존재하였는데 ① 위원회의 권한과 관련해서는 특별검사제도를 활용할 것인가, 수사 및 기소권을 위원회에 직접 부여할 것인가를 놓고 법안 제정의 신속성, 현실 정치의 역학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가에 대하여, ② 피해자 지원과 관련해서는 단원고 2학년 학생과 같은 미성년 희생자의 경우 부모의 이혼 등으로 인해 양육자가 부와 모 중 한 명이거나, 부와 모가 아닌 다른 사람인 경우, 기존의 민법 상속편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특별법에

7) 참고자료 3-6. 특별법 제정 소고(김희수)

서 어떻게 규율할 것인가, ③ 기억 사업과 관련해서는 재단의 설립주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설립 및 운영 자금의 부담과 관련하여 논쟁이 있었다.

4. 세월호 가족대책위 입법 청원안

가. 대한변협 통합안 설명회에서 공청회까지

세월호 특위 특별법 제정팀은, 대한변협 통합안 최종 수정본을 완성한 상태에서 위 법안을 세월호 특위에서 논의하였는데, 세월호 특위에서는 위 법안을 대한변협에서 통합법안으로 제정을 도모하기 보다는 세월호 가족대책위 등과 협의하여 피해자 단체, 국민대책위를 포함한 시민단체 통합안으로 제출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우세하였다.

이에 특별법 제정팀장은 6월 19일 안산에 있는 세월호 가족대책위를 방문하여 대한변협 통합안을 설명하고 질의 및 응답 시간을 가졌는데, 세월호 가족대책위 설명회 참가자들은 대체로 위 법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피해자 지원보다는 진상규명 부분에 좀 더 집중하여 수사 및 기소권 등 위원회의 조사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확정하여 수정 보완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6월 21일(토)에는 인천에 있는 일반인 가족대책위를 방문하여 참석한 임원진과 피해자 가족들에게 대한변협 통합안을 설명하였는데, 전체 진행 경과, 안산 세월호 가족대책위와의 관계, 피해자 지원 내용에 관한 질의 및 응답, 그리고 제안을 중심으로 설명회가 진행되었다.

이후에는 세월호 가족대책위에서 논의된 내용을 대한변협 통합안에 반영하는 작업이 이루어졌고, 6월 29일(일) 세월호 특위 특별법 제정팀 회의

를 통해 7월 2일로 정해진 입법 공청회 일정[8]에 맞추어 통합안을 확정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날 회의에는 민변, 참여연대 등 국민대책회의에 참여하고 있는 단체 실무자들도 참석하였는데, 위원회의 권한과 관련하여 현실 정치적 역학관계상 수사 및 기소권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견해도 제기되었고, 대한변협 통합안이 안전사회 건설 부분에서는 너무 미흡하다고 지적되었다.

따라서 특별법 제정팀은 안전사회 건설 부분이 부족함을 인식하고 그 부분을 대폭 수정 보완하기로 하였다. 또한, 피해자의 범위, 피해자 지원책 등을 보완한 일반인 대책위의 수정안, 국민대책회의가 제안한 특별법안, 세월호 사고 화물피해자들의 특별법(안) 보완 요청, 지역시민단체들의 의견, 안산 세월호 가족대책위 측의 의견 등을 종합하여, 6월 30일경 박종운 변호사가 수정한 통합법안을 김희수 변호사가 최종 수정함으로써 공청회 발제안이 완성되었다.

위 공청회 발제안은 법 명칭을 "4·16 참사 진실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으로 하였고, 총칙,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위원회 권한, 배상금 등의 지급, 재단설립, 보칙, 벌칙 등 6개장, 54개조, 부칙 2개조로 구성되어 있다.

이 법안은 "2014. 4. 16. 전라남도 진도군 관매도 부근 해상에서 발생한 4·16 참사 사건의 진실규명과 아울러 재해 방지책을 수립하고, 희생자의 넋을 위로·기억하며, 희생에 맞은 지원 등을 통해 인간의 존엄성을 기리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권리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4·16 참사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진실규명 및 의혹해소, 재해재방 예방 및 안전사회 확립, 배상 및 피해자 지원, 기억 사업 등을 3개 소위원회를 통해 진행하도록 규정하였다.

---

8) 참고자료 3-7. "세월호 4.16 특별법 공청회" 계획(안)

위원회는 2년(1년 연장 가능) 동안, 기존에 논의되었던 조사권한, 동행명령, 청문회 뿐만 아니라, 제1소위원회 상임위원은 자격을 갖춘 자로 하여 독립적인 검사의 지위 및 권한을 가지고 수사 및 기소권을 가지도록 하였다. 위원회는 조사 결과를 국회와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정부 관계기관은 보고서를 통해 받은 권고 내용을 이행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회가 징계의결요구권자에게 관계기관의 장에 대한 징계절차를 개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피해자 지원과 관련해서는, 피해의 정도에 따라 생활 정도를 고려하여 배상금 등의 정도를 달리할 수 있고, 특히, 4·16 참사 피해자의 부모가 이혼한 경우 및 실제양육자가 재산상속인이 아닌 경우에는 실제양육자 및 부 또는 모의 실질적인 양육기여도와 기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민법에 의한 재산상속분과 달리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피해자 지원의 내용으로는, 배상/보상, 의료지원, 생활지원, 교육지원 등이 규정되어 있다.

기억사업과 관련해서는, 정부로 하여금 위원회 활동이 종료되기 전에 4·16 안전재단을 설립하도록 하고 위원회는 활동 종료 전에 재단이 설립되어 활동할 수 있도록 준비절차를 주도하며 위 재단은 안전사회 관련 사업과 기억 사업, 트라우마 치유 관련 업무 등을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특별법 입법 공청회

7월 2일 “4·16 참사 진실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공청회 ‘가 국회 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수차례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여당측에서는 지정토론자 참여를 거부한 상황에서 장완익 변호사를 좌장으로 하여, 김희수 변호사가 대한변협 통합안(공청회 발제안)을

발표하였고, 새정치민주연합 전해철 국회의원, 세월호 가족대책위 전명선 부위원장, 민변 김택수 변호사, 참여연대 이태호 사무처장이 지정 토론을 하였다.

전해철 의원은 야당안을 기초로 공청회 발제안에 대해 토론하였고, 전명선 부위원장은 피해자 지원보다는 진상규명에 좀 더 힘써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이태호 사무처장은 국민참여형 진상규명(피해자와 국민참여 보장, 투명성 보장, 독립성과 안정성 보장)과 안전사회 실현을 위한 포괄적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강조하면서 위원회와 특별검사제 동시 추진을 제안하였다.

김택수 변호사는 현재까지는 특별검사 임명방안과 진상규명위원회 설치방안을 각각 별개의 특별법으로 정하는 안, 진상규명위원회 특별법에 특별검사에 관한 장을 두어 위원회가 특검의 수사대상과 범위를 정하여 적절한 추천절차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는 방안, 진상규명위원회 특별법에 위원장 또는 상임위원이 특별검사의 지위와 권한을 갖도록 하는 방안이 제안된 상태이나, 위원회의 감사・조사・연구업무와 특별검사의 수사업무가 각자 독립성, 전문성을 유지하면서 통합시킬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무엇인가에 대한 토론은 매우 낮은 수준으로 보인다고 하면서, 진상규명위원회와 특별검사의 병행 추진에 좀 더 강조점을 두었고, 4·16 세월호참사 피해자의 범위와 지원방법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배상, 보상의 방법을 특정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면서, 위자료에 관하여는 위원회가 세월호 참사의 영향을 고려하고 이와 유사한 재난사고에서의 위자료 금액 등을 고려하여 사망, 실종, 상해 등 피해의 유형별로 그 액수를 심의하여 결정하고, 위자료 이외의 나머지 손해에 대한 배상액은 국가배상법에 따르도록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 방안임을 제시하였고, 공무원의 조사거부, 방해 등 행위에 대한 제재수단이 흠결되어 있음을 지적

하였다. 참석한 세월호 가족대책위는 설사 보상/배상 부분을 삭제하는 한이 있더라도 반드시 진실을 규명해 달라고 강력하게 요청을 하였다.

다. 입법청원안 작성 과정

특별법 입법 공청회를 마친 후에 ① 수사 및 기소권을 위원회에 둘 것인지 여부, ② 배·보상 기타 피해자 지원에 관하여 상세하게 규정할 것인지 여부가 2대 쟁점으로 부각되었다.

이에 대하여 특별법 제정팀에서는 세월호 가족대책위의 의견을 존중하여 피해자 지원 및 기억 사업관련 규정을 단순화, 최소화 하는 것에 쉽게 합의할 수 있었으나, 수사 및 기소권을 위원회에 둘 것인지 여부는 쉽사리 결론이 나지 않았다.

마침 대통령께서도 여/야당이 피해자 가족들과 협의하여 좋은 특별법을 만들어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보도되었고, 7월 임시국회 및 7·30보궐선거 일정상 7월 중에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한다면 매우 서둘러야 하는 상황이었다.

이에 특별법 제정팀은 7월 5일(토) 10시경 국민대책위 소속 단체 실무자를 포함하여 확대 회의를 열고, ① 어떠한 방식으로 입법을 할 것인가, ② 특별법안에 대한 주요 쟁점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에 대하여 장시간 논의를 거듭하였다.

(1) 입법방식

입법 방식은 정부입법, 의원입법, 입법청원으로 나눌 수 있는데, 우선 피해자 단체와 대한변협이 만든 특별법안을 수용할 가능성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정부입법은 배제하고, 의원입법과 입법청원 방식의 장단점을 비교하였는데, 현재 여야 의원들이 여러 개의 특별법안을 제출한 상태이고, 특히, 여당과 야당에서 대표적인 특별법안을 제출한 이상, 또다시 국회의원을 통하여 법안을 내는 것은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미 특별법 제정 등을 위한 천만인 서명 운동이 엄청난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입법청원 방식을 채택하기로 결정하였다.

(2) 주요 쟁점

법안 내용에 대하여 부차적인 쟁점은 비교적 쉽게 합의가 되었으나, 여전히 수사 및 기소권을 제1소위원회(진상규명 담당) 상임위원(특별검사의 자격을 갖춘 자)에게 부여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결론을 내리기 어려웠다. 특별검사의 자격을 갖춘 자에게 세월호 참사 관련 수사에 한정하여 수사 및 기소권을 주는 것인 만큼 법리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여당을 비롯한 보수층의 격렬한 반대가 예상되고, 그만큼 법 제정에 이르기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며, 정치적인 역학 관계상 관철하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점이 걸림돌이 되었다.

그러나 과거에 유사한 위원회에서 위원으로 활동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들은 기존의 조사권한만으로는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 예상되므로 반드시 수사 및 기소권을 위원회에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특별법 제정팀장은 ① 입법청원안에 수사 및 기소권을 포함시키되, ② 위원회에 수사 및 기소권을 주는 것이 사실상 어려울 것이 충분히 예상되므로 전개되는 상황에 따라 수사 및 기소권 관철이 불가능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수사 및 기소권 관철을 위해 노력은 하되, 기존의 조

사권한, 동행명령, 청문회, 안전사회 대책 이행 강제 등 입법청원안의 다른 주요 내용을 관철시키는데 좀 더 주력하고, 어느 시기가 되면 수사 및 기소권을 포기할 수 있는 것으로 정리한 후, 참여 위원들의 동의를 구하였고, 참여 위원들이 동의함으로써 수사 및 기소권에 대한 방향이 결정되었다.

이후 시간에는 입법청원안을 완성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었고, 7월 5일(토) 밤을 거쳐 7월 6일(일)에 최종안이 완성되었다.



[2014. 07. 14 광화문광장 단식1일, 김혜령, 416가족협의회 416기억저장소]

(3) 입법청원안 설명회

7월 6일(일) 저녁에는 안산 세월호 가족대책위 총회가 열렸는데, 특별법 제정팀장과 현장대응지원단 변호사들이 총회에 참석하여 입법청원안에 대해 설명을 하고 질의 및 응답을 받았다. 이때 대부분의 내용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가 없었는데, 가족들은 수사 및 기소권 관철을 강력하게 요구하였고, 특별법 제정팀장은 7월 5일(토) 특별법 제정팀 확대 회의에서 정리된 내용을 공유하면서, 수사 및 기소권이 법안에 포함은 되어 있기에, 관철을 위해 노력하되, 정치 현실상 불가능할 것이 예상되므로 다른 주요한

쟁점을 우선적으로 관철시킨 후 마지막에는 포기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다. 이에 대하여 일부 격론이 있었으나, 일단 특별법 제정팀의 의견을 존중하되 세월호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하였다. 일부 가족은 희생자의 명예 및 기억과 관련하여, 실질적인 혜택은 없어도 되지만 세월호 희생자들에게 의사상자, 국민안전의인 등과 같은 명예를 부여할 수 있는지에 관한 질의 및 토론이 있었는데, 대다수 가족들은 입법청원안과 같은 특별법을 제정하여 진상을 규명하고 대한민국이 안전한 사회로 나아가도록 하는 것 자체가 희생자들을 기억하고 명예를 부여하는 것이 될 것이므로, 희생자들에게 의사상자, 국민안전의인과 같은 명예로운 호칭을 부여하는 내용은 특별법에 규정하지 말 것을 요청하였고, 표결 결과 다수의 의견이 채택되었다.

라. 입법청원 과정

7월 7일에는 국회 정론관에서 세월호 가족대책위가 주관하고 세월호 특위가 지원하는 "4·16 참사 진실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 [9] 발표 및 기자회견이 있었다. 세월호 가족대책위에서는 기자회견문[10]을 통하여 국정조사 진행 과정을 지켜본 결과 정치권에 세월호 진상규명을 맡길 수 없다는 것은 깨닫게 되었고, 진상규명과 안전사회 건설은 국민의 뜻이므로 위 내용을 담은 4·16 특별법 제정을 위해 법안 발표를 하고 입법청원을 할 것임을 천명하면서 여야가 4·16 참사 진실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통과를 위해 힘을 합쳐 줄 것을 요청했다. 그리고 여야는 세월호 가족대책위와 만나서 논의하고 국민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토론해 줄 것을 요청하고, 국민의 지지를 호소하였다. 이 자리에

9) 참고자료 3-8. 140707 4·16 참사 진실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
10) 참고자료 3-9. 140707 기자회견문

서 위철환 협회장은 입법청원안의 내용 및 특징에 대해 설명한 후, 국회와 정부가 세월호 가족대책위를 비롯한 전 국민의 마음을 헤아리고 치유하는 심정으로 제대로 된 특별법을 제정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대한변협은 특별법이 제정될 때까지 피해자 단체, 국민들과 끝까지 함께 할 것을 천명하였다[11].

7월 9일에는 입법청원을 위한 기자회견과 입법청원안 국민설명회가 열렸다. 먼저 세월호 가족대책위, 대한변협, 국민대책회의 주최로 입법청원 기자회견이 열렸는데, 기자회견문을 통하여 세월호 가족대책위는 가족과 국민의 목소리가 담긴 특별법을 제정할 것을 촉구하면서, 세월호 가족대책위와 여당, 야당 3자가 협의하여 특별법을 제정할 것을 요구하였다(3자 협의체 구성 제안). 이 자리에서 세월호 특위 이명숙 공동위원장은 입법청원안이 여야 국회의원들이 제출한 다른 법률안과 다른 점을 비교 도표를 통해 명료하게 설명을 하였다[12]. 기자회견을 마친 후, 인터넷을 통해 입법청원안을 살펴본 후 입법청원에 참여한 '4.16 특별법 청원 국민대표단' (7월 9일 12시 1,490명)의 이름으로 입법청원 절차를 진행하였는데, 위 인원은 단 하루 만에 모아진 것이다.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는 "세월호 참사 이후 달라져야 할 것들, 모두에게 진실을! 국민에게 안전을!"을 주제로 "4.16 진실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특별법 국민설명회"가 열렸다. 박종운 변호사가 "4.16 참사 진실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발제를 하고, 장완익 변호사가 "법의 눈으로 4.16 특별법을 뜯어보다", 안경호 전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조사관이 "진실규명, 지금까지와는 달라야 한다", 이태호 참여연대 사무처장이 "반복되는 참사, 해외 사례로부터 배

11) 참고자료 3-10. 위철환 협회장 4·16 참사 진실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 발표문
12) 참고자료 3-11. 140709 이명숙 부협회장 입법청원 기자회견

워야 할 점들”, 김혜진 국민대책회의 존엄과안전위원장이 “안전사회, 말이 아닌 행동으로!”라는 제목으로 지정토론을 한 후, 입법청원안인 “4·16 참사 진실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의 내용을 중심으로 전체 토론을 하였다.

이 자리에서 박종운 변호사는 입법청원에 이르게 된 경과를 보고한 후, 피해자 단체 특별법(안)의 의미 및 특징으로, ① 수요자 중심의 법 제정 운동, ② 국가적 사회적 재난의 재발 방지 및 대응책의 이행, ③ 철저한 진실규명 및 책임소재 파악, ④ 국민참여형 진실규명 및 대책 마련, ⑤ 보/배상 등 피해자 지원에 관한 국가 책임, ⑥ 사회적 치유 기능을 들면서, 피해자 단체 특별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① 진실규명, ② 재난방지 및 대응책 수립, ③ 피해자 지원, ④ 4·16 안전재단으로 나누어 설명한 후, 도표를 통하여 특별위원회, 피해자지원, 기억 및 안전사업을 주제로 여·야 의원 대표발의안과 비교하였다.

이후 7월 15일에는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350여만명의 서명지가 든 상자를 들고 여의도에서 국회의사당으로 행진하여 위 서명지를 국회에 제출함으로써 입법청원 관련 활동을 마치게 되었다.

5. 국회 입법 투쟁

가. 3차협의체 논쟁

7월 9일 입법청원을 한 후 곧바로 입법투쟁에 돌입하게 되었다. 특별법 제정팀의 입법 투쟁은 박종운, 장완익 변호사가 국회 현장을 담당하면서 현장대응지원단, 안산과 인천 세월호 가족대책위, 국민대책회의 등과 소통 및 협력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특별법 제정팀은 먼저 여당의 대표안이라 할 수 있는 김학용 의원 대표발의안(이하, “여당안”이라 함)과 야당의 대표안이라 할 수 있는 전해철 의원 대표발의안(이하, “야당안”이라 함)을 분석한 후, 입법청원안과 비교표를 만들어 차별성을 부각시키고[13], 입법청원안이 진상규명, 안전사회 건설 등에 훨씬 효과적인 법안이라는 점을 알리는데 주력하였다. 또한, 반드시 관철시켜야 할 내용 등 우선순위 혹은 중요도를 논의하고[14], 우선 야당안과의 소통, 통합에 주력하였다[15].

7월 12일(토)부터 특별법 제정팀은 국회로의 출퇴근을 시작하였는데, 첫날인 7월 12일 오전에는 야당 국회의원을 방문하여 협력을 부탁하였고, 국회를 찾아온 세월호 가족대책위 임원들과도 특별법 협상에 임하는 전략, 특히, 우선순위와 중요도에 대해 설명하고 협의하였다.

여야 간 협상의 결과물로 이날 오후에는 ‘세월호 사건 조사 및 보상에 관한 조속 입법 TF’(이하, “조속입법 TF”이라 함)가 가동되어 여야 협상에 들어갔다. “여야가 유가족들과 잘 협의하여 특별법을 만들어 달라”는 취지의 대통령 발언에 기초하여, 7월 9일 입법청원 기자회견을 통해 3자협의체를 제안했던 세월호 가족대책위는 이에 반발하였다. 위 TF에서 여당안과 야당안만 가지고 협의를 할 뿐 입법청원안은 협상의 대상조차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 입법청원안에 대해서는 전혀 설명할 기회조차 없을 것이라는 우려, 결국은 세월호 가족대책위는 배제하고 여당과 야당간에 밀실 야합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 등이 현실로 나타난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세월호 가족대책위가 강력하게 3자협의체를 주장하고 국회의사당 본청 앞에 피해자 및 피해자 가족들이 모여들자, 조속입법 TF에서는 세월호 가

13) 참고자료 3-12. 각 법률안 비교 컬러 도표 (박주민)
14) 참고자료 3-13. 특별법 내용 관련 우선 순위(중요도) 분석
15) 참고자료 3-14. 피해자단체(안)vs새정치민주연합(안) 비교 및 우선순위(중요도)

족대책위 대표 3명이 TF위원들에게 10분 정도 발언할 기회를 주겠다고 제안하였다. 이에 세월호 가족대책위에서는 안산 세월호 가족대책위, 일반인 가족대책위에서 각 1명, 그리고 세월호 특위에서 박종운 변호사를 지명하여 3인의 대표단이 TF에서 발언하게 되었다. 16시 경 위 3인의 대표단은 위와 같은 세월호 가족대책위의 우려를 전달하면서 3자 협의체 형식으로 조속입법 TF를 운영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였으나, "법안은 국회의원들이 심의하는 것이지 민간인이 관여할 수 없다"는 여당측 위원들의 강력한 반대에 직면하였다. 이에 대하여 박종운 변호사는 법안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결국 국회의원이겠지만, 그 과정에 국민 특히 세월호 가족대책위가 참여하는 데에는 아무런 법적인 문제가 없고, 대통령께서도 여야가 세월호 가족대책위와 협의하라고 말씀하셨으니 정치적으로도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여당측 위원들은 요지부동이었다. 이에 3자 협의체가 어렵다면, 차선책으로 TF 회의에 세월호 가족대책위 대표 몇 명만이라도 참관하도록 해 달라, 최소한 회의를 공개라도 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모두 거절당하고, 다만, 입법청원안도 포함하여 논의하겠다는 약속만을 듣고 퇴장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피해자 및 피해자 가족들은 국회의사당 본청 앞에서 연좌하기 시작하였다. 세월호 가족대책위의 주장 요지는, 3자 협의체를 구성하여 법안을 논의하든지, 최소한 참관만이라도 허용하라는 것이었다. 저녁이 되고 점점 더 많은 피해자 및 피해자 가족들이 모여들자, 조속입법 TF에서는 입법청원안을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면서 역시 3명만 대표로 회의 장소로 들어올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3인의 대표가 조속입법 TF 위원들 앞에서 약 17분 정도 발언을 할 수 있었는데, 박종운 변호사는 입법청원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하였고, 세월호 가족대책위 대표는 입법청원안을 중심으로 논의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와 같이 조속입법 TF위원들과 세월호 가족대책위 간에 2차례의 만남이 있었으나, 결국은 입법청원안에 대하여 짧은 시간 동안 설명할 기회가 주어졌을 뿐 3자협의체는 물론 참관조차도 여당측 위원들에 의해 거부당하자, 그동안 국민대책회의와도 거리를 두면서 철저하게 정치적 중립을 지켜왔던 세월호 가족대책위 내부에는 서서히 여당에 대한 불신과 불만이 형성되기 시작하였고, 그날부터 국회의사당 본청 앞에서 세월호 가족대책위의 모임 및 연좌가 시작되었다.

나. 국회 연좌 농성

7월 13일(일), 4·16 참사가 발생한지 88일째 되는 날 11시 세월호 가족대책위는 기자회견을 통해 '무늬만 특별법, 단호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발표하였고, 특별법 제정팀은 이때 모인 각 언론사 기자들을 대상으로 입법청원안 설명회를 개최하면서 관련 자료[16]를 배포하였다. 이때 특별법 제정팀장은 "정확한 내용을 널리 보도해 주시기를", "인터넷과 일부 언론에서 떠도는 잘못된 정보, 비방, 유언비어(流言蜚語) 등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널리 알림으로써, 위 내용들이 불식(不息)되도록, 아예 발붙이지 못하도록 만들어 주시기를" 기자들한테 부탁하면서, 7월 9일 입법청원 당시 입법청원안 설명 및 토론회에서 발제한 내용을 중심으로 법안을 설명하였다.

기자회견 및 설명회를 마치고, 세월호 가족대책위 임원들과 특별법 제정팀은 현재의 상황을 공유하고 협상전략 특히, 마지노선에 대하여 협의하였고, 먼저 조속입법 TF 위원 중 야당측 위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16) 참고자료 3-15. 기자간담회 피해자 단체 특별법(안)의 의미 및 특징, 내용 (박종운)

갖기로 하였다. 그날 15시 20분경 조속입법 TF 회의가 시작되었는데, 세월호 가족대책위와 특별법 제정팀은 협상결렬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하고 입법 투쟁 방안에 대하여 협의하였다. 이날부터 특별법 제정팀은 여야간 협상 과정에서 나온 결과물, 특히, 전문위원이 정리한 내용과 제시된 대안에 대하여 찬성 혹은 반박하는 의견 제출 작업을 시작하였다.

16시 45분경 협상 결렬 위기에 처한 조속입법 TF는 정회를 선언하였고, 이때 야당측 위원들에게 문의해 본 결과, ① 위원회에 검사의 지위와 권한을 부여하는 것(입법청원안), ② 조사관에게 특별사법경찰리의 지위를 부여하는 것(야당안), ③ 청문회, ④ 특위 구성 추천 비율, ⑤ 보/배상 문제 처리 등 5가지 쟁점에 대하여 여당측 위원들이 반대 혹은 부정적 의견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특별법 제정팀장은 세월호 가족대책위와 협의한 후, 18시 30분경 세월호 특위 대변인 자격으로 국회의사당 본청 내에서 JTBC와 인터뷰를 통해 입법청원안의 내용 및 여야 협상 과정, 3자협의체의 중요성에 대해 발언하였다.

이날 저녁시간 이후에 조속입법 TF 여/야당 간사들은 세월호 가족대책위 대표 6명과 세월호 특위 변호사 2명에게 진행 경과와 여야의 입장을 브리핑하였고, 이에 세월호 가족대책위에서는 3자협의체, 참관 등을 비롯한 세월호 가족대책위의 입장을 전달하였다. 이날 밤에는 연좌에 참여한 세월호 가족대책위 간에 대응 방안을 협의하였는데, 단식 연좌 농성 등이 거론되었고, 세월호 가족대책위는 14일부터 국회와 광화문에서 단식 연좌 농성에 들어갔다. 이즈음 단원고 생존학생들로부터 안산에서 국회까지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1박 2일 행진을 하겠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7월 14일 특별법 제정팀장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 YTN 라디오 강지원의 뉴스! 정면승부, 교통방송 퇴근길

인터뷰, KBS 〈뉴스라인〉 등에서 인터뷰, 토론 등을 시작함으로써 세월호 특위 대변인으로서 특별법 제정 관련 언론 대응 업무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었는데, 이 당시 주된 내용은 조속입법 TF에서 여/야의 입장, 그에 대한 세월호 가족대책위의 반응, 여당이 반대하는 쟁점에 관한 것이었다.

그 즈음, 세월호 특위 위원들은 대부분 서초동에 위치해 있었고, 특별법 제정팀과 현장대응지원단은 안산, 국회, 광화문 등에 산재해 있었기 때문에 카톡 등 SNS를 통한 정보 공유, 회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되었다.

7월 15일에는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3,501,266명의 서명지가 국회에 제출되었는데, 그날도 세월호 특위 특별법 제정팀, 현장대응지원단 소속 변호사들은 세월호 가족대책위의 단식 연좌 농성에 호응하여 릴레이 단식에 참여하였다. 이즈음부터 특별법 제정팀과 현장대응지원단이 서로 역할을 분담하면서 협력하였다. 특별법 제정팀은 주로 야당측 국회의원 등으로부터 조속입법 TF, 2+2 회담, 원내대표 회담 등에서의 여/야간 특별법 협상 전개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여/야 협상 과정에서 나온 결과물, 특히, 특별법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이 정리한 내용과 제시된 대안에 대하여 찬성 혹은 반박하는 의견 제출 작업을 꾸준히 진행하면서 중요한 내용은 세월호 가족대책위 임원진 및 현장대응지원단 소속 변호사들과 공유하였다. 현장대응지원단 소속 변호사들은 본인들이 모은 정보와 특별법 제정팀이 제공한 정보를 바탕으로 세월호 가족대책위와 협의하여 단식 연좌 농성, 기자회견, 여/야당 원내대표 혹은 대표 면담 요구, 대통령 면담 요구 등 구체적인 행동을 계획하고 실행하였다.

다. 수사 및 기소권 논쟁

7월 16일에는 국회에서는 대한변협 협회장이 직접 참석하여 ‘국회는 진실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4·16 특별법을 신속하게 제정하라’는 특별법 제정 촉구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이 성명서를 통하여 대한변협은 입법청원 과정 및 입법청원안에 대해 설명을 하면서, 인터넷 등에서 유포되고 있는 특별법 관련 내용이 상당부분 유언비어에 불과함을 역설하였다. 그날도 평화방송(PBC) 라디오-열린세상오늘, MBC 라디오 뉴스광장, KBS 라디오중심 이규원, SBS TV 이슈인사이더 생방송 토론, CBS TV 등과 전화 인터뷰, 토론, 녹화 등이 이루어졌는데, 이즈음부터 쟁점은 위원회에 수사 및 기소권을 줄 것인가로 모아지기 시작하였다.

이날은 세월호 가족대책위의 요청에 따라 새누리당의 김무성 신임 대표가 세월호 가족대책위 농성장을 찾았다. 그날 현재, 새누리당 TF 간사인 홍일표 의원은 “법안 통과를 서두르고 있지만 내일 통과는 어려울 것“, “수사권 부여 문제가 걸림돌“이라고 말하였고, 새정치민주연합 TF 간사인 전해철 의원은 “새누리당은 유가족의 요구대로 수사권을 받아들이거나 수사권에 준하는 전향적인 대안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김무성 신임대표의 한마디가 매우 중요하였고, 그만큼 기대가 컸었다. 그러나 새누리당 의원총회를 마치고 이동하는 김무성 대표에게 농성 중인 세월호 가족대책위가 면담을 요청하면서 10분간 이루어진 면담에서 김무성 대표는 세월호 가족대책위가 요구하는 특별법의 구체적인 내용은 모른다고 하면서, 특별법 협상을 맡은 의원들을 만나 상의한 후 세월호 가족대책위를 다시 만나러 오겠다고 말했다. 특별법 TF 새누리당 간사인 홍일표 의원이 TF 여야 회의 중에 “특별법 합의를 위해 지도부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하므로, 세월호 가족대책위에서는 특별법 협상을 진행 중인 TF 소속 여당 의원들이 스스로 결정을 못하고, 권한이 없다고 하니 당 대표 면담을 신청한 것이었다. 그날 현재, 세월호 가족대책

위는 국회 본청 앞 입구에서 10명,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에서 5명이 단식 농성을 하고 있었다.

7월 17일, 특별법 제정팀은 여야 협상 경과를 모니터링하면서 주로 여당측이나 전문위원 의견에 대한 반박 논리를 개발하여 의견을 제시하면서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하여 입법청원안이 품고 있는 목적과 취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홍보를 진행하였다. 그런데, 오후에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가 "(야당측에서) 수사 및 기소권을 포기하면 웬만한 것은 다 주겠다"는 의사를 전달해 왔다는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의 전언을 듣고 만일 그렇다면 수사 및 기소권을 포기하더라도 진상규명 부분은 입법청원안을 피해자 지원 부분은 야당안을 대부분 유지하는 내용으로 협상이 종결될 수도 있겠다는 희망을 품게 되었다. 그러나 조속입법 TF 여당측 간사인 홍일표 의원은 위와 같은 여당 원내대표의 발언에도 불구하고 야당측 간사 전해철 의원에게 대안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협상은 결렬되었다. 그리고 야당측 간사 전해철 의원이 협상 결렬 기자회견을 하자, 곧이어 여당측 간사 홍일표 의원은 조속입법 TF의 해체를 선언하였다. 이로써 이번 회기 내에 특별법이 신속하게 본회의를 통과하기는 어렵게 되었다.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세월호 가족대책위에서는 그동안의 특별법 제정 투쟁 경과 및 여당측이 동의한 내용이 보고되었고, 국회의사당 본청 앞 단식 연좌농성은 더욱 확대되었다. 이후에 특별법 제정팀은 인천 일반인 대책위 이정석 총무 등과의 대화를 통해 일반인 대책위측 요구사항을 다시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일반인 대책위측은 주로 피해자 지원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유지 관철 혹은 수정 보완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7월 18일 아침, 세월호 특위 총괄지원팀 회의에서는 각 지원단 및 소속팀들 특히 특별법 제정팀의 활동 보고가 있었고, 법제도개선단 산하에 백

서팀, 개별법 개선팀 설립 등이 논의되었다.

위와 같이 조속입법 TF가 여당측에 의해 해체된 후 협상이 중단되었는데, 진상규명 부분에 관하여는 주요 쟁점을 제외하고는 조속입법 TF에서 어느 정도 합의가 있었으므로 합의되지 못한 주요 쟁점에 대해서는 각 당 지도부의 정책적인 결단이 필요하다는 논의 및 요구가 계속되었다. 그러나 여당측에서는 계속하여 협상을 회피하였고, 일부 언론과 SNS를 통하여 입법청원안 및 전해철 의원안에 대해 온갖 오해, 유언비어, 왜곡등이 자행되었다. 특히 입법청원안에는 아예 관련 규정이 없는 의사상자 지정, 온갖 특혜와 거액의 배/보상금 등을 마치 세월호 가족대책위가 요구하였고 현실적으로 지급되고 있는 것처럼 허위사실이 유포되었다. 그 규모와 내용으로 볼 때, 일부 개인이 잘 모르는 내용을 오해하여 잘못 퍼트린 것으로 보기에는 상당히 많은 분량의 나름 상세한 내용, 그리고 대량으로, 조직적으로 유포되고 확산되는 경향을 보였다.

7월 20일(일) 17시경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단과 피해자 단체 대표단 간에 새누리당의 협상 회피에 대한 대응책 논의가 있었고, 세월호 특위 국회 현장대응지원단도 내부 협의 및 피해자 및 피해자 가족들와의 협의에 들어갔다. 이날 위와 같은 회의를 통하여, 여당측에서는 세월호 특별법을 빨리 만들지 않더라도 7·30 보선에서 승리하는데 지장이 없고, 오히려 피해자 지원 관련 유언비어 확산을 통해 입법청원안과 전해철 의원안에 흠집을 내고, 그 과정에서 보수측을 결집시키는 것이 7·30 보선에서 승리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아 법안 협상은 7월을 넘기는 것이 더 낫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따라서 세월호 가족대책위와 특별법 제정팀, 현장대응지원단으로서는 7·30 보선 이전에 다시 특별법으로 여당 및 국민의 관심을 돌리고 전환점을

만들어 나갈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미약하나마 특별법 제정팀과 현장대응지원단 소속 변호사들이 100시간 단식, 릴레이 단식 등을 시작하기로 하였다. 사실 단식 연좌농성 중이던 피해자 가족들이 단식 중에 쓰러지는 것을 눈 앞에서 지켜보아야 했던 변호사들로서는, 비록 매일 수행해 내야 하는 활동량 때문에 장시간 단식은 어렵더라도 조금이나마 그분들의 아픔과 결의에 동참하기로 한 것이다. 그즈음에는 야당 여성 의원들 3인도 단식을 하는 등 특별법 제정을 위한 단식이 확산되고 있었다.

그날 밤 특별법 제정팀 및 현장대응지원단은 세월호 특위 위원들에게 위와 같은 상황 판단에 의해 황필규, 배의철 변호사가 100시간 단식을, 박종운 변호사 등 자원하는 변호사들 중심으로 24시간이상 동조 릴레이 단식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알렸다. 또한 월요일(21일) 쯤에 대한변협 협회장 명의의 성명서를 통해 입법청원안을 비방하는 내용을 반박하고, 향후에 SNS 등을 통해 유언비어를 날포하는 이들에게 전면적으로 법적인 대응할 것이라는 점을 강력하게 선포해 줄 것과 수요일(23일)경 세월호 특위 위원들과 공익법률지원변호사단을 중심으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자율적인 1일 단식 변호사 연대 서명을 받아 발표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특별법 제정팀과 현장대응지원단으로서는 4·16 참사 100일째 되는 7월 24일에 특별법을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최선을 다해 나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7월 21일 특별법 제정팀과 현장대응지원단은 대한변협 성명서 초안을 작성하고 세월호 특위 위원들과 향후 투쟁 방법에 대해 논의하면서 야당측과는 여당측에 조속입법 TF 복구를 제의하는 문제를 협의하였다. 세월호 특위 총괄지원팀은 22시경 국회에서 긴급 현장 회의를 갖고 ‘4·16참사 100일 맞이 특별법 제정 촉구 변호사 1,000인 선언’, ‘안산~광화문

도보행진', '변호사 동조 단식', 진상규명조사팀 및 재판지원팀을 통한 사실관계 파악 등 온종일 숨가쁜 하루를 보냈다. 한편, 8월 교황 방문과 관련하여, 만일 그때까지 특별법이 제정되지 못할 경우 그 기회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비공개이지만 본격적으로 시작하였다.

7월 22일에는 현장대응지원단 소속 변호사들과 '변호사 1,000인 선언문' 초안을 작성하는 한편, 기존의 조속입법 TF 여/야 간사 2명과 여/야 양당 정책위의장이 함께 하는 이른바 '2+2 회담'을 모니터링하고 대안을 마련하면서 각 쟁점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7월 23일에는 위원회 자체에 수사 및 기소권을 부여하지 않는 대신에 특별검사제도와 결합할 경우의 법률안 특히, 위원회와 특별검사와의 연결고리를 하게 될 특별검사보의 위치와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인지 대안 마련에 주력하는 한편, '변호사 1,000인 선언' 참가 변호사 모집에 박차를 가하였다.

이날 저녁 무렵 '2+2 회담'을 통한 협상도 중단이 된 상황에서 특별법 제정팀장은 세월호 특위 대변인으로서 JTBC 8시뉴스 세월호 특집 토론 생방송에 참여하여 입법청원안의 정당성을 주장하였고, 여/야간의 협상 쟁점은 이미 특별검사제도로 옮겨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당측은 여전히 수사 및 기소권에 대한 공격에 주력하였다.

7월 24일은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100일이 되는 날이었는데, 특별법 협상이 이른 시일 내에 종결될 가능성이 희박해진 상태에서 세월호 가족대책위 주요 임원진과 수사 및 기소권을 얻지 못할 경우 특별검사제도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전해철 의원안에 있었던 의사상자 혹은 국민안전

의인 규정을 유지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협의를 하였다.

이날 대한변협 역사상 최초로 1,000명이 넘는 변호사들이 연대하여 특정 사안에 대한 선언을 발표하였다. "진실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4·16 특별법을 제정하라!"는 제목으로 '4·16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변호사 1043인 선언'이 발표된 것이다. 계획을 세운지 불과 3~4일만에, 1043인의 변호사들은 "4·16 특별법은 주요 쟁점에 대한 여당의 반대와 대안 부재, 야당의 정치력 부족 속에 법 제정의 골든타임을 놓치며 침몰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4·16 특별법에는,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서는 보·배상이나 기존의 법령이나 사례를 넘어서는 그 어떤 특별한 이익을 제공하는 내용, 의사상자 지정, 대학입학 특례(특별전형), 병역 특례 등의 내용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악의적으로 근거없이 유언비어를 날포하는 사람, 이를 믿고 피해자 가족들을 일방적으로 매도하는 사람, 너무나 큰 비극에 대한 피로감 때문에 사건을 외면하는 사람 등으로 인해, 피해자 가족들은 상처에 상처를 덧입은 채 오늘도 단식 연좌 침묵 농성으로 진실규명을 외치고 있는바, 단지 범죄행위뿐만 아니라 지휘·보고체계, 관련 법제도, 구조와 수색 시스템, 각 기관과 개인의 역할 등 모든 영역과 각종 의혹에 대해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소재를 밝히며, 대안을 마련해야 하고 마련된 재난 방지 및 대응책이 실제로 시행되려면, 과거 각종 진상조사위원회의 한계를 극복하고 철저한 진실규명을 가능케 할 <조사권의 강화>해야 함을 선언하고 있다.

한편 이즈음에는 광화문을 중심으로 세월호 가족대책위의 단식 농성에 동조하여 시민들의 동조 단식, 각종 문화행사, 서명 운동 등이 전개되었고, 이날은 특히,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세월호 100일 음악회가 '네 눈물을 기억하라'는 주제로 문화 예술인들의 추모 공연도 진행되었다.

라. 2개의 법으로 찢어지다

7월 25일에는 야당 측과 함께 한 4·16 특별법 협상 전략회의를 통해, 진상규명과 피해자 지원 부분을 하나의 통합법으로 제정하기로 한 최초의 전략을 수정하기로 하였다. 여/야당간 협상이 결렬된 상황에서 새누리당이 7·30 보선에서의 보수층의 표를 의식하고 온갖 유언비어에 편승하거나 심지어 새누리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앞장서서 입법청원안과 야당 전해철 대표발의안 중 피해자 지원 부분을 매우 조직적이고 광범위하게 공격함에 따라 피해자 지원 부분을 나중으로 미루고, 먼저 진상조사 부분만을 입법화할 것을 촉구하기로 한 것이다. 이러한 고민은 이미 대한변협 통합안을 만들 때부터 시작된 것이지만, 그 당시 결론과는 달리, 여당이 7·30 보선에 이용할 목적으로 피해자 지원 부분을 공격하고 SNS을 통해 유언비어가 조직적으로 떠돌고 일부 거대 언론들이 이에 동참한 상황에서는 피해자 지원 부분을 뒤로 미루는 한이 있더라도 진상조사 부분이라도 먼저 입법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위기 의식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차선책으로 결정하게 된 것이다.

마. 특검추천권 협상 국면

7월 27일(일)에는 협상 재개 소식이 와서 안산 세월호 가족대책위 총회 참석을 포기하고 국회에서 대기하게 되었으나 이번에는 특검 추천권을 누구에게 어떤 형식으로 줄 것인가 여부를 놓고 협상이 결렬되고 말았다. 이즈음에는 위원회에 직접 수사 및 기소권을 부여하는 것은 어렵다고 보고, 특별검사제도와 위원회를 어떻게 연계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었다. 처음에는 특별검사보를 위원회에 파견하여 연계하는 방법이 논의되다가,

나중에는 특별검사 추천과 관련하여 어떻게 하면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될 것인가? 진상규명의 의지가 강한 특별검사 임명이 가능할 것인지 여부가 쟁점으로 되었다. 이제 특별법 제정팀으로서는 국회 및 광화문 단식 농성 그룹을 비롯한 세월호 가족대책위의 협의 및 결단이 필요할 때가 되었다.

7월 28일에는 여/야 간에 진행 중인 진상규명 특별법안에 대한 전체적인 코멘트를 하면서도 야당측으로부터 협상 과정 및 분위기에 대해 전달받고, 국회 및 광화문 단식 연좌 농성 그룹을 포함하여 세월호 가족대책위 임원진 뿐만 아니라 각 반 대표분들과의 협의를 통해 의견을 모으는 시간을 가졌다. 그즈음 여/야 간의 협상은 야당이 수사 및 기소권을 양보하는 것을 전제로 기존의 조사방법, 동행명령장 발부, 청문회, 특별검사 추천권까지는 어느 정도가 합의가 이루어졌다. 특별검사 추천권과 관련하여 새누리당은 <야당>이 아니라, <위원회>에 추천권을 주되, 5군데 추천그룹에서 여당 5명, 야당 5명, 대법원장 2명, 대한변협 협회장 2명, 희생자대표자회의 3명 등 총 17명의 위원을 지명 혹은 선출할 경우에는 의결정족수를 가중(60% 혹은 2/3)하고, 5, 5, 2, 2, 2명 등 총 16명일 경우에는 일반의결 정족수로 하자는 제안을 하는 등 다양한 방법론이 제안되거나 논의되고 있었다. 이때 특별법 제정팀은 5-5-2-2-3 총 17명의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입장이었는데, 만일 의결정족수를 가중하게 된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확신할 수 없다는데 특별법 제정팀의 고민이 있었다.

더군다나, 7·30 보선을 앞두고 있었고, 세월호 특위나 세월호 가족대책위로서는 원하지 않았지만 오히려 여당측에서 입법청원안과 야당측 전해철 의원안에 대해 공격하면서 정치적인 쟁점으로 삼고 있는 상황에서 선거의 결과가 야당에 유리하리라는 보장도 없었고, 자칫하면 선거 결과에 따라 특별법 제정 시기가 무한정 뒤로 늦춰질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존재하고 있었다.

7월 29일 점심 무렵 안산 경기도 미술관에서 특별법 제정팀은 세월호 가족대책위 임원진과 반 대표 확대회의를 통해 특별법 제정 관련 경과 보고 및 현재의 상황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야당 국회의원들을 만나 7·30 선거와 특별법 협상 전략 및 대안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즈음에는 세월호 특위 현장대응지원단 산하 언론대응팀 소속 변호사와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실과 충돌이 발생하는 등 보수 언론이나 SNS 뿐만 아니라 새누리당 국회의원들까지 나서서 적극적이고 조직적으로 특별법과 관련하여 세월호 가족대책위와 여당을 공격하고 있었다.

마침내 7월 30일, 보선의 날은 밝았고, 그날도 특별법 제정팀은 특별법 협상 전략 수립 및 대안 마련/검토에 여념이 없었는데, 그날 새누리당은 오전까지는 청문회와 특검 추천권 확보가 유지된 상태에서 특위 위원 추천 비율로 다투었지만, 오후 들어서면서부터는 청문회 관련 처벌 규정을 완화하자, 위원 의결정족수를 가중하자는 등 그동안 별로 문제제기를 하지 않던 조항까지도 물고 늘어지기 시작했다. 특별법 제정팀은 한편으로는 일반인 대책위의 의견을 추가로 듣고, 다른 한편으로는 전문위원 검토안에 대한 대응 의견을 내는 등 바쁘게 움직였지만, 저녁 무렵, '2+2 회담'은 결렬되고, 그날 밤 7·30 보선 결과는 야당의 참패로 평가되고 말았다.

7월 31일, 7·30 보선이 야당의 참패로 끝나자, 특별법 제정 협상에 위기가 찾아왔다. 보선참패로 인하여 야당 국회의원들의 동력은 현저하게 약화되었고, 7·30 이전에 협상이 타결될 것으로 보고 세월호 가족대책위의 단식 농성에 동조하였는데, 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단식 농성하던 세월호 가족대책위 단식자들의 생명 신체에 위험을 줄 상황이 도래하게 될 것

이라 판단되므로 단식을 중단하거나 릴레이 단식으로 전환할 것을 권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7·30 보선 승리에 취한 탓인지 여당은 특별법 제정 협상에 응하지 않거나 소극적으로 나왔고, 세월호 가족대책위에서는 중장기 투쟁에 대비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흘러 나왔다. 새정치민주연합조차도 당대표 사퇴 등 내부 정비 문제로 특별법 제정에 집중하기 어려운 상황인지라, 특별법 제정팀으로서는 현재까지 쌓아온 협상의 결과물이 후퇴하지 않도록 방어하는 것도 버거운 싸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실제로 새누리당에서는 특검추천권과 관련하여 위원회 위원이 5-5-2-2-3명으로 할 경우뿐만 아니라 5-5-2-2-2명으로 할 경우에도 가중의결 정족수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청문회 관련 형사처벌 규정 삭제 및 전면 과태료로 전환, 그밖에 여기저기에서 조사권 행사를 제한 혹은 방해하는 조항 신설을 주장하는 바람에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그 하나하나에 대하여 조문 싸움을 하는 수밖에 없었다.

야당이 세월호 특별법 최우선 처리를 주장하면서 국회 일정이 미루어지고 있으므로, 여당이 보선승리를 만끽한 후 민생 법안 처리 등 현안을 논의할 수 있을 때까지, 야당이 내부 정비를 마치고 협상 동력을 되살릴 때까지, 현상 유지가 최선의 방법이 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한 사이에 8월 초순이 되었고 세월호 가족대책위는 교황 방한에 일말의 희망을 거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었다. 세월호 가족대책위 중 상당수는 교황 말씀에 고무되어 재야, 종교계, 일부 정치권에서 특별법 내용에 대한 긍정적인 변화의 움직임이 있다고 판단하면서, 만일 야당이 세월호 특별법 처리를 최우선적으로 진행해준다면 교착 상태를 타개할 좋은 기회가 올 것이라는 판단을 하는 분들이 많았다. 따라서 현재의 교황이 가난한 이, 고난을 당하는 이들에 대한 애정과 관심이 많다는 점을 잘 살

려서 교황께 세월호 관련 한국의 상황을 알리고 세월호 가족대책위와 대다수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교황께서도 도와주실 것을 요청하기 위하여 세월호 가족대책위 중 가톨릭 성도 가족이 직접 교황께 드리는 편지를 작성하여 교황께 전달하는 등 몇 가지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17]

바. 여/야 원내대표 1차 합의

그러던 와중에 8월 7일, 여야 원내대표 합의사항이 보도되었다. 이 합의 사항은 세월호 가족대책위는 물론이고 특별법 제정팀조차도 전혀 합의 내용을 알지 못한 상황에서 보도를 통해 접하게 되었다.

원내대표 합의사항
1. (가칭)세월호특별법 합의 처리와, 8.26(화)부터 시작되는 2014년도 제1차 국정감사의 차질 없는 진행을 위한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개정안 및 국정감사대상기관 승인의 건 의결, 민생법안, 그리고 주요 현안 처리를 위해 8.13(수) 10:00 본회의를 개회한다.
2. (가칭)세월호특별법 제정과 관련하여, 첫째, 특별검사의 추천은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상의 임명절차에 따라 진행하며, 둘째, 진상조사특별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총 17인으로 하되, (가칭)세월호특별법에서 규정하는 위원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각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10인(새누리당 5인 : 새정치민주연합 5인), 대법원장과 대한변협회장이 추천하는 각 2인씩 총 4인, 유가족측이 추천하는 3인으로 한다.
3.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위의 청문회 증인 등에 대한 문제는 특위 간사에게 일임한다.
4. (가칭)세월호특별법과 관련하여 특검은 특검보를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업무협조차 활동하게 할 수 있다.
5. 8.13(수) 본회의에서 지난 7.15(화) 교문위에서 통과된 ‘세월호 침몰사고

17) 참고자료 8-1. 교황에게 보내는 편지

피해학생의 대학입학지원에 관한 특례법’을 의결, 처리한다.
6. 당초 8.4(월) ~ 8.8(금) 4일간 실시키로 했던 ‘세월호 침몰사고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위’의 청문회가 열리지 못함에 따라, 청문회를 8.18(월) ~ 8.21(목) 4일간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이를 위해, 8.13(수) 본회의에서 ‘세월호 침몰사고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계획서 변경 승인의 건’을 처리한다.
7. 외통위를 24석에서 23석으로, 환노위를 15석에서 16석으로 개정하는 ‘국회상임위원회 위원정수에 관한 규칙’ 개정의 건을 처리한다.
8. 정부조직법, 김영란법 및 공직자윤리법, 유병언법 등 국민안전 혁신법안에 대해서는 양당 정책위의장간 협의를 통해 조속한 논의를 거쳐 처리하도록 노력한다.
9. 경제활성화와 민생안정을 위한 법률안 중 양당의 정책위의장이 합의한다.

여당이 7·30 보선 승리에 도취되어 특별법 협상 내용이 후퇴되고 있는 상황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의 원내대표가 세월호 가족대책위와의 협의 없이 위와 같이 덜컥 여당측과 합의에 도달하자, 세월호 가족대책위 임원진은 물론 유가족들은 격분하게 되었고, 각종 전화 및 대면 대화, 세월호 가족대책위 임원진 및 반 대표 연석 긴급회의 등을 통하여 그와 같은 의사를 특별법 제정팀에 전달해 왔다. 이에 특별법 제정팀에서는 그와 같은 의견을 세월호 특위에 전달하였고, 세월호 특위는 총괄지원팀 긴급회의를 통해 세월호 가족대책위의 의견을 존중하여 야당측에도 전달하였다. 그 결과, 위와 같은 양당 원내대표 합의사항은 최소한 특별법에 관한 한 무효화 되었다.

위와 같은 상황은 세월호 가족대책위로 하여금 교황 방문 및 그 결과에 대한 기대치를 높여 주었는데, 마침 가톨릭 측에서도 세월호 가족대책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교황과의 직접 만남 및 대화의 자리, 편지 전달 등 바쁜 일정에도 세월호 가족대책위와 교황과의 만남 및 의사전달 자리를 적극적으로 주선하였다.

그 와중에도 특별법 제정팀은 여당 측 수정 의견에 대해 구두 및 서면

의견서를 작성하여 야당측을 통해 전달하는 한편, 교황 방문과 관련한 세월호 가족대책위의 요청에도 일정 부분 협력하게 되었다. 이제 위원회에 수사 및 기소권을 주는 방안은 묻혀졌고, 특별검사제도를 활용하되 특별검사 후보 추천에 세월호 가족대책위의 의견이 어떻게 반영될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세월호 가족대책위는 교황 방문이 지렛대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었지만, 훌륭한 종교 지도자의 방문이 긍정적인 것은 사실이나, 반드시 지렛대 역할을 할 수 있을지는 알 수 없었다.

단식 농성에 참여하였던 세월호 가족대책위 단식자들은 한두 분씩 쓰러져서 병원에 실려 가는 상황에서 특별법 제정팀원들도 불면의 나날이 계속되었다. 거의 매일 여당측 의견, 야당측 의견을 모니터링하고 세월호 가족대책위의 입장 특히 입법청원안을 기준으로 수정안 혹은 대안을 만들어서 제출해야 했다.

이처럼 교착 상태에 빠진 특별법 협상을 타개하기 위하여 대한변협 협회장은 각 당 대표 혹은 원내대표과의 회담을 통해 조속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자는 계획이 수립되었다. 8월 12일 대한변협 협회장의 국회 방문이 성사되어 세월호 특위 공동위원장, 특별법 제정팀원 등이 배석하였는데, 새천년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비상대책위원장과의 면담은 진행되었으나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와의 면담은 치과 진료차 외출하였다는 이유로 성사되지 못하고 전화 통화만 이루어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반인 대책위는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을 통해 진상규명과 피해자 지원 부분을 통합한 특별법 추진을 주장하는 등 세월호 가족대책위와 일반인 대책위 간의 견해 대립이 표면화되었다. 특별법 제정팀은 세월호 가족대책위와 국민대책회의 간 연석회의에 참여하여 특별법 진행 상황을 공유하면서 교황 방문 관련 여러 계획 등에 관해 협의하는 한편, 세월호 가족대책위는 물

론 일반인 대책위 임원진과도 연락을 유지하며 함께 나아갈 것을 요청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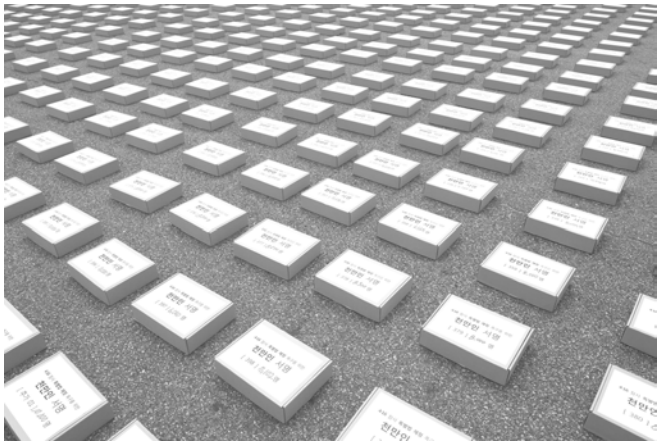
8월 16일(토) 저녁 무렵에는 새누리당 등에서 국회가 추천하는 특검추천위원과 관련하여 특별조사위원회에 위 특검추천위원을 2배수로 추천하는 권한을 주는 안이 제안되었고, 그에 관하여 야당, 세월호 가족대책위 임원, 일반인 대책위 임원, 특별법 제정팀 간에 가능성 여부가 치열하게 논의되는 등 교착상태를 풀어나갈 묘수를 찾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었다.

이즈음에는 세월호 가족대책위 중에 여전히 수사 및 기소권을 반드시 관철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데 이분들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가 가장 큰 고민이었다. 이에 특별법 제정팀에서는 ① 위와 같은 고민을 세월호 가족대책위 임원진 및 반 대표들과 공유하면서 세월호 가족대책위가 수사 및 기소권 확보에서 특검추천권으로 쟁점을 옮겨가도록 안내함과 동시에 ② 여/야 원내대표 합의와 같은 상황이 재발하지 않으려면 여당의 제안이 공식화되었을 때 그 수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임원진 회의 - 임원진 및 반 대표 연석회의 - 세월호 가족대책위 총회를 소집하고 그때 나온 결론을 가지고 여/야 간에 정치적인 합의를 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야당측에 요청하였다.

그 당시 국회 회기는 원래 8월 19일까지였는데, 18일에 국정조사 관련 논의가 마무리 되면서 본회의가 열리고, 19일에 국무회의가 있으므로, 사실상 이번 임시국회는 18일이 마지막이 될 가능성이 높았다. 이른바 방탄국회 논란을 피하기 위해 여야 간에 20일부터 임시국회를 열지 않기로 하였으므로 자칫하면, 9월 국회로 넘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되는 시점이었다. 세월호 가족대책위 중 상당수는 교황 방한에 기대를 걸고 있는 반면, 야당측 특히, 직접 여당과 협상에 참여하고 있는 야당 국회의원

들은, “여당이 진상규명 특별법에는 관심이 없고, 이번 임시국회만 끝나면 피해자 지원/보상/배상 관련 특별법을 추진할 생각이며, 오히려 진상규명 특별법은 18일에 통과될 것이 아니라면 후순위로 미루겠다는 입장이어서 대단히 난감하다. 9월 정기국회로 가면 원래 정해진 다른 안건들 때문에 오히려 힘들다“는 정보가 대다수를 이루고 있었다.

이에 특별법 제정팀은 세월호 특위, 세월호 가족대책위 등에 현재까지 수사 및 기소권을 제외하면 그래도 상당 부분 입법청원안이 수용된 상황[18]이므로, 이제는 출구전략을 논의할 때가 되었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2014. 07. 15 천만인서명용지, 노순택, 416가족협의회 416기억저장소]

8월 17일(일) 당시, 여/야 간에 원내대표 간 합의를 건드리지 않으면서도 쌍방 합의 가능한 대안 혹은 묘수 찾기에 몰입하던 중, 8월 16일 여당 측에서 비공식적으로 새로운 제안이 나왔다. 그것은, “현재의 특검법과 후보추천 관련 규칙을 그대로 인정하되, 여/야가 정치적인 합의를 통해, 국회가 추천하는 4명(규칙상 여/야 각 2명 추천)의 특검 추천위원을, 특별

18) 동행명령(과태료 부과 가능), 실지조사권, 국회 수준의 청문회(형사처벌도 가능하나 형량은 국회 증감법 보다는 낮은 수준), 특별조사위원회의 권고 사항 이행 강제(국가기관은 권고를 이행해야 하고, 대통령은 매년 이행 상황 보고, 불이행하는 국가기관은 국회에 이유를 소명해야 하고,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국회가 다시 이행을 요구할 수 있고, 그럼에도 불이행하면 관계 공무원 징계 요구, 국회도 관련 법령 제/개정시 권고사항 존중) 정도

법상의 특별조사위원회에서 2배수(8명)로 추천을 받아서, 그 중에 여/야가 각 2명씩 4명을 특검추천위원으로 추천" 하는 것이 어떠냐는 것이었다. 결국, 여/야는 특별조사위원회에 특검추천위원 2배수 추천권을 줌으로써 현재의 어려움을 특별조사위원회에 떠넘기자는 것이었다. 이에 대하여는, 특별조사위원회가 5-5-2-2-3으로 구성되므로 야당 및 세월호 가족대책위 측에 항상 유리할 것이라는 견해도 있었지만, 만일 과반수를 무기로 8명을 모두 야당측 인사로 채울 수도 있는 반면(그렇게 되면, 국회가 추천하는 4명의 특검추천위원 모두 야당측 인사가 되어, 대한변협회장 추천 위원과 합하여 5명이 되면 절대적으로 유리하며, 특검 2명 모두를 진상규명 의지가 강한 사람으로 추천할 가능성이 높아짐), 1, 2명이라도 여당측 인사가 포함되어 버리면, 여당이 그 2명을 특검추천위원으로 추천해 버릴 것이고, 결과적으로 여당측 인사 2, 야당측 인사 2명으로 끝나버릴 위험성이 있다는 견해도 유력하였다.

나아가, 여당측으로부터 나온 정보에 따르면 "야당이나 가족들이 동의한다면, 기존의 가합의 내용대로 진상규명 특별법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면서, 정치적인 합의로 ① 특별조사위원회에서 2회 이내에 특검 발동을 요구하면, 여야가 이를 수용하여 특검을 발동시킨다. ② 특별조사위원회에 국회 측 특검추천위원 4명에 대한 2배수 추천권을 준다(위에 상술). ③ 9월 국회 때 최우선으로 피해자지원 등을 담은 특별법을 통과시킨다는 합의를 해주겠다. 만일 반대한다면, 임시국회는 종료하고 9월 국회로 넘어가겠고, 피해자 지원 문제는 몰라도 진상규명 문제는 더 이상 매달릴 생각 없다."는 것이므로 난감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이미 여당과 제1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간에 합의가 이루어진 것은 사실이므로, 더 이상의 묘안/묘수도 없다면 원내대표 합의를 지키라는 여당의 태도에 대하여 이 문제를 세월호 가족대책위, 세월호 특위 위

원들과 공유하는 한편, 대안을 찾기에 골몰하였다.

8월 18일경, 특별법 제정팀은 위와 같은 여당의 제안에 대하여 ① 특별조사위원회에서 국회가 추천하는 특검추천위원 후보로 2배수 8명을 추천하는 것에 동의하되, ② 그 8명을 추천할 때, 특별조사위원들이 각각 후보를 추천하여 대상자를 확정한 후, 여당 5명과 야당 5명 특별조사위원을 중심으로 2개 그룹에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 순위에 따라 번갈아서 1명씩 과반수로 의결하는데, 총 3회 혹은 5회에 한하여 5명 이상의 특별조사위원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정도의 복안을 가진 상태에서 국회로 향하였다.

그날, 세월호 가족대책위 측 대표단와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간에 대화, 세월호 가족대책위 임원진과 야당 의원들 간에 대화가 있었는데, 그날 여당 원내대표가 최종 제안이라면서 "특별조사위원회에 국회 추천 특검후보추천위원 10명을 추천 의뢰하고, 특별조사위원회가 10명을 추천해 오면 국회에서 여/야당이 각 2회(총 2명) 거부권을 행사하자"는 의견을 내 놓았다는 정보가 들어왔다. 위와 같은 제안에 대하여 세월호 가족대책위, 야당 의원들 간에 찬반 의견이 있었고, 특별법 제정팀장은 개인적으로 수용 의견임을 밝힌 바 있다.

사. 여/야 원내대표 2차 합의

8월 19일, 9시경 세월호 가족대책위 대표와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간 회담이 있었고, 세월호 가족대책위 임원진과 세월호 특위(특히, 현장대응지원단, 특별법 제정팀)은 위와 같은 여당의 제안에 대하여 수용 여부를 심각하게 논의하고 있었는데, 오후에 들어와서, 새누리당에서 특별조사위

원회에 추천위원 10명 추천권을 주고, 여/야당이 거부권을 갖도록 하자는 취지의 제안을 철회하고, 갑자기 "국회 추천 특검추천위원 4명 중 여당 2인의 경우는 야당과 세월호 가족대책위의 사전 동의를 받아서 선정하여야 한다."는 새로운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내부 논의에 대혼란을 초래하였다. 이에 특별법 제정팀장은 개인적인 의견임을 전제로 여당의 원래 제안 즉 10명 추천에 거부권 행사가 결합된 방안에 찬성하고, 새로운 제안에 대해서는 '사전동의'가 어떤 의미인지를 명확히 해달라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이처럼 논의가 분분한 가운데, 8월 19일 오후 갑자기 여/야 원내대표 간 2차 합의안이 또다시 일방적으로 발표되었다.

1-1. 특별검사 후보 추천위원회 위원 중에 국회에서 추천하는 4명 중 여당 2인의 경우에 야당과 세월호 사건 유가족의 사전동의를 받아서 선정하여야 한다. 1-2. 배 보상 문제는 9월부터 논의를 시작한다. 1-3. 가칭 세월호 특별법에 의한 진상조사위원회에서 특별검사 임명에 2회 연장을 요구한 경우에 본회의에서 의결한다.

위 합의안은 여당의 새로운 제안에 기초한 것으로서 비록 양당 의원총회 추인에 의해 발효되는 것으로 하고 있기는 하나, 여전히 세월호 가족대책위의 정리된 의견을 듣기도 전에 이미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말았다.

이와 같은 새로운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17시 30분경 세월호 가족대책위 총회를 열려고 하였으나 평일 오후에 출입이 통제되는 상황에서 국회로 들어온 세월호 가족대책위 인원이 60명 정도에 불과하여 총회를 열지 못하고 설명회를 개최하게 되었다. 이 자리에서 특별법 제정팀은 그동안 진상규명 특별법 협상 경과와 새누리당의 새로운 제안의 장/단점을 설명하고, 질의 응답를 받았으며, 참석한 가족들 간에 회의가 진행되었다. 그런데 갑자기 세월호 가족대책위 임원진들이 기자회견을 자청하면서, 여/

야 원내대표 합의안 반대 및 재협상을 촉구하였다. 이러한 상황은 특별법 제정팀으로서도 예상하지 못한 것이었다. 결과야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다고 하더라도, 세월호 가족대책위 총회를 열어서 논의해야 할 사안이라는 의견을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임원진들이 일방적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위와 같이 발언한 점에 대하여 아쉬움을 감출 수 없었다. 이러한 일련의 상황에 대하여 세월호 가족대책위 간에 논쟁이 벌어지는 가운데, 위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안에 대하여,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서는 양당 원내대표 합의안을 추인하였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총회에서는 격론이 벌어졌으며, 결국 세월호 가족대책위 총회 결과를 기다려 보는 것(세월호 가족대책위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조건부 추인유보)으로 결론이 났다.

8월 20일 19시 30분 안산 경기도미술관에서 세월호 가족대책위 총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현장대응지원단, 특별법제정팀이 나서서 그동안의 성과 및 정치적인 상황에 대하여 설명하였고, 특히 김영훈 공동위원장은 “어떤 결론이 나든지 세월호 특위는 가족들과 함께할 것이지만 수사·기소권 쟁취가 사실상 어려워진 현실과 특별법에 따른 진상조사특별위원회가 시급히 구성되어야 하는 현실상 여야 원내대표 합의를 수용하는 것이 좋겠다.” 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여야 합의에 의해 향후 진상조사특별위원회와 특검이 진행될 경우에도, 제대로 조사와 수사가 이뤄지도록 변호사들이 더 열심히 참여하고 감시할 것이며 특검의 중립성이 훼손된다고 느껴지면 세월호 특위가 앞장서서 막아내겠다” 는 의지를 표출하였다. 그러나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세월호 가족대책위은 제1안 즉, 수사 및 기소권을 위원회에 부여하는 입법청원안의 원칙적인 규정에 77%라는 압도적인 찬성표를 던짐으로써, 여야 원내대표 합의안에 반대하였다. 그동안 임원진과 반 대표 중심으로 설득 노력을 해 왔었는데, 막상 세월호 가족대책

위 개개인들은 여전히 원칙론을 고수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8월 21일에는 세월호 가족대책위 총회 결과를 분석하고 향후 대책 마련에 고심하였다. 세월호 가족대책위의 의견이 그렇다면, 그분들에 대한 법률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세월호 특위 입장에서는 세월호 가족대책위의 의견을 존중할 수밖에 없지만, 이 난관을 타개해 나갈 지혜가 필요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김재원 새누리당 수석 원내부대표가 세월호 참사 일반인 희생자 대표단 3명을 만나 세월호 특별법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였다는 보도가 나왔고, 일부에서는 안산의 세월호 가족대책위와 인천 일반인 대책위의 견해가 대립되는 것은 아닌지, 여당의 분리정책에 말려드는 것은 아닌지 우려를 전하였다.

8월 22일에는 리얼미터의 '세월호 특별법 추가협상 필요성에 대한 긴급 여론조사' 결과가 ① 여야 재협상 안대로 세월호 특별법 통과시켜야 : 45.8%, ② 세월호 가족대책위 뜻에 따라 재재협상 다시 해야 : 38.2%, ③ 모름/무응답 : 16.0%으로 보도되었고, 지지정당별, 세대별 의견이 극단적으로 갈렸다. 이날 세월호 가족대책위는 박근혜 대통령께 세월호 가족대책위가 원하는 특별법 제정에 힘을 써달라는 내용의 애절한 기자회견을 하였고, 대통령 면담을 위해 청와대쪽으로 이동을 하다가 경찰 등의 제지로 인해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에서 연좌를 시작하게 되었다.

이즈음, JTBC, KBS 등에서는 세월호 특별법 정국을 타개할 방안을 찾기 위해 토론회를 열었고, 특별법 제정팀원 등은 방송에 직접 출연하여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들의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여/야에 대안 마련을 촉구하였다.

8월 23일(토)에는 시간을 좀 더 갖고 안산 세월호 가족대책위와 호흡을

맞춰 달라는 요청에도 불구하고 인천 일반인 대책위는 총회를 통해 여야 원내대표 협상안을 받기로 의결하였고, 다만 기자회견만은 늦추기로 하였는데, 결국은 8월 25일(월) 기자회견을 통해 위 의결사항을 발표함으로써 세월호 가족대책위와의 갈등이 촉발되고 말았다.

이날 세월호 가족대책위와 여당 이완구 원내대표 간에 회담이 있었는데, 특별법 제정팀에서는 세월호 가족대책위 대표단에게 "오늘 이완구 원내대표와의 회담에 성과가 있으려면, 기존의 <수사권, 기소권을 특별위원회에 달라>는 말만 반복해서는 어렵고, <그에 버금가는 대안을 달라>로 가야 하고, <그에 버금가는 대안>은 결국, 특검 추천권 혹은 특검추천위원회 추천권을 야당이나 특별위원회에 주는 것이라는 전제 아래, 구체적인 방안을 협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하니, 특검 추천권을 야당 혹은 특별조사위원회에 주든가, 그것이 어려우면, 특검추천위원회 추천권 중 여당 몫을 야당이나 특별조사위원회나 세월호 가족대책위가 추천하는 예비 후보 중에서 추천하는 등 세월호 가족대책위가 객관적으로 분명하게 신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달라. 그 중에는 10명의 예비 후보를 특별조사위원회로부터 추천받아서 여당과 야당이 비토권을 행사하여 남은 4명을 국회 추천 특검추천위원으로 하는 방법도 있고, 아예, 여당 추천 후보를 세월호 가족대책위 측이 제시한 예비 후보 중에 선정하는 방법도 있다. 중요한 것은, 그러한 객관적인 방법을 제시해 주시든가, 아니면 복수의 안 가운데 세월호 가족대책위 총회에서 선택하게 해 달라." 는 의견을 강하게 전달하였다. 현재 상황에서 협상의 핵심은 진상규명의지가 강한 분이 특검으로 임명될 수 있는 시스템을 보장하는 것이지 또다시 특별조사위원회에 수사 및 기소권을 주는 것으로 되돌아가서는 곤란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였다. 그러나 막상 회담에서는 그러한 이야기를 꺼내보지도 못한 상태에서 결렬이 되고 말았다.

이즈음 각종 악성 댓글들이 조직적으로 확산 유포되고 있었으므로, 특별법 제정팀으로서는 특별법 제정과 관련한 악성 댓글에 대해서는 대응책을 마련해야했다. 8월 26일에는 JTBC 아침뉴스 생방송 인터뷰에 출연하여 악성 댓글에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하기도 하였다.

8월 20일 세월호 가족대책위 총회 이후에는 거의 매일 세월호 가족대책위 임원진 - 반 대표 - 반 학부모 순서로 토론을 거듭하였다. 이러한 토론을 통해, 세월호 가족대책위 스스로 현실 상황을 파악하고 목표치를 현실화하는 것을 돕고, 특위 내부에 기소권,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은 어려우니, 차선책으로 진상규명의지가 강한 특검을 세우는 수밖에 없으며, 이를 위해서는 특검추천위원 여당 추천몫을 야당이나 유가족 총회에서 받아오는 것이 제일 좋고, 그 다음엔 특별위원회에 주는 것인데, 위 사항은 구체적으로, 여야가 유가족 총회에 특검추천위원 2배수 혹은 3배수 추천을 의뢰하면, 유가족 총회에서 후보를 추천하고 여/야가 그 가운데에서 2명을 추천하되, 총 4명이 남을 때까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으면 된다, 특별위원회에 후보 추천권을 주는 경우도 마찬가지라는 점을 알리는 등 국회와 광화문 현장에서 직접 현실을 경험하고 계신 분들 뿐만 아니라 일부 일상으로의 복귀를 위해 노력하고 계신 분들과도 현실 상황을 공유하고자 하였다.

특별법 제정팀으로서는 늦어도 추석 연휴 시작 전에 진상규명 특별법이 타결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그게 어렵다면 9월 정기국회, 아니 올해 안에 본회의를 통과한다는 보장도 없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돌파구가 열리지 않은 상황에서 9월을 맞았다. 9월 1일 아침, 대한변협 내부에는 상당히 충격적인 사태가 발생하였다. 대한변협 전임회장 7명이 의견서를 제출하겠다면서 기자들을 잔뜩 동

반하여 협회장 면담을 요청한 것이다. 그 의견서에는 세월호 가족대책위와 세월호 특위와의 관계 및 현재까지의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세월호 가족대책위를 돕는 세월호 특위 활동에 대한 비판적인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기자 간담회가 끝난 후 상임이사회가 열렸고, 박종운 변호사가 현장대응지원단장, 특별법 제정팀장, 대변인의 입장에서 현재 상황을 설명하게 되었다.

새누리당 원내대표단과 세월호 가족대책위 임원진 간의 2차례 회담이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나자, 이날 오후에 예정된 3차 회담에는 특별법 제정팀에서 직접 참여하기로 하고 특별법 제정팀장이 참석하였다. 이때 새누리당에서는 특별법 제정팀장의 참석을 거부하다가 세월호 가족대책위의 강한 요청으로 참석을 허락하였지만, 회담 내내 말문을 열지 못하도록 하였고, 그 날 따라 새누리당 측에서 자극적인 언어를 사용하여 세월호 가족대책위 임원진을 강하게 책망함에 따라 30여분 만에 결렬되고 말았다. 이날쯤에는 여당이 대안을 내놓을 것이라는 기대는 여지없이 깨졌고, 오히려 여당 측에서 회담 결렬을 원하는 것이 아닌가 의심스러울 정도였다. 결국은 추석 연휴 이전에 별다른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말았다.

동시에 국회와 광화문, 청운효자동주민센터 등지에서 단식 농성 등을 통해 특별법 제정 의지를 표출하고 있었는데, 어버이 연합 등 보수단체에서는 이분들을 비하하는 표현, 반대시위, 단식농성장 앞에서 음식물 만들어 섭취하기, 물리적인 접촉 등을 통해 민·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9월 17일, 세월호 가족대책위 임원 일부와 대리운전기사 간에 다툼이 언론에 보도되었고, 이 사건으로 인하여 안산 세월호 가족대책위 위원장단 9명 전원이 사퇴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이처럼 상황에 어렵게 전개되는 상황에서 9월 23일경 대한변협 상임이사회에서 세월호 특위 현장대응지원단의 활동비 지원 중단을 협의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활동을 해 왔던 변호사들에게 큰 실망과 반발을 안겨 주었다.

아. 여/야 원내대표 3차 합의 및 협상 타결

9월 30일, 우여곡절 끝에 세월호 특별법의 큰 틀에 대한 협상은 사실상 마무리됐다. 8월 19일 2차 합의안을 기본적으로 유지하면서 새누리당이 사전에 세월호 가족대책위와 상의하여 세월호 가족대책위가 명시적으로 반대하는 후보는 제외하기로 한 것이다.

여/야 원내대표 3차 합의가 이루어지고 국회 본회의가 재개되었고, 특별법 제정팀은 일단 국회에서의 활동을 종료하고 철수하였지만, 현장대응지원단 소속 변호사들은 국회, 광화문, 안산, 청운효자동에서 세월호 가족대책위의 활동을 계속 지원하였다.

10월에는 여/야 원내대표 3차 합의에 따라 구체적인 법조문 작업에 들어갔다. 10월 21일에는 여야 TF 1차 회의 결과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하고, 22일에는 세월호 특위 실무자 회의를, 23일에는 여야 TF 2차 회의 결과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하는 등, 이러한 작업은 여/야 세월호 특별법 대안이 완성되기 전까지 지속되었다.

10월 31일 여/야간 세월호 진상규명특별법 협상이 타결되었고[19], 세월호 참사 발생 205일째인 11월 7일 마침내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위 법은 2014년 11월 19일 공포되었고,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

19) 참고자료 3-16. 141031 여야 최종 합의문

자. 피해자지원특별법

진상규명 관련 특별법이 통과된 후, 피해자 지원 관련 특별법은 국회 농해수위 중심으로 논의가 전개되었고, 이때에도 주요 쟁점에 대하여 특별법 제정팀이 세월호 가족대책위의 입장 혹은 중재안을 내거나 방어 논리를 개발하는 방향으로 활동이 진행되었다.

12월 1일에는 '세월호 피해자 지원 특별법안에 대한 의견'을 작성하여 야당측을 통해 전달하였고, 12월 8일경에는 배상과 보상에 관하여 둘 중 하나만 유지하고 나머지는 삭제하자는 여당측 의견에 대하여 그동안의 협상 전개 과정 및 배상과 보상의 차이점, 둘 다 존치시켜야 할 이유 등 방어 논리 및 추가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교육특구, 트라우마 센터, 안전재단 등 기존의 야당안을 가급적 유지하도록 의견을 제시하였다. 배·보상, 피해자 지원 및 추모와 관련하여 필요한 2개의 위원회는 해양수산부보다는 국무총리실 산하에 두도록 의견을 제시하였다.

국가의 비용 부담 의무와 관련하여, 여당은 가급적 국가의 비용 부담 의무를 삭제하거나 임의규정으로 규정하려는데 대하여 지자체에 부담을 떠넘길 경우 실행이 불가능한 점을 설명하여 가급적 국가와 지자체가 함께 운영하도록 하거나, 일정한 비용 부담의무를 국가가 부담하도록 의견을 제시하였다. 특히, 진상규명특별법상의 '(피해자)지원 소위원회'와 피해자 지원 특별법상의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를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가에 대하여, 여당측은 완전히 무관한 것으로 규정하려 하였으나, ① 지원소위원회 위원을 당연직으로 참여할 권한을 주는 방법, ② 그것이 어렵다면 지원소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을 참여시키는 방법, ③ 지원소위원회 위원이 참여하여 (의결권은 없더라도) 발언권을 부여하

는 방법, ④ 지원추모위원회의 활동을 지원소위원회에 주기적으로 보고하고 평가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법 등 대안을 제시하였다.

그밖에도 선체인양과 관련하여 쟁론이 있었으나, 인양의무를 부여하는 것에 대하여 여당은 “인양할 수 있다.”는 정도의 임의규정을 두자는 입장이나, “인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되 예외 사유를 두는 방향으로 대안을 제시하였다.

해를 넘겨서까지 진행된 협상 결과, 2015년 1월 6일 세월호 참사 265일만에 배·보상, 피해자 및 피해지역 지원, 추모사업 등이 포함된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 최종 합의에 이르렀고[20], 1월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6. 평가

특별법 제정팀은 세월호참사에서 드러난 각종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박종운 초안 - 세월호 특위 초안을 거쳐 김희수 초안, 민변 초안 등을 통합한 대한변협 통합안, 그리고 피해자 단체등의 의견을 종합하여 입법청원안으로 발전시켰고, 법제정을 위해 팀원들이 상당기간 국회에 상주하면서 여/야당 간의 협상 내용을 모니터링하면서 주로 여당 제안에 대하여 반박논리 개발, 대안 마련, 조문화 작업 등을 전개하였다.

세월호 특위의 존재 자체가 대한변협의 역사상 유례 없었고, 정부 여당, 각종 사회단체 등을 상대로 세월호 가족대책위가 대등한 당사자로서 의견을 피력하고 협상에 임할 수 있도록 세월호 가족대책위와 피해자 단체에 대한 법률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그리고 입법 청원안은 상당 부분 현실

20) 참고자료 3-17. 150106_ 4·16 세월호 참사 피해 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합의사항

법률에 반영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다만, 진상규명 관련 특별법 협상이 난항을 거듭함에 따라 피해자 지원 관련 특별법과 분리되어 제정될 수밖에 없었던 점, 보수 진영과 여당이 수사 및 기소권을 집중적으로 공격해 오고, 피해자 지원 부분 관련 야당 안의 포괄성으로 인하여 730 보선을 앞두고 보수 여당의 집중적인 공격의 대상이 된 점, 빠르면 8월 중순, 늦어도 추석 연휴 이전에는 현재의 법안에 가깝게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완강한 여당의 공격을 방어해 내지 못하고 야당이 세월호 가족대책위와 제대로 협의할 수 있도록 이끌어내지 못하였으며, 내부적으로 세월호 가족대책위를 제대로 설득해 내지 못하게 됨에 따라 법 제정이 그로부터 계속 늦어지게 되었다는 점 등이 안타깝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제정·공포되었거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개의 세월호 관련 특별법은 그 내용으로 볼 때 기존의 위원회법이 가진 조사권한을 넘어설 뿐만 아니라, 다른 무엇보다도 재해/재난의 예방 및 사후 대책(피해자 지원책 포함) 마련 - 관계 국가기관 등에 의한 실행 - 모니터링의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는 점이 그 무엇보다도 강점이다. 이제 특별조사위원회와 국무총리실 산하 2개의 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제대로 된 진상규명, 안전사회 대책 및 피해자 지원대책 마련 등이 이루어지길 소망하며, 지켜보고, 때로는 지지 후원하고 때로는 비판하며 대안을 제시해야 할 때가 다가오고 있다.

제2부 영역별 활동 내역

Ⅳ. 진상 조사 활동

Ⅳ. 진상조사활동

1. 시작하며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대한변협”이라 함) 세월호참사피해자지원 및 진상조사특별위원회(이하 “세월호 특위”라 함)는 산하 기구로서 진상조사단을 구성하였다. 최초 진상조사단은 그 아래에 형사재판지원팀, 현장지원팀 등을 꾸리고 있는 것으로 구성되었지만, 이후에는 각각 별개의 팀으로서 운영되었다. 4·16 세월호 참사(이하 “세월호 참사”라 함)는 그 발생 원인과 구조 활동, 그리고 수사 과정에 이르기까지 여러 의혹들이 산재해 있다. 때문에 세월호 특위 산하의 여러 팀들 중에서도 진상조사단의 활동이 매우 중요하였다.

진상조사단의 활동은 내용과 시기에 따라 크게 5단계로 구분된다. 첫째는, 진상조사단을 구성하여 갖가지 자료수집활동을 한 시기이다. 시기적으로는 세월호 참사 발생 초기인 4월과 5월에 주로 이루어졌던 활동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상조사단의 구성 과정 및 진상조사단이 벌였던 자료 수집 활동(진술청취카드 작성, 포렌식, 국회의원실 및 시민단체를 통한 자료 확보 등)이 주로 기술될 것이다. 둘째는, 이처럼 수집된 자료들을 취합하는 활동이다. 이는 6월에서부터 8월 사이에 주로 이루어졌던 활동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월호 침몰사고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기관보고) 지원 활동 및 진상규명 보고서 작성 활동이 주로 언급될 것이다. 셋째는, 각종 증거보전신청 활동 부분이다. 6월부터 10월에 이르기까지 긴 시간동안 이루어진 각종 중요 자료들에 대한 증거보전신청은 변호사의 지원이 없었다면 이루어지기 어려운 활동이기에 더욱 의미가 있다. 넷째

는, 형사재판지원팀과의 연계 활동 부분이다. 이준석 외 14인에 대한 살인 등 형사사건(광주지방법원 2014고합180)(이하 “선원사건”이라 함)이 시작되어 8월 말부터 진상조사단 소속 변호사들이 형사재판지원팀의 활동에 합류함으로써, 여러 의혹들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었던 활동이다. 다섯째는, 10월에 이루어졌던 증거 발굴 활동, 구체적으로는 AIS 항적 복원 활동 부분이다. 진상조사단과 세월호사고 피해자/실종자/생존자 가족대책위(이하 “세월호 가족대책위”라 함)가 함께 협력하여 AIS에 기록되지 않은 29초 동안의 항적을 찾아낸 활동이다.

[표1 - 세월호 특위 진상조사단 활동 내역]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진상조사단 구성 등							
자료 취합							
증거보전신청							
형사재판지원팀과의 연계							
AIS 항적 복원							

2. 진상조사단 구성 및 초기 자료 수집

가. 진상조사단 초기 구성 및 업무 분담

(1) 활동내용

(가) 활동 초기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가 발생하고 바로 다음 날 황필규, 배의철 변호사가 진도로 파견되었다. 사고 발생 후 한 달 동안 정부의 부실한 초

동대처 및 구조 활동과 언론사의 부정확한 보도 등으로 인해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사회 전반에 대하여 불신을 갖고 있었다. 자발적으로 이들을 도우러 온 변호사들에게도 신뢰를 보이지 않았다. 변호사들이 진도, 안산 등지에서 세월호 참사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법률지원을 하고, 사고 원인과 정부의 부실한 초기 대응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는 활동의 폭도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한편 대한변협뿐만 아니라 서울지방변호사회,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이라 함), 여성변호사회, 한국기독법률가회 등 많은 변호사 단체가 세월호 참사에 법률적인 지원활동을 개시하였다. 그러나 각 단체가 개별적으로 활동을 개시하였기 때문에 그 활동이 통일되지 못했고, 세월호 가족대책위가 변호사 단체와 연락할 창구도 통일하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법률지원활동은 세월호 참사 피해자 및 피해자 가족들이 변호사를 직접 방문하는 경우에 한하여 법률 상담을 해주는 정도에 그쳤으며, 그러한 상담 과정을 통하여 사고 당시의 상황 및 정부의 조치 등에 관한 단편적인 정보를 취득할 수 있었을 뿐이었다. 즉, 4월 한 달 동안의 활동은 개별 변호사들이 이러한 방식으로 간접적으로 취득한 정보를 공유하는 수준이었고, 진상규명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은 개시되지 못하였다.

위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초기활동 당시 변호사들은 세월호 참사 당시의 상황 및 정부의 미흡한 조치 등에 관련한 파편적인 정보를 취득할 수 있었을 뿐이었다. 이렇듯 취득한 정보를 다른 변호사들과 공유하고 사건의 실체에 관하여 토론하고 문제제기를 하며 쟁점을 구체화하는 등의 진상규명에 필요한 업무가 시작되지는 못한 채 세월호 참사 이후 한 달이 흘러갔다.

(나) 진상조사단 구성

2014년 4월 30일 대한변협은 세월호 특위를 정식으로 발족시켰고, 5월 16일에는 가족대책위와 대한변협 사이에 업무 협약이 체결되었다. 그 결과 세월호 피해자와 가족에 대한 총괄적인 법적 지원을 위하여 세월호특위 아래에 여러 분과가 구성되었으며, 5월 19일 진상조사단이 구성되어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하여, 진상조사단의 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진상조사단은 단장, 부단장, 간사, 단원으로 이루어졌는데, 단장 오영중 변호사, 부단장 박주민 변호사, 그리고 간사로 황다연 변호사 외 1인으로 선정되었다. 최초 구성안은 총인원 15명의 변호사로 하고, 변호사연수중인 변호사시험합격자 3~5명을 보조 요원으로 예상하고 있었다. 각 변호사 단체에 소속된 변호사들이 특위 산하 각 팀과 단에 고루 분산되도록 구성하여 특위가 한 단체로 편중되지 않고 중립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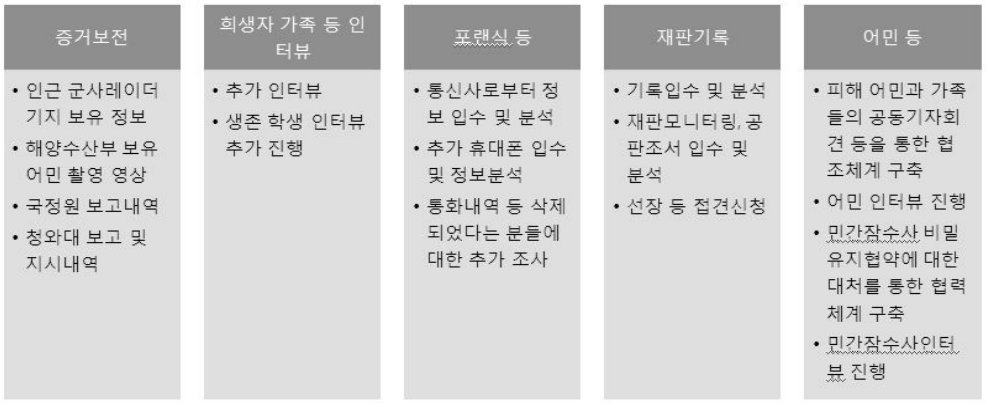
이러한 구성을 한 이유는, 초기 대한변협, 서울지방변호사회,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민변, 여성변호사회, 한국기독법률가회 등 다양한 변호사 단체가 세월호 특위 활동에 자원하게 되었기 때문에, 각 단체의 균형 있는 참여를 조율하는 과정에서 도출된 결론이었다. 세월호 가족대책위와 변호사들 간의 대화의 창구를 통일시키면서도, 세월호 특위에 참여한 514명 변호사를 가장 많이 포괄할 수 있는 인적 집단이 어디인지, 그리고 금전적 지원이 가능한 집단은 어디인지를 중심으로 하여 크게 대한변협, 서울지방변호사회, 그리고 민변 세 단체를 축으로 삼았다. 각 변호사 단체들에 소속된 변호사들이 각 팀과 단에 고루 분산되어 투입되도록 구성하여 각 팀과 단의 의견이 한 단체의 의견으로 편중되지 않고 중립적으로 활동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 진상조사단 활동범위 규정과 산하조직 구성

진상조사단의 활동은 크게 세월호 가족대책위에 대한 지원활동과 자료 수집 및 분석 활동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처음에는 진상조사단을 1)사고 원인 규명팀, 2)구조 및 수습 과정팀, 3)과거 대형사고 자료 수집과 분석 팀, 4)재난 매뉴얼팀의 4개의 팀으로 구성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잠정적으로 현장지원팀과 자료조사팀의 2개의 팀으로 운영하다가 자료가 충분히 수집된 이후에 원래 계획대로 확대하여 운영하기로 합의하였다.

사건 발생 초기에 정부에서 발표하는 탑승객의 숫자나 명단에 오류가 많았다. 현장조사팀은 탑승객에 대한 정확한 정보의 취합이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변호사가 가족들을 개별적으로 면담하기로 하였다. 가족들과의 면담은 세월호 가족대책위가 주선하였다.

[그림1 - 진상조사업무 세분화 내역(6월 19일 작성)]



정기 회의는 매주 월요일 점심 진행하기로 결정하였으며, 필요한 자료 요청과 긴급 결정 사안이 있는 경우 수시로 회의를 소집하기로 하였다.

① 현장조사팀의 업무

㉮ 진술청취카드 형식 확정

사건 발생 초기에 정부에서 발표하는 탑승객의 숫자나 명단에 오류가 많았다. 현장조사팀은 탑승객에 대한 정확한 정보의 취합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정보취합을 위하여 변호사들이 피해자 및 피해자 가족들을 개별적으로 면담하기로 하고, 개별 가족들과의 면담은 세월호 가족대책위가 주선하였다.

면담을 통해 청취해야 할 내용의 누락을 방지하고 진술 내용을 향후 다른 변호사들이 확인하고 활용하는데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진술청취카드를 일정한 형식으로 확정해야할 필요가 있었다. 진술청취카드는 김정욱 변호사, 오지원 변호사가 기초하고, 단장 및 부단장 등 다른 변호사들이 수정하여 확정하였다.

㉯ 자료분류 체계 확정

수집된 자료의 정리를 위하여 웹하드에 '진상조사소위' - '상담·조사내용' - '피해자'로 3단의 폴더를 만들어 개인별로 진술청취카드와 추가로 수집되는 정보를 저장하도록 자료 정리 체계를 확정하였다.

㉰ 포렌식 감독 지원

5월 22일부터는 피해자들의 휴대전화 및 개인 전자기기를 복원하고 그 안에서 증거자료를 추출하는 포렌식(Forensic)[1] 작업이 시작될 예정이었다.

당시 세월호 참사원인에 대해 여러 가지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작업 중에 외부 세력에 의한 부적절한 조작 내지 권력이 개입될 수 있다는 우려가 팽배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세월호 가족대책위와 함께 현장지원을 하는 진상조사단 변호사들이 바닷물에 의해 손상된 전자기기들을 복원하고 그 안에서 법원에 유효한 형태로 제출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추출하는 포렌식 현장에서 작업의 진행을 지켜보기로 하였다. 따라서 진상조사단 변호사들이 포렌식 작업이 진행되는 날마다 시간대별로 나누어 참석하였다.



[2014. 11. 01 종로3가, 주용성, 416가족협의회 416기억저장소]

② 자료조사팀의 업무

국회도 “세월호 침몰사고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이하 “국회 국정조사 특위”라 함)를 구성하여 6월 30일부터 7월 11일까지 관련기관을 대상으로 세월호 침몰사고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이하 “세

1) 전자 증거물 등을 사법기관에 제출하기 위해 용의자의 유전자(DNA)나 지문, 휴대폰, PDA, 컴퓨터 하드디스크, 기업 회계자료 등의 데이터를 수집, 복원, 분석, 보고서를 작성하는 일련의 작업.

월호 국정조사" 라 함)를 실시하였다. 자료조사팀은 국회의원실에서 함께 자료를 분석하고 의견을 제시해줄 것을 요청받아 세월호 국정조사를 위해 기관보고를 통해 수집된 다양한 자료를 접할 수 있었다. 또한 각종 대형 참사에 관한 백서, 해외 대형 참사에 관한 사례, 협조공문, 정부기관협조 공문 등을 확보하여 자료를 취합하였다.

(라) 업무체계의 와해

매주 월요일 점심에 주기적으로 회의를 갖기로 하였으며, 긴급히 결정할 사안이 있는 경우 수시로 회의를 소집하였다. 그러나 6월 말부터 변호사들이 각자의 업무에 때문에 특위 업무에 전념하기는 어려웠다. 세월호 특위 활동은 자원봉사로서 강제력이 부여되지 않았으므로 지속적 활동을 확보하기 어려웠다. 많은 변호사들이 각자 진행하던 업무로 인하여 세월호 특위 사무에 참여하는 것이 상근에서 비상근으로 유동적으로 변하였다. 진상조사단의 구성원이 계속해서 변경되면서 업무의 연속성이 떨어졌고 자료에 대한 보안도 부실해졌다. 따라서 다수의 변호사들이 일을 분담하고 자료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기 보다는 소수의 변호사가 여러 업무에 반복적으로 투입되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따라서 진상조사단의 구성원이 계속적으로 변경되면서 업무의 연계성이 유지되지 않았고 자료에 대한 보안이 부실해졌다. 따라서 진상조사단이 세분화되어 일을 분담하고 자료를 공유하면서 진행되기 보다는 상근으로 활동하는 변호사가 다양한 업무를 모두 부담한 결과 정보 역시 일부 변호사에게 편중되어 회의에서 의사결정에 비효율이 발생했다.

6월부터는 증거보전신청, 진술청취카드의 작성 및 내용 분석, 휴대전화 및 세월호 내부 CCTV의 DVR의 포렌식, 국회의원을 통한 국정감사 자료

취합 및 분석, 기존 자료의 재분류 등의 업무는 보다 구체화되고 다양해졌지만, 그에는 동일한 변호사가 계속해서 투입됨으로써 업무가 일부 변호사에게 과도하게 편중되어 진행되었다. 이에 대해서는 문제점과 반성 부분에서 검토하기로 한다.

(2) 문제점과 반성

2014년 5월 19일 첫 회의에서 제안되고 기획되었던 업무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탈하는 변호사 수가 늘어나며 수정되었고, 일부 업무들은 실행에 옮기지 못한 채 취소되기도 하였다. 따라서 적극적인 세월호 참사 원인 및 초동대처 상의 문제점에 대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이에 따른 초기의 문제점에 대해 검토한다. 초기의 문제점은 이후 활동에서도 반복적으로 발견되며 현재 2015년 2월 현재까지도 해결되지 못한 부분이 있다.

(가) 첫 번째 원인: 세월호 가족대책위와의 대화 지연

언론의 무분별한 보도, 가족들에 대한 구조 실패, 위정자들의 무책임한 발언과 행동들로 상처를 받은 세월호 가족대책위가 대화를 단절하고 고립되는 과정에서 초기부터 정보를 확보하고 대응할 수 있었던 많은 순간이 속절없이 흘러갔다.

(나) 두 번째 원인 : 실제 활동하는 변호사수의 부족

두 번째 원인은 적극성의 결여로 인한 실제 활동 변호사 인원수의 절대

적 부족이다. 대한변협이 전국 회원을 대상으로 두 차례에 걸쳐 세월호 특위를 모집한 결과 514명의 변호사가 지원하였는데도 활동할 인원이 부족한 것은 아이러니하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세월호 특위의 활동은 기본적으로 봉사활동이라는 형태를 채택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원한 변호사들에게 특정 업무를 정기적으로 수행해줄 것을 요구하기 어려웠고 부과된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를 강제하기는 더더욱 어려웠다. 지속적인 활동에 대한 지원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변호사 514명이라는 것은 명목상의 인원에 불과하였고, 실질적으로 활동에 참여하는 인원은 이 중 소수였다. 실제로 세월호 특위를 대상으로 5월 3일과 31일 두 차례에 걸쳐 '세월호 참사 피해지원 공익법률지원단 워크숍'이 있었으나 이에 참여한 인원은 100여명의 변호사로, 총 200여명이 참가하였던바 전원이 514명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출석인원은 총인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처럼 세월호 특위의 활동에 대해서 결과물이 도출되었을 경우 이를 보고를 하고 정보를 공유해야할 인원은 514명 전원이었던 반면, 실제적으로 변호사가 필요할 때 업무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활동 변호사는 지극히 소수였다. 대부분은 세월호 특위의 구체적인 활동 내역에 대해서만 모니터링하고 세월호와 관련된 정보만 취득하고 있을 뿐이었으며, 실제적으로 활동해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자신 외에 다른 변호사가 참여할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참여하지 않았다. 오히려 다수의 인원이 지원하고 참여함에 따라 구성원들이 자신의 업무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끼지 못하고, 배정되지 않은 업무에 대해서는 자발적으로 나서지 않는 비효율적인 결과를 낳게 되었다. 따라서 진상조사단 역시 다른 팀과 마찬가지로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변호사의 수는 절대적으로 부족하였다.

(다) 세 번째 원인: 지속적으로 활동하는 상근 변호사의 부족

세 번째 원인은 진상조사단 내부 인원의 잦은 인사 변동 및 상근 변호사 수의 절대적 부족이다.

진상조사단은 그 무엇보다 전체적인 자료를 파악하고 새로이 발견되는 사실관계를 분석하여 세월호 참사의 원인을 규명해야 했기에 업무의 지속성과 연계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분과였다. 그러나 두 번째 원인과 더불어 진상조사단 구성원의 인사 변동과 불연속적인 활동 참여는 진상조사단의 업무 연계성을 저하시킨다는 점에서 치명적이었다.

세월호 특위는 기본적으로 무급을 전제한 변호사들의 대가없는 무제한 봉사로 구성되었다. 그렇다보니 생계를 위해서 다른 업무를 병행하는 변호사들이 대다수였다. 따라서 변호사가 필요한 업무에 시의적절하게 변호사가 투입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동시에, 오히려 변호사가 세월호 가족대책위에 법률지원을 하기 위해 방문하더라도 딱히 할 업무가 없어 돌아가는 경우가 발생하는 등 가뜩이나 부족한 변호사라는 인적자원이 낭비되는 경우가 허다했다. 상근 변호사를 자처한 이들은 상근이라는 이유만으로 홀로 감당하기 어려운 수많은 업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었다. 더 많은 희생을 감수한 변호사가 더 많은 일을 부담하고 더 많은 희생이 암묵적으로 강요되는 구조가 고착된 것이다.

비상근으로 세월호 특위에서 활동을 하던 변호사들의 경우 개인의 업무로 인하여 본인이 진상조사단 내에서 추진하던 업무에 거리를 두다보면 자연스럽게 그 업무는 상근하는 다른 변호사가 처리하게 되어, 비상근인 변호사가 다시 그 일을 하고자 하더라도 일의 진행을 따라가기 어려워졌다. 그 결과 비상근인 변호사들은 업무에 대해 책임감이 소실되어 서서히 팀에서 완전히 이탈하게 되는 결과가 발생하고 말았다.

끝내 몇몇 변호사들이 생업을 포기하고 세월호 특위 진상조사단에서 상근으로 활동하면서 이들에게 전체 업무가 집중되는 결과를 낳았다. 따라서 중도에 활동에 참여하지 못하게 된 다수의 구성원 대신 투입하기 위하여 연수변호사들을 모집하여 고질적인 변호사 인력의 부족을 메워야만 했다.

상근하는 몇몇 변호사들은 진상조사단 내부의 현장지원팀과 자료조사팀 업무에 투입되어 다른 팀과 업무까지 분담하게 되면서 세월호 특위 전반에 걸친 업무를 수행했다.

이러한 비상근 변호사들의 이탈에서 발생한 첫 번째 악영향은 업무의 지속성이다. 비상근변호사들이 진행하던 업무들은 그들이 이탈함에 따라 상근변호사와 연수변호사의 업무로 넘어오게 되었으나 이 모든 것을 한정된 인력만으로 전부 커버하기에는 무리가 있었다. 그 결과 진행하던 작업들이 중도에 일단락되어버리는 경우도 허다했다.

또한 기존에 당해 업무를 수행하던 변호사들의 업무를 연수 변호사가 이어받기 위하여 이를 교육하고 업무 방식을 익히는 등의 시간과 비용이 낭비될 수밖에 없었으며, 지속적으로 더 많은 변호사들이 활동에서 이탈하면서 연수 변호사들에게 다양한 업무가 중첩적으로 집중되는 결과가 발생하게 되었다.

두 번째로 지속성을 차치하고라도, 활동의 효율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었다. 변호사들의 인력을 관리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다. 자원봉사 형태로 변호사들을 공익활동에 합류시키면 변호사들에게 대가를 지불하지 않기 때문에 일정한 업무를 완료하여 줄 것을 요구하거나, 변호사가 필요한 업무에 참석하여 줄 것을 강제할 수도 없었다. 따라서 이탈하는 변호사들을 세월호 관련 업무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게 할 수 있는 방도가 없었기 때문이다. 비효율이 발생하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통제할 수 없는 안타까움 속에 소중한 시간은 흘러갔다.



[대한변협 세월호 특위 산하 진상조사단, '세월호 참사 관련 증거보전신청 신속결정촉구 기자회견', 416가족협의회 416기억저장소]

(라) 네 번째 원인 : 자료 분류의 체계 미확립

네 번째 원인은 다량의 자료가 집중 되어 적체될 뿐 이에 대한 분석할 인력이 부족하였다는 점이다. 이것은 단순한 인력 부족의 문제가 아닌 초기 인력관리 시스템 구축의 문제라는 점에서 활동 시작 단계에서 주의해야할 부분이다.

진상조사단은 현장지원팀과 자료조사팀을 통하여 다량의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웹하드 및 엔드라이브를 통하여 정리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그러나 방대한 자료는 초기에 만들어 놓은 분류대로 쌓이기만 할 뿐 이를 전부 읽고 분석하는 업무를 수행할 인원을 확보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초기에 만든 분류에 해당하지 않는 자료들이 다량으로 입수될 경우 이를 분류할 수 있는 새로운 디렉터리 체계를 만들며 계속적으로 정리를 해나갔어야 하지만 단순히 자료를 축적하기만 하였다. 그 누적의 정도가 개개인이 읽고 분석하는 것에 엄두가 나지 않을 만큼의 양이 쌓여갈수록, 기존에 결정한 기본적인 자료 분류(디렉터리) 체계는 무의미해졌고,

자료를 읽고자 하더라도 찾아보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졌다.

중복된 자료도 다수 저장되어 있었으며, 유의미한 자료를 걸러내는 작업 역시 전반적인 자료에 대한 이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불가능했다. 그러나 이러한 자료의 내용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있는 상근변호사들의 경우 다른 업무가 과중히 부과되어 자료의 정리까지 진행하는 업무까지 부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다.

이러한 자료 분류 및 분석 작업은 담당자가 지정되어 지속적으로 수행해야 가능한 업무인 만큼 진상조사단 구성원이 지속적으로 변동되고 계속적으로 이탈자가 발생하는 과정에서는 어쩌면 당연한 것이었다. 그 결과, 2014년 7월에 연수변호사가 작업에 참여하기 전까지 정보를 수집하고 새로운 자료를 생성하는데 집중하였을 뿐, 불필요한 자료를 걸러내는 등의 정리 작업은 하지 못했다.

3명의 연수 변호사가 8월 초 웹하드의 모든 자료에 대한 인덱스 작업을 하고, 8월 말 웹하드의 무의미한 자료와 중복 자료들을 삭제하는 등 무질서하게 분류되어 있던 자료들을 새로운 체계 하에 새로 정리한 뒤에야, 5월 이후 방치되었던 자료분류체계를 새로이 정립할 수 있었다.

처음부터 상근할 수 있는 변호사의 지원을 받아 자료를 분석하고 디렉터리 체계를 계속적으로 변경하여 변호사들이 원하는 정보를 즉각적으로 얻을 수 있는 자료분류체계를 정착시켰어야 했다.

(마) 다섯 번째 원인 : 정보공유의 구심점 부재

다섯 번째로 입수한 자료를 신속하게 공유하지 못했던 점 역시 진상규명에 걸림돌이 되었다. 이는 단순히 진상조사단 내 구성원들 간의 정보의 공유가 활발하지 못했던 점뿐만이 아니라, 외부적으로 다른 팀과 정보 공유 또한 원활하지 못했던 점 모두 문제였다.

진상조사단은 무엇보다 업무의 지속성과 연계성이 중요한 분과였다. 그러나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이라 함) 제정과 관련하여 변호사들 모두가 하루하루 급박한 일정에 쫓기면서, 방대한 진상조사단의 전체의 자료를 정독한 뒤 숙지할 수는 없었다. 하지만 진상규명에 관련한 논의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진상조사단 구성원 모두가 진상조사 활동을 통해서 밝혀진 사실에 대하여 인지하고 있어야 했다. 따라서 진상조사에 필요한 자료조사가 이루어질 경우 이를 꾸준히 분석한 뒤 요약하여 쉽게 이해 가능한 형태로 팀원에게 회람하는 업무를 수행할 상근 변호사가 필요했다.

누군가는 정보를 수집하여 이를 분석하고, 다른 누군가는 새로 입수된 자료들을 이해하기 쉽도록 정리하여 회람하는 등의 업무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변호사들은 각각 자신이 분담한 파편적인 정보들만을 알고 있으며, 동시에 일부 비상근 변호사들은 자신의 생계를 위한 업무 인하여 이러한 정보를 공유하지 못한 채 이탈하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어쩌면 중요한 정보가 공유되지 못한 채 소멸했을 지도 모를 일이다. 따라서 모든 정보를 기록하며 회람할 수 있는 시스템의 구축과, 이러한 시스템을 총괄 관리하면서 지속적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업무만을 분담하는 변호사가 부재했던 점이 진상조사의 진행에 어려움을 불러왔다.

(3) 앞으로의 전망

(가) 피해자와의 신속한 접점 형성

어떠한 사건이든 시간이 흐르면 기억은 희석되고 증거는 소멸한다. 세월호 참사 역시 초기 신뢰구도 형성하지 못하여 많은 정보를 놓칠 수밖에

없었다. 가족들, 그 중에서도 자녀가 사망한 가정이 많은 참사의 현장에서 피해자 가족들의 아픔을 헤아리고 다가가는 변호사들의 마음이 부족한 것은 아니었을 것이다. 다만 전 국민들이 변호사 집단에 대해 가지는 부정적인 이미지와 더불어, 이러한 사상 초유의 대형 참사 피해자들의 심리상태에 대해 무지하였던 것에도 원인이 있을 것이다. 심리상담가를 비롯하여 교섭전문가 등의 자문을 받아서 최대한 빨리 피해자와 접점을 만들고 다수의 피해자들에 대한 접촉면을 넓혀야 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초기에 중요한 자료들을 확보해놓아야 후에 후회가 남지 않을 것이다.

(나) 상근 변호사의 확충

514명이라는 절대적으로 다수의 변호사들이 세월호 특위에 지원했지만, 실제적으로 활동하는 인원은 1/5에도 미치지 않았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활동하며 세월호 사건을 분석하는 상근 변호사 인원이 부족한 점 역시 큰 문제점이었다.

실제 활동하는 변호사 및 장기적으로 상근하는 변호사의 인원 부족의 근본적인 원인은 세월호 특위가 자원봉사라는 형태로 운영되었기 때문이다. 공익을 위해서 일하고자 하는 변호사라고 하더라도 안정적인 수입이 지원되지 않는 가운데 공익을 위해 전적으로 자신의 모든 시간을 할애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결과이다.

대한변협은 단순히 변호사를 모으는 구심점의 역할을 수행할 것이 아니라, 장기적 활동에 대한 재원 확보를 통하여 공익을 위해 노력하는 변호사들을 지원하는 역할 역시 부담해야한다. 따라서 공익활동에 지원하여 장기적으로 활동하는 변호사가 생계를 유지하며 해당 사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주어야 한다. 대형 참사일수록 발생 원인에 대한 연

구와 이를 방지하지 못한 사회 시스템에 대한 고찰은 광범위하기에 활동 역시 장기적이 될 수밖에 없다. 장기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변호사를 활동 초기부터 확정하고 지원하는 재원의 마련이 필요하다. 따라서 대형 참사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변호인단을 구성할 때에는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는 큰 축을 담당할 상근 변호사들을 유급으로 배정한 뒤에 자원한 변호사들을 그 산하에 배치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 운영의 방식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공익활동을 위한 자원봉사로 일시적으로 합류한 변호사라고 하더라도 자신의 활동에 투여한 실비의 지급을 대한변협 측에서는 지연 없이 즉각적으로 가능하게 하여 생계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보호해주어야 한다.

(다) 인적 자원 관리

전체 세월호 특위를 총괄 지휘하는 책임자와 업무 및 책임의 소재에 대해서 명확히 하지 않은 점 역시 진상조사단에 영향을 끼쳤다. 더불어 514명 대규모의 특별위원회가 구성된 것 역시 긍정적인 방향으로 작용하지는 못하였다.

많은 인원이 세월호를 위하여 움직였지만, 이를 통제하고 업무를 부과할 컨트롤 타워는 부재했다. 그랬기 때문에 자신 외에 500명 이상 세월호 공익활동을 위해 업무를 수행하고 있을 것이라는 안일한 기대로 많은 변호사들이 소극적인 활동을 하게 되었다. 언제나 만사에 그러하듯이 모두의 일은 누구의 일도 아니다. 따라서 대규모의 변호인단이 꾸려졌을 경우 각자 역할을 정확하게 부여하고 이를 통제하며 인력관리를 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라) 자료정리와 정보공유 문제의 해결

진상조사단은 다른 분과보다 구성원들의 현안에 관련한 자료에 대한 공유 정도가 비슷한 것이 중요하다. 하루하루 업데이트 되는 새로운 자료에 대해서 모두가 인지하고 있어야 이를 바탕으로 토론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으면 정보의 비대칭으로 인하여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큰 변호사만이 계속 업무를 진행하게 되고, 이를 알 수 없는 변호사들은 진상조사에 대한 열의가 저하되어 점차 이탈하게 되기 때문이다.

정보를 공유할 매체의 선택 역시 활동 초기에 결정하여야 한다. 이번 세월호 특위의 경우 카카오톡을 통해서 문서를 공유하기도 하고, 웹하드 내지 엔드라이브에 업로드 시키는 등의 방법을 일정하지 않게 사용하였다. 따라서 어느 매체를 통하여 일정하게 정보가 업데이트 되는지를 알 수 없었다. 카카오톡 등 SNS를 이용하여 자료를 공유하는 경우 새로운 매체에 대한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높은 연령층의 변호사들은 이에 대해 부담을 느꼈으나, 젊은 변호사들은 쉽게 자료를 공유하였다. 가상 드라이브에 자료를 업로드 하는 경우 모든 세대가 다운로드를 받는 것이 가능하기는 하였으나 업로드 하였다는 사실을 제대로 공지하지 않는 경우 자료의 유무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러한 공유 매체의 장단점을 고려하여 통일된 매체로 결정해야 한다.

진상조사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자료의 취득과 이에 대한 분석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중요한 것이 정보를 공유하고 유통시키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기술적인 지원이다. 가상 드라이브의 일종인 웹하드와 엔드라이브를 사용하여 정보를 저장하는 것만으로는 정보의 양이 늘어날수록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또한 자료가 입수되더라도 정확한 디렉터리 체계가 지속적으로 수정되면서 들어오는 자료들

에 알맞게 분류되고 재정비되지 않으면 맥락 없이 자료가 누적되기만 하는 결과를 불러온다.

따라서 진상조사에 관련된 자료가 입수되는 경우 그 내용을 입수한 자가 간략하게 요약하여 자료를 분류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구성원을 선발하고, 담당자가 자료에 대해 인덱스를 작성하여 기록하면서 가상 드라이브에 분류 체계에 맞게 저장하고, 이러한 저장사실을 진상조사단 변호사들이 전부 알 수 있도록 공유해야 한다. 저장된 자료에 대한 업데이트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일정한 시간 간격을 둔 정확한 일정을 정해서 업데이트된 자료의 리스트와 간략한 내용을 전달하여 팀원들이 정보를 공유하여야 한다.

정보를 공유할 매체의 선택 역시 활동 초기에 결정하여야 한다. 이번 세월호 특위의 경우 카카오톡을 통해서 문서를 공유하기도 하고, 웹하드 내지 엔드라이브에 업로드 시키는 등의 방법을 일정하지 않게 사용하였다. 따라서 어느 매체를 통하여 일정하게 정보가 업데이트 되는지를 알 수 없었다. 카카오톡 등 SNS를 이용하여 자료를 공유하는 경우 새로운 매체에 대한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높은 연령층의 변호사들은 이에 대해 부담을 느꼈으나, 젊은 변호사들은 쉽게 자료를 공유하였다. 가상 드라이브에 자료를 업로드 하는 경우 모든 세대가 다운로드를 받는 것이 가능하기는 하였으나 업로드 하였다는 사실을 제대로 공지하지 않는 경우 자료의 유무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러한 공유 매체의 장단점을 고려하여 통일된 매체로 결정한 후 이를 관리하고 주기적으로 정보 공유만을 담당할 인력이 필요하다.

나. 진술청취카드 작성

(1) 활동내용

(가) 현장조사팀

① 진술청취카드[2] 작성

진상조사단이 활동을 시작했던 5월 중순경에는 세월호 가족대책위 내에서 세월호의 침몰 원인에 대한 다양한 의혹이 제기되었으며 이를 해소해 줄 것을 변호사들에게 요구하고 있었다. 따라서 어떠한 의혹이 존재하는지에 대한 정리가 필수적이었으며 나아가 세월호 피해자들 가족들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 확보와 구체적 증언이 필요했다.

진상조사단은 5월 말 사고 및 수습에 대한 세월호 피해자 가족 및 생존자의 진술을 확보하기 위하여 진술청취카드초안을 만든 후, 6월부터 최종 완성된 진술청취카드를 가지고 각 반별로 1차 집단면담과 2차 집중면담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집단면담의 경우 1회 2개 반, 각 반 5개조로 진행하였는데, 자료의 정리는 각 반별 폴더를 생성한 뒤 집단면담폴더의 경우 월, 일, 학생이름 순으로 파일을 저장하고, 개별 면담의 경우 하위폴더에 학생(어머니, 아버지) 폴더를 생성하기로 하였다. 일반인 및 생존자에 대해서도 가능한 경우 집단면담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1차적으로 6월 16일경 해당 작업이 완료되었다.

그러나 개별적으로 면담하는 경우 세월호 피해자 가족들이 언론 및 정부의 미흡한 대응에 의하여 사회 전체에 대한 신뢰가 많이 상실한 상태였기 때문에 개인적 경험에 대해 상세히 표현하기 어려워하였다. 더불어 6월부터 변호사들의 업무가 상근하는 변호사들을 위주로 과도하게 부여되

2) 참고자료 4-1. 진술청취카드

면서 진술청취를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변호사 인력이 부족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점차 진술청취에 관련하여서는 반별로 진술을 청취하는 형태로 변형되었다.

② 진상규명에 대한 의문점 취합

이와는 별도로 다양한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세월호 가족대책위 차원에서 진상규명을 요청하는 개별적인 의견을 취합하여 세월호 특위 진상조사단 변호사들의 정기 회의에 제출되고, 그에 대한 구체적 방법을 수립하는 방안도 함께 진행되었다. 그러나 이는 세월호 가족대책위와 긴밀한 공조관계가 되지 못한 상태에서 임시적인 자료의 공유 형태였기 때문에 세월호 가족대책위가 진상조사단 변호사들을 신뢰하기 시작하면서 함께 진상규명에 관련한 회의를 진행하고, 자료 수집 등을 수행하면서 별도의 회의 안건으로 올릴 필요성이 상실되며 자연스럽게 수렴되었다.

(나) 자료조사팀

자료조사팀은 함께 연계하여 진술청취카드를 이용해서 세월호 참사 피해자들의 마지막 연락에서 확인 가능한 세월호 침몰 당시의 상황 등을 재구성하고자 노력하였다. 그래서 현장조사팀에서 피해자 가족들과 개별적인 상담을 통해서 진술청취카드를 작성하여 전달하고, 자료조사팀은 이를 분류하고 내용을 기록하는 역할을 분담하였다. 진술청취카드를 분류한 뒤 이를 웹하드 및 엔드라이브에 업로드 하여 세월호 특위 소속 모든 변호사가 함께 열람하며 연구할 수 있는 기틀을 세울 수 있었다.

(2) 진상규명의 실태

2014년 6월 16일 경, 단원고 10개 반에 대한 진술청취카드 매뉴얼을 확정하여 각 반별로 집단면담 및 개별면담을 실시하여 이를 작성할 수 있도록 변호사들이 직접 세월호 가족대책위를 접촉하며 반별로 진술청취를 기록하고 이에 대한 분류작업이 완료되었다. 그러나 개인 면담을 통한 진술청취는 피해자 가족 전원에 대해서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며 단원고 1반 13명, 2반 6명, 3반 22명, 4반 13명, 5반 32명, 6반 9명, 7반 14명, 8반 18명, 9반 14명, 10반 2명 외 미분류 16명 그리고 일반인 피해자 14명에 대한 문서화 작업으로 마무리 되었다. 특히 교사 및 선원에 대한 진술청취는 이루어지지 못했다.

피해자 및 피해자 가족들은 세월호 참사의 충격으로 침착하고 자세하게 진술을 하는 것이 심리적으로 어려웠다. 이러한 상황에서 변호사가 진술을 강요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많은 피해자 가족들은 진술 도중 더 이상 이야기를 이어나가지 못하고 자리를 떠나는 등 가슴 아픈 순간이 이어졌다.

그러나 그 와중에도 제기된 몇 가지 의문에 대해서 변호사들은 성실하게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통해 피해자 가족들이 가지고 있는 의혹을 해소시키기 위해 노력을 기울였다. 피해자 가족들이 주로 제기한 진상규명 요청의 사안은 크게 1) 해양경찰의 소극적인 구조 활동과 2) 진도 및 안산 등지에서 발생한 사복경찰의 세월호 가족대책위에 대한 감시 실태 등이었다. 이에 대해서 진상규명을 실시한 바는 다음과 같다.

(가) 해양경찰의 소극적인 구조 활동

피해자 가족은 해양경찰의 미흡한 구조 활동에 대해서 지속적인 의혹을 제기하였다. 사상최대의 구조작전이라고 대대적으로 언론에 보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해양경찰이 수행한 일은 떠오르는 익사체를 건져 올리는 일 뿐이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혹에 대해서 변호사들은 국회 국정조사 특위에 소속된 국회의원들로부터 자료를 입수하고 종합하여 해양경찰의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구조 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들을 수집, 기록하였다.



[세월호 선원 우선 구조 현장, 416가족협의회 416기억저장소]

① 선원 우선 구조

4월 16일 오전 9시 35분경 목포 해양경찰청 123정은 세월호 침몰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했으며, 123정에 부속된 고속단정은 세월호 좌현 중앙부 갑판으로 향하여 기관부 선원들을 가장 먼저 구조하였고, 123정은 세월호 선수 방향 조타실로 향하여 선장을 비롯한 선원들을 구조하였다. 가장 먼저 도착하였던 해양경찰의 구조인력이 정확하게 도착하자마자 둘로 나뉘어 기관실과 조타실로 향했다는 점은 백서를 집필하는 현재까지도 풀

리지 않는 의문으로 남아있다. 123정이 도착한 9시 35분경부터 9시 45분경까지 구조한 22명 중 무려 15명이 선원에 해당한다.

② 123정 정장의 퇴선조치 미이행

이와 더불어 목포해양경찰서장과 123정의 교신 내용을 살펴보면, 목포해양경찰서장은 123정에게 9시 57분에 “우리 직원도 올라가서 하고 그래 안 되면 마이크를 이용해서 최대한 안전하게 행동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0시 5분에 “정장, 그러면 다시 한 번 침착하게 방송해서 반대 방향 쪽으로 뛰어내리게끔 유도해봐. (중략) 방송해서 방송내용이 안에까지 전파될 수 있도록 한 번 해보세요”라고 지시한다.[3] 그러나 목포해양경찰서장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123정은 승객에 대한 퇴선조치를 하지 않았다.

123정 정장이자 현장지휘관(OSC)이었던 김 모 경위는 기자회견 및 초기 검찰수사 등에서 퇴선방송을 하였다고 주장했지만, 세월호 특위 변호사들이 피해자 대리인으로 참석하여 피해자들과 함께 방청한 8월 13일 선원사건이 진행되던 광주지방법원 201호 재판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서 “죄송하다. 거짓말했다”라고 번복하며 “(선내 진입 명령을 받은 것을) 당황해서 깜빡 잊었다”고 진술했다. 자신의 퇴선지시 미실시를 은폐하기 위하여 공문서를 조작하였던 것이다.

그 후 김 모 경위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1일 첫 공판준비기일을 시작으로 재판이 진행되었다. 세월호 특위 형사재판지원팀의 변호사들은 피해자 대리인으로 참석하여 지속적으로 해양경찰의 불성실한 구조 활동에 대한 책임을 증명할 증거와 자료를 재판부에 검찰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

3) 해양경찰청, <해양경찰 123정과 목포해양경찰서해지방해양경찰청 간 ‘주파수공용통신(TRS)’ 녹취록>

하여 제출하였다. 그 결과 1심에서 123정 정장 김 모 경위는 업무상과실치사가 일부 승객에 대하여 인정되어 4년의 징역에 처해지는 결과를 낳았다. 123정 정장에 대한 재판의 구체적인 내용은 형사재판지원팀 부분에서 다루기로 한다.

③ 각 부처와 해외 구조 지원 거절

해양경찰청은 사고 당시 경찰청, 중앙119, 일본 미국 문화재청 등 다양한 지원요청들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였다.

경찰청은 사고 당일 오전 9시 51분경 해양경찰청 측에 지원의사를 밝혔으나, 해양경찰청 본청 상황실은 "우리가 다했으니까 우리 해양경찰하고 해군하고 다하고 있으니까" 라며 경찰청 측의 지원의사를 거부하였다.

사고 당일 오후 1시 2분경에는 중앙119 역시 적극적으로 지원의사를 밝히지만, 해양경찰청 본청 상황실은 그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은 채 무마시켰다. 중앙119는 기동성을 높이기 위해 EC-225LP 헬리콥터 1대, AS-365N2 헬리콥터 2대, 그리고 깊은 수중을 자세히 탐색할 수 있는 수중영상탐지기 등을 보유하고 있으나 이를 활용하지 못한 것이다.[4] 특히 중앙119가 보유하고 있는 두 종류의 헬기는 모두 인명구조기(hoist), 화물인양기(cargo sling), 외부스피커(speaker)를 모두 갖추고 있는 등 해양경찰의 헬기 3대보다 인명구조에 보다 효율적인 장비였다.

또한 세월호 참사 당일 문화재청은 문화재청 소속의 '씨뮤즈호'와 '누리안호'를 사고 현장으로 파견하기로 결정하였다. 그에 따라 4월 16일 오후 7시 50분경에는 씨뮤즈호, 4월 17일 오전 8시 10분경에는 누리안호가 사고 현장에 도착하였다. 아시아 최초의 수중탐사선인 씨뮤즈호(18

4) 중앙119구조본부 홈페이지(www.rescue.go.kr) 참조

톤급)는 잠수사 공기공급장비, 실시간 수중영상촬영 및 통신장비, 스쿠버장비 등을 갖추고 있으며, 아시아 최대의 수중전용발굴선인 누리안호(288톤급)는 잠수사 감압챔버, 잠수사 공기공급장비, 잠수통제실, 심해잠수장비, 스쿠버장비, 인양크레인 등을 갖추고 있다.[5] 특히 누리안호의 잠수통제실에서는 잠수부가 잠수를 하게 되면 잠수부의 머리에 설치된 CCTV를 통해 수중 상황을 실시간으로 중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다.[6] 해양경찰청 측의 적절한 지휘가 있었다면 위와 같은 두 척의 배, 특히 누리안호를 이용해 당시 현장으로 몰려들었던 잠수인력들을 잘 활용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렇지만 해양경찰청은 이러한 문화재청의 지원 역시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였다. 실제 문화재청에서 작성한 <진도 세월호 침몰현장 지원업무 일지>를 살펴보면, 씨뮤즈호와 누리안호는 4월 20일까지 '사고현장 주변 수색', '장비정리 및 수중수색에 필요한 장비 점검 및 설치', '수중조사를 위한 민간잠수사 단정(을 이용하여) 해양경찰 3012함으로 이동', '지원이 가능함을 (해양경찰 통제실에) 알림' 등의 업무만을 수행했을 뿐, 직접적인 구조작업을 전혀 실시한 바가 없다.[7]

그러나 문화재청에서 씨뮤즈호와 누리안호를 철수하기로 결정하자, 다음날인 4월 21일 해양경찰은 지원요청 공문을 재발신하여 씨뮤즈호와 누리안호를 재투입하였다. 그 후 씨뮤즈호와 누리안호는 갖추고 있는 장비를 적극 활용하여 실종자 수색 업무에서 큰 활약을 하였다. 사고 당일부터 이미 현장에 있었던 씨뮤즈호와 누리안호를 적극 활용하였다면 단 한 명이라도 더 구조해낼 수 있었을 것이다.

(나) 사복경찰의 활동

5) 문화재청(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수중발굴과), <국정조사특위 요구자료> 中
6) 월간 문화재 사랑(문화재청), <바닷속 문화재 찾는 누리안호 가보니>, 2013. 8. 13.
7) 문화재청(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수중발굴과), <진도 세월호 침몰현장 지원업무 일지> 中

진도체육관과 팽목항에서 세월호에 타고 있었던 가족들을 기다리는 피해자 가족들은 사복경찰이 2014년 4월 16일부터 계속해서 자신들을 감시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변호사에게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그 사실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자료수집팀 등은 의원실을 통해 경찰에 자료를 요청하는 등 적극적인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노력한 결과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다.

국회의원실을 통해 경찰청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세월호 참사 당일인 4월 16일부터 6월 12일까지 진도, 안산에 투입된 사복경찰은 총 4,154명이다. 총 58일 동안 하루 평균 약 72명 사복경찰이 투입된 것이다.

[표2 - 진도·안산에 투입된 사복경찰 현황(기준 : 4. 16. ~ 6. 13. / 단위 : 명).[8]]

	진도	안산	계
수사·형사	818	1,025	1,843
정 보	795	926	1,721
외 사	10	143	153
정보화장비	372	65	437
계	1,995	2,159	4,154

더불어 전남지방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은 진도실내체육관과 팽목항 등에 질서유지와 안전 확보를 이유로 1일 평균 22명의 정보과 소속 사복경찰을 배치했다.[9] 전남 진도의 경우 이러한 사복경찰관의 배치는 전남청장의 지휘 하에, 팽목항은 전남청 각 과장, 실내체육관의 경우 진도서장이 책임지고 있다. 안산의 경우 경기청장의 지휘 하에, 단원서장이 책임지고 있다.[10] 관할이 다른 각 지역의 경찰청마다 세월

8) 우원식 의원실 자료, 우원식 의원실 - 경비(사복경찰 6월13일까지)
9) 뉴시스, 박홍근 "사복경찰 팽목항 등에 배치돼"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40502_0012893275&cID=10217&pID=10200

호 가족대책위에 대해서 경계하기 위하여 경찰력을 지속적으로 투입했다.

피해자 가족들이 지속적으로 언론과 공권력 사회전반에 대한 불신이 깊어가던 시기에 사복경찰의 투입과 경찰의 가족 사칭 등 각종 불법와 합법의 경계를 넘나드는 경찰의 정보수집활동은 피해자 가족들에게 상처로 다가왔다. 그러한 피해자 및 피해자 가족들의 인권보호를 위해 변호사들은 경찰의 태도를 비판하며 적극적으로 항거하였다. 따라서 변호사들은 진도와 안산에서 가족들 곁에 상주하며 경찰에 의한 불법적인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밖에 없었다.

(3) 문제점과 반성

(가) 진술청취카드 작성 시의 애로사항

진술청취카드 작성은 세월호 특위 진상조사단 활동 초기에 피해자 가족들과의 접촉면을 넓히는 장점이 있었다. 그러나 보다 본질적인 것은 사고 당시의 정황 및 초기 대응에서의 문제점 등 진상조사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피해자 가족들은 당시 언론의 받아쓰기 식의 보도행태 등으로 사회 전반에 대해서 신뢰를 잃어가고 있었고, 기득권자로 치부되는 변호사들의 역할에 대해서 불신하고 있었다. 때문에 개인 대 개인으로 상담을 시작했을 때에는 세월호 가족대책위는 자신의 개인적인 아픔을 털어놓고,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었다. 따라서 각 반별로 그룹을 나누어서 4~5인 정도의 조를 구성하여 단체로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오히려 활발한 대화를 가능하게 하였다. 감당하기 힘든 비극을 겪고 있는 피해자들의 경우 그룹으로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용이할

10) 우원식 의원실 자료, 우원식 의원실 - 경비(사복경찰 6월13일까지)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해주는 부분이었다.

(나) 진술청취카드의 1회성으로 인한 한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술청취카드는 전원에 대해서가 아니라 일부에 대해서만 이루어졌다. 진술자들의 마음의 상처가 아물지 않은 상태에서 그 당시의 기억을 반복적으로 확인시키며 사건에 대해서 기록해 나간다는 것은 진술자 그 개개인에게 가혹한 경험이었다. 따라서 이러한 작업은 변호사가 피해자 가족들과 가까워지기 위한 절대적인 시간과 인내심이 필요한 작업이며, 1회성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시행하여 진술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이 필요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변호사의 인력 부족과 상근 변호사의 장기 근무가 불가능하였기 때문에 각 반별로 다른 변호사가 투입되었고, 차후에 다시 작업을 진행하려 할 때에는 또 다른 변호사가 투입되게 되면서 작업의 연계성이 저하되었다. 결국 본 작업은 마무리 되지 못한 채 종료되었다.

진술청취카드 작성 작업이 완성되지 못한 채 마무리되면서 초기에 가족마다 따로 상담을 진행해서 지속적으로 나오는 진상조사 관련 사안들은 개별 폴더에 저장하며, 진상조사 자료로 활용하고자 하였던 작업 취지조차 희석되면서 앞서 구성하였던 자료분류체계는 이 작업에 한하여 적용되는 등 초기 작업의 의의마저 상실하는 결과를 발생시켰다.

(다) 진술청취카드의 분석 및 정리 실패

당초 진술청취카드를 작성하여 수집된 피해자 가족들의 진술 가운데서 진상조사에 단서가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발췌하여 따로 정리하고 증명하는 과정을 진행하려고 계획하였다. 현장지원팀의 경우 진술청취카드를 기록하고 정리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면 자료조사팀에서 이를 분석하고 향후 진상조사 활동을 위한 자료 형태로 정리하는 작업이 필요했다. 그러나 인력의 부족으로 인하여 이러한 작업이 연계되지 못한 채 원자료(Raw Data) 형태로만 저장되었을 뿐 내용을 진상조사에 활용하지 못하였다.



[진상규명팀-증거보전신청, 416가족협의회 416기억저장소]

(4) 앞으로의 전망

(가) 컨트롤타워의 필요성

장기 프로젝트를 끝까지 끌고나가기 위해서는 컨트롤타워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각 단장, 팀장 등 책임자들이 의지를 가지고 변호사의 공백이 발생할 경우 즉시 다른 변호사로 대체하여 바로 작업에 투입될 수 있도록 인력을 조정하고, 업무를 계속하여 조율·감독하여 프로젝트가 끝까지 유지

되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진상조사단 자체가 변호사들로 구성되어있고 각자의 업무가 너무 다양하여 전국 각지에 흩어져 바빴다. 그와 더불어 원래 변호사들은 개개인으로 책임을 지고 각자의 사건을 처리해오던 이들이기에 변호사를 다른 변호사가 지시하여 업무를 조율한다는 것 자체가 기존의 업무 양태와 달라, 각 단장, 팀장 모두가 지휘에 부담을 느끼게 되면서 통제력 자체가 약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강력한 리더십이 발휘되어야 할 부분에 있어서는 책임자들이 모든 책임과 역할을 다 해줄 각오를 해야만 장기적인 프로젝트는 성공할 수 있었다.

(나) 자료분류 체계의 확립

진술청취카드의 작성은 처음 기획 당시에는 지속적으로 진행하여 진술을 계속하여 축적하는 시스템을 기획했었다. 그러나 이러한 장기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서는 자료 정리를 위한 담당자가 확보되고, 자료 분류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초기 작업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이번과 같은 경우 장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한 이러한 인적, 물적 구조를 확고히 하는 작업 없이 바로 진술청취를 위한 인력이 투입되어 진행되었다. 그 후 변호사들이 작업에서 이탈하는 경우에 그 역할을 대신하는 다른 변호사를 투입하기 보다는 내부에서 당면한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변호사가 자신의 시간을 더 할애하여 진행하는 등 임기응변식으로 작업이 계속했다. 그 결과 진술청취카드 작성이 끝날 때에는 이미 진술청취카드를 반복적, 장기적으로 작성, 관리할 여력조차 변호사들에게 남아있지 않다보니, 자료를 정리하고 분류할 여유조차 없이 그저 초기에 형성된 시스템에 결과물을 담는 정도에 그쳤다.

설문, 진술청취 그 외에 다양한 정보수집 시 자료의 축적만큼 중요한

것은 이에 대한 분류이지만 자료가 부족한 초기 활동에서는 자료의 수집 그 자체에만 골몰하기 마련이다. 그러나 활동이 장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는 이상 자료는 감당하기 힘들만큼 몰려들기 마련이다. 따라서 자료를 분류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담당자는 초기에는 해야 할 활동이 많지 않으나 후기에는 그 역할이 매우 막중하다. 따라서 자료 분류 그 자체를 업무로 하는 담당자를 배치하여 지속적으로 자료가 제대로 정리되어 언제든 다른 변호사들이 찾아보고자 할 때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한다.

그러나 변호사들이 자료를 정리하거나 새로운 자료분류체계를 구축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전문적으로 자료분류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전문 인력과의 협업이 절실했다. 막대한 양의 자료가 지속적으로 현장조사팀으로부터 밀려들어왔지만 이에 대한 적절한 분류 체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아서 그대로 적체된 채 사장된 자료들이 존재한다. 따라서 문헌정보학 전문가 등 자료의 분류 및 장기적인 분류 시스템 구축 부분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인력을 보강하여 변호사와 협력할 수 있도록 활동 초기부터 지원했어야 한다.

(다) 가족들과 접점을 이루는 상근변호사의 배정 필요

변호사들은 세월호 참사 피해자들을 비롯하여 그 가족들과의 원활한 의사소통과 허심탄회한 대화를 통해 진상조사에 필요한 단발적인 기억들을 수집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동일한 변호사가 반복적으로 투입되어 세월호 가족대책위와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신뢰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에서 고정적으로 상근할 수 있는 변호사의 존재가 필요했다. 처음부터 장기적으로 상근할 변호사

를 모집하고 그 변호사들을 장기적 프로젝트에 구성원으로 합류시켜 업무를 진행해야 한다.

다. 초기 복원작업 및 포렌식 감독

(1) 활동내용

세월호 참사 피해자 가족들이 사고 발생 당시 피해자와 마지막으로 연락한 내용, 생존자들의 핸드폰 영상 및 증언의 수집은 매우 중요한 작업 중 하나였다. 세월호가 침몰 당시 이상 징후를 보인 경우는 없었는지를 분석할 기반이 되는 자료 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피해자, 실종자 그리고 생존자의 휴대폰 및 전자기기가 바닷물로 인하여 손상되었기 때문에, 그 안에 저장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복원을 비롯하여 복원된 기기에 대한 별도의 포렌식 작업이 필요했다. 진상조사단은 진상규명을 위한 자료 확보를 위하여 세월호 참사 피해자들이 소지하고 있던 전자기기의 기록에 대해 복원 및 포렌식하는 작업을 대한변협 차원에서 진행하기로 결정하였다.

(가) 설명회

변호사들은 세월호 참사 피해자 및 피해자 가족들의 휴대전화를 비롯한 전자기기의 복원과 포렌식을 진행할 필요성을 가족대책위에 설명하였다. 그리고 공식적으로 위 절차에 대한 협조와 개인 전자기기의 제공을 요청하였다. 따라서 진상조사단 변호사들은 이에 필요한 설명 자료를 작성하고, 이에 대해 세월호 가족대책위 총회에서 설명을 한 뒤 동의를 얻어 작업을 실시할 수 있게 되었다.

(나) 개인 물품에 대한 복원작업 및 포렌식 감독

우선 세월호에서 발견된 세월호 참사 피해자들의 개인적인 물품인 휴대전화와 카메라 등 전자기기에 대한 복원 및 포렌식 작업을 한양대 김인성 교수가 3000만원에 수락하면서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비용이 지급되었다. 또한 이와 더불어 구글, 네이버, 다음, 카카오톡 등 클라우드에 남은 기록에 대해서도 조사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위 작업은 개인정보 등과 관련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대한변협 차원에서 협조공문 발송 및 전화요청을 필요로 하였다.[11]

그리고 각 기기별로 휴대전화를 수리할 수 있는 인력 역시 필요했기 때문에 삼성, 엘지, 팬택 등 서비스센터에 회사당 1명씩, 총 2일 간 작업에 협조해 줄 것을 대한변협 차원에서 공식협조 공문을 발송하였다.[12] 나아가 포렌직실에서 상근변호사 혹은 당직변호사가 작업에 대해 감독하고 법적 지원을 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2014년 5월 22일부터 시작될 예정이었던 침수 기기에 대한 복원 및 포렌식 작업은 과거 천안함 사건에서도 디지털 포렌식을 담당하였던 주식회사 명정보기술(이하 “명정보기술”이라 함)에 작업을 의뢰하였다. 그러나 의뢰하고 기다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가족대책위가 우려하는 복원 및 포렌식 작업에서의 외부에 의한 부적절한 조작 내지 자료 손상에 대한 의혹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료가 보관되는 위치에 24시간 CCTV를 운영하며, 동시에 복원 작업이 수행될 때, 변호사와 세월호 가족대책위가 반별로 돌아가며 2인 이상 작업을 계속 참관하였다. 포렌식 참관 업무는 황다연, 조대진 변호사가 전담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점차적으로 상근하는 몇몇 변호사들의 다양한 업무에의 투입이 가속화 되면서 7월부터는 세월호 특

11) 참고자료 4-2. 정보제공 요청문(네이버, 다음, 카카오톡)
12) 참고자료 4-3. 세월호 피해자 휴대전화 복구 협조(삼성, 엘지, 팬택)

위에 새로 합류한 연수변호사가 그 일을 분담하였다. 이는 개인이 소지한 간단한 전자기기였던 만큼 기술적인 애로사항이 많지 않아 빠르게 작업이 진행될 수 있었다.

(다) 세월호 내부 장비에 대한 복원작업 및 포렌식 감독

이와 별도로 6월, 세월호 침몰 2달여가 지난 이후 세월호에서 CCTV 영상이 기록된 DVR이 인양되면서, 포렌식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된다. 이에 대해서는 '4. 각종 증거보전신청 활동 부분'에서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다.

(2) 진상규명 실태

세월호 특위 진상조사단이 진행하였던 복원 및 포렌식 작업을 통하여 세월호 참사 피해자들의 70개 이상의 휴대전화 등이 복원되어 피해자 가족들에게 인도될 수 있었다. 그 안에는 침몰하고 있던 세월호의 내부 모습과 선내에서 대기 중이던 승객들의 모습을 촬영한 동영상 및 피해자들의 마지막 메시지가 담긴 영상들이 다수 발견되었다.

사고 발생 후 조타실 선원들이 선내 대기 방송을 믿고 선내 대기하던 세월호 승객들을 방치한 채 구조되던 시각에 배의 기울기가 얼마인지가 선원사건의 쟁점이 되던 시기 이를 가늠할 수 있게 하였던 것은 한 학생의 휴대전화에 복원된 영상의 커튼과 벽면의 각도였다. 선내 대기 방송이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한 학생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영상에서 어렴풋이 들리는 방송을 통하여 그 내용을 확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방송한 사람이 누구인지도 추정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되었다.

세월호 참사 피해자들이었던 어린 학생들의 마지막 메시지가 담긴 영상은 사회에 강한 파장을 불러왔으며 많은 시민들이 진상 규명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동참하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아이들의 노래, 절규 등의 그 모든 동영상들이 긴 시간이 소요된 복원 작업과 포렌식 작업을 통해서 다시 세상에 알려질 수 있었다. 그리고 그 목소리들은 사람들의 가슴에 울림을 남겼고 특별법 제정에 대한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촉매가 되었다.

(3) 문제점과 반성

(가) 과도한 비용청구

포렌식 작업의 경우 영상 및 음성 자료 등을 법원에 제출할 수 있는 형식으로 변환시킨다는 점에서 법률 지원에 있어서 필수적인 부분이었다. 그러나 넉넉하지 않은 예산에서 모든 비용을 지불하면서 포렌식 작업을 진행하는 것은 여러모로 쉽지 않은 과정이었다. 특히 가장 큰 부분은 비용이었는데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카기208 증거보전신청에서 세월호의 64개 CCTV의 영상저장장치(DVR)의 감정료가 80,641,000원이 청구되었다. 이러한 비용 청구는 향후 진상조사단 활동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증거보전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등 큰 타격을 주게 되었다.

특히 초기 한양대 김인성 교수와의 계약 당시, 프로보노 형태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거나 그 계약 비용에 있어서 보다 신중한 합의가 필요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3000만원의 초기 계약 사항에는 세월호 참사 피해자들의 개인물품에 대한 것으로만 한정되어 오히려 그 후에 더욱 중요한 자료가 발견되어 이를 복원, 포렌식하는 작업에 있어서 별도의 비용이 추가되

었고, 그 비용 역시 8000만원으로 세월호 특위 차원에서 해결할 수 없을 만큼이 청구되었다. 따라서 충분한 금전적 지원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다양한 프로보노 형태의 전문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모집하고 진행하여 등의 경제적인 효율성을 도모했어야 했다.

위비용에 대해서는 2015년 1월이 되어서야 소송구조신청을 정식으로 청구하였고,[13] 2015년 1월 23일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카구1001로 소송구조를 받을 수 있었다.[14] 자세한 부분은 '4. 각종 증거보전신청 활동 부분'에서 다루도록 하겠다.

(나) 변호사의 인력 부족

노트북 및 CCTV 저장장치에 대한 복원과 포렌식 작업에서 변호사 참관이 필요하였다. 동시에 세월호 참사 피해자들의 전자기기에 대한 복원과 포렌식 작업에서도 변호사의 참관이 요구되었다. 작업의 연속성을 고려하면 담당 변호사가 정해져서 반복적으로 그 일을 지속할 수 있게 조치하였어야 하나 그런 부분이 미흡하여 7월부터는 연수 변호사들이 투입되어 이 일을 진행해야 하였다. 그러나 CCTV도 설치되어 있으며, 보안이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세월호 가족대책위 차원에서도 참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변호사가 참관해야 하는 작업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 되었으나, 발생할 수도 있는 극단적인 만약의 사태를 대비하여 참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포렌식 범위의 한계

13) 참고자료 4-4. 증거보전 소송구조신청서
14) 참고자료 4-5. 증거보전 소송구조결정문

복원 및 포렌식 결과에 있어서도 휴대전화, 카메라 그리고 CCTV 등 전자 기기에 대한 복구만이 적극적으로 진행되었을 뿐, 세월호 참사 피해자들이 이용하던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한 세월호 참사 피해자들의 생전 사진과 영상같은 다양한 자료 확보에 대해서는 노력이 부족하였다. 따라서 이 경우 사고 발생 5개월 후인 9월까지도 세월호 특위가 해결하지 못하고, 별도의 시민단체, 로스쿨 학생 그리고 자원봉사자들의 개인적인 활동을 통해서 피해자 가족들은 자신의 가족들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 저장해 놓았던 생전 사진과 영상들을 받을 수 있었다.

(4) 앞으로의 전망

(가) 프로보노 형태의 계약 우선 방식

앞으로도 포렌식 등 전문적인 작업을 요하는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비용적인 부분에 있어서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외부 협력에 지출할 자금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었다면, 변호사들뿐만이 아니라 외부 지원에 대해서도 프로보노 형태로 지원을 받을 방법을 우선적으로 강구해야 한다. 이번 세월호 참사 피해자들과 관련한 일련의 복원과 포렌식 작업에 있어서 세월호 특위 차원에서는 초기 한양대 김인성 교수가 프로 보노의 형태로 합류하는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유상으로 계약하면서 3000만원에 비용이 지출되었고, 그 계약 내용 역시 세월호 참사 피해자들 개인 물품에 한정되는 것이어서 후에 발견된 청해진 해운 소유의 전자기기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계약을 해야 했다. 이런 일련의 과정에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 의해 8000만원의 비용으로 80,641,000원에 대한 보정명령이 내려졌다. 그러나 보정명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용을 조달하지 못하였으

나 담당 책임자가 명확하지 않아 보전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 장기간 유지되었다.

그러므로 우선적으로는 기술 지원에 대해서 최대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형태로 조력을 받도록 하되, 여의치 않아 비용이 청구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소송구조신청을 통해서 빠르게 보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여야 한다. 특히 정치적인 이슈로 변질되어 국민적 감정이 돌아선 다음에는 이에 대한 조력을 받는 것이 더욱 어려워 질 수 있기 때문에 초기에 빠르게 대처하여 비용을 절감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나) 가상드라이브에 저장된 자료에 대한 적극적 수집

휴대전화 및 개인 전자기기 그 자체의 복원과 포렌식 만큼 중요하게 취급되어야 하는 것이, 인터넷 망에 저장되어 있는 피해자들의 자료이다. 클라우드 서비스가 보편화되어 다양한 가상 드라이브 서비스를 통하여 사진, 동영상, 및 서류들을 저장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젊은 세대를 주된 피해자로 했던 세월호 참사의 경우는 특히 그러하다. 침몰 당시의 사진, 동영상 등이 자동으로 업데이트 되어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 가상드라이브에 저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는 점이 안타까우며, 차후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대형 사고의 경우 피해자들의 사고 당시 및 직후의 사진 및 동영상 자료가 중요한 증거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확보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각종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라. 국회의원실을 통한 자료 확보

(1) 활동내용

(가) 세월호 국정조사를 위한 자료 수집

6월 30일부터 7월 11일까지 기관보고를 받기로 예정되어, 국회 국정조사 특위가 구성되었으므로 이에 소속된 국회의원 의원실에서 각 기관에 자료를 요청하여 다량의 자료가 국회의원실들로 집중되고 있었던 시기였다.

세월호 국정조사 기관보고는 8일 간 무려 22개에 달하는 피조사기관에 대하여 실시될 예정이었다([표2-세월호 침몰사고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일정] 참조). 따라서 그에 관련된 자료는 방대했다.

[표3 - 세월호 침몰사고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일정]

일 자	보고대상 기관
6월 30일	안전행정부, 국방부, 전라남도, 진도군
7월 1일	해양수산부, 한국해운조합, 한국선급
7월 2일	해양경찰청
7월 4일	교육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경기도교육청, 안산시
7월 7일	방송통신위원회, KBS, MBC
7월 9일	법무부, 감사원, 경찰청
7월 10일	청와대(비서실, 안보실), 국무총리실, 국가정보원
7월 11일	종합 질의

따라서 세월호 특위 변호사들만으로 현장에서 모든 정보를 독자적으로 취득하는 것에는 무리가 있었기 때문에 자료를 공식, 비공식적으로 입수하였다.

(나) 자료의 저장 및 공유

그 결과 국회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간담회 일정부터 시작해서 각 기관별로 국회의원실에 보고된 자료들을 그대로 파악할 수 있었으며, 세월호 특위에 참여하는 모든 변호사가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가상 드라이브에 저장하였다.

위와 같이 입수한 자료는 원자료(Raw data)에 불과하였기 때문에 그 중에서 진상조사와 직접적으로 연계되고, 자료로 정리할 필요성이 있는 자료들을 추려서 저장할 필요가 있었다. 따라서 국회의원실을 통해 입수된 자료를 개괄적으로 분류하여 모든 변호사들이 용이하게 열람 가능한 형태로 자료분류체계를 형성하는 작업을 진행하려 하였다.

이 자료들은 국회라는 폴더를 따로 만든 뒤에 기관별로 분류하여 저장하였다. 또한 의원실 단위로 제공된 자료들의 경우 내용을 전부 확인하고 분류하기 어려움이 있어서 동일하게 국회 폴더에 의원 이름별로 폴더를 생성하여 저장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분류는 의원 이름만으로 내용을 파악할 수 없다는 점에서 자료를 어느 정도 정리해서 보관한다는 의미 이외에 변호사들이 본 자료를 검색하거나 활용하는 데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못했다.

(다) 자료의 재분류 및 인덱스 작업

따라서 자료를 검색하는데 용이하게 만들기 위해서 8월 초 세월호 진상조사단(부단장)의 지시로 연수 변호사들이 자료의 분류 체계를 만들게 되었다. 웹하드에 저장되어있는 파일들의 파일명, 그리고 저장된 폴더명, 그 자료가 관련된 기관/단체,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자료가 연관된 팀과 단

이 어디인지를 적어서 인덱스 자료를 만들었다. 이 과정에서 중복자료를 체크하여 불필요한 자료를 정리할 수 있었다. 그와 더불어 본 서류에는 별첨자료에 내용을 표기하고 그 자체에는 내용이 없는 자료들 역시 별도 표시해두었다.

⑵ 진상규명 활동결과

(가) 자료의 정리

국회의원실을 통해서 확보된 자료들은 가상 드라이브에 다 저장되지 못할 만큼 방대한 양이었다. 그리고 정부관련 자료들의 경우 변호사가 개별적으로 수집하는 경우 확보하기 어려운 수준의 것도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 세월호 참사 당시 해양경찰과 연락을 취했던 음성파일을 비롯하여, 해양경찰에서 실질적으로 파견한 구조인력과 장비들, 세월호 참사 피해자 및 피해자 가족들에 대한 경찰력 투입 여부 등을 비롯하여 다양한 정보가 담긴 자료였다.

이러한 자료는 여러 차례의 자료정리를 거쳐서 가상드라이브인 웹하드(www.webhard.co.kr)에 정리되었다. 세월호참사특위 폴더 안 법률상담·진상조사단 자료에 드롭박스 자료 폴더를 따로 생성하였다. 그리고 세부적으로 기관 업무보고 자료 폴더, 받은자료(기관별) 폴더, 야당회의자료 폴더, 예비조사위원 자료 폴더, 자료공유(파일명_의원실명) 폴더, 자료요구목록 폴더, 제보, 유가족, 시민사회 폴더, 행정·사무(문서양식, 연락처, 캘린더) 폴더, 현장조사사진 폴더로 분류하였다.

(나) 연수 변호사들의 인덱스 작업 완성

2014년 8월 연수 변호사들이 웹하드에 저장되어 있는 모든 자료에 대한 인덱스를 만드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그러나 인덱스 작업이 완료되었다고 하더라도 인덱스 자체에 그 자료의 내용이 표시되지 않는 만큼 그에 대한 활용도는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후에 연수 변호사들에 의해 웹하드에 대한 자료 분류는 전부 재정비되었다. 내용이 없는 자료나 중복 자료를 삭제하고 유의미한 자료들을 현장지원, 형사재판지원, 법률상담·진상조사, 총괄지원 등 각 분과별로 정리하여 분류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분류 역시 문헌정보학의 전문가의 조력 없이 임시방편적인 자료 분류라 할 것이어서 기존의 불필요한 자료들을 정리하고, 자료에 대한 접근성을 보다 높이는 정도에 그쳤다.

⑶ 문제점과 반성

자료분류체계의 정립에 있어서 근본적인 한계가 있었다. 초기에 자료분류체계를 제대로 확립하지 않은 결과 후에 들어오는 자료들에 대해서는 또 다른 자료분류체계를 기획할 수밖에 없었다. 초기에 진술청취카드의 자료분류체계로 갖춰놓은 반별, 가족별 폴더에 기해서 자료를 정리하는 것은 국회의원실을 통해서 각 기관별로 자료가 대량으로 유입되는 경우 이를 포괄하여 정리할 수 있는 효율적인 디렉터리 체계가 아니었다. 따라서 모든 자료들이 통일성을 가지고 유기적으로 정리되는 것이 아니라 자료가 수집된 시기별로 그 자료분류체계가 달라질 수밖에 없었다.

그 결과 어떤 자료가 어느 카테고리에 분류되어 있는지 찾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어떤 이유로 그 카테고리에 분류되어 있는지에 대한 인과관계 역시 발견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후에 자료를 정리하여 활용이 가능하게 분류하기는 하였으나 그 시간이

자료를 수집한 후 3개월 이상 지체된 상태에서 진행되었기 때문에 자료를 시의 적절하게 사용할 수 없었다. 또한 그 자료 정리 역시 임시방편적인 것에 불과하였기 때문에 향후 다시 한 번 체계적인 자료정리가 필요하다.

(4) 앞으로의 전망

(가) 자료분류 체계 초기 확립

자료를 수집하는 작업만큼 중요한 것은 자료의 분류체계를 초기에 확립하고 초기에 수립한 분류 체계가 그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 지속적으로 자료분류체계를 수정해나가는 작업을 함께 진행하는 것이다. 따라서 문헌 정보학의 전문가가 초기에 함께 합류하여 조력을 구하는 것이 향후 활동에 도움이 될 것이다.

유용한 자료가 있다고 하더라도 방대한 양의 자료 속에서 필요한 자료를 찾는 것이 용이하지 않은 경우 활용조차 되지 못하고 그대로 사장되는 경우 진상규명은 보다 요원해진다. 따라서 다양한 자료를 단순히 수집하여 보관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료에서 유의미한 부분을 발췌하여 공유하고 이를 분석하여 법적으로 의미 있는 2차 자료를 생성해내고 이를 사회에 제공하는 것이 변호사로서 진상조사에서 할 수 있는 가장 큰 역할이다. 따라서 이러한 역할에 가장 근본이 되는 자료의 수집과 정리는 동일한 중요도를 가지나 이번 세월호 특위 활동에서는 자료의 수집 자체에 편중되었고 그 정리와 분석에 대해서는 미흡했다.

(나) 자료의 요약정리와 공유

자료의 분류 체계가 확립된 뒤에는 각 원자료를 변호사단 전원이 정독할 수 없는 만큼 자료가 수집될 때마다 정기적으로 각 자료를 요약하여 인덱스 형태로 제공하여 자료를 공유해야 한다. 자료가 방대해 질수록 정보의 공유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는다면 팀 내에서의 정보의 비대칭이 심화된다. 그럴수록 정보 수준에 따라서 활동하는 그룹이 갈라지기 마련이며 끝내 한 팀으로서 통일된 활동이 불가능하다. 또한 정보가 적은 변호사들은 중복적으로 자료조사를 하거나, 쟁점을 제대로 쫓아가지 못하는 등 활동에서 효율성이 떨어진다. 따라서 정보를 요약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인원이 필요하다.

(다) 리더십

진상조사와 같이 장기적인 활동이 활동 초기부터 예상되는 경우에는, 전체적인 관점에서 상황을 조망하여 각 팀원들에게 역할을 부여하고 이를 통제하며 팀 전체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는 리더십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변호사들은 단독자로서 개인 책임으로 활동하는 것에 익숙하기 때문에 다른 변호사에 대해서 지시를 하고 다른 변호사에 대해 책임을 부과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아서 이러한 지휘체계가 확고히 뿌리 내리지 못하였다. 그 결과 진상조사단의 변호사들은 각자의 활동에 몰두하는 경향을 보이게 되었다. 그러므로 초기 활동을 시작할 때부터 컨트롤타워로 기능하는 담당자가 지정되고 그 책임과 권한의 범위가 명백하게 규정되어야 한다.

(라) 중간보고 자료 발표

세월호 특위가 발족한 뒤에 6개월이 넘는 활동기간 동에 세월호 진상규명에 관련한 자료가 단 한 번도 발간되지 않았다. 대한변협의 입장 자체에 대해서 야당의 그것과 동일하게 취급하고, 정치적인 국면으로 세월호 참사 및 특별법 제정에 관련하여 여론의 질타가 이어지면서 자료의 발간 자체에 쏟을 여력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진상조사에 관련한 중간보고서가 2회, 3회 발간되어 세월호 특위에서 세월호 가족대책위와 함께 밝혀낸 진상 조사의 결과물이 국민들에게 알려질 수 있었다면 오히려 이런 여론 호도에서 자유로울 수 있었을 지도 모른다.

세월호 특위가 목표로 하였던 것은 세월호 참사의 피해자 및 피해자 가족들에 대한 인도적인 차원에서의 법률 지원과 사회적 부조리의 총체적 결합의 결과물로 발생한 세월호 침몰의 원인규명과 사회적의 암적인 부패에 대해 법적으로 가능한 모든 대응을 하는 것이었다. 세월호 가족대책위의 안전 사회에 대한 염원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는 것이 법률가로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노블리스 오블리제(Noblesse Oblige)였다. 그런 역할과 취지를 국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진상조사 보고서를 발행하였다면 언론의 악의적인 보도로 인하여 변호사들의 순수한 열정이 호도되는 결과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기존에 세월호 특위가 세월호 가족대책위를 위하여 지원한 업적을 비롯하여 향후 수행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보고서를 발행하며 홍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마. 시민단체와의 연계

(1) 활동내용

(가) 시민단체와의 연대 필요성

세월호 특위의 경우 유래 없는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 법률적 지원을 비롯하여 전 방위적인 피해자 지원을 위해서 구성된 역사상 최대 인원의 법률지원단이었다. 세월호 사건에는 이미 많은 시민단체를 비롯한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세월호 가족대책위와 입법안을 논의하고, 각종 현장 지원을 비롯하여 다양한 활동을 함께 해내가기 위해서는 이런 경험이 풍부한 시민단체와의 협업이 필수적이었다.

따라서 기존에 각종 시민단체들과 다양한 사회적 이슈에 관련하여 함께 했던 민변에서 활발하게 활동을 했던 변호사들을 통해서 의견을 주고받으며 협업을 해나가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다양한 시민단체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하여 각 단체가 가진 견해에 입각하여 다양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세월호 가족대책위를 지원하기 위해서 합류하게 되면서 통일된 창구가 없어, 세월호 특위가 세월호 가족대책위와 함께 입법안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고 필요한 법적 지원을 하기 위한 활동을 하면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었다.

(나) 연계의 형태

임시적으로 5월 초 '세월호 참사 대응 각계 원탁회의'가 구성되었으나 당 회의만으로는 모든 조직을 아우를 수가 없어, 약 800개의 시민단체가 함께 운영해나갈 수 있도록 조직을 재구성하고 정비하여, 2014년 5월 22일 범시민사회단체 연대기구인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이하 "세월호 국민대책회의"라 함)가 공식 출범하였다. 따라서 세월호 국민대책회의라는 통일된 창구를 통해서 세월호 특위의 활동 및 입장 등을 전

달하되, 세월호 가족대책위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법적 쟁점에 대해서만 필요한 경우 법적 지원을 하겠다는 입장을 취하였다.

(다) 소결

과거 오랜 기간 동안 사회적 이슈의 최전방에서 밀접하게 조직화 되어 활동하던 시민단체는 언론의 부적절한 보도 행태, 사회적 이슈가 정치적으로 이용되어 매도되는 과정들을 반복적으로 겪어보며 시민들과 연대하여 활동하였던 만큼, 세월호 가족대책위 입장에서는 조언과 협력이 필요한 존재였다.

따라서 세월호 가족대책위에 법률적 지원을 하는 세월호 특위는 세월호 가족대책위를 교집합으로 하여 시민단체와 연대하게 되었으며 그 관계에서 특히 진상조사단은 시민들에 의한 제보를 비롯하여 다양한 정보의 취합이 중요한 시점이었기 때문에 다른 팀보다 적극적으로 시민단체와 연계하여 각종 작업을 진행하였다.

(2) 진상규명의 실태

(가) 녹취록 작성

국회의원실을 통해서 해양수산부 및 제주VTS, 진도VTS를 비롯하여 세월호 참사 당시 세월호를 비롯한 주변 선박들의 다양한 음성 교신 내역이 음성 파일 형태로 제공되었다. 전달받은 음성파일에 대해서 녹취록을 만드는 것에 있어서 급박하게 작업이 필요한 부분들이 존재하였다.

이 때 뉴스타파를 비롯한 몇 대안언론에서 녹취록을 만드는데 무상으로

도움을 주고 싶다는 의사를 진상조사단 소속 변호사를 통하여 전달하였고, 각 녹취록의 내용에 대하여 비밀 보장 등을 조건으로 녹취록 제작을 의뢰하였다. 제한된 예산 안에서 다양한 작업을 수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시민단체들의 도움은 큰 역할을 해주었다.

(나) AIS 분석 및 항적로 재현

변호사들 역시 선박의 운항 및 해양 관련한 전문 영역에 있어서는 전문가가 아니었기 때문에 선박의 항적로를 분석하거나, 운항에 관련한 용어를 이해함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변호사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부분이 있을 때마다 세세한 부분까지 매번 전문가를 섭외하여 의견을 듣고 분석을 요청할 만한 금전적, 시간적 여유가 진상조사단에는 없었다. 이 과정에서 대안언론을 비롯한 여러 시민단체에서 별도로 전문가를 섭외하거나 이 분야를 연구하여 진상조사를 진행시킴으로써 진상조사단의 변호사들만으로는 불가능했을 다양한 상상력을 동원한 세월호 참사 원인에 대한 가능성들을 독자적으로 검토하였다. 그리고 그러한 가능성들을 진상조사단 변호사들이 전달받고 기존에 가지고 있던 자료들과 종합하여 의견을 나타내면서 의사소통을 지속하며 진상조사를 하는데 부분적으로 연대하였다.

한 예로 한겨레가 기획하는 대안언론 방송인 ‘파파이스’에서 한 영화감독은 독자적으로 AIS 항적 분석을 분석하며 세월호 참사 원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가능성을 제시했다. 변호사들은 이러한 의혹제기에 관련된 보고서를 전달받아 그동안 축적된 정보와 통합하여 그 타당성을 파악하고 주변의 전문가들에게 간단한 자문을 구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다양한 언론에서 제공되는 분석이 진실인지 여부와는 별도로 다각화된 시각으로 문

제에 접근하며 그러한 가능성들을 독자적으로 전문가에게 검증받는 등의 활동을 지속하면서 진상조사단의 변호사들이 해야 할 업무들을 분담하여 주었다는 점에서 연대하여 작업을 진행하는 이들과 함께 하였다는데 의의가 있었다.

(3) 문제점과 반성

(가) 세월호 가족대책위의 부담감

초기 세월호 가족대책위는 시민단체들이 결합하여 그들을 돕고자 하였을 때에 이를 부담스러워 했었다. 한국 사회에서 시민단체라는 존재가 가지는 정치적인 편견으로 인하여 세월호 참사 역시 정치적 이슈로 변질되지 않을까하는 우려 때문 이었다. 그러나 시민단체와의 연계와 무관하게라도 세월호 참사는 정부의 부실한 대응과 미비한 재난 대응 체계로 인해 피해가 확대된 만큼 정부는 사회적 지탄은 피할 수 없었다. 이 모든 비판은 현정부에 부담감으로 작용하는 것이었으므로 자연히 정치적인 논리가 개입될 수밖에 없었다. 대한변협은 이를 예측하고, 시민단체의 정치적 색채에 대한 편견에 피해자 및 피해자 가족들이 부담감을 느끼지 않을 수 있도록 시민단체와 결합 사이에서 완충지대로서 역할을 수행했으나, 대한변협 역시 그러한 부담감에서 자유롭지 못했기 때문에 적극 개입하지 못하고 말았다.

(나) 여론에 의한 색깔론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국민적인 정서 및 정부의 입장은 초기에 비해 많이

변화하였다. 세월호 참사 피해자들에 대한 국민의 안타까운 마음과 진상조사에 대한 국민의 성원은 특별법 제정이 정치적 논리에 의해 변질되는 등의 과정을 거치며 저하되었다. 그리고 세월호 가족대책위에 대해서는 야당과 결부된 정치 세력으로서의 이미지가 덧붙여졌고, 심지어는 종북이라는 단어마저 세월호에 대한 수사(修辭)로 등장하게 되었다. 이러한 가운데 처음에는 정치적 성향의 여부와는 무관하게 피해자 가족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만으로 함께 모였던 변호사들이 정치적인 편 가르기에 의해서 업무에 집중할 수 없는 상황들이 전개되었다.

따라서 시민단체와 협력 체제를 유지하고 함께 활동하는 것에 대해 심리적 부담감을 느끼게 되기도 하였으며, 함께 일하는 가운데 시민단체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도울 수 있는 간단한 법률 상담 내지 법적 조언과 같은 사소한 일들에 대해서도 자기 검열을 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나아가 보안상의 이유로 자료의 공유에 있어서도 시민단체들과 함께 세월호 참사 원인에 대한 풍부한 자료를 분석하는 자리가 마련될 수 없었다.

진상조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시민들의 자발적인 제보, 그리고 시민단체들이 분석하여 제작한 2차 자료는 필수적인 것들이었다. 그러나 위에 설명한 바와 같이 정치적인 색이 입혀진 채 언론의 질타를 받는 상황에서 시민단체와 자료를 공유하며 적극적으로 함께 진상조사를 진행하는 것이 어려워졌다. 만약 함께 자료를 공유하고 그 자료를 분석한 인력을 모아 함께 논의하였다면 진상규명은 보다 빠르게 진행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시민단체와 세월호 특위가 각각 자신의 단체 내부에서 진상조사를 진행하면서 정보의 공유 및 피드백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 민변과의 공조체제 형성 실패

상황이 이러하다보니, 과거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해서 시민단체와 적극적으로 연대하고 자료를 공유하며 작업을 진행시켜 나가던 민변 변호사들이 진상조사에서는 두각을 나타내주어야 했다. 시민단체 및 다양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며 적극적으로 일을 진행시켜 나가는데 노하우가 있는 민변이 시민단체와의 업무 조율을 담당하며 함께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는 토양을 갖추는 노력을 해주길 대한변협은 기대했다.

그러나 민변 변호사들이 대한변협으로 대표 창구를 통일하여 세월호 가족대책위를 지원하는 형태에 대해서 불편해했다. 따라서 민변과 대한변협 간의 업무공조 및 정보공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밖에 없었다. 그 결과 대한변협이 민변 소속 변호사들에게 기대하였던 시민단체와의 유연한 연대관계는 현실화되지 못하고 말았다. 오히려 민변의 독자적인 활동으로 인하여 시민단체들이 마음의 상처를 입고, 세월호 가족대책위 역시 만족할만한 성과를 얻지 못하는 결과만 남게 되었다.

(4) 앞으로의 전망

(가) 연계 범위와 방식에 대한 고민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진상조사에 관련하여 자료를 분석하는 것은 소수의 변호사만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방대한 작업이었다. 나아가 해양 사고에 관한 전문지식이 부재한 가운데에서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만으로 세월호 참사의 원인을 비롯한 초기 부적절한 구조 조치에 대해 입증하는 것은 많은 난관에 봉착했다. 따라서 해양 사고 관련 전문가들을 적극적으로 섭외하여 함께 정보를 공유하고 분석할 수 있는 시민단체와 공조 체계를 이루었어야 한다. 그러나 세월호 특위의 활동의 경우 정치적인 논란으로

세월호 참사를 호도하는 세태에 매몰되어 시민단체와 협조 자체를 부담스럽게 생각하며, 세월호 가족대책위에 대한 지원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밀접하게 연계하여 활동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우선 시민단체와의 창구를 공식적으로 열어놓고 대화를 유지하는 방안을 고려하여야 한다. 변호사 개개인이 자신만의 창구를 통해서 개별적으로 연락을 취하고 자료를 얻는 경우, 그 외의 변호사들이 해당 자료를 공유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따라서 자료의 공유와 원자료를 통한 2차 자료의 생성 등의 부분에 있어서는 공식적인 창구로 소통하며 작업을 진행해야 할 것이다. 세월호 참사와 같이 많은 시민단체가 합류하는 대형 참사의 경우 완벽하게 작업을 분리하여 진행할 수 없고, 시민단체와의 연계에 대해 부담감을 느끼며 이를 회피할수록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공조관계가 형성될 뿐이므로, 처음부터 공식적인 협의체로서 함께 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함께 위원회를 구성하는 등의 활동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시민 진상조사위원회에 변호사를 파견하는 형태로라도 연대의 고리를 유지하며, 시민단체 내부의 정보가 자연스럽게 변호사단에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 이를 통한 각종 자료들이 신속하게 형사재판, 세월호 국정조사, 국정감사 등 변호사단의 역할이 중요한 계기들에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나) 자료 공유에 대한 범위 확정

시민단체와 연계하여 작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자료의 공유에 대한 기본원칙을 정립하는 것도 중요하다. 피해자 지원에 있어서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경우가 다반사인데 이것이 시민단체에 유출되는 경우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점 및 언론 등 외부에 유출되어 자극적으로

보도되는 경우 등이 문제될 수 있다. 따라서 정보를 보관하는 형태에 있어서도 시민단체와 공유하는 정보에 있어서는 개인정보에 관하여 철저히 익명처리를 하고, 그것이 불가능한 자료의 경우 그 배포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자료를 공유하는 부분에 대한 원칙을 제대로 확립해야만 변호사들이 제공을 거절했던 자료가 다른 변호사에 의해서는 전달이 되는 등의 문제를 방지할 수 있다.

3. 자료 취합 활동

가. 세월호 침몰사고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지원 활동

(1) 활동내용

2014년 6월 30일부터 세월호 국정조사가 시작되었다. 6월 30일부터 7월 11일까지는 8차에 걸친 기관보고가 진행되었는데, 무려 22개에 달하는 피조사기관들[15]이 기관보고에 참여하여 사고 당시 각 기관의 대응실태 등에 대해 보고하였으며, 그 결과 무려 800페이지 이상에 달하는 임시회의록이 만들어졌다. 이처럼 세월호 국정조사 기관보고 과정에서는 방대한 정보들이 쏟아져 나왔으며, 그 정보들 중에는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밝히는 데 핵심적인 정보들도 다수 존재하였다. 이에 따라 세월호 특위 내에서는 세월호 국정조사 기관보고 과정에서 밝혀진 핵심 정보들을 정리하고 분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아지게 되었다.

15) 국방부, 안전행정부, 전라남도, 전라남도 진도군, 해양수산부, 한국해운조합, 한국선급, 해양경찰청, 교육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경기도교육청, 경기도 안산시, 방송통신위원회, 한국방송공사, 법무부, 감사원, 경찰청,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국무총리실, 국가정보원 이상 총 23개의 기관

(2) 진상규명의 실태

가장 큰 성과는 세월호 국정조사 기관보고에서 밝혀진 핵심 정보들을 정리하였다는 점, 그리고 그를 기반으로 후속적인 진상규명이 필요한 명확하게 드러났다는 점이다.

(3) 문제점과 반성

세월호 국정조사 기관보고에 대한 자료조사 및 모니터링은 청문회 준비 작업을 하려던 것이었다. 세월호 국정조사 기관보고에 대해서는 '규명되어야 할 과제'로 선별하고 , 미리 청문회 출석 증인들에 대한 질문사항들을 작성하여 야당 국회의원들에게 전달하는 활동을 계획하였다. 하지만 청문회 증인 채택 문제를 둘러싼 여야 간의 힘겨루기로 말미암아, 청문회는 시작조차 해보지 못한 채 세월호 국정조사는 2014년 8월 30일 초라하게 막을 내렸다.

나. 진상규명 보고서 작성 활동

(1) 활동내용

(가) 진상규명 보고서 작성의 필요성 대두

세월호 참사 이후 사고의 진상규명과 관련한 자료들이 다양한 단체에 의해 꾸준히 수집되었다. ①세월호 가족대책위, ②세월호 특위, ③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법률지원 특위(이하 '민

변 세월호 특위’라 함), ④ 각종 시민단체, ⑤각종 언론사 등이 바로 자료 수집의 주체들이다. 이 중 세월호 가족대책위의 경우에는 피해자 및 피해자 가족들의 증언을 많이 확보하고 있었으며, 세월호 특위와 민변 세월호 특위는 각종 증거보전신청을 통해 얻어낸 자료 및 개별적으로 제작하고 수집한 자료들을 다수 확보하고 있었고, 각종 시민단체와 언론사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인터뷰 및 현장 스케치 등의 자료들을 보유하고 있었다. 하지만 해당 자료들은 각 단체들을 통해 수집되기만 하였을 뿐, 그와 같은 자료들을 서로 공유하며 총괄적으로 정리・분석하는 작업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그에 따라 각 단체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들을 모두 종합하여 정리・분석하는 작업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었다.

(나) 진상규명 보고서 작성활동의 개시

그 시기쯤 3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4명의 변호사들이 세월호 특위 소속의 연수 변호사로서 활동을 시작하였다. 그들은 세월호 특위의 각 분과에서 다양하게 활동을 하며 각 분과의 자료들에 모두 손쉽게 접근할 수 있었고, 피해자 가족들과의 유대관계를 형성하며 세월호 가족대책위가 보유하고 있는 자료들에도 역시 용이하게 접근하였다. 세월호 가족대책위가 보유하고 있던 피해자 및 피해자 가족들의 증언은 사고 당시의 상황을 정확하게 분석하기 위해 필수적인 자료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가족들이 외부에 노출되는 것을 극히 꺼려했기 때문에 피해자 가족들과 유대관계가 있는 사람 외에는 접근이 불가능한 것이었다. 이와 같은 연수 변호사들의 강점을 이용하여, 세월호 특위에서는 각 단체에 산재되어 있는 자료들을 통합하여 정리・분석하는 진상규명 보고서 작성 활동을 그들에게 맡기게 되었다. 이 활동에는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 1명도 함께하게 되었다.

(다) 진상규명 보고서 작성 활동의 경과

진상규명 보고서 작성 활동은 세월호 특위 진상조사단 소속의 박주민 변호사가 총괄하여 지휘하였다. 7월 29일, 진상규명 보고서 작성을 위한 1차 회의가 열렸다. 박주민 변호사는 보고서를 크게 5개의 파트로 나누어서 작성할 것을 제안하였고, 4명의 연수 변호사들은 각각의 역할분담을 하였다. 제1장은 사고원인 파트, 제2장은 초동대처 파트, 제3장은 수사 파트, 제4장은 언론 파트, 제5장은 정부대응 파트로 나뉘어졌다. 2차 회의에서는 각 파트에 대한 초안을 마련하였으며, 3차 회의와 4차 회의를 통해서는 부족한 부분들을 보완하고 새로 수집된 자료들을 계속해서 업데이트 해나가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약 2달 동안 집필진들은 각종 증거보전절차를 통해 밝혀진 자료들, 세월호 국정조사과정에서 제출된 자료들, 피해자 및 피해자 가족들의 증언들, 선원사건에서 밝혀진 자료들, 검찰의 수사보고서 및 감사원의 감사보고서 등을 모두 망라한 보고서를 작성하였으며, 2015년 2월 현재에는 각 파트를 모두 유기적으로 통합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 진상규명의 실태

진상규명 보고서를 작성함으로써 얻은 성과 중 하나는 바로 이미 수집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활용되지 못한 자료들을 다수 발굴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그 대표적인 예가 세월호 가족대책위가 보유하고 있던 피해자 및 피해자 가족들의 증언이다. 진상규명 보고서 작성을 담당한 변호사들은 피해자 및 피해자 가족들의 증언이 담긴 영상을 경기도 안산에 위치한 경기도미술관 내의 세월호 가족대책위 자료실에서 직접 확인하는 작업

을 함으로써, 세월호 참사 초기의 선내 상황 및 해양경찰의 대응과 관련된 자료들을 다수 얻을 수 있었다. 이는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피해자 가족들과의 유대 관계가 형성되지 않았다면 활용할 수 없었던 자료들이었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하여 쏟아지던 여러 의혹들을 사실에 기반하여 정리할 수 있었던 것 역시 진상규명 보고서 작성의 또 다른 성과이다. 세월호 참사 이후 각종 의혹들이 제기되었는데, 그 중에는 사실 여부도 제대로 확인되지 않은 자극적인 내용을 기반으로 하여 무분별하게 확대·재생산되어지는 의혹들도 다수 존재하였다. 진상규명 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의혹이 정리된 대표적인 예들을 소개하도록 하겠다.

① 해양경찰이 수난구호명령을 내리지 않았다는 의혹을 정리한 성과가 있었다. 항간에는 해양경찰이 바다에서 조난된 사람, 선박, 항공기 등의 수색·구조·구난·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민간에 긴급하게 요청할 수 있는 법적권한인 수난구호명령을 내리는 대신, 선박을 인양하기 위한 구난명령만을 수차례 내렸다는 의혹이 돌고 있었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는 달랐다. 세월호 국정조사 기관보고에서 이미 수집된 자료들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해양경찰이 4월 19일 산업잠수기능사 자격을 갖춘 개인에게 수난구호명령을 내린 문서를 포함하여, 다양한 개인 및 단체들에게 수난구호명령을 내린 사실이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② 세월호 참사 당시 '통영함'이 투입되지 않은 것에 대한 사실관계 등을 정리할 수 있었다. 세간에는 해군참모총장이 '통영함'의 구조 참가에 관한 합의각서에 서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통영함'이 투입되지 못한 데에는 해군참모총장보다 지위가 높은 누군가의 지시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등의 의혹들이 떠돌고 있었다. 그렇지만 '통영함'과 관련한

다양한 자료들을 정리·분석한 결과 그와 같은 의혹은 사실과는 달랐고, 오히려 그 이면에는 다른 문제가 도사리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일반적으로 함정은 전력화 단계까지 마쳐져야 실제 작전에 투입될 수 있는데, 세월호 참사 당시 '통영함'은 전력화 단계는커녕 아직 해군에 인도조차 되지 않은 상태에 있었던 사실을 자료 정리 과정에서 알 수 있었다. 오히려 일부 언론에서는 2012년 9월에 진수식을 가진 '통영함'이 세월호 참사 당시까지 전력화 단계에 미치지 못한 데에는 방위사업청이 관급장비를 구매할 때의 몇 가지 관행들이 문제가 됐었던 것이 아니냐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었고, 이후 방위사업비리 합동수사단의 수사에 의해 그와 같은 문제 제기가 사실임이 드러났다. 방위사업청 소속 황모 대령과 최 모 중령이 지난 2011년 '통영함'과 '소해함'에 장비를 납품한 미국 방위산업체의 대표로부터 각 1000만원, 3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가 포착된 것이다. 이처럼 진상규명 보고서 작성 활동을 통해 기존의 의혹을 해소하였을 뿐만 아니라, 진상조사의 칼날이 향해야 하는 부분이 어디인지를 다시 점검할 수 있었다.

⑶ 문제점과 반성

진상규명 보고서 작성 활동을 하며 가장 아쉬움이 많이 남는 부분은 제1장 사고원인 파트라고 할 수 있다. 아직 세월호 참사의 원인과 관련하여서 확실하게 의혹을 해소할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자료들이 제공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예로, 세월호 참사의 원인을 가장 직접적으로 밝혀낼 수 있는 세월호 선체 자체에 대한 조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조사를 실시하기 위해 세월호를 인양할 것인지 여부조차 2015년 2월 현재에 이르기까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또한 다양한 의혹들을 해소하기 위한 자료를 관련 기관에서 제공해주지 않는 문제 역시 존재하였다. 예를 들어 세월호와 국가정보원의 관계에 대한 의혹 부분을 작성하는 데 있어서 국가정보원과 관련된 다양한 자료들이 필요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자료들에는 접근조차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이에 대해서는 이어지는 4. 각종 증거보전신청 활동 부분에서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다. 진상규명 보고서 작성에 활용된 자료들의 대부분은 세월호 국정조사 기관보고 당시에 제출되었던 자료들에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한계는 예정되어 있던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4) 앞으로의 전망

2015년 2월 중으로 각 파트를 모두 유기적으로 통합하는 작업이 마무리되면, 세월호 특위의 진상규명 보고서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의혹들을 모두 정리하는 의미를 가진 자료로서 출간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지금까지 일반에 알려진 의혹들 중 상당 부분이 해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세월호 특위의 진상규명 보고서는 2014년 11월 7일 국회를 통과하여 2014년 11월 19일 제정된 특별법에 의해 구성되는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이라 함)로 전달되어,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가 진상조사활동을 하는 데에 있어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4. 각종 증거보전신청 활동

가. 활동내용

(1) 증거보전신청을 통한 자료 획득의 필요성

세월호 특위 진상조사단은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조사하기 위해 필수적인 몇몇 증거들이 관련 기관들에 의해 임의로 제출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판단을 하였다. 진상조사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증거들이 대부분 세월호 참사에 일정한 책임이 있다는 질타를 받고 있는 정부기관, 예를 들어 해양경찰, 해양수산부 등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인 경우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이다. 그에 따라 진상조사단은 피해자 가족들에게 정부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들을 얻을 수 있는 법적인 절차를 설명해주고, 그와 같은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핵심적인 도움을 주기로 결정하였다. 그것은 바로 세월호 가족대책위 차원에서 국가배상청구에 기한 증거보전신청을 하는 방법이었고, 그를 통해 진상조사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 거의 모든 증거들을 발굴해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성과를 얻었다.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세월호 특위 진상조사단장은 “국가가 세월호 사고와 관련해 책임을 회피하고 방기하려는 부분을 밝혀내기 위해 증거보전신청을 하고 있으며, 이러한 자료들이 향후 세월호 사고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 중요한 증거로 쓰이길 바란다”고 하며, 세월호 특위가 진행하는 증거보전신청의 의미를 설파하기도 하였다.

(2) 세월호 특위의 증거보전신청 활동 개요

세월호 특위는 세월호 가족대책위가 세월호 참사의 원인을 밝히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증거들을 찾아낼 수 있도록 법적 자문을 해주었다. 그는 바로 국가배상청구에 기하여 증거보전신청을 하는 방법이었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원인에 대한 국가의 과실이 충분히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

었기 때문에, 세월호 특위는 세월호 가족대책위 측이 국가를 상대로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것에 기하여, 민사소송법 제375조에 근거한 증거보전신청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민사소송법 제375조는 “법원은 미리 증거조사를 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할 사정이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이 장의 규정에 따라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에 대한 어느 정도의 과실이 의심되고 있던 국가 소속의 각종 기관들이 주요 증거들을 주로 보관하고 있었기 때문에 “미리 증거조사를 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 되는 것은 어렵지 않은 일이었으며, 특히 대부분의 자료들을 정해진 기록보존기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해당 자료를 보전해야 하는 필요성은 넉넉히 인정되는 바였다.

세월호 특위에서 진행한 증거보전신청은 총 12건에 달한다. 그 중 1건(제주지방법원 2014카기1013)은 취하되었으며, 1건(제주지방법원 2014카기1015)은 2014년 7월 11일 이후 사건이 진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국가정보원에 대한 증거보전신청 및 해군에 대한 증거보전신청은 사건이 잠정적으로 정지된 상태이다. 결과적으로 세월호 특위 진상조사단은 8건의 증거보전신청을 통해 세월호 참사의 원인을 밝히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증거들을 찾아낼 수 있었다.

[표4 - 진상조사사단이 진행한 증거보전신청 목록]

사건번호	대상 기관	대상 목적물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4카기502	진도VTS	레이더 영상 등
제주지방법원 2014카기1012	제주VTS	레이더 영상 등
인천지방법원 2014카기10124	해양경찰	사고 당시 동영상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카기223	전남도청	사고 당시 동영상
대전지방법원 2014카기10055	해양수산부	사고 당시 상황보고서
대전지방법원 2014카기10078	해양수산부	세월호 증개축 관련 자료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카기224	대한민국	사고 당시 동영상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카기208	대한민국	세월호 노트북, DVR 등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4카기269	해군	KNTDS 자료 등
대전지방법원 2014카기	국가정보원	세월호 보안측정 자료 등

이 중 특히 세월호 참사의 원인을 밝히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5개의 증거보전신청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겠다. 진도VTS와 제주VTS를 대상으로 한 증거보전신청, 해양경찰청을 대상으로 한 증거보전신청, 전남도청을 대상으로 한 증거보전신청, 세월호 DVR 및 노트북에 대한 증거보전신청이 바로 그것이다.

나. 진상규명의 실태

(1) 진도VTS[16]와 제주VTS[17]를 대상으로 한 증거보전신청

(가) 경과

진도VTS와 제주VTS에 대한 증거보전신청은 다른 증거보전신청보다도 급박하게 진행되었다. VTS[18]의 경우 교신기록 보존기간을 2개월(60일)로

16) 참고자료 4-6. 진도VTS 관련 증거보전신청서
17) 참고자료 4-7. 제주VTS 관련 증거보전신청서

하고 있는데, 그에 의하면 사고 발생일인 2014년 4월 16일로부터 2개월(60일)이 경과한 6월 15일에는 진도VTS, 제주VTS와 세월호 간의 교신기록이 지워질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그에 따라 진상조사단은 6월 초에 진도VTS와 제주VTS에 대한 증거보전신청을 순차적으로 진행하였다.

2014년 6월 5일 세월호 가족대책위의 당시 진상규명분과위원장 전명선(현재는 가족대책위원장)을 신청인으로 하여 진도VTS를 대상으로 한 증거보전이 신청되었다(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4카기502). 구체적으로 진도VTS가 보유하고 있는 2014년 4월 16일 오전 7시부터 오후 12시까지의 레이더 영상, AIS DATA, 세월호와의 교신기록 등의 증거를 보전할 것을 신청한 것이다.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은 2014년 6월 10일 이와 같은 신청을 인용하여 보전대상증거에 대한 검증 및 서증조사를 실시할 것을 결정하였다. 이 결정에 따라 2014년 6월 12일 진도VTS 내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2014년 4월 16일 오전 7시부터 오후 12시까지의 세월호에 대한 레이더 영상, AIS DATA, VHF VOICE 교신 기록 등에 대한 서증조사 및 검증이 실시되었다.

또한 2014년 6월 9일 위 전명선을 신청인으로 하여 제주VTS를 대상으로 한 증거보전이 신청되었다(제주지방법원 2014카기1012). 구체적으로는 제주VTS가 보유하고 있는 2014년 4월 16일 오전 7시부터 오후 12시까지의 레이더 영상, AIS DATA, 세월호와의 교신기록 등의 증거를 보전할 것을 신청한 것이다. 제주지방법원은 2014년 6월 10일 이와 같은 신청을 인용하여 보전대상증거에 대한 검증 및 조사를 실시할 것을 결정하였다. 이 결정에 따라 2014년 6월 13일 제주VTS에 저장되어 있는 2014년 4월 16일 오전 7시부터 오후 12시 5분까지의 세월호와 제주VTS가 교신하였던 레이

18) 해상교통관제센터, 첨단 과학장비를 이용하여 관제구역 안에서 이동하는 선박들의 해상교통, 질서유지 및 안전운항을 위한 관찰확인, 정보제공, 조언, 권고 및 지시를 하거나 필요한 항만운영정보를 제공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더 영상, AIS DATA, 녹음파일 등에 대한 검증이 실시되었다.

(나) 성과

① 진도VTS의 관제 소홀 파악

사고 발생 당시 사람들이 가장 안타까워했던 점 중 하나는 어째서 VTS 측에서 미리 세월호의 이상 징후를 감지하지 못했었나 하는 부분이었다. 특히 진도VTS의 경우에는 자신들의 관제구역 내에 진입한 세월호를 지속적으로 관제하기만 하였어도 소위 '골든타임'이라 불리는 구조시간을 몇 분은 더 연장할 수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안타까움이 더욱 컸다.

이와 같은 사람들의 의문점은 관제사들의 관제 소홀로 인한 것이었다는 것이 밝혀졌다. 증거보전신청을 통해 획득한 사고 당시 레이더 영상이 그를 밝히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다. 관제사들이 사고 당시 레이더를 제대로 관제하기만 했더라도 세월호와의 교신이 그토록 늦게 이루어질 수는 없었다는 것이 명백하게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사고 당시 세월호와 진도VTS가 교신하였던 레이더 영상을 살펴보면, 2014년 4월 16일 오전 8시 48분 전후로 세월호의 속도가 느려지는 점이 확인이 된다. 또한 오전 8시 48분 이후에는 정상적인 항해 상황으로 보이지 않는 항로를 세월호가 그리고 있는 것이 명백히 보인다. 이는 관제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일반인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도VTS는 사고 발생 시각인 오전 8시 48분보다 19분이 지난 오전 9시 7분에서야 사고 상황을 파악하고 세월호와 교신을 시작하였다. 진도VTS가 자신의 본분인 관제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음으로

인해 수십 명 혹은 수백 명의 생명을 살릴 수도 있었던 19분이라는 시간이 그저 허비된 것이다.

이후 진도VTS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을 통해 진도VTS의 지속적인 근무 태만 실태가 적나라하게 드러나기도 하였다. 검찰 수사에 따르면, 진도VTS 소속 직원들은 2014년 3월부터 사고 당일까지 야간근무시간대 1섹터 관제요원만 근무하고 나머지 관제요원은 해당 업무를 하지 않는 등 근무를 태만히 하였다. 더군다나 그들은 실제로는 근무하지 않은 2섹터 관제요원이 2섹터를 지나는 선박과 교신을 한 것처럼 교신일지를 허위작성하기도 하였다. 검찰은 진도VTS 센터장 및 관제사 13명 전원을 직무유기 등으로 기소하였으며, 2015년 1월 29일 센터장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팀장 3명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나머지 직원들은 각 벌금 200만원~300만원을 선고 받았다. 다만 그들에 대한 처벌 근거가 2013년 3월 15일부터 사고 당일까지 야간에 변칙 근무를 함으로써 의식적으로 직무포기를 한 것이기는 하지만, 사고 당일 오전에는 변칙 근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② 세월호 참사 발생 전후 교신 내용 획득

증거보전신청을 통해 진도VTS, 제주VTS와 세월호 간의 사고 당시 교신 내용이 밝혀졌다. 검증 기일 당시에는 교신파일의 음단절, 음성중복 등의 문제로 인하여 제대로 된 내용이 파악되지 못하였으나, 추후 해당 교신파일에 대한 감정을 통해 사고 당시의 정확한 교신 기록을 얻을 수 있었다. 이후 이는 각종 언론보도 및 형사재판 등에서 적극 활용되었다.

특히 선원사건에서 진도VTS, 제주VTS와 세월호 간의 사고 당시 교신 내역은 검찰, 피고인 양측 모두의 증거자료로써, 빈번히 사용되었는데, 그 이

유는 위 자료가 사고 당시 세월호 선원들이 제대로 된 초동조치를 하지 않았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이다. 증거보전신청을 통해 밝혀진 사고 당시 교신 내역을 살펴보면, 승객 전원의 탈출이 충분히 가능했던 오전 9시 10분에서부터 오전 9시 17분에 이르기까지 세월호 선원은 "배가 기울어서 움직일 수가 없"으며, "탈출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으로 진도VTS와 교신을 수차례 하였다. 뿐만 아니라 선내대기방송이 계속해서 흘러나오고 있던 오전 9시 23분에는 "현재 방송도 불가능한 상태"라며 진도VTS 측에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교신을 한 점도 확인이 된다. 게다가 "라이프링이라도 착용시키고 (승객들을) 띄우십시오. 빨리!"라는 다급한 목소리의 둘라에이스호 측 교신과 "선장님께서 최종 판단을 하셔서 승객 탈출 시킬지 빨리 결정을 내리십시오."라는 진도VTS의 교신에 대해서는 "그게 아니고 지금 탈출하면은 바로 구조할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라는 동문서답격의 대답을 하기도 하였다. 선원사건에서 이와 같은 교신 내역들은 세월호 선원들이 승객들이 죽어도 어쩔 수 없다는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는 검찰 측 주장의 근거가 되기도 하였다.

③ 세월호 참사 발생 전후 세월호 항로 분석 자료 획득

증거보전신청을 통해 세월호 참사 전후 세월호의 AIS DATA를 획득할 수 있었다. AIS는 'Automatic Identification System'의 줄임말로서 '선박자동 식별 장치'라고 번역되는 것으로, 선박의 위치, 침로, 속력 등 항해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첨단 장치를 의미한다.

이와 같은 AIS 상의 GPS 기록을 활용하여 해양수산부에서는 사고 당일부터 무려 4차례에 걸쳐 세월호의 항적을 복원하여 일반에 공개하였다. 그렇지만 가장 처음 공개했던 세월호의 항적은 세월호의 실제 운항 항로

와는 판이하게 다른 것이었다.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해양수산부는 세월호 침몰의 주원인으로 꼽히는 급변침 순간이 나타나지 않은 항적만을 공개하였다. 급변침 순간의 AIS DATA가 일부 소실되었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해양수산부가 발표한 세월호 항적에 대해 낮은 신뢰를 하고 있던 세월호 가족대책위 측은 마지막까지 복원되지 않은 세월호 급변침 순간의 29초를 보여줄 항적을 복원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세월호 참사 6개월 만인 2014년 10월 세월호 가족대책위 측은 세월호가 급변침한 29초간의 항적을 찾아낼 수 있었다.[19] 이에는 세월호 가족대책위 측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 입수한 자료들이 큰 도움이 되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은 바로 진도VTS에 대한 증거보전신청을 통해 얻어낸 AIS DATA이었다. 실제로 위 내용에 대한 한 신문기사에는 "세월호 가족대책위는 합법적인 절차를 통한 진상규명을 위해 대한변호사협회의 도움을 받아 법원에 각종 자료에 대한 증거보전신청을 했다"며, "보전절차가 없었다면 각종 데이터의 확인은 장담할 수 없었다"는 내용이 실리기도 하였다.[20] 세월호 특위의 발 빠른 대응이 없었더라면 영영 세월호 급변침 순간의 항적은 영영 복원할 수 없었을지도 모르는 일이었다.

(2) 해양경찰청을 대상으로 한 증거보전신청

(가) 경과

2014년 6월 9일 위 세월호 가족대책위의 전명선을 신청인으로 하여 해양경찰청을 대상으로 한 증거보전이 신청되었다(인천지방법원 2014카기

19) "5. 형사재판지원팀과의 연계 및 증거자료 지원, 나. AIS 항적 찾기" 부분 참조
20) 한겨레 "유족들 세월호 항적 복원…'사라진 29초' 찾아내", 2014. 10. 14.

10124). 구체적으로는 2014년 4월 16일 오전 8시 52분부터 오후 8시까지 세월호에 대한 구조활동을 벌인 해양경찰청 소속 123정 경비정, B511, B512, B513 헬기에서 촬영한 동영상에 대한 보전을 신청한 것이다. 인천지방법원은 2014년 6월 18일 이와 같은 신청을 인용하여 보전대상증거에 대한 검증을 실시할 것을 결정하였고, 2014년 6월 23일 검증을 실시하였다. 이 검증을 통해 세월호 참사 당시 세월호와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벌어졌던 구조 활동에 관한 영상을 확보할 수 있었고, 이는 곧 사고 당시의 세월호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증거로 사용되었다.

(나) 성과

세월호 참사 당시 세월호와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구조 활동을 벌였던 123정 경비정 및 3대의 헬기가 보유하고 있는 동영상을 확보하였던 것이 해양경찰청을 대상으로 한 증거보전신청의 가장 큰 성과였다고 할 수 있다. 위 동영상들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제시된 의문점과, 위 동영상들이 선원사건에서 했던 역할들을 정리해보도록 하겠다.

① 검증 과정에서 제시된 의문점

123정 경비정 구조 영상은 사고 당일 오전 9시 28분경부터 오전 11시 19분경까지, B511 헬기 영상은 오전 9시 8분경부터 오전 10시 28분경까지, B512 헬기 영상은 오전 9시 24분경부터 오전 10시 25분경까지, B513 헬기는 오전 9시 29분경부터 오전 10시 31분경까지 부분적으로 촬영되었다. 검증 과정에서 몇 가지 의문이 제기된 것이 있었는데, 첫째는 B511 헬기 영상 시각이 실제 시각과 다소 차이가 나는 것 같다는 의문이었다.

이는 추후 해양경찰 측 보도자료를 통해 B511 헬기 영상 시각이 실제 시각보다 10분 10초가량 빠르게 기록되었다고 밝혀졌다. 둘째는 위 동영상들이 모두 공통적으로 오전 10시경부터 오전 10시 20분경 사이에는 촬영되지 않은 것에 관한 의문이었다. 이에 대해 해양경찰 측에서는 특별히 답변하지는 않았으나, 이후 전남도청에 대한 증거보전신청을 통해 획득한 어업지도선 영상이 해당 시간대의 구조 상황을 생생하게 담고 있다.

② 형사재판에서의 역할

형사재판에서의 위 동영상들의 역할 첫 번째는 사고 당시 선원들의 탈출 상황을 생생하게 살펴볼 수 있는 직접적인 증거로 사용되었다는 것이다. 123정이 보유하고 있는 영상에는 기관부 선원들이 구명보트에 탑승한 후 123정으로 옮겨가는 과정이 나타나 있을 뿐만 아니라, 갑판부 선원들이 조타실에서 탈출하는 과정 역시 생생하게 담겨져 있다. 이를 통해 사고 당시 세월호 선원들이 승객을 두고 먼저 탈출했다는 사실이 명확하게 증명되었으며, 탈출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선원이 어떠한 행동을 했는지 등이 비교적 세밀하게 드러났다. 일부 갑판부 선원은 123정에 의해 안전하게 구출된 이후, 선실 유리창을 깨서 필리핀 부부의 탈출을 돕고, 익수자에 대한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는 등의 구조 활동에 참여한 사실이 밝혀지기도 하였다. 하지만 대다수의 선원들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123정에 의해 구출된 이후 어떠한 구조 활동도 하지 않은 점 역시 위 동영상들은 통해 명확하게 밝혀졌다.

형사재판에서의 위 동영상들의 역할 두 번째는 사고 당시 세월호의 침몰 상황을 시간 순으로 살펴볼 수 있는 직접적인 증거로 사용되었고, 그를 통해 전문가들을 탈출 시뮬레이션을 구상하는 등의 2차적인 증거를 가

공해낼 수 있었다는 것이다. 위 동영상들을 살펴보면, 시간의 흐름에 따른 세월호의 침수 정도 및 세월호와 해수면과의 기울기 등을 비교적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세월호의 침몰이 초반에는 더디게 진행됐으나 후반에는 급속도로 빠르게 진행되었던 사실을 알 수 있었으며, 이는 곧 사고 초기 세월호 선원들이 승객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했더라면 많은 희생을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점을 추론할 수 있게 하였다. 그리고 이와 같은 추론은 전문가들에 의해 과학적인 근거를 가진 주장으로 발전할 수 있었다. 가천대학교 박형주 교수는 위 동영상들을 통해 파악한 시간대별 세월호의 침수 정도 등을 분석하여 탈출 시뮬레이션을 구상하였으며, 이를 통해 사고 발생 이후 약 1시간 뒤인 오전 9시 45분까지도 적절한 퇴선명령이 이루어졌더라면 승객 전원이 탈출할 수 있었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이는 모두 해양경찰청에 대한 증거보전신청을 하지 않았더라면 얻기 힘들었던 자료들이라고 할 수 있다.

(3) 전남도청[21]을 대상으로 한 증거보전신청

(가) 경과

2014년 6월 30일 위 세월호 가족대책위의 전명선을 신청인으로 하여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작업에 참여한 전남도청 해양수산국 수산자원과 소속 어업지도선 201호, 204호, 207호, 210호가 촬영한 영상에 대한 증거보전이 신청되었다(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카기22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은 2014년 9월 19일 보전대상증거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였다.

21) 참고자료 4-8. 어업지도선 관련 증거보전신청서]

(나) 성과

검증 결과에 따르면, 전남도청 해양수산국 수산자원과 소속 어업지도선 201호(이하 “201호”이라 함)와 207호(이하 “207호”이라 함)가 세월호 참사 현장에 출동하였으나, 동영상은 201호에서만 촬영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위 동영상은 2014년 4월 16일 오전 10시 4분부터 오전 10시 25분까지 약 21분간 촬영되었으며, 201호가 세월호에 접근하여 승객들에 대한 구조 활동을 벌이는 장면들이 담겨져 있다. 201호 영상은 해양경찰 측에서 촬영한 영상에는 부분적으로만 촬영되거나 거의 촬영되지 않은 시간대에 촬영된 것이기 때문에 그 의미가 더욱 큰 자료라고 할 수 있다. 위 동영상을 통해 세월호의 침몰이 빠르게 진행되었던 오전 10시 4분부터 오전 10시 25분까지의 상황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① 위 동영상은 세월호 침몰사고 발생시각인 오전 8시 48분경으로부터 약 1시간 15분가량 경과한 오전 10시 4분경까지도 대다수의 승객들이 선내에 머물고 있던 상황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동영상을 통해 확인되는 승객의 수가 그다지 많지 않기 때문이다. 동영상 재생시각 기준 3분 30초경(실제 시각 오전 10시 7분경)을 보면, 세월호 주위에는 구조 활동을 위해 대기하는 다수의 어선들만 확인될 뿐 승객들은 전혀 확인이 되지 않는다. 대부분의 주위 어선들은 구조할 승객이 없어서 멀뚱히 침몰하는 세월호를 바라만 보고 있는 상황이 동영상을 통해 확인된다. 실제로 201호 항해사 박 씨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바다 위에는 사람들이 많이 떠 있지 않아 ‘빈 여객선이겠거니’하고 바랐”[22]었다는 언급을 하기도 하였다.

② 위 동영상은 세월호의 침몰이 매우 급속하게 진행된 사실을 잘 보여

22) 연합뉴스, “<세월호참사> 28명 구한 어업지도선 항해사 “밖으로만 나왔어도…””, 2014. 4. 29.

주고 있다. 이를 통해 소위 '골든타임'이라고 하는 사고 초기에 적절한 구조 활동이 취해졌어야 했음이 다시 한 번 드러났다. 사고 발생시각으로부터 1시간 이상 경과한 오전 10시 이후로는 사실상 선내에서 탈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급속하게 침몰이 진행되는 것이 동영상을 통해 명확하게 확인된다. 특히 동영상 재생시각 기준 11분경(실제 시각 오전 10시 15분경) 90도 가량 기울어져 있던 세월호는, 동영상 재생시각 기준 19분경(실제 시각 오전 10시 23분경) 에는 선수 부분만 남기고 거의 모든 부분이 침몰되기에 이른다. 불과 8분 만에 그 정도의 침몰이 진행된 것이다.

(4) 세월호 DVR 및 노트북 등에 대한 증거보전신청

(가) 경과

2014년 6월 24일 세월호 가족대책위의 당시 가족대책위원장 김병권 외 1인을 신청인으로 하여 세월호 DVR(Digital Video Recorder) 및 노트북 등에 대한 증거보전이 신청되었다(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카기208). 2014년 6월 22일 저녁 11시 40분경 세월호 DVR과 노트북, 디지털카메라가 세월호 3층 로비 안내실에서 발견되어 인양됐다는 소식을 접하자마자, 세월호 특위 진상조사단은 증거보전신청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였다. 이는 모두 사고 당시 세월호의 선내상황 등을 정확하게 보여줄 매우 중요한 증거물들이었기 때문이다. 특히 세월호 DVR에는 세월호에 설치된 총 64개의 CCTV 화면이 저장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기 때문에 증거물로서의 중요성이 더욱 컸다. 세월호 특위 진상조사단은 위 증거보전을 신청하기에 앞서, 부식이 계속되고 있는 세월호 DVR에 대한 부식방지조치 및

포렌식 분석을 의뢰하는 등의 기민한 대처를 하기도 하였다.

사안의 긴급성에 따라, 증거보전신청을 접수한 당일 저녁 7시 40분경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은 세월호 DVR 하드디스크 2개 및 노트북 하드디스크 1개, 디지털카메라 SD메모리카드 1개에 대한 현장검증을 실시하였다. 현장검증을 실시한 바로 그 자리에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은 보전대상증거에 대한 보전절차를 실시할 것을 결정하였으며, 그를 위해 부식방지조치 및 포렌식 분석 등을 도맡을 복원촉탁인을 지정하여 보전대상증거에 대한 복원절차를 진행하도록 하였다. 복원촉탁인으로는 한양대학교 컴퓨터공학과의 김인성 교수와 명정보기술이 지정되었다.

① 세월호 노트북과 디지털카메라의 경우

세월호 노트북과 디지털카메라는 2014년 7월 5일 복구 작업이 완료되었다. 하지만 세월호 DVR에 대한 복구 작업이 장기화되어 증거보전절차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에 대한 해결책으로 세월호 특위 진상조사단에서는 세월호 노트북과 디지털카메라에 대한 증거보전절차를 우선적으로 진행해달라는 취지의 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은 신청을 받아들여 2014년 7월 25일 세월호 노트북과 디지털카메라에 대한 검증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였다.

② 세월호 DVR의 경우

[표5 - 세월호 DVR 복구 일정]

일시	내용
6월 26일	명정보기술 오창본사 입고 및 세척 시작
8월 1일	세척 완료
8월 2일 ~ 8월 8일	복구작업 중단
8월 9일	하드디스크(AS201406260000046) 복구 완료
8월 18일	하드디스크(AS201406260000045) 복구 완료

세월호 DVR의 경우에는 오랜 기간 동안의 해수 침수로 인해 부식이 많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복구 작업에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 세월호 DVR 하드디스크 2개는 2014년 6월 26일 명정보기술의 오창 본사에 입고되어 세척 작업이 시작되었다. 총 37일 간의 세척 작업을 진행한 결과 2014년 8월 9일과 8월 18일에 각 하드디스크를 모두 복구하는 데에 성공하였다. 위와 같은 일련의 하드디스크 복구 과정에는 신청인 측 유가족 1인, 세월호 특위 측 변호사 1인, 피신청인의 소관청인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측 인사 1인이 참관하였다. 세월호 특위는 37일 간의 세척 작업 동안 매번 특위 소속 변호사를 명정보기술 오창 본사로 파견하여 참관인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도록 하였다.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은 2014년 8월 22일 세월호 DVR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였다.

(나) 성과

① 디지털카메라의 경우

세월호에서 발견된 디지털카메라에 대한 검증 결과, 해당 기기를 이용하여 가장 마지막으로 촬영된 사진은 2014년 4월 16일 오전 8시 24분경이었던 것으로 밝혀졌으며, 검증기일에는 위 시간으로부터 역순으로 사진을 재생하여 2014년 4월 15일 오후 4시 27분경 촬영된 사진까지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하였다. 세월호 디지털카메라에 대한 증거보전을 통해 얻은 성과는 사고 당일 오전 8시 24분경 까지는 세월호에 별다른 이상 징후가 없었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② 노트북의 경우

㉮ 개요

검증기일에 세월호에서 발견된 노트북 하드디스크 상의 모든 폴더를 탐색한 결과, ①주로 세월호에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행사용 음악파일, ② ‘2011년도 투어 명단’ 및 ‘프리젠테이션 교직원’ 등의 파일, ③세월호 승선을 환영하고 세월호에 승선할 때 승객들에게 안내를 해주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 ‘프레젠테이션 1, 2’ 파일, ④ ‘국정원 지적사항.hwp’ 파일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외에도 ‘해양안전수칙’ 파일 및 자동 세이브 파일(.asv) 등의 재생을 시도하였으나, 파일이 깨지는 등의 문제점으로 인하여 확인을 할 수 없었다. 세월호 노트북에 대한 증거보전을 통해 얻은 가장 큰 성과는 바로 ‘국정원 지적사항.hwp’ 파일을 발견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세월호의 실소유주가 국가정보원이 아니냐는 새로운 의혹을 불러일으켜 다양한 논쟁을 야기하는 등의 많은 파장을 낳았다.

㉯ ‘국정원 지적사항.hwp’ 파일의 내용

2013년 2월 27일에 작성된 ‘국정원 지적사항.hwp’에는 세월호 선내 여객구역의 각종 시설에 대한 다양한 작업예정사항이 나열되어 있다. 위 내용은 무려 그 순번이 100개에 달할 정도로 자세하게 작성되어 있으며, 세월호 선원의 월별 휴가계획에서부터 화장실, 샤워실, 오락실 등의 바닥 타일에 대한 지적에 이르기까지 매우 구체적인 사항을 담고 있다.[23] 세월호 노트북에서 이와 같은 문건이 발견된 것은 곧 많은 의혹을 불러일으켰다. 이처럼 세월호 선내의 세세한 부분까지 국가정보원 측에서 지적하는 문서가 발견된 것은 세월호의 실소유주가 국가정보원이기 때문이라는 것이 의혹의 핵심적인 내용이었다. 세월호의 안전이나 안보와 관련이 없는 부분까지 국가정보원에서 지적사항으로 삼고 있었던 것은 그와 같은 의혹을 더욱 부풀리게 했다.

㉮ ‘국정원 지적사항.hwp’ 파일로 인한 의혹의 확대

위와 같은 의혹에 대해서 국가정보원은 ‘국정원 지적사항.hwp’ 파일은 국가보호장비 지정을 위해 보안측정을 한 결과물에 지나지 않는 것이고, 일정톤급 이상의 선박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보안측정이 이루어진다고 해명하였다. 선원사건에서 이루어진 오하마나호 박진환 선장에 대한 증인신문에 의하면, 세월호의 쌍둥이 배라 불리는 오하마나호 역시 보안측정을 받았고, 그 후에도 국가정보원이 대테러 관련 심사를 나왔다고 한다.

하지만 위와 같은 해명 및 증언들에도 불구하고 세월호와 국가정보원의 관계에 대한 의혹은 여전히 시원하게 해소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그 주된 이유는 ‘세월호 운항관리규정’에 따른 해양사고 보고계통도에 기

23) 참고자료 2-22. 국정원 지적사항

인하고 있다. ‘세월호 운항관리규정’에 의하면 세월호에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해운조합, 해양경찰 등의 해양 관련 기관이 아닌, 국가정보원에 가장 우선적으로 보고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다. 이에 대해 통합진보당의 정진후 의원은 1천톤급 이상의 내항 여객선의 운항관리규정을 모두 분석한 결과, 해양사고 발생 시 국가정보원에 대한 별도의 보고체계를 갖추고 있었던 여객선은 세월호가 유일한 것으로 드러났다는 발표를 세월호 국정조사 기관보고에서 하였다. 뿐만 아니라 세월호 국정조사 기관보고에서 정홍원 국무총리는 세월호 참사 당시 국가정보원이 세월호 선원으로부터 전화로 사고 보고를 받았다는 답변을 하기도 하였다.

㉮ 검찰의 수사 발표[24]

검찰은 2014년 10월 6일 발표한 ‘세월호 침몰사고 관련 수사 설명자료’를 통해 위와 같은 의혹에 대해 반박하였다. 이에 따르면, ①세월호 이외에 씨스타크루즈호(15,089톤) 등 다른 대형 여객선에 대해서도 국가보호장비 지정을 위한 보안측정을 실시하였고, ② ‘국정원 지적사항.hwp’ 파일의 99개 항목 중 실제 국가정보원이 지적한 항목은 9개에 불과하며, 그 또한 세월호 보안측정에 대비한 선박의 테러·피랍 관련 내용이라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국가정보원은 국가정보원법, 보안업무규정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한 국가보호장비 지정 업무를 수행한 것뿐이었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③ 세월호 DVR의 경우

㉮ 검증에 따른 의혹 제기

24) 참고자료 4-9. 세월호 침몰 사고 관련 수사 설명 자료

2014년 8월 22일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는 세월호 특위 소속의 변호사들과 수십 명의 피해자 가족들이 참여한 가운데 세월호 DVR에 대한 검증이 실시되었다. 사고 발생 당시의 선내 상황을 생생히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와 긴장감이 감도는 가운데, 오후 2시부터 장장 5시간에 걸쳐 세월호 DVR에 저장되어 있던 세월호 내 64개의 CCTV를 눈으로 확인하는 검증 절차가 진행되었다. 그렇지만 불행인지 다행인지 변호사들과 유가족들은 사고 발생 시의 장면을 눈으로 확인할 수 없었다. 세월호 내 64개의 CCTV는 세월호 침몰사고 발생 전인 오전 8시 30분 59초경 모두 일제히 꺼졌기 때문이다. 그 결과 세월호 DVR 검증을 통해 사고 당시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는 애초의 기대 대신, 새로운 의혹이 대두되었다. 누군가 세월호 CCTV를 갑작스레 끈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바로 그것이다.



[2014. 10. 11 광화문 농성장, 변백선, 416가족협의회 416기억저장소]

㉯ 검찰의 수사 발표

검찰은 2014년 10월 6일 발표한 ‘세월호 침몰사고 관련 수사 설명자료’를 통해 위와 같은 의혹에 대해 반박하였다. 이에 따르면 세월호 CCTV 영상에 표시된 세월호의 인천항 출항 시각은 4월 15일 저녁 8시 42분 10초임에 반하여, 인천항 CCTV에 표시된 인천항 출항 시각은 4월 15일 저녁 8시 59분 42초로 확인되기 때문에, 세월호 CCTV 영상에 표시된 시각은 실제 시각보다 18분가량 빠르다고 한다. 즉 오전 8시 30분 59초경이 아닌 사고 시각과 근접한 오전 8시 48분경 세월호 CCTV가 꺼졌다는 것이다. 또한 대검 DFC 분석 결과 및 전문가 감정 결과에 의하면, 누군가 세월호 CCTV를 고의로 종료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다고 발표하였다.

④ 소결

검찰의 수사 발표에도 불구하고, ‘국정원 지적사항.hwp’ 파일 및 세월호 CCTV와 관련한 의혹은 쉽사리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특히 지난 2014년 12월 28일 이재명 성남시장이 자신의 SNS에 세월호의 실소유자가 국가정보원이라는 의혹에 대한 글을 게시하면서, 세월호와 국가정보원의 관계에 대한 의혹은 다시 수면 위로 부상하였다. 또한 세월호 CCTV가 사고 발생 당시의 장면(배가 기우뚱한다거나, 선내 승객 및 물건이 넘어지는 등의 장면)이 보이기 전에 꺼진 경위는 여전히 정확하게 드러나지 않고 있다. 세월호와 국가정보원의 관계에 대한 의혹, 그리고 세월호 CCTV가 사고 발생 전 꺼진 경위에 대한 의혹이 세월호 침몰사고의 진실을 밝히는 중요한 실마리 중 하나인지, 아니면 세월호 침몰사고의 진실과는 아

무런 관련이 없는 논란을 위한 논란에 불과한 것인지는 아직까지 아무도 알 수 없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세월호 침몰사고와 같은 비극적인 참사가 다시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사고의 발생 원인을 다각도로 규명하는 작업이 필요하며, 그와 같은 작업 과정에서 자칫하면 아무도 그 존재를 모른 채 묻힐 뻔 했던 정보를 획득하는 데에 세월호 특위의 역할이 핵심적이었다는 사실이다.

다. 문제점과 반성

(1) 민감한 자료들에 대한 증거보전신청의 문제

진상조사단의 증거보전신청의 주요 목적이 세월호 참사의 원인을 밝히자는 데 있었던 만큼 대부분의 증거보전신청이 공개가 민감한 자료들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민감한 자료들을 대상으로 한 증거보전신청을 꼽아보라고 하면, 해군이 보유하고 있는 KNTDS 자료 및 국가정보원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에 대해 행해진 증거보전신청을 들 수 있다.

2014년 7월 29일 진상조사단은 세월호 가족대책위 측을 대리하여 해군이 보유하고 있는 KNTDS 자료, 레이더 영상정보 음성교신내역에 대한 증거보전을 신청하였다. KNTDS란 'Korean naval tactical data syster'의 줄임말로서 '해군전술자료정리체계'라고 번역되는 것이다. KNTDS는 해상에 떠 있는 선박의 위치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해주는 기능을 한다. 위 신청은 양 당사자 간의 치열한 법리 다툼이 계속 되었는데, 그 주된 이유는 KNTDS 자료는 군사기밀보호법상 II급 비밀로 지정되어 있는 것으로, KNTDS 자료가 공개될 경우 해군의 작전 수행 현황 및 중요 전개 상황

등이 그대로 노출될 가능성이 있어 국가안보상 제출할 수 없다는 피신청인 측의 강력한 항변이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2014년 8월 7일 진상조사단은 세월호 가족대책위 측을 대리하여 국가정보원에 대한 증거보전신청을 하였다. 세월호 노트북에 대한 증거보전과정에서 발견된 '국정원 지적사항.hwp'와 관련한 다양한 의혹들을 해소하기 위하여, 국가정보원이 보유하고 있는 세월호 보안측정 관련 자료들을 증거보전신청의 주 대상으로 삼은 것이었다. 하지만 이 역시 해군에 대한 증거보전신청과 마찬가지로 국가안보상 제출이 어렵다는 강력한 항변에 부딪치게 되었다.

물론 진상조사단에서는 그러한 피신청인 측의 항변에 대항하여 해당 자료들을 긴급하게 보전하여야 할 이유가 있음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였지만, 신청에 대한 인용 결정을 받아 해당 자료들을 얻는 데까지는 성공하지 못하였다. 국가안보와 관련이 되어 있다고 여겨지는 민감한 자료들에 대한 증거보전신청은 그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재판부 역시 적지 않은 부담을 가지고 있으며, 정치권 및 여론의 거센 반대에 부딪칠 가능성도 존재하는 등의 어려움이 도사리고 있다는 한계가 분명 존재한다.

⑵ 형사재판지원팀과의 소통 문제

진상조사단이 각종 증거보전신청을 한 데에는 증거보전신청을 통해 확보한 자료들을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형사재판과정에서 적극 활용하고자 목적이 있었다. 그렇지만 진상조사단과 형사재판지원팀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의 문제로 인하여서 증거보전신청 결과 확보한 자료들이 형사재판지원팀에게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물론 세월호 선원들에 대한 형사재판에서는 진상조사단의 증거보전신

청 결과 확보한 자료들의 대부분이 검찰 측을 통해 활용될 수 있었다. 하지만 진상조사단과 형사재판지원팀 간의 적극적인 의사소통이 이루어졌더라면, 형사재판과정에서 피해자 측 변호인으로서 더욱 많은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⑶ 소송비용의 문제

소송비용은 대한변협 측이 부담을 하였다. 몇 만 원 정도의 인지·송달료부터 그보다는 큰 액수의 감정료 등에 이르기까지 공익활동의 일환으로서 큰 문제없이 대한변협 측이 대한변협 법률구조재단을 통해 부담을 해왔던 것이다. 하지만 명정보기술이 가지고 있는 고도의 기술을 이용하여 상당한 시간동안 복구 작업이 진행되었던 세월호 DVR에 대한 감정료가 문제가 되었다. 그 비용이 무려 80,641,000원에 달했기 때문이다. 2015년 1월에 이르기까지도 위와 같은 엄청난 액수의 감정료를 누가 부담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결론이 나지 않는 상황이었다.

이렇게 업무가 지연되던 가운데 세월호 가족대책위가 대리기사 폭행사건으로 인하여 집행부가 교체되면서, 현 집행부가 전임 위원장이 신청인으로 되어있는 증거보전신청사건의 소송구조에 대해서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였다. 이 소송구조신청의 시급함에 대해서 박주민 변호사가 세월호 가족대책위 집행부에게 지속적으로 설득하고, 오영중 변호사는 법원에 이러한 사정을 계속 설명하며 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했다.

2015년 1월 23일 세월호 DVR에 대한 증거보전신청사건을 담당하였던 재판부(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감정료에 대한 소송구조를 받아들일 것이니 소송구조신청서를 제출하라는 연락을 세월호 특위 측에 해왔다. 그에 따라 소송구조결정(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카구1001)이 되어

80,641,000원의 감정료 문제를 일단락되었다.

앞으로는 대한변협 차원의 공익활동을 진행할 때에 소송비용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대비책이 먼저 마련되어 있어야 할 것이다. 80,641,000원이라는 엄청난 비용의 감정료의 큰 몫을 차지한 것은 세월호 DVR 포렌식 작업을 담당했던 김인성 교수와 관련된 지출 비용이었다. 김인성 교수와의 계약 당시 프로보노 형태의 참여 방식 등이 명확히 되지 않았던 점 등의 여러 미흡한 점들이 지적되고 있는 상황이다. 공익활동 진행시에서는 프로보노 형태의 전문가 지원을 받는 등의 방안을 활동 초기부터 명확히 하는 등의 가이드라인이 준비되어야 있어야 한다.

라. 앞으로의 전망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 지금까지 세월호 특위 진상조사단이 앞장섰던 진상규명 활동을 앞으로는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에서 도맡게 될 것이다. 이처럼 진상규명 활동의 주체가 변경되는 과정에서 지금까지 진상조사단이 각종 증거보전신청을 통해 수집한 자료들이 빠짐없이 조사위원회로 전달되어야 할 것이다. 단순히 증거보전신청 결과 얻은 자료들만을 넘겨주는 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증거보전신청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그리고 증거보전신청을 통해서는 수집하지 못하였으나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꼭 획득하여야만 하는 자료에 대한 설명 등도 포함되어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로 전달되어야 한다.

5. 형사재판지원팀과의 연계 및 증거자료 지원

가. 형사재판지원팀과의 연계

세월호 특위 활동 초기에는 형사재판지원팀은 진상조사단 산하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러나 형사재판 진행과정에서 광주지방법원에서 공판기일들이 집중적으로 주 2일 내지 3일로 지정하면서 변호사들에게 부담을 느끼게 되었다. 그 결과 형사재판지원팀의 이탈인원이 증가하였고, 갈수록 적은 인원에서 점점 많아지는 공판기일을 커버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되었다.

인원부족과 더불어서 진상조사단과의 연계면에서도 진상조사단과 회의하려 하더라도 정보를 공유하고 토론하는 자리를 만들고자 하더라도 절대적 시간자체가 부족했다. 따라서 형사재판지원팀이 독자적으로 처리해야 할 업무의 폭이 넓어질 수밖에 없었다. 그 결과 형사재판지원팀은 진상조사단과 별도의 팀처럼 운영되기 시작했다. 형사재판지원팀이 진상조사단에 정보를 보고하고, 진상조사단은 이를 취합하여 형사재판에 반영하도록 자료를 정리하여 전달하는 업무 방식을 취하려던 본래의 계획대로 진행될 수 없었다.

그 결과 형사재판의 진행에서 제출된 다양한 증거자료와 공판기일에 밝혀진 선장과 선원들의 진술이 진상조사단에 전달되지 않았고, 동시에 진상조사단에서 독자적으로 수집한 다양한 자료 역시 형사재판지원팀에 한동안 전달되지 못했다.

그러나 이러한 흐름을 재판 절차 상 형사소송법에서 인정되는 피해자진술권[25] 행사의 일환으로 증인 및 피고인에 대한 피해자 측의 질문을 재판

25) 제294조의2 (피해자의 진술권) ①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피해자가 아닌 자가 신청한 경우
2. 신청인이 이미 당해 사건에 관하여 공판절차 또는 수사절차에서 충분히 진술하여 다시 진술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신청인의 진술로 인하여 공판절차가 현저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
②법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범죄로 인한 피해자를 신문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법원은 동일한 범죄사실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인의 수가 다수인 경우에는 증인으로 신문할 자의 수를 제한할 수 있다.

부가 허락하면서 전환기를 맞는다.

증인, 또는 피고인에 대하여 질문사항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얻으면서 진상규명에 필요한 증언을 법정에서 재판부를 통해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2014년 8월 20일, 이 기회를 십분 활용하고자 진상조사단은 형사재판지원팀과 협력하여 공판 기일에 제출할 신문 사항들을 정리하는 업무를 시작하기로 결정하였다. 그 후 진상조사단 소속 변호사들을 형사재판지원팀에 파견하면서 공식적으로 연계하여 활동하게 된 시점은 선원 사건 진행 중 2014년 8월 26일과 8월 27일에 예정되어 있던 세월호 선장 신모와 오하마나호 선장 박 모에 대한 증인 신문에서의 피해자 신문 사항을 정리하면서부터이다.

(1) 활동내용

(가) 피해자 대리인 질문사항 정리

2014년 8월 20일 이후 검경합동수사본부 전문가자문단의 전문가 진술이 있었던 10월 15일까지, 진상조사단은 형사재판지원팀과 공판기일 일주일 전부터 증인과 피고인에 대한 일정 및 그에 관련된 자료를 공유하였다. 어떤 증인과 피고인이 출석하는지 파악한 뒤, 각 증인, 피고인별로 진상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종합하여 질문사항 초안을 작성하였다. 초안 작성 후 진상조사단 소속 변호사들과 검토하며, 공판기일 전일까지 수차례 수정하였다. 그리고 광주재판에 직접 참석하여 완성본을 제출할 수 있게 하였다.

정리한 것 외에도 에 피해자 대리인으로 선임계를 제출하고 직접 공판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인이 소환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기일에 참석하여, 피해자 가족들이 요청한 질문사항을 진상조사단 차원에서 준비한 질문사항과 중복되지 않는 선에서 수기로 정리하였다. 그리고 이를 재판부에 제출함으로써 피해자 및 피해자 가족들의 의문사항이 재판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나) 공판기일 참석 후 속기록 회람

재판이 끝난 후, 곧장 진상조사단에서 제출한 질문사항 중에 증인 또는 피고인을 통해 답변이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요약한 뒤 회람하였다. 또한 이를 가상 드라이브에도 업로드 함으로써, 다른 팀과 단 역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이하 각 공판기일 별로 밝혀진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 관련 부분들을 정리하겠다.

(2) 질의내용 정리

(가) 2014년 8월 26일, 27일 공판기일

① 질의의 필요성

㉮ '국정원 지적사항.hwp' 파일 발견

2014년 8월 동안 진상조사단에서 의혹을 가지고 집중하였던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은, 국가정보원과 세월호 사이의 연관성이었다. 앞서 세월호 DVR 및 노트북 등에 대한 증거보전신청(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카기208)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2014년 6월 22일 23시 40분 경 세월호에서 청

해진 해운 소속 망 양 모의 소유로 추정되는 세월호의 사무용 노트북이 발견되었다. 그리고 2014년 7월 25일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그 노트북에 대한 증거보전절차가 진행되었고, 노트북의 하드디스크를 복원하여 내용을 확인한 결과, 2013년 2월 26일 작성된 '국정원 지적사항.hwp' 파일이 발견된 것은 이미 언급한 바와 같다. 해당 문건에는 안전이나 보안과는 무관한 부분까지 수리 및 보수를 지시하는 내용의 100여개의 항목이 담겨있었다.

이 문서에 대하여 세간의 많은 의혹이 제기되자, 이에 대하여 국가정보원은 "과거 국토해양부(현 해양수산부)로부터 2013년 2월 20일 세월호를 '국가보호장비'로 지정하기 위한 보안측정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미비점을 점검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였다. 그러나 '국정원 지시사항'에 기재된 100가지 문항 전부가 아닌 4가지 항목만을 지적했다고 해명했다.[26] 즉 자신들이 지적하였다고 인정한 4가지 외의 90여 가지에 대한 것은 보안측정을 함께 실시한 인천해양항만청, 항만공사, 해운조합, 인천해양경찰, 기무사 등 다른 기관에서 한 지적사항이라는 주장이다.

국가정보원의 해명이 사실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진상조사단의 변호사들은 '국가보호장비 지정' 절차를 리서치 하는 동시에 인천해양항만청, 항만공사, 해운조합, 인천해양경찰, 기무사와 같은 기관에서 세월호와 같은 선박에 대해서 수행하는 업무를 파악하여 '국정원 지적사항.hwp'에 기재된 다양한 지적 중에 각 기관에서 했을 법한 것들을 제하고도 얼마나 많은 지적사항이 남는 지 등의 분석을 진행했다. 그러나 세월호와 같은 크기의 선박들이 예외 없이 국가보호장비로 지정되는 것이 사실인지 여부, 국가정보원의 선박들에 대한 보안측정이라는 절차가 정기적으로 항시 존재하는 것인지 등에 관련해서 세월호의 정식선장인 신모와 세

26) ▲보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CCTV 추가 신설(2건) ▲비상시를 대비한 객실 내 일본어 표기 아크릴판 제거 ▲탈출 방향 화살표 제작·부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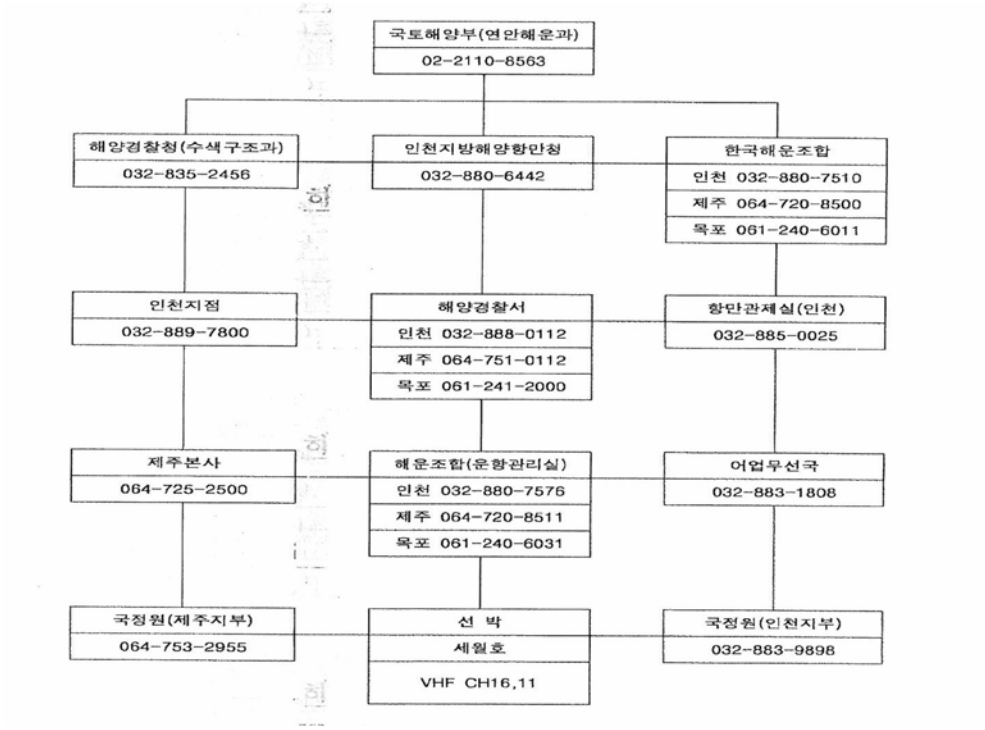
월호와 동급의 선박인 오하마나호의 선장인 박 모에게 확인할 필요성이 있었다.

㈏ 세월호 보고계통도에서의 국가정보원의 위치

세월호의 운항관리규정의 해양사고 보고계통도를 살펴보면 해운조합, 해양경찰만 아니라 국가정보원에도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더 나아가서는 국가정보원에 가장 우선적으로 보고하도록 규정되어있다.[27] 그러나 세월호와 같이 청해진 해운 소속이며, 동일한 노선인 인천~제주를 오가는 6000t급 여객선인 오하마나호는 국가정보원 보고 규정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청해진해운이 작성한 '오하마나호 운항관리규정'을 보면 사고 시 국가정보원에 대한 보고의무는 없고, 해운조합, 청해진해운 제주본점, 인천VTS와 해군2함대 상황실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27) P8-96 운항관리규정(세월호)

[그림2 - 보고계통도]



세월호 국정조사 기관보고에서 정진후 의원은 국내 1천 톤 급 이상 내항 여객선의 운항관리규정을 모두 분석한 결과 해양사고 시 국가정보원에 별도의 보고체계를 갖추고 운항했던 여객선은 세월호가 유일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세월호의 이와 같은 예외적인 보고체계가 규정된 이유에 대해서 국가정보원은 어떤 해명도 하지 않았다.

심지어 세월호 참사 당일 청해진 해운은 해양경찰보다 위 보고계통도에 따라 오전 9시 10분 경 해양경찰보다 먼저 국가정보원에 연락을 취했다는 청해진 해운 사장 김한식의 진술이 있었다.[28] 그러나 국가정보원은

28) http://www.khan.co.kr/kh_news/art_view.html?artid=201405152149135&code=940202

이에 대해 세월호 국정조사에서 9시 19분 경 뉴스를 통해 인지하였으며, 같은 날 오전 9시 44분 해양경찰청 상황보고서를 팩스를 이용하여 접수했고 해명하고 있다.

㉰ CCTV 영상 복원을 통해 발견된 의문

앞서 세월호 DVR의 증거보전절차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2014년 8월 22일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복원된 영상저장장치(DVR)에 대한 증거보전절차를 통해 세월호 내 64개 CCTV 영상에 대한 상영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그 방대한 양 때문에 2014년 8월 26일 27일에 진행된 공판기일까지는 이를 분석하여 반영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였다. 다만 사고 발생 전인 8시 30분 59초 경 CCTV가 일제히 꺼진 사실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지고 있었다. 이에 대하여 정전이 있어 CCTV 영상이 더 이상 기록이 되지 않은 것인지, 고의적으로 누군가 CCTV의 전원을 차단한 것인지 등에 대한 원인규명의 요청이 쏟아졌다. 따라서 CCTV의 작동과 운영책임자 등 같은 실무적인 부분에 대해 세월호의 정식선장이었던 신모와 세월호와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오하마나호의 선장인 박 모에게 질문할 필요성이 있었다.

② 질의 내용

2014년 8월 26일, 27일 공판기일에는 1)세월호의 월례점검, 특별점검 등 청해진 해운의 안전에 관한 실무를 담당하던 청해진 해운 해무팀 소송 홍모 대리, 2)세월호의 선장인 신모 선장, 3)세월호와 같은 경로를 운항하는 동급

선박인 오하마나호 박 모 선장에 대한 증인 신문 절차가 예정되어 있었다.

진상규명 활동 중에 반복적으로 발견되는 국가정보원과 관련된 증거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혹을 적법한 방법으로 해소하고자 형사재판지원팀과 연계하여 피해자의 재판 참여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서 전달 가능한 질의사항을 정리하고, 세월호의 정식 선장이었던 신모 선장과, 세월호와 같은 노선을 운항하였던 오하마나호의 박 모 선장에 대한 질의 사항을 작성하였다. 이는 대부분 재판에 반영되어 질의가 되었다. 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세월호 신 모 선장에 대한 부분[29]

세월호의 정식 선장이었던 신모 선장에 대해서는, 당시 국가정보원의 화물이 아닌지에 대해 강력하게 의심을 받았던 회색 화물에 대한 질문과 국가정보원의 국가보호장비 지정을 위한 실제 조사에 참석하였는지 여부, 국정원 지적사항이라는 문건에 적힌 모든 사항이 국가정보원이 지적하였던 것인지 여부에 대한 질문을 준비했다. 또한 세월호 내부 64개 CCTV의 영상이 화면상 표시시간인 2014년 4월 16일 8시 30분 이후 더는 기록이 되어있지 않았으므로, 이 원인에 대한 기술적 사항의 질문이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었다.

㉯ 오하마나호 선장 박 모에 대한 부분[30]

오하마나호에 있어서는 같은 노선을 운항하는 동급 선박이라는 점에 주목하여, 국가보호장비 지정을 받은 것이 세월호에만 해당하는 특수한 경우인지 여부가 중심적인 질문사항이었다.

---

29) 참고자료 4-10. '세월호 정식선장 신 모에 대한 질문사항'
30) 참고자료 4-11. '오하마나호 선장 박 모에 대한 질문사항'

(나) 2014년 9월 2일, 3일 공판기일

① 질의의 필요성

위에서 밝힌 바와 같이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복원된 영상저장장치(DVR)에 대한 증거보전절차를 통해 세월호 내 64개 CCTV 영상이 확보되었다. 그러나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CCTV 영상 자료는 승객들이 탑승하기 시작하던 2014년 4월 15일 오후 6시 경부터 16일 사고 직전까지의 영상으로 CCTV 1개 당 약 14시간이나 되는 영상기록이었다. 진상조사단은 CCTV 64개의 14시간동안의 기록을 보고 이상 징후를 체크하는 작업을 가족대책위와 상의하여 영상을 전달받을 수 있었다. 그 후 2주에 걸쳐 약 8인의 변호사들이 여러 팀으로 나뉘어 이상 징후에 대해 파악하는 작업을 했다.

그 과정에서 CCTV 46번에서 한 선원의 이상행동이 포착되었다. 사고 당일인 4월 16일 7시 58분경부터 약 30분 간 3등 기관사 이 모가 청테이프를 가지고 한 파이프 부근에서 작업을 하는 것이 발견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혹시 8시 45분 이전부터 세월호가 침몰할 예후를 보였던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 의문이 제기되었다. 따라서 변호사들은 7시 반부터 8시 사이의 64개 CCTV를 재차 점검하였다.

또한 64개의 CCTV가 화면 표시 시각 8시 30분을 전후해서 데이터 저장 기록이 멈춘 점에 관련해서 선원들에 의한 고의적인 전력의 차단이 있었는지 여부 등 CCTV 영상에 관련한 다양한 의혹을 해소할 필요성이 있었다.

마침 2014년 9월 2일, 3일은 피고인 1등 기관사 손모, 3등 기관사 이 모 , 조기수 이 모에 대한 증인신문 과정이 예정되어 있었다. 따라서 3등 기관

사 이 모에게 직접 본인이 수행한 작업이 무엇인지에 대해 질문할 필요성이 있었으며, 다른 선원들에 대해서 역시 전원 차단 등 정전 여부에 대한 질문들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그리하여 위와 같은 의혹들의 실마리가 될 수 있는 단서를 찾고자 질문지를 작성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다.

② 질의 내용

㉮ 1등 기관사 손모에 대한 부분

우선 기관사 손모에 대해서는 3등 기관사가 수행한 작업이나, 전원 차단 여부보다는 무전교신을 하던 당사자와 탈출 당시에 해양경찰이 우선적으로 선원들을 구조한 정황에 대한 질문이 주를 이루었다. 탈출할 당시에 무전기를 들고 있었던 사람은 누구인지 누구와 교신했는지 여부와 실제 탈출 당시 무전기를 가지고 있었던 선원 강모가 무전을 한 내용에 대한 부분을 질문했다. 또한 탈출 당시 해양경찰의 지시사항이나 우선 구조될 당시의 정황에 대한 질문 역시 제기하였다.

㉯ 3등 기관사 이 모 에 대한 부분

CCTV 46번에 드러난 세월호 참사 당일 오전 7시 58분부터 약 30분 간 기관실에서 청테이프로 하는 작업한 내용과 작업을 진행한 기관의 이름이 무엇인지가 가장 중요한 것이었다. 그 작업한 기관이 복원성과 관계있는 선박의 부분인지 판단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또한 청테이프로 작업을 하고 있었으면서 과거 수사 중에 페인트칠을 했다고 진술하였던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하며 진술이 바뀐 이유에 대한 질문을 진행했다. 3등 기관사 이 모 는 이 작업이 간단한 작업이라고 진술을 계속하였으므로, 이에 대

해서 운항 중에 청테이프를 두르고 페인트작업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 것이 일상적인 것인지 질문하였다.

그리고 3등 기관사로서 배의 정비에 대한 부분들을 숙지하고 있었을 것이므로 세월호가 출항하기 전에 복원성에 관련하여 수리한 부분이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질문하였다.

(다) 2014년 9월 16일, 17일 공판기일

① 질의의 필요성

2014년 10월 14일 세월호 가족대책위와 세월호 특위 진상조사단 변호사들이 함께 진도VTS 로스데이터 등을 증거보전신청하고 이를 분석하여 항적을 밝혀내기 전까지, 4월 16일 세월호의 AIS(선박자동식별장치) 송수신 기록의 8시 48분 44초부터 8시 49분 13초까지의 29초간의 기록이 복원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 29초간의 세월호 항적에 대해 다양한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었다.

AIS 등 항적기록을 조사하던 김지영 감독을 비롯한 민간단체들이 한 대안언론을 통하여, 세월호가 사고 당시 지그재그로 운항하여 고의로 배를 침몰시킨 것은 아닌지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김지영 감독 등 민간단체에서 제기한 의혹용은 HDG(헤딩값), COG(대지침로)의 수치에 기반을 두어 의문을 제기한 것으로 상당 부분 전문지식이 있어야 이해할 수 있고, 제기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었다. 진상조사단에서는 그 가설의 진위를 밝혀내는 것이 세월호 침몰의 원인을 파악하고, 세월호 참사 피해자 및 피해자 가족들 사이에서는 물론이고 세간에 만연한 여러 가지 소문을 해소하는데 필수적이라고 판단하였다.

2014년 9월 16일 공판외기일, 침몰 원인을 조사한 검경합동수사본부 전문가자문단 허용범 단장이 보고서 내용 중 자신이 작성한 선체운동 부분에 대하여 진술하기로 예정되어 있었으므로, 김지영 감독에게 가설이 기반하고 있는 원자료를 요청함과 동시에 재판에서 진행될 전문가 진술에서 의혹에 대하여 질문을 하기로 결정하였다.

② 질의 내용[31]

우선 전문가자문단의 허용범 단장에게 질의하는 만큼 전문적인 지식을 알기 쉽게 설명을 듣고 이를 향후 진상규명에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기록에 남기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였다. 그러므로 크게 당시 제기된 지그재그 운항에 관련한 부분과 화물의 미흡한 고박이 복원성에 미친 영향 이 두 가지에 대한 질문을 집중적으로 제출하였다.

지그재그 운항에 관하여, 김지영 감독이 지그재그 운항에 관한 의혹을 제기하는데 사용하였던 두 수치인 HDG(헤딩값)[32]과 COG(대지침로)[33]라는 용어의 의미에 대한 해석을 요청했다. 이 값을 기초로 8시 45분 23초부터 8시 46분 46초 사이, 그리고 당시 항적로가 복원되지 않았던 8시 48분 37초부터 8시 49분 13초까지 지그재그 운항이 있었을지 와 지그재그로 운항하는 경우 화물의 고박상태에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되는 지에 대한 판단을 구했다.

화물선적에 관련해서는 화물 중에 70톤 이상에 해당하는 거대 화물이

31) 참고자료 4-12. '검경합동수사본부 전문가자문단 단장 허용범에 대한 질문사항'

32) HDG (Heading, 헤딩)
선박이 진행하는 방향으로 북쪽에서부터 벗어난 각도로 표현되며, 보통 북쪽 0도에서 시계방향으로 360도까지 표현된다.

33) COG (Course over the ground,대지침로)
선박이 실제로 지면에 대하여 진행한 방향으로 현재 COG(실침로)는 위성항법 장치에서 최소 3초 간격으로 선박의 실제 위치 비교를 통하여 실시간 제공되며 연안항법에서는 선박의 위치를 실측(AP)하여 3분간법을 통하여 산출된다.

존재하였는지를 질문하였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세월호가 군용화물을 싣고 이동 중이 아니었는지에 대한 의혹이 불거지던 중에 재판 중 공개된 인청항구의 CCTV에 한 화물을 싣는 순간 세월호가 크게 흔들리는 모습이 포착되었기 때문이었다.

(라) 2014년 9월 23일, 24일 공판기일

① 질의의 필요성

2014년 9월 23일에는 검경합동수사본부 전문가자문단의 운항 관련 전문가로 이윤철 해양대학교 교수와 탈출관련 시뮬레이션 전문가 김영모 한국해양수산연구원 책임교수에 대한 전문가 진술이 있었다. 이들은 검경합동수사본부 전문가자문단이 작성한 보고서에 관하여 각 선체운동, 선원들의 인적 요인, 탈출, 시뮬레이션 부분을 작성한 전문가이다.

24일은 세월호 조기수였던 박 모에 대한 증인신문이 있은 후, 방재 시뮬레이션 전문가인 박형주 가천대학교 초고층 방재융합연구소 소장에 대한 전문가 진술이 진행되었다. 그리고 세월호 사고 당시 교신을 했던 제주VTS 관제사 김 모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되었다.

2014년 9월 23일부터 24일까지의 공판기일은 세월호의 참사의 원인 등 진상규명에 관련하여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였다. 동시에 공판기일에 보고서가 제출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변호인으로서 그 자료를 입수하는 기간은 예상조차 할 수 없었다. 만약 이가 길어질 경우 의견서 등을 제출할 때 자료를 전혀 사용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만큼 일부 변호사가 직접 참석하여 전문가의 세월호 침몰 원인 분석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속기하여 회람할 필요성이 있었다. 또한 그 속기를 읽고서라도 검경

합동수사본부에서 의뢰하여 제작한 전문가자문단 보고서의 그 자체의 신빙성 및 전문성을 검증할 필요도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공판정에서 재판부에 제출되기 전까지 피해자 변호인으로서는 그 내용을 전혀 알 수가 없었으므로, 각 전문가가 어떤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했는지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질문지를 미리 작성하는 것은 무리가 있었다. 그러므로 개략적인 틀만 잡은 채 공판기일에 가서 내용을 들으면서 세월호 가족대책위와 함께 질문사항을 정리하여 현장에서 작성하고 제출하는 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었다.

② 질의 내용

㉮ 운항 및 탈출 전문가에 대한 부분[34]

○ 탈출 전문가에 대한 부분 : 가장 큰 의문은 선장과 선원들의 선내 대기 방송이 없는 경우 피해자가 현재보다 적었다면 어느 정도였을 지에 대한 구체적 수치였다. 또한 사고 발생 직전에 갑판에 나와 있었던 학생들의 생존확률 등에 대한 질문으로 구성되었다.
○ 운항 전문가에 대한 부분 : 별도의 질문을 제기하기 보다는 내용에 대해 속기하고 파악하여 추후 검증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 조기수 박 모에 대한 부분[35]

기관실 선원인 조기수 박 모에 대해서는 기관실에서 무전기를 사용한 사람의 목격 여부와 목격한 경우 그 내용에 대하여 청취한 바가 있는지,

34) 참고자료 4-13. '검경합동수사본부 전문가자문단 이윤철, 김영모에 대한 질문사항'
35) 참고자료 4-14. '피고인 조기수 박 모에 대한 질문사항'

또한 무전기를 사용할 수 있었던 강모, 양 모 외의 선원이 존재했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였다. 이는 어두운 복장을 하고 지속적으로 무전을 하던 이를 목격하였다는 생존자의 진술에 기반을 둔 질문이었다. 또한 기관실에도 선내 전체에 방송할 수 있는 장비가 있었는지 여부를 물었다. 나아가 기관장 박 모가 비상발전기를 작동하였는지, 비상발전기를 작동하였다면 세월호의 침몰 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었는지 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질의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였다.

㉰ 시뮬레이션 전문가에 대한 부분

방재 시뮬레이션 전문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상황마다 승객들이 탈출하는데 소요되는 시간 등을 측정하는 연구를 진행하였으므로, 선장과 선원들이 대기하라고 했던 선실에 있는 경우와 대기 방송 없이 사람들이 산발적으로 배 안에 있는 경우 탈출이 편이 유리한 지에 대해서 설명을 구했다.

(마) 2014년 10월 15일 공판기일

① 질의의 필요성

검경합동수사본부 전문가자문단 보고서와는 별도로 KRISO(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설 선박해양플랜트 연구소)에서 2014년 10월 작성한 ‘세월호 침몰사고 원인 분석 - 선박 조종 및 침수·침몰 시뮬레이션’(이하 “KRISO 보고서”라 함)을 작성한 김선영 선박해양플랜트 연구소 소속 시뮬레이션 전문가와 이동건 특수 선박 설계 및 안전 설계 각종 시스템 개발 전문가의 진술이 있었다.

그러나 이 보고서 역시 사전에 입수되어 분석된 바가 없었기 때문에 적절한 질문사항을 정리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그러므로 현장에서 전문가 진술을 청취한 뒤에 질문사항을 정리하여 제출하였다.

세월호가 어떤 경로로 운항하였으며 대각도 변침이 이루어진 위치 및 그로 인한 침몰 가능성에 대한 시뮬레이션 자료인 만큼 그간 진상조사를 위해서 AIS 항적을 비롯하여 다양한 레이더 자료를 분석하였던 진상조사단은 재판에 참석하여 전문가의 진술을 청취한 뒤에 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해양 전문가들을 섭외하여 이에 대해서 자문을 구하는 등 노력을 기울였으나, 간략한 자문만을 구할 수 있었다.

② 질의 내용[36]

운항에 관련한 시뮬레이션 보고서였으므로 화물의 무게가 달라지는 경우 실험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였다. 또한 세월호가 비정상적으로 빠르게 침몰한 이유가 과적과 관련한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하였다. 또한 일부 부모들 사이에 구조하러 왔던 해양경찰의 123정 보트가 로프를 세월호에 연결하여 끌어서 더 빠르게 침몰시키려 하였다는 음모론이 존재하였던 바 이를 해소시키는 일환으로 과연 100톤 단정이 6000톤 세월호의 침몰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도 질문에 추가하였다. 그리고 지그재그 운항에 관련해서도 여전히 의혹을 가지고 있는 세월호 가족대책위의 일부 피해자 가족들을 위하여 그 부분에 대한 질문도 포함하였다.

(3) 진상규명의 실태

36) 참고자료 4-15. 'KRISO 보고서 관련 김선영, 이동건에 대한 질문사항'

(가) 2014년 8월 26일, 27일 공판기일에 밝혀진 사실

① 국가정보원 관련 사항

㉮ '국가정보원 지적사항.hwp'과 관련한 부분

청해진 해운 해무팀 소속 홍모 대리는 세월호 월례점검, 특별점검 등 안전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다. 그는 세월호가 국가보호장비로 지정되어 보안측정을 실시하였던 점에 대해서 기억하고 있었다. 홍모가 기억하는 국가정보원 측의 지적사항은 CCTV 사각지대 없애는 것, CCTV 화소 안 나오는 부분을 수정하는 것, 일본어 안내판을 한국어로 변경하는 것, 항만 쪽에 울타리 관리하고, 경비를 충원하고 경비실 보강하는 보안 관련 부분이라고 진술하였다. 이는 세월호에서 발견된 노트북의 '국정원 지적사항.hwp' 이라는 파일의 내용과 일치하는 않는 부분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국정원 지적사항은 홍모가 진술한 내용보다 다양한 부분에 대한 개선점을 지적하고 있으며, 특히 세월호 시설에 대한 부분에 매우 집중되어 있었다.

세월호의 정식선장인 신모 선장의 경우 국가정보원의 보안측정에 직접 참여하였으며, 커피숍 책장 증설, 오락실 바다 데코 타일 변경과 같은 세부 사항들은 모르며, 자세한 지적사항은 해무팀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선장이나 선원들은 그에 대해서 자세히 개입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오하마나호의 경우 국가보호장비로 지정되기 위해 거치는 보안측정은 박모 선장이 근무하기 전에 받은 것이므로 자신이 참여하지는 않았으나 오하마나호 역시 국가보호장비로 지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국가정보원은 지속적으로 세월호와 같은 노선을 운항하는 선박

에 대하여 대테러 관련 점검 등을 실시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즉 보안측정이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국가정보원 주관의 업무이며, 보안측정 외에도 국가정보원은 국경 지역을 지나는 선박에 관련하여서는 대테러 점검을 비정기적으로 수행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세월호가 국가보호장비로 지정되어 보안측정을 받은 적 있다는 사실이 국가정보원이 세월호의 운항 및 운영에 개입하고 있었다는 직접적 증거는 될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 해양사고 보고계통도 관련 사항

세월호의 운항관리규정의 해양사고 보고계통도에 국가정보원에 가장 우선적으로 보고하도록 규정[37]되어 있는 부분에 관하여 국가정보원에 별도의 보고체계를 갖추고 운항했던 여객선은 세월호가 유일한 것이 아니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명확하게 밝혀진 바가 없다.

② CCTV 관련 사항

64개의 CCTV 영상이 8시 30분을 이후에는 기록이 전혀 되지 않은 점에 대하여 CCTV 전원을 관리하는 부서와 CCTV 전원을 차단하는 방법 등에 관하여 질의하였다. 세월호의 정식선장인 신모는 CCTV에 대한 관리는 영업부에서 이루어지며, CCTV의 전력 공급원 역시 영업안내실에 있다고 밝혔다. 또한 과거 CCTV가 멈춘 적이 있었는데, 발전기가 완전히 꺼지는 경우, 전원 공급이 차단되는 경우였다고 진술했다. 오하마나호의 선장인 박 모 역시 오하마나호에도 CCTV가 안내실에 있어, 안내실에서 영

37) P8-96 운항관리규정(세월호)

업부 직원들이 CCTV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조타실의 직원인 선원 등은 이와는 무관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나) 2014년 9월 2일, 3일 공판기일에 밝혀진 사실

① CCTV 영상 시각과 실제 시각 간의 오차

진상조사단은 세월호 가족대책위와 함께 증거보전절차를 진행하여 CCTV 영상을 확보한 뒤, 정밀하게 영상을 분석했다. 포렌식을 통하여 확보된 학생들의 휴대폰 영상을 비롯한 다양한 자료와 CCTV 영상을 비교하여, CCTV 영상에 표시되어 있는 시각이 실제 시각보다 15분 21초가량 늦은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CCTV 영상이 끊긴 시각은 8시 30분이 아닌 8시 45분경으로, 세월호 급변침 시각 무렵인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러므로 고의적인 전원 차단의 가능성은 낮았다고 판단할 수도 있으나, 세월호가 변침을 통해서 기울어진 방향에는 벽이 존재하였기 때문에 CCTV가 쓰러질 수 없다는 점, 안내데스크 쪽에서 대기하였다가 탈출하여 생존한 피해자들의 진술에 기초할 때 당시 배가 기울기 시작한 8시 46분경에 안내데스크에서 코드가 자연히 뽑힐 정도로 기계가 쏟아진 적도 없는 점, 정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배가 기운 직후는 아니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고의적인 전원 차단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② CCTV상의 이상 징후에 대한 진상규명

3등 기관사인 이 모가 7시 58분경부터 약 30분 간 청테이프를 가지고 수행한 작업에 관하여, 그 작업이 공기흡입관의 파손을 임시적으로 막기 위한 작업은 아니었는지 의문이 제기되었다. 만약 그러한 경우 7시 58분경부터 세월호의 복원성에 문제가 발생하였던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가 쟁점이었다. 또한 추가적으로 피고인 이 모의 해양경찰 참고인 진술에서는 기관실에서 페인트작업을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므로 거짓된 진술을 한 것은 아닌지에 대해 규명하고자 하였다.

3등 기관사인 이 모가 수행한 작업은 기관장인 박 모가 사전에 예고 없이 지시한 업무였다고 진술했다. 이 모는 청테이프를 주변에 두르는 것은 페인트칠의 예비 작업으로, 페인트 작업 시 주변에 페인트가 묻지 않도록 테두리를 명확히 하기 위함이었다는 점을 일관되게 주장하였다. 또한 해양경찰 참고인 진술조서에 기재된 피고인 이 모의 기관실에서 페인트 작업을 하였다는 진술에 대해서도 위 증언에 추어볼 때 진술을 번복하려는 취지가 아니었다는 점에서 의혹을 해소할 수 있었다. 나아가 청테이프 및 페인트 작업을 한 부분이 공기흡입관이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파이프 별로 색이 다른 것일 뿐, 이 모가 청테이프를 붙인 파이프가 복원성에 관련된 특별한 기관은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다) 2014년 9월 16일 및 10월 15일 공판외기일에 밝혀진 사실

① 지그재그 운항에 대한 진상규명

2014년 9월 중순은 세월호가 조타실 선원들의 지그재그 조타에 의해 선체의 복원성이 저하되던 중에 대각도 변침을 함으로써 침몰한 고의적인

선박 매몰이었는지에 대한 의혹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었다. 왜냐하면 4월 16일 세월호의 AIS 기록이 8시 48분 44초부터 8시 49분 13초까지 29초간 복원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사고 직전의 세월호의 선체 운동에 대해서 많은 의혹이 제기 되었기 때문이다. 2014년 9월 16일 공판 외기일은 검경합동수사본부 전문가자문단의 보고서가 처음으로 재판정에서 전문가에 의해서 일부 공개되는 자리였다.

제기된 의혹의 구체적인 내용은, 김지영 감독 등 지그재그 운항에 관련하여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HDG와 COG라는 용어를 HDG(헤딩값)[38]이 배가 향하는 방향이며 COG(대지침로)[39]가 현재의 배가 향하는 방향으로써 HDG의 과거라고 해석하면서 시작되었다. AIS 항적로를 분석한 결과, 8시 44분 5초의 HDG는 129.4도 이고 8시 45분 33초의 HDG는 135도 이므로 약 5.6도 가량 우현으로 변침한 것이나, 8시 45분 23초 HDG는 136.5도라는 점을 감안할 때, 사실 129.4도에서 136.5도로 약 7.1도 가량 좌현으로 변침한 뒤에 135도로 1.5도 우현으로 변침하는 지그재그식의 운항을 하였다는 주장을 제기하였다.

더불어 8시 49분 12초의 HDG는 140도, COG는 134.7도이기 때문에 약 5.3도를 변침한 것으로 해석하며, 8시 48분 15초에 HDG 137.6도이나 COG 134.7도, 8시 49분 32초에 HDG 159.1도로 운항하였던 바, 배의 선수를 140도에서 137.6도로 그 다음에는 159.1도로 운항하였기 때문에 좌현으로 틀었다가 우현으로 다시 배를 운항한 것으로 판단하고 지그재그 운항이 1회성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이어졌다고 주장하였다.

---

38) HDG (Heading, 헤딩)
선박이 진행하는 방향으로 북쪽에서부터 벗어난 각도로 표현되며, 보통 북쪽 0도에서 시계방향으로 360도까지 표현된다.

39) COG (Course over the ground,대지침로)
선박이 실제로 지면에 대하여 진행한 방향으로 현재 COG(실침로)는 위성항법 장치에서 최소 3초 간격으로 선박의 실제 위치 비교를 통하여 실시간 제공되며 연안항법에서는 선박의 위치를 실측(AP)하여 3분간법을 통하여 산출된다.

그러나 2014년 9월 16일 공판 외 기일에 검경합동수사본부 전문가자문단 단장인 허용범 단장의 전문가 진술 및 검경합동수사본부 전문가자문단 보고서 해당 부분을 참조한 결과, 검경합동수사본부의 결론은 대지침로는 선박의 특정 시점의 운항 방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시점에서 선체의 무게중심이 향하는 방향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점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HDG와 COG 간의 각도의 차이를 편각[40]이라고 하는데, 지그재그 운항에 관한 의혹제기는 이러한 편각의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오해에서 나온 결론이라고 허용범 단장은 확언하였다.

HDG와 COG의 개념에 대한 견해가 대립되는 사실을 발견하고, 이에 대한 검증을 위하여 다른 전문가를 통해 내용의 진위에 관하여 검증받고자 노력하였으나 시간과 비용의 문제로 인하여 실현되지는 못하였다.

② 소실된 AIS 항적에 관한 진상규명

세월호의 항적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해양수산부의 번복이 이어져서 조작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등의 다양한 의문이 발생하였다. 해양수산부는 세월호 참사 직후 세월호 침몰 당시의 선박자동식별장치 데이터가 일부 소실됐다고 발표해 의혹을 부추겼으며, 데이터 소실 시간도 애초 3분36초라고 했으나, 후에 계속해서 36초, 29초, 35초 등으로 발표를 번복하며 의혹을 자초했다.

40) 편각(drift angle)
: 배가 선회하는 경우 선수가 향하는 방향이(HDG), 그리고 선체의 무게중심이 이동하는 것이 항적인데, 이 둘 간의 헤딩과 무게중심이 향하는 방향성의 차이 간의 각도를 잰 것. 선수가 향하는 방향이랑 실제로 배가 움직이는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생김.

[표6 - 해양수산부 항적도 발표 경과][41]

발표 일자	발표 회차	내 용
4월 17일	해양수산부 최초 발표	3분 36초 누락 (J자 급변침)
4월 21일	해양수산부 2차 발표	3분 복구 (목포VTS AIS)
4월 26일	해양수산부 최종 발표	36초 복구 (진도VTS AIS)

해양수산부는 세월호 참사 다음날인 4월 17일 세월호의 항적 누락 구간이 8시 48분 37초부터 8시 52분 13초라고 설명했지만, 그 이후 나흘 뒤인 21일[42]에는 목포VTS AIS자료를 확보하여 8시 49분 13초부터 8시 52분 13초 사이 3분을 복구하였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여전히 8시 48분 37초부터 8시 49분 13초까지의 36초가 복원되지 않은 상태에서 닷새 뒤인 26일에는 36초도 복구했다고 설명했지만, 36초 중 이는 일부에 불과하며 29초간은 여전히 복원되지 않은 상태였다.

이렇게 AIS가 중간에 저장되지 않은 공백구간이 있는 것에 대해서 왕왕 의도적인 항적로의 은폐 또는 기록되지 않은 구간 동안의 여러 가지 외부적 원인에 의한 침몰 의혹 등이 불거졌다.

허용범 단장은 세월호 AIS가 사고 당시 끊긴 것은 극히 정상적인 것으로, 미국 연안 해안경비대에 이러한 일이 자주 발생하는지 직접 조사한 결과, 배의 신호가 연안 무선국이나 관제실에서 끊겼다가 다시 기록되는 것은 통상적인 일이지 이상한 현상이 아니라고 진술하며 데이터가 과도하게 수신되는 결과 데이터 간의 충돌로 수신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빈

41) 김현미 의원실 통한 해양수산부 자료

42) 해양수산부는 세월호 사고 다음날부터 3차에 걸쳐 3분 36초가 빠진 항적도를 복구하며 발표했다. 최초 발표에서 누락된 3분 36초 구간 때문에 J자 급변침 항적도가 되었고, 사고 초기 언론을 통해 급격한 변침이 침몰 원인으로 꼽히게 되었다. 4월 21일 2차 발표 시 목포VTS에서 3분 분량의 AIS를 확보했고, 4월 26일 최종 발표 시에는 진도VTS AIS자료를 확보하여 나머지 36초도 복구했다고 밝혔다.

번히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데이터의 용량이 급격히 늘어나며 저장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허용범 단장은 세월호는 사고 당시 변침 직전 속도가 약 17kts로 6초 간격으로 위치 정보를 진도VTS 등에 송신해야 한다"며 "그런데 (사고 당시였던) 대각도 변침 시에는 속도가 6kts가 돼 2초 간격으로 송신해야 한다. 중간 중간 뚝뚝 끊어진 것은 기계 자체의 성능 상 제한이나 시스템의 오류일 뿐 사고 원인과는 무관하다"고 진술했다.[43]

이러한 허용범 단장의 주장과 더불어 이미 7월에 확보된 해양수산부 자료에서 2014년 4월 1일 서버(AIS DB, 통합 게이트웨이 등) 이중화 작업을 실시하여 신규 통합 게이트웨이의 일부 포트에서 데이터 전송량이 불규칙적으로 증가하면서 항적정보 저장이 지연되었다는 해명을 고려할 때에는 AIS 기록이 누락된 것이 고의적이라는 의혹에 대하여 일부 규명되었다.

그러나 세월호 참사 익일인 4월 17일 당시 진도VTS의 AIS 기록이라는 동일한 원자료(Raw data)를 전달받은 해양수산부와 해양안전심판원은 누락 구간을 다르게 발표했는데, 해양수산부의 경우 위에서 밝힌 바와 같이 8시 48분 37초부터 8시 52분 13초까지의 3분 36초의 누락구간이 존재한다고 발표했지만, 이보다 늦게 발표한 해양안전심판원은 8시 47분 35초부터 52분 30초까지, 4분 55초 동안의 기록이 없다고 발표하였다. 같은 자료를 가지고 AIS 기록을 다르게 도출해낸 것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남으며, 이러한 의문이 해소되지 않는 한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AIS 기록의 조작에 대한 의혹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③ 외부충돌로 인한 침몰 가능성에 대한 진상규명

43) 광주14고합180, 2014.9.16 공판조서

8시 48분 38초에서 8시 49분 13초 사이 약 36초의 항적 기록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세월호의 AIS를 보면 선회각 속도가 8시 49분 40초 15도, 1초 만에 15도를 회전할 뿐만 아니라 이어지는 8시 49분 43초에는 -22도로 반대방향으로 22도 가량 회전하는 수치를 보였기 때문에 조타 실수가 아닌 외부적 충돌로 인하여 세월호가 복원성을 상실하고 침몰한 것은 아닌지에 대한 의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1초 만에 15도를 회전하거나, 곧 이어 반대방향으로 22도를 회전하는 항적을 보이는 것은 충돌 등 외부적 요인이 아니면 선체 자체의 운동만으로는 불가능하다. 그러나 충돌이 있다면 항적이 그림과 같이 완만하게 기울어지는 것이 아니라, 샤프하게 꺾이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따라서 세월호는 완만하게 대각도 변침을 하며 회전하였을 가능성이 높고, 다만 기록된 수치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검경합동수사본부 전문가자문단의 결론이었다.

다만 1초에 15도, 1초에 -22도를 회전한 부분에 대해서는 세월호의 무게중심이 대각도 변침으로 인하여 급격히 이동하면서 세월호 내의 고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화물 등이 한 방향으로 무게 중심이 쏠리면서 자이로콤파스[44]의 세차운동[45]이 순간 오류가 났던 것으로 추정하였다. 전체적인 항적로의 이동에 충돌로 인한 항적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세월호가 1초에 15도, -22도의 방향 전환을 하였다는 수치가 나타난 것은 내부적인 충돌로 인한 무게중심의 변화로 인한 자이로콤파스의

---

44) 자이로컴퍼스
3축의 자유도를 가진 자이로(로터)의 지북(指北)작용과 제진(制振)작용을 주어 지표면상에서 자이로 축을 남북방향으로 계속 향하게 하는 장치. 자이로스코프(gyroscope)의 원리를 응용한 것으로, 빠른 속도로 회전하는 팽이의 축이 지구의 자전하는 힘에 의하여 항상 남북을 가리키도록 한 장치. 철의 영향을 받아 오차가 생기기 쉬운 자기 컴퍼스 대신에 선박, 항공기 따위에서 사용. 일종의 나침반과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

45)세차운동 [歲差運動, precessional motion]
팽이의 회전축이 연직축 둘레를 회전하는 것과 같이 자전운동을 하고 있는 물체의 회전축이 어떤 부동축의 둘레를 회전하는 현상을 말한다.

오류로 밖에 설명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전문적인 보고서에 대해서 변호사들은 함께 회의하며 자료를 공유하고 이와 관련된 전문가를 직접 만나면서 하나하나의 용어를 새로 배워가며, 세월호 가족대책위 진상조사단과 내용을 공유하며 재판의 흐름에서 진상규명의 단서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러나 지속적인 전문가와의 교류는 성사되지 못하였다.

④ 검경합동수사본부 전문가자문단 보고서 검증

선체운동의 경로 등 세월호의 마지막 항로가 세월호 침몰 원인 규명 등 진상규명을 위한 가장 중요한 초반 작업이 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해 검경합동수사본부 전문가자문단이 제출한 보고서가 어느 정도의 전문성과 정확도를 가지고 있는 보고서인지 검증할 필요성이 있었다. 이에 대한 분석을 위하여 진상조사단은 해양사고 전문가 및 선박 선체 운동에 관한 전문가를 섭외하여 보고서에 대한 간략한 자문을 구하였으나, 검경합동수사본부 전문가자문단의 보고서의 결론대로 세월호가 침몰하였을 수도 있다는 정도의 간략한 자문만을 구할 수 있었을 뿐이었다. 세월호의 침몰 원인에 대해서는 정식 프로젝트로 발주하여 분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선원 사건은 선박 사고라는 점에서 일반인이 이해하기에는 어려운 전문적 지식을 요구하는 자료 해석 부분이 다수 존재하였으며, 나아가 다수의 피고인에 대한 재판이었기 때문에 각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작성 피해자신문조서 및 10회에 달하는 검찰 작성 피해자신문조서를 비롯하여 3000개 이상의 증거와 15000 페이지 이상의 증거자료가 제출되었다. 이러한 자료를 취합하여 적절하게 피해자들을 대변하고 진상규명을 위해서 얻을 수

있는 모든 자료를 공판기일을 통해 수집하는 일은 방대한 작업이었다.

현장에서 지원하며 진도, 안산, 국회를 비롯하여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진상규명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는 진상조사단 변호사들의 의견이 질문서에 반영되어 재판에 활용될 수 있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었다. 또한 피해자들의 입장에서도 의혹을 해소시키는 효과를 담당함과 동시에 재판에 참석하는 변호사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의혹에 대해 자료를 연구하고 함께 질문지를 작성하는 가운데에서 보다 깊은 신뢰관계를 유지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세월호 가족대책위와 세월호 특위 진상조사단 사이에 원활한 자료 공유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다.

(4) 문제점과 반성

(가) 팀별 지휘 체계의 불명확성

초기에 형사재판지원팀은 진상조사단 산하의 팀으로 구성이 되었다. 그러나 지휘체계가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으면서 진상조사단과 별도의 팀으로 자체적으로 운영이 되기 시작하였다. 그런 과정에서 상호간의 정보 공유가 단절되었다. 진상조사단과 형사재판지원팀의 양 팀의 구성원으로 활동하는 변호사들이 존재하였지만 정보를 공유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았기 때문에 각 팀이 수집한 자료나 분석의 경우 각 팀 내부에서만 유통이 되었다. 또한 상호 간에 어떤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지 알 수 없었기 때문에 급박하게 서로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도 신속하게 지원이 되지 않는 어려움 등이 존재했다.

형사재판을 통해서 많은 증거자료를 확보할 수 있었던 만큼, 진상조사단에서 별도로 진행한 여러 노력들이 형사재판 절차에서 시기적절하게 제

공되기 위해서는 각 팀과 위원회에서 진행되는 업무에 대해서 구성원들이 제대로 파악하고 있었어야 했다. 그러나 이것이 불가능해지면서 공판기일 직전에 형사재판지원팀은 지원을 요청하게 되고, 그때에서야 진상조사단에서도 형사재판 진행과정을 점검하며 각 절차에 필요한 자료들을 연수 변호사를 통해서 전달하는 임시방편적인 형태로 협조를 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비효율성을 회피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조직의 구조를 확실히 하고, 지휘체계를 확립해야 한다. 지휘체계나 팀별의 구조가 명확히 확정되어야 정보의 공유 방법이 확정될 수 있다. 초기 형태대로 형사재판지원팀이 진상조사단의 산하였다면 형사재판지원팀이 수집한 자료가 진상조사단에 즉각 보고되어야 했고,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서 물리적 시간상 독자적으로 결단하여 진행한 형사재판지원팀의 활동 부분에 대해서 승인을 받는 등의 절차가 필요했다. 그러나 형태가 모호하게 와해되면서 회의를 통해서 향후 형사재판절차에 시기적절하게 필요한 자료가 제출될 수 있도록 업무를 진행하려던 초기의 계획이 실현되지 못하였다.

이러한 팀별 체계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정보공유 및 협조방식에 대한 추후 논의가 이어지지 않은 채 각자의 활동에 골몰하였던 바 자료공유에 대한 기본 원칙이 확립되지 않았고 진상조사단과 형사재판지원팀이 각각 수집한 정보는 각 팀 내부에서만 공유되는데 그칠 수밖에 없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기 어려웠다.

(나) 전문가 자문인력 부족

세월호 참사와 관련하여 해양사고인 만큼 진상조사를 위하여 수집한 자료 중에는 해양사고에 관련하여 전문지식을 요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했다. 따라서 전문가가 함께 작업을 진행했어야 했다. 그렇지 않고 법률전

문가인 변호사들의 각종 레이더 자료 및 수치 등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해당 분야의 지식을 혼자 공부하며 해석해야 했기 때문에 시간을 많이 소요될 수밖에 없었다. 공판기일 시작된 이후 전문가를 섭외하려고 하였으나, 이미 국민적 관심이 많이 돌아선 이후에 전문가를 섭외하는 과정에서는 필연적으로 프로보노 형태의 전문가 지원을 기대하기 어려웠고 프로젝트를 발주하여 필요한 부분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 받아야 했다.

특히 세월호 참사와 같이 사회 전반의 비리와 과실의 누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에 관해 진상조사를 하려면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전문가 집단과 연계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못하였기 때문에 적절한 시기에 필요한 조력을 받기는 항상 어려웠다. 세월호 참사 당시 개인에 대한 법률상담뿐만이 아니라 진상조사에 관하여 변호인단이 꾸려진 만큼 장기적으로 사건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다양한 자료를 접할 수밖에 없음은 진상조사단 구성 당시부터 예측 가능했던 일이다. 그렇다면 처음부터 전문가를 섭외하여 함께 할 수 있도록 MOU 체결 등을 고려하였어야 한다. 특히 세월호 참사 원인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았던 5월에는 충분히 이에 대해서 함께 작업을 진행할 수 있는 대학, 연구소 등을 섭외할 수 있었을 것이다.

최초 진상조사단 발족 당시부터 해양 전문가와의 연계가 탄탄히 진행되었다면, 형사재판지원팀과 진상조사단이 필요한 때에 전문가 인력과의 공동 작업을 통해서 법정에 제출 가능한 형태의 전문가 약식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며 적극적으로 형사재판에 자료를 제출할 수 있었을 것이다. 또한 검경합동수사본부의 전문가자문단 보고서를 검증하는 과정을 함께 진행할 수 있었을 것이다.

(다) 전문가자문단에 대한 재원 확보

대형 참사의 경우 방대한 자료를 분석해야하며 그 자료에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의 의견이 필수적인 경우들이 빈번히 존재한다는 사실을 일찍 파악해서 예상되는 분야의 전문가들을 미리 섭외하여야 한다. 또한 그 섭외 과정에서 계약을 체결할 당시 사회적 기여 차원에서의 자원봉사의 형태로 협조를 구하여 그 비용에 있어서의 절감을 구하는 것이 우선적이다.

그러나 이가 여의치 않을 경우 해당 비용이 지출될 것을 예상하여 처음부터 기부금을 걷거나, 다른 부분의 지출을 절감하여 해당 비용을 확보해야 이번과 같은 불편을 겪지 않을 수 있다.

(라) 공판기록 및 증거자료 확보의 지연

피해자 대리인으로 형사재판지원을 하고 있는 변호사들에게 제공되는 공판기록 및 증거기록에 대해서도 진상조사단에 그 입수 여부가 즉각적으로 전달되지 않아서, 매번 진상조사단이 재판에 관련하여 자료를 찾을 때에는 형사재판지원팀에 그 입수 여부를 문의하여야만 했다. 그만큼 형사재판지원팀의 자료들은 증거기록 그 자체로 보관이 되었으며 그 내용에 따른 분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특히 증거기록의 경우 그 양이 방대하였으나, 각 권으로 분류되어 있을 뿐 그 내용에 따라서 분류가 되어있지 않아서 진상조사단의 경우 그 전체를 읽지 않고서는 자신이 원하는 자료가 어디에 존재하는 지 파악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따라서 형사재판지원팀의 자료 역시 진상조사단에서 입수하는 즉각 내용별로 분류하여 열람하기 용이한 형태로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했다.

특히 진술조서의 경우 피고인들의 진술번복을 통해서 진상조사에 대한 단초를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조속히 입수하여 진술의 불일치 부분을 조사할 필요성이 있었다. 그러나 검찰에서 공판에 제시되기 전까지 세월호

특위에 자료를 전달해주지 않았으며 그로 인하여 결심 공판이 가까워져서야 겨우 해당 자료를 얻을 수 있었다. 따라서 이를 진상조사에 활용하여 재판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표명하며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기에는 무리가 있었다. 따라서 재판에 참여한 변호사의 속기에 의존하여 우선적으로 진상조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으나, 재판 속기를 진상조사단에서 정기적으로 취합하여 분석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구성원이 없었다. 따라서 재판에서 진상 규명이 이루어진 부분이 진상조사단에서는 여전히 진상조사가 필요한 부분으로 인식되는 등 양 팀 간의 사건의 인식에 대한 괴리가 발생했다.

그리고 전문가자문단 보고서의 경우 역시 재판부에서 전달하기로 예고한 날짜로부터 3주가량이나 늦게 입수할 수 있었기 때문에 결심공판 직전에나 그에 대한 열람이 가능했고 분석 역시 급박하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다. 게다가 이러한 자료를 입수한 형사재판지원팀에서 입수한 후에도 진상조사단에 전달되기까지는 시간차가 있기 마련이었으며, 재판에 참여하여 전문가의 설명을 청취하지 않은 경우 보고서를 해석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이처럼 형사재판지원팀에서 제공한 자료에 대해서 진상조사단에서 비중있게 다뤄지지 않고 형사재판절차와 진상조사는 별개인 것처럼 진행되는 가운데에서 진상조사에 대한 각 팀원들의 상황 인식이 괴리를 보이게 되고, 형사재판지원팀에서는 진상조사가 거의 다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진상조사단의 구성원들은 여전히 의문을 제기하기도 하였다. 또한 진상조사단에서는 의문을 가지고 조사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형사재판지원팀의 경우 그 의문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간과하여 공판기일에 얻을 수 있었을 중요한 단초들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흘려보내는 결과를 낳았다.

(마) 세월호 가족대책위에의 설명 부족

세월호 참사 원인에 대해서 다양한 의혹이 제기되었고, 세월호 가족대책위 차원에서도 의혹이 해명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다양한 시나리오들에 대한 문의가 있었다. 그러나 많은 부분에 있어서 재판 과정을 통해서 제시된 증거자료 및 증인 신문과정에서 의혹이 해소되었다.

그러나 꾸준히 재판에 참여하여 재판과정에서 제시된 일련의 증거들을 지켜본 세월호 가족대책위의 구성원들은 소수에 불과하였기 때문에, 광화문, 진도, 청운동, 국회, 안산 분향소 등지에 흩어져 특별법 제정을 위해서 투쟁하던 다른 세월호 참사 피해자 및 피해자 가족들은 이러한 사실을 알기 어려웠다. 진상조사단 차원에서 재판에서 밝혀진 실체 사실에 관하여 세월호 가족대책위의 총회에서 보고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어야 하지만, 인력의 부족 등으로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지 못한 결과, 세월호 참사의 원인에 대한 오해가 깊어지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5) 앞으로의 전망

(가) 팀별 정보공유 시스템 구축

진상조사단과 형사재판지원팀의 지휘관계 및 업무조율이 필요하다. 특히 형사재판지원팀이 진상조사단의 일부로서 형사재판에서 검찰을 통해 제시된 진상조사에 필요한 자료들을 공유하는 시스템을 구체화해야한다.

첫 번째로 진상조사단 팀장과 형사재판지원팀 팀장 간의 업무 조율이 필요하다. 형사재판지원팀이 진상조사단 산하의 팀으로 최초에 구성된 이상 전체적인 구조에서 볼 때 진상조사단에서 형사재판지원팀의 활동을 기

본적으로 파악하고 그 업무를 지시하는 관계가 구축되어야 반복적인 조사를 하지 않는 등 인력의 낭비를 최소화 할 수 있다.

두 번째로 형사재판지원팀에서 진상조사단으로 자료를 요약하여 진상조사단에서 보다 빠르게 공판진행과정 및 특이점들을 파악할 수 있도록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공판기일에 대한 속기의 경우 기본적으로 30페이지에서 50페이지에 달하는 등 방대한 양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전부 읽고 쟁점을 파악하는 것을 진상조사단 구성원 변호사들 전부가 수행하는 경우 업무의 낭비가 생긴다. 따라서 간략하게 정리하여 회람하고 의문이 생기는 변호사의 경우 속기록을 찾아보고 관련된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자료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

세 번째로 진상조사단 역시 형사재판의 진행에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자료를 읽고 피드백을 제공하여야 한다. 공판기일의 속기록을 회람하더라도 이를 실제로 읽는 진상조사단의 변호사들도 적었을 뿐만 아니라 피드백을 하는 경우는 손에 꼽을 만큼밖에 없었다. 이처럼 형사재판의 진행에 무관심할 경우 진상조사단에서 발견한 여러 가지 실체진실에 관련한 증거가 형사재판에 반영되지 못하고 단순히 연구에 그쳐 세월호 가족대책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결과를 발생시킨다.

따라서 형사재판이 시작될 때부터 진상조사단에서는 검찰의 수사 과정에 대해서 못 미더운 부분들이 다수 존재하였다고 하더라도 형사재판이 현 제도 하에서 진상조사를 위해서 가장 다양하고 방대한 양의 자료를 접할 수 있는 중요한 절차라는 점을 유념하고 최소한 공판준비기일부터라도 함께 형사재판 절차에 참여하여야 한다. 즉 공조체제를 공고히 하여 해양경찰 123정 경장에 대한 재판과 더불어 청해진 해운 임원과 선원들에 대한 각 항소심부터는 효율적으로 진상조사단과 형사재판지원팀이 운영될 수 있도록 업무를 조율하여야 한다.

(나) 전문가자문단 확보

검경합동수사본부 전문가자문단의 보고서를 비롯하여, 시민단체 등에서 제기된 세월호의 항로 및 운항에 관한 의혹을 해결하기 위해서 전문가에 의한 분석을 대한변협 차원에서 의뢰하여 진행할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된다. 첫 번째로 검경합동수사본부의 전문가 보고서에 대해서는 그 신뢰도에 대해서 검증이 필요하다. 나아가 세월호의 운항에 관련 하에 제기되는 다양한 의혹들에 대해서 해소하기 위해서는 전문가들에 의한 다양한 견해가 제시되고 이러한 것들이 재판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나 전문가에게 프로젝트를 발주하는 비용 자체가 2000만원 상당에 달하는 바 그 비용에 대한 확보 방안 등이 논의 되어야 한다.

(다) 세월호 가족대책위와의 정보 공유

형사재판에서 밝혀진 실체 진실에 관하서 변호사들 간의 정보 공유와 연구도 중요하나, 대형 참사 피해자 가족대책위에 이를 전달하고 이해시키는 과정이 필수적이었다. 이러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결과 '음모론'이라고 불리는 다양한 세월호 침몰 원인으로 주장되는 낭설들에 대해서 사실이라고 신뢰하는 세월호 참사 피해자 및 피해자 가족들도 일부 존재하였으며, 이미 밝혀진 사실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규명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 가족들 역시 다수 존재하였다. 물론 다방면으로의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세월호 참사의 원인에 대한 다양한 가능성을 제기하는 것으로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나, 이미 규명된 실체 진실에 관한 부분이 제대로 홍보되지 않아서 생기는 폐해가 크다.

한 예로 잠수함의 충돌로 인한 침몰이라는 의혹에 대해서는, 검경합동

수사본부 전문가자문단의 보고서에 따를 때 사고 발생 전후 AIS 항적을 살펴본 결과 급격하게 방향이 전환되는 등의 충돌 정황을 보인 바가 없으며, 나아가 세월호에 움푹 파인 부분이 있다는 증거로 제시된 사진 역시 단순히 페인트가 벗겨진 부분이며, 세월호에 구멍이 있다고 제시된 사진 역시 세월호를 새로 도색하기 이전의 사진을 볼 때 같은 구조에 설계상 있는 구멍인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이러나 사실에 대해서 세월호 가족 대책위에 대해 공식적으로 브리핑하거나 사실에 관해 정리한 자료를 배부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지 못하였고 현재까지 잠수함 충돌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은 반복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나. AIS 항적 찾기

(1) 활동내용

(가) 항적 관련 증거 자료의 미비점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AIS의 항적 기록에 대한 해양수산부의 발표는 잦은 번복을 계속했다. 해양수산부는 세월호 참사 다음날인 4월 17일 세월호의 항적 누락 구간이 8시 48분 37초부터 8시 52분 13초라고 설명했지만, 그 이후 나흘 뒤인 21일[46]에는 목포VTS AIS자료를 확보하여 8시 49분 13초부터 8시 52분 13초 사이 3분을 복구하였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여전히 8시 48분 37초부터 8시 49분 13초까지의 36초가 복원되지 않은 상태에

46) 해양수산부는 세월호 사고 다음날부터 3차에 걸쳐 3분 36초가 빠진 항적도를 복구하며 발표했다. 최초 발표에서 누락된 3분 36초 구간 때문에 J자 급변침 항적도가 되었고, 사고 초기 언론을 통해 급격한 변침이 침몰 원인으로 꼽히게 되었다. 4월 21일 2차 발표 시 목포VTS에서 3분 분량의 AIS를 확보했고, 4월 26일 최종 발표 시에는 진도VTS AIS자료를 확보하여 나머지 36초도 복구했다고 밝혔다.

서 닷새 뒤인 26일에는 36초도 복구했다고 설명했지만, 36초 중 이는 일부에 불과하며 29초간은 여전히 복원되지 않은 상태였다.

세월호의 선원, 청해진 해임 임직원, 해양경찰 사건에 증거자료로 제출된 AIS 항적 기록 역시 29초는 누락된 자료였다. 급변침의 시간이 명확하지 않은 것 자체부터 여러 의혹을 발생시켜 좌초, 충돌, 지그재그 운항에 의한 고의 침몰 등 세월호 침몰 원인에 대한 다양한 의문 제기의 원인이 되는 것이었다. 따라서 사라진 29초의 항적에 대해서 밝히는 것은 중요한 진상규명의 출발점이었으나, 사고 발생 이후 6개월이 지나서야 비로소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들과 세월호 가족대책위의 노력에 의해서 밝혀질 수 있었던 것이다.

(나) AIS 분석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세월호 특위 진상조사단은 세월호 가족대책위와 함께 2014년 6월 5일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 2014년 4월 16일 오전 7시부터 12시까지 레이더영상, AIS 기록, 세월호와 교신기록, 로그인기록 등 세월호 교신 관련 문서 및 녹음파일 일체의 진도VTS가 보유한 교신기록 등 자료에 대해 증거보전신청(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4카기502)하였다. 세월호 가족대책위는 진도VTS의 항적 자료를 확보한 뒤 법원이 결정한 전문 감정인을 통해 데이터를 복원한 포렌식 작업을 거쳤다.

또한 진성준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군 레이더 영상인 KNTDS 자료 등을 통해 데이터를 얻을 수 있었다. 세월호 특위 역시 KNTDS에 대한 증거보전신청을 하였으나, 국가안보문제 상 공개가 불가능하다는 해군 측과 계속해서 주장과 항변을 주고받으며 기일이 늘어졌고, 현재는 절차가 잠정적으로 중단된 상태이다.

4개월 간 해양수산부, 해양경찰, 검찰, 국방부 등 누구 하나 밝혀지지 않은 29초간의 항적을 찾는 데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는 점을 비추어볼 때, 세월호 특위가 세월호 가족대책위와 함께 이와 같은 활동을 진행한 것은 무척 의미 있는 것이었다. 자료를 얻은 후 진상조사단은 세월호 가족대책위와 함께 그를 재분석하기 시작하였다.

(2) 진상규명의 실태

(가) 자료의 확보

2014년 10월 11일 기자회견을 통해 세월호 가족대책위와 세월호 특위변호사들은 해양수산부, 해양경찰, 검찰, 국방부도 찾아내지 못했던, 세월호 침몰의 원인을 밝혀내는 데에 가장 중요한 29초, 즉 8시 48분 44초부터 8시 49분 13초 사이의 세월호 항적을 명확하게 특정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발표하였다. 이는 세월호 참사 후 6개월이 지난 뒤, 국가의 조사 능력으로도 밝혀내지 못한 사실을 세월호 가족대책위와 함께 한 세월호 특위 변호사들의 치열한 노력과 분석의 결과였다. 이미 세월호 선원들에 대한 결심 공판이 2주, 청해진 해운 임직원에 대한 재판의 경우 3주 앞으로 예정되어 있던 상황에서 피해자와 피해자 대리인이 손수 찾아낸 자료였다.

(나) 자료의 분석

진도VTS 정보는 AIS 기록보다 상위의 개념으로 AIS 기록을 비롯하여 레이더, VHF 통신 등을 전부 포괄한 것이다. 그러나 진도VTS 자료에 대

해서 해양수산부, 해양경찰, 검찰, 국방부 등을 비롯하여 법원, 검찰 역시 AIS 기록에 대해서만 집중하였고 이를 비전문적으로 분석한 결과 29초의 항적을 찾지 못하는 미흡함을 보였다.

변협 세월호 특위 진상조사단과 가족대책위는 진도VTS 자료에 대한 증거보전절차를 통해서 전체의 자료를 이미징을 통해서 복사해서 인도받았으나, 해당 자료를 분석하기 위하여 화면에 현출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특수한 프로그램을 설치 운용이 필요하였는데 이에 2000만원이 이상의 비용을 요했기 때문에 법원에 요청하여 진도VTS에 기기를 납품하는 회사의 협조를 받는 등 해당 자료를 분석하기 위해서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한 노력 끝에 진상조사단은 진도VTS 자료 중에 AIS 기록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 통신 기록 등 다양한 자료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세월호의 마지막 29초의 항적을 찾아낸 것이다. 정부 기관 및 법원과 검찰 역시 동일한 진도VTS 자료를 입수하여 분석하였으나 알아내지 못했던 일이다.

(다) 29초간의 항적의 의의

세월호가 급변침을 한 29초간의 항적을 찾아낸 것이 외부충돌, 좌초, 지그재그 운항에 대한 고의 침몰의 결정적인 증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기존에 급변침으로 인한 침몰 경로로 예측되었던 항로에서 큰 이변 없이 진행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러한 증명이 세월호의 침몰원인에 대한 진상규명의 첫걸음임에도 불구하고 국가 기관은 이에 대한 증명을 외면하고 방관한 가운데 피해자인 세월호 가족대책위와 세월호 특위 변호사들만의 힘으로 이루어낸 성과라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이와 더불어 진도VTS 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저장장치는 2개로 분리

되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각 저장장치 별로 AIS 항적 기록 등 다양한 자료가 조금씩 다르게 저장되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3) 문제점과 반성

정부가 29초의 기록이 누락되었으며 이를 제대로 밝힐 수 없다고 AIS 항적 기록에 대해 신중한 검토를 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이러한 정부의 조사, 수사의 태도에 대해서 항의를 해야 했다.

세월호 가족대책위와 세월호 특위가 찾아낸 29초 동안의 세월호의 마지막 항적은 새로운 정보로부터 취득한 것이 아닌 기존에 모든 기관에 제공되었던 진도VTS 정보를 분석한 것이다. 정부가 AIS 기록에만 매몰되어 이를 분석할 때 레이더, VHF 통신 등을 전부 분석하여 발견해낸 마지막 진실의 단초이다. 얼마나 정부가 서투르게 세월호 사건의 조사와 수사를 진행했는지 적나라케 보여주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지적하지 못했다. 그래서 정부가 세월호 침몰 원인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압박을 가해야 했고, 가할 수 있었던 업적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였다.

(4) 앞으로의 전망

세월호 특위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세월호 가족대책위와 함께 항적로를 밝혀냈다는 점은 고무적이다. 이제는 이를 통해서 밝혀진 여러 의문에 대한 추가적 규명에 힘써야 한다. 진도VTS 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진도VTS의 저장장치는 2개로 분리되어 있고, 기록된 AIS 항적기록이 저장장치별로 차이가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와 같은 부분 중 진상규명에 필

요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추가 진상조사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향후 발족하는 세월호 특별조사조사위원회에 이러한 세월호 특위 차원에서 이루어졌던 자료를 승계하고 추가 진상규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요청해야 할 것이다. 특히 제대로 진상규명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계속 감독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대한변협 차원의 세월호 특위 진상조사단의 역할은 계속 이어져야만 한다.

제2부 영역별 활동 내역

Ⅴ. 형사재판 지원 활동

Ⅴ. 형사재판 지원 활동

1. 개괄

가. 형사재판지원팀 결성의 필요성

세월호 참사로 육체적, 정신적 상해를 입은 피해자를 제외하더라도 295명이 사망하고, 9명이 실종되는 대규모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 세월호 참사는 과적, 안전 점검과 감독 소홀, 즉 안전불감증으로 인하여 발생했다는 점에서 1970년 12월 15일 발생한 남영호 침몰사고(사망자 326명), 1993년 10월 10일 발생한 서해훼리호 침몰사고(사망자 292명)와 유사하다. 반복된 사고라는 점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수학여행을 가던 고등학생들이었고, 이들이 어른들의 무책임과 무능으로 인하여 구조되지 못하였다는 점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큰 충격을 받았다. 화물기사 등 성인들은 조기에 빠져 나와 생존율이 높았지만, 학생들은 선원과 해양경찰(이하 “해경”이라 함)이 구조해 줄 것을 기대하고 선내에 대기하고 있었다가 탈출시기를 놓쳤다. 선장, 선원들은 승객들에게는 대기방송을 해 놓고는 다른 구호조치 없이 가장 먼저 탈출하여 해경에 구조되었다. 해경 또한 선내 진입이나 퇴선명령 등 적극적인 구조 활동을 하지 않아 대규모 사상으로 이어진 것이다.

생존자 및 사망, 실종자의 가족들 등 피해자들은 이 사고 자체뿐 아니라 사고 처리 과정에서 언론의 갖은 오보와 관계 당국의 미숙한 대응으로 인하여 2차적인 피해를 입은 상태였다. 이 때문에 사고와 관련한 수사 또는 재판과정에서 생존자나 유가족의 상황을 잘 고려하여 대처하지 못하는

경우 다시 피해가 발생할 것이 우려되었다.

그 동안 성폭력이나 아동학대로 트라우마를 입은 피해자가 수사 또는 형사재판과정에서 법원, 검찰 또는 방어권을 행사하는 피고인의 변호인으로부터 2차 피해를 입는 일이 종종 발생하였기 때문에 법원, 검찰에서도 세월호 참사 관련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수백명의 피해자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대한변협"이라 함)의 세월호 참사피해자지원 및 진상조사특별위원회(이하 "세월호 특위"라 함)는, 세월호 참사의 피해자들이 형사재판과정에서 2차적인 피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고, 재판과정에 최대한 피해자의 입장을 반영하는 것을 1차적인 과제로 삼고, 이를 담당할 형사재판지원팀을 결성하기로 하였다.

나. 형사재판지원팀의 피해자 보호 활동

실제로 형사재판지원팀은 법원, 검찰, 피해자 간의 의사소통 창구로서 피해자들의 요구사항을 법원, 검찰에 전달하여 일정 정도 피해자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받는 성과를 얻었다. 그리고 피해자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세월호 선장 이준석 외14인에 대한 살인 등 형사사건(광주지방법원 2014고합180, 이하 "선원사건"이라 함)에서는 2014년 6월 10일부터 2014년 11월 11일 선고기일까지 총 33회의 기일에 전부 참여하여 가족들에게 재판절차를 설명하고, 신문사항 및 절차에 대한 의견을 재판부에 전달하며, 재판을 방청하면서 고통을 느끼는 피해자들을 위로하는 등의 활동을 하였다. 또한 열람, 등사한 기록을 피해자들에게 전달하였으며, 그

외 검찰에 진정서 등을 제출하여 세월호 참사에 대한 수사결과를 추가 수집하기 위하여 노력했다. 또한 해경 123정장 김경일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 등 형사사건(광주지방법원 2014고합436, 이하 "해경사건"이라 함)에 대해서도 2014년 12월 1일부터 2015년 2월 11일 선고기일까지 총 8회의 기일에 전부 참여하여 피해자들에 대한 절차 안내, 검찰 및 재판부에 의견전달, 신문사항, 의견서, 변론재개신청서, 탄원서 제출 등을 하였다.

특히 절차적인 면에서는 눈에 띄는 성과가 있었다. 형사재판지원팀에서 담당 재판부에 지속적으로 필요성을 설명하여, 트라우마 때문에 장거리 이동이 어려운 안산 단원고등학교(이하 "단원고"라함) 학생과 화상을 크게 입은 화물 기사 등이 거주지 근처인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이하 "안산지원"이라 함)에서 법정외 신문을 받을 수 있었다(형사소송법 제165조[1] 참조). 또한 대법원 규칙이 개정되어 선원사건은 안산지원에서 재판이 중계되었다. 비단 이 사건뿐 아니라 앞으로도 대량의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의 재판이 피해자들의 거주지에서 먼 곳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피해자들이 거주지 근처에서 중계된 재판을 방청하게 될 수 있는 근거가 새로 마련된 것이다. 형사재판에서 피해자의 권리를 한층 강화시켰다고 평가할 수 있다.

또한 형사재판지원팀은 담당 재판부에 일반적인 트라우마 피해자들의 특성과 피해자들의 현재 심리 상태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하고, 적절한 대응방식을 이해시키고자 노력하였다. 이를 위하여 피해자들이 가족, 친구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죄책감, 불안감, 분노 등을 느끼고 있으므

1) 형사소송법 제165조 (증인의 법정외신문) 법원은 증인의 연령, 직업, 건강상태 기타의 사정을 고려하여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묻고 법정외에 소환하거나 현재지에서 신문할 수 있다

로, 재판 과정에서도 피해자의 상태를 고려한 용어를 사용하고 피해자들을 이해하고 지지해 줄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설명하고, 증인신문 과정에서 최대한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한 보호절차를 적용해 줄 것과 피해자가 진술할 기회를 충분히 제공해 달라는 내용의 의견서[2]를 제출하였다.

선원사건은 형사재판지원팀이 제출한 의견서의 내용이 충실히 반영되어 진행되었으므로, 재판 결과는 별론으로 하고 적어도 재판과정에서 보장된 피해자의 권리는 다른 형사재판과 질적으로 차이가 있었다고 평가된다.

다. 형사재판지원팀의 진상규명활동

형사재판지원팀은 재판절차에서의 피해자 보호뿐 아니라 진상규명활동에도 참여하였다. 형사재판에서 얻은 자료들을 진상조사단에서 활용하도록 하고 진상조사단이 밝힌 사실들을 다시 형사재판에 반영하는 것도 2차적인 과제로 삼은 것이다. 이 때문에 세월호 특위 조직도 상에서도 진상조사단의 산하에 위치하였다.

그러나 형사재판지원팀은 절차에서의 피해자 보호 외에 피해자들이 만족할 만한 수준의 진상규명활동을 하기에는 인력과 역량이 충분하지 않았다. 우선 진상조사단의 문제의식과 활동 내용을 충분히 전달받지 못한 상태에서 당장 시작될 재판을 앞두고 급히 결성되었고, 팀 구성도 거의 공개 모집한 인력만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또한 주로 재판이 광주에서 진행되어 서울이나 수도권에 있는 변호사들이 이에 참여하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 처음 적극적으로 자원한 변호사들도 본격적으로 재판이 진행되

2) 참고자료 5-1 선원사건 피해자 변호인 의견서(재판진행관련)

면서 상당수 팀 활동에서 이탈하였다. 그리고 기록은 18,000 페이지가 넘을 정도로 방대하고, 내용도 선박 운항에 관한 전문적인 내용이라서 대부분 서울에서 활동하면서 자원봉사로 참여한 팀 구성원들에게 기록 내용을 전부 숙지하고, 매주 1회 이상 진행되는 광주지방법원에서의 공판기일에 정기적으로 출석하여 사건을 진행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매우 어려웠다. 본격적으로 증인신문이 진행되면서 많게는 주 5회의 재판에 참여해야 하는 일정도 있었는데, 재판에 참석할 변호사들을 구하는 것도 쉽지는 않았다.

게다가 형사재판에서는 2014년 7월 말부터 증인신문 등 본격적인 심리가 이루어졌는데, 그 즈음 대한변협과 세월호 특위는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세월호 특별법"이라 함) 제정에 총력을 쏟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진상조사단 활동은 2014년 8월경 CCTV 복원 후에 비용 등의 문제를 이유로 거의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연계할 대상마저 불분명해져 버렸다. 결국 형사재판지원팀은 입수한 형사기록을 진상조사단에서 볼 수 있도록 세월호 특위 웹하드에 올리고, 진상조사단에서 포렌식한 결과를 검찰이 증거로 제출할 수 있도록 검찰 측에 전달하며, 진상조사단에서 활동하는 연수변호사 3인과 같이 재판에 참여하고 기일에 있었던 일들을 진상조사단 카톡방에 보고하는 정도로 연계를 하는 수준에 그쳤다.

형사재판지원팀 자체적으로는 모든 증인신문과 피고인신문에 추가적인 신문사항을 제출하여 조금이라도 피해자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을 밝히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그러나 피해자 변호인이라는 위치의 한계 및 비용, 시간, 역량의 문제로 사고원인과 관련하여 검찰에서 제출한 시뮬레이션보

고서의 내용을 검증하는 등 큰 틀에서 진상을 규명하는 작업을 주체적 적극적으로 할 수가 없다는 한계가 있는지라 하지 못하였으므로, 피해자들의 기대를 충족시키기에는 부족했다고 평가된다.

2. 구체적인 활동 내용

가. 형사재판지원팀 결성의 배경

(1) 세월호 참사 당일부터 수사가 개시됨

참사 당일부터 이준석 등 세월호 선장, 선원들에 대해서 수사가 시작되었는데, 대검찰청과 해양경찰청은 다음날인 2014년 4월 17일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에 검경합동수사본부를 꾸리기로 결정했다. 수사는 급물살을 타서 2014년 4월 18일 선장 이준석, 3등 항해사 박한결, 조타수 조준기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 이 때 선장 이준석에 대해서는 특정범죄의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선박)[이하 "특가법위반(도주선박)"이라 함], 유기치사, 과실선박매몰, 수난구호법위반, 선원법위반 혐의가 적용되었다. 이때까지는 살인죄가 적용되지 않았던 것이다.

2014년 4월 22일에는 1등 항해사 강원식, 견습 1등 항해사 신정훈, 2등 항해사 김영호, 기관장 박기호가 구속되었고, 이틀 후인 24일, 25일에 걸쳐 나머지 선원 8명이 구속되었는데,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유기치사상 및 수난구호법위반이었다.

또한 이들 뿐 아니라 주식회사 청해진해운(이하 "청해진해운"이라

함)의 대표이사 김한식이 2014년 5월 9일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구속되는 등 세월호 참사와 관련하여 승객 사망에 직접 책임 있는 사람들 뿐 아니라 세월호의 불법 운항에 책임이 있는 자, 이로 인하여 불법적인 이익을 얻은 자들이 순차적으로 구속되었다.

(2) 세월호 특위에서 수사와 별개의 증거수집을 시작함

세월호 참사에서 생존한 학생들은 홀로 탈출한 선원 뿐 아니라 선내에 진입하거나 퇴선명령을 하는 등 적극적인 구조활동을 하지 않는 해경에 대해서 초기부터 문제제기를 하였다. 유가족들 역시 사고 직후 찾아 간 사고 현장에서 해경이 민간 구조 활동을 방해한다거나 적극적인 구조 활동을 하지 않은 모습을 직접 목격하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에서는 “지상 최대의 작전” 운운하는 보도를 하여 해경에 대한 불신이 깊었다. 따라서 해경이 참여하고 있는 검경합동수사본부에서 과연 세월호 참사의 발생 및 구조 과정에서의 문제를 제대로 수사하여 처벌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

더구나 수사기관에서 유가족의 동의 없이 사망자의 휴대폰을 수거해 간다거나 사망자나 주변인의 통화기록이 삭제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이 때문에 피해자들은 검경합동수사본부에서 휴대폰을 수거하여 포렌식 작업을 하는 것에 반발하여 협조를 거부하기도 하였다.

때문에 세월호 특위는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휴대폰을 수거하여 전문가에게 포렌식 작업을 의뢰하였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부담했다. 작업 결과는 검찰에 제출하여 형사 사건에 증거로 사용되

도록 하였을 뿐 아니라 자녀의 흔적을 가지고 싶어 하는 유가족들에게도 휴대폰에서 추출한 문자, 사진, 동영상 등을 USB포트에 담아 제공하였다. 이렇게 세월호 특위가 포렌식하여 제출한 결과는 재판과정에서 선장, 선원들이 구체적으로 몇 시에 어떤 구호조치를 했는지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로 사용되었다.

(3)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자들이 기소됨

(가) 기소 현황

2014년 5월 15일 이준석 선장 등 선원 15명이 광주지방법원 2014고합180호(선원사건)로 구속기소되었다. 선장 이준석, 1등 항해사 강원식, 2등 항해사 김영호, 기관장 박기호에 대해서는 이례적으로 살인 및 살인미수죄가 적용되었다. 세월호가 침몰하고 있고, 승객들이 안내방송에 따라 선내대기하고 있으므로 퇴선명령 등 구호조치를 하지 않으면 승객들이 사망에 이를 수 있음을 인식하고도 이를 용인하는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구호조치 없이 퇴선하였다는 이유에서였다. 즉, 부작위에 의한 살인을 인정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는데, 이의 입증 여부를 두고 재판 내내 관심이 집중되었다.

또한 선장 이준석, 1등 항해사 강원식, 사고 당시 운항을 맡고 있었던 3등 항해사 박한결, 조타수 조준기는 업무상과실로 세월호를 침몰시켰다는 이유로 업무상과실선박매몰죄가 적용되었다. 선장 이준석은 선장으로서 선박에 급박한 위험이 발생하였음에도 구호조치를 하지 않았으므로 선원법위반죄도 적용되었다. 그리고 선원사건의 모든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직

접 또는 예비적으로 유기치사상죄가 적용되었는데, 그동안 재난 사고에 있어서 보통 관련자들을 업무상과실치사상으로 처벌하였던 전례에 비하여는 강력한 대응이라고 평가된다.

그밖에 2013년 10월 31일부터 시행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2[3]가 처음 적용되었는데, 선박 간의 충돌 사고가 아닌 경우에도 이 규정 및 수난구호법 제18조 제1항 단서[4]가 적용될 수 있는지 또한 중요한 법적 쟁점이었다.

검경합동수사본부는 선원사건의 공소제기를 계기로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수사설명회를 개최하여 공소장에 기재된 세월호의 침몰 원인, 적용 법조, 최고 형량들을 설명하였다. 그 외 유병언 관련 비리, 해운조합 관련 비리,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선사 측 수사 현황에 대해서도 중간보고를 마쳤다.

이후 세월호의 개조, 과적, 불량 고박에 대한 책임과 관련하여, ① 2014년 5월 26일 청해진해운의 대표이사 김한식 등 임직원 5명(광주지방법원 2014고합197), ② 2014년 6월 5일 추가로 청해진해운의 임직원 2명(광주지

3)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2 (도주선박의 선장 또는 승무원에 대한 가중처벌) 「해사안전법」 제2조에 따른 선박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선박의 선장 또는 승무원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수난구호법」 제18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 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수난구호법 제18조 (인근 선박등의 구조지원)
① 조난현장의 부근에 있는 선박등의 선장·기장 등은 조난된 선박 등이나 구조본부의 장 또는 소방관서의 장으로부터 구조요청을 받은 때에는 가능한 한 조난된 사람을 신속히 구조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조난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선박의 선장 및 승무원은 요청이 없더라도 조난된 사람을 신속히 구조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방법원 2014고합209), ③ 2014년 6월 5일 고박업체인 주식회사 우련통운(이하 “우련통운”이라 함) 직원 및 해운조합 직원 등 4명(광주지방법원 2014고합211)이 각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으로 기소되었는데, 위 ①, ②, ③ 사건(이하 “선사사건”이라 함)은 병합심리되었다.

이외에도 계속해서 2014년 6월 11일 선박안전설비 점검업체 한국해양안전설비 주식회사 임직원 4명(광주지방법원 2014고합224), 2014년 6월 16일 한국선급 직원 1명(광주지방법원 2014고합218), 2014년 10월 6일 해경 123정장 김경일(광주지방법원 2014고합436) 등이 기소되었다. 또한 유병언의 비리와 관련한 사건은 인천지방법원에서 진행되었다. 2014년 10월 6일 검찰의 최종수사발표에 의하면, 발표일 기준으로 세월호 참사와 관련하여 399명이 입건되었고 그 중 구속기소된 사람은 총 154명이라고 한다.

(나) 검찰의 기소 및 공소유지 논리

유병언의 비리를 제외하고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사건에서 검찰이 의율한 적용법조는 크게 두 유형으로 범주화할 수 있다. ① 첫째는 사망, 실종자 304명의 생명 침해에 관한 적용법조와 ② 둘째는 선박 운항 안전성을 담보하거나 선박의 침몰 자체를 탓하는 것 등으로 구성요건에서 생명침해를 직접 요구하지 않는 것이다. 첫 번째 유형으로, 살인(형법 제250조)[5], 특가법위반(도주선박), 유기치사상(형법 제275조)[6], 업무상과실치상(형법

5) 형법 제250조[살인]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6) 형법 제275조[유기등 치사상] ① 제271조 내지 제273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71조[유기] ① 노유, 질병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부조를 요하는 자를 보호할 법률상 또는 계약상 의무있는 자가 유기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68조)[7]이 있다. 이같은 승객 생명침해와 관련된 피고인으로는, 선원사건의 피고인인 선장, 선원 15명 전부, 선사사건의 피고인인 청해진해운 및 우련통운 등 임직원 10명, 해경사건의 피고인인 해경 123정장이 있다.

둘째 유형으로, 선박 침몰 자체를 탓하는 것으로 업무상과실선박매몰(형법 제189조)[8], 선박 운항 중 좌초, 침몰 시 의무 위반에 관한 것으로 수난구호법위반(수난구호법 제43조)[9], 선원법위반(선원법 제161조)[10][11], 선박 운항의 안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선박안전법위반(선박안전법 제86조)[12], 선박 운항 중 기름 유출에 관한 것으로 해양환경관리법위반(제

---

7)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8) 형법 제189조[업무상과실] ②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제185조 내지 제187조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187조[기차 등의 전복등] 사람의 현존하는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또는 항공기를 전복, 매몰, 추락 또는 파괴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9) 수난구호법 제4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생략
2. 제18조제1항 단서에 위반하여 구조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10) 선원법 제161조[벌칙] 선장이 제11조를 위반하여 인명을 구조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선박 및 화물을 구조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선원법 제11조[선박 위험 시의 조치] 선장은 선박에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인명, 선박 및 화물을 구조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다하여야 한다.

11) 선박법위반은, 선장이란 신분범의 구호의무 위반을 처벌하는 것이어서, 선원재판에서는 이준석 선장만이 처벌대상이다.

12) 선박안전법 제8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8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복원성을 유지하지 아니하고 선박을 항해에 사용**한 자

선박안전법 제28조[복원성의 유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소유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복원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예인·해양사고구조·준설 또는 측량에 사용되는 선박 등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여객선
2. 선박길이가 12미터 이상인 선박

127조)[13]을 들 수 있다.

전체적으로 평가하자면 검찰은 관련자들을 공범으로 묶거나, 개개 범법행위 또는 주의의무 위반이 총체적으로 결합된 범죄에너지가 세월호 침몰을 야기하고 더 나아가 생명침해를 결과하였다는 전제에 서서, 각 단계별로 피고인과 생명(법익) 침해와의 거리에 따라 각 죄책을 포섭시키고 있다. 그 결과 ① 증개축시 복원성 검사에 소홀한 한국선급 직원(2014고합218), 구명벌 검사에 소홀한 한국해양안전설비 주식회사 직원(2014고합224), 해운조합 직원 등은 대부분 업무방해로 의율하고, ② 무리한 증개축, 고박불량을 지시하거나 묵인한 청해진해운 임직원, 이를 직접 실시한 우련통운 직원은 법정형 5년 이하의 업무상과실치사상로 의율하였지만, 이들의 지시를 받고 운행하였지만 결정적으로 승객을 구조해야 할 순간을 방치한 선장, 선원들에게는 비교적 높은 형량의 죄를 적용했다. 즉, ③ 선원 중 직책이 낮거나 변침 과실과는 무관한 자들에게는 법정형 3년 이상의 유기치사로, ④ 직책이 높거나 변침 과실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선장 및 선원들에게는 법정형 5년 이상에서 사형까지 가능한 살인 또는 특가법 위반(도주선박)을 적용한 것이다.

선원사건에서 검찰의 기본적인 논리는 다음과 같다. 즉, 세월호가 출항시부터 선박복원성에 큰 문제가 있었고, 피고인들은 위 선박복원성에 관한 충분하고 깊은 인식이 있었는데, 운항상 과실에 기한 급격한 변침으로 복원성상실의 위험이 현존하였음에도, 수난구호법 제18조 제1항 단서가 요구하는(법규) 또는 운항계약에서 파생되거나 변침 과실이란 선행행위가

13) 제12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과실로 제2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선박 또는 해양시설로부터 기름을 배출한 자

야기하여 형성된 요보호자 지위를 저버리고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더 나아가 승객의 안전을 포기하고 홀로 탈출하였다는 것이다. 요컨대 검찰은 이들 피고인들에게 요구할 수 있는 구호의무의 전제를, 선박복원성 상실과 운항 상 조타과실(급변침)에서 찾고 있는 것이다.



[선원 등 형사재판법정, 연합뉴스]

검찰이 들고 있는 선박복원성의 약화 및 상실 요인은, ① 증개축 과정에 선미 4, 5층에 객실 및 전시실을 증설하고, 선수의 40톤 상당 카램프를 철거함으로써, 좌우불균형에 더하여 선수가 더 가벼운 전후불균형이 발생한 점[14], ② 화물운송으로 이윤을 남겨야 했으므로, 화물 및 차량을 과적하는 대신[15] 평형수, 적재유, 청수를 모두 덜 채우고 출항한 점, ③ 컨테이너 고박은 콘과 트위스트 락과 함께 ×자형으로 라싱(lashing 고박)하여야 하고, 차량은 앞뒤 라싱밴드 4가닥을 연결하여 고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는 컨테이너 2단 상단을 로프로 둘러 묶거나 차량은 앞뒤 2가닥만 연결하는 방식으로 허술하게 고박한 점이다. 검찰은 세월호 참사의 원인에 대해서, 세월호가 출항 시부터 취약한 복원성 하에서 맹골수도

14) 증설 후 무게중심이 11.78m로서 증설 전보다 약 51cm 높아졌다고 한다.
15) 공소장에 의하면, 세월호가 복원성을 유지하면서 적재할 수 있는 화물의 최대치는 1,077톤인데 비해, 실제로는 2,142톤을 적재하여 1,065톤을 초과 적재하였다고 한다.

를 지나던 중, 선장 이준석은 자리를 비우고 당직 3등 항해사 박한결의 지시로 조타수 조준기가 우현 변침을 시도하다 원하는 대로 변침이 이루어지지 않자 당황하여 임의로 조타기를 우현 측으로 대각도로 돌리는 잘못을 저지르는 바람에 선수가 우회두하면서 외방경사의 영향으로 선체가 좌현 측으로 급속이 기울어졌고, 고박이 허술한 화물이 한쪽으로 쏠리면서 아예 복원력을 상실하여 8시 52분경 정지하고, 9시 34분 3초경 52.2도로 기울기 시작하여 10시 17분 6초에 108.1도로 전복된 것으로 보았다.

이러한 상태에서 선원사건의 피고인들은 인근 관제와 선박 등에 신속히 구호요청하고, 승객을 구조가 용이한 갑판 등에 대기시키고 안전하게 퇴선하도록 선내 방송설비, 무전기, 전화, 기적 등을 이용하거나, 구명뗏목과 슈터의 투하 등을 할 의무가 있음에도, 선내대기 안내방송 후 추가적인 구호조치를 포기하고 승객들을 방치한 후 해경 123정에 탑승하여 탈출하여 대량 사상으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나. 형사재판지원팀의 구성

(1) 팀 결성과정 및 기본 구조

선원사건 재판이 2014년 6월 10일 시작될 예정이었으나, 당시까지도 유가족들은 가족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해 사망신고도 하지 못하는 등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 때문에 이들이 재판과정에서 2차적인 피해를 입을 것이 우려되었고, 증언을 해야 할 생존자들에 대해서도 가능한 최대한으로 형사소송법상 증인 및 피해자 보호 절차를 적용해야 할 필요성이 컸다.

세월호 특위에서는 재판이 피해자들의 상태 및 의사를 고려하여 진행될 수 있도록 피해자 변호인으로 활동할 형사재판지원팀을 꾸리기로 하고, 김희수 변호사를 팀장으로 정하였다. 김희수 변호사는 서해훼리호 침몰사고의 수사검사였는데, 세월호 참사가 서해훼리호 사고와 유사점이 있었기 때문에 사건기록을 검토하여 서해훼리호 사고 수사 당시 미진하였던 부분이 반복되지 않도록 한다는 계획도 있었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상 피고인의 변호인은 공소제기와 동시에 검찰의 수사기록을 모두 열람, 등사할 수 있으나, 피해자 변호인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가 법정에서 증거조사를 거쳐 법원에 제출된 이후라야 이를 입수할 수 있게 되어 있으므로[16], 이러한 계획은 실현되지 못하였다.

당초 자원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활동할 의지와 여건에 있는 변호사들 몇 명을 팀의 주축으로 꾸리려고 하였으나, 참여를 권유받은 공익전담 변호사들은 500여명의 공익법률지원단이 있으므로 자기까지 참여할 필요가 없다는 등의 사유로 이를 거절하였다. 500여명이라는 공익법률지원단은 규모면에서는 고무적이었으나, 활동의 내실 면에서는 "이렇게 나

16) 형사소송법 제294조의4 (피해자 등의 공판기록 열람·등사)
①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하거나 그 심신에 중대한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포함한다), 피해자 본인의 법정대리인 또는 이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피해자 본인의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변호사는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재판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 재판장은 제1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재판장은 피해자 등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범죄의 성질, 심리의 상황,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할 수 있다.
④ 재판장이 제3항에 따라 등사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등사한 소송기록의 사용목적을 제한하거나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소송기록을 열람 또는 등사한 자는 열람 또는 등사에 의하여 알게 된 사항을 사용함에 있어서 부당히 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거나 수사와 재판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제3항 및 제4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말고도 할 사람이 많다" 는 생각을 불러와 활동에 장애가 되기도 하였다.

팀이 결성되는 과정에서, 형사재판지원팀이 진상조사단 산하에 있으므로 관계를 어떻게 맺어가야 할지, 현재 진상조사단에서 어떤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진상조사단에서 형사재판에 기대하는 바는 무엇인지 충분히 공유되지 못했다. 형사재판지원팀 결성시 진상조사단과 공동 회의가 필요하였으나, 재판기일을 코앞에 두고 선임계를 작성하는 일이 벌어져 목표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리지 못하고 당장의 과제를 해결하는 식으로 팀 활동이 시작되었다.

(2) 서울, 광주, 인천팀의 역할 분담

형사재판지원팀은 공익법률지원단 전체를 대상으로 한 공개모집을 통하여 36명이 모였다. 특히 광주지역에서 재판이 많이 이루어지는 점을 고려해서 세월호 특위에서는 광주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를 중심으로 꾸려진 광주지원단에 재판지원을 담당할 팀을 따로 꾸려 줄 것을 요청하였다. 광주지원단은 국중돈 변호사가 단장, 김상훈 변호사가 간사가 되어 총 20명 변호사가 진도 팽목항에서의 법률지원을 담당하고 있었는데, 그 중 12명이 팀을 구성하여 재판지원을 하기로 하였다. 광주팀은 기록 복사 및 제출, 출석 등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형사재판지원팀은 2014년 5월 31일 첫 모임을 가졌는데, 사건이 진행되고 있는 관할지를 고려하여 서울팀, 광주팀, 인천팀으로 나누었고, 이후 부산팀, 제주팀도 구성할 계획이었으나 인력이 충원되지 않아 부산팀, 제주팀은 구성되지 않았다. 서울팀에서는 피해자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선원사건에 피해자 변호인으로서 기록검토, 의견서 제출, 피해자 진술 신청 및 지원, 재판 참여 및 모니터링, 피해자 가족에 대한 방청권 배부 및 재판 참여 안내 등을 하기로 하였다.

광주팀은 선사사건을 전담하기로 하여 2014년 6월부터 8월까지 재판모니터링을 하였다. 그런데 선원사건의 공판기일이 주 1회에서 2-3회로 늘어나게 되어 광주팀도 2014년 8월 말부터 선원사건에 집중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서 선사사건은 중요한 증인신문이 있거나 결심공판, 선고기일 등 가족들이 참여할 때만 피해자 변호인도 참여를 하기로 하였고, 대신 공판조서를 입수하여 재판진행상황을 확인하였다.

인천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유병언 관련 비리 사건은 인천팀에서 2014년 6월부터 모니터링 활동을 하였다. 그런데 그 내용이 업무상횡령, 배임 등 세월호 참사와 직접 관련 있는 부분이 아니고, 심리되는 범죄에 대해서 피해자의 지위가 인정되는 것도 아니라서 2014년 8월 이후로는 선고되고 난 다음 판결문을 입수하는 것으로 활동을 정리하였다. 이 밖에도 인천팀은 일반인 대책위와의 연계를 담당하였다.

(3) 팀구성에서의 구조적 한계에 따른 역할 변화

형사재판지원팀은 전체 공익법률지원단을 대상으로 한 모집에서 36명만이 지원하였고, 2014월 5월 31일 열린 각 팀 모임에서도 다른 팀과 달리 4명밖에 참여하지 않았는데, 서울팀장 대행, 광주지원단장, 인천팀장을 제외하면 실제 공개 모집한 변호사 중에서는 한 사람만 참여한 것이었다.

당시 진상조사단나 입법지원단, 법률상담지원단에는 많은 변호사들이 지원하였고 첫 모임에도 많은 수가 참여하였는데, 변호사 본연의 업무인 재판지원에 이와 같이 참여가 저조했다는 사실은 여러 가지 시사점이 있다.

먼저 공익법률지원단에 자원한 변호사들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하여 정의감으로 참여의사를 밝혔지만, 재판이라는 장기 프로젝트에 변호사로서 해야 할 본연의 업무들을 무료로 감당할 정도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진상조사단은 당시 피해자에 대한 진술청취, 법률상담지원단은 피해자 상담 등 피해자들에게 직접 도움을 주는 활동들을 하는 반면, 형사재판지원팀은 피해자가 아니라 주로 법원, 검찰 그리고 기록을 상대로 하는 일을 했고 형사소송법상 피해자 변호인이 할 수 있는 일에도 한계가 있었다. 무엇보다 형사재판을 지원하려면 광주지방법원까지 재판을 다녀야 하는데, 서울에 있는 변호사들로서는 서울에서 광주까지 하루종일 걸려서 재판을 다닐 엄두가 나지 않았던 것같다. 이 때문에 피해자 지원이라는 공익활동에서의 만족감이 덜했던 것으로 보인다. 형사재판지원팀의 활동이 본격화되면서 만족감은 덜하고 결과에 대한 부담은 큰일을 무료로 하라고 하는 구조가 과연 적합한가에 대한 문제제기가 계속되었다.

서울팀은 지원한 변호사들을 카톡방으로 초대하고, 팀 내 할 일도 각 피고인별로 담당 변호사를 지정하여 해당 피고인 신문 시 재판 참여, 신문사항 작성, 관련 기록 검토 후 의견서 작성, 수난구호법 위반 등 법적 쟁점에 대한 의견서 제출, 법원, 검찰, 피해자 간 의사창구 역할 및 전체 일정 조율 등으로 분담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처음 정의감으로 지원한 의도와 달리 해야 할 일은 변호사로서 한 사건을 처리하는 수준 이상이 되

는 것을 보고 엄두가 나지 않은 사람들은 초기에 팀 탈퇴 의사를 밝혔다.

또한 각 피고인별 담당을 지원하는 등 열의를 보인 변호사들도 막상 일을 하려고 보니 방대한 기록을 다 보기도 어렵고, 재판이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리기 때문에 한 기일이라도 참석하기 위해서는 하루 종일 시간을 내야 하는 상황이라서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2014년 8월 이후로 카톡방에서 자발적으로 일을 분담하겠다고 나서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었다. 처음에는 진상조사단에서 재판기록을 보고 형사재판에 반영해야 할 내용을 정리해 주는 방식으로 협업을 하기로 하였으나, 실제로 협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자발적 참여에만 의존하다보니 2014년 7월 말경부터 재판기일이 주 2-3회로 늘어난 이후로는 재판 기일에 참여할 변호사를 섭외하는 일이 가장 어려운 일이 되었고, 팀의 간사가 기록을 보거나 재판에 참여하여 알고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재판에서 필요한 사항을 정리해 주면, 시간이 되는 변호사가 하루 봉사하는 차원에서 재판에 참여하는 상황이 반복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익법률지원단을 대상으로 한 팀원 충원 또는 세월호 특위에서 형사재판 전담 변호사를 지정하여 한 변호사가 기록을 검토하고 사건 내용을 유기적으로 이해한 다음 신문사항 및 의견서를 작성해야 하지 않냐는 문제제기가 있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실현되기 어려웠으므로, 형사재판지원팀은 현실에 맞게 일의 범위를 정리하기로 하였다. 서울팀과 광주팀이 모두 선원사건에 전념하고, 진상조사단에서 활동하던 연수변호사 4인과 같이 재판참여를 하는 방법으로 팀 역할을 개편했고, 진상규명에 대한 역할도 형사재판 절차에서 피해자들이 궁금해 하는 부분을 확인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4) 사건의 특성으로 인한 한계에 따른 역할 변화

일반적인 형사사건의 경우 피해자, 피고인 등 당사자가 사건의 내용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는 것이 보통이다. 검찰은 여러 사건 중 하나로 처리하기 때문에 피해자와 접촉이 잦은 피해자 변호인이 검찰보다 사건의 진상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있게 되므로, 피해자 변호인이 검사 옆에 앉아 신문 시 필요한 내용을 바로바로 검사에게 알려 주거나 피해자가 가진 증거를 제출하는 등 실체적 진실 발견에 기여할 수 있는 역할이 많다.

그러나 세월호 참사의 경우 피해자들이 워낙 광범위하여 재판을 지원하고 있는 피해자 변호인이 검사보다 피해자와 더 많이 접촉을 했다고 보기도 어려웠다. 무엇보다 어려운 것은 생존 학생들이나 그 부모들은 트라우마를 치료해야한다는 이유로 변호인들과의 접촉이 거의 차단되어 있었고, 증언을 위한 최소한의 접촉만 이루어졌다는 사실이었다. 검찰은 여러 명의 검사들이 오직 이 사건만 수사하여 공판에 참여하고 있으며, 그 내용도 전문적인 것이라서 사건에 대한 이해도 면에서 피해자 변호인보다 나은 상태였다. 하지만 생존 피해자들이나, 유가족, 실종자 가족들은 현장지원팀이나 진상조사팀과는 수시로 만나서 신뢰관계는 형성되어 있고 사실관계도 잘 알고 있었지만, 가족으로만 사건을 접하면서 재판을 진행해오는 재판지원팀 변호인들은 증언이나 진상규명에 있어서 검찰과 별개로 피해자 변호인으로서 할 수 있는 역할에 한계가 있었다.

예를 들어 진상조사단에서 사건의 내용을 세세하게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생존한 단원고 학생들에게 추상적으로 사고 및 탈출 상황에 대해서 말해 보라고 진술청취를 하였을 때 학생들은 두루뭉술하게 대답하였다.

반면, 담당 검사가 이전 수사자료를 토대로 사건에 대해서 매우 구체적으로 지적하면서 진술청취를 하였을 때 학생들은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한 일이 있었다.

이 때문에 형사재판지원팀은 독자적인 진상규명보다 검찰이 요구하는 증거를 피해자들로부터 입수하고, 피해자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을 신문에 반영하는 식으로 활동 방향을 수정하게 된 것이다. 이는 피해자들이 기대하는 역할과는 차이가 있는 것이어서 이러한 상황을 피해자들에게 공개하고 피해자들이 기대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피해자 변호인을 새로이 선임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문제제기도 있었다.

다. 선원사건에 대한 피해자 변호인 활동

형사재판지원팀은 선원사건에 가장 집중하였다. 그 이유는 이 재판이 가장 먼저 진행되었고, 피해자들도 세월호에 함께 타고 있다가 승객들에게는 가만히 있으라고 명령해 놓고는 자신들만 빠져 나온 선장, 선원들에 대한 분노감이 가장 커서 이 재판에 가장 관심이 많았기 때문이다. 또한 언론이나 대국민적으로도 세월호 참사와 관련하여 이 사건에 대하여 가장 관심이 집중되어 있었다.

(1) 공판준비기일 전 활동

형사재판지원팀은 희생된 단원고 학생 및 교사의 유가족과 생존학생의 법정대리인들을 중심으로 가족관계증명서 등 선임계 제출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여 2014년 6월 2일 피해자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였다. 그리고

2014년 6월 3일 공소장, 답변서, 증거, 조서 등 모든 형사기록에 대한 열람, 등사를 허가해 달라는 내용의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들은 잘못된 언론 보도,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의 명예훼손적 발언, 정부의 초기 대응 미숙 등으로 인하여 사고로 인한 충격에 버금갈 만큼 추가 피해를 입었으며,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를 크게 상실한 상태라는 점, 아무런 잘못 없이 자녀가 수학여행을 갔다가, 또는 본인이 여행 등을 갔다 갑작스러운 사고를 당한 입장으로 수사기록 이외에는 어떤 정확한 정보도, 사건경위도 파악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피해자들에 대한 증거기록의 열람·등사마저 제한된다면 피해자들의 알권리와 정보접근권은 지나치게 제한되고 억울함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점, 세월호 참사는 단순한 개인 범죄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병폐가 결집하여 발생한 사건이기에, 대통령을 비롯하여 사회 구성원 모두가 책임을 통감하고 있고, 철저히 원인을 규명하고, 처벌과 제도 개선을 통해 재발을 방지해야 한다는 점에 대하여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이므로, 피고인들의 개인적인 법익에 비하여 피해자들의 권리구제 필요성 및 위와 같은 사회적 합의의 실현 필요성이 현저히 높다는 점을 전체 기록 열람, 등사의 필요사유로 기재했다.

그리고 세월호 특위 공동위원장들이 광주지방법원 및 광주지방검찰청을 방문하여 피해자들의 상황과 심리적 특성을 설명하고, 재판절차 진행에 있어서 이러한 피해자들의 특성을 고려해 줄 것과 피해자 변호인에게 될 수 있는 한 많은 참여를 허락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수사기록에 대한 일괄 복사나 피해자 변호인이 검사의 옆에 배석하는 것 안산지원에서의 증인신문, 안산지원에의 비디오 재판중계 등은 근거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허용되지 않았으나, 법정에 제출된 기록은 특별한 제한 사유가 없는 한 열람, 등사할 수 있게 되었다. 일반적인 형사 사건에서 피해자에게 공소

장 정도만 열람, 등사가 허용되었던 것과 비교하면, 이 사건에서는 절차적으로 피해자들에게 법적으로 인정되는 최대한의 권리를 보장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세월호 특위는 특히 재판정에서 질서 유지 등을 담당하는 법원 직원들이 피해자들의 현재 상태와 이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등을 사전에 교육을 받는다면, 법정 안내 등의 과정에서 섬세하게 피해자들을 배려할 수 있지 않겠냐고 제안하였다. 다행히 법원에서도 그 필요성을 인식하였던지라 피해자들의 심리치료를 담당하는 전문가를 섭외하여 법원 직원에 대한 트라우마 관련 사전교육을 자체적으로 시행하였었다.

또한 형사재판지원팀에서 활동하려는 변호사들 역시 사건 참여 중 생존학생 또는 유가족들을 만나야 하므로, 2014년 5월 3일 및 2014년 5월 30일 두 차례에 걸쳐 세월호 특위의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피해자들의 심리상태나 트라우마 등을 언급하는 워크샵을 진행하였다. 2014년 6월 6일 안산에서 생존학생이나 유가족의 심리상담을 지원하고 있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인 정혜신 박사를 초청하여 피해자들의 현재 상황이나 유의해야 할 점에 대한 강연을 들었고,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형사재판지원팀은 강연에서 논의된 내용을 포함하여 피해자들의 심리상태 및 재판진행에 대한 의견서[17]를 작성하여 2014년 6월 9일 담당 재판부에 제출하였다.

의견서에서는 직접적으로 세월호에 탑승한 승객 뿐 아니라 그 가족들의 경우도 현재 자책, 분노, 회피 등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을 겪고 있다

17) 참고자료 5-1. 선원사건 피해자 변호인 의견서(재판진행관련)

는 점을 설명하고, 아직 가족의 죽음을 수용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직접 죽음을 암시하는 용어보다는 현재 가족들끼리 사용하고 있는 용어를 사용해 달라는 요청, 절차에 대한 쉬운 설명, 피해자 진술 기회 보장, 증언 시 피해자 보호 요청 등이 담겨 있었다.

담당 재판부는 피해자 변호인 측이 제출한 의견서의 내용을 수용하여 피해자들이 방청 과정에서 격한 반응을 보여 퇴정을 시킬 때도 "많이 힘드신 상태이니 잠깐 쉬시고 들어오시는 게 좋겠다."라는 식으로 완곡하게 표현하는가 하면 피해자들을 위해 쉬운 말로 재판절차를 설명해주는 등 이러한 세심한 배려를 해 주었다. 또한 증인지원관실에 피해자들을 위한 두통약이나 간단한 간식 음료 핸드폰 충전기 잭 등을 구비해두고 법원 구내 식당을 피해자들을 위해 제공해주기로 하였다. 이 때문에 재판을 방청한 피해자들도 재판 절차에 대해서는 대체로 큰 불만을 가지지 않았다.



[형사재판, 연합뉴스]

⑵ 공판준비기일에서의 활동

2014년 6월 10일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렸는데, 4·16세월호참사 이후

피해자들이 처음으로 사고 발생에 책임이 있는 선장, 선원들을 대면하는 자리라서 충돌이 우려되었다. 이 때문에 세월호 특위 공동위원장, 현장대응지원단장, 형사재판지원팀장, 광주지원단장 등 8명의 변호사가 재판참여를 하였다. 안산에서 새벽 5시에 출발하여 광주로 내려가는 버스 3대에도 변호사가 각 동행하여 형사재판지원팀에서 작성한 재판안내문과 방청권을 배포하고, 재판 절차와 국선변호인의 역할 및 공소사실과 피고인들의 답변 내용, 일반적인 주의사항 등을 설명하였고[18], 재판을 마치고 안산으로 돌아오는 버스에도 변호사들이 한 명씩 타서 그날 있었던 재판 내용이나 앞으로 준비해야 할 사항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재판 시작 전 법정 안에 플랫카드를 게시하길 원하는 피해자 측과 법정 경위들이 다소 충돌이 발생할 뻔했을 때, 변호사들이 몸을 날려 이를 저지하기도 했다. 그리고 법정에서 나와 통곡하는 피해자의 어머니를 달래고 위로해주며, 증인지원관실에 모시고 가서 안정을 취하게 해주는가 하면, 법원 앞 마당에 가방을 두고 온 피해 학생의 어머니를 위해 변호사가 법원 검찰 경찰에 수소문하여 다시 찾아주기도 하는 등 사소한 일까지 애정을 가지고 해결해주려 노력하였다.

이후 2014년 6월 17일, 24일 두 번 더 진행된 공판준비기일에도 새벽 5시에 안산에서 출발하여 광주로 내려가는 버스에 변호사가 동행하여 그날 진행된 재판의 내용과 절차를 설명하고 법원으로부터 사전에 받은 방청권을 배포하였다. 재판 진행 과정에서도 피해자들의 의견을 재판부에 전달하고, 재판 시작 전과 후에 피해자 진술을 지원하는 역할 및 재판 내용을 모니터링을 하였다.

---

18) 참고자료 5-2. 선원사건 2014년 6월 10일 재판방청안내(가족용)

(3) 오하마나호 현장검증과 관련한 활동

2014년 6월 30일 세월호와 쌍둥이 배라고 불리는 오하마나호의 현장검증이 있었다. 세월호와 오하마나호와의 구조 차이를 진술해 줄 생존 화물기사 전병삼 등 피해자 4인과 진상조사단 및 형사재판지원팀 변호사 6인이 이에 참여하여 배의 구조와 이와 관련한 피고인들의 변소에 대하여 검증을 하였고, 검증사항에 대해서도 의견을 제시하였다. 특히 진상조사단에서 선장, 선원들이 탈출한 브릿지에 비상벨이 있어 탈출과정에서라도 이를 눌러 퇴선신호를 보냈다면 승객들이 선장, 선원들의 탈출시점에 탈출을 할 수 있었다는 점을 밝혔고, 검증기일 바로 후에 이렇게 밝혀진 검증내용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생존 화물기사 전병삼은 검증기일 전 사적으로 피해자 변호인들과 '당시 배에서 탈출하려는 자신에게 해양 경찰이 바로 구명보트에 탑승하지 말고 물에 빠졌다가 나오라는 말을 하여 의아했는데, 물에 빠져서 구조한 것처럼 촬영하려고 했던 것 같다.' 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주변에 있던 기자들이 이를 듣고 자세한 내용 확인 없이 전병삼이 마치 해경이 직접 '촬영을 해야 하니까 물에 들어갔다 나오라' 라고 말했다고 이야기를 한 것처럼 보도하였다. 이에 해경은 보도 다음날인 2014년 7월 1일 해명자료를 내서 해경 123정에는 채증장비가 없으므로 이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였고, 같은 날 세월호 구조 활동을 한 123정 소속 해경들이 전병삼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다. 해명자료 발표와의 시기 상 해경에서 주도하여 사고 피해자를 고소하였다는 의심을 하기 충분한 상황이었다.

세월호 특위는 사실관계를 확인한 다음 2014년 7월 3일 전병삼의 발언

취지는 보도내용과 다르고, 해경이 사고로 인하여 골절상 및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앓고 있는 피해자에게 조직차원에서 고소를 한 것은 2차 피해라면서 고소를 취소하라는 보도 자료[19]를 배포하는 방식으로 대응하였다.

(4) 공판기일에서의 활동

2014년 6월 24일 오후부터 본격적인 공판기일이 진행되었는데, 형사재판지원팀 변호사들은 매 기일마다 방청인원, 차량 대수를 확인하여 법원에서 사전에 주차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협조하였고, 방청권 배포, 재판 참여와 모니터링, 피해자 진술에 참여할 사람을 확인하여 재판 시작과 끝에 피해자 진술 신청을 하는 일을 담당하였다.

형사재판지원팀은 2014년 6월 27일 형사소송법 제56조의2[20]에 따라 전 공판기일을 영상녹화해달라는 내용의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당시 공판조서가 속기록처럼 작성되고 있었으므로 별도로 영상녹화가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2014년 7월 8일에는 사고 당일 해경이 촬영한 사고 동영상들에 대한 서증조사가 이루어졌다. 이 과정에서 당시 모습을 처음 접한 부모님들이 오열하고, 동영상 중 필요한 부분만을 상영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반발하여

---

19) 참고자료 5-3. 2014년 7월 3일자 보도자료

20) 제56조의2 (공판정에서의 속기·녹음 및 영상녹화)
① 법원은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판정에서의 심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속기사로 하여금 속기하게 하거나 녹음장치 또는 영상녹화장치를 사용하여 녹음 또는 영상녹화(녹음이 포함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이를 명할 수 있다.
② 법원은 속기록·녹음물 또는 영상녹화물을 공판조서와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③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비용을 부담하고 제2항에 따른 속기록·녹음물 또는 영상녹화물의 사본을 청구할 수 있다.

강하게 전체 상영을 요구하는 등 다소 마찰이 발생하였는데, 재판 참여 변호사가 부모님들이 증거로 제출된 동영상들을 처음 보는 것이라는 점 등을 재판부에 설명하여 동영상이 전체 상영될 수 있도록 하였다.

담당 재판부는 증거조사과정에서 피해자들의 반응을 보고, 이후 진행될 증인신문과정에서 피해자들이 증인에게 부담감을 주는 것은 아닌지 우려를 표시하였다. 이 때문에 형사재판지원팀은 증인보호와 진실발견을 위하여 방청할 때 감정적인 반응을 최대한 자제하도록 증인신문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이 때 취해야 할 태도 등을 재판안내문에 적어 배포하기로 하였고, 이후 모든 기일에 재판 안내문이 배포되었다. 재판 안내문[21]은 피해자들의 요청에 따라 공소사실, 피고인들의 변소, 지난 기일 보고가 추가되는 등 기일마다 내용이 변경되었다.

2014년 7월 15일은 세월호 특별법 제정에 집중할 필요성이 있어 안산에서 피해자들이 방청을 하러 오지 못하였지만, 진도에서 실종자 가족들이 세월호에 화물용 승강기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재판을 방청하였다. 재판 참여 변호사는 사전에 공보 판사를 통하여 실종자 수색을 위하여 세월호 구조에 대해서 선장, 선원에게 질문을 할 기회를 허용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재판부에서 이를 수용하여 재판 시작 시 국선 변호인을 통하여 질문에 대한 대답을 확인할 수 있었다.

2014년 7월 22일부터 10월 21일까지 주 2-3회 증인신문과 피고인신문이 이루어졌다. 법원에서는 피해자들이 검찰로부터 사전에 신문사항을 받아서 피해자 측의 신문사항을 검찰신문사항에 반영하도록 제안하였으나, 검

21) 참고자료 5-4. 선원사건 2014년 10월 6일 재판방청안내(가족용)

찰에서는 이런 방식에 난색을 표했다. 때문에 형사재판지원팀은 진상규명을 위해서 필요한 질문이나 피해자들이 궁금해 하는 질문을 정리하여 검찰과 피고인 신문 후에 직권신문의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고, 피해자들이 추가로 수사를 요청하는 부분은 진정서의 형태로 검찰 측에 전달하였다. 또한 증거나 공판조서를 가능한 한 빨리 열람, 복사하였고, 인적사항 등 문제되는 부분을 삭제하고 피해자들에 전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서 작성까지 걸리는 시간 및 이를 허가 받아 복사하는 시간 등이 소요되어 검찰의 사고 원인에 대한 보고서 등 자료를 최적의 시간에 입수하기 어려웠고, 직접 신문하는 것이 아니라서 답변에 대한 추궁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런 방식을 통한 진상규명에는 한계가 있었다.

게다가 재판 참여 변호사 모두가 사건내용을 세세하게 파악하고, 공소사실과 별개로 피해자들이 궁금해 하는 지점을 충분히 인식하기는 어려웠다. 이로 인하여 재판 참여 변호사는 피해자들이나 연수변호사와 간사 변호사가 미리 마련한 신문사항의 맥락과 필요성에 동감하지 못하여 신문사항이 본래 의도와 달리 전달되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한 괴리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재판부의 태도 또는 재판의 진행방향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는 상황들이 종종 발생하였으며, 재판의 더딘 진행과정에 갑갑해 하는 경우도 존재하였다. 그 때마다 재판 참여 변호사들은 휴정시간마다 형사재판의 절차 및 재판에서 문제가 되는 쟁점을 반복적으로 설명하여 피해자의 이해를 도왔다.

한편 피해자들은 신문과정에서 증인이나 피고인들이 책임을 회피하거나 사실대로 진술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 크게 분노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

다. 이럴 때 담당 재판부는 잠시 휴게실 등에서 안정을 취할 것을 권유하였는데, 이 때 재판 참여 변호사가 함께 나가 상황에 대해서 설명 드리고 위로하는 일들도 담당하였다.

(5) 법정외 신문과 관련한 활동

세월호 참사는 장거리 이동을 하는 과정에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생존자 및 유가족들이 이동수단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거나 장기간 이동에 어려움이 있는 상태였다. 형사재판지원팀은 이 때문에 재판 초기부터 절차에 대해서 두 가지 요청을 지속적으로 해왔다. 하나는 피해자들이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 재판을 방청할 수 있도록 중계를 해 달라는 것이었다. 다른 하나는 생존자에 대한 증인신문을 거주지 인근에서 해 달라는 것이었다. 특히 학생들의 경우 최대한 언론에 노출되지 않고 비공개로 증언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다.

이에 담당 재판부는 원래는 광주지방법원에서 예정된 증인신문 중 생존자 중 미성년자와 화상을 심하게 입은 화물 기사에 대해서는 연령, 건강상태 기타의 사정을 고려하여 법정외 신문을 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7월 29일, 30일 양일간 안산지원에서 법정외 신문을 하기로 변경되었다.

형사재판지원팀은 생존학생의 증언과정에 적극 참여하였는데, 우선 검찰이 증인을 선정하는데 참고할 수 있게 진상조사단에서 생존학생에 대하여 진술청취를 한 자료를 1차 자료로 제공하였다. 담당 검사 3인과 직원들은 7월 17일 단원고를 방문하여 생존학생을 상대로 설문 조사 및 이를 근거로 단체 면담을 하기로 하였는데, 생존학생의 부모들이 단체 면담 시

피해자 변호인들이 참여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요청에 따라 이명숙 공동위원장과 2인의 여성 변호사가 참여하여 검찰과 피해자 간 의사를 조율하고 생존학생 증언 청취에 배석하며, 증언선정과정에 대한 의견을 검찰에 전달하였다.

또한 형사재판지원팀은 이후 증인으로 선정된 학생과 부모에게 증언할 의사가 있는지 확인하여 증인 명단을 확정하고, 증인소환 및 안산지원으로 학생들이 오가는 방법에 대해서도 법원, 피해자 간 의사를 조율하였다. 그리고 생존학생들이 희생된 친구의 부모들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끼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원칙적으로 비공개로 하되 유가족 방청을 소수로 제한하고, 이를 유가족들에게 설명하여 양해를 구하였고, 증언 전에 생존학생을 치료하고 있는 정신과 전문의와 함께 대기실, 법정, 이동경로를 사전 답사하여 증언하는 학생들이 보다 안심하고 증언할 수 있도록 의견을 전달하였다. 뿐만 아니라 사전에 증언할 학생들의 부모에게 재판안내를 해서 재판 출석부터 증언을 마치고 돌아갈 때까지의 절차를 자세히 설명하였고, 학생들이 원하는 경우 친구나 부모, 의사 선생님이 신뢰관계 있는 자로 동석할 수 있도록 재판부에 요청을 하여 학생들은 원하는 바에 따라 친구, 교사, 의사, 부모와 같이 증언석에 앉아 증언할 수 있게 되었다.

이틀 간 이루어진 증언기일 동안 각각 3인의 변호사가 상주하면서 증언할 학생들이 법원에 도착해서 증인 대기실에 이동하는 것을 돕고, 증언에 대해 사전 설명을 하고, 대기실에서 법정으로의 이동과 증언 시 동석, 모니터링을 분담하였고,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 YTN 강지원의 뉴스! 정면승부, 한수진의 SBS전망대 등 적극적으로 언론인터뷰에 응하여 비공개로 이루어진 학생들의 증언 내용이 대외적으로 잘 보도되도록 노력하였다.

이러한 노력으로 증언한 학생들이 증언과정에서 2차 피해를 입는 것을 최대한 방지할 수 있었다. 생존학생들의 상담을 담당한 정신과 전문의는 학생들이 증언을 함으로써 같이 빠져 나오지 못한 친구들을 위하여 무언가 노력을 하였고, 국가기관에서 자신들의 이야기를 충분하게 들어 주었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 상처를 치유하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6) 안산지원에서의 재판 중계

세월호 특위는 사건 초기부터 유가족들도 트라우마 상태인 점을 감안하여 안산지원에서도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형사사건을 방청할 수 있게 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대법원은 이러한 요청을 받아들여 2014년 8월 6일 법정 방청 및 촬영에 관한 규칙을 개정 공포하여 사건 당사자나 피해자 상당수가 재판이 열리는 법원으로부터 먼 곳에 살아 방청이 어려운 경우 재판장이 법원행정처장의 승인을 받아 재판 중계를 위한 녹음, 녹화, 촬영을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에 따라 선원사건은 2014년 8월 19일부터 안산지원에서 재판 중계가 시작되었다.

피해자들은 광주지방법원 본 법정에서는 심리에 방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감정 표출을 자제했으나, 안산지원에서는 좀 더 편안한 상황에서 재판을 방청할 수 있게 되었다.



[안산지원에서의 광주재판중계, 연합뉴스]

(7) 증거의 수집 및 제출

형사재판지원팀은 생존자의 신체 및 정신적 상해를 입증할 수 있는 진단서를 수집하여 검찰에 증거로 제출하였고, 포렌식 작업 결과뿐 아니라 검찰에서 피해자가 촬영한 동영상을 별도로 요청하므로, 이를 전달받아 검찰에 제출하여 증거로 사용되게 하였다.

또한 진상조사단이 증거보전절차를 통해 세월호의 CCTV를 복원한 결과도 검찰에 제출하였으며, 기타 공소장 변경 시 피해자의 실명을 기재할지와 같이 피해자들의 의사 확인이 필요한 부분은 피해자 변호인이 담당하여 검찰과 재판부에 의견을 전달하였다.

(8) 재판 설명회 개최 등

재판 내용을 어느 정도까지 피해자들과 공유해야 할지에 대해서 초기부터 논의가 있었다. 기록을 보는 것이 오히려 정신적인 고통을 줄 수 있고, 피해자들에게 제공한 기록이 언론에 유출될 경우 이후 기록 열람 등사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으므로, 변호사들이 정리한 재판 모니터링 자료와 공

판조서만을 세월호사고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대책위원회(이하 “세월호 가족대책위”라 함) 담당 총무에게 제공하기로 하였고, 세월호 가족대책위 측에서 재판 내용을 구성원들과 공유할 것으로 생각하였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재판 내용이 각 피해자들에게 잘 전달되지 않았고, 2014년 7월부터 피해자들의 관심이 세월호 특별법 제정에 집중되어 재판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현격히 줄었으므로, 대다수의 피해자들은 재판에서 어떤 사실이 밝혀지고 있는지 잘 알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이 때문에 형사재판지원팀은 2014년 10월 연수변호사를 중심으로 공소사실, 재판 중 밝혀진 세월호 참사 원인, 피고인별 가능한 선고형 등을 중심으로 재판 설명회를 총 10회에 걸쳐 진행하였고, 세월호 가족대책위에 재판기록을 제공하였다.

(9) 피해자 진술 기일에서의 활동

담당 재판부는 사건 초기부터 피해자 진술 기회를 충분히 주겠다고 예고해 왔고, 이에 따라 2014년 10월 21일 오후에 약 4시간가량 피해자 진술 기일이 지정되었다. 담당 재판부는 다양한 피해자들의 진술을 듣고 싶다는 의사를 피력하였으므로, 형사재판지원팀은 실종된 학생 어머니, 실종된 교사 부인, 생존한 화물기사, 생존학생의 글을 대독할 생존학생의 아버지, 희생된 교사 아버지, 희생된 학생 가족과 일반인 희생자 가족 등 총 14명에 대해서 피해자 진술신청을 하였다. 그 외에도 당일 법정에서 신청한 피해자들을 포함하여 총 16명에 대해서 피해자 진술 기회가 부여되었고, 90여명의 피해자들이 이를 방청하였다.

또한 형사재판지원팀은, 말로 하는 진술뿐 아니라 세월호 참사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느끼는 고통을 보다 잘 전달하기 위하여 총 3개의 동영상을 준비하여 피해자 진술 시작 시와 중간 그리고 마지막에 상영하였다. 각 동영상은 사고가 났을 때 피고인들이 보여준 행동과 이후 피해자들이 어떻게 힘든 시간들을 보냈는지를 보여주는 것, 희생된 교사들의 생전과 마지막 모습, 그리고 단원고 8반 학생들이 사고 전에 친구, 가족들과 찍은 사진들로 구성되었다. 특히 마지막 영상은 희생된 단원고 8반 학생의 부모들이 직접 만든 것이었는데, 담당 재판부가 '미리 마지막 동영상을 보았는데, 너무나 슬퍼서 동영상을 보고 난 다음 재판을 마치는 말을 할 수 있을지 자신이 없다.' 라고 할 정도로 비통함을 안겨 주어 여러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다.

형사재판지원팀은, 피해자 진술 기일의 진술 순서를 정하고, 피해자 진술 중 격한 분노를 표출하는 분들을 위로하였으며, 심한 고통에 진술을 하기 어려워했던 분의 진술 시 증언석에 동석하였다.

(10) 결심 공판에서의 활동

2014년 10월 27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선장 이준석에게 사형, 1등 항해사 강원식, 2등 항해사 김영호, 기관장 박기호에 대해서 각 무기징역, 3등항해사 박한결 및 조타수 조준기에 대해서 각 징역 30년, 견습 1등 항해사 신정훈에게 징역 20년, 나머지 피고인들에게 각 징역 15년형을 구형하였다. 광주지원단 국중돈 변호사는 "사형 구형은 일반적으로 상징적인 의미가 큰 만큼 재판부가 실제 선고에서 어떤 판단을 내릴지 미지수인데, 피고인들이 전혀 반성하지 않고 혐의 사실을 부인하는 데 대해

유족들의 분노가 크다.“라고 말하며,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 이번 구형은 분명 부족한 부분이 있다. 재판 전개 과정을 보며 대책을 마련하겠다.” 라고 언론대응을 하였다.

(11) 선고 결과 및 이에 대한 대응

(가) 피고인들의 변소와 법적 쟁점 및 판단

[쟁점의 개요]

검찰의 핵심적이고 주위적인 적용법조는, 고의범으로서의 살인죄(선장, 기관장, 1, 2등 항해사), 해상빵소니라 할 수 있는 특가법위반(도주선박)이라 할 수 있고(3등항해사, 조타수), 보충적이고 예비적인 적용법조가 유기치사상(선원들)이다. 피고인마다 변소와 다툼의 질과 폭이 상당히 다르지만, 결국 그 다툼의 양상은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는 검찰이 들고 있는 사실관계의 존부를 다투는 것이고, 둘째는 검찰의 사실관계를 수긍하더라도 그 법률적 의미와 법리 타당성을 다투는 것이다. 전자는 입증의 문제이고, 후자는 법리의 문제이다.

① 피고인 이준석, 강원식, 김영호, 박기호의 살인죄에 있어서는 살인의 고의 및 살인의 공모 인정 여부가 문제되었으므로 입증의 문제가 부각되었고, ② 특가법위반(도주선박)에 있어서는 피고인 이준석, 박한결, 조준기가 위 적용법조의 행위 주체에 포섭될 수 있는가가 문제되었으므로 법리의 문제가 쟁점이었다. 이는 이 사건 모든 피고인들이 수난구호법 제18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가의 문제와 연결된다. ③ 피고인들에 관련된 유기치사의 점에서는, 보호의무의 발생 근거, 유기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 쟁점이 치열하였다.

[살인 및 살인미수죄에서 미필적 고의]

살인죄의 피고인들은 위급 상황에서 적절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지만, 피해자들을 살해할 고의도 살해의 공모도 없었다고 다퉜다. 이는 이들 선장, 기관장, 1, 2등 항해사 등 책임있는 피고인들이 구호조치 없이 탈출한 것에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가의 문제라 할 수 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승객들보다 먼저 구조받기 위해 일부러 승객들에 대한 퇴선명령을 내리지 않았다.' 라는 주장을 폈기 때문에, 1심 법원은 살인에 관한 미필적 고의를 '선장 등이 퇴선방송을 지시한 바 있는가' 의 사실인정 문제로 설정하게 되었다.

1심 법원은 관련자들의 증언을 종합할 때 피고인 이준석(선장)이 해경정이 도착할 무렵 피고인 김영호(2등 항해사)에게 승객들을 퇴선시키라는 지시를 하였고, 피고인 김영호는 이를 사무장에게 전달하기 위해 무전기에 대고 탈출시키라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다. 결국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인식한 것을 넘어서 이를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었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조타실에 있던 피고인들이 세월호에서 퇴선할 때, 미리 탈출을 사전 모의하고 탈출한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결국 살인죄는 고의를 인정할 자료가 없어서, 형소법 제325조 후단 무죄(이유 무죄)가 선고되었다.

이 사건에서 승객들 일체에 관한 살인죄는 무죄가 되었지만, 피고인 박기호(기관장)가 3층 선실 복도에서 조리부 직원 둘이 머리를 다치거나 굴러 떨어져 이동이 불가능하므로 이들을 구조할 의무가 있음에도 아무런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에 관해서는 살인죄가 인정되었다. 피고인 박

기호도 다른 피고인들과 같이 승객 일체에 관한 살인죄는 이유 무죄되었지만, 오직 조리부 직원 둘에 대해서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가 인정된 것이다.

[특가법위반(도주선박) 및 수난구호법위반에서 각 구성요건해당성]

이 사건에서 가장 법리적 다툼이 심했던 쟁점이 수난구호법 및 특가법위반(도주선박)에 관한 것이었다. 피고인들은 특가법위반(도주선박) 구성요건해당성[22] 자체를 다투는 입장에서, 자신들은 수난구호법 제18조 제1항 단서가 정한 '조난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선박의 선장 및 승무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이 때 조난사고는 선박충돌 등과 같은 경우를 말하는 것이지, 세월호 참사와 같이 자체 복원력상실로 전복된 경우까지 포함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검찰은 수난구호법 제2조 제4호 조난사고의 정의를 보면, 선박 충돌 등에 국한하지 않고, '침몰·전복·충돌·화재·기관고장 및 추락 등으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신체 및 선박 등의 안전이 위험에 처한 상태'라고 규정하고 있어서 선박충돌 사고로 제한할 근거가 없고, 수난구호법 제43조 제1호는 조난사고 원인을 제공한 선박의 선장 및 선원이 조난사실을 신고하지 않을 때 처벌하고 있는데, 피고인들의 변소는 위와 같은 수난구호법의 규정 체계에도 부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1심 법원은 수난구호법의 해석상 구조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인근 선박 등'의 선장·기장이라 할 것이고, '조난된 선박 등'은 구조요청의 주체인 것이지 '인근 선박 등'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같은 연장

22) 특가법위반의 점은 수난구호법 제18조 제1항 단서를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다.

선에서 특가법위반(도주선박)의 입법취지, 규정의 문언해석, 특가법상 다른 규정과의 비교되는 체계적 구조 등에 비춰, 조난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선박의 선장 및 승무원이 필요한 구조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에 처벌되는 것을 기본 범죄로 하여, 이들이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하였음에도 도주하는 경우를 처벌하는 규정으로 해석하였다. 따라서 특가법위반(도주선박)의 주체는 '조난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선박'의 선장 및 승무원에 한정되는 것이지, 세월호처럼 스스로 조난을 당한 선장 및 승무원들은 위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없다고 보았다. 결국 특가법위반(도주선박)의 점은 구성요건해당성이 없어서, 형소법 제325조 전단 무죄(이유 무죄)가 선고되었다. 또한 수난구호법위반의 점 역시 동일한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었다.

[유기치사상에서 보호의무의 근거, 구호조치의 내용, 인과관계]

피고인들은 모두 유기치사상죄가 인정되었다. 검찰은 법률상 보호의무로 선원법 제11조, 수난구호법 제18조 제1항 단서, 해운법에 의하여 제정된 세월호의 운항관리규정을 제시하였고, 승객과의 운송계약의 의무이행자 또는 이행보조자 지위를 계약상 보호의무로 제시하였다. 1심 법원은 이 중 피고인 이준석(선장)에 대해서는 선원법 제11조를 법률상 보호의무의 근거로 인정하였고, 모든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계약상 보호의무를 인정하였다. 반면 수난구호법 제18조 제1항 단서는 앞서 특가법위반(도주선박)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보호의무의 근거로 삼을 수 없다고 보았고, 세월호 운항관리규정은 법률상 보호의무는 될 수 없지만, 계약상 보호의무를 보충하거나 그 자체가 될 수 있다고 보았다.

1심 법원은 세월호 위난 하에서의 필요한 구호조치로서, 모든 피고인들

은 승객들을 퇴선이 용이한 장소로 이동시키고, 구명장비가 있는 곳으로 이동하여 그 작동을 준비하는 등 승객들을 안전하게 퇴선시키기 위한 준비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피고인 이준석은 더 이상 승객들이 선박에 머물 수 없는 한계상황이 오면 지체 없이 퇴선명령을 내려야 한다는 지침을 제시하였고, 그 구호조치가 필요한 최후의 순간(유기의 기수시기)에 대해서 '9시 26분경 진도VTS로부터 10분 후 구조정이 도착한다는 말을 들었을 때에는 직접 또는 사무부 직원들을 통해 퇴선명령을 내리고 승객들을 이동 가능한 출입문으로 안내하는 구호조치를 시작하였어야 한다.' 고 보았다. 1심 법원은, 피고인들이 침몰 후 (늦어도) 약 30분 경과쯤에는 취했어야 할 위와 같은 구호조치를 취한 바 없음을, 조타실에 있던 피고인, 3층 선실복도에 있던 기관부 피고인별로 나눠, 당시 증거에 의해 인정된 상황 등에 비춰 검토하여 유기의 고의를 인정하였다.

피고인들은 적절한 구호조치를 취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당시 조류, 수온 등에 비춰 승객들이 사망하지 않을 것이라 단정할 수 없고, 사망의 주된 원인은 해경의 부실한 구조행위에 있으므로 어느 모로 보나 인과관계가 부인된다고 주장하였다. 1심 법원은 당시 수온이 12.6℃로서 특수한 보호복을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생존 예상 시간이 6시간 미만이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고, 사고 지점의 조류도 0.4 내지 0.5노트 정도에 불과하고 당시 구명뗏목, 초계기, 어선, 헬기 등이 구조에 동원된 사정을 보면 역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보았다. 또 탈출시뮬레이션 결과 9시 26분경 앞서 본 적절한 구호조치가 있었다면 약 20분의 시간 동안 세월호 탈출이 가능하다는 점을 중시하였다.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유기행위와 정신적 상해(스트레스, 우울, 불안, 감정의 기복) 등의 인과관계도 다투었지만, 인정되지 않았다. 또 해경의 부실한 구조행위가 있더라도,

그것은 피고인들의 기수시기인 9시 26분경 이후의 사정일 뿐이므로, 피해자들의 사망은 피고인들의 유기행위로 초래된 위험이 그대로 현실화된 경우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하였다.

피고인들은 복원력이 상실된 세월호에서 인명 구호조치를 법적으로 강제하는 것은 선원들의 생명을 포기하라는 것에 다름 아니므로, 긴급피난으로 위법성이 조각되거나 기대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책임이 조각된다는 주장도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로써 선원사건의 피고인들 모두에게는 유기치사상죄가 인정되었다.

(나) 선고 결과

결론적으로 가장 관심이 집중되었던 선장 이준석, 1등 항해사 강원식, 2등항해사 김영호, 기관장 박기호의 승객들에 대한 살인죄에 대해서는 퇴선명령을 했다는 이유 등으로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부정되어 무죄가 선고되었고, 법리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수난구호법 위반과 특가법위반(도주선박)도 무죄가 선고되었다. 선장 이준석은 예비적 죄명인 유기치사상 등으로 징역 36년, 기관장 박기호는 승객이 아니라 다른 선원에 대한 살인죄와 승객들에 대한 유기치사상의 경합범으로 징역 30년, 1등 항해사 강원식은 징역 20년, 2등 항해사 김영호는 징역 15년, 3등항해사 박한결 및 조타수 조준기는 각 징역 10년, 견습 1등 항해사 신정훈은 징역 7년, 나머지 피고인들은 모두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다.

형사재판지원팀은 선고결과를 몇 가지 경우로 예상하여 세월호 가족대책위의 기자회견문 초안을 작성하였고, 선고 후 세월호 가족대책위와 함께 기자회견을 하면서 살인죄에 대해서 무죄판결이 선고된 것을 비판하였다.

라. 해경사건에 대한 피해자 변호인 활동

해경사건은 사고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하였던 해경 123정 정장이자, 현장지휘관(OSC)이었던 김경일에 대한 재판이다. 공무원이었던 피고인에게 승객들의 사망에 대한 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국가배상과 직결되는 부분이라는 점에서 세월호 참사의 배·보상과 관련하여 큰 의미가 있다.

따라서 다양한 법리구성에 대한 토론과 재판 결과에 따른 피해자 구제 방안들을 논의해야 했으나, 선원사건 및 선사사건 1심 판결 선고 후 형사재판지원팀의 동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재판이 시작되어 초기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1) 공판준비기일 전 활동

해경사건은 2014년 12월 1일 첫 공판준비기일이 지정되었는데, 당시 세월호 특별법이 제정되고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단계라서 세월호 가족대책위조차 이에 신경 쓸 여력이 없었고, 형사재판지원팀 역시 총력을 다하고 있던 선원사건 선고 이후에 소강상태에 들어간 상황이었다. 이미 많은 인력이 빠져나갔으므로 그 상태로 선원사건 및 선사사건의 항소심과 2014년 12월부터 시작되는 해경사건까지 참여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이 때문에 해경사건은 처음에는 지리적인 근접성을 이유로 광주지원단에서 맡기려고 하였으나, 광주지원단 역시 여력이 없어 사전 자료 조사 및 공소장 확보 등 모든 준비가 미흡할 수밖에 없었다.

⑵ 공판준비기일에서의 활동

첫 공판준비기일이었던 2014년 12월 1일에는 광주지원단 변호사들과도 사전 협의가 부족하여 서울에서 재판 참여 변호사가 내려가 법정에서 쟁점과 향후 일정을 파악했다. 제2차 공판준비기일이었던 2014년 12월 22일에는 광주지원단에서 재판 참여를 하여 향후 공판기일에 대한 일정을 파악하여 공유하였는데, 광주지원단은 해경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서 서울팀과 세월호 가족대책위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⑶ 형사재판지원팀의 재구성

해경사건을 비롯하여 선원사건 및 선사사건에 대한 항소심 재판 등이 연이어 시작되면서 형사재판지원팀의 구성원 보충 및 재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에 이르렀다. 따라서 2015년 1월 6일 세월호 특위 전체 회의를 통해서 기존 형사재판지원팀과 진상조사단을 해체하고 2015년 1월 9일 새로운 카톡방을 개설하여 계속 사건에 참여할 구성원을 확정하여 형사재판지원팀을 재구성하였다. 이 때 진상조사단으로부터 형사재판지원팀으로 인원이 보충되었고, 선원사건 진행 당시의 연수변호사 4인이 연수기간을 마치고 적극적인 참여 의사를 밝혔으므로 재판 준비에 활기를 띄었다.

2015년 1월 14일 형사재판지원팀과 세월호 가족대책위의 공동회의가 있었으며, 해경사건 및 항소심 재판 진행에 관하여 절차 및 방향을 공유하였다.

⑷ 공판기일에서의 활동

해경사건은 법원의 인사이동을 앞두고 기일이 다소 급박하다고 느껴질 만큼 짧게 진행되었다. 2015년 1월 20일부터 1월 28일까지 총 5회의 공판기일이 예정되었고, 선고기일도 2015년 2월 11일로 사실상 예정되었다. 게다가 증인신문은 1월 27일 하루뿐이었다. 촉박하고 집중된 공판기일로 인하여 공판조서를 받아보고 이를 검토하기가 불가능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재판에 참여하여 속기를 하고 그 기록을 공유하여 재판의 진행에서 참여할 부분을 찾아나가는 것이 피해자 변호인으로서 지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따라서 재판의 출석과 기록이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될 수밖에 없었으므로 서울에서 다시 변호사가 파견되었다. 공판기일이 시작되면서 단 하루도 빠짐없이 변호사가 파견되고 속기록이 작성되어 세월호 특위 웹하드에 공유되었으며, 카톡방에서 일정변경과 정보공유가 활발히 이루어졌다.

(5) 진술서 제출 및 증인신문기일에서의 활동

검찰 역시 집중적으로 공판기일이 예정되면서 증인신문기일에 적절한 증인을 확보하는데 문제를 겪고 있었다. 반면 피해자 변호인들은 장기간 형사재판을 지원하며 세월호 가족대책위와 신뢰관계를 구축할 수 있었고, 생존 피해자들에 대한 접촉이 가능하였다. 따라서 형사재판지원팀은 생존 피해자들을 만나 해경의 퇴선명령 미실시로 인하여 탈출하지 않은 정황과 더불어 퇴선조치를 하였다면 퇴선할 수 있었던 사고 당시 선내의 상황 등에 대해서 진술서를 작성하여 검찰 측에서 증거로 제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총 3명의 생존학생에 대한 진술서를 작성하여 검찰에 전달하였고 이는 중요한 증거로 제출되었다.

또한 형사재판지원팀은 증언을 꺼려하는 생존피해자들 4명이 증인으로

출석하여 법정증언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검찰에 증언 여부를 알려주는 역할도 수행하였다. 2015년 1월 27일 증인신문 당일에 피해자 변호인이 증인과 함께 출석하여 검찰이 증언내용에 대하여 청취하는 동안 옆을 지키며 증인들이 불안해하거나 감정적으로 힘들지 않게 조력하였다.

이밖에도 형사재판지원팀은 증인신문 중에는 신뢰관계인이 동석하여 진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증언이 끝난 뒤에 심적으로 힘들어하는 증인들을 위로하기 위하여 법정 밖에서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곁을 지켰다.

(6) 피고인 신문과 결심 공판에서의 활동

2015년 1월 28일 해경사건의 마지막 공판기일에 피고인신문과 결심공판이 진행되었다. 형사재판지원팀은 선원사건과 동일하게 진상규명을 위해 필요한 질문을 정리하여 재판부의 직권신문 형태로 질의응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세월호 침몰 후 미진한 구조활동과 더불어 선원들을 우선적으로 구조한 정황들과 관련하여 미리 피고인 신문사항[23]을 준비하였다.

피고인신문이 진행되는 동안 피고인이 구조를 해태한 부분이 드러날 때마다 힘들어하는 피해자 가족들을 위로하고 옆을 지키는 몫 역시 변호사가 해야 할 일이었다.

또한 의견서를 작성할 때까지 공판조서 및 증거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울

23) 참고자료 5-6. 피고인 김경일에 대한 피해자 질문사항

것이라고 예견되었으므로, 재판 참여 변호사는 검찰과 피고인측의 의견을 속기하여 의견서에 반영할 수 있도록 내용을 정리하였다.

(7) 의견서와 변론재개신청서 제출

해경사건 진행 중 피해자 변호인으로서 겪어야 했던 가장 큰 문제점은, 공판조서 및 증거기록 등 자료를 열람 복사할 시간적 여유가 절대적으로 부족하였기 때문에 재판에 있어서 적극적인 의견 표명을 할 기반 자료 자체가 전무했다는 점이었다. 따라서 선원사건에서 확보된 공판조서 및 증거자료를 근거로 하여 의견서를 작성할 수밖에 없었다. 해경사건은 2015년 1월 28일 결심공판 이후에 2월 11일 선고기일까지 2주 간의 시간만이 허락되었으므로 최소한 2월 5일까지는 의견서를 제출해야 했다. 그리고 피고인 측의 변소에 관련해서는 공판기일에 속기로 작성한 것 외에는 별도로 의견서를 확보할 수 없었기 때문에 속기한 것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형사재판지원팀은 선원사건에서의 31회에 달하는 공판조서를 재차 숙독하며 해경과 관련된 자료를 별도로 분리하고, 이를 종합하여 의견서를 완성하고, 2월 5일 제출하였다.

이후 형사재판지원팀은 촉박한 심리과정으로는 피고인의 죄책에 대해서 제대로 된 판단이 어려울 수 있고 피해자들도 그 결과를 납득하기 어려우므로, 더 다양한 방법으로 공소사실을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2015년 2월 6일 변론재개신청서를 제출하였다.

(8) 선고기일에서의 활동

피해자 변호인과 검찰에서 각각 변론재개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담당 재판부는 선고기일에 변론재개신청을 기각하고 판결을 선고했다. 피고인 김경일에 대해서 퇴선명령을 안하는 등의 업무상과실을 인정하면서도 이와 사망 간의 인과관계는 엄격하게 판단하여 당시 일부 장소에 있었던 승객들에 대해서만 업무상과실치사죄를 인정하고 징역 4년형을 선고한 다음 피고인을 법정구속하였다. 그러나 나머지 승객들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무죄(이유 무죄)가 선고되었다.

형사재판지원팀은 미리 선고 결과를 여러 가지로 예상하여 세월호 가족대책위의 기자회견문을 준비하였고, 대책위와 함께 피고인에 대한 형량이 그 책임에 비하여 가벼우므로 검찰의 항소를 촉구하였다.



[선원사건 선고일 가족대책위 기자회견, 연합뉴스]

마. 그 외의 활동

형사재판지원팀은 그 외에도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전체 형사 재판 진행 상황과 불기소처분 결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대검찰청, 광주지방검찰청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일부 회신을 받았고, 2015년 2월 9일 법원이 선원

사건 및 선사사건에서 다중의 인명피해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형법 제40조 상상적 경합 규정을 적용하여 1죄로 처벌한 것은 피해자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청구를 제기하였다. 선원사건의 1심 법원은 선장 이준석에게 법정최고형을 선고하면서도 상상적 경합 규정을 적용하면 형의 상한이 징역 36년형이라서 선고형이 이를 초과할 수 없었다. 반면, 윤일병 상해치사 사건의 주범은 징역 45년형을 선고받았는바, 이렇게 1개의 행위로 다중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의 불합리함이 발생하므로 이를 시정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3. 평가

가. 재판 절차에서의 피해자 보호

형사재판지원팀의 1차적인 과제는 재판 절차에서의 피해자 보호였는데, 선원사건에서는 다른 형사 사건에 본보기가 될 수 있을 만큼 성과가 있었다.

먼저 형사재판지원팀은 재판 시작 전부터 절차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여 법정에서의 용어사용에서부터 방청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한 해결에까지 피해자들의 특성을 고려하도록 하여 피해자들이 2차적인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였다. 법정 경위 등 관련 공무원들이 트라우마 피해자의 특성 및 이들을 대하는 방법에 대해서 교육을 받도록 하기도 하였다.

또한 안산에서의 법정외 신문을 요청하여 생존학생과 화상을 크게 입은 화물기사가 광주까지 가지 않고 증언을 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생존학

생에 대한 증인신문은 비공개로 이루어졌고, 가족, 선생님, 친구 등 신뢰관계 있는 자의 동석 범위를 확대하고 원하는 경우 영상 중계로 증언을 할 수 있게 하였다. 이로 인하여 증인들은 안정적인 분위기에서 진술을 할 수 있었다.

대법원 규칙 개정을 통하여 앞으로 대량의 피해자가 있는 사건에서 거주지 근처의 법원에서 중계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도 큰 성과였다.

한편 피해자들에게도 기록을 전부 열람, 등사하도록 허가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주장하여 기록을 전부 입수하였고, 피해자는 본래 신문권이 없으나, 피해자 측의 신문사항을 직권신문의 형태로 신문되도록 하였다. 매기일 피해자 진술 기회를 확보하고, 별도의 피해자 진술기일을 지정해 줄 것을 요청하여 최대한 많은 피해자들이 법정에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선원사건 총 33회, 해경사건 총 8회의 재판기일에 전부 변호사가 참여하였고, 매기일 재판안내문을 작성하여 당일 어떤 재판이 이루어지는지 설명하며 피해자들과 함께 하였다는 점도 큰 의미가 있다. 피고인들에게는 모두 국선 또는 사선 변호인이 선임되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들은 자신들도 변호사와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에 조금이나마 위안을 느끼기도 하였다.

나. 업무의 강도와 자원 봉사 형식의 부조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하여 154명이 구속기소되고, 불구속기소된 재판도 파악하기 힘들만큼 많은 상태였다. 인명피해와 직접 관련된 선원사건, 선사사건 및 해경사건의 경우 많게는 주 5회 기일이 열릴 만큼 강도 높게 진행되어 법원에서도 담당 재판부는 오직 이와 관계된 사건만을 담당하게 하였고, 검찰도 6-7명의 검사가 오로지 이와 관련한 사건만 담당할 정도였다. 이러한 강도의 사건에 대해서 자원 봉사 형식으로 피해자 변호인 활동을 한 것이 과연 적합한 것이었는지 문제제기가 있었다. 서울에서 변호사가 하루 재판기일에 참석하기 위해서 새벽 5시부터 밤 11시까지 시간을 내야 했었는데, 자원 봉사 형식으로 거의 실비만 지급하면서 이런 수준의 참여를 기대하고, 거기에 기록 검토까지 요구하는 것은 무리라고 평가된다.

결국 2014년 8월 말부터는 서울에서 참여 변호사를 전부 구할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하고, 광주지원단이 선원사건에 같이 참여하였으나, 그러한 상황에서도 2014년 10월에는 참여를 약속한 변호사들이 다른 일정 때문에 다수 참여를 못하게 되어 참여 변호사를 구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되기도 했다.

업무의 강도가 높았기 때문에 자원 봉사로 참여하려 했던 변호사들은 점점 팀활동에서 이탈하였고, 재판 안내문 작성, 재판 참여 변호사 섭외, 검찰에서 요구사항 사항 확인 및 전달, 법원과의 일정 및 의사 조율, 연수변호사와의 신문사항 작성, 피해자 진술 준비 등 모든 업무가 간사 변호사에게 집중되게 되었다. 재판 참여 및 신문을 실질적으로 연수변호사들이 담당하는 일도 늘어갔다.

대한변협에서 500여명의 공익법률지원단 이름을 걸고 활동을 시작하였지만, 인력을 효율적으로 배치하지 못하여 결국 몇몇 사람이 희생하는 구조가 되었고, 처음 계획했던 검찰에서 밝히지 못하는 진상을 규명한다는 목표는 달성하지 못하였다.

적어도 재판에 확실히 참여할 변호사 5-6명을 확보하고, 기록을 총괄적으로 검토할 변호사와 일정 및 법원, 검찰, 피해자 간의 의사 전달 창구를 맡을 변호사로 업무가 분담되었어야 안정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다. 진상조사단과의 괴리

처음 진상조사단과의 협업 구조를 확립하지 않고, 재판기록을 엔드라이브에 올리고 나면 진상조사단에서 검토하여 필요한 사항을 알려 줄 것이라는 막연한 상태에서 재판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진상조사단 역시 자원봉사 형식으로 활동하는 것이라서 업무 분담이 명확하지 않았다.

또한 본격적인 증인신문이 시작되면서 진상조사단에도 필요한 신문사항 검토를 요청했지만, 상호 문제의식이 공유되지 않아 활발한 협조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보다 명확하게 진상조사단과의 협업 구조를 설정하고 책임을 분담할 필요가 있었다.

라. 팀 내의 사건에 대한 의사소통 문제

광주지원단의 경우 단장 외에는 형사재판지원팀 카톡방에 참여하지 않아 재판에 참여하는 개개의 변호사들은 전체적인 사건 흐름이나 피해자들의 관심사, 신문사항이 준비된 과정을 공유하지 못하였다. 때문에 광주에서 참여하는 변호사들이 공판기일에서 연수변호사들이나 피해자들이 요청하는 신문사항에 대해서 필요성이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기도 하였다.

광주지원단이 선원사건에 참여하면서 바로 카톡방에 초대하여 문제의식을 공유하였더라면 신문과정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마. 세월호 가족대책위와의 의사소통 문제

형사재판지원팀은 재판을 방청하는 가족 외에는 직접 가족들을 만날 기회가 적었다. 또한 재판을 방청하는 가족이 현격히 줄어들고, 시간적으로도 휴정 시간 외에 가족들과 직접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할 시간이 적었기 때문에 재판 내용에 대해서 가족들과 생각을 교류할 시간은 더욱 부족했다.

또한 세월호 가족대책위 총무가 재판내용을 가족들에게 전달할 것이라고 판단한 것도 결과적으로 잘못된 것이었으므로, 처음부터 매기일 있었던 일들을 보고서로 작성하여 총회에서 보고하거나 재판 안내문에 기재했어야 했다. 그렇지 못하였기 때문에 재판은 재판대로 진행되고, 가족들은 왜 사고 원인에 대해서 밝혀진 것이 없냐는 생각을 하고 결국 사고 원인을 스스로 단정해 버리게 되어 재판에서 밝혀진 진상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었다.

바. 총평

형사재판지원팀은 피해자 보호라는 본래의 목적은 달성하였으나, 피해자들이 기대하는 진상규명 활동은 여러 한계로 인하여 부족했다. 형사재판은 끝나지 않은 만큼 1심에서 제기되었던 문제점을 최대한 보완하여 항소심에서는 피해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재판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

<별첨> 광주지방법원 2014고합180 사건 결과

피고인	직책	죄명		1심선고결과	
이준석	선장	주위적	살인, 살인미수	무죄	징역 36년
			수난구호법 위반	무죄	
		예비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선박)	무죄	
		예비2	유기치사상	일부 유죄	
			수난구호법 위반	무죄	
		공통	선원법위반	유죄	
			업무상과실선박매몰	유죄	
강원식	1등 항해사	주위적	살인, 살인미수	무죄	징역 20년
		예비적	유기치사상	일부 유죄	
		공통	업무상과실선박매몰	유죄	
			수난구호법위반	무죄	
김영호	2등 항해사	주위적	살인, 살인미수	무죄	징역 15년
		예비적	유기치사상	일부 유죄	
		공통	수난구호법위반	무죄	
박한결	3등 항해사	주위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선박)	무죄	징역 10년
		예비적	유기치사상	일부 유지	

			수난구호법위반	무죄	
		공통	업무상과실선박매몰	유죄	
조준기	조타수	주위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선박)	무죄	징역 10년
		예비적	유기치사상	일부 유죄	
			수난구호법위반	무죄	
		공통	업무상과실선박매몰	유죄	
신정훈	(견습) 1등 항해사	유기치사・상		일부 유죄	징역 7년
		수난구호법위반		무죄	
박기호	기관장	주위적	살인, 살인미수	조리부 선원 2인에 대해서 유죄, 나머지 무죄	징역 30년
		예비적	유기치사상	일부 유죄	
		공통	수난구호법위반	무죄	
나머지 피고인들		유기치사상		일부 유죄	각 징역 5년
		수난구호법위반		무죄	

제2부 영역별 활동 내역

Ⅵ. 법률 상담 활동

Ⅵ. 법률상담

1. 시작하며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4·16 세월호 참사로 모든 국민이 슬픔과 무력감에 싸여 있을 때, 공익을 대변하는 기관인 대한변협에서는 사건 발생 다음날인 2014년 4월 17일 대한변협 인권위원회 간사인 황필규 변호사를 사고 현장인 진도 팽목항에 파견하였고, 그 다음날인 4월 18일 7명의 변호사가 진도에 파견하여 처참한 현황을 직접 목격하며 시시각각 현장에서 벌어지는 참혹한 인권침해 상황들을 목격하게 되었다.

대한변협은 이명숙 부협회장과 김영훈 사무총장, 신현호, 박종운, 황필규 등 대한변협 인권위원회 위원들을 중심으로 사건 발생 다음주 월요일인 2014년 4월 21일 정식으로 세월호 피해대책 TF팀을 만들어 회의를 시작하게 되었다. 보다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4월 28일 TF팀을 "세월호참사피해자지원 및 진상조사 특별위원회"로 확대, 조직화 하였고, 특위 산하에 법률상담팀을 구성하게 되었다. TF팀은 사건 발생 5일 후인 2014. 4. 21.부터 세월호 특위가 본격적으로 구성된 5.22.까지 한 달간 17회에 걸쳐 거의 매일이다시피 새벽마다 회의를 하면서 세월호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활동을 논의했고, 그 논의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피해자들과의 신뢰형성, 피해현장 지원 및 법률상담과 관련된 부분이었다.

이처럼 TF팀과 대한변협 세월호 특위 내에서 마련된 법률상담팀

은 사건 발생 직후부터 현재까지 사건 발생지인 진도 팽목항, 안산, 인천, 서울 등지에서 직접 면담, 이메일, 전화, 문자나 SNS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세월호 피해자들이나 관련자들로부터 지속적으로 법률상담에 응해왔고, 현재도 진행 중이다. 이하에서는 세월호 피해자들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안산에서의 법률상담을 중심으로 법률상담팀의 활동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2. 상담일정 및 상담원칙

가. 시기 구분

법률상담팀의 활동은 크게 3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초기(2014년 4월 16일~6월)는 사건 발생 직후 진도 팽목항에서 부터 안산분향소 옆 유가족 천막 옆에 대한변협 특별위원회 텐트를 치고 오전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변호사들이 상주하면서 상담하던 때를 망라한 시기이고, 중기(2014년 7월~10월)는 주말을 제외한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5인의 변호사들이 요일별로 지정하여 상담하던 시기이며, 후기(2014년 11월~2015년 2월 말 현재)는 안산 단원고등학교 2학년 1반부터 10반까지 반별로 담당 변호사를 정해서 10인의 변호사가 반별로 상담이나 조언을 해주는 시기이다.

나. 구성

(1) 초기(2014년 4월~6월)

세월호 참사 발생 직후 변호사들의 무료 법률상담 지원은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법률상담, 수원 및 안산지방변호사회를 중심으로 한 경기지방변호사회에서 제공하는 법률상담, 대한변협에서 제공하는 법률상담 등으로 나뉘어진다. 경기도와 경기지방변호사회에서 제공하는 법률상담은 안산에 마련된 합동분향소 옆에 위치한 경기도 미술관 내에 상담테이블을 배치하고 그곳으로 찾아오는 피해자나 가족들을 맞이하여 상담을 해 주는 시스템이었지만, 대한변협은 상담테이블을 별도로 마련하지 않고 세월호 피해자들이 있는 진도, 팽목항과 안산 합동분향소 인근에 모여 있는 피해자들 속에서 함께 있었다.

사건 초기 안산 분향소 앞 가족들이 머무는 유가족 텐트 옆에 대한변협 세월호 특위 법률상담 텐트가 세워지기까지 한달여 기간은 세월호 피해자들에게 신뢰를 얻기 위하여 현장을 발로 뛰는 힘든 상담기간이었다. 세월호 피해자들은 황망한 참사로 인한 극도의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동시에 정부와 언론에 대한 극도의 불신과 분노를 나타내고 있었고, 가족대책위 위원장과 대표들도 수시로 바뀌는 등의 혼돈을 겪고 있었던지라, 피해자들은 변호사는 물론 그 누구도 신뢰하지 않고 가까이 하지 않으며 배척했었다. 대한변협 세월호 TF 특위로서는 피해자 대표도 수시로 바뀌는 상황에서 피해자들을 위한 협상 창구도 여의치 않았던지라, 구조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진도와 사망한 가족을 찾아 안산으로 올라와 장례를 치르는 희생자 가족들이 머무는 안산 합동분향소를 중심으로 불특정다수의 피해자들을 따라다니며 그때그때 발생하는 갈등을 옆에서 조언하고 중재하는 역할을 조심스럽게 해 오고 있

었다. 사고 초기 모 언론에서는 '단원고 학생 중에는 변호사가 학부모인 경우도 있다' 는 기사가 나온 적도 있는데, 이는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머물고 있는 진도 실내체육관 2층 콘크리트 바닥에 라면박스 등을 깔고 쪽잠을 자며 밤낮으로 피해자들을 따라다니며 수시로 발생하는 이런저런 시비와 갈등을 중재하고 조언하던 변호사 중 한 명인 황필규 변호사가 가족들과 정부측의 격렬한 대립 현장에서 가족들을 도와 절차상의 문제를 항의하며 중재하는 것을 학부모로 오인한 헤프닝이 빚은 잘못된 기사였다.

사건 발생 한 달 경까지 가장 큰 고민은 안산 단원고를 제외한 일반인 피해자들을 연락할 방법이 없다는 사실과 대다수의 피해자들을 구성하는 안산단원고 피해자들은 모든 사람에 대한 불신과 신뢰가 너무 커서 가까이 다가오는 것 자체를 거부한다는 점이었다. 일반인 피해자들의 찾아서 지원하기 위해서 대한변협 세월호 TF팀 및 세월호 특위는 신문이나 방송에 출연하여 대한변협 세월호 특위의 구성과 활동내용, 연락처(02-2087-7883/0103-8282-822) 등을 홍보하는 한편, 일반인과 관련된 기사가 날 때마다 담당 기자에게 일일이 전화해서 피해자나 그 가족들의 연락처를 수소문하는 방식으로 한 명 한 명 피해자들을 찾아 나서곤 했다. 모든 법률상담은 긴급여낙처를 통해 접수한 후 전문분야별 변호사 그룹의 자문을 거쳐 24시간 이내에 무상으로 답변을 전화나 직접 면담, 이메일 등을 통해서 제공되었고, 이후 밤낮없이 상담텐트나 익숙해진 변호사들의 개인 휴대폰 전화나 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상담이 많아져 갔다.

안산 단원고 피해자들을 위해서는, 5월 5일 처음으로 가족대책위 임원들과 세월호 TF를 구성한 이명숙, 김영훈, 신현호, 박종운, 황필규, 배의철변호사가 안산에서 첫 상견례를 한 뒤, 밤 10시가 넘은 시간까지 가족대책위 총회가 열리는 인근에서 대기하면서 몇 차례나 불려 들어가 가족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특별법과 특별검사제의 차이점 등 법률적인 부분을 설명해 줌으로써, 많은 피해자 가족들이 모인 자리에 처음으로 변호사 자격으로 법률상담을 해 주게 되었다.

그로부터 사흘 후인 2014년 5월 8일 세월호 참사를 교통사고에 비유한 김시곤 KBS 보도본부장 발언을 항의하기 위해 안산 합동분향소에 설치된 영정을 안고 KBS본사를 방문하게 되었을 때, 현장에 있던 배의철변호사가 분노한 피해자 가족들과 함께 안산에서 서울로 올라오며 대한변협 세월호 특위에 여의도로 와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저녁 8시가 넘은 시간은 세월호 특위 소속 변호사들과 이 사태를 알게 된 민변 소속 변호사 등 20-30여명의 변호사들이 KBS 항의 현장에 모여서 분노한 피해자들을 대리하여 공동위원장들을 중심으로 KBS측과 협상을 하는 한편 나머지 변호사들은 피해자들의 질서유지와 불상사 방지를 위한 역할을 하게 되었다.

총회에서의 설명과 KBS사태 등을 경험하면서 피해자들은 변호사의 도움이 절실하다는 것을 조금씩 느끼고 마음의 문을 열어주기 시작하였으며, 무엇보다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피해자들로부터 갖은 수모와 비난과 배척을 당하면서도 화를 내거나 비난하지 않고

오히려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그 자리에서 떠나지 않고 밤낮으로 상주하면서 진심으로 손잡아주고 도와주는 헌신적인 몇몇 변호사들로 인해서 차츰 신뢰가 형성되어 2014. 5. 16. 대한변협과 안산중심의 세월호 사고 가족대책위원회와 협약식을 체결하기에 이르렀고, 합동분향소 앞에 법률상담을 위한 대한변협 세월호 특위 텐트가 설치되기에 이르렀다.

가족대책위 입장에서는 자식이 사망한 부모가 법률적인 궁금증을 해결하겠다고 멀리 떨어진 경기도 미술관 내의 경기도나 경기지방변호사회에서 마련된 법률상담 테이블까지 찾아 나설 기력도 심리적 여유도 없는 형편이었고 주변 사람들 그 누구와도 마주하고 싶어하지 않는 심리상태였던지라, 언제든지 궁금한 내용은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곧 바로 해결할 수 있는 가까운 곳에 변호사들이 상주해 주기를 바랐고, 그래서 합동분향소 앞에 있는 가족대책위 텐트 바로 뒤에 대한변협 세월호 특위 텐트를 마련하게 되었다. 상담을 오는 변호사들을 식별하기 위하여 상담 변호사 이름표를 만들어 패용하게 하였고, 유가족들 텐트에서 함께 식사를 하고 조심스럽게 대화를 하면서 점점 얼굴도 익히게 되고 편하게 대화도 나누게 되면서 법률상담도 편안한 상태로 진행되기 시작했다.

초기 법률상담 내용은 장례식장의 횡포나 시신에 대한 무례함에의 분노에서부터 세월호 사건으로 갑자기 그만두게 된 직장문제, 연체된 세금이나 주거비 문제, 생활비지원, 한부모가정의 여행자보험이나 배,보상 문제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했고, 법률적인 문

제에 한정되지 않고 궁금한 내용은 무엇이든 상담 대상이 되곤 했다. 변호사들이 초기에는 아침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두 명씩 조를 짜서 상담 텐트를 비우지 않고 늘 지키곤 했는데, 피해자 가족들은 같은 문제로 변호사가 바뀔 때마다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되풀이 상담을 받는가 하면, 언제든지 서너 발걸음만 옮기면 상담 변호사가 상주하고 있는지라 심리적으로도 매우 큰 위안을 받곤 했다. 안산에 있는 유가족들을 대상으로 한 개인적인 궁금증이나 문의사항은 초기 한 달 여만에 모두 해소되다시피 되어 버렸고, 이후부터는 진도에서 시신이 발견되어 안산으로 올라오게 된 새로운 유가족들이나 그때그때 발생하는 크고작은 세월호 피해자들 전부와 관련된 사안들에 대한 상담들로 점점 상담이 변화되게 되었다.

뿐 아니라, 대한변협 세월호 특위 상담 텐트가 마련된 이후에는 멀리 떨어진 경기도 미술관 내에 마련된 다른 법률상담 단체들도 세월호특위 법률상담에 자연스럽게 흡수되어 버렸다. 상담에 참여한 변호사들은 서울에서 내려와 법률상담을 담당하던 오지원, 김영주, 황수철 등 몇몇 변호사 외에 지리상으로 가까운 안산과 수원 등 경기지역 변호사들이 많이 동참하게 되었고, 나중에는 대한변협 사무처에서 수습하고 있던 변호사들이 교대로 안산에 상주하여 상담의 연속성과 통일성을 이루는데 많은 도움을 주었고, 이즈음 인천에서는 인천에서 개업한 김상하, 박소영변호사를 중심으로 법률지원팀을 만들어 일반인 피해자들의 법률상담과 지원을 별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상담인지 time table

	06월 01일	06월 02일	06월 03일	06월 04일	06월 05일	06월 06일	06월 07일
시간	장소	장소	장소	장소	장소	장소	장소
오전	최석봉	김형준(안)	오세범	도태우	김병효	김범구, 홍성효	오세범, 설현섭, 박승환
오후	조영수	조아라(안), 문상석(안)	조아라(안)	박도준	박종원	김범구	오세범, 김효주
	06월 08일	06월 09일	06월 10일	06월 11일	06월 12일	06월 13일	06월 14일
시간	장소	장소	장소	장소	장소	장소	장소
오전	윤영선	오세범, 김효주	오재욱, 김효주	오세범, 김효주	김기범(안), 김효주	오세범, 김효주	이승빈, 정세형
오후	박광적	황성재	박도준	박도준	~~황설원(안)~~ 김효주	노덕기	태원우
	06월 15일	06월 16일	06월 17일	06월 18일	06월 19일	06월 20일	06월 21일
시간	장소	장소	장소	장소	장소	장소	장소
오전	최석봉	조아라(안), 박승환	박승환	오세범	박승환	박승환	설현섭
오후	설현섭	이재용	성효진	박종원	하재용	오세범	강지현
	06월 22일	06월 23일	06월 24일	06월 25일	06월 26일	06월 27일	06월 28일
시간	장소	장소	장소	장소	장소	장소	장소
오전	최석봉	박승환	박승환	오세범	박승환	박승환	오재욱
오후	오세범	이재용, 황성재	도태우	오세범		오세범	강지현
	06월 29일	06월 30일					
시간	장소	장소					
오전	최석봉						
오후	정세형						

(2) 중기(2014년 7월~10월)

두 달 가까이 오전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하루 종일 변호사들이 교대로 상주하면서 상담을 계속해 온 결과, 초기와 비교하여 상담 요청 건수가 현저히 줄어들게 되었다. 게다가 여름으로 접어들면서 날씨가 더워지기 시작하자 콘크리트 위에 세워진 상담텐트안의 열기는 숨을 쉬기도 어려울 지경에 이르렀고, 선풍기 한 대로는 도저히 견디기 어려울 지경에 이르렀다. 게다가, 하루에 한 두 명 상담겸 상담 변호사들에 대한 위로겸 들르는 피해자들을 위해서 바쁜 변호사들이 안산까지 내려와서 상담텐트를 지키고 있는 것이 효율적인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되었고, 상담활동을 계속할 것인지 여부를 두고 고민이 시작되었다.

가족대책위에서는 정부나 언론에 대해서 극도의 불신과 분노를

가지고 있었던 지라, 대한변협 세월호 특위는 가장 큰 신뢰와 든든한 지원군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던지라 상담텐트가 철수하는 것을 매우 불안해했다. 대한변협 세월호 특위 입장에서는 피해자들이 특별법을 요구하며 국회나 광화문 등지에서 농성에 참여하거나 특별법 촉구 서명을 받으러 전국을 다니기도 하고 광주와 인천에서 매주 진행되는 재판에 참석도 하고, 증거확보를 위해 진도, 제주도 등지를 다니는가 하면 일부는 직장으로 돌아가기도 한지라, 피해자들이 가족텐트를 지키며 법률상담을 받으러 오는 횟수는 점점 줄어들게 되었다. 상담하러 오는 이도 없는 빈 텐트를 유지하면서 변호사들이 상주하는 것은 더 이상 유지할 명분도 실익도 없는지라, 상담텐트를 유지할지 여부에 대하여 피해자 가족대책위와 수차례 논의를 거친 결과 피해자 가족대책위의 요청에 따라 진도에서 실종자 수색이 계속되고 있는 이상 합동영결식이 거행되어 합동분향소가 철거될 때까지는 유가족 옆에서 상담활동을 계속 하기로 결정을 하게 되었다. 그 결정에 따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상담텐트를 지키는 것으로 합의를 했다. 상담의 연속성을 위하여 이전에 상담한 변호사와 지속적인 상담을 할 수 있도록 요일별로 상담 변호사를 지정해서 상담을 하게 되었고, 지리적으로 가까운 서울근교의 변호사들이 오세범 변호사를 중심으로 동참하게 되었다.

(3) 후기(2014년 11월~2015년 1월 현재)

사고 발생 후 6개월이 넘어서면서 피해자들도 특별법을 들러싼

각종 행사나 항의시위, 광주와 인천에서의 재판 참여 등으로 피해자들이 더 바빠진 것은 물론 날씨도 추워지기 시작하면서 상담 건수는 더욱 줄어들게 되었다. 무엇보다 6개월 이상 변호사들이 피해자 옆에서 상주하면서 상담을 지속해 온 결과, 새로운 일이 발생하지 않는 한 세월호 사고로 인한 법률적인 궁금증은 사실상 거의 대부분 해소되어 상담할 내용 자체가 없는 상태가 된 것이다.

무엇보다 합동분향소 앞에 설치된 가족대책위 텐트도 낮에는 집으로 직장으로 모두 비우고 밤이 되어야 단원고등학교 2학년 1반부터 10반까지 반별로 순서를 정해서 당직을 서기 위해 모이는 형태로 바뀌어 버린지라, 낮에는 변호사들이 아무도 오지 않는 빈 자리만 지키다가 돌아오는 경우가 점점 더 많아져갔다. 이러한 사실을 익히 잘 알고 있던 피해자들이 "매일 비어 있는 상담텐트를 지키는 것은 이제 그만두고, 반별로 모임을 가질 때 변호사가 필요한 사안이 있으면 법률상담을 해주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제안이 들어왔고, 이를 수락하여 지원하는 변호사들 중에서 반별 담임변호사를 지정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담임변호사가 당직날 미리 유가족 반대표에게 전화로 상담을 요청하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시간을 조율하여 참석해서 상담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오고 있다.

다. 상담 원칙

초기에 많은 변호사들이 지원하였지만 상담을 받는 피해자들도

상담을 하는 대한변협 세월호 특위도 처음 경험하는 상황이라 시행착오도 많았다. 안산지역은 초기 오지원 변호사가 팀장으로, 황수철 변호사가 부팀장으로 활동하면서, 처음 상담을 오는 변호사들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일정한 상담 원칙을 정해서 상담하러 오는 변호사들에게 안내하게 되었다.[1)]

① 내담자들이 모두 유족분들이라는 점을 감안해 잡담 및 큰 소리의 대화를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② 처음 오시는 변호사님들께서는 분향소 조문 후 유가족 천막으로 가서 가족분들께 안부 ‘ 인사를 드린 후에 상담 업무를 시작합니다.

③ 내담자가 오면, 가족 신분증 또는 희생자 가족 뺏지 소지자에 한하여 상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세월호 참사 피해자 + 공익적 측면 감안).

④ 상담천막이 비지 않아야 하므로, 식사는 번갈아 가면서 유가족 천막에서 유가족들과 함께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⑤ 반드시 상담일지를 작성하여 정리하되, 컴퓨터로 작성한 것은 텐트 안 컴퓨터의 보안 문제로 인해 bluecat@koreanbar.or.kr (대한변협 김정욱 변호사 이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2)]

⑥ 상담 진행 중 즉답하기 어려운 경우, 1차 상담(사실관계 정리)만 하고, 전문 변호사와 연결하여 24시간 내에 답변을 드리겠다고 응답하면 됩니다.

⑦ 법률지원 관련, 유・무료 여부 질문에 대한 원칙[3)]

---

1) 참고자료 1. 초기 상담 매뉴얼 2. 수정 매뉴얼 각 참조
2) 참고자료 3.상담카드 참조
3) 참고자료 4.무료법률지원여부에 대한 원칙 참조

㉠ 법률상담은 모두 무료이고,

㉡ 신청·소송 사건의 경우, 법률지원팀 내부 논의를 통해 공익성이 인정되면 무료 소송이 가능하지만, 공익소송으로 인정받기 어렵거나, 피해자 간 이해상반의 경우에는 공익법률지원단 이름으로 무료 소송지원이 불가능한 그러한 경우에도, 각 지방변호사회, 대한변협인권재단 등을 통해 무료 소송지원이 가능한지 확인하여 알려주겠다고 답변합니다. 소송의사가 명백한 경우 본인이 직접 또는 서울회나 경기중앙회에 문의해서 무료소송 가능한 변호사를 연결해 주시기 바랍니다(서울회와 경기중앙회에는 각기 무료법률구조제도가 있음).

⑧ 외부적으로 <비밀준수의무>가 적용된다는 점을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라. 개선할 사항

상담하는 변호사들과 상담을 받는 유가족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애로사항 내지 개선할 사항 중 중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유가족들이 트라우마에 시달리며 매우 민감한 상태였던지라, 변호사들의 말 한마디 눈빛 하나 손짓 하나 일거수일투족이 지나치게 긴장되고 힘들었고, 때로는 법률상담이 아니라 심리적인 위로와 위안까지 담당해야만 했었는데, 이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어서 힘들어했다.

(2) 몇몇 경력도 오래 되고 능숙한 변호사들과 달리, 서울에서 안산

까지 내려와서 상담을 해 주는 수습변호사나 변호사 기수가 낮은 변호사들 중에는 유가족들의 눈높이에 맞게 쉬운 말로 이해하기 쉽게 상담을 해 주는 기술이 다소 부족하여, 그로 인한 유가족들의 고충도 있었다. 상담내용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하거나, 알아듣지도 못하는 데 변호사 혼자 이야기한다는 불만도 간혹 있었다. 변호사의 능력이나 표현 방법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특히 대형참사로 인한 트라우마를 겪는 피해자들을 위해서는 좀 더 쉬운 용어로 천천히 설명하면서 명쾌하게 상담해 주는 것이 필요했다.

(3) 유가족들 입장에서는 소송을 할 경우 준비해야 할 서류가 너무 많아서 발급받으러 다닐 시간이 없다, 왜 이런 서류들이 필요한지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부족하다, 가압류신청이나 보험금 청구 시 이러이러한 서류가 필요하다고만 설명하지 말고, 그러한 서류가 왜 필요한지도 설명해 달라는 등의 요청도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구비서류에 대해서도 형식적으로 목록만 나열할 것이 아니라 왜 필요한지 좀 더 오랜 시간 편안하게 천천히 쉽게 상담해 주는 것이 필요하기도 하다.

3. 시기별 주요 상담활동 내용

가. 초기(2014년 5월~6월)[4]

(1) 양육친의 비양육친에 대한 양육비채권 등을 근거로 한 보험금 등에 대한 보전청구 등

4) 참고자료 5.초기 상담내용 정리표 참조

(가) 문제점

초기에 이루어진 가장 많은 상담은 비양육친의 보험이나 배,보상금 수령을 둘러싼 것이었다. 안산 단원고 피해 학생 중에는 한부모 가정이 70명 전후라고 할 정도로 많았는데, 여행자보험이나 배,보상시 상속을 둘러싼 법률 상담이나 궁금증이 다른 상담보다 유독 많았다.

미성년 자녀가 사망하는 경우 직계존속인 부모가 공동으로 상속인이 된다. 이혼 후 10여년이 넘게 생사도 모른 채 떨어져 살면서 부모 중 한사람이 전적으로 양육을 해 오던 중 세월호 사고가 발생한 한부모 가정 중에는, 생활비나 양육비 한 푼 주지 않고 면접교섭 한 번 하지 않던 상대방이 갑자기 나타나 자녀의 사망에 따른 보험금에 대한 상속을 주장한 경우들이 있었다. 혼자서 자녀를 양육하느라 무수히 많은 고생을 하고, 세월호 사고로 더 큰 상심에 잠겨 있는 한부모에게 이혼한 상대방이 갑자기 나타나 한마디 위로의 표현도 없이 자녀가 수학여행을 떠나면서 가입했던 여행자보험이나 양육친이 자녀를 위하여 불입해 오던 개인보험금의 2분의 1을 수령해 가는 사례들이 알려지면서, 이중 삼중의 심적 고통을 받는 한부모 가정이 발생하게 되었고, 이를 지켜보는 다른 한부모 가정의 부모들도 언제 자신에게도 그런 일이 발생할 지 모른다는 생각에서 오는 분노와 불안함으로 극도로 민감해져 갔던 것이다.

이에 대한변협 세월호 특위 이명숙 위원장은 10여명, 20-30여명,

50여명 등 한부모 가정 학부모들과 한자리에서 만나 법률상담도 하고, 간담회도 하고, 질의응답을 받는 시간도 가지는 등 별도의 법률상담을 집단으로 하곤 했다.

(나) 상담 원칙-합의, 조정 등

이러한 경우 원칙적으로 가급적 부모 사이의 협의를 권유하였다. 자녀의 사망으로 인한 보험금 등의 권리를 소송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희생된 자녀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설명하였다. 다행히 부모 사이에 협의가 된 경우는 상속포기, 합의사항 공증 등의 방법을 알려주었다.

(1) 상속포기

사망 후 3개월 내에 신고해야 하므로 일단 7월 16일까지 상속포기자가 안산법원에 가서 상속포기신고를 하도록 하였다. 때로는 가족들이 안산법원에서 가져온 상속포기신고서의 작성을 도와주기도 하였다.

(2) 합의 사항 공증

부모사이에 상속지분에 대해 합의하는 경우(예컨대, 8:2)가 있는데, 그 경우 합의사항에 대해 가까운 공증인사무소 가서 공증을 받도록 안내하였다.

(다) 가압류 등 법적 조치

부득이 합의가 안 될 경우 그에 대한 해결로 양육친은 양육비나 기여분 청구에 근거하여 보험금이나 정부 보상금에 대해 가압류가 가능하다고 안내하였고, 필요한 경우 무료로 가압류신청과 과거양육비 청구소송 등을 무료로 제기해 주었다.[5)]

또, 2015년 1월 초순부터는 14명의 여성변호사들로 구성된 한부모가정 소송지원팀을 만들어 별도의 법률상담과 소송지원을 도와주고 있다.

(2) 악성 댓글 작성자 등에 대한 형사고소

초기 사건에 관한 인터넷 기사에 악의적인 댓글을 달거나, 유언비어 혹은 조작된 사진을 유포하는 경우가 자주 있었다. 상담이 들어온 건들에 대해서는 실제 형사고소를 한 경우도 있다. 대부분은 특정 유가족에 대한 명예훼손이 아니라 유가족 전체에 대한 비방이거나 모멸적 발언들(미개하다, 개들 잘 죽은 것 아니냐는 등)이어서 고소장 작성에 있어서는 집단에 대한 명예훼손의 법리를 적용하는 것이 중요한 사항이었다. 그리고 고소장 작성은 상담변호사들이 상담을 하면서 바로 상담내용을 활용해서 작성이 가능했으므로 직접 상담한 변호사들이 무료로 작성해 주었고, 증거자료 확보 등에 시간이 걸리고 다소 어려운 사건의 경우 상주변

5) 참고자료 6.관련 법률검토 참조

호사가 처리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가끔은 감정이 격한 나머지 유족에 동정적인 사람들끼리도 싸우는 경우가 있었다. 특히 인터넷에서 그러한 일들이 발생하였는데, 변호사가 직접 양 당사자들을 만나 이해・양보・화해시키는 경우도 있었다.

(3) 보험계약의 해석과 관련한 사항

개인이 가입한 보험계약의 해석과 관련한 문의들도 가끔 들어왔는데, 이 부분은 약관을 가져온 경우 바로 법률 상담이 가능한 경우도 있지만, 약관이 없거나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경기도 미술관에 상주 중인 보험사 직원을 연결해 주기도 하였다.

(4) 학생 인터넷 기록 확인요청에 대한 사항

예상치 못한 사고로 아무런 준비 없이 가족을 잃었으므로 유가족들은 자녀들에 대해 남아 있는 자료를 찾고자 하였고, 인터넷 기록을 조회할 수 없냐는 문의들이 종종 들어왔다.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문의한 결과, 핸드폰, 신용카드, 공용 아이핀 등을 이용해서 접속사이트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는 답변을 들었으나, 공용 아이핀을 통한 확인은 대한변협의 공문이 오면 따로 검토를 해보겠다는 입장을 전해 주었고, 네이버의 경우, 비밀번호는 알려줄 수 없으나 열람하고자 하는 자료를 특정하면(예:엔드라이브의 사진)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다는 답변을 들어서 전해주기도 했다. 실제로 자녀들의 핸드폰이나 카메라 컴퓨터 등은 대한변협 세월호 특위에서 비용을 부담하고 복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

어서 상당 부분 복구가 가능했다.

(5) 기타

여러 가지 일상적인 법률상담도 상당히 많았다. 예컨대, 유가족 중 중국 동포 신분인 자가 한 명 있었는데 귀화신청을 하여 6월 중에 귀화 시험을 보아야 했다. 그런데 딸의 사망으로 정신적 충격을 받아 귀화시험을 볼 상태가 아니었다. 귀화시험은 1년에 2번 있는데 모두 떨어지면 다시 중국으로 돌아가야만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미 딸을 안산에 안장하여 딸을 한국에 두고 중국으로 돌아갈 수는 없다고 호소했다. 상담 변호사가 법무부에 직접 전화를 걸어 사정을 설명하여 국적법에 따른 귀화시험면제 사유로 인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며칠 후 법무부 담당자가 시험면제결정을 통보하면서, 시험통과자와의 균형상 귀화허가는 심사기한이 끝나는 시험실시후 1년 6월이 경과한 후,(즉 2015년 12월에) 통보될 것이라고 알려주었다. 가족들은 귀화허가로 인해 무엇보다 딸이 안장되어 있는 한국에서 살 수 있어 불행 중에도 무척 기뻐하였던 사례가 있는데, 이처럼 상담 변호사들은 단순한 법적인 조언이나 자문한 해 준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례에 맞게 가능한 문제를 해결해 주고자 최선을 다해서 성심성의껏 문제해결을 도와 주었다.

나. 중기(2014년 7월~10월)

(1) 협약서 체결

중기에 들어와서 가족들 상담은 많이 줄어들었지만 가족대책위의 법률문제는 계속 발생하였다. 특히 참사 초기부터 각종 언론에서 가족들을 상대로 촬영·기록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초상권문제부터 시작해서 가족대책위 회의를 촬영한 경우 누가 갖는지 저작권을, 누구의 허락을 받고 방영이 가능한지 등에 대한 논란이 커졌다. 따라서 여러 단체들과 촬영·기록 등에 대한 명확한 상호협약이 필요하게 되었고, 협약서 초안 작성의 의뢰를 받았다. 그 중 동영상촬영이나 사진의 경우 저작권법규정과 가족들의 입장을 조율하는 것이 필요했다. 또한 촬영하는 사람들의 처지와 입장도 이해할 필요가 있었다. 그리하여 여러 단체와 협약서를 작성·체결하게 되었다.

(2) 세월호참사 시민기록위원회

(가) 특징

참사 초기에는 안산 지역의 기록관계자(영상녹화·사진·문서기록 등)들이 이 사건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직감하고 경황없는 가족들을 돕겠다는 마음으로 세월호참사 시민기록위원회(이하, '시민기록위원회'라 함)에 자진해 참여하였다. 그러다 점차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었고, 가족들과의 관계, 특히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의 귀속 등이 문제되어 수차례 협의 결과 협약서를 체결하였다. 저작권법에 따르면 저작물의 기본적으로는 기록자가 저작권자가 되나, 위임의 법리를 적용하여 유가족들과 기록자를 공동저작권자로 하기로 했고, 시민기록위원회는 가족대

책위의 기록관계 일을 수임해서 하는 것을 기조로 했다.

(나) 주요 협약 내용[6)]

① “목적”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 생명과 안전을 소중히 여기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세월호참사와 관련한 경과 및 활동을 기록하기 위함(제1조)
② “관계” 가족대책위와 시민기록위원회 모두 중요한 기록의 주체라는 점, 평등하고 협력적인 관계 (제2조)
③ “기록”이란 형태불문하고 세월호참사와 관련한 경과 및 가족대책위의 활동에 대한 일체의 기록 활동과 그 산출물 (제3조)
④ 기록을 시민기록위원회에게 위탁하며(제5조 2.), 가족대책위가 언제든 확인할 수 있으며(제5조 4.), 관리는 공동으로 한다 (제5조 5.)
⑤ 운영자금은 공동으로 조성한다 (제5조 7.)

(3) 4·16기록단

(가) 특징

4·16기록단은 PD활동 경험이 있거나,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모인 단체이다. 세월호참사에 대한 기록의 중요성을 공감하고, PD경험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적 기량으로 촬영·편집하였다. 한편으로 유가족들과의 관계가 중요한데 상대적으로 PD의 독

6) 참고자료 시민기록위원회 협약서 참조

자성이 강조되었다.

(나) 주요 협약 내용[7)]

① “목적” 세월호 참사에 대한 올바른 보도와 가족들의 인격권 보호를 위함(제1조)
② “관계” 4·16기록단 역시 중요한 기록의 주체로서 가족대책위와 평등하고 협력적인 관계(제2조)
③ “기록”이란 주로 영상과 사진을 의미한다(제3조)
④ 인격권이 특히 강조되고(제5조 2.), 관리는 4·16기록단이 담당하며(제5조 5.), 특히 4·16기록단에 소속하여 활동하는 사람들은 자필 서명이 포함된 명단을 첨부하여 그 외의 사람에게는 가족들의 촬영을 허용하지 않기로 한다(제7조 제2, 3항)

(4) 뉴스타파

(가) 특징

뉴스타파는 인터넷에서 활동하는 방송으로서 독자성이 훨씬 강한 것이 특징이다. 방송의 독립성을 보장하되 가족대책위의 방송자료를 위탁 관리하기로 하여 그 소유권과 이용에 대해 특별한 협약이 필요하였다.

(나) 주요 협약 내용[8)]

---

7) 참고자료 8.기록단 협약서 참조
8) 참고자료 9.뉴스타파 협약서 참조

① “목적” 가족대책위가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분석·정리·이용하여 진상규명 및 공정한 보도를 위한다 (제1조)

② “관계” 뉴스타파 역시 공정보도의 주체로서 가족대책위와 평등하고 협력적인 관계 (제2조)

③ “자료”란 가족대책위가 보유한 일체의 영상 등 산출물 (제3조)

④ 자료의 소유권은 가족대책위에 있으며, 이를 뉴스타파에게 위탁하여 분석·정리하도록 하고(제5조 2.), 뉴스타파가 이를 이용할 경우는 가족대책위와 사전합의에 의하여 이용한다 (제5조의 3.)

(5) 일본 후지 TV

이는 일본의 후지TV방송국이 가족들의 인터뷰를 중심으로 한 방송물 제작에 관한 협약으로 특히 초상권, 명예훼손 여부 등이 문제되었다. 통상의 제작물 협약에 따라 진행되었다.

(6) 결론

가족들의 초상권, 저작권 등의 주장과 각 기록단체들의 특성에 따른 주장으로 의견 대립시 저작권법을 기초로 양측의 의견을 조율하느라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였다. 하지만 양측의 합의로 협약서가 체결되었고 이후 촬영 등 기록 관련한 혼란이 정리되었다.

다. 후기(2014년 11월~2015년 1월)

반별 담임변호사제로 전환된 후 각 반에서 상담하다 보니 개별적

상담과는 별도로 가족들 공통의 문제를 문의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그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실종자 수색중단 및 세월호 인양 여부

우여곡절 끝에 실종자 수색이 중단되고 세월호 인양여부에 대한 문의가 많아졌다. 가족들은 실종자 수색중단이 세월호 인양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수색의 다른 방법으로 세월호를 인양하여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당시 가족들은 세월호 인양을 촉구하기 위해 반별로 돌아가면서 팽목항을 방문하는 등 여러 가지 대책을 수립하고 있었는데, 상담 변호사가 해결할 수 있는 법률적인 문제는 아니었지만 "세월호 인양여부는 가족들과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에 달려있다"는 원론적 이야기와 더불어 유가족들과 변호사로서의 상담이라기보다는 대화 상대자, 전문가로서의 조언, 심리적 지지자 등의 역할까지도 상담 변호사들이 담당하였다.

(2) 특별법 통과와 진상조사위원회 구성 및 이후

국회에서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세월호특별법"이라 한다)이 통과되자 진상조사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이후 일정은 어떤지에 대한 문의가 많아졌다. 이에 담임변호사들도 세월호특별법을 함께 검토하고, 집행부를 도와 법률 지원활동을 하는 변호사들로부터 자료를 받아 이후 진행에 대한 대략의 일정을 설명했다.

(3) 추모관·추모비 건립과 관리 주체 문제

가족들은 하루 빨리 추모관과 추모비의 건립을 바라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건립시기와 관리주체가 누구인지 문의가 많았다. 이 역시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중심으로 특히 관리주체가 국가인지 안산시인지 다툼이 있다는 정보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정도로 설명하였다.

(4) 광주 재판 관련-특히 선장 살인 무죄건

광주에서 세월호 선장 등에 대한 1심 재판 결과가 나오자 문의가 많았다. 특히 선장에 대해 살인죄가 무죄 나온 것에 많이 분개하며 왜 무죄가 되었는지 설명을 요청했다. 판결문을 분석하고 법리상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기가 쉽지 않음을 설명했다. 가족들의 감정을 충분히 인정하면서도 형사상 무죄추정원칙에 관하여 설명하였다.

(5) 사단법인 구성 관련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가족들의 모임이 유지될 필요가 있고 법적 단체로 정비될 필요가 있어 사단법인 구성 문제가 대두되었고, 이에 대한 문의가 많아졌다. 원칙적으로 사단법인의 장점과 필요성을 설명하면서도 가족들 사이에 충분한 이해 공감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6) 배상·보상문제

배상·보상문제에 대해 가끔씩 문의하는 경우가 있었으나, 국회에서 특별법으로 통과할 예정이라 하니 일단 그 진행과 내용에 대해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것이 필요하며 특히 가족들의 적극적 관심이 요구된다고 설명하였다.

(7) 기타

개별적 상담으로 대여금 못 받는 것, 별도로 생명보험 가입했는데 지급이 안 되는 것 등 여러 가지 일반 법률상담이 있었다. 이는 각 담임 변호사들이 적절하게 상담을 하였다.

4. 성과와 반성

가. 성과

(1) 유가족들에게 현실적 도움이 되었다.

유가족들 참사로 경황이 없는 중에도 여러 가지 법률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하였다. 진상규명이나 특별법 등 전체적이고 거시적인 문제와 별개로 개별적인 법률문제가 발생하였다. 이에 대해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들이 유가족이 머무는 유가족텐트 바로 옆에 상담 텐트를 마련해서 유가족만 전용으로 하루 종일 변호사가 상주하면서 직접 상담함으로써 현실적으로 많은 도움이 되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이 바뀜에 따라 상담내용도 바뀌어져 갔고 상담 형태도 바뀌어갔는데, 어떤 경우에도 대한변협 세월호 특위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제안

하지 않았고 유가족들이 개선책을 제안할 때까지 기다려 주었다. 모든 개선책이나 제안은 함께 만나서 고민하면서 피해자들의 의견을 존중하여 결정하곤 함으로써, 유가족들에게 단순한 법률조언에 그치지 않고 절대적인 신뢰와 함께 든든한 지원자로서 큰 도움을 줄 수 있었다.

(2) 유가족들에게 심리적으로 위로가 되었다.

변호사들이 참사 초기부터 지금까지 가족들 옆에서 상담을 제공함으로써 가족들에게 심리적으로 많은 위로가 되었다. 특히 초기에는 각종 단체나 자원봉사자들이 안산분향소 옆에 텐트를 설치하고 가족들을 도왔지만, 점차 안정화되고 일상화되면서 할 일도 줄어들어 하나둘 철수해 버렸지만, 대한변협 세월호 특위는 마지막까지 텐트가 남아 있었고, 유가족들이 스스로 다른 형태로의 전환을 제안할 때까지 변함없는 모습으로 함께 있어 줌으로써, 국회와 정부, 언론과 국민들로부터 수많은 갈등을 경험하면서 울분과 분노로 시달렸던 유가족들에게는 더 없는 의지처가 되어 주었다. 텐트가 철수하고 사람들이 떠날수록 가족들의 외로움은 커져갔는데 법률상담 텐트와 변호사들은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었고, 지금도 유가족들이 언제든지 연락하고 상담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둠으로써 유가족들이 많이 감동하고 고마워했다.

(3) 변호사에 대한 거리감을 없애고 긍정적 인식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가족들이 초기에는 변호사들에 대한 거리감도 일부 있었으나 변호사들이 지속적으로 상담에 참여하면서 거리감이 많이 없어졌고 개인적으로도 서로 많이 친해졌다. 국가적 대형참사에 변호사들이 멀리 있지 않고 피해자와 함께 있으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함께 고민하고 상담하며 대처해 나가는 것을 보면서, 변호사들의 국가적 대형참사나 위난에 대한 공익적 기능을 높이 인정받는 계기가 된 것은 무엇으로도 환산 할 수 없는 값진 경험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경험은 초기에 변호사들이 피해자들의 불신 속에서도 KBS사태 등 새로운 일이 있을 때마다 옆에서 이를 도와주고 앞장서서 중재해주고 문제를 해결해주는 모습을 보이면서 조금씩 조금씩 신뢰가 쌓임으로써 가능했다. 변호사라는 권위만으로 해결될 수 없는, 현장에서 함께 식사를 하고, 함께 수많은 시간을 보내며, 가족들과 함께 한마음으로 울고 웃으면서 지내는 가운데 얻어진 값진 것인지라, 우리 사회에서 변호사들이 어떤 모습으로 어려운 이웃에게 다가가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선례가 되었다.

또한 일부 극소수 대한변협 세월호 특위 소속 변호사들에 한정되지 않고 전국의 자원하는 모든 변호사들과 심지어 수습 중인 연수변호사들에게까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 두고, 특히 서울에 소재하는 변호사들 중심이 아니라 피해자들이 있는 지역의 변호사들을 적극적으로 상담에 연결시킴으로써 일시적이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연결이 가능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한 점도 매우 좋은 착안점이었다.

나아가 가족들이 원하는 바를 가장 가까이서 듣고 이를 특위의 다른

팀에게 전달하고, 반대로 특별법 통과나 세월호 인양 등 다른 현장팀에서 느끼는 한계나 문제점, 갈등을 유가족들과 늘 옆에 있는 상담변호사를 통해서 차분히 설명하고 이해시키고 공감하기 위해 노력할 수 있었던 것도 좋은 수확이며, 가족들의 요청사항 및 불만사항에 대한 인식을 다른 팀과 다각도로 공유하고 함께 해결하고자 노력했던 점도 나름대로 많은 성과가 있었다.

(4) 변호사들에게 생명과 안전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문제의식을 갖게 되었다.

변호사들도 직접 분향소 및 가족들 텐트에서 상담에 참여하면서 생명과 안전에 대한 소중함과 집단재난에 대한 문제의식을 깊이 가지게 되었고, 세월호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대한변협 내에 상설기구로서 '생명안전위원회'와 같은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집단재난이나 안전을 위한 예방과 지속적 감시 및 문제제기, 사건사고 발생시 매뉴얼 마련 및 적극적인 참여를 하는 토대를 마련해야하는 당위성이나 필요성도 인식하게 되었고, 전국적인 시스템 마련이나 네트워킹이 얼마나 소중한지도 여실히 느끼게 되었다. 집단재난 발생 시 신속하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어 2차 피해를 줄이고, 장기적으로는 집단재난 예방을 위한 제도 정비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 할 필요성을 대한변협은 물론 유가족들이나 나아가 우리 사회 모두가 절실히 느끼는 계기가 되었으리라 믿는다.

나. 반성

(1) 초기에 유례없는 참사로 인해 우왕좌왕하였다.

514명의 변호사들이 공익법률단에 지원했지만, 이를 효율적으로 배치하여 적재적소에서 활발히 활동하도록 배치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다. 법률상담팀의 경우, 사건 발생 직후에는 피해자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 피해자들과 현장에서 함께 지내며 누비며 초기에는 텐트를 설치하여 필요한 경우 누구나 찾아올 수 있게 하는 것이 불가피하였고 그로 인한 절대적인 신뢰 등 많은 장점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반드시 피해자들이 있는 현장에서만 상담지원을 해야하는지는 의문이 아닐 수 없다. 왜냐하면 전국 단위의 변호사들이 참여하는데 한계가 있고, 변호사가들에게는 너무 많은 시간과 노력의 희생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또. 시간이 지나면서 상담을 하는 시간이나 형태도 다양하게 변화하는 노력을 좀 더 적극적으로 시도하는 노력이 아쉬웠다. 중기가 지나면서 상담건수는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피해자들이 심리적 지지를 위해서만이라도 그대로 상주해 주기를 원한다는 이유만으로 변호사들이 계속 빈텐트를 지키는 시간이 필요 이상으로 길어졌던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보다 일찍 피해자들과 상의하고 설득해서 반별 담임변호사제를 실시하는 등 자문변호사제를 실시하는 것이 더 합리적일 수도 있었다는 판단은, 향후 다른 재난 발생시 상담지원에 필히 참작되어야 할 것이며,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대한변협에 '생명안전위원회'등 집단재난대책위원회가 상설된다면 이번 경험을 토대로 콘트롤 타워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할 것으로 기대한다.

(2) 상담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

초기에는 상담자료가 그런대로 남아 있었으나 상근자들이 철수하면서부터는 상담자료가 부실하게 정리되어 전체흐름을 알기가 어렵게 되었다. 끝까지 체계화시킬 필요가 있다.

(3) 변호사들에게 최소한의 활동비가 지급될 필요가 있다.

실제 변호사들이 대부분 서울에 근무처가 있는데 서울에서 안산에 상담 갔다 오면 하루가 다 걸릴 정도이다. 단순히 변호사들의 선의만 가지고서는 좋은 변호사들이 지속적으로 상담에 참여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 대한변협 세월호 특별위원회의 활동은 사실상 거의 대부분이 열정과 뜨거운 가슴을 가진 순수한 변호사들의 봉사 정신에서 우러난 자기 희생으로 가능했는데, 과연 이러한 순수한 열정에서 우러나는 봉사와 노력이 지속가능할 것인지는 의문이 아닐 수 없다. 향후 또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 대한변협차원이건 우리 사회 차원에서건 시간을 내어 헌신하는 변호사들에 대한 교통비등 최소한의 활동비가 지급될 필요성이 있다.

(4) 법률상담 중 유료로 수임해 달라는 경우에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다.

무료 법률상담하는 과정에서 당사자와 상담 변호사 사이에 신뢰관계가 생긴 경우에 당사자가 개별적인 사건을 상담 변호사에게 유료로 선임해 달라는 경우가 생긴다. 상담 변호사들 사이에 공익법률상

담의 취지상 무료소송지원 조건에 해당되지 않으면 무조건 다른 변호사를 찾아가도록 하거나, 당사자와 개별 변호사 사이의 계약에 일임하자는 등의 논란이 있었는데, 법률상담을 하다 보면 프라이버시 문제도 생기고 신뢰관계도 쌓여 있는 상태에서 무조건 다른 데를 찾아가 보라고 하면 당사자에게 2중의 고통이 될 수 있고, 그렇다고 상담 변호사에게 무조건 선임계약기준을 맡겨두는 것은 공익법률상담의 취지를 몰각시키거나 순수성을 희석시킬 우려가 있다. 따라서 변협차원에서 상담 과정에서 생긴 신뢰로 사건 의뢰를 받을 경우, 이를 수임할 수 있는지 여부나 수임할 경우 변호사 비용은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 대한 일정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참고로 아래와 같은 서울시 공익변호사단의 상담 후 사건을 수임하는 경우 준수해야 할 규정은 눈여겨 볼 만한 일이다.

① 선임을 원하는 당사자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동의가 전제되어야 한다.
② 법률구조공단 등의 구조신청을 먼저 소개·안내하여야 한다.
③ 서울시와 무관한 전적으로 개인 자격의 수임임을 분명히 알려야 한다.
④ 서울시에 수임 사실 통보(계약 즉시) 하여야 한다.
⑤ 경제적인 부담이 되지 않는 수임료를 약정 하여야 한다.
(* 서울변호사회 형사당직변호사의 경우 수임액이 성공보수까지 합산하여 300만원을 넘지 않고, 수임하는 경우 서울변호사회에 반드시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

(5) 변호사들의 객관성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집단재난의 경우 변호사들이 피해자들에 대한 공감능력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변호사들에 대한 사회적 기대에 비춰보면 객관성을 가지는 것도 중요한 덕목이라고 할 것이다. 특히 유가족이나 희생자라고 해서 일방적으로 편을 들게 되면 본의 아니게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고 문제해결을 어렵게 할 수도 있다. 가족들 내부의 문제나 희생자와 실종자 문제, 집행부와 일반 유가족 사이의 갈등에 대해서는 중립을 지키거나 전체적인 화합의 방향을 잃지 않고 상담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6) 생명안전문제에 공감하거나 집단재난대책에 관심이 있는 변호사들의 의욕이나 귀중한 경험이 사장될 우려가 있다.

참사 초기에 공익법률지원단에 참여의사를 밝힌 514명의 변호사들의 의욕이나 실제 법률상담 등에 참여한 변호사들의 귀중한 경험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교류하며 대안을 모색하는 상설 단체의 필요성이 절실하다.

5. 마치며

4·16세월호참사와 이를 극복하려는 여러 노력 가운데 법률상담팀도 유가족을 비롯한 피해자들의 옆에서 큰 신뢰와 심리적 위안을 주며 끈기와 애정을 가지고 헌신적인 노력을 해 왔다. 유가족들이 초기에 가지고 있던 우리 사회 모두에 대한 불신과 반감의 벽을 상담과 현

장 지원 등을 통하여 변호사들은 이를 극복할 수 있었고, 어느 순간부터 가장 두터운 신뢰와 기대라는 부수적인 결과까지 얻게 되었다. 이를 통해 직역수호나 밥그릇 챙기기에만 연연해 한다는 변호사들에 대한 편견이나 나쁜 이미지 대신 공익의 수호자로서 헌신적으로 앞장서는 변호사라는 이미지 형성에도 큰 역할을 하였으며, 앞으로도 세월호 피해자들의 세월호특별법 통과 후 벌어지는 여러 가지 법률 문제 등에 대한 도움은 물론 대형참사나 갈등에 공익의 대변자인 변호사들이 앞장서리라는 기대감을 우리 사회가 가지게 되리라 믿는다.

또, 법률상담을 함께 했던 변호사들간에도 세월호 유가족 상담을 통한 공감과 보람, 변호사로서 공익활동에 아무런 금전적 댓가없이 동참하였다는 자부심과 자긍심을 얻은 것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큰 수확이 아닐 수 없다.

향후 대한변협에 우리 사회의 안전과 집단 재난에 대처하기 위한 특별위원회가 만들어진다면, 대한변협 세월호 특위의 상담지원 활동이 야말로 신속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좋은 선례로 자리매김하리라 믿는다.

제2부 영역별 활동 내역

Ⅶ. 언론 대응 활동

Ⅶ. 언론 대응 활동

1. 서론

대한민국은 '세월호 참사의 전과 후로 나뉜다 '고도 한다. 그만큼 세월호 참사가 엄청난 사건이었다는 뜻이다. 세월호 참사의 여파가 더욱 커졌던 이유의 중심에는 언론과 여론이 있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이전과는 다른 미디어 환경 속, 쌍방향 의사소통이 가능한 IT시대이다 보니 과거의 대형 재난 사고에 비해 언론의 파급력은 엄청났다. 단순한 사실을 전달하는 수준을 벗어나 확대·재생산됐으며, 통제 불가능하게 퍼져나가 결국 제2의 피해를 양산했다. 신문이나 방송만 존재했던 과거와 달리 이제는 블로그, SNS까지 이용하는 다양한 매체들이 등장하면서 부작용도 컸던 탓이다.

또한 실체는 없지만 막강한 영향력을 지닌 '여론'은 큰 힘이 되어주기도 하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힘겨운 싸움을 해야 하는 대상이었다. 여론에는 유가족을 지지·위로하는 의견과 유가족을 조롱하거나 비하하는 의견이 공존했다. 이런 다양한 의견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더군다나 여태까지 이러한 대형사고에 참고할만 한 매뉴얼이 개발되어 있지 않고, 특히 의견을 표출하는 매체가 다양해지면서 대응 자체가 어렵고 까다로워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듯이 대응방법을 강구해야 했다.

언론과 여론에 대한 접근부터 문제 해결에 이르는 '원스톱(One-stop) 대응은' 언론대응팀에게도 낯선 임무였다. 유가족의 큰 슬픔까지 고려하다 보니 대응에 있어 방법 선택과 행동도 조심해야 했다. 지난 과정을 돌이켜보면 언론대응팀이 미흡하게 대응했던 부분이 많아 아쉬움이 크다. 이

번 장에서는 언론대응팀의 활동에 대해 소개함과 동시에 아쉬웠던 점들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고찰을 통해 앞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크고 작은 사건·사고를 대응함에 있어 실수를 줄이고 사고수습에 진정한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2. 실태[1]

가. TV등 기존의 미디어

(1) 문제의 배경

대한민국은 언론분야에 있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다. 역대 모든 정권마다 표현의 자유를 두고 시비가 있었지만 '1987년 헌법' 시행 이후에는 꾸준히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언론이 언론의 자유를 누리면서 자신의 본분을 망각하는 경우[2]가 있다. 예를 들어 '배부른 언론'이라고 지적받는 보도 형태가 대표적이다. '배부른 언론'이라는 말은 비판정신을 잃은 언론을 지탄하는 것인데, 통상 '받아쓰기씩 보도형태[3]'를 일컫는다. 즉 취재원이 말하는 것을 검증 없이 그대로 받아 적는 것으로써 기사 내용에 대한 고찰 없이 '비판적 시각'이 사라진 태도를 의미한다.

세월호 보도에서도 언론은 받아쓰기 보도를 하며 불신을 키웠다. '육해

1) 세월호 사건의 진실을 보도하기 위해 헌신적으로 활동한 기자들이 많이 있으며 언론대응활동을 기술하기에 앞서 감사함을 전한다. 다만, 이 장에서는 언론대응팀 활동의 배경에 대해 언급하다보니 언론의 부정적인 면을 중심으로 기술된 것임을 밝히며, 이 시대에 수많은 정의로운 기자에게 양해를 구하는 바이다.
2) 언론이 제4권력이 되어 언론권력을 남용하는 형태 또는 언론이 보도를 하면서 사실 확인을 명확히 하지 않고 불명확한 사실 등을 전달하고 책임지지 않는 형태를 말한다.
3) '정부와 같이 정보를 독점하고 있는 취재원을 대상으로 하는 민감한 사안에 있어서는 받아쓰기씩 기사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반론이 있다.

공 지상 최대 구조' 보도[4]는 검증 없이 정부 발표를 받아쓴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다. 최대 구조라는 정부 대변인의 말을 들었더라도, 확인을 통해 '최대'라고 말하는 것에 부합하는 구조 활동이 실제로 투입되고 있는지를 검증했어야 했다. 그러나 검증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렇게 검증이 안 된 보도들이 쏟아지다보니 유족들은 인터뷰 자체를 거부 했다. 자신들의 인터뷰 내용이 왜곡되어 보도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런 점은 당시의 언론에 대한 유족의 불신이 상당했었음을 의미하며, 결국 유족은 언론을 외면했다.[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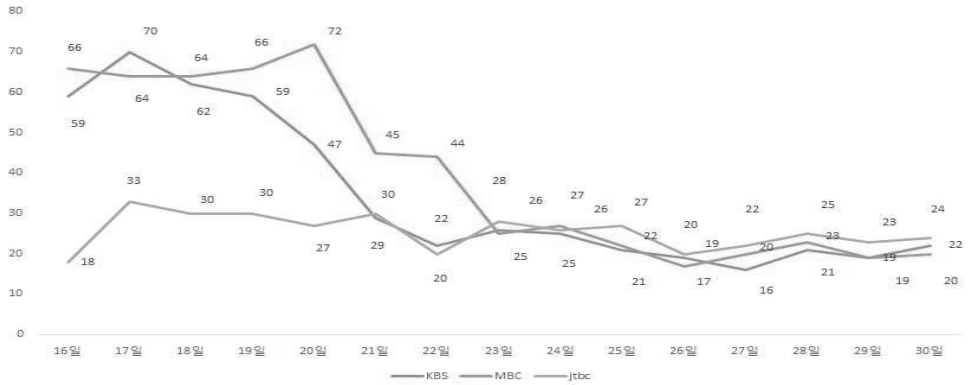
(2) 언론 보도의 추이

세월호는 국가적 관심을 받는 대형 재난 사건이었다. 그래서 발생일을 기준으로 사건 초기에는 모든 언론의 세월호 보도 량이 상당했었다. 그러나 메인 언론(KBS, MBC)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던 뉴스가 참사 후 5일이 지난 시점부터는 줄어들기 시작했다. 그 후로는 각 언론사가 비슷한 뉴스 꼭지 개수를 형성하여 보도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뉴스의 양이 줄어든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반론이 제기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아래 표에서 보면 JTBC의 보도 량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면서 보도가 된 반면, KBS,

4) 연합뉴스는 4월 24일자 '물살 거세지기 전에... 사상 최대 규모 수색총력' 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지 9일째인 24일 민·관·군 합동구조팀은 바다 위와 수중에서 사상 최대 규모의 수색 작업을 벌였다. 또한 물살이 평소보다 크게 약한 소조기가 이날로 끝남에 해군과 해군구조대, 소방 잠수요원, 민간 잠수사, 문화재청 해저발굴단 등 구조대원 726명이 동원됐고 함정 261척, 항공기 35대 등의 장비가 집중 투입됐다."는 내용의 기사였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보도된 구조 장비와 인원이 전혀 투입된 바가 없었다. 함정 261척은 고사하고 잠수사 조차 겨우 2명이 투입되었다. 청해진 해운과 해경이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업체인 언딘의 잠수사(10여명 내외) 외에는 모든 자원봉사 잠수사는 입수 불허상태로, 지상최대 구조라는 해경의 보도 자료와 현장은 전혀 다른 상황이었다

5) 대표적인 예로 KBS 다큐 프로그램이 세월호 참사를 다루면서 유족 인터뷰 없이 제작·방송되었다.

MBC는 초반에 2배 이상의 비율이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JTBC와 비슷한 보도 량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방송 시간에 있어서도 JTBC는 2주 동안 거의 비슷한 방송 시간을 할애하여 보도하였는데, 이 양이 제일 적은 양이었다가 2주후에는 제일 많은 양이 된 것 볼 수 있다.



<참고자료 7-7. 자유 경제원 현안해부 _004 발췌>

인용[6]하고 있는 '자유경제원 현안해부'에 따르면 보도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보도를 한 것인지 의문이다. 사건 발생 초기 5일 이후에는 집중적인 보도가 줄면서, 저널리즘 행태가 여전히 '소방차, 소나기' 행태를 보인다. 인간적 흥미위주의 선정적인 보도 또한 주를 이르면서 피해자와 가족에 대한 피해상황과 가십성 보도 위주로 '인간적 흥미' 위주의 보도도 여전했다. 정치인이나 일반 평론가, 시민단체를 정보원으로 하는 기사의 경우 책임공방과 원인규명, 구조활동에 관한 갈등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기도 했다.

재난주관방송인 KBS의 차별화되지 않은 보도 태도도 지적할 수 있다.

6) 참고자료 7-7. 자유 경제원 현안해부 _004

위에서 지적한 것과 같이 갈등에만 초점을 맞추는 태도는 덜 했지만, 재난주관방송으로 역할을 다했는지와 차별화 시도 또한 있었는지 의문이다.[7] 종합적으로 볼 때 진실 규명을 위해 의문을 던지는 방송은 손에 꼽을 정도라 할 것이다. '달을 보라고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켰더니, 달은 보지 않고 손가락 끝만 보고 있다.' 라는 말이 있다. 결국 세월호의 보도는 언론들이 '손가락 끝' 만 열심히 보도한 격이다.

(3) 언론의 세월호 참사에 대한 문제점

(가) 초기 침몰 및 구조에 대한 언론 보도(오보,폄훼,편파,비보도)

재난을 포함한 모든 언론 보도는 두 가지 요소를 동시에 그리고 적절하게 갖추어야 한다. 바로 신속성과 정확성이다. 이 두 가지 요소는 재난보도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8]다. 재난 보도를 접하는 국민 중에는 피해자의 가족이 있거나 2차 피해가 있을 수 있어 신속하게 정보를 전달해야 하며 정확하지 않은 정보는 오히려 구조를 방해할 수 있으므로 정확하게 전달해야 한다.

세월호 참사의 경우에도 정확성과 신속성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우선 초기 구조 인원 보도를 보면, 사고 당일 오전 11시 경 대다수 언론이 '탑승 학생 전원 구조' 라고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그리고 한 시간도 못되어서 이 보도는 완전한 오보였음이 밝혀졌고 탑승학생의 대다수는 돌아오지 못했다. 대다수가 사망했던 사안을 '전원구조' 라고 보도했다는 점은 가히 치명적인 오보였다고 할 수 있다.

---

7) 참고자료 7-7. 자유 경제원 현안해부 _004 발췌 및 수정
8) 재난 보도 이외의 일반 뉴스 보도에서도 정확성과 신속성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

좀더 ‘전원구조 오보’에 대해 살펴보면, MBC보도의 경우 사고당일 11시 1분에 ‘전원 구조’라는 잘못된 정보를 방송했다. MBC 뉴스가 왜 이러한 오보를 보도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명확하게 밝혀진 바는 없다. 관련 기관들이 서로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하면서 오보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으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이다.[9] 전원구조 이외 MBC의 오보는 다음의 표를 참고하면 쉽게 알 수 있다.

		MBC 보도
4.16	"전원구조"오보 관련	목포MBC "전원구조 아니다" 보고에도 불구하고 오보 수정 기회 놓쳐
4.20	'기념촬영' 국장 논란	현장 취재기자가 아이템 발제했으나, "제작하지 마라" 지시. 20시 30분 정부에서 "직위해제"보도자료 배포
4.21	정몽준 의원 아들 관련 기자회견	SBS, KBS 포함 거의 모든 언론이 다뤘으나 MBC만 누락
4.21	선원만 전용통로 탈출	SBS,KBS 포함 거의 모든 언론이 다뤘으나 MBC만 누락
4.22	공무원들 구급차로 출퇴근	목포MBC 21일 사전 취재해 송고했으나, 박상후 전국부장 "지방 방송에 쓰라"며 거부. 오후 늦게 타사 기사 나오자 "다시 올려 달라" 주문. 이후 사회1부 리포트.
4.22	"80명 구했으면 대단" '해경 막말 파문' 누락	최초 채널 A보도. "보도해야 하는 것 아니냐" 보고했으나 박상후 부장 "80명 구한 거면 잘한 거 맞다. 기사 안 된다"며 묵살. 이후 SBS 보도
4.23	’해경 구조 혼선’ 누락 (바지선 늑장 투입, 민간 잠수사 갈등 등)	현장 기자들 발제 했으나 박상후 부장이 묵살. 기자들 이튿날 다시 발제. 24일 해경의 반박기자회견이 나오자 ’논란’으로 묶어서 다뤄.
4.25	’해경 구조 동영상 은폐’ 누락	목포MBC 단독 발제했으나 박상후 부장 채택 안 해. 이후 27일 KBS 단독보도, 30일 해경이 해당 동영상 공개

9) 참고자료 7-6. KBS,MBC,방통위 기관보고 종합 질의서 참조.

4.26	'구조인원 뻥튀기' 누락	해경이 구조인원을 과장한 사실 현장에서 확인. 기사 발제했으나 박상후 부장 채택 안함
5. 1	'적재량 축소' 조작 누락	SBS,KBS 보도했으나 MBC만 누락
5.10	세월호 희생자 추모집회	SBS,KBS 보도했으나 MBC만 누락
5.19	박근혜 대통령 담화 유족 기자회견 누락	당시 현장에서 유가족 기자회견 내용을 포함한 기사를 준비해 송고까지 했으나 채택 안 됨
5.20	유가족 공식 기자회견 누락	현장에서 발제하고 보고했으나 <뉴스데스크>아이템 에서 빠짐. SBS와 KBS는 리포트. MBC만 2줄짜리 단신 보도

[표1] 누락, 축소, 오보 등으로 문제됐던 사례들[10)]

그렇다면 뉴스 방송사마다 왜 오보가 보도되었는지에 대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우선 가장 큰 원인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받아쓰기식 언론의 보도 태도였을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기사 내용을 현장에서 확인하면 보도 시간이 늦어져서 경쟁사보다 뒤늦게 보도할 가능성이 있고, 이는 결국 시청률이 하락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이다. 또 다른 원인으로는 재난보도 고시[11)]를 준수한다는 이유로 정부에서 하는 공식 집계를

10) 참고자료 7-1. 최종_MBC세월호사건보도백서_完 발췌

11) 참고자료 7-5. 방통위_재난방송요청및고시

[고시]재난방송 및 민방위경보방송의 실시에 관한 기준

제5조(주관방송사의 권한) ① 주관방송사는 재해, 재난 또는 민방위사태의 관리를 관장하는 행정기관의 장(이하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재해, 재난 또는 민방위사태(이하 "재난 등"이라 한다)와 관련한 정보를 우선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

제7조(재난방송 등의 준칙) ① 방송사업자는 재난방송 등을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재난상황에 대해 객관적이고 정확한 보도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재난지역과 이재민 등 피해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보를 다양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재난수습 및 복구상황은 물론 이재민 등 피해자의 생활과 관련된 정보의 제공에 비중을 두어야 한다.
4. 각 방송사업자 별로 재난방송매뉴얼을 제작·비치하여야 한다.

② 방송사업자는 예상되는 재난 등의 위험을 미리 알림으로써 재난 등에 적극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예방 방송에 힘써야 한다.

③ 방송사업자가 재난방송 등을 실시하였을 경우에는 그 결과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및 방송통신위원회로 통보하여야 한다.

그대로 인용하는 보도를 한 것일 수 있다. 보도 준칙은 기자로서 당연히 지켜야할 가이드라인인데, 역으로 이를 방패삼아 탐사 태도를 져버린 것이다. 결국 기자들은 현장에 가서 상황을 파악하지 않은 체 정부에서 알려주는 내용으로만 보도했고 오보는 양산되었다.

세월호 참사에서 언론의 폐해는 단순히 오보를 한 것에서 그치지 않았다. 유가족을 폄훼하는 보도에서부터, 편파보도, 비보도 등 그 형태가 다양하게 나타났다. 예[12]를 들어 MBC는 5월 7일, "일부 실종자 가족들과 희생자 유족들 이 조급증을 보여 잠수사의 죽음까지 발생했다"는 식의 유족 폄훼 모욕 보도를 했다.

MBC 뉴스 리포트에서는 『이광욱 잠수사가 숨졌다 → 조급증 걸 린 우리 사회가 왜 잠수사를 빨리 투입하지 않느냐 그를 떠민 건 아닌지 생각해보자 → 실제로 일부 실종자 가족들은 해수부 장관과 해경청장을 불러 작업이 더디다고 압박했다 → 사고 초기 일부 실종자들은 현장에 간 총리에게 물을 끼얹고 느리다며 청와대로 행진하자고 외쳤다 → 외국 사례는 어떨까? 쓰촨성 대지진 당시 중국에서는 원자바오 총리의 시찰에 크게 고무됐고 대륙 전역이 "힘내라 중국", "중국을 사랑한다" 는 애국적 구호로 넘쳐났다 → 동일본 지진 사태를 겪은 일본인들은 가눌 수 없는 슬픔을 속마음에 깊이 감추고 외면으로는 놀라울 정도의 평상심을 유지했다』는 논지를 전개했다.

이 리포트는 한 잠수사가 숨진 이면의 사실을 다루지 않고 자신의 주장에 유리한 면만을 왜곡·편집한 짜깁기 기사였다. 이 보도를 제외한 대부분의 언론사는 ①숨진 잠수사가 처음 팽목항에 왔고, 사고 당일 아침 첫

12) 참고자료 7-1. 최종_MBC세월호사건보도백서_完 발췌

수색 작업에 바로 투입됐다는 점과 ② 구조활동시 잠수사들에 대한 안전 지원이 매우 열악했고, 심지어 전문 의료진도 해당 바지선에는 없었다는 점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당국의 안전대책 비판을 했다. 매번 그렇지만 사망 사고 직후에야 대책본부가 뒤늦게 안전 강화 방안을 내놨다는 사실 역시 비판 내용이었다. 그러나 이 기사는 잠수사의 사망원인이 아직 명확히 규명되지 않았던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조급증에 걸린 실종자 가족들이 해양수산부 장관과 해양 경찰청장을 불러 작업이 더디다고 압박했고, 그 조급증에 떠밀려 잠수사가 숨졌다"는 식으로 논리를 비약하고 인과관계를 왜곡했다. 심지어 잠수사 사망과는 인과관계가 부족한 사고 초기 가족의 행동을 연관시키기도 하였으며, 중국의 자연재해로 인한 재난사고에 빗대어 애국심에 호소하는 보도를 한 것이다.

또 다른 예로는 방송의 편파성을 들 수 있다. 편파성에 대해서는 2014년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하 '미방위'라 한다.) 국정감사를 살펴보면 알 수 있는데, 이 감사에서 방송의 편파보도[13]와 방통위의 편파잣대[14]가 도마 위에 올랐기 때문이다.

국정감사 현장에서 미방위 야당 의원들은 방통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라 한다)의 편파 잣대에 대해 지적했다. 특히 유승희[15] 의원은 "방심위의 세월호 보도 심의는 이중 잣대이자 편파심의이고 한국의 언론자유지수가 떨어져 '부분적 언론자유국'으로 강등됐는데 방통심의위의 불공정한 편파 심의가 한 몫 했다"고 주장했다. 유승희 의원이 제공한 자료에서 보면 JTBC <뉴스9>는 다이빙벨 문제를 다뤘다가 '관계자 징계'

13) 세월호 참사의 편파보도는 앞부분에서 이미 언급하였으므로 국정감사에서 다룬 내용은 생략한다.
14) 정권에 우호적인 방송에는 너그러운 잣대를, 그렇지 않은 방송에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 심의했음을 의미한다.
15) 새정치 민주연합 국회의원

처분을 받았다. JTBC <뉴스9>는 이 처분에 대해 재심을 청구했으나 방심위는 이를 기각했다. 관계자 징계는 방심위 처분에 있어서 최고 수위이다. 반면 방심위는 '엉켜 있는 시신이 다수 확인됐다'는 KBS의 세월호 관련 오보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를 내렸다가 재심을 통해 '주의'로 제재를 경감시켰다. 또한 9개 방송사가 보도한 '단원고 학생 전원구조' 오보는 9건 모두 권고조치를 받았다. 전원구조 오보나 세월호 시신이 엉켜있다는 오보가 경징계 수준임에 비해 다이빙벨 문제를 다룬 방송은 중징계를 받은 것이다. 순전히 정치적인 심사를 하고 있다고 비난을 받을 만한 대목이다.[16]

(나) 대리기사폭행·광화문 농성 등에 대한 보도

7월 경 유가족 및 피해자 가족들이 국회와 광화문에서 단식 농성을 시작하였다. 6월경까지는 전 국민의 추모 분위기 속에서 언론의 보도 태도 역시 사고의 발생원인, 구조 활동, 희생자 추모 등에 집중되어 있었다. 그러나 7월 세월호 가족대책위가 자신들의 목소리를 본격적으로 내기 시작[17]하면서 메인 뉴스에서 점차 보도 숫자가 줄어들더니, 이후에는 전문 시위꾼 주도하에 농성이 이루어지고 있다거나 유가족이 농성을 시작한 이유 등은 보도하지 않고 농성에 대해 비판적인 기사들이 등장했다. 또한 유가족의 단식 농성을 희화화하거나, 흥미위주로 만들어서 보도하는 언론도 있었다. 유가족의 단식 농성을 반대하는 국민들의 의견도 있을 수도 있으므로 이에 기반을 두어 비판적인 보도를 하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다. 단지, 기자 정신을 상실한 보도 행태를 지적하는 것이다. 광화문의

16) 그러나 이에 대해 방통심의위원장은 '정치적인 심사가 아니며 여러 가지 면을 다방면으로 고려한 결과일 뿐'이라고 정치심의 비판을 반박했다.
17) 통상 7월 광화문에 단식 농성을 시작 시점을 의미한다.

농성이 길어지자 일부 언론은 '광화문 사용이 불법사용이며, 서울시가 이를 방관하고 있다' 고 보도했다.[18] 아직까지 실종자를 찾지 못했으며, 세월호와 관련한 법안 등 산적한 현안이 어느 것 하나 해결되지 않은 시점에 이런 논란이 될 만한 보도를 했어야 했는지는 의문이다. 또한 청운동 주민센터 주차장에서 기자회견을 한 후 대통령의 대답을 기다리기 시작했을 때도 언론은 '농성장을 늘려간다', '유가족이 떼를 부린다' 는 식으로 보도하였다. 유가족이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에 대한 균형 잡힌 보도는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세월호 참사에 대한 보도태도는 '대리기사 폭행사건' 보도에도 찾아볼 수 있다. 단순히 대리기사를 폭행한 것을 비호하는 것은 아니다. 어떤 형식이든 폭행을 한 것은 당연히 잘못한 일임에 틀림없다. 다만, 정확한 사실 보도 보다는 음주 후 폭행 행위를 흥미위주와 보도했다는 점과 CCTV 자료화면을 반복적으로 내보내며 추측성 보도들이 있었다는 부분을 비판하는 것이다.

(다) 소결

세월호 참사 보도는 위에 언급된 것 이외에도 문제점이 많다. 우선 사고 수습조차 전혀 되지 않았음에도 '보험금 보도'를 하면서 실종자와 가족을 배려하지 않았다. 또한 편집을 통해서 실종자 가족 목소리는 외면하고 대통령과 장관들의 행보만을 언급하는 뉴스는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한 보도였다. 게다가 새로운 소식은 없이 시간을 때우기 위해 비슷한 내용을 반복하여 보도해 시청자들에게 재난 피로도를 높였다.

18) 광화문 사용의 적법성 여부는 언론대응활동 이외의 활동이므로 이 장에서 생략한다.

이러한 비정상적인 보도로 인해 유가족은 가족을 잃은 슬픔, 그 이상을 고스란히 느꼈을지 모른다. 정신없이 자식을 찾아달라는 울부짖는 분노가 오보를 내면서도 사과하지 않은 언론을 향해서도 터져 나왔다. 유가족은 언론을 불신했고, 심지어 MBC, KBS등을 향해 취재를 거부했다. 팽목항에서 퇴거 등을 요구 할 정도로 자신들의 분노를 표출했으며, 일부 언론에는 인터뷰를 거부하고, 보도를 위해 촬영하는 것조차 탐탁지 않아 했다. 이러한 유가족의 행동이 도가 지나쳤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들의 행동을 탓하기 이전에 왜 이러한 행동이 나왔으며, 나올 수밖에 없었던 현실에 대해서 깊이 통찰해볼 필요가 있다. 통찰을 통해 균형잡힌 시각이 있어야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고, 그러한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지만 진정한 위로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4) 사건 보도 이외의 언론 태도

세월호 참사를 둘러싼 언론의 태도는 보도 콘텐츠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었다. 보도를 위한 언론의 취재 태도 등 다양한 외적인 요소에서도 우리 언론의 부끄러운 민낯이 드러났다.

유가족의 증언에 따르면 사건 초기 진도체육관에는 구조인력보다 경찰과 취재 인력이 훨씬 많았다고 한다. 그리고 피해자 가족들이 도착하자마자 모든 언론사가 경쟁적인 취재 및 촬영을 시작했다. 당시 유가족은 마치 자신들이 '동물원 원숭이'가 된 느낌이었다며 당시의 심경을 전했다. 그리고 신문사나 각 방송사는 부모들이 오열하고 쓰러지고 기절하는 장면을 보도하면서 시청자의 감정선을 자극했다. 그리고 시청자들을 관객화 하면서 유가족들을 '재난영화' 속 피해자처럼 만들었다. 세월호 참사는 안전불감증이 발현된 사고로써 전 국민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스스로를 관객이라고 느끼게 만든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또한 팽목항에서 언론 보도 차량의 주차도 문제였다. 즉, 작은 팽목항에 수많은 차량이 오면서 주차공간은 부족했고 결국 길에 주차된 대형 언론사 차량은 구조 활동에 장애물이 된 것이다. 시신 수습 후 인근 병원으로 이송을 해야하는 구급차가 주차된 언론사 차량을 이리저리 피해서 운행을 했다. 이를 목격한 유가족은 그 심정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고 했다. 자신의 가족을 잃은 것도 하늘이 무너질 일인데, 시신을 수습한 차량이 지그재그 운행을 하는 것을 보면 어떤 생각을 했을지 쉽사리 상상이 안된다. 주차 문제는 작은 배려의 문제였을지도 모른다. 물론 보도를 해야 하는 것도, 그러한 공간적 상황이 부족하다는 것도 전부 감안 할 수 있다. 그래도 기자들끼리 협업을 통해 보이지 않는 배려를 할 수도 있었음에도 그러지 못했다는 점은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끝으로 KBS, MBC 등 언론사 고위 간부들의 부적절한 발언은 '언론사의 데스크의 역할과 객관성 담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전 국민에게 알리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KBS 보도국장[19]은 사석에서 세월호 참사를 교통사

고에 비유하고 아나운서들에게 검은 옷을 입지 말라고 지시[20]했었으며, MBC 보도국장[21]은 피해자 가족을 '깡패'라 표현했다는 의혹을 받기도 했었다. 위 일부 방송사 고위 간부들의 부적절한 인식과 보도 행태는 자신의 사회적인 역할을 망각한 행동으로 평가할 수 있다.

세월호 참사 자체의 보도내용 이외에 외부적으로 위와 같은 문제 요소들이 있었다는 점은 팩트(fact)이다. 모든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세월호 보도가 오보들이 난무하고 왜곡 및 편파보도가 있는 원인으로 이 외부적 요인을 무시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객관적인 정보 전달을 통해 국민이 올바른 판단을 하도록 도와야 하는 언론의 역할이 다소 미흡했다. 언론대응팀도 보도 외적인 문제점들이 속속 드러나면서 그 활동을 개시했다. 피해자를 보호하고 국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도 변호사의 사회적 책무중 하나이며, 이러한 것에 공감을 했던 변호사들이 함께 모인 것이 언론대응팀의 올바른 역할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5) 방통위 민원 신청 및 회신

언론대응팀은 2014년 6월 9일에 방통위에 KBS, MBC 일부 뉴스를 대상으로 하여 인터뷰를 하고도 내보내지 않은 '편파보도', 해경이 최선을 다해 구조를 하는 것처럼 하는 '왜곡보도'에 대하여 민원을 신청하였다. 4월에 세월호 참사가 발생하고 나서 두 달이 지난 시점에 첫 활동이 개시된 이유는 세월호 보도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이 시점에 커졌기 때문이었다. 이 민원제기는 언론대응팀의 첫 번째 일이었다.

19) 당시 김시곤 보도국장. 이 일로 유가족의 KBS 항의 방문 후 사임했다.
20) 김시곤 당시 보도국장은 시청자 항의 때문에 지시를 내린 것이라고 해명했다.
21) 당시 김장겸 보도국장.

방통위는 7월 24일에 이 민원 신청에 대하여는 편파성이나 왜곡성을 찾기 어렵다고 회신을 했다. 다만, 이 민원 신청과는 별개로 KBS 뉴스가 '박근혜 대통령의 팽목항 방문' 시 현장 분위기[22]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전달하지 않아 '권고' 조치를 하였음을 알려왔다. 이 회신에 대하여 당연히 가족들은 납득할 수 없어 했다. 가족의 입장에서는 정상적인 보도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의 수위가 너무 낮았기 때문이었다. 실제로 이 보도로 인해 언론 안팎에서는 쓰디쓴 비판이 난무했다. 방통위로부터 이 시기에 '권고' 처분을 받은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MBC 간판 예능 프로그램 '우리 결혼했어요'에서 파인애플이 나무에서 열린다고 자막을 방영한 것도 권고를 받았다. 그런데 '단원고 전원구조'와 같은 오보가 똑같이 권고 처분[23]에 그쳤다는 것을 국민이 '합당한 처분이었다.'고 받아들이기는 어려웠을 것이며, 유가족 역시 마찬가지였다.

회신의 결과에 대해 유가족에게 설명했던 상황은 지금 회상하면, 상당히 어렵고 아찔했던 일이었다. 대다수의 국민도 '권고'를 받은 것이 적절했는지 고개를 갸우뚱하고 있던 상황에서 유가족들은 납득할 수 없어 했다. 또한 이들에게 차분하게 설명할 수 있는 여건도 아니었다. 이처럼 여러 참작할 점이 분명히 존재하기는 했지만, 개개의 유가족을 대면하면서 이번 회신결과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지 않은 점, 설명 내용을 성심성의껏 준비를 하여 가족 측에 전달했어야 하는 점 등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

(6) 언론의 자기반성

22) 세월호 사고 후 17일, 박대통령이 진도 체육관을 방문했을 때, 격앙된 실종자 가족의 반응을 편집하여 마치 박대통령이 발언을 하고 박수를 받는 장면으로 보도한 것을 말한다.
23) 앞 부분(초기 침몰 및 구조에 대한 언론보도)에서 이미 다룬 내용이다.

(가) 토론회를 통한 반성

언론인 스스로가 세월호 보도에 대해서 하는 평가가 엇갈리고 있지만 대다수는 그다지 높은 점수를 주고 있지는 않은 것 같다. '세월호 참사보도 문제점과 재난보도 준칙 제정 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살펴보면 그러함을 알 수 있다. 토론회에서는 주로 언론의 자기반성에 대한 이야기였다.

이 토론회에서 세월호 보도의 문제점과 관련하여 '불안정한 세태 속에 국제적 갈등과 사건 사고들이 들끓는 시점에서 언론들의 재난보도의 태도가 미흡하고 성숙치 못했다', '데스크에서는 타 방송사와는 다른 기사와 영상들을 요구·재촉하기 때문에 기자들은 기사거리에 부합하게 마치 수사관처럼 과도한 질문을 하면서 인간의 존엄성을 져버렸다'고 지적했다. 예전부터 방송사들의 재난사고 보도는 흥미 위주의 기사와 자극적인 기사, 오보가 존재한다고 지적을 받아왔다. 이러한 지적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거짓정보가 난무하는 현장 속에서 정확한 컨트롤 타워가 최우선으로 필요하고 언론사간의 대표기자들의 협의체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으며, 이와 비슷하게 '정부기관이 언론사들과 연계하여 재난보도준칙을 지키도록 하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 하는 등의 의견도 있었다. 또한 토론회에서는 세월호 초반 보도에서 '전원구조'라는 아찔한 오보가 나갔을 때도 언론에서는 정부의 발표일지라도 재차 확인했었어야 하는 모습을 보였어야 했다는 지적도 있었다.

토론회에서 또 다른 자기반성적 목소리중 하나로 '아무리 방송사와 신문사의 규정과 준칙이 존재하여도 자사이기주의가 팽배한 탓에 이 같은 준칙들이 힘을 실을 수 없으며, 이에 따라 보도준칙의 추상성을 극복하여 공동의 구체적인 보도준칙을 도출해내는 노력이 필요하다.', '결국은

정부와 언론의 구조적 시스템과 더불어 자사이기주의와 속보경쟁의 굴레에서 벗어나 양심적인 태도로 보도를 해야 하며, 현장에서 고생하고 있는 기자들의 트라우마 또한 개선할 수 있는 처우 또한 필히 마련되어야 한다.' 는 것도 있었다.

이 토론회의 각 의견들을 보면, 각자의 신념에 따라 언론에 대한 평가는 다를 수 있으나, 반성에 대한 의견은 귀를 기울일 필요는 있어 보인다. 그래야 언론 영역이 역사의 흐름 속에서 발전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 왜냐하면 과거의 행적을 반추하여 미래에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나) 언론인의 자기반성

언론의 반성은 토론회에서만 그치지 않는다. 기자나 아나운서 등 일부 언론사 종사자들은 개인 SNS 등을 통해 자기반성을 했다. 특히 대표적으로 KBS 내부 게시판에 기자들이 반성의 글을 올린 일명 '릴레이 반성'을 들 수 있다.

이 글들은 'KBS 기자가 현장에서 기레기 혹은 개병신으로 불린다.' 는 KBS 막내기자들의 반성문이었다. 현직 기자들이 스스로 지탄받는 이유에 대해 글을 쓰면서 각성하자는 행동을 한 것이다. 현직 기자들도 당시 언론의 환경에 만족하지 못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이다. 물론 이후에도 사측의 행동에는 큰 변화는 없었으나 KBS 기자들은 다른 모습을 보이기 위해 노력했다.



KBS 파노라마 '고개 숙인 언론' 편은 이러한 노력을 보여준 프로그램이었다. 이 방송에서는 세월호 참사를 통해 드러난 언론의 실상을 보여주었다. 세월호 사태로 사장이 해임되는 등 가장 큰 비난을 받고 논란을 겪었던 'KBS'가 세월호 참사를 다뤘던 언론의 민낯을 다뤘다는 점은 기자들이 분골쇄신의 각오가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알 수 있었다. 이를 본 당시 유가족들은 그나마 아직 방송에서도 스스로 자성의 목소리를 낸다는 것에 희망을 보았다고 평가하는 국민도 있었다.

세월호 유가족들이 오보와 같은 다양한 언론 폭력 때문에 마음 아파하는 모습을 곁에서 지켜보면서, 언론의 영향력이 엄청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실감했으며 그 언론이 올바른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다.

나. 인터넷 등 새로운 미디어

(1) 들어가며

'언론대응팀'이라는 명칭을 봐서도 알겠지만 최초에는 방송사 등 언론에 대응하기 위해 팀이 꾸려졌다. 팀이 꾸려질 당시에는 인터넷 댓글이나 블로그 등에 대해서는 고려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인터넷 상에서 유가족의 법익이 지나치게 침해되는 것을 지켜보면서 활동영역을 확대했다. 인터넷 대응 활동을 하면서 생각했던 점은 지금이 인터넷에 올바른 문화를 정착하기 위한 노력이 시급히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이다. 더 늦기 전에 어떠한 형식으로든 우리사회에도 올바른 인터넷 예절 문화가 정착되기를 소망해 본다.

(2) 인터넷 문화의식의 부재

인터넷의 부작용에 대해서는 그동안 많은 논의가 있었던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다. 인터넷은 익명성이나 비대면성이라는 양날의 칼을 가지고 있다. 이 특징은 유용하게 이용하면 표현의 자유 등을 보장하는 더없이 좋은 점이나,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무서운 점이기도 하다. 그동안 인터넷에서는 익명성과 비대면성을 바탕으로 감정을 정제하지 않고 의견을 표현하면서, 이를 규제하자는 목소리도 커졌다. 규제의 일환으로 국가 선거와 관련 글에는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하는 등의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아무리 법이 제정된다고 해도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다. 20여 년 전 인터넷이 도입되고 현재까지 기술적·제도적 보완·발전이 이루어졌었지만, '일베[24]'와 같은 게시판이 활성화되는 것을 보면 제도적이나 기술적인 보완만으로는 인터넷 부작용을 줄일 수는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결국 성숙하지 못한 인터넷 예절은

24) 일간베스트저장소 사이트의 줄임말로 현재 인터넷상 잘못된 문화의 전형적인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으나 일베 역시 많은 평범한 인터넷 사이트 중 하나에 불과하다는 반론도 있다.

국가의 중요 이슈마다 인터넷상에서 감정싸움과, 막말, 비하, 명예훼손, 모욕 등으로 변질되어 국민 화합을 저해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에서도 일부 국민들은 유가족을 비하하고 거짓이 진실처럼 둔갑하는 등 끊임없이 대립과 반목을 양산했다. 특히 권은희 국회의원[25]이 SNS에 올린 글은 위에 서 언급한 인터넷 부작용의 대표적인 예이다.

권은희 의원은 본인의 SNS에 한 여자의 동영상을 올리면서 "세월호 실종자 가족 행세를 하며 공무원들 뺨때리고 악을 쓰고 욕을 하며 선동하던 이들", "유가족들에게 명찰 나눠주려고 하자 그것 못하게 막으려고 유가족인척 하면서 선동하는 여자의 동영상입니다. 그런데 위의 동영상의 여자가 밀양송전탑 반대 시위에도 똑같이 있네요. 세월호 탑승희생자의 유가족인 동시에 송전탑 시위 관계자가 될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라는 글을 게시했다. 마치 두 사진 속 여성이 동일 인물인 것처럼 설명하고 선동꾼들이 유가족 행세를 하며 현지에서 혼란과 불신을 부추기고 있다며 비난의 글을 올린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영상에 등장하는 여성은 안산 단원고 실종자 가족이었으며, 선동꾼이라며 함께 게시된 밀양송전탑 사진은 합성된 사진이었다. 인터넷에 떠도는 게시물을 퍼오면서 사실 확인은 하지 않고 게시했던 것이다. 결국 권은희 의원은 국회의원으로서 부적절한 행동을 일삼은 점에 대해 사과했다. 권은희 의원의 발언으로 촉발된 인터넷 상의 논란 속에서 결국 상처를 입은 것은 세월호의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었다.

25) 새누리당 국회의원

(3) 실제 침해사례의 유형별 분석

(가) 댓글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댓글 상의 막말 등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았다. 세월호 참사가 낙 전대미문의 사건이다 보니 하나의 세월호 관련 글[26]에 붙는 댓글의 양이 엄청났다. 문제가 된 모든 댓글이 비하나 막말, 허위사실의 글은 아니었지만 대다수는 감정을 자극하려는 내용이었다. 댓글은 가족들이 광화문과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자신들의 목소리를 외부에 내면서 더 심해졌다. 이때부터는 가족의 행동 하나하나가 관심의 대상이 됐으며, 언론에 많이 노출된 유가족은 상당한 관심을 받았다. 그리고 악의적 댓글의 수준 역시 점차 도를 지나쳤다.

예를 들어 '세월호가 로또다', '적당히 해라 거지들아', '가족당으로 창당해라', '시체장사하냐', '죽은 영혼 팔아 호위 호식하겠다는 거냐' 등의 모욕적 내용[27]이었다. 이러한 문구만 보더라도 세월호에 대한 인터넷상에서 각종 댓글이 얼마나 끔찍했는지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댓글의 문제가 심각했던 이유 중 하나는 세월호 희생자의 대다수는 고등학생이었고 이들의 부모는 대부분 40대로 사회적으로 젊은 연령대였다는 점이다. 40대는 현재 대한민국의 사회, 경제, 문화의 허리 역할을 하는 세대다. 이들은 댓글이나 블로그, SNS 등을 할 줄 모르는 세대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활용하는 세대이기에 인터넷의 법익 침해

26) 기사, 블로그, SNS 등 각종 글들 및 작성된 글을 퍼 나르는 형식의 글들을 모두 포함한다.
27) 이러한 글의 내용은 실제 유가족 대책위에서 고소를 위해 모아놓은 글들의 일부 내용이다.

행위는 직접적으로 그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 희생자 유가족들은 하루 종일 스마트 폰으로 서로의 의사 및 정보를 교환하고, 뉴스를 본다. 당연히 모욕적인 댓글에 직접적으로 노출된다. 결국 세월호 피해자 및 그 유가족들에게 악성 댓글 하나의 파장은 상상 이상으로 컸다.

이전의 여느 국가재난과 다른 양상을 보일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여기에 있다. 피해자와 이를 비난하는 사람 간에 직접적인 대화가 가능해졌고 이를 지켜보는 모든 국민도 대화에 참여하거나 대화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위에서 언급한 새로운 매체의 부정적인 기능으로 국민은 분열했고, 유가족은 깊은 상처를 입었다.

(나) 허위사실

세월호에 대한 글들은 단순히 모욕을 하는 수준에 그치지 않았다. 사람들이 쉽게 관심을 가질 수 있는 혜택[28]에 대한 내용을 허위로 만들어 유포하거나, 논의단계에 있는 사안이나 논의를 통해 폐지를 한 사안에 대해서 마치 곧 실현되어 유가족이 엄청난 혜택을 받는 것처럼 글을 올리는 경우도 많이 있었다.

예를 들어 '세월호 유공자 및 유가족에 대한 대우'라고 하여 ①유공자는 대한민국 헌법 아래 보호를 받고, ②월 200만원 평생보장(물가변동을 고려하여 증액) 받고, ③평생의료혜택, ④은퇴 시 남들보다 10% 상향된 은퇴연금, ⑤세금감면혜택, ⑥수혜자 자녀들의 국공립대학 100% 합격, ⑦

28) 혜택이라는 표현은 부적절하다. 왜냐하면 세월호 유가족에게 주는 것인 혜택이 아니라 사회구조 차원의 당연한 배려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논란 당시 '혜택'이라는 단어로 논란이 되었으므로 이를 그대로 옮긴다.

대통령이·취임식 같은 국가공식행사 초청 및 귀빈석 대우, ⑧장례식을 국가최고 대우로 100% 지원 및 현충원 안장의 혜택이 담긴 내용의 글이 일파만파 퍼져나갔다.

허위 사실은 그럴듯한 내용으로 사실인 것처럼 구성되어 있다. 내용이 정교하다보니 상황을 알고 있는 변호사들도 보다보면 '진짜인가?!' 를 외칠 정도다. 허위사실은 누가 봐도 사실인 것처럼 보이지 않으면 사람들이 관심도 가지지 않기 때문에 최초의 내용보다는 점차 내용이 더 정교해지며 허위라고 하기는 매우 구체적이고 근거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변화한다. 법조문을 근거로 제시하거나 법 자체를 비교하거나, 이 내용이 고위 공무원이나 국회의원이 언급한 것이라는 등의 이유를 제시한다. 게다가 언론을 맹신하는 사회풍조 탓에 언론사에서 내용을 여과 없이 보도하면 허위내용이 큰 어려움이 없이 사실로 둔갑하기도 한다. 즉, 권위나 언론의 공신력에 기대는 것일 뿐 타당한 근거가 없었음에도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였던 것이다.

허위사실이 퍼지는 이유를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저 제목과 머리말만을 읽고 나서 그 내용을 전부 파악했다고 생각하는 스마트폰 이용자의 특징이 고스란히 발현된 점도 있다. 이들은 내용을 자세히 읽고 판단하기보다는 한두 줄[29]만 읽고 사실로 판단하며, 파악한 내용은 단어 몇 개 형식으로 쉽게 퍼트린다. 한 번 퍼져 나간 허위사실은 되돌려 잡기가 매우 힘들다. 말을 내뱉으면 주워 담기 어려운 것처럼 인터넷상도 한번 내용이 퍼지면 관련 글을 전부 삭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또한 진실을 알리기 위해서는 선정적인 제목이나 머리글이 아닌 많은 문장으로 해명해야 하는

29) 예를 들어 '유가족이 보상금 5억을 수령했다', '생존자들은 원하는 국공립대학교에 자동 입학한다' 등 엄청난 혜택을 받는 것 같은 한줄 정도의 자극적인 내용을 말한다.

만큼 흥미가 상대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진실이 널리 퍼지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4) 법적 대응

(가) 침해사례 정리

언론대응팀은 위에서 언급한 모욕이나 허위사실의 수준이 도를 넘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유가족 측과 협의하여 법적대응을 시작했다. 최초에는 인터넷상의 댓글이나 블로그에 대해서 유가족이 먼저 단독으로 수집 및 고소 등을 진행했었다. 유가족 가족 대책위 댓글 모니터링 팀이 별도로 운용 중에 있었으며, 이 팀에서 각종 자료를 모으고 수집했던 것이다. 그러던 중 2014년 6월 경 유가족의 요청으로 언론대응팀에서 고소장 작성 등을 지원해 주기로 하면서 본격적인 고소가 시작되었다. 당시 안산 단원경찰서 사이버수사팀에서 수사를 마친 사안은 악성댓글 15건이었다. 경찰은 검찰 송치를 위해 고소장을 요구했으며, 고소인이 유가족임을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외에도 증거 수집을 통해 모욕에 해당하는 30여건의 댓글을 찾아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기 위해서는 고소인의 고소장이 필요하다는 것이 당시 검찰의 입장[30]이었다. 결국, 2014년 8월 4일까지 안산 경찰서 사이버수사대에 약 70여건의 악성댓글에 대한 모욕죄 고소를 했다. 최초 악성 댓글에 대한 대응은 더 이상의 허위사실이나 모욕행위를 막아보자는 취지에서 했던 것으로 심한 표현을 위주로 고소를 했다. 또한 언론대응팀은 2014년 7월 28일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블로거 '추억의 OOO[31]' 을 고발했으며, 같은 혐

30) 통신자료(아이디, 이름, 주민번호, 주소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발부 받아 포털사이트로부터 이를 제공받기 위해서 고소인의 고소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말한다.

의로 다른 블로거 등 5건을 더 고발조치 하기 위해 고발장을 작성하기도 했다.

그리고 이 당시 정몽준 당시 새누리당 서울시장 후보의 아들이 4월 18일경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정서가 미개한데....국민이 미개하니까 국가도 미개한 것 아니겠냐' 라는 발언을 올리며 논란의 중심에 섰다. 결국 유가족 중 한분이 이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다.

이 발언과 관련해 박사학위논문표절·횡령·배임으로 사회적으로 주목받고 있던 당시 사랑의 교회 담임목사가 순장[32]반 간담회에서 이 '국민 미개인 발언을 인용하면서 ' 틀린 말이 아니다' 라는 발언을 통해 유가족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다. 또한 당시 한국기독교총연합회 공동부회장 • 하나님의 기적 오병이어교회 담임 목사는 '가난한 집 아이들이 수학여행을 불국사로 가면 될 일이지...' 라는 발언, '박근혜 대통령이 눈물 흘릴 때 같이 눈물을 흘리지 않은 사람은 모두 백정이다' 라는 발언을 했다. 따라서 이에 대하여 언론대응팀은 사랑의 교회 오 담임목사와 한국기독교연합회 공동부회장 조목사를 사자(死者)에 대한 명예훼손일 뿐만 아니라 유가족을 폄하한 혐의로 고소했다.

(나) 고소 및 고발의 이면

변호사가 고소 및 고발을 지원해야 하는지에 대해 내부적으로는 찬반양론이 존재했었다. 반대를 하는 입장에서는 고소를 하는 것이 실질적인 해결책이 되지 않을뿐더러 문제가 되는 댓글은 수천 개씩 쌓이는 댓글 중

31) 실제 아이디 이름은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 OOO으로 갈음한다.
32) 교회에서 일정한 교육을 받고 소그룹리더로 임명된 교인

일부에 불과하고, 몇몇의 내용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불명확하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이와 동시에 법률지원단은 유가족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단체가 아닌데, 이런 댓글에 대해 변협이 주도하여 역할을 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도 하자고 했었다. 이와 달리 찬성을 하는 입장에서는 대한변협의 특위가 설립된 취지가 우선적으로 유가족을 위해서 활동을 하자고 했던 점, 고소나 고발 사안이 되지 않더라도 고소나 고발을 통해 경각심을 주고, 피해 감정을 회복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고소고발을 하자는 의견이었다. 언론대응팀 내부적으로 고소 및 고발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었으며, 과도한 인터넷상의 비난 여론에 대응하기에 시급하여 내부 기준 등을 만들 여력도 없었다. 그래서 위와 같은 토론이 벌어진 것이기도 했다.

치열한 논의를 거쳐 최종적으로는 '변호사는 유가족의 대리인이기 때문에 유가족이 원한다면 변호사 지원을 하는 것'[33]으로 결론이 났다. 즉, 유가족이 원하고 법적 관점에서 터무니없지만 않다면 고소 및 고발을 하자는 것이었다. 긴 토론 끝에 활동방향을 정하고 나서는 모두가 한마음으로 인터넷에 올바른 문화를 정착해보고자 애썼던 기억이 난다.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꾸준히 고소, 고발을 통해서 이번 기회에 인터넷과 SNS의 문화를 개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던 한 변호사의 언급도 있었다. 언론대응팀의 활동이 효과가 미흡했더라도 일정부분 인터넷 정화에 보탬이 되었을 것으로 자위해 본다.

다. 마타도어

33) 사후에 추가적으로 대한변협 차원에서 고소 및 고발에 대한 기준 등을 포함한 매뉴얼이 만들어지기를 바란다.

(1) 마타도어가 난무한 원인

마타도어는 소의 정수리를 찔러 죽이는 투우사를 뜻하는 마따로르(matador)에서 유래한 것으로 현대 정치에서 '근거 없는 사실을 조작해 상대편을 중상모략하거나 그 내부를 교란시키기 위해 하는 흑색선전의 의미로 널리 쓰이는 말이다. 같은 범주로 묶이는 말로는 여론 조작, 언론플레이 등이 있다. 이 단어는 현대 정치의 부정적인 면모를 단적으로 보여준 말이다.

정계에서 쓰이던 단어인 이 ' 마타도어'가 세월호 참사에도 등장하였다. 세월호 참사를 치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일부 사람들이 진영논리로 세월호를 왜곡하였기 때문이다. 진영[34]이 나뉘어 각자의 입장[35]이 옳다고 주장을 하다 보니 모욕적인 댓글도 난무하고 허위사실들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둔갑하기도 했던 것이다. 세월호에 대한 마타도어는 허위사실에 기반을 두고 있다. 허위의 사실들을 이용해서 상대 진영에 내분을 일으키고 자신들의 진영을 하나로 모았다. 즉, '유가족들이 불쌍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이용하여 막대한 이익을 챙기려 하고 있다.' 식으로 상대방을 공격하면서 자신들을 하나로 결집시키는 것이다.

(2) 세월호 마타도어와 대응방안 강구

세월호 마타도어는 정말 다양한 형태로 많은 의혹들을 제기하였다. 마

34) 세월호 유가족 등은 내편·네편 등으로 진영을 나누어 활동하지 않았다. 여기서 쓰인 단어(상대 진영)는 전적으로 진영논리를 바탕으로 내편·네편을 구분한 쪽의 입장에서 언급된 말을 그대로 옮기는 것일 뿐이다.

35) 예를 들어 대립 입장은 '세월호는 침몰사고 VS 고의 침몰', '정부부실 대응VS 어쩔 수 없었던 것' 등 하나의 사안마다 의견이 대립했던 부분을 의미 한다.

타도어에 대해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 고민하던 시기에, 세월호 특위 위원장이 '이제는 방어적 대응에서 적극적 홍보로 방향전환을 해야 할 때이다.' 라는 말을 했고, 이에 따라 논의를 통해 마타도어에 대해서 적극적인 반박 내용을 담은 글들을 홍보하기로 결정 했다. 이때 작성하였던 많은 글들이 있는데, 이 글을 어떠한 형식으로 이 장에서 다루어야 하는지 고민했다. 당시에는 카카오톡의 글자 수나 여러 페이지의 지면상 내용을 줄이고 줄여서 완성본[36]을 작성해야 했는데, 여기에는 당시 작성했던 초안을 바탕으로 내용을 가감 없이 다루어 보려고 한다. 이를 통해 세월호의 마타도어가 무엇이 있었으며 이에 대한 진실이 어떠했던 것인지를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얼마나 잘못된 정보가 당시에 난무했는지를 되짚고자 한다.

(가) 의사상자와 특례입학

① 유가족의 '피해자 전원 의사자 지정' 제안

단적으로 말해 의사자 지정은 제안된 적이 없다.[37] 세월호 가족대책위가 대한변협과 함께 마련하여 청원한 법안에는 의사상자 지정 관련 내용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다만 세월호 특위에서 4월말 내지 5우러 초순경, 친구를 위해 구명조끼를 벗어주고 사망한 피해학생의 미담이나, 어린 자녀를 위해 자신의 구명조끼를 안고 기다리고 있다가 사망한 피해자들의 죽음을 기억하기 위해서 '의사상자' 라는 호칭을 부여하는 것을 한 차례 검토한 적은 있었다. 하지만 특별법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공청회에 상정된 세월호 특위가 만든 특별법에는 의사상자에 대해서 언급

36) 완성본은 퇴고를 거쳐 현재 '세월호 국민대책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다.
37) 지금도 의자사 지정은 주장하고 있지 않다.

된 바가 전혀 없다. 국회의원[38]이 청원한 법안에는 의사상자 지정 관련 내용이 있는데, 이는 현행법상 희생자의 명예를 기릴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인 '의사상자에 관한 법률' 상의 '의사상자'라는 호칭이 있어서 이 단어의 호칭만을 따온 것이었다. 즉 호칭만 동일할 뿐, '의사상자에 관한 법률'에서의 '의사상자'와는 그 실질이 전혀 다른 것이다.

② 단원고 피해학생의 '대학 특례입학'

국회는 <세월호 침몰사고 피해학생 대입지원 특별법안>[39]을 의결하였었는데, 이는 "국회가 국가적 참사 피해자들을 치유하는 차원에서 먼저 기본 조치를 취한 것"으로 유가족이 주장한 것이 아니라 정치권에서 먼저 입법안을 제안 및 의결하였다. 이와 달리 세월호 가족대책위가 대한변협과 함께 마련하여 청원한 법안에는 대학 특례입학 관련 내용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유가족들은 국회의원들에게 대학 특례입학 관련 내용을 법안에 넣어줄 것을 요구한 적도 없다.

③ 위 (1),(2) 법안들과 관련한 가족들의 입장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통해 '철저한 진상규명'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대학 특례입학' 또는 '416 국민안전의인 지정'과 같은 문제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유가족들의 기본적인 입장이었고 지금도 변함이 없다. 이 당시에 세월호 가족대책위 대변인은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정치권에서는 물론 저희들을 위하고 생각한다는 좋은 취지에서 준비하셨겠지만 특례입학이 되었든 의사자 지정이 되었든 아무것도 밝혀진 것이

38)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
39) 유은혜(새정치민주연합), 김명연(새누리당) 대표 발의 안을 병합 심사한 법안.

없고,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도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저희가 혜택을 받은들 그게 무슨 위로가 되겠느냐?! 진상 규명이 된 이후에 전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수준과 내용에 따라서 진행이 될 문제이지, 이것(보상)을 저희가 먼저 주장하거나 일부에서 먼저 주장해서 될 수 있는 일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었다.

(나) 끊임없이 제기된 보 · 배상[40] 문제

① 배상과 보상의 차이

'국가배상'이란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위법한 행위로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금전 등의 재산적 방법에 의하여 배상하는 것을 의미하며, '국가보상'이란 적법한 공권력의 행사에 의하여 가해진 경제상의 특별한 희생에 대하여 행정주체가 행하는 재산적 보상을 의미한다. 쉽게 말해서 '국가배상'이란 국가의 잘못된 행위로 인해 발생한 타인의 손해만큼을 갚아준다는 것이고, '국가보상'이란 국가가 잘못된 행위를 한 것은 아니지만 국가의 행위로 인해 타인에게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그에 대한 적절한 처우를 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차이에 대해서 국민들은 잘 알지 못하다보니 관련 유언비어가 진실처럼 보였을 것이다.

② '보상' 때문에 특별법 제정을 서두른다는 의혹

세월호 가족대책위가 대한변협과 함께 마련하여 청원한 법안에는 보

40) 2015. 1. 현재는 '세월호 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배보상 문제는 또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한 내용은 세월호 참사 특별법을 찾아보면 알 수 있으므로 여기서는 생략하도록 한다.

상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명시된 내용이 없다. 단지, 최소한의 보상·배상 내용은 포함되어야 한다는 법률적 관점에 따라 보상·배상에 관한 지극히 당연한 원칙을 확인하는 내용만을 규정하였다.

실제로 유가족들을 정부와 보상 문제에 대한 공식 논의를 시작조차 하지 않고 있었으며, 실종자 전원이 구조 및 세월호 특별법이 통과돼 진상규명이 먼저 되지 않으면 보상 관련한 논의는 시작할 수 없다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이었다. 심지어 법안 제정 과정에서 세월호 가족대책위는 진실규명에 집중하기 위하여 보상·배상 부분을 삭제하자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였었다. 이런 유가족에 태도에 비추어보면 '보상 때문에 서두른다.' 는 주장은 어불성설이 아닐 수 없었다.

③ 세월호 침몰'사고'와 국가의 보상,배상

헌법 제34조 제6항[41]은 국가의 국민 보호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당시까지 드러난 세월호 참사의 원인을 살펴보면 국가는 위와 같은 국민 보호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난다.[42] 그 근거로 첫째, 부실한 세월호 운항관리규정에 대해 승인을 해주거나 운항관리자의 부실한 안전점검에 대해 감독의무를 해태하는 등의 세월호 참사 발생 이전부터 누적된 국가기관의 과실이 있다. 둘째, 컨트롤타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등의 미숙한 대처로 인해 구조를 위한 골든타임을 놓치며 인명피해를 더욱 키웠다. 이처럼 국가기관의 과실이 존재하고 있다. 결국 국가는 과실에 따른 불법행위로 인한 세월호 희생자 및 그 유가족들의 손해에 대해 배상하고 적절한 지원 정책으로 보상하는 것은 법에 따른 당연

41)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42) 이에 대해서는 국가 책임이 아니라는 반론이 있다.

한 조치인 것이다.

(다) 국정조사·검찰 수사 및 재판 진행 중 특별법의 필요성

유가족들이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통해 희망했던 것은 '철저한 진상규명'에서부터 '안전 국가를 위한 재발방지대책의 수립'에 이르기까지 원스톱(One-Stop)으로 처리할 수 있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었다. 이와 같은 유가족들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에 국정조사, 특검 그리고 검찰수사 및 재판은 부족하다.

우선 국정조사는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구도로 진행되면서 힘겨루기가 벌어지는 등,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하는 데에 한계가 존재한다. 3개월이라는 짧은 국정조사기간으로는 근본적인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또한 검찰수사와 재판 역시 마찬가지로써, 현재 이준석 선장을 비롯한 세월호 선원, 유병언 일가 및 측근 등에 대한 검찰수사와 재판이 진행[43]되고 있었지만, 이미 드러난 사실들만으로도 세월호 참사는 이들 외에도 더 넓은 영역에 대한 조사 및 수사가 필요한 사건이었다. 따라서 진상규명을 효율적이며 신속하고 철저히 파헤치기 위해서 조사권, 수사권, 그리고 기소권까지 갖춘 특별위원회가 설립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던 것이다.

(라) 특별검사제 아닌 특별조사위원회 구성 이유

세월호 참사는 도입에서부터 비정상적 단면이 드러난 사건이다. 그렇

43) 11월 11일 기준 검찰 수사(10월 종합수사결과 보도자료 배포)와 세월호 선원 제1심(항소심 진행 중)은 모두 종결하였다.

다면 검찰총장과 경찰청장 등에게 수사협조를 요청하거나 관련기관에 수사상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44]할 수 있을 뿐, 이를 거부할 경우 강제할 수 있는 방도가 모호한 특별검사제도만으로는 피해 가족들이 원하는 사고발생원인의 규명과 각 정부부서의 업무태만과 부정부패의 관행들을 명명백백히 밝혀내는 데는 부족하다. 따라서 특별조사위원회에 수사권·기소권이 부여하여 사회의 부패와 무사안일주의의 적폐가 드러난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게 할 필요가 있다

(마) 유병언 사체 발견과 진상 규명

세월호 참사의 근본적인 원인 중 하나는 바로 청해진 해운의 무분별한 이윤추구였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유병언 일가에 대한 수사는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필요하다. 그러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의 횡령죄와 배임·탈세 혐의를 받는 것에 불과한 유병언과 유대균은 세월호 수사의 핵심은 아니다. 세월호 수사의 핵심은 인명피해를 키운 책임이 누구에게 있고, 어떠한 방법으로 이런 참사가 일어났는지를 밝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유병언의 사체가 발견된 것과 세월호 참사의 진상은 연관성이 깊지 않다. 따라서 유병언 사체 발견과는 무관하게 진실규명이 계속 이루어 져야 한다.

(바) 수사권과 기소권에 대한 오해와 진실

① 수사권과 기소권에 대한 개념

44)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수사권과 기소권은 세월호 특별법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내용이다. 수사권은 수사기관이 범인과 증거를 찾고 수집할 수 있도록 수사기관에 부여된 법적 권한을 말하며, 기소권은 수사를 통하여 얻은 결론을 바탕으로 범죄혐의에 대해 처벌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할 때 유무죄판결을 법원에 청구하는 권한을 말한다.

② 필요한 이유

우리나라에서 특별법을 통해 조사기관이 설립되었던 예로는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있다. 위 위원회들은 강제력 없는 조사권한에 따른 관계기관의 비협조로 인해 만족할 만큼의 성과를 내지 못했다. 따라서 특별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해야, 경찰청 · 해양수산부 · 안전행정부 · 해군 등의 관련된 모든 국가기관을 피조사기관으로 하여 강력한 진실규명을 해 나갈 수 있다. 특별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이 부여되지 않는다면 관련 기관들이 제대로 된 자료들을 제출할지 의문이고, 조사를 거부하거나 자료제출을 거부할 경우 이를 강제할 수단이 없다. 그렇다면 특별조사위원회의 효율성은 없어지고 조사 또한 형식적인 절차에 그치고 말 것이므로 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은 반드시 필요하다.

③ 수사권 및 기소권 부여와 헌법적 문제점

수사권과 기소권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논란은 정치권에서 촉발되었다. 새누리당 의원들이 헌법위반을 주장하면서 민간 기구에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줄 수 없다고 언급을 했던 것이다. 그러나 특별위원회는 법에

의해 설치되는 국가 기구 성격을 가지고 있는 기구이며,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권을 조사관에게 부여하는 것은 이미 50개 이상의 국가 기관이 행하고 있다. 또한 검사의 자격과 능력을 지닌 자에게 특별법에 의해 검사의 지위와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특별검사제도와 다를 바가 없는 것이므로 특별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사) 유가족 제시한 법안에 대한 논란

① 세월호 가족대책위안을 제출한 이유

법률 공급자인 국회나 정부가 아니라 수요자인 피해자와 국민들이 중심이 되어서, 법률공급자 입장에서 법률 수요자인 생각을 추정하거나 법률 공급자 생각 위주로 작성되는 법안에서 탈피하고, 수요자 입장에서 실효적인 진상규명 및 국가기관의 역할 등 필요한 내용을 제대로 넣어보려는 목적을 가지고 법률 전문가들과 함께 합법적 테두리 내에서 법안을 만들어 제출하였다.

② “안전사회“를 위한 내용 여부

이 법에 의해 설립 된 4.16 재단(가칭)이 재난에 대처하는 경각심을 고양하는 기념사업, 4.16. 재난방지의 날로 지정하는 사업, 재난 예방 및 방지교육 훈련과 홍보·대책 반영하는 사업, 국가 재난 발생 시 자료 수집, 관리, 보전, 전시, 교류, 연구 사업, 외국의 대형 재난 극복 사례 등에 대한 자료 수집 등 연구사업, 재난 관련 문화·학술 지원 등 대한

민국이 안전사고에 경각심을 가지고 꾸준한 관심을 지속시킬 내용이 법안에 포함했다.[45)]

③ 세월호 가족대책위 법안과 새정치민주연합 법안의 차이

우선 조사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새정치 민주연합 법안은 국회추천 인원이 4/5(여야동수 국회추천 12명, 피해자 단체 추천 3명)인 것에 반해, 세월호 가족대책위 법안은 국회추천 8인, 피해자 단체 추천 8인으로 하여 1:1 동수의 비율이다. 둘째로 그 조사위원회의 권한과 관련하여 새정치민주연합 법안은 특검요청권한이 있는 반면, 세월호 가족대책위 법안은 비상임위원은 특별사법경찰관으로서. 상임위원은 검사로서의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이다. 셋째로, 활동기간에 있어서도 새정치민주연합의 경우에는 기본 1년에 6월씩 2번 연장이 가능하지만 세월호 가족대책위 법안은 활동기간이 2년에, 1년 이내 1회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다. 끝으로 전술한 바와 같이 피해자에 대한 보·배상에 있어서 새정치민주연합 법안은 의사상자, 진도어민 보상, 생활지원 등 상세히 지원 안이 목록으로 나열된 반면, 세월호 가족대책위 법안은 실질적인 진상규명이 우선이라는 취지상 피해자 지원의 당연하고 원칙적인 내용만 포함하고 있다.

라. 논란의 정부의 문건

정부는 국민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사고 직후 공개된 정부 내부 문건은 충격이 아닐 수 없었다. '충격 상쇄용 기사 아이템을 개발' 해야 한다는 문건은 세간에 풍문으로만 존재했던 '여론물타기' 가 실제

45) 유가족 및 대한변협 공동제작 세월호 특별법 제42조 제5항

로 존재하는 것을 보여준 것이어서 파장은 컸다. 큰 사건마다 여론을 덮기 위한 공작에 대해 전 국민적으로 다시 한 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음은 틀림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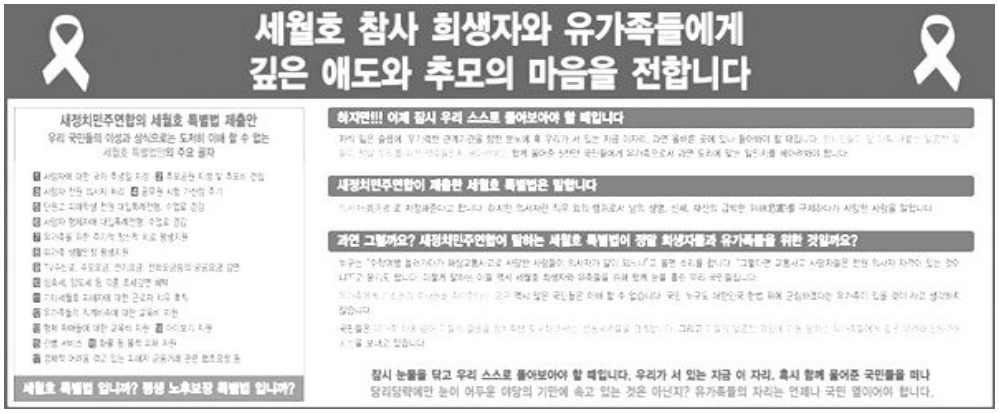
게다가 문제가 된 문건은 이것만이 아니었다. 보도통제 의혹이 있을 법한 방통위의 문건이 차례로 공개되면서 언론의 불신은 정부의 불신으로 이어졌다. 문건은 정부가 전방위로 언론의 세월호 관련 보도와 방송사 자체를 조정 통제하는 등 사실상 언론을 통제하는 정황이 담긴 문건이었다. 방송사 인·허가 권한이 있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사를 '조정통제' 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모니터링을 강화하면서 네티즌에게 자정 권유 및 사업자에게 '삭제' 를 신고하는 등 전 방위로 세월호 관련 보도와 의혹제기를 통제한다는 내용이다.

또한 재난상황반 운영계획은 방송정책국은 '방송사 조정통제' 를 하며, 방송기반국은 '방송 오보내용' 을 모니터링하고, 이용자정책국은 '인터넷 오보' 를 모니터링 한다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는 방통위가 정부의 오보 판단 기준으로 언론 보도 등을 모니터링, 해당 언론사를 통제한다는 말이나 다름없다. 이후 문제가 지적되자 방통위는 위 문건에서 '조정통제' 라는 단어를 '협조요청' 이란 단어로 수정했으나, 여러 언론의 오보와 겹치면서 방송통제 의혹이 지금까지 완벽히 해소되지 않았다.

사고 초기 정부의 '보도통제' 의혹이 일면서 세월호 관련 보도에 대한 불신이 정점에 달했는데, 위에서 보는 문건들을 자세히 보면 충분이 보도통제 의혹이 일어날 만도 했음을 알 수 있다. 일련의 위와 같은 사태는 유가족 및 국민들이 언론을 불신하게 된 주된 이유 중 하나가 아닐 수 없다.

마. 2014년 7월 28일자 문화일보 31면에 실린 광고 파문

민간단체인 어버이연합의 회원이 문화일보에 다음과 같은 광고를 게재했으며, 이 당시 종로 일대 및 지하철 등에 같은 내용으로 인쇄된 전단지로도 유포되었다. 이 광고는 적지 않은 파문을 낳았다. 광고가 7.30 국회의원 재보선을 앞두고 있던 시기였다는 점과 그 광고가 진상규명을 위한 세월호 특별법이 마치 반정부 선동을 하는 것처럼 호도하였기 때문이었다.



<7.28.자 문화일보 31면 하단 게재 광고>

(1) 광고를 둘러싼 외부 논란

이 광고는 선거와 맞물리면서 정치적인 논란으로 전개되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어버이연합의 광고와 지하철 전단지, 문자메시지들은 새누리당의 대외비 문건과 일치한다며 새누리당의 조직적 흑색선전 의혹을 제기했다. 세월호 가족대책위 대변인 역시 이 광고게재는 재보궐 선거에 영향을 미치고자 공작 정치를 기획한 것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결국,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라 한다)는 이 광고를 실은

어버이연합 간부를 7월 29일에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광고 게재 행위가 공직선거법 제93조[46]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어버이연합은 이와 관련, 광고비도 자비로 부담한 것으로 개인의 일탈행위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동일한 내용의 전단지가 종로일대 및 지하철 등에서도 대량 배포된 점을 미루어 보면 개인의 소행이라고 보기에는 설득력이 약해 보인다.

(2) 광고의 내용에 대한 논란

위에서 보면 알다시피 광고의 제목은 희생자와 그 가족들을 추모한다는 형식으로 마치 위로하는 광고인 것처럼 포장하였다. 그러나 그 내용은 추모와는 거리가 먼 허위사실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 광고를 읽어보면 어떤

---

46) **제93조**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 · 도화의 배부 · 게시 등 금지)
①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창당준비위원회와 정당의 정강 · 정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지지 · 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 · 도화, 인쇄물이나 녹음 · 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 · 첩부 · 살포 · 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7.11.14, 1998.4.30, 2002.3.7, 2004.3.12, 2005.8.4, 2010.1.25]
1.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 제60조의3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같은 항 제2호의 경우 선거연락소장을 포함하며, 이 경우 "예비후보자"는 "후보자"로 본다)이 제60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후보자의 명함을 직접 주는 행위
2.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행하는 「정당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활동
②누구든지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정당 또는 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 · 연예 · 연극 · 영화 · 사진 그 밖의 물품을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광고할 수 없으며, 후보자는 방송 · 신문 · 잡지 기타의 광고에 출연할 수 없다. 다만,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문 또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기간행물의 판매를 위하여 통상적인 방법으로 광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8.4.30, 2005.8.4, 2010.1.25] [[시행일 2010.2.1]]
③누구든지 선거운동을 하도록 권유 · 약속하기 위하여 선거구민에 대하여 신분증명서 · 문서 기타 인쇄물을 발급 · 배부 또는 징구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신설 95.12.30]

의도가 포함된 내용임을 알 수 있다. ‘세월호 특별법입니까 평생 노후 보장 특별법입니까?’ 라는 소제목으로 눈길을 잡으면서 13가지 항목의 특혜를 주는 것처럼 광고는 게재되어 있다. 게다가 법안이 진정으로 가족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당리당략을 따르는 야당의 행위로 인한 것임을 사실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다.

다음에서는 위 13가지 항목에 대해 그것이 진실인지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한다.

① 희생자에 대한 국가추념일 지정 및 추모공원 등 건립

특별 법안에 국가추념일 및 추모공원과 추모비 건립 내용이 법안에 존재한다. 단 그 취지는 제주 4.3 추념을 위한 국가기념일이 있는 것처럼 4.16 참사를 추념하기 위한 기념일 지정하자는 것일 뿐이다.

② 사망자 전원 의사자 처리[47)]

법안에 존재한다. 그러나 전술했던 바와 같이 의사상자 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고 따로 대통령령으로 예우를 정하도록 하였으며, 그 ’의사상자’ 용어 역시 아이들의 죽음을 헛되지 않게 하자라는 취지에서 적당한 용어를 찾다가 의사상자 용어를 따온 것일 뿐 ‘의사상자 예우에 관한 법률’ 상의 의사상자는 아니다.

③ 공무원 시험에 있어 가산점

가족 제정의 특별법안에 존재하지 않는다.

④ 단원고 피해학생 및 사망자 형제자매 전원의 대입 특례전형 및 수업

47) 앞부분[다.2).가).(1).]에 관련된 내용을 자세히 서술하였다.

료 경감

대입 특례 전형은 법안에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수업료 경감 부분은 경기도 안산시 단원고에 재학 중인 학생 및 희생자 또는 생존자의 직계비속 및 형제자매 중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에 대하여 수업료 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을 뿐이다.

⑤ 사망자 형제자매 전원 대입 특례 전형, 수업료 경감

대입 특례 전형에 대한 것은 이 법안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세월호 참사 당시 피해자로서 단원고에 재학 중인 학생 및 희생자 또는 생존자의 직계비속·형제자매 중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에게 수업료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⑥ 유가족을 위한 주기적 정신적 치료 평생지원, 생활 안정 평생지원

법안에 존재한다. 그러나 우선 이 내용을 유가족이 주장하지 않았다. 그 내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개인 또는 가족 단위의 심리상담 및 일상생활 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희생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까지 포함한다)가 세월호 참사로 인하여 악화된 심리적 증상 및 정신질환 등에 대하여 의학적 검사 또는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하며 정부는 국립중앙의료원 안산병원 내 피해자에 대한 종합적인 정신건강관리를 위하여 정신건강트라우마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일반적인 사고 대책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또한 법안에서는 국가는 피해자에게 생활지원금(피해자의 생활 보조에 필요한 비용) 및 의료지원금(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질병 및 부상과 그 후유증의 치료 또는 보조 장구의 사용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평생지원이란 내용은 존재하지 않는다.

⑦ TV수신료, 수도요금, 전기요금, 전화요금 등 공공요금 감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은 피해자에 대한 텔레비전 수신료, 수도요금, 전기요금, 전화요금 등의 공공요금을 감면할 수 있고 감면 대상의 범위 및 감면 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역시 일반적인 지원정책의 내용을 담았을 뿐 특혜라고 할 수 없다.

⑧ 상속세, 양도세 등 각종 조세감면 혜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세월호와 무관하게 피해지역의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그 밖의 조세 관련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해지역 소상공인 등에 대하여 조세감면 등 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그 밖의 조세 관련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한 수준의 유족에 대한 상속세 및 양도세 등 세제상의 지원을 하려는 것이었을 뿐이다. 이 혜택 역시 유가족이 먼저 요구했던 것이 아니었다.

⑨ 기타 세월호 피해자에 대한 근로자 치유 휴직

법안에서는 사업주는 참사 생존자, 생존자의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 희생자의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세월호 참사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치유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하고 치유휴직은 유급으로 하되, 치유휴직의 기간은 6월 이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도적 차원에서 6월 이내의 치유 휴직은 당연히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다.

⑩ 유가족들의 직계비속 및 형제자매들에 대한 교육비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세월호 참사 당시 피해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의 수업료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고 희생자 또는 생존자의 직계비속·형제자매 중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에게 교육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⑪ 아이보기 지원 및 간병서비스

피해자는 필요한 경우 「아이 돌봄 지원법」 제2조에 따른 아이돌봄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의 적용을 받는 피해자의 간병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으며 간병비용 지급의 대상·금액·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하고 있다.

⑫ 화물 등 물적 피해 지원

정부는 세월호에 화물을 적재하여 물적 피해를 받은 사람에 대한 지원 대책을 마련할 수 있으며, 정부는 제1항의 피해액 산정을 위해 전문

가에게 필요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⑬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 금융거래 관련 협조 요청

국가는 금융채무로 인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의 금융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관련 공공기관, 은행, 그 밖의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상 13가지 항목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13가지 항목은 사실인 것도 그렇지 않은 것도 있다. 다만, 유가족이 간절히 요구했던 것은 위 13가지에는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 위의 혜택을 유가족이 받는다고 해도 가족을 잃은 피해자에게 하는 인도적 차원의 내용 그 이상·이하도 아니었다.

바. 세월호 참사를 교통사고에 비유

새누리당의 한 국회의원이 라디오 인터뷰에서 세월호 사고의 희생자와 교통사고 사망자와의 차이가 무엇인지 의문이라 말하면서 일명 '교통사고 비유' 논란이 일었다. 또한 새누리당의 당시 정책위의장이 '세월호는 기본적으로 교통사고' 라는 발언도 논란을 키웠다.

세월호 참사를 굳이 교통사고에 비유한다면, 오래된 고물 자동차를 오픈카로 만든다며 마구잡이로 튜닝한 뒤에, 국가에서 그 자동차도 안전하다고 확인을 해주었고, 신이 난 초보운전자는 트렁크에 벽돌을 잔뜩 싣고, 안개 낀 산길에서 운전하다 발생한 사고로 비유할 수 있겠다.

게다가 사고 후 신고를 받고 경찰이 도착했으나 적극적 구조를 하지 않

았고, 주변 일반인이 차 안에 일부 탑승자를 구조했을 뿐, 경찰은 운전자만을 구조한 뒤에 방관 및 위험하다는 이유로 더 이상 승객구조를 하지 말라며 막아섰고, 그러던 사이에 차는 절벽으로 떨어져버리고 차안의 남은 탑승자 전원은 사망한 것과 같다. 결국 세월호 참사는 그저 '교통사고'로 일반화될 것이 아니다.

사. 세월호 가족대책위의 실제 요구사항

지금은 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통과되어 이 당시의 유가족의 입장을 정리하여 나타내는 것이 의미가 있나 싶지만, 아직까지 잘못된 정보를 진실로 알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 그 입장을 정리해 본다.

유가족들이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통해 요구하는 사항은 첫째, 세월호 참사의 성역 없는 진상규명을 위한 <416 참사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국회가 추천하는 8인, 피해자 단체가 추천하는 8인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독립적으로 규명할 것과 둘째, <416 참사 특별위원회>에 수사권 및 기소권을 부여하여, 실효성 있는 진상조사를 실행한 후,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을 추궁하는 것이다. 이 두 가지가 당시에 가족들이 원하는 핵심이었다. 가족들은 아이들이 왜 죽었고 어떻게 죽었는지를 정확히 알고 싶어 했을 뿐이다. 물론 그 이외에 사항도 법안에는 담겨있었으나 주된 주장은 '진실규명'이었다. 이점에 있어 앞으로 오해가 없었으면 한다.



[2014. 05. 10 안산, 탁기형, 416가족협의회 416기억저장소]

3. 대한변협을 둘러싼 편파성 시비

대한변협은 변호사 단체 중 유일한 법정단체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변호사를 대표하는 단체에서 세월호 참사와 같은 국가적 재난에 대해 처음으로 법률지원을 위해 움직였다. 총 503명의 변호사로 구성된 세월호 참사 공익법률지원단이 피해자 가족을 위한 법률 지원과 함께 특별법 제정 등 관련법 개선을 위한 지원 활동을 한 것이다.

총괄부분에서 언급이 되었겠지만 변협은 ①현장 법률 자문·상담 ②국가배상·형사재판 소송 지원 ③대정부 협상 지원 ④사고 관련 정책 및 법 제도 개선을 포함한 대책 마련 등을 지원하기 위한 활동이었으며, 특별법[48]이 통과되기 전까지는 주로 현장 법률 자문·상담과 국가배상·형사재판 소송 지원을 위주로 활동하였으며, 통과 이후에는 주로 대정부 협상 및 사고 관련 정책 및 법 제도 개선에 대해서 활동하고 있는 중이다.

48) 여야합의로 국회 본회를 통과한 특별법을 의미한다.

이번 활동이 의미 있는 것은 '가치'가 다른 다양한 변호사 단체 및 개인 변호사가 참여를 했다는 점이다. 기독법률가모임, 여성변호사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 그리고 그 이외에 소신을 지키며 살아가는 많은 개인 변호사들이 대한민국변호사로서 뭉친 것이다. 이들이 가진 공통점은 바로 이들 모두는 대한변협 회원이라 점이었다. 대한변협이란 큰 틀 안에서 위 각 단체 및 개인 변호사들이 진상 규명 과제를 포함해 자원봉사를 시작했던 것이다. 다양한 생각을 가진 변호사[49]들이 대한변협이라는 이름으로 힘을 합해 언론 대응을 해나간 점은 변호사계에서 나름 의미 있는 '협업 시스템'의 시작점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처럼 대한변협 세월호 특위는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그 피해자를 조력함과 동시에 재난대비와 관련하여 관계 법령을 정비하여 국가발전에 일조하고자 출발하였다. 그런데 이 활동으로 인해 대한변협이 편파성시비로 논란의 중심에 섰다. 그 발단은 전임회장 4인(정재헌, 천기홍, 이진강, 신영무)이 위철환 협회장을 방문하여 현 집행부의 행보가 우려스럽다는 의견서를 전달하면서 촉발됐다. 전달된 의견서에는 '대한변협은 법조직역의 주축이자 법치주의 수호와 정의실현을 사명으로 하는 변호사들을 대표하는 유일한 법정단체로서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정치적으로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에 대해 변호사들을 대표해 입장을 표명하려면 적어도 회원들의 총의와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다수의 의사를 확인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내용과 '피해자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지는 것에 대해 학계에서도 첨예하게 대립하는 점은 문제다'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러한 사태가 벌어진 중요한 이유는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 당시 대한

49) 다양한 분야에서 자신만의 신념을 가지고 활동하는 수많은 변호사를 의미한다.

변협의 목표와 활동방향과는 다소 거리가 있었고, 회원들과의 소통이 부족했던 점일 것이다. 그러나 단순히 이런 편파성 시비가 변협 대응이 미숙하거나 소통의 노력이 부족해서 발생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전직 협회장이 방문하고 난 다음날의 언론의 태도를 보면, 대결구도를 만들며 흥미위주의 보도를 했음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동아일보를 보면, 동아일보는 <민변이 접수한 변협, '反법치 세월호법안' 만든 책임 크다>란 제목의 사설을 기재하였다. 제목만 보더라도 이미 그 의도를 알 수 있다.

사설에서는 "유족들이 강력히 요구하는 조사위의 수사권과 기소권 부여는 피해자가 가해자를 직접 처벌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다. 자력구제(自力救濟) 금지라는 문명국가의 법질서에 위배될 뿐 아니라 대형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피해자들이 같은 요구를 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권위주의 정권 시절 인권 탄압에 성명을 발표하는 등 정치적 중립성을 인정받아온 변협이 편향적으로 바뀐 데는 이유가 있다. 지난해 2월 직선으로 처음 당선된 위철환 협회장이 선거 과정에서 민변의 도움을 받으면서 집행부 구성과 운영에 민변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하게 됐다"라는 내용을 포함했다. 민변과 협회장을 엮으며 대한변협이 민변의 2중대 노릇을 하며 변호사들의 의견이 왜곡되고 있다는 식의 사설이었다. 기사가 아니라 사설이므로 객관적 사실전달의 기대수준이 낮으므로 이런 내용이 허용될 수 있다고 볼 수도 있으나, 사설 역시 인터넷이나, 지면으로 기사와 같이 보도된다는 점에서 그 영향력은 동일할 것이다. 그러므로 '주장' 또는 '논조'라고 포장한다 해도 도를 넘어선 사설은 당연히 비판받아 마땅하다.

결론적으로 편파성 시비의 발단은 대한변협의 소통 노력의 부족이라 볼 수도 있으나, 논란을 확대하고 키운 것은 언론이며, 대한변협이 적극적으로 언론에 대하여 대응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언론에 대응하지 않은 이유는 단단무타(斷斷無他)의 정신으로 진실을 규명하는 것이 우선이었고 대한변협이 논란의 중심에 서면 유가족의 행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으나, 결과론적으로는 어떠한 상황이든 언론을 통한 적절한 소통은 필요한 것이 분명해 보인다.

지난 11월 6일 문화일보는 사회면에 '변협 집행부,親민변. 징계회부하지 않을 수도' 란 제목으로 기사를 내면서 '10일에 예정된 상임이사회에서 민변소속변호사 징계신청에 의견을 수렴할 것으로 알려졌다', '변협 집행부에 민변 출신 및 민변 성향 변호사 다수 포진해 있다' 는 기사가 보도됐다. 그러나 대한변협은 10일에는 변호사 징계에 대한 의견 수립을 하지 않았으며, 현 집행부 30여 명 중 민변 소속 변호사는 1명뿐이고, 親민변 성향이라는 것도 객관적이고 근거가 없는 내용이라고 반박하면서 언론 중재 위원회에 문화일보 지면과 인터넷 신문에 정정 및 반론보도를 신청할 것과 각 3천만 원 손해배상의 조정신청을 했다. 이 기사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듯 하나 당시 민변 논란이 연이어 이어진 것으로, 대한변협은 앞으로 언론의 대한변협 오보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태도로 대응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4. 성과

선원 재판도 1심이 끝났고, 여야합의로 특별법도 통과하여 세월호 참사는 단락되었지만 진실규명을 위해서는 아직도 할 일이 많이 남아 있다.

아직 성과를 논하기엔 성급해 보인다. 그러나 대형 재난사고에 대한변협이 발 벗고 나선 일은 전례가 없으며, 500여명이 넘는 공익법률지원단이 꾸려져서 공익활동의 일환으로 지금처럼 활동한 전례도 없다. 따라서 대한변협이 남긴 언론부분의 성과에 대해 정리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잘된 부분은 본받고, 미흡한 부분은 고쳐나가야 할 것이다.

가. 인터넷 자정 작용과 사·공익의 조화

언론 대응, 언론 모니터링 등을 통해서 고소, 고발 등 법적 대응을 했지만, 법적 대응의 직접적인 결과물로써 모두가 만족할 만한 성과는 아직 없다. 다만, 법적 대응을 통해 악성 댓글을 남기는 등 악의적 행동을 하는 것에 경각심을 심어준 것은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인터넷상의 블로그 수나 댓글의 수는 너무 많아서 사전 예방의 효과가 미비하게 평가받을 수 있을 것이나, 악의적 댓글이 언론대응팀이 한 고소 및 고발 뉴스로 공론화되면서 국민들이 세월호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게시할 때 이전과 달리 정제된 표현을 사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인터넷의 역기능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할 방법은 없다. 현재의 방법처럼, 개인이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 형사처벌 방법으로 해결을 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50]이다. 현재 인터넷 역기능을 순화하기 위해 국가는 자발적인 자정작용을 원칙으로 하고 최소한의 법적인 제한만을 하고 있다. 변호사들도 딱히 다른 방도가 없기에 개인이 명예훼손 등의 방법을 사용할 때 조력을 주는 것이 전부였다. 그러나 세월호의 경우는 국민적 관심사가 큰 사건이며, 인터넷상에서 찬반의 의견 대립이 심했다. 댓글하나까지 관심을 받는 사건이다 보니 명예훼손의 고소·고발을 통해 사전예방이라는 자

50) 물론 언론중재위나 방송통신위원회 등을 활용하는 방법도 존재한다.

정작용의 효과를 달성할 수 있었다.

언론대응 활동의 특징은 법적인 대응을 하는 것만으로도 공익에 부합하는 활동이었다는 점이다. 어떤 활동이든 그 정당성을 의심받거나 심지어 공격당하는 것이 비일비재하다. 그러나 언론대응 활동은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여 일반 국민들이 올바른 판단을 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 보니 이에 수반하는 행동은 그 자체만으로 이미 공익적이었다. 더욱이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는 행위에 있어서 의뢰인이라 할 수 있는 유가족의 입장이 반영이 된 것이므로 변호사의 입장에서는 더욱 보람이 컸다.

예를 들어 유가족과 협의를 통해 방통위 민원을 제기한 것과 홍가혜[51] 씨 탄원서를 작성 제출 한 것, 심재철[52] 의원의 잘못된 카카오톡 메신저에 대하여 심재철 의원을 고발 조치 한 것은 변호사로서 의뢰인의 입장을 반영하면서 공익에 일조한 것으로 변호사의 책무를 준수한 좋은 선례이다. 앞으로도 우리 활동을 포함하여 언론에 대한 법적 대응분야에 대한 연구가 더 활발해져서 보다 나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본다.

나. 대한변협과 변호사의 위상변화

---

51) 민간 잠수부를 자처해 뉴스에 인터뷰를 하여 해경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 기소된 민간인이다. 허위사실을 적시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논란이 있으며, 검찰이 1년 6월 구형을 하였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52) 세월호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이다. 심의원은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들이 희생자를 의사자로 지정해달라고 요구했다는 내용의 허위 문자메시지를 유포한 혐의로 대한변호사협회 세월호 참사 특별위원회 법률지원단(변협 법률지원단) 산하 언론모니터링팀 소속 정철승 변호사에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에 고발당했다.

대한변협 공익법률지원단이라는 이름으로 변호사들이 활동을 하면서 대한변협은 출범이래 가장 많이 세간에 회자되었다. 이전에는 대한변협이라는 단체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들 이외에는 존재자체를 모르는 경우도 있었다. 실제로 변호사는 자격이 아닌 직업으로 인식되면서 개인 활동 이미지가 강하며, 대중에게는 대형 로펌 위주로 많이 알려졌을 뿐이다. 이번 사건을 겪으며 대한변협은 대형로펌 수준으로 인지도를 올렸다. 게다가 변호사들이 대한변협이란 이름으로 세월호 활동과 관련한 각종 기자회견, 무료 봉사, 세월호 유가족과 사회 공익을 위해 활동하는 모습은 국민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대한변협을 이익 집단으로만 알고 있는 국민들은 그 생각을 전환하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며, 대한변협을 모르던 국민들은 변호사 단체가 공익을 수호하는 집단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을 것이다. 어느 때보다 많이 언론에 공익활동으로 알려지면서 대한변협은 '변호사들이 이익을 위해 만든 집단의 이미지'를 넘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또한 변호사가 인터넷에 떠돌던 허위사실에 대해서 집단적 프로보노 형식으로 대응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이것은 사회 화두에 대해서 변호사들이 대처하는 하나의 방법으로써 이정표가 될 만한 일이 분명하다. 공익활동이라는 가치아래 언론사의 오보를 정정하고, 국가기관의 행위에 대응하고, 올바른 정보전달과 인터넷 문화의 순화를 위해 법의 테두리 내에서 열심히 활동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변호사들의 활동이 언론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다는 점은 각 분야에 있어 시너지 효과를 냈다. 국회 입법활동부터 진상조사, 현장 대응까지 여러 방면에서 활동을 하다 보니 각각의 활동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기대한 이상의 효과를 거뒀다. 특히, 언론대응의 경우에는 진상조사팀과 현장대응팀에서 활동한 자료들이 정리되어 전달되다 보니 언론 보도가 정확한 정보였는지를 판단할 수 있었고,

유언비어에 선제적 대응이 가능할 수가 있었다.

5. 반성 및 평가

탈무드에 보면 '반성하는 사람이 서 있는 땅은 그 어떤 성지보다 거룩하다'는 말이 있다. 반성하는 것이 중요하게 여겨진다는 것을 비유한 말이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반성은 자신의 과거를 뉘우쳐 더 나은 미래로 나갈 중요한 거울과 같이 여겨졌다. 이런 점에서 반성은 지금도 중요하게 여겨진다. 세월호 언론 대응도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뒤를 돌아보고자 한다. 전례 없는 법률구조 활동이다 보니 1년차 변호사부터 베테랑 변호사까지 어느 누구도 정답을 알지 못했고, 조금은 서툴게 활동을 해야 했다. 다행히도 이 미숙했던 부분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시나브로하게 좋아졌다. 그러나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취지에서 보면 매우 부족했다. 이제 회과자책(悔過自責)의 심정으로 세월호 언론대응 활동을 뒤돌아보고자 한다.

미디어는 일반 국민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맺는다. 잠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잠자리에 들기 전까지 다양한 미디어에 노출되고 있다. 사실 어떠한 활동을 하던 미디어 담당은 중요한 업무이다. 그런데 일단 변호사들은 언론과 관련하여서 문외한[53]이었다는 점이 문제였다. 이 점은 처음 활동을 시작하면서부터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은 장애물과 같았다. 언론의 생리나 언론에 대한 직접적인 경험 등이 없다보니 변호사들이 사방팔방으로 뛰어다니며 노력해도, 이런·저런 대응책을 강구해도 한 발작씩 늦었다. 매번 사건이 터지고 나서 수습하기에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했다. 이는 중요 문제마다 정확히 대응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음을 의미한다. 중요

53) 사후적 방법인 언론중재나 언론소송 전문 변호사도 존재하지만 언론이나 여론의 생태를 이해하면서 사전적·적극적으로 대응해본 경험이 있는 전문가가 아님을 의미한다.

포인트는 앞서 문제가 터진 그 원인에 있을 텐데, 항상 문제가 터지고 나서 그 파급력을 낮추기 위해 수습하다보니 뒷북치기에 바빴던 것이다. 로스쿨 도입 후 기자 출신 변호사들이 많이 배출되었다. 언론의 생리를 이해하고 알고 있는 변호사들이 더 많아지고, 변호사들이 언론 상대 시 참고할 매뉴얼 등이 개발되어야 할 것 같다. 빠른시일 내에 대한변협 내에 특위를 구성하여 언론에 대한 변호사의 대응방법에 대해 올바른 방안을 수립하기를 희망한다.

언론 대응 방법이 세분화되지 못한 것도 문제였다. 하나의 문제에 대응하면서 동시에 파생되는 여러 문제를 함께 대응하고 고민했어야 하나 그렇게 하지 못했다. 예를 들어 뉴스에서 오보가 보도되었다고 한다면, 일단 급한 것은 오보에 대한 정정이기에 '정정보도'에 집중하게 된다. 그러나 오보는 단순히 정정을 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오보를 통해 퍼져 나간 잘못된 정보는 인터넷 등에서 2차 생성되는데, 이를 바로잡는 방법도 함께 고민했어야 한다. 대표적인 사안마다 2차, 3차 파생 문제까지도 함께 다루어졌었다면 불필요한 행동이 줄어들고 지금보다 훨씬 효율·효과적으로 대응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언론에 대한 대응은 한 가지 사안에만 집중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 다발적으로 파생되는 문제까지 다 같이 한 번에 대응해야 한다.

또한 많은 변호사들이 모이면서 자발적인 봉사활동의 형식이 되다보니 전담변호사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도 문제점이었다. 전담 변호사 없다보니 하나의 일을 처리함에 있어서 각 변호사들의 자발적 지원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이는 모인 변호사들이 평등한 구조이기 때문이다. 협조 형태로 활동이 진행되다보니, 일의 분배 또한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했다.

각자가 자신의 개인 사건이나 업무를 하면서 동시에 세월호 활동을 하다 보니 활동에 전념할 수도 없는 구조도 한계점이었다. 그리고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언론 대응도 중요한 일이었음에도 현장지원이나 진상조사팀에 특히 많은 인력이 집중되었다는 것이다. 끝으로 언론 대응과 모니터링, 가족과의 접촉 등 업무별로 전담 변호사가 있고, 이를 진두지휘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의 변호사[54]가 있었다면 훨씬 나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언론에 대응하고 인터넷 등을 모니터링 하면서 상당히 왜곡된 인터넷 문화를 접할 수 있었다. 그동안에는 인터넷 에티켓 등의 문제를 머리로만 이해하여 이성적 비판만을 해왔었는데, 이번에 인터넷 공간의 네티켓 상실이 심각한 수준임을 마음으로 느낄 수 있었다. 그래서 더 늦기 전에 반드시 대한민국 인터넷 문화의 정화작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바다.

왜곡된 사실을 진실한 사실로 대체하는 것에는 더 많은 노력이 요구된다. 이미 알려져 대중이 인지한 사실에 대해 반대의 의견을 전달해야 하므로 훨씬 더 논리적이어야 한다. 그리고 대중은 이미 그 사실에 대해서는 흥미를 잃었으므로 다시 관심을 끌어 오기란 역시 어렵다. 관심을 가지고 온다고 해도 이 전 만큼의 주목을 받기는 더더욱 어렵다. 따라서 진실을 퍼트리는 일은 허위사실을 퍼트리는 일보다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 실제로도 세월호 참사의 본질인 생명권, 생존권, 인격권과 관련된 진실은 허위사실만큼 널리 알려지지 않았다. 세월호 참사 수습 기간동안 진실한 사실은 묻히고 허위사실들이 확산되고 퍼져나가는 것을 변호사로서

54) 예를 들어 특위에서 보면 대변인을 중심으로 하여 언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무기력하게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앞으로 언론과 관련하여 대응하기 위해서 변호사들도 이러한 인터넷 문화의 특성을 잘 알아야 하며, 또 아는 것 이상으로 수습방안을 빠르게 강구하는 순발력과 결단력이 필요하다. 지금도 당시의 허위사실이나 마타도어를 진실로 믿고 있는 일부 국민이 존재하고 있다. 이런 분들을 가끔 만나면 언론대응팀으로서 지난 200여일을 제대로 활동했는지를 반문하게 된다. 그리고 진실을 알리는 것이 왜 이리 어려운 것인지를 고민하게 된다.

세월호 활동에는 그 한계가 분명히 있다. 그 한계 속에서 분명했던 것은 '법이 전부가 아니고 법 위에는 사람이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가끔 보면 법치주의를 '법만능주의'로 착각하는 사람이 있다. 법은 모든 일에 능사가 아니며, '사람에 대한 이해'가 선행된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꼭 밝히고 싶다.

제3부

활동일지 및 조직도

Ⅰ. 대한변협 세월호 특위 활동일지

Ⅱ. 조직도(전기)

Ⅲ. 조직도(후기)

※ 후기

Ⅰ. 대한변협 세월호 특위 활동일지

1. 4·16 세월호 참사 발생	2014. 4. 16.
사진	
내용	2014. 4. 16. 인천 연안여객터미널에서 제주도로 이동 중이던 여객선 세월호가 전남 진도군 병풍도 앞 인근 해상에서 침몰하였다. 이 사고로 탑승객 476명 중 172명만이 구조됐고, 304명의 사망·실종자가 발생했다

2. 세월호 참사 직후 진도 현장에 변호사 파견하여 현장조사 실시	2014. 4. 17. ~
사진	 출처: 연합뉴스
내용	4·16 참사 발생 바로 다음날 대한변협은 변호사 1명을 사건 현장인 진도로 파견해 현장 파악에 나섰다. 사흘째인 4월 18일에는 변협 대표단 자격으로 7명의 변호사를 진도에 파견해 현장 상황을 기록 및 녹취, 공권력 등 인권침해 행위 등 감시, 기타 실종자 가족 차량지원과 상황 설명, 가족 면담 등의 활동을 한 바 있다. 변협 위철환 협회장과 이명숙 부협회장, 김영훈 사무총장 등도 진도를 방문해 상황을 살피고 파견 변호사와 회의를 개최했다. 이 과정에서 대한변협은 정부의 부실한 대응 및 혼선, 언론의 부정확한 정보 제공 등으로 인한 실종자 구조 실패, 가족들의 2차 피해와 관련 법적 문제를 확인할 수 있었다.

3. 대한변협 ‘세월호참사피해자지원 및 진상조사특별위원회’와 공익법률지원단 구성결의	2014. 4. 28.
내용	대한변협은 사건발생 직후부터 총 17차(2014. 4. 21. ~ 5. 22.)에 걸쳐 세월호 피해대책 TF 회의를 열었다. 그 과정에서 종합적인 피해자 지원 대책과 진상조사 및 법률지원 활동을 위하여, “세월호참사피해자 지원 및 진상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공익법률지원단을 모집하기로 결의하였다. 대한변협 세월호 참사 피해자지원및진상조사 특별위원회(공동 위원장 이명숙 부협회장, 김영훈 사무총장)는 산하 총괄지원팀, 현장대응지원단, 진상조사단, 법제도개선단, 법률상담/지원단, 언론모니터링팀, 재판지원팀, 백서제작팀, 특별법팀, 상담매뉴얼 작성팀 등으로 구성되어 각 팀별로 공익법률지원단을 배치하여 활동이 이루어졌다.

4. ‘세월호 참사에 대한 대국민 성명’ 발표(참고자료)	2014. 4. 30.
내용	4월 30일 대한변협은 ‘세월호 참사에 대한 대국민성명’을 발표하였다. 대한변협은 성명서에서 “현지조사를 통해 가족들이 입은 몸과 마음의 상처 치유가 시급하고 민간 전문가 단체의 체계적 지원 대책의 필요성을 느꼈다” 면서 4·16참사 피해자 및 그 가족들에게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관련 공익소송 등을 무상으로 지원할 것과 참사의 원인 및 구조과정의 문제점, 책임소재를 철저히 규명하여 관련 법률의 제·개정, 위기관리와 재난대응시스템의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 국민의 안전을 지킬 해결책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5. 세월호 피해가족과 함께 여의도 KBS 및 청와대 항의방문하여 협상 및 지원	2014. 5. 8. ~ 5. 9
사진	
내용	KBS 보도국장의 '세월호 사고는 300명이 한꺼번에 죽어 많아 보이지만 연간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 수를 생각하면 그리 많은 것은 아니다' 라는 발언에 대하여 유가족들이 KBS와 청와대를 항의 방문하는 동안 변협 세월호 특위 위원들이 1박 2일간 동행하며 현장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협상과정을 지원하였다.

6. 변협–가족대책위 간 MOU 체결 및 기자회견	2014. 5. 16.
사진	 2014. 5. 16. 오전 안산 와스타디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위철환 협회장이 변협의 향후 활동 방향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대한변협신문)
내용	대한변협은 세월호 사고 희생자, 실종자, 생존자 및 가족대책위원회(이하 '가족대책위')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법률적 지원을 요청하는 피해자 및 그 가족, 가족대책위를 위한 상담 및 자문 등 법률지원, 신청·고소·고발·소송 등 법률절차 대리, 관련 정책 및 제도 개선을 포함한 대책 마련 등을 위해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7. 공익법률지원단 모집(1, 2차: 최종 514명 지원)	2014. 4. 30 2014. 5. 26.

8. 제1 · 2차 세월호 공익법률지원단 워크숍 실시	2014.5.3. 2014.5.31.
사진	 2014. 5. 3.과 2014. 5. 31. 2회에 걸쳐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세월호 공익법률지원단 워크숍이 실시됐다. (대한변협신문)
내용	대한변협은 전국 회원을 대상으로 공익법률지원단을 두 차례에 걸쳐 모집했으며 최종 514명의 변호사가 세월호 공익법률지원단(이하 '법률지원단')에 참여하게 됐다. 이후 공익법률지원단을 대상으로 5월 3일과 31일 두 차례에 걸쳐 '세월호 참사 피해지원 공익법률지원단 워크숍'을 개최했다. 워크숍에는 100여명의 변호사가 참여해 세월호 참사 현장 설명과 보험·국가배상 등 법률적 문제, 정신적 상담 사례, 2차 피해예방 및 대응책 등에 대한 강의를 듣고, 각 지원 분야별로 구분해 종합적인 피해자 지원 계획을 수립했다.

9. 안산 분향소 및 인천 지역에 변협 법률상담 텐트 운영	2014. 5. 27. ~
내용	5월 17일부터 안산 분향소에 법률상담소를 설치해 계속 운영중에 있으며, 진도 실종자 수색 현장에도 세월호특위 위원인 배의철 변호사가 연말까지 상주하였다. 또한 상시 신속한 연락을 위해 공익법률지원단 전용 긴급 연락처(02-2087-7883/0103-8282-822)도 마련됐다. 모든 관련 법률상담은 긴급연락처를 통해 접수한 후 전문분야별 변호사 그룹의 자문을 거쳐 24시간 이내 무상으로 답변이 제공됐다.

10. '경찰의 세월호 참사 관련 인권침해 행위 중단 촉구 성명' 발표	2014. 5. 27.
내용	변협은 4·16 참사 이후 경찰의 비민주적이고 반법치적인 행태를 규탄하고 사과와 시정을 촉구했다. 앞서 단원경찰서 소속 사복경찰이 단원고 희생자 가족들을 차량으로 미행한 일과 잠복근무한 일, 세월호 참사 추모집회에서 강제 연행된 여성 참가자에 대한 속옷 탈의를 강요한 일 등과 관련해 경찰이 과거 불법적 관행을 고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관련자 처벌, 피해자들에 대한 공개사과, 평화적 집회에 대한 강제연행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11. '세월호 피해자 한부모 가정 보험금 지급방식문제' 에 대한 변협 간담회 개최	2014. 5. 30.
내용	세월호 유가족 중 비양육친의 보험금 청구가 문제되자 변협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손해보험협회, 생명보험협회, 동부화재 등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에 대비한 방침을 설정하였다.

12. 대한변협 세월호특위 산하 진상조사단 및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 '세월호 관련 증거 보전돼야 한다' 기자회견	2014. 6. 9.
내용	대한변협 세월호 특위 산하 진상조사단은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와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 관련 증거를 보전해야 된다며 각 관련 기관이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고 법원에 14건의 증거 보전 신청을 해 진도·제주 VTS, 세월호 선내 CCTV, 세월호 국정원 지적사항 등 증거를 확보했다. 또 피해학생들의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을 통해 영상을 비롯한 정보를 복구해 가족들에게 인계함과 동시에 향후 진행될 진상조사의 증거로써 확보했다. 이는 진상조사위원회의 활동 이전에 향후 핵심 증거가 멸실되거나 훼손의 우려가 있어 처해진 조치이다.

13. 단원고 유가족 전원, 생존학생 개별 면담 · 조사 및 진술청취카드 작성	2014. 6. 3 ~ 6. 9

사진

진술 청취 카드

상 담 일 시		년 월 일 시간 :			
상 담 신청자	성 명		피해자와 관계	1. 부모 / 2 기타(피해자의 남편)	
	연락처				
	E-mail				
답변 변호사					
피해자	이 름		피 해 내 용	1. 사망( ) 2. 상해( ) 3. 재산( ) 4. 기타( )	
	나 이				
	성 별	남( ) / 여( )			
	지 위	학생( ) / 교사( ) / 일반( ) / 기타 ( )			
	연락처		기 타		
상담요지	<대한변협 공익법률지원단 진술 청취 상담 매뉴얼>				

<청취메뉴얼>--아래의 메뉴얼에 따라 청취내용을 별도로 별지에 작성해 주시기바랍니다

1. 진술청취를 하기 전에 진술을 하시는 분의 지위가 실종자인지 생존자인지, 사망한 희생자인지를 먼저 확실히 파악하여 실수 하지 않는 것이 필요

진술청취카드 상단부

내용

세월호 특위 위원 및 진상조사단은 단원고 유가족 전원과 생존학생을 반별로 시간을 정하여 개별 면담·조사를 통한 진술청취카드를 작성하였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사고 및 구조당시의 상황과 대처 현황을 파악, 진상조사의 방향을 결정하였다.

14.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민원 신청	2014. 6. 9.
사진	 2014. 7. 7.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세월호 침몰사고의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허원재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이 기관보고를 하고 있다 (출처:뉴시스)
내용	세월호 특위 산하 언론대응팀은 세월호 참사당일부터 이틀뒤까지 해경의 구조작업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제대로 보도하지 않은 KBS, MBC 뉴스에 대하여 민원을 신청하였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이에 대하여 “이후 방송을 통해 초기 구조 활동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지속적이고, 비중있게 보도한 바 있어, 동 건에 대해서는 문제삼기 어렵다”, “다만 위 건과는 별개로 당일 ‘KBS 뉴스 9’ 프로그램의 ‘박 대통령, 피해자 가족 방문’ 보도와 관련, 당시 현장의 분위기를 제대로 전달하지 않았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었고 이에 대하여 방송법 제 100조 제1항에 따로 ‘권고’ 조치하였다”는 입장을 밝혀왔다(2014. 7. 24.).

15. ‘해경의 세월호 참사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중단 촉구 성명’ 발표	2014. 6. 27.
내용	해경이 피해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것에 대해 “증언을 앞둔 생존 피해자들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고 심한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피해자 전체에게 2차 피해를 입히고 있다”며 고소 취소와 2차 가해 중지를 강력 촉구했다.

16. 국회, 광화문 유가족 지원	2014. 6. ~
사진	
	사진출처: 민중의소리
내용	변협 세월호 특위 산하 현장대응지원단은 국회, 광화문 등의 시위 현장에서 인권탄압여부를 감시하고, 각종 협상과 법률자문 등의 지원활동을 계속하였다.

17. 안산 침수휴대폰 복구센터 운영: 희생자 침수 휴대폰 90여 개 자체 복구(포렌식) 작업 완료 및 분석	2014. 5. ~ 2014. 6.
사진	
내용	세월호 특위 산하 진상조사단에서는 세월호 참사 피해학생들의 휴대전화에 대한 디질털 포렌식(증거제출을 위한 복구)을 통해 영상을 비롯한 정보를 복구해 가족들에게 인계함과 동시에 향후 진행될 진상조사의 증거로써 확보했다.	

18. 허위사실 유포 인터넷 블로그와 악성댓글에 대한 고소 · 고발	2014. 6. ~ 2014. 8.
사진	
내용	유가족을 비방하는 글이 확산되면서 세월호 특위가 더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하였다. 허위사실 유포와 모욕 등에 대하여 공식 이메일(Lawhelp@koreanbar.or.kr)을 통해 접수를 받고, 70여건의 고소·고발을 진행하였다.

19. 진도 · 제주 VTS 증거보전	2014. 6. 13.
사진	
	2014. 6. 13. 오후 8시경 제주해상교통관제센터(제주 VTS)에서 제주지방법원 관계자와 대한변협 세월호 특위 관계자들이 세월호 침몰 사고 당시 제주VTS와 나눈 교신 기록을 검증하기 위한 증거보전 절차를 이행하고 있다. (뉴스원)
내용	세월호 특위 산하 진상조사단은 2014. 6. 9.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 관련 증거를 증거보전해야 된다며 관련 기관이 적극 협조해줄 것을 요청하고 이후 법원에 진도·제주VTS, 세월호 선내 CCTV, 세월호 국정원 지적사항 등 총 14건의 증거보전을 신청했다.

20. 해경 구조 동영상, 해수부 상황보고서 등 증거보전 신청	2014. 6. 23.
사진	 출처: 연합뉴스
내용	세월호 특위 산하 진상조사단과 유족들이 23일 오후 인천시 연수구 해양경찰청을 방문, 세월호 참사 당시 출동한 해경 경비정 123정과 헬기가 촬영한 구조 동영상 등 증거들에 대해 보전신청을 했다

21. 국조 특위 모니터링 및 가족대책위 지원	2014. 6. ~ 2014. 7.
사진	 사진출처: 민중의 소리
내용	“세월호 침몰사고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로 인해 다량의 자료가 국회로 모이고 있던 시기에 맞춰 변협 세월호 특위 위원이 국조특위 위원으로 참여하면서 동시에 가족대책위의 모니터링 활동을 지원하였다.

22. 광주 선원 등 재판 피해자 지원	2014. 6. ~
사진	 사진출처: 연합뉴스
내용	대한변협은 세월호 참사 피해자를 위한 재판지원을 해왔다. 세월호 선원 등 재판의 경우 방청을 위한 안내사항 및 사전교육 뿐만 아니라 실제 법정에서 피해자를 위해 변론하였으며, 재판이 있는 광주까지 가기 어려운 피해자를 위하여 안산지원에서도 중계를 통해 방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청해진해운 재판과 해경 재판, 유병언 비리사건 재판도 수시 모니터링하였다.

23. 세월호 CCTV DVR 64개 증거보전, 자체복구 완료 및 자료분석	2014. 7. ~ 2014. 8.
사진	 사진출처: 오마이뉴스
내용	세월호 특위 산하 진상조사단에서는 세월호 CCTV 64개의 DVR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 후 직접 법원에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를 대동, 복구 전문가로 지정케 하여 2개월간 바다속에 잠겨 있던 DVR을 복구하는데 성공하였다. 복구 자료는 향후 재판에 중요 증거로 사용되었으며, 증거보전비용 8천여만원에 대해 2015. 1. 23. 소송구조결정된 바 있다.

24. '4 · 16참사진실규명및안전사회건설을위한특별법공청회' 개최	2014. 7. 2.
사진	
	2014. 7. 2. 국회 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대한변호사협회 주최로 4·16 참사 진실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특별법 공청회가 개최되었다.
내용	- 장소: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 - 좌장: 장완익 변호사 - 발표자: 김희수 변호사 - 지정토론자: 새정치민주연합 전해철 국회의원 세월호유가족대책위원회 전명선 부위원장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김택수 변호사 참여연대 이태호 사무처장

25. ‘4.16 특별법’ 국회 입법 청원 및 특별법 설명회 개최	2014. 7. 9
사진	 사진출처: 민중의 소리
내용	2014. 7. 9. 대한변협은 독자적인 세월호 특별법안(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을 국회에 입법청원했으며 이는 진실규명, 재난방지 및 대응책 수립, 피해자 지원, 희생자 기억 등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유가족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조사위원회에 독립적이고 실질적인 조사권한을 부여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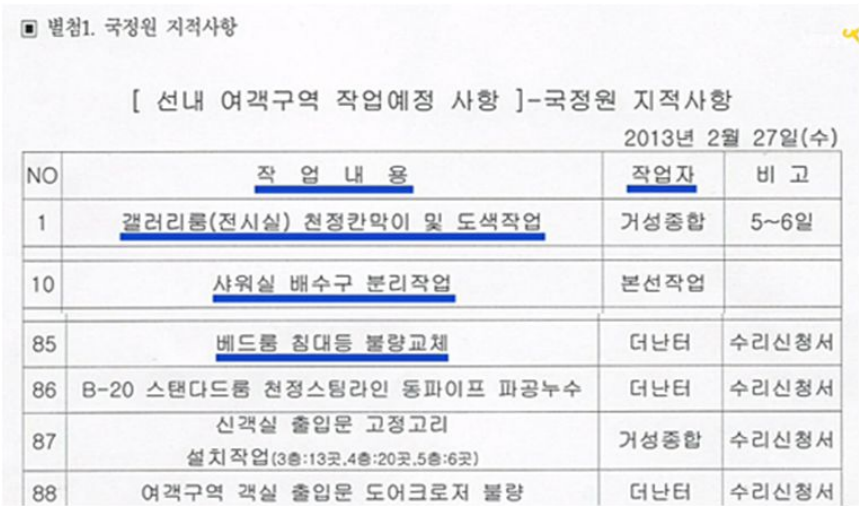
26. 김앤장 사회공헌위원회 성금 기탁	2014. 7. 14.
사진	 2014. 7. 14. 대한변호사협회 18층 접견실에서 목영준 김앤장사회공헌위원회 위원장이 위철환 대한변협 협회장에게 세월호참사피해 지원 성금을 전달하고 있다.

27. 4 · 16특별법제정촉구 성명발표	2014. 7. 16.
사진	 위철환 대한변협 협회장이 국회 본청 앞에서 국회는 진실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4.16 특별법을 신속하게 제정하라는 성명을 발표하고있다.(대한변협신문)
내용	6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날인 2014. 7. 16.까지 여당과 야당이 입장차이를 좁히지 못했고, 일부 언론에서도 피해자 단체가 배상 혹은 보상금을 더 받기 위해 특별법을 제정하려 한다는 유언비어를 게재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날 대한변협 위철환 협회장과 세월호특위 관계자들은 국회 앞에서 입법청원안의 주된 목표는 '안전한 사회 건설 및 확립'이며 위 법률안에는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는 보·배상이나 의·사상자 지정, 대학특례입학, 병역 특례 등 기존 법령 사례를 넘어서는 어떠한 특별한 이익을 제공하는 내용은 전혀 포함되지 않았음을 명백히 밝혔다.

28. 4 · 16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변호사 1043인 선언 발표	2014. 7. 24.
사진	 위철환 대한변협 협회장이 국회 앞에서 4.16 참사 진실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법률가 선언문을 낭독하고 있다.(대한변협신문)
내용	대한변협이 제안한 “4.16참사 진실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특별법”의 제정을 촉구하는 서명에 1043명의 변호사가 서명하였다. 4.16특별법에는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서는 보·배상, 기존의 법령이나 사례를 넘어서는 그 어떤 특별한 이익을 제공하는 내용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그 목적은 명확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에 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하였다.

29. 세월호 업무용 노트북 증거보전, 자체복구 완료	2014. 7. 25

사진



▣ 별첨1. 국정원 지적사항

[선내 여객구역 작업예정 사항]-국정원 지적사항

2013년 2월 27일(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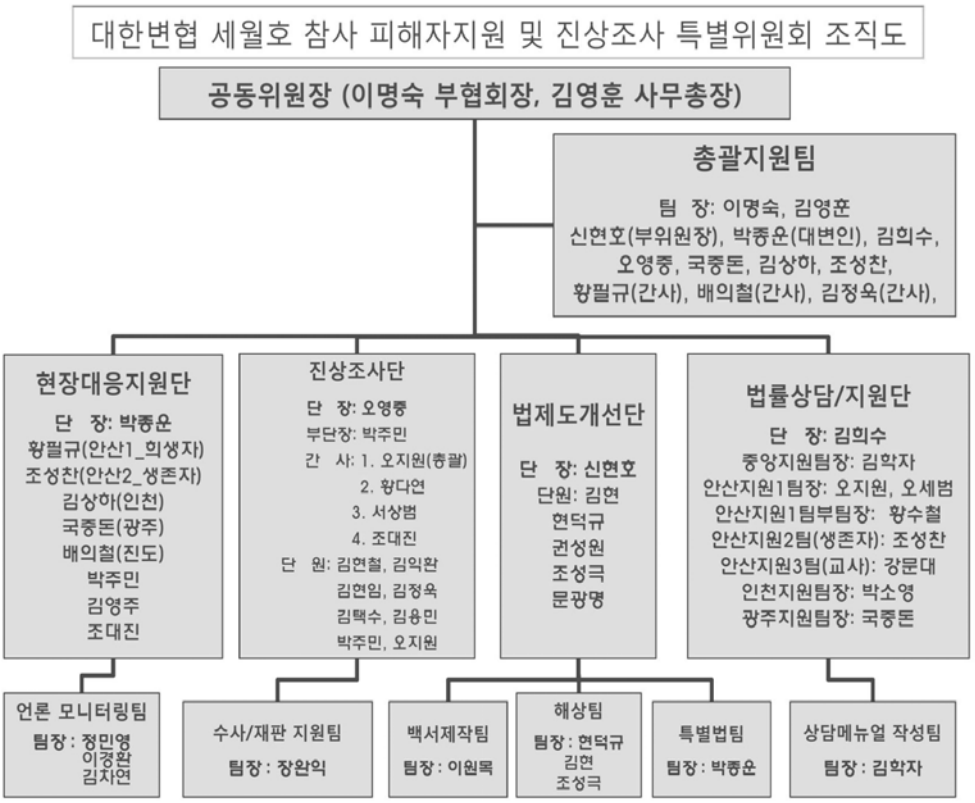
NO	작 업 내 용	작업자	비 고
1	갤러리룸(전시실) 천정칸막이 및 도색작업	거성종합	5~6일
10	샤워실 배수구 분리작업	본선작업	
85	베드룸 침대등 불량교체	더난터	수리신청서
86	B-20 스탠다드룸 천정스팀라인 동파이프 파공누수	더난터	수리신청서
87	신객실 출입문 고정고리 설치작업(3층:13곳,4층:20곳,5층:6곳)	거성종합	수리신청서
88	여객구역 객실 출입문 도어크로저 불량	더난터	수리신청서

내용

세월호 업무용 노트북의 증거보전 신청 이후 세월호 특위 자체적으로 침수된 노트북을 복구, 국정원 지적사항을 발견하고 여러 의문점을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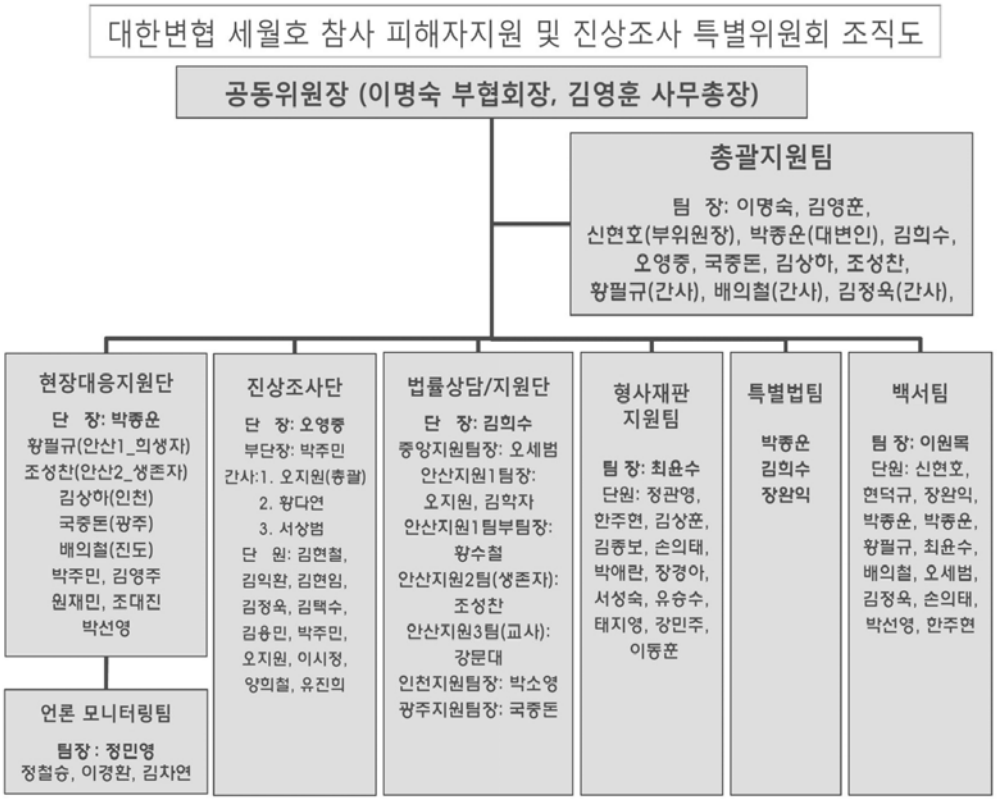
Ⅱ. 조직도(전기)

조직도(전기)



Ⅲ. 조직도(후기)

조직도(후기)



대한변협 세월호참사피해자지원및진상조사특별위원회 백서 후기

돌이켜보면 참으로 가슴 먹먹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지난해 4월 16일 세월호 소식을 전해 듣고서 누구보다 먼저 진도로 내려간 조대진 변호사님, 그 다음날 대한변협 인권위원회 소속 몇몇 변호사들과의 간단한 회의를 마치고 그 자리에서 바로 진도 현장에 내려간 황필규, 배의철, 김영주 등 몇몇 변호사님들. 이 분들을 통해 사고 발생 다음날부터 주말까지 나흘간 아수라장인 진도와 팽목항 현장 분위기를 실시간으로 문자와 전화로 전달받으며 대한변협의 역할과 지원방향을 논의하게 되었고, 현장에서 돌아온 황필규, 배의철 변호사를 중심으로 4월 21일 월요일 아침 일찍 신현호, 김영훈, 박종운, 오지원, 황수철 변호사 등이 대한변협 회의실에서 모여 진도와 팽목항 현장상황 보고와 함께 대한변협 차원의 지원을 하기 위한 회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세월호 TF팀을 만들어 17차례에 걸쳐 매일 아침마다 모여서 회의를 하고, 저녁이면 세월호 피해자들이 있는 안산 병원의 장례식장들과 분향소를 돌고, 극도의 분노와 불신과 혼돈 속에서 울부짖으며 오열하고 있던 피해자들을 조심스럽게 지켜보며 이들과 함께 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울었던 것보다 더 많이 울고 있다' 며, 시도때도 없이 흐르는 눈물 속에서 함께 모여 회의를 하곤 했습니다. '대한변협 세월호 참사 피해자 지원 및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의 긴 여정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특위를 구성하는 초기 단계에 대한변협 임원과 회원들 중에는 '세월호 사고가 변호사들이 해야 할 인권문제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사태가 수습된 후 배상이나 보상문제를 다룰 때가 되어서나 변호사들이 할 일이 있지 그 전에 무슨 할 일이 있느냐', '가뜩이나 변호사들이 사건이 없어 힘든데, "공익" 이라는 이름으로 대한변협이 나서서 무료로 소송을 다 해주면 회원들의 밥벌이까지 빼앗아 버리는 거 아니냐' 는 성토와 비난의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수많은 특위 활동 중 가장 적은 숫자의 몇몇 변호사들이 지원하고 있는 현장지원과 특별법을 둘러싼 왜곡되고 잘못 알려진 사실을 토대로, 특위 활동과 대한변협 전체를 싸잡아 폄훼하며 비난했던 원로변호사님들과 회원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제47대 대한변협 집행부는 어느 집행부에서도 하지 못했던 엄청난 역사를 썼고, 비난하고 냉소짓는 이들보다는 변호사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진심으로 감동하고 박수치는 회원들이 훨씬 더 많았다는 사실입니다. '세월호 활동을 지켜보면서 내가 변호사인 것이 너무나 자랑스럽다'는 회원들도 많이 만났습니다. 일부 회원들의 우려와 달리 세월호 특위가 한 일들이야 말로 가장 중요한 인권활동이었고, 특위 변호사들의 활동으로 인하여 회원들의 일거리가 줄어들기는 커녕 회원들의 역할과 활동범위가 엄청나게 확장되고 회원들의 위상을 드높이는 계기가 되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공익법률지원단에 자원했던 514명의 변호인단, 416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한 선언에 동참한 1043명의 변호사님들, 서울, 안산, 진도, 팽목항, 광주, 인천, 제주도에 이르기까지 전국 곳곳에서 세월호 피해자를 지원하고 진상규명을 하기 위한 다각도의 노력을 해 온 수많은 변호사님들, 대한변협 역사에 우리 사회의 공익을 위해 이보다 더 많은 수의 회원들이 함께 한 일이 있었는지, 이렇게 장기간에 걸쳐 이름도 없이 무보수로 헌신적으로 희생한 변호사들이 있었는지 생각해 볼 일입니다. 지난 한 해는 물론 앞으로도 변호사들의 공익활동과 역할을 언급할 때마다 가장 먼저 전설처럼 세월호 특위 활동이 회자될 것으로 믿습니다. 법조언론인클럽에서 '2014 올해의 법조인상'을 대한변협 세월호 특위 소속 배의철, 박주민 변호사로 선정한 것은 특위 활동의 가치와 의미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세월호 특위 활동을 엮은 백서를 통해, 그동안 해 온 일들을 잠시 정리하고 뒤돌아봄으로써 이를 좀 더 체계화하고 조직을 재정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특위 활동의 긍정적인 역할 뿐 아니라 미진하고 부족했던 점, 잘못했던 점이나 힘들었던 점까지 허심탄회하게 드러내어 논의하는 것은 이후의 재난대응을 위한 제대로 된 시스템을 준비하는 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재난안전과 지원을 위한 논의는 컴퓨터 앞에 앉아서, 책자에서 배운 지식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루 아침에 얻을 수도 없고, 강의실에서 회의실에서, 주마간산(走馬看山)격인 현장시찰로, 서류보고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피눈물나는 현장에서의 경험 없이는 얻을 수 없습니다. 그 소중한 체험을 공유한 수 백, 수 천명의 회원이 대한변협에 있다는 사실은 엄청난 자산이요 자랑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세월호 특위에 함께 한 수많은 변호사님들의 노고와 헌신이 너무나 감동적이고 감사해서 이 자리를 빌어 한 분 한 분께 존경하는 마음을 담아 다시 한번 감사 드리고 싶습니다.

세월호 특별법 초안을 만드느라 고생한 김희수, 박종운 변호사님, 한 달 이상 국회에 상주하며 특별법 논의과정에 동참한 장완익, 박종운 변호사님, 진도에서 172일간 실종자 가족들과 숙식을 함께 하며 법률대리인 역할을 해 온 초인적인 배의철 변호사님, 안산, 광화문, 국회 등 피해자들이 있는 곳 어디에나 피해자 가족들과 함께 현장을 누비며 수많은 날들을 체육관에서, 아스팔트 길 위에서 노숙하곤 했던 황필규, 박주민, 원재민, 박선영, 한주현 변호사님, 아침부터 한밤중까지 안산에 머물며 가족들을 다독여주고 상담해 주던 오지원, 김영주, 황수철, 오세범 변호사님, 인천에서 일반인 가족들을 위해 헌신해 주신 김상하, 박소영변호사님, 1만 8천페이지가 넘는 재판기록을 검토하며 재판지원을 해 오고 있는 최윤수, 장경아, 김종보, 박선영, 박애란, 한주현 변호사님, 광주의 국중돈, 김상훈변호사님, 진도 VTS, 바다에서 올라온 휴대폰 복구작업 등 증거보존을 위해 진도로 제주도로 안산으로 동분서주하며 수고해주신 오영중, 김영민 변호사님, 언론모니터링과 정정 보도 등으로 수고하신 정민영, 손의태, 정철승 변호사님, 세월호 백서 원고를 작성하고 이를 수정하기 위해 노력하신 이원목 백서팀장님을 비롯한 많은 변호사님들, 특히 마지막까지 백서 수정작업을 도와주신 신현호, 박종운, 장완익, 현덕규변호사님, 세월호 관련 모든 창구 역할을 도맡아 해 온 김정욱 사무차장님, 저와 함께 공동위원장으로서 든든하게 지켜주시며 큰 힘을 실어주신 김영훈 변호사님, 이 분들이야 말로 이 시대의 살아 있는 양심, 행동하는 정의요 인권지킴이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물심양면으로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은 위철환 협회장님과 많은 수고를 해 주신 협회 직원 분들에게도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이 백서는 세월호 특위의 마침표가 아니라 쉼표입니다. 아직 세월호 참사는 끝나지 않았고,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진도 실종자 가족들을 중심으로 인양 논의가 지속 중에 있고, 배,보상 관련법이 논의 중이며, 재판도 아직 진행 중입니다. 특

위에서 활동한 신현호, 박종운, 장완익 변호사님이 참여하고 있는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는 아직 시작도 하지 못한 채 준비작업에 분주한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서를 작성하게 된 것은 향후 남아 있는 세월호 특위 활동을 재점검하는 중간 평가가 될 수도 있고, 지금도 진행되고 있을 다양한 대한변협의 공익활동과 다른 전문가 단체의 공익 활동에 좋은 참고사례가 되리라 믿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 번 대한변협 세월호 특위라는 위대한 여정에 함께 해 주시고, 각자의 위치에서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신 전국의 수많은 변호사님들과 이를 심정적으로 지지해주시고 격려해 주신 수많은 살아 있는 지성인과 따뜻한 마음을 가진 국민 모두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2015년 2월

대한변협 세월호 특위 공동위원장

이 명 숙

대한변협 세월호참사피해자지원및진상조사특별위원회 백서 후기

꽃다운 나이, 꿈 많은 우리 아이들이 스러져간 참혹했던 그 시간, 아무런 도움도 줄 수 없었던 무기력했던 대한민국 국민들! 눈물범벅이 된 얼굴을 맞대고 다시는 이런 비극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다짐하면서 우리 변호사들은 하나가 되었습니다. 정 많고 정의로운 변호사들의 열정이 대한변호사협회를 움직여 특별위원회가 조직되었고, 지원변호사단이 모집되어, 진상조사, 피해자지원, 재판지원 등 부문별로 나누어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4·16 세월호 참사를 돌이켜 보면 참으로 어이가 없습니다. 고요한 바다에서 거대한 배가 침몰하였고, 선장과 선원들은 승객을 버리고 먼저 탈출하였으며, 해경은 목숨을 건 구조를 꺼리는 와중에 250여명의 학생들을 비롯한 304명의 희생자를 낸 사고라니! 도대체 그 사고 배후에는 어떠한 거악과 비리가 축적되어 있고, 공권력과 행정조직은 얼마나 무능하고 무책임했던 것인지?

참사 이후의 여론의 흐름과 세월호특별법 제정과정에서의 갈등과 파행을 보면 다시 어이가 없는 느낌을 받습니다. 참사 직후에는 온 국민이 슬픔과 분노 속에 하나가 되었는데, 언제부터인가 그 슬픔과 분노를 외면하고 혐오하는 시각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 때문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전국의 변호사들로 조직된 법정단체로서 정치적으로 편향된 활동을 한 적은 전혀 없었음에도 대한변협 세월호 특위 활동 중 특별법 제정 부분만 부각되어 사실왜곡과 편가르기로 인한 어려움도 겪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우리 변호사들은 피해자 보호를 비롯한 공익활동에 매진함으로써 변호사의 공익정신을 드높였다고 자부합니다.

다만, 미증유의 참사를 맞아 이루어진 대한변호사협회의 활동이 모든 면에서 전부 최선이었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므로, 이제 대한변호사협회가 세월호참사를 당하여 벌인 피해자지원, 진상조사 등 활동을 기록한 백서를 발간함에 있어서는 잘한 점은 물론, 잘못되었거나 미흡한 점 역시 냉정하게 기술하여, 후일 다시 국가적인 재난사태가 있을 경우에 대한변협의 활동에 대비한 자료로 삼을 수 있도

록 하였습니다.

그간 4·16 세월호 참사 백서의 집필을 위하여 애써주신 백서팀장 이원목 변호사(개관), 배의철·황필규 변호사(현장지원활동), 박종운 변호사(입법지원활동), 박선영·한주현 변호사(진상조사활동), 최윤수 변호사(형사재판지원활동), 오세범 변호사(법률상담활동), 손의태 변호사(언론대응활동), 대한변협 사무차장 김정욱 변호사(세월호특위활동일지)의 관심과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4·16 세월호 참사 백서의 검토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이원목 백서팀장님과 위원 여러분(신현호, 장완익, 현덕규 변호사)의 노고와 편집위원으로 활동해 주신 분들(박선영, 한주현 변호사)의 헌식적인 노력에 감사드리며, 교정 및 발간을 위하여 수고하여주신 김정욱 대한변협 사무차장과 조원희 총무과장, 허정회 총무과 직원의 도움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덧붙여 대한변협 세월호특위의 성과를 이어받을 4·16세월호참사진상규명및안전사회건설 등을위한특별법에 기해 구성된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 대하여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특별조사위원회가 벌일 진상조사, 재난 예방과 대응방안 마련, 피해자 지원 등 활동의 성패에 따라 그간의 다수의 노력과 안전사회 구축을 전제로 한 우리 사회 미래의 성패도 결정될 것입니다. 특별조사위원회는 4·16 세월호 참사의 직접적 원인은 물론, 배후의 모든 악과 비리, 무능과 무지,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의 진실을 밝혀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참사의 상처를 치유하고 미래를 위한 이정표를 세우기를 희망합니다.

2015년 2월

대한변협 세월호 특위 공동위원장

김 영 훈